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은 김포이야기

김포실록

편찬 김진수(김포역사연구원 연구위원)

김포문화원

김포실록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은 김포이야기

편찬 김진수(김포역사연구원 연구위원)

김포문화원

김포실록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은 김포이야기

인쇄 | 2007년 12월 1일
발행 | 2007년 12월 10일
발행인 | 조한승(김포문화원장)
편찬자 | 김진수(金振壽)
감수자 | 이하준(문학박사)
간사 | 신송철(김포문화원 사무국장)

제자 | 지당 이화자(사단법인 한국서기협회 초대작가)

펴낸곳 | 김포문화원 부설 김포역사문화원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9-4
전화 | 031)982-1110

기획·편집 | 미래신문사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0-3
전화 | 031)983-4141
팩스 | 031)984-4141
홈페이지 | www.gimpo.com

※ 본 책자는 김포시의 시비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비매품)

김포실록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은 김포이야기

2007

소중한 지역의 역사자료로 남기를 바라며

강 경 구
(김포시장)

정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무자년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즈음에 김포문화원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사(正史)인 조선왕조실록에서 우리 김포지역에 대한 기록만을 발췌하여 『김포실록』을 편찬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아니라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풍부하게 수록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대한 기록물입니다. 또한 그 방대함과 기록에 대한 진실성, 신빙성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그 역사적 기록들을 찾거나 기록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조선왕조실록에서 지역출신 선현들의 기록을 정리하여 『충봉 조헌 편』, 『눌재 양성지 편』을 발간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자인 본서를 발간함은 우리 시로서는 대단한 쾌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서 당대 우리 지역의 역사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축적하고 알리는 일은 우리시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동일성과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체계적이고도 훌륭한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조한승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김포실록』발간이 김포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우리시 향토사 연구 및 문화 발전을 한 걸음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포실록 발간을 축하드리며

유 필 선
(김포교육청 교육장)

아침마다 하얀 서리가 유리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입니다. 이렇게 날이 차가워질수록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즈음에 김포문화원에서 『김포실록』을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김포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드넓은 평야를 지닌 청정지역으로서 우리나라 5,000년 쌀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한강유역의 유서 깊은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조헌선생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과 붕고 침입시 평범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다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도 소리 없이 죽어간 손돌공과 같은 인물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빛나는 김포의 찬란한 역사적 배경과 정기를 띠고 태어난 수많은 후손들의 발자취와 우리 김포반도의 다양한 역사성과 문화는 조선왕조실록 곳곳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면모를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삼고 널리 그 모습을 알리고자 편찬되는 〈김포실록〉은 좁게는 자라나는 김포의 미래인 어린이들로부터, 넓게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의미와 참다운 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책자는 방대한 조선왕조실록에 묻혀 자칫 잊기 쉬울 수도 있던 우리 자랑스러운 김포인들의 발자취를 하나의 가르침으로 남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고

호흡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그 의미가 매우 새롭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인물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새로운 지침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김포실록을 보고 자라난 우리 청소년들이 곧고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나 후세에 계속 이어져 미래의 또 다른 김포실록의 한 면을 장식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포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자취인 김포실록을 토대로 김포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고취시키고, 우리 김포의 미래를 조명해 볼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김포시의 모든 문화적 활동에 앞장서며 향토문화 발굴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포문화원 조한승 원장님을 비롯한 편찬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바른 문화의 창달과 보존, 전승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 간 사 |

김포실록, 정체성 확립 위한 좋은 길잡이

조 한 승
(김포문화원 원장)

이번 김포실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김포관련 역사 기록들을 발췌하여 현대어로 풀이함으로써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지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우리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포지역은 경기도 북서단에 위치한 반도지역으로 천혜의 평야와 한국의 젖줄인 한강을 끼고 있어 일찍이 농경생활의 터전으로 한국최초의 쌀 생산지로 자리매김되어 왔고, 또한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고장의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 보전, 계승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포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책이 발간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김진수 김포역사연구원 연구위원님과 감수에 열정을 보여주신 이하준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김포실록이 김포지역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21만 김포시민 모두가 애독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의 숨결 가감없이 수록한 역사의 흔적

이 하 준
(가톨릭대 교수)

우리 김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은 김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뿌리와 몸통을 모르고 가지를 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포실록〉을 편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본자료는 김포의 유구한 역사를 살피는 지름길 역할을 하며 또한 무한대의 의미창출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김포는 여러 왕대에 걸쳐 매우 다양한 부분에 걸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김포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 중 김포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시 편한 것은 그야말로 김포의 역사라 할 만 합니다.

김포의 정치, 경제, 문화, 인물 등의 굵직한 담론부터 천기, 포상, 형벌 등의 자잘한 일상까지 모두 담아낸 명실상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런 김포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진수목사께서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 끝에 〈김포실록〉을 편한 것입니다. 김포시민 모두가 환영할 말한 일인 것입니다.

〈김포실록〉에는 매우 많은 정보가 '날것'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김포의 숨결을 가감 없이 편한 것입니다. 자세한 미주로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독서에 장벽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대별로 적절하게 제목을 달고 각 왕조의 실록편찬의 의미를 함

께 수록하여 역사 교양의 폭을 확대한 것도 〈김포실록〉의 큰 미덕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김포에 관한 모든 자료를 편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김포 시민과 김포시의 문화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나머지 역사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문제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김포 시민 모두가 각자의 용도에 따라 이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김포실록〉의 편찬 의미를 오롯하게 살리는 길입니다. 김포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하는 일은 후대가 이를 어떻게 생산 수용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포는 앞으로 더욱 커져 서해안시대를 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한다면 혀올 좋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우리가 〈김포실록〉 속에서 지혜를 찾고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포에서는 〈김포신록〉과 같은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시발의 역할을 담당해준 〈김포실록〉 편찬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 깊게 품습니다. 〈김포실록〉을 늘 곁에 두시고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포인의 미래 전망하는 지혜의 창고

김 진 수
(김포역사문화원 연구위원)

500년여 년 동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실려있을까? 또 '김포'와 관련된 내용은 있을까? 하는 의문이 편자로 하여금 조선왕조실록 속에 기술된 김포실록을 엮어내는 출발이 되었다.

다행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서비스하고 있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놀란것은 '김포' 관련기사가 무려 623건이나 검색된 사실이다.

편자의 생각으로는 역사 기록물 가운데 '김포'에 대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내용이 텍스트로 남겨진 자료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조선왕조실록이 유일한 자료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은 국가적으로도 자료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김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존재와 규모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김포이야기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김포역사에 대한 관심부족과 무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서와 출판사에서 실록에 대해 말하고 더욱이 방송사에서 역사 드라마의 소재로 방영되기 까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김포와는 관계없는 조선시대 왕들의 권력투쟁과 정치사로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지난날을 돌아보는 까닭은 오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의미에서

'조선왕조실록'이 지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실로 크다 하겠다. 어느 저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곳곳을 여행하면서 선조들이 거대한 기록을 후세에 전한 뜻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그 심정을 전했다.

편자 역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1년 동안 김포의 곳곳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짧지 않은 여행을 통해 김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그 동안 김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을 여행하면서 이토록 방대한 규모와 세세한 내용들이 그 동안 우리의 삶속으로 녹아들어 오지 못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또다른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이제 '김포실록'이라는 새로운 보물을 확보했다. 단순히 옛 선조들의 이야기가 모아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김포실록을 통해서 선조들이 김포를 향해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자료와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김포사람으로서 김포를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가치가 김포시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사실로 내면에 잠기고 김포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편자는 충분히 김포실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김포의 희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과거와의 소통은 중요하다. 우리의 조상들이 김포반도에서 어떠한 생각과 생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아가 정치적으로

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존해 왔는지, 또 김포반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 왔는지를 묻는 일은 김포 미래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포실록은 이러한 물음을 현재적으로 묻고 그 해답을 얻어 우리 삶의 미래를 전망하는 지혜의 창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편자가 '조선왕조실록에는 김포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김포실록을 엮어내는 출발이 되었다. 이 출발이 다행히도 김포문화원 부설 김포역사문화원의 첫 사업으로 채택됐다. 김포실록을 엮는 역사적 과업을 필자가 감당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김포역사문화원의 첫 사업의 가치를 훼손할까 두려운 마음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빈구석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지면을 빌어 김포문화원 조한승 원장님과 김포역사문화원 연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김포문화원이 김포의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김포실록'을 편찬하도록 결정한 일은 매우 귀중한 일이었다. 앞으로 더욱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밝혀내는 사료 발굴 노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부족한 점이 많은 편자의 노력을 위해 감수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이하준 교수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또한 축사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신 강경구 김포시장, 유필선 김포교육청 교육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를 질서있게 정리해 준 황인문과 이호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보낸다.

아무쪼록 '김포실록'이 김포의 역사적 정체성 발굴과 김포의 미래를 전망하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실록을 엮은 편자로서 큰 기쁨이다.

2007년 12월

북성산 기슭에서 편자 김진수

1. 태조실록

1)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양광도 · 강릉 교주도 · 서해도를 개칭하다 | 50
2)통진감무를 설치하고 동성과 수안을 합속시키다 | 50

2. 태종실록

1)사신으로 가다가 되돌아 온 총제 박경을 통진으로 귀양보내다 | 51
2)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안협감무 김흥조 등 5인을 파면하다 | 51
3)통진 · 포주 · 풍양 · 양주 등지에 황충이 일다 | 51
4)김포 · 통진 등 연해 14고을에 해일이 일어 농사에 피해를 입히다 | 52
5)각기병을 잘 고치는 통진현 사람 전 내부시 소윤 이방선을 부르다 | 52
6)국마를 잘 기르지 못한 통진현감 한처령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 52
7)하윤이 통진과 고양포의 땅을 점유하고자 제방을 쌓았는데 이일에 협조한 관원을 파직시키다 | 53
8)각품에 따른 과전을 예전대로 지급하게 하고 경외의 용관을 도태시키다 | 54
9)경기 도관찰사가 고을을 통폐합 함에 따른 시행 사항을 보고하다 | 55
10)강화 둔전을 경영하라고 명하다 | 55
11)과천 현감을 다시 설치하고 금천을 양천에 합하여 금양현으로 하다 | 56
12)관찰사 허지의 실농 보고로 경기인천 등 9읍의 요역과 번상을 면제하다 | 57
13)경기 · 충청 · 전라도의 일부 합병한 군현을 종전대로 분할하다 | 58
14)김포현 사람 김난의 집 소가 벼락을 맞다 | 58
15)부평도 경차관 민문을 손과 실이 맞지 않은 때문에 파직하다 | 58

3. 세종실록

1)대간이 박신의 죄를 청하니 전리로 돌아가게 하다 | 60

2)상왕이 이원과 신상을 불러 위로하고, 이직 · 이숙번 · 황희 등에 대해 묻다 | 60
3)경기 감사가 통진 조수가 불었음을 고하다 | 61
4)두 임금이 김포 등지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 61
5)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신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하다 | 61
6)태상왕이 통진의 대명관에서 사냥하는데 임금도 따라가다 | 62
7)통진의 음동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저녁에 수레가 고리관에 이르다 | 62
8)김점의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외방에 거주할 것을 전지하다 | 63
9)호조에서 경기도의 각 고을은 환상 지급 절차에 대해 아뢰다 | 63
10)한성부 윤 김소대와 대호군 고득종이 목장으로서의 강화부의 입지조건을 아뢰다 | 64
11)지정선군사 안수, 김포현령 이효지, 무주 현감 유중경 등을 인견하다 | 65
12)경기 부평 · 양천 · 김포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 65
13)김포현령 이효지의 아내 유씨에게 태형 50대와 속전을 징수케 하다 | 65
14)영돈녕 이지의 아내 김씨의 음란한 행적과 이를 치죄하자는 대사헌의 상소문 | 66
15)이지의 아내 김씨를 치죄하라는 논의를 중지시키다 | 68
16)병조에 전지하여 경기도와 황해도 등지에 있는 강무장을 혁파하라고 명하다 | 69
17)응사로 하여금 아곱을 잡아오게 하다 | 69
18)생선간 오을마대 등이 고기를 잡다 익사하자 부의를 내리고 복호하게 하다 | 70
19)사신이 두목을 보내어 황어를 잡게 하다 | 70
20)절도범 말수를 교형에 처하다 | 70
21)통진현에서 남자 1인이 벼락을 맞아 죽다 | 70
22)경기 통진 · 충청도 아산 등 고을에 교도를 임명하다 | 71
23)경기 통진의 수안현, 동성현에 벌레가 생겨 곡식의 싹을 먹다 | 71

24)신전 · 조진경 · 선효림 · 이인숙 등이 효행이 있어 복호하게 하다 | 71
25)지해진군사 박흡 · 통진현감 유종서가 하직하다 | 72
26)김포 현령 안규와 이산 현감 김지회가 하직하다 | 72
27)통진현 선군 송물금이 바다에서 왜구를 만나 싸워 물리치다 | 72
28)경기 통진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 73
29)사조한 김포 현령 조안효를 불러 보다 | 73
30)판김포현사 이보정 등이 하직하다 | 73
31)한강변 양인과 공천 노자에게 내선에 생선을 공급케 하다 | 74
32)경기도 통진현 사람과 전라도 흥양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 74
33)경기도 관찰사에게 재앙과 사사를 부수는 일에 관해 전지하다 | 74
34)표류하던 배에 대해 아뢴 김포현 서원 박효진에게 목면 한 필을 하사하다 | 75
35)토지에 파종을 하지 못하고 기근이 들게 한 경기 감사 이선을 문책하다 | 76
36)판승문원사 이사맹이 초수로 여겨지는 것을 찾으니 사맹과 대호군 박강을 보내어 다시 찾게 하다 | 77
37)경기 도관찰사 허후에게 초수를 찾아 보고하라고 다시 교유하다 | 77
38)전 이조 판서 박신의 졸기 | 78
39)청주 지역의 옥 채굴을 금하는 수교 문구를 고치게 하다 | 80
40)경기 도관찰사가 조전해 온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방법을 아뢰다 | 81
41)청주, 김포의 옥을 사사로이 채취하지 못하게 하다 | 82
42)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해 소나무에 관한 감독 관리에 대해 상신하다 | 82
43)김종서 · 남지 · 윤형 · 김효성 · 안지 · 이변 · 조수량 · 김문기 · 김연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83
44)김포현(金浦縣) | 84
45)통진현(通津縣) | 85

4. 문종실록

1)의정부에서 봄 · 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 87
2)김포현령 주숙손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 88
3)황해도 · 개성부 · 경기 등지의 악병이 전염된 곳에서 치제하게 하다 | 89

5. 단종실록

1)명하여 김점의 고신을 도로 주게 하다 | 90
2)경기도 통진현의 여자가 벼락을 맞아 죽다 | 90

6. 세조실록

1)경기 통진현 사람 봉산의 아내가 벼락에 맞아 죽으니 해괴제를 지내다 | 91
2)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여 정종에게 매월 식량을 공급하도록 하다 | 91
3)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시킬 것을 청하다 | 92
4)사헌부에서 아전을 다스리지 못한 통진현감 송경의 파직을 청하다 | 93
5)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 93
6)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 · 좌익 · 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津)을 설치하다 | 94
7)까닭없이 아내를 버린 송현정 이견신을 외방에 유배시키다 | 94
8)병조에서 전국의 역의 정비에 대한 일로 아뢰니 따르다 | 95
9)경기 관찰사 이극배가 김포현의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 96
10)처남의 처를 아내로 삼은 최부의 고신을 거두고 평안도 강계부로 사민하다 | 96
11)구주의 올적합 상호군 김포요마 등을 본처도 만호 등으로 삼다 | 97
12)호조가 경기 김포 등의 노적을 강경에 조운하여 베로 바꿀 것을 청하다 | 97
13)호조가 국둔전의 수확이 끝나지 않은 김포 현령을 체임하지 말 것을 청하다 | 97

14)경기 관찰사 심선의 김원효 파출에 관한 상소 | 98
15)사헌부에서 자격없는 관리를 서용한 이조 관리를 국문할 것을 건의하다 | 98
16)호조에서 제방을 수축하지 않은 수령을 처벌 할 것을 아뢰다 | 99
17)선전관 정훈을 추국하게 하다 | 100
18)병조에서 군기를 상정하여 아뢰다 | 101
19)중 성륵이 자신의 손을 자른 중 극호를 잡아오니 국문하게 하다 | 101
20)부평 · 통진 등지의 수령에게 범 잡을 때의 몰이꾼을 가려 뽑이게 하다 | 102
21)11일에 홍복산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며 명나라 사신을 위로하려 하다 | 102

7. 성종실록

1)호조에서 신하들의 진언 가운데에 행할 만한 것을 가려 아뢰다 | 103
2)호조에서 영릉 · 광릉의 경역 안에 있는 밭을 보상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 103
3)예조에서 궁핍하여 시집을 못가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청하다 | 104
4)사헌부 대사헌 서거정 등이 금주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 104
5)경기 관찰사 김양경이 도내의 흉재 현황을 보고하다 | 105
6)동지사 이승소가 흉년을 이유로 개성부의 능을 참배하는 것을 정지할 것을 청하다 | 106
7)김사원 등 4인은 체임할 때 준직하고 홍긍 등 9인은 높은 등급으로 옮기게 하다 | 107
8)정신석을 승정원으로 불러 와서 김용보의 죄상에 대해 묻도록 하다 | 108
9)심응이 부름을 받고 와서 김용보의 죄상을 아뢰다 | 109
10)김포현령 서한이 하직하니 인견하다 | 109
11)우승지 김승경이 통진 학생 허침이 말채찍으로 형의 종의 아내를 치다가 어린 아이를 죽인 죄를 논하다 | 110
12)지평 안선과 허침을 통진현에 보내 형옥과 불법한 일을 살피게 하다 | 110
13)시간 이숙문 등이 상벌의 공정하여야 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 111

14)사간원에서 율린 양성지와 신정에 대한 탄핵안을 정승들과 의논키로 하다 | 112
15)햇볕을 준비하지 않은 교동 서원 조뽁공과 통진 호장을 처벌하다 | 113
16)장령 이인석이 평안도 관찰사 김교를 다시 절도사로 서용할 것 등을 아뢰다 | 114
17)의금부에서 역적에 연좌된 사람을 안치 · 정속시킨 숫자를 기록하여 아뢰다 | 115
18)경기 진휼사 강희맹이 추종자가 많지 않았음을 아뢰자 송영을 추국토록 명하다 | 116
19)진제미를 싣고 가다 죽은 자들의 수를 조사하도록 교동현감 조복명에게 하교하다 | 117
20)경기 진휼사 권감이 돌아와 강화 · 김포 등의 고을에 볍씨가 부족함을 아뢰다 | 117
21)경기관찰사 이길보가 김포 · 교동 · 강화 · 통진의 빈궁한 자를 구휼하라고 아뢰다 | 118
22)도승지 노공필 등이 죄수 조검산 · 조순손 · 김선동의 형벌을 아뢰다 | 118
23)홍문관 전한 김흔이 어버이를 뵈러 가니 술을 하사하다 | 119
24)승정원에 수리도감 관원들에게 내리는 상사(賞賜)의 어서를 내리다 | 120
25)풍산군 심응이 한성부의 관리가 체포한 종 기질동을 빼앗은 일을 국문토록 명하다 | 121
26)잠저에 있을 때 스승인 한성부 판관 조윤이 죽으니 불건을 내리게 하다 | 122
27)형조에서 죄수 김장명 등을 사형에 처하도록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 122
28)경기 통진의 양인 만동이 이성동을 국법을 멸시했다고 고하다 | 123
29)의금부에서 주인을 무고한 노만동을 참부대시에 처할 것을 아뢰다 | 123
30)전한 성세명이 경기도 광주 · 남양 · 과천 등지의 수령의 불법을 아뢰다 | 124
31)제용감의 대청에, 통진현 안산의 백성이 벼락을 맞다 | 124
32)통진현감 최급이 노공필에게 아부하는 일 | 125
33)농사가 잘되지 못한 경기지방에 전교하다 | 126

8. 연산군일기

1)정언 조원기가 신계원의 김포 현령 제수 등이 불가함을 아뢰다 | 127
2)구치곤이 불교를 숭봉하는 일, 신계원의 제수 등에 대해 아뢰다 | 128
3)사헌부가 신계원 · 윤구 등의 서용이 불가함을 상차하다 | 129
4)대사헌 구치곤 등이 관직 제수를 신중히 할 것, 경연을 열 것 등을 아뢰다 | 130
5)대사헌 구치곤 · 사간 최부가 김효강 · 신계원의 일로 아뢰다 | 132
6)한환에 대한 율 적용을 달리하라고 명하다 | 133
7)대간이 김효강 · 한환의 추안 문제로 여러 번 아뢰다 | 134
8)대간이 임사홍 등의 벼슬 높임이 불가함을 서계하다 | 135
9)승정원의 요청으로 강화 · 양천 등지의 위법 사건을 행대 감찰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다 | 136
10)경기 관찰사 김수동이 구휼 대책 등을 아뢰다 | 137
11)서울과 경기 및 충청도에 지진이 일다 | 138
12)서울과 충청도 및 경상도 고을에 지진이 일다 | 139
13)이궁을 지으려고 주민을 몰아내고 금표를 세워, 들어가는 자는 기시에 처하다 | 140
14)내관의 족친인 종성 부사 이지방 등을 파직하게 하다 | 140
15)망원정 이남 1백 리로 금표를 세우고 근처의 도로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다 | 141
16)경기 관찰사 박원종이 김포 등이 금표 안에 들어가 운반 등을 할 수 없다 아뢰다 | 142

9. 중종실록

1)유순 · 박원종 등이 백정 당래 · 미륵의 일을 의논하다 | 144
2)대사간 남을 등이 음가와 박영문에 대한 일 등을 아뢰다 | 145
3)포도대장 전림이 강도 당래 등 23인을 김포에서 잡아와 복명하니 슬픈 내리다 | 146

4)김포현령을 추고해야 할 일로 도사가 겸직하여 다스리게 하라고 전교하다 | 147
5)조강에서 특진관 전립이 전 만호 최수문과 김포의 강도 은닉자를 처벌하자고 하다 | 147
6)정원이 김포 등처의 포도 군졸이 민간에서 작폐하니 정지하자고 아뢰다 | 148
7)심의의 일과 도적을 잡을 방책에 대해 의논하다 | 148
8)박원종의 처 윤씨의 상언을 내리고, 어렵을 금하도록 한 사응원의 관원을 추고하라 하다 | 150
9)부사정 김사귀가 통진현에서 백옥을 채굴하여 올리다 | 150
10)삼공이 사인 김영을 보내어 통진의 옥을 흥년으로 추수 뒤에 채취할 것을 아뢰다 | 151
11)이행이 통진에서 캐는 옥을 급하지 않으면 시기를 미루도록 아뢰다 | 151
12)경기의 김포 · 양천 · 교동에 지진이 있었다 | 151
13)공경 대부가 사치하는 폐단 등에 대한 김포 유학 박순의 상소 | 152
14)경기 김포현에 사는 김기정의 아내인 양녀 수덕에게 정문하다 | 153
15)경성 및 경기의 양주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 153
16)경기 영평 · 통진 등에 잇따라 서리가 내리다 | 153
17)경기 인천 · 남양 등에 지진이 있고, 충청도 대흥현의 민가에서 소가 기형의 새끼를 낳다 | 154
18)전국 각지에 우박이 내리다 | 154
19)경기 관찰사 조욱곤이 벌레의 재해에 대해 치계하다 | 154
20)야대에서 삼사손 등과 진하 · 양화도 나루 이전 등에 대해 의논하다 | 155
21)양화도 나루 이전에 대해 경기 감사에게 묻게 하다 | 155
22)경기 김포 · 충청도 영춘 · 강원도 간성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 156
23)경기 광주 · 고양 · 금천 등지에 충해가 발생하다 | 156
24)경기 장단 · 고양 등지에 황충이 발생하다 | 156
25)경기 김포현에 지진이 있다 | 156
26)경기 김포 · 양천 · 양지 · 양성과 충청도 진천에 우박이 내리다 | 157
27)경기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일대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 157

28)삼공이 재변이 있어 관가와 작헌례 · 시학 등을 가을로 미루어 할 것을 건의하다 | 158
29)복성군 부인의 일 등을 대간이 건의하고 거둥 때 탐학했던 관리를 파직하라고 헌부가 건의하다 | 159
30)윤인범을 추고하라고 대간이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 161
31)경기 금천과 통진에 누리가 생기다 | 162
32)파직한 사람들이 서용이 시급하니 개정하도록 헌부에서 아뢰니 따르다 | 162
33)대사헌 허항이 송사와 관계되어 체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 163
34)경기도 강화 · 교화 · 통진 등의 고을에 충해가 있다 | 164
35)조만령의 집을 헐고 그 터에 못을 파서 미워함의 뜻을 보이게 하다 | 164
36)조만령의 집터에 못을 파지 말것을 헌부가 청하니 담당 아문에서 상고토록 하다 | 165
37)간원이 군자감 판관 최흥제와 김포 현령 최숙의 파직을 아뢰니 윤허하다 | 166
38)팔이 남편과 함께 어미를 죽인 사건이 나자 추고하게 하다 | 166
39)어미를 살해한 사건과 과거의 부정에 대해 논의하다 | 167
40)헌부가 통진 · 원주의 패륜 사건을 아뢰고 읍호 강등 문제를 논의하다 | 167
41)윤은보 · 홍언필 · 윤인경이 통진 · 원주의 패륜 사건을 아뢰다 | 168
42)형조가 통진에서 어미를 죽인 업이의 죄를 대신과 의논할 것을 아뢰다 | 169
43)사헌부가 패륜사건의 마을 읍호를 고치고 수령을 파직하라고 아뢰다 | 170
44)삼공이 읍호 강등의 문제로 의논하니 윤은보의 의견을 따르다 | 171
45)충청 · 경기 관찰사의 계본에 따라 모두 정문하고 복호하라고 예조에 내리다 | 172
46)사헌부가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도 영선하는 역사가 늘어나는 폐단을 아뢰다 | 173

10. 인종실록

1)대간이 성세창을 탄핵하다 | 175

11. 명종실록

1)여역으로 경기 가평 · 김포 · 영평에서 사람이 죽다 | 176
2)황해도 · 평안도 · 함경도 · 강원도 · 경상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비가 오다 | 176
3)청홍도 청주 · 홍주 등에 우박이 내리다 | 176
4)조강에서 특진관 송세형이 군자창의 곡식, 저축, 종묘 종수 등을 말하다 | 177
5)사간원에서 김포의 이생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성균관에 줄것을 청하다 | 178
6)이황이 김포의 속공전을 성균관에 하사한 데 대해 전을 올려 사례하다 | 179
7)서울에 큰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다 | 180
8)경기 고양 · 양천 등지에 벌레가 발생하다 | 180
9)경기 삭녕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 180
10)남부 충의위 권응 등을 정문하다 | 181
11)간원이 전임 감사나 도사의 백성 부역을 금하도록 청하다 | 181
12)삼척부사 등 수령에게 향표리를 내릴 것 등을 명하다 | 182

12. 선조실록

1)경기감사가 산릉에 쓸 돌을 제대로 대지 못한 통진 현감 유희규의 파직을 청하다 | 184
2)경기 감사가 김포와 광주에 검은 안개가 끼었다고 보고하다 | 184
3)민병을 모아 싸운 김포현령 이조에게 당상을 제수하다 | 184
4)이조 · 김명원 · 유영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85
5)비변사가 의병들이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며 각 장수의 절제를 받도록 하자고 청하다 | 185

6)사간원이 강화에 머물면서 적을 토벌하지 않은 최원을 파직하기를 청하다 | 186
7)왜노에게 침탈당한 모와 침범당하지 않는 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 | 187
8)사간원이 황정욱 · 황혁의 일과 민곤서 · 임수형 등의 탄핵을 아뢰다 | 188
9)해주에 문안가는 내관의 행차에 사복시의 말을 지급하고 중도에 말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다 | 189
10)성문기찰의 임무를 소홀히 한 병조의 당상관을 추고하고 색낭청을 파직하도록 헌부가 건의하다 | 190
11)고양 · 김포 · 양천 등에 큰 우박이 내려 벽곡식이 손상되다 | 190
12)헌부에서 이조의 잘못된 인사, 이여온 등 태만한 관리의 추고를 청하다 | 191
13)병을 핑계로 등진에 가 있는 최입에게 복명을 재촉하다 | 192
14)우의정 이덕형이 연소함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 193
15)성균관에서 관학의 양성과 전답에 대해 건의하다 | 195
16)사헌부가 경기감사 유희서, 문천군수는 추고하고 정죄할 것을 아뢰다 | 196
17)사헌부가 윤두수의 일 · 탐학 관리의 체차 · 경차관 파견 중지를 청하다 | 197
18)사간원이 부정한 수령의 출척과 이조 당상 등의 추고를 청하다 | 198
19)사간원이 통진현감 남이성의 파직과 좌우 포도 대장의 추고를 청하다 | 199
20)윤두수의 간궤함과 이덕형의 탐오함을 들어 비판하는 사평 | 200
21)이덕형이 해조의 담당아전 등의 추고를 청하다 | 202
22)헌납 윤길이 황정욱의 사면 문제, 이기수 · 심윤의 비리 등을 논하다 | 204
23)정언 채형이 재상의 부수에 탈이 있는 곳의 수령에 대한 과죄를 건의하다 | 205
24)헌부가 연충수의 일로 승지를 추고하고, 홍운해의 파직을 건의하다 | 206
25)대사간 권희가 호종의 일로 사직을 청하다 | 207
26)경기감사 김수가 김포 · 양천 지역의 땅이 진동한 일을 아뢰다 | 208
27)경기감사 김수가 부평 부사 황치경 등의 선정을 아뢰고 포상을 청하다 | 208
28)헌부가 구성 구속, 이세온의 체차, 심일취의 파직 등을 청하다 | 209
29)유근 · 박홍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210
30)의금부에서 억울한 옥사로서 윤준제 · 이대춘 · 이영춘 · 백수체 · 홍운해 등을 보고하다 | 211

31)경기 암행 어사 심집이 암행 결과를 보고하다 | 212
32)최황의 천장에 관곽 · 석회 · 조묘군을 제급하다 | 213
33)간원에서 함안 군수 전계신 · 용강 현령 이유청 등을 탄핵하다 | 214

13. 선조수정실록

1)김포 현령 우복룡을 지평으로 삼다 | 217
2)조헌이 친문과 인사의 길흉을 헤아렸는데 이는 지극하게 시운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 218

14. 광해군일기

1)장오죄에 관계된 홍문해를 풀어주라고 하다 | 222
2)경기 암행 어사 박사제의 서계에 대하여 전교하다 | 223
3)사헌부가 이진의 상사에 예관의 파견을 막지 못한 색승지를 체차하라고 아뢰다 | 224
4)엄음으로 정박하고 있는 전세선을 엄히 지키게 하다 | 225
5)신궐 도감이 홍수로 떠내려 오는 재목의 습득을 아뢰다 | 226
6)원종대왕 정원군의 졸기 | 227
7)기한내에 전세와 삼수량의 추가 징수분을 바치지 않은 수령 감사의 처벌을 명하다 | 228
8)홍명원 · 홍영 · 기준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228

15. 인조실록

1)간원에서 양남과 양춘천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 230
2)충응사 이서가 룡진 등의 고을에 천총을 둘 것을 건의하다 | 231
3)간원이 김포현령 최경길을 개차하도록 아뢰다 | 231

4)간원이 박공량 · 이시번의 정죄를 청하다 | 232
5)계운궁의 묘소를 김포로 결정하다 | 233
6)김포읍 아래 철거한 백성들을 북호로 정할 것을 명하다 | 234
7)간원에서 상의 건강 걱정과 산릉에 행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차자를 올리다 | 235
8)예조에서 원소(園所)를 수호할 수묘군의 수를 아뢰다 | 237
9)김포 산소의 묘호를 정할 것을 명하다 | 238
10)대제학 김류가 쓴 계운궁의 묘지문 | 241
11)김포원소의 광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도록 명하다 | 245
12)간원에서 심명세의 상소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추고를 건의하다 | 245
13)서울에서 김포가는 길을 넓히는 사업으로 백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다 | 246
14)김포 육경원에 행행하여 친제하다 | 246
15)예장도감에서 흥경원이장시 성내에서 대여가 머물 곳을 정하도록 아뢰다 | 247
16)비국이 정충신을 등용하고 경기도의 속오군을 강도에서 쓸 것을 청하다 | 247
17)양천에서 출발하여 김포를 경유하면서 육경원을 참배하고 통진에 행차하다 | 248
18)쌀의 운송 · 강도의 방비 등에 대한 논의 | 249
19)이성신을 제용감 참봉으로 삼다 | 250
20)강화에서 과거를 실시하여 본부의 유생들을 위로하다 | 250
21)강화유생 한담이 외향에서 응시한 사람 중 허색민을 지적한 것에 대해 상소하다 | 251
22)대가가 행궁을 출발하여 갑곶을 건너 통진에 머무르다 | 251
23)대가가 통진을 출발하여 김포에 이르니 유학 한숙일이 치료를 잊지 말도록 아뢰다 | 251
24)김포를 출발하여 육경원을 참배하여 현령 최규에게 상주고 양천에 머무르다 | 252
25)흥경원 천장 때 공이 있던 신하들을 시상하다 | 253
26)사헌부에서 산릉역 관계자를 시상할 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 254

27)통진 · 김포 · 부평 · 인천 · 풍덕의 군병을 강화에 예속시키되 조련은 각 고을의 장관이 시키게 하다 | 254
28)사헌부가 다시 죽은 한준겸에게 주는 녹봉에 대해 아뢰다 | 255
29)이조가 역적 임경사가 살던 고을에 대한 강등 문제를 아뢰다 | 255
30)서전을 강하고 나서 심열에게 진휼의 결과를 묻다 | 256
31)《서전》을 강한 후 참찬관 이경용이 교동에 가서 수군을 점검한 일에 대해 아뢰다 | 256
32)공조 판서 심열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 257
33)호조참판 이경직이 교동에 돌아와, 통진에서 중미를 상환하는 폐단에 대해 역설하다 | 257
34)강화부사 이시백이 승천진에 창고를 설치해 곡물 운송을 편리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 258
35)경기도의 강화 · 교동 · 통진 등 10읍에 우박이 내리다 | 258
36)경릉과 창릉이 있는 김포를 군으로 승격시키다 | 258
37)헌부가 의식을 잘못한 국장 도감 관원과 술마신 배종 신하를 탄핵하다 | 259
38)강화도 유수 이시백이 희장관에게 욕을 먹은 것을 이유로 삭탈 관직을 청하다 | 260
39)김포현 사람이 2남 1녀를 낳자 쌀을 하사하다 | 260
40)경기의 강화부와 통진현에 지진이 발생하다 | 260
41)정원이 이진행의 말로 신주에 비복이 올라탄 일이 없음을 아뢰다 | 261
42)예조가 장릉의 지방 목패에 대해 계하다 | 262
43)가뭄에 대해 조처하도록 우의정 강석기가 아뢰다 | 262
44)비국이 강도의 쌀 3백 석으로 부평 등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것을 청하다 | 263
45)경기의 부평 · 안산에 해일이, 양주 · 이천 일대에 우박이 내리다 | 263
46)홍처윤 · 이형익 · 이석룡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263
47)경기의 김포 · 장단 등에 우박이, 부평부에 벼락이 쳐서 김류라는 사람이 죽다 | 264
48)경기의 가평 등 고을에 큰비로 제방이 무너지고 곡식이 손상되다 | 264

16. 효종실록

1)비변사가 통진현 송도 어장의 본현 귀속, 가평 시장의 혁파를 아뢰다 | 265
2)경기감사 이시매 · 김포군수 심관 등에게 율건을 내려주고 치하하다 | 265

17. 현종실록

1)집의 목검선과 장령 윤비경이 통진에 신설한 해량을 궁노가 불법으로 차지하고 침탈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많다고 아뢰다 | 266
2)호조가 통진의 해량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아뢰니 통진 현감 이숙을 파출하라고 명하다 | 267
3)국가의 미곡 발매 등에 대해 의논하다 | 268
4)김포의 유학 이익현 등이 기아에 관한 일로 상소하여 죽음을 구제해 줄 것을 청하다 | 270
5)집의 오두인 등이 서원현감 정기룡과 통진현감 이익을 논핵하다 | 270
6)문묘 종사, 선신 포상, 언론, 경연 재개 등에 관한 진사 이영원의 상소 | 271
7)경기 균전사의 보고에 따라 양전에 불성실한 수령들을 처벌하다 | 272
8)경기우도 암행 어사 여성제가 복명하여 선정을 한 유호연 등을 아뢰다 | 273
9)경기 감사 김수흥이 장계하여 토포사를 총괄 지휘케 할 것을 아뢰다 | 273
10)강화의 세 진을 옮기고 육군을 나누어 주다 | 274
11)통진현의 사비 사옥이 세 쌍둥이 땀을 낳다 | 274
12)안흥의 창고 설치, 서충립의 역, 구문치의 자급 개정 등을 의논하다 | 275
13)김포유생 이만춘이 조현의 서원 액호를 청하다 | 275
14)송준길이 길재 · 김종직 · 제갈 무후의 사우에 사액을 청하다 | 276
15)경기 통진에 지진이 일어나다 | 276
16)진휼 잘한 수령을 상주다 | 276
17)대사간 이숙 등이 김포의 살인 사건에 대해 아뢰다 | 277

18. 현종개수실록

1)집의 목겸선 등이 통진에 신설한 해량의 일로 아뢰다 | 278
2)호조에서 통진해량에 대해 조사한 일을 가지고 복계하다 | 279
3)김포 유학 이익현 등이 기아의 상황을 상소하여 진술하다 | 279
4)정원에 이익현의 상소에 답하는 것으로 하교하다 | 280
5)현부가 통진현감 이익을 체차하고 정관을 추고할 것을 아뢰다 | 280
6)사헌부가 전적 권진한을 본도가 형추하도록 청하다 | 281
7)조성보 · 이규령을 외직에 보임하고 비망기를 내려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다 | 282
8)경기에 도적이 일어나 수원 등 방어사나 영장을 겸한 수령에게 잡게 하다 | 283
9)강화의 덕포진 · 철곶진 · 정포진을 옮기고 인근의 육군을 나누어 배치하다 | 283
10)통진현의 사비가 한 배에 세 명의 여아를 낳다 | 283
11)좌참찬 송준길을 인견하여 온양 행차 때 포상할 것 등과 영릉의 봉심에 대하여 듣다 | 284
12)백수증을 정려하다. 민성의 자손을 서용하게 하다 | 285
13)경기 통진현에 23일 지진이 발생하다 | 285
14)총융사 서필원이 경기 지형에 관해 아뢰다 | 286
15)경기감사 오정위가 진휼 잘한 수령을 보고하다 | 286
16)대사간 이숙 등이 법대로 집행하지 않은 감사에 대해 아뢰다 | 287

19. 숙종실록

1)영의정 허적이 강화도에서 돌아와 강화도의 형세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다 | 289

2)병조판서 김석주 등이 강화도를 살피고 돌아와 지도와 서계를 올리다 | 290
3)임금의 친필을 올린 통진의 송시균에게 호피를 주다 | 291
4)의관 이동형을 김포군수로 제수한 명을 거두라는 사간원의 요청을 거절하다 | 291
5)이사명 등의 논죄 · 승직의 신중함 · 3학사 중 윤집 후손의 대우에 관해 논의하다 | 292
6)강화 유수 이선이 강화의 사정에 관해 별단으로 아뢰다 | 293
7)김수항이 비리 어사들의 처벌을 아뢰고, 이숙이 이시빈의 처에 대해 정표할 것을 아뢰다 | 295
8)감시와 초시의 시권 중에 이름을 숨기고 상변한 글 | 296
9)경기관찰사 정재화가 김포 군수 남두북의 개차를 청하나, 따르지 않다 | 297
10)사간원에서 김포 군수 남두북을 논핵하다 | 297
11)강화 유수 이민서가 상소하여 강도의 형편을 논하다 | 298
12)이단하 윤지선 목내선 이규령 최성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298
13)사헌부에서 이인하를 파직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 299
14)군사를 수원 · 장단에 분속시키자는 총융사 김석익의 장계를 처리하다 | 299
15)신하들과 전일 문수산성 곡례에 대해 논하다 | 300
16)경기 각 고을의 대동 수미를 감면하는 비망기를 내리다 | 301
17)좌의정 목내선 등이 청대하여, 능행 때 부교 사용 등의 문제를 아뢰다 | 302
18)김포 장릉에 전알하다 | 302
19)통진 · 문수산 등지에 성을 쌓을 것을 의논하다 | 303
20)문수산성의 배속 · 희빈 장씨 예우 등을 논의하다. 어영 대장 신여철의 파직에 대한 사론 | 304
21)대신과 비변사의 재신들을 인견하다 | 305
22)경기 통진 등지에 큰 우박이 내리다 | 306
23)인천 · 김포 · 부평 등의 고을에서 지진이 있다 | 306
24)서울에 가근이 심해 기한을 정하여 진휼청의 곡식을 발매하도록 하다 | 306
25)지사 이유가 문수산성의 방비에 대해 청하다 | 307
26)종친부에 갑해 · 강경포 등을 소속시켜 세를 거두게 하다 | 307

27)통진의 유학 심상희 등이 고 평사 이목에게 포장하여 관작을 줄 것을 청하다 | 308
28)어사 김흥경과 이명준이 복명하다 | 308
29)강화도의 축성 문제를 여러 대신들과 논의하다 | 309
30)통진부를 통진현으로, 홍주목을 홍양현으로 삼다 | 311
31)신하들을 인견하고 통진을 강화도에 소속시키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 311
32)경기 수군의 일을 명하다 | 312
33)강화도의 형편에 대해 강화 유수 권성이 올린 소장의 내용 | 313
34)군자감 정 김민주와 사과 이상성을 파직할 것을 사간원에서 청하니, 따르지 않다 | 315
35)통진부사 박태도를 파직시키다 | 316

20. 경종실록

1)양사에서 탐학한 김포군수 이서태와 전 병사 이휘 등을 삭거 사판할 것을 청하다 | 318

21. 영조실록

1)민진원의 정사로 심택현 외 14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320
2)성유열 등 5인에게 급제를 내리다 | 320
3)권이진 · 호서 부임을 꺼린 수령 이수신 · 통진부사 이완을 논한 허옥의 상소 | 321
4)김동필이 문수 산성의 방어를 위한 대책을 건의하다 | 322
5)대신 및 여러 신하들과 차사원, 수령들을 불러 대동미를 특별히 감할 것을 분부하다 | 322
6)김포군에 있는 조현의 서원과 윤섬 · 윤계의 묘소 등에 치제할 것을 명하다 | 323
7)김포에서 유생들의 학문을 독려하고, 본군의 향교에 위전을 획급하도록 명하다 | 323

8)민택수가 통진 부사 유동무 등이 뽈나무를 뇌물로 쓴 것 등을 아뢰다 | 324
9)양역의 폐단을 막기 위해 양정 어사를 파견하는 일을 의논하다 | 324
10)황해도 장연부에 11월 23일 천둥이 치고, 경기 등지에 천둥이 치다 | 325
11)태복시 주원의 낭관은 김취로와 인척이므로 다시 조사하자는 이우하의 상소 | 326
12)사간 심성진이 용천부사 정세장 · 통진부사 이진환 등의 개차를 청하다 | 327
13)전 대사성 심성희가 김포 등 여덟 고을의 전결 세금을 면세시켜 줄 것을 청하다 | 328
14)조명건이 기근에 안일했던 윤용 등을 벌주기를 청하다 | 329
15)강화성의 축성과 문수 산성을 관방으로 만드는 일을 논하다 | 330
16)바닷가에서 실능한 김포 · 통진이 북한산에 이전하는 쌀을 봄까지 연기시켜 주다 | 330
17)비국당상이 모여 강화도의 갈록에 있는 문수 산성과 주위의 방비를 논하다 | 331
18)어영 대장 박문수가 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다 | 334
19)통진의 읍치를 문수산성으로 옮기고, 육상궁에 역매된 장연의 민전을 내어주도록 청하다 | 335
20)통진의 전 부사 이은춘에게 말을 내려주다 | 335
21)경기 암행어사 권승이 돌아와 통진 · 교하 · 양성의 수령들을 논죄할 것을 아뢰다 | 336
22)이이장이 김포와 남양에 암행하고 돌아와서 민간의 역질로 사망한 상황을 고하다 | 336
23)김포군 명화적의 난동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군수 윤득중 등을 잡아들이다 | 337
24)김포 군수 심영 · 영평 현령 이시건 등을 체차하다 | 337
25)지평 정석천의 상서에 의해 통진 부사 · 포천 현감 등을 추문토록 하다 | 338
26)삼강 어사 남태저 · 홍양한이 복명에 따라 폐단을 조치토록 하다 | 339
27)김포군수 김근행이 권학에 힘쓰자 《소학》 1부를 내리다 | 340
28)경기 암행 어사 김응순의 복명에 의해 수령들의 치적에 따라 상벌을 내리다 | 340

29)경기 통진의 백성이 물에 빠져 죽은 일을 강화 유수가 장문하다 | 340
30)교등독운어사 이석재가 통진 · 김포에 환곡이 부족함을 진달하니 묘당에 명하여 구획하게 하다 | 341
31)양남에서 올라온 세선이 취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을 조사하게 하다 | 341
32)진전의 재실에서 재거하다. 윤승렬을 김포로 귀양보내다 | 341
33)영의정 홍봉한이 통진읍의 신성을 옮기는 것 등의 사항을 아뢰다 | 342
34)수령들에게 조세에 대해 엄히 신칙하도록 하교하다 | 343
35)모화관에 행행하여 금군 · 훈국 등에게 편곤을 시예하다 | 344
36)도승지 김응순이 함경 감사 · 강원 감사 등의 추고를 청하다 | 345
37)건명문에 나아가 강백능을 잡아들이다 | 345
38)경기어사 임득호가 들어와서, 진휼의 일로 수령들을 포폄하다 | 346

22. 정조실록

1)통어영을 강화부에 합치는 것에 관한 심염조의 건의와 대신들의 논의, 구선복의 별단 | 348
2)경기의 진휼을 마치다 | 350
3)승지 이병모를 통진부사로 보직하다 | 350
4)경기 · 영남 · 호남 · 호서 · 관동 · 관북 여섯 도의 진휼을 마치다 | 351
5)경기 관찰사 김사목이 교동 · 부평 · 인천 등의 해일 피해에 대해 보고하다 | 352
6)형조가 신문고를 친 사람의 내용을 보고하다 | 353
7)승지 이경오를 통진 부사에 보임시키다 | 353
8)경기지방 고을중 재해를 입은 곳의 환곡과 신포를 탕감하도록 명하다 | 354
9)영남 후조창의 배 4척이 통진에서 침몰하니, 관련된 관리들을 문책하다 | 355
10)경기도사 · 중군 · 경력 · 통진부사 · 김포군수를 모두 잡아오도록 명하다 | 355
11)병조판서 이명식이경재 · 시종 · 백관과함께함문밖에나아와면대를청하다 | 355

12)전 강화유수 이홍재, 통진부사 김이용 등을 석방하다 | 356
13)경기 각읍의 암행어사와 적간 사관에게 별도로 내린 유시. 여러 어사와 사관의 결과 보고 | 357
14)을묘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희방을 맞은 이육에게 상을 주라 명하다 | 358
15)경기에서의 진휼을 끝마치다 | 359
16)제도의 고을 수령들을 자주 체차시키는 폐단과 관련하여 품처토록 명하다 | 359
17)강도 유생들의 시권을 심사하여 뽑힌 자들을 직부 전시토록 하다 | 360
18)강화유수 김이익이 고한 궁궐의 가마의 왕래 일로 관원을 체직 · 파직하다 | 360
19)어가가 지날 도로의 보수를 백성에게 맡기지 말고 삯군을 쓰게 하다 | 361
20)경진년 온천에 행차할 때 배종했던 이들에게 추증 또는 시상하다 | 361
21)부른 명에 따르지 않은 홍대협 · 최현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362
22)15일에 장릉을 참배할 때 진무사가 나가 주둔하게 하다 | 363
23)장릉을 배알하고 김포행궁에 가면서 김수동 등의 묘에 치제하다 | 365
24)유배지를 이탈한 인의 일을 논의하고, 조헌 · 윤우신 등을 치제하게 하다 | 369
25)김포군수와 과천 현감을 불러 고을의 폐단을 묻고, 화성으로 출발하다 | 371
26)김포 ·안산 등의 구환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제술 등의 시험을 지시하다 | 373
27)이재학의 건의에 따라 양천의 백성들도 환곡의 모곡을 감면받게 하다 | 374
28)경기관찰사 서정수가 노복들의 약탈 행위에 대한 장계를 올리다 | 375

23. 순조실록

1)경기 · 해서에서 진휼을 끝마치다 | 378
2)효자 이복운 등에게 증직하고 급복하다 | 378
3)전국의 효자 · 충신 등에게 정려 등을 내리다 | 379
4)경기감사 김렴이 10여 명을 살해하고 2만여 냥을 턴 사건을 보고하다 | 380

24. 헌종실록

1)우의정 조인영이 소장의 서계와 감부하지 못한 수령의 문제를 아뢰다 | 384

25. 철종실록

1)서계하여 전 양지현감 최집 등을 탄핵한 경기 암행어사 유안을 불러 보다 | 386
2)부평 · 김포 등의 고을에 휼전을 내리다 | 386

26. 고종실록

1)훈련도감 중군 이용희가 이양선이 아직 석곡에 정박하고 있다고 하다 | 387
2)경기 감사와 통진부사, 덕포첨사가 팔미도에 정박한 이양선의 이동을 보고하다 | 388
3)경기 감사 유치선이 이양선 1척이 응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보고하다 | 389
4)강 연안의 고을들에 적의 상황을 순찰하도록 하다 | 389
5)강화도에 침입한 적의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부사 이공렴을 문책하다 | 390
6)선봉 중군 이용희가 서양 외적의 정황을 보고하다 | 391
7)선봉 이용희가 양이들이 문수산성에 들어갔다가 철수하여 돌아갔다고 보고하다 | 392
8)순무영에서 선봉 중군 이용희가 치보를 올리다 | 392
9)사헌부에서 이인기와 이용희를 사형에 처하도록 아뢰다 | 393
10)선봉 중군 이용희가 이양선의 동향을 보고하다 | 394
11)순무영에서 갑곶진에 정박하고 있던 이양선이 부평 일대로 향해 갔다고 보고하다 | 394
12)양이가 침입하였을 때 문묘의 신위를 옮겨 모신 이동학에게 가자하라고 명하다 | 395

13)김포, 양천, 고양, 시흥의 군포 가운데 3분의 1을 탕감해 주다 | 395
14)호조에서 새로 주조한 돈을 내려서 진해와 성첩과 무기를 수리하도록 하다 | 396
15)문수산성이 무너져 보수하도록 하다 | 396
16)경기 암행어사 박제관을 소견하다 | 397
17)부평, 통진, 풍덕의 포수에게 도시를 쳐서 1명씩 뽑아 직부전시하도록 명하다 | 397
18)경기 암행어사의 서계에 따라 지방관을 죄주거나 표창하다 | 398
19)통진부사 백낙선이 군사 기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정배하도록 하다 | 398
20)러시아에 도망가 있는 백성들을 돌려오는 문제로 북경에 공문을 보내다 | 399
21)선혜청 창고의 쌀을 획하하여 통진 등 8개 고을의 흉년을 구제하도록 하다 | 400
22)경기 연해의 각군에 포군을 두다 | 400
23)전국의 서원 중에서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폐하다 | 401
24)이양선이 포를 쏘면서 손돌목을 지나가다 | 402
25)이양선을 경계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게 하다 | 403
26)이양선이 포를 쏘아 포군 오삼록이 졸하다 | 403
27)서양인들과 광성진에서 교전하였으나 아군이 이기지 못하고 광성진을 잃다 | 404
28)표창에서 빠진 군사들에게 훈전을 베풀다 | 405
29)진무영과 연해 각 진의 계업을 해제하다 | 405
30)강화도에 군사를 증원하고 보루를 튼튼히 할 것을 명하다 | 406
31)싸움에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의 공로를 평가하여 표창하게 하다 | 407
32)박영보에게 기근 구제사업에 힘쓸 것을 명하다 | 410
33)해미 현감 강윤과 통진 부사 홍재신을 바꾸어 임명하다 | 411
34)익산군, 강진현, 김포현 등에 포군을 두다 | 411
35)강화 군영의 군사 대오의 규율을 잘 잡은 정기원, 김선필의 후손을 등용하게 하다 | 412

36)용진 아래의 세 진에 포대를 새로 세우는 일을 의논하다 | 413
37)새로 만든 대포, 중포, 소포를 진무영과 영종 등에 나누어 보내다 | 414
38)통진 경계의 안행동 등에 포대를 설치하게 하다 | 414
39)이양선이 연해에 들어왔으므로 역관을 파견하여 사유를 따지게 하다 | 415
40)접견 대관이 일본 군함에 가서 정박 사유를 물은 것에 대해 보고하다 | 416
41)흥우창을 일본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타다의 반접사에 임명하다 | 417
42)통상관계 문서를 만들어 동래의 왜관에 보내도록 하다 | 417
43)경기 암행어사의 서계와 관련하여 파주 전 목사 등을 표창하다 | 418
44)인천부의 급료를 주는 비용은 부근 고을에서 포량미와 잡비까지 합쳐서 이획하여 충당할 것을 윤허하다 | 419
45)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를 접대와 관련된 일에 대해 윤허하다 | 420
46)김홍집을 김포군에 찬배하다 | 420
47)통진의 선혜청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김홍집이 보고하다 | 421
48)창녕현의 조운선이 침몰한 일에 관하여 선혜청에서 보고하다 | 421
49)창녕현의 선혜청 미태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의정부에서 아뢰다 | 422
50)경기 감사 김명진이 각 능에 함부로 나무를 찍는 등의 변고에 대해 해당 수신을 신문하여 처결하도록 하다 | 423
51)의정부에서 통진부의 포량미를 강화진 심영에 바치게 할 것을 아뢰다 | 424
52)통진부, 양근군, 풍덕부에 5년간 조세를 면제하도록 명하다 | 425
53)내무부에서 통진, 풍덕, 영종, 장봉의 둔전을 해연 총제영에 이속시킬 것을 아뢰다 | 426
54)의정부에서 총제영에 소속된 인천, 부평, 김포, 양성에 주관하는 군영의 필요성을 아뢰다 | 426
55)호조에서 재난을 당한 성균관 토지인 김포의 전답의 조세에 대해 유예하도록 아뢰다 | 427
56)의금부에서 민영달을 김포군에 투비한다고 보고하다 | 427
57)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428

58)의화군 이강을 특파대사에 임명하여 답례 방문을 명하다 | 430
59)안산에 불법으로 무덤을 쓴 윤상희를 방면하도록 하다 | 431
60)조병식을 통진군으로 3년 동안 귀양보내다 | 431
61)조병식을 특별히 놓아줄 것을 명하다 | 432
62)백성을 구제한 심능원과 이승조의 공로에 대한 표창을 명하다 | 432

27. 순종실록

1)서남쪽 지방을 순찰할 때의 관찰사, 군수들을 표창하다 | 435

28. 순종실록 부록

1)이왕직의 차관 고쿠분 쇼타로과 곤도 시로스케에게 수원, 개성 등지에 나가 목장 및 삼림 상황을 시찰하고 오라고 하다 | 436
2)고 이희 공의 면례에 돈을 하사하다 | 436

부록-김포실록 용어사전

1. 「김포실록」이 모아지기까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즉 태조(太祖)로부터 철종(哲宗)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실록에는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의 주도로 편찬된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實錄)》과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은 포함시키지 않으나 〈김포실록〉에는 포함하여 김포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실록 편찬 규례에 맞게 편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왜곡이 심하여 실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성격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서 김포지역 관련기사를 찾아내려면 태조(1392년)로부터 철종(1863)까지 472년간의 기간동안 사용된 명칭을 기준으로 해야하지만 일제가 기술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까지 포함하였으므로 년대 시기는 순종이 사망한 1926년까지이다.

조선초 김포지역에는 김포, 통진, 양천의 세 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김포현은 인조10년(1632년) 김포군으로, 통진현은 숙종 20년(1694년) 통진부로, 고종 32년(1895년)에 통진부는 통진군, 양천현은 양천군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인 1914년 김포, 통진, 양천 3개 군을 병합 김포군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으며 1963년에는 김포군의 양동, 양서면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김포지역은 이러한 역사적인 행정구역 변천과정에 의해 김포, 통진, 양천 세가지의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서 김포지역과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김포', '통진', '양천' 세 지역명을 사용해야하나 '양천'은 검색명칭에서 제외했다.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통진과 김포를 검색단어로 사용했다. .

편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김포'와 관련되는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 '통진', 과 '김포' 두 지역명을 통해 검색한 결과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서 '통진' 지역명으로는 411건, '김포' 지역명으로는 335건, 총 746건을 검색하였다.

기사 총 746건의 기사를 통합하여 기사제목 하나 하나를 대조하고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복된 기사와 김포와 관련 없는 기사를 제외한 총 623건을 확정했다.

총623건의 기사를 〈김포실록〉으로 담아내고자 했지만 지면사정으로 496건의 기사만 본문기사로 선택했다. 추후 기회가 마련되면 나머지 분량도 엮어야 할 것이다.

본문기사 496건 이외의 나머지 127건은 찾아볼 수 있도록 본문기사 후반부에 〈참고기사〉 형식으로 '기사제목'과 '출처'을 밝혔다. 또한 선택한 본문기사 중에서도 김포지역과 관련 없는 내용은 〈본문종략〉으로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한 김포관련 왕별 기사현황은 오른쪽 표와 같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한 김포관련 기사현황〉

실 록	검색기사	본문기사	참고기사
태조실록	3	2	1
태종실록	18	15	3
세종실록	54	45	9
문종실록	4	3	1
단종실록	2	2	0
세조실록	21	21	0
성종실록	36	33	3
연산군일기	20	16	4
중종실록	52	46	6
인종실록	1	1	0
명종실록	17	12	5
선조실록	45	33	12
선조수정실록	5	2	3
광해군일기	12	8	4
인조실록	52	48	4
효종실록	2	2	0
현종실록	17	17	0
현종개수실록	24	16	8
숙종실록	44	35	9
경종실록	1	1	0
영조실록	51	38	13
정조실록	39	28	11
순조실록	16	4	12
헌종실록	2	1	1
철종실록	2	2	0
고종실록	80	62	18
순종실록	1	1	0
순종실록 부록	2	2	0
소계	623	496	127

(검색어 : 김포 · 통진)

2. 김포실록 용어사전

국사편찬위원회가 인터넷으로 조선왕조실록 〈국역본〉과 〈한문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포실록〉을 기획할 때 실록 원문과 국역본을 함께 게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대한 분량과 편집지면 제약으로 불가피 원문게재를 포기해야 했다.

또한 〈김포실록〉은 국역본을 통해 김포관련 기사를 찾아낼 수 있

었지만 국역본이 역사학자나 한문실력이 있지 않은 사람은 내용이해가 쉽지 않다. 따라서 〈김포실록〉을 엮어내는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속에서 김포관련 기사를 묶어내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기사내용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읽고 이해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기때문이다.

편자는 이러한 방향에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본문의 국한문 단어와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내 김포실록 후반부에 〈김포실록 용어사전〉 이름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편자의 능력부족으로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 일러두기

- 〈김포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서비스'의 '국역본'을 사용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서 김포실록을 검색한 명칭기준은 현 김포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검색단어로 '김포', '통진' 지역명을 선택했다.

- 〈김포실록〉에 '실록편찬 과정(해제)' 설명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소개〉란의 '왕별해제' 내용을 요약 인용하였다.

- 〈김포실록〉에 게재된 본문기사 중 '김포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상 일부 〈본문중략〉으로 생략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은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되어 있어 한문단어 및 용어를 김포실록 후반부에 〈김포실록 용어사전〉 형식으로 설명했다. 이를위해 김포군지명유래집(김포문화원/1995), 동아백년옥편(두산동아/2005), 인터넷 검색포탈 '네이버', '다음' 사전을 사용했다.

실록편찬의 유래와 체제

가. 개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즉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현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실록에는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의 주도로 편찬된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實錄)》과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실록 편찬 규례에 맞게 편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왜곡이 심하여 실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성격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실록》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나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와 같이 '일기'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체제나 성격은 다른 실록들과 똑같다. 대부분 왕대마다 1종의 실록을 편찬하였지만, 《선조실록》, 《현종실록》, 《경종실록》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여 후에 수정(修正) 혹은 개수(改修) 실록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 《광해군일기》는 인쇄되지 못한 정초본(正草本: 鼎足山本)과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이 함께 전하는데, 중초본에는 최종적으로 산삭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대부분 목활자로 인쇄한 간본(刊本)으로 되어 있지만, 정족산본(鼎足山本)의 초기 실록 및 두 본의 《광해군일기》는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현재 남한에는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 1,707권, 1,187책과 오대산본 27책, 산엽본 등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태백산본 실록 1,707권, 848책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훈민정음》 2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나. 실록 편찬의 유래

실록(實錄)은 황제나 국왕과 같은 제왕이 조정에서 일어나거나 보고되는 일들을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역사서로서, 일종의 연대기(年代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초기(연대미상)부터 사관(史館: 후에 예문춘추관으로 개칭)을 설치하고 실록을 편찬하였다. 태조~목종의 7대에 걸친 실록이 차례로 편찬되었으나, 1011년(현종 2) 거란족의 침략으로 궁궐 · 사관과 함께 소실되었다.

현종 13년(1022)에 황주량(黃周亮) · 최충(崔沖) · 윤징고(尹徵古) 등에게 《칠대실록(七代實錄)》을 복원하도록 명하여 1034년(덕종 3)에 완성하였다. 이를 이어 후대의 왕들도 실록을 편찬하였고, 조선 왕조도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여, 태조 7년(1398)에 공민왕 이후 고려말기 왕들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모두 소실되고 전하지 않는다. 오른쪽표는 역대 국왕들의 실록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다. 실록의 체제와 기술내용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실록》이래 대체로 준행되어 온 일정한 편찬의 체제와 격식이 있다. 이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01 실록의 권별 편성 체제는 대개 1년치 기사를 한 권으로 편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개월, 2개월 혹은 1개월 단위로 권차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성종실록》은 기사의 다과를 불문하고 1개월 치를 1권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권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다.

02 대체로 실록의 첫머리에는 인물 정보를 기록하였다.
당해 국왕의 성명, 자호(字號), 부모와 출생 연월일 및 성장과 교육 과정, 세자로의 책봉, (입후된 왕의 경우)친생부모와 입후의 과정 등 인물 정보를 비교적 간략히 기록하였다.

왕대	표 제	권 수	책 수	편 찬 연 도	원 제 / 비 고
1	태조실록	15	3	1413(태종13)	太祖康獻大王實錄
2	공정왕실록	6	1	1426(세종8)	恭靖王實錄
3	태종실록	36	16	1431(세종13)	太宗恭定大王實錄
4	세종장헌대왕실록	163	67	1454(단종2)	世宗莊憲大王實錄 *志 36책 포함
5	문종대왕실록	13	6	1455(세조1)	文宗揚仁大王實錄(제11권 소실)
6	단종대왕실록	14	6	1469(예종1)	魯山君日記 *附錄 있음
7	세조혜장대왕실록	49	18	1471(성종2)	世祖惠莊大王實錄 *志(樂詳) 2책 포함
8	예종양도대왕실록	8	3	1472(성종3)	睿宗襄悼大王實錄
9	성종대왕실록	297	47	1499(연산군5)	成宗康靖大王實錄
10	연산군일기	63	17	1509(중종4)	燕山君日記
11	중종대왕실록	105	53	1550(명종5)	中宗恭僖…誠孝大王實錄
12	인종대왕실록	2	2	1550(명종5)	仁宗榮靖…欽孝大王實錄
13	명종대왕실록	34	21	1571(선조4)	明宗大王實錄
14	선조소경대왕실록	221	116	1616(광해군8)	宣宗昭敬大王實錄
–	선조소경대왕수정실록	42	8	1657(효종8)	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
15	광해군일기(중초본)	187	64	1633(인조11)	光海君日記(태백산본)
–	광해군일기(정초본)	187	40	1653(효종4)	光海君日記(정족산본)
16	인조대왕실록	50	50	1653(효종4)	仁祖大王實錄
17	효종대왕실록	21	22	1661(현종2)	孝宗大王實錄
18	현종대왕실록	22	23	1677(숙종3)	顯宗…彰孝大王實錄
–	현종대왕개수실록	28	29	1683(숙종9)	顯宗…彰孝大王改修實錄
19	숙종대왕실록	65	73	1728(영조4)	肅宗…[illegible] * [illegible]
20	경종대왕실록	15	7	1732(영조8)	景宗…宣孝大王實錄
–	경종대왕개수실록	5	3	1781(정조5)	景宗…宣孝大王改修實錄
21	영종대왕실록	127	83	1781(정조5)	英宗…顯孝大王實錄
22	정종대왕실록	54	56	1805(순조5)	正宗…莊孝大王實錄
23	순조대왕실록	34	36	1838(헌종4)	純宗…成孝大王實錄
24	헌종대왕실록	16	9	1851(철종2)	憲宗…哲孝大王實錄
25	철종대왕실록	15	9	1865(고종2)	哲宗…英孝大王實錄
	합계	1894	888		태백산본 실록 전체는 총 1,707권 848책
26	고종실록	52	52		高宗…太皇帝實錄
27	순종실록	22	8		純宗…孝皇帝實錄
	합계	74	60		태백산본 실록 전체는 총 1,707권 848책

* '…'는 생략 표시임. 《영종대왕실록》의 정식 명칭은 《영종지행순덕영모의열정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 기림요명순철건관굉명인은선무희경현효대왕실록(英宗至行純德英謨毅靖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開運明條基永真昭武熙敬顯孝大王實錄)이다.

03 실록 본문의 편찬체제는 기사와 사론(史論)을 연월일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서술하는 편년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록의 이러한 형태는 전형적인 연대기(年代記) 자료와 같이 보이지만, 단순한 일기나 일지 류의 사실 기록이 아니라 기록자 혹자 편찬자들의 비판적 안목과 사관이 많이 가미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편년체 기사와 별도로 지(志)를 붙인 것은 《세종실록》과 《세조실록》에만 있고, 《단종실록》에는 위호(位號) 복위 과정과 관련된 문헌을 부록으로 붙이기도 하였다.

04 기술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매 권마다 첫줄 상단에 "00대왕실록 권지00"로 권수를 표기하고, 다음줄부터 연월일을 적고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연월일의 표기는 왕의 연도(年度), 계절, 달, 날짜(간지)의 차례로 쓴다. 왕의 연도는 대체로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에 따라 당해 왕의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쓰지만, 세조(世祖)나 중종(中宗) 인조(仁祖)와 같이 전왕의 정통성을 부인할 경우에는 즉위년부터 바로 원년으로 쓴다. 왕의 연도 표기 아래에는 중국 황제의 연호를 세주로 표시하였다. 초기의 실록에는 "春正月" "夏四月"과 같이 계절을 기록하였지만, 후기에는 대체로 생략하였다. 날짜가 바뀌거나 기사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표를 넣어 문단을 분리하였다.

05 본문은 큰 글씨로 빈틈없이 쓰지만, 왕이나 선왕의 어휘(御諱)나 그들의 행위를 뜻하는 용어 앞에는 한자를 띄어서 쓴다.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주석 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세주(細註)를 붙였다. 대체로 "史臣曰"로 시작되는 사관들의 논평 즉 사론(史論)은 문단 전체를 상단으로부터 한 자씩 내려서 썼다. 논평을 세주에 기록한 경우도 많다.

06 당해 왕의 홍서(薨逝)로 실록이 끝난 후에는, 부록을 기록하였다.
그 부록으로 그 왕의 행록(行錄) · 행장(行狀) · 시장(諡狀) · 애책문(哀册文) · 능지문(陵誌文) 등의 전기류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실록에 수록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국왕과 신하들의 인물 정보, 외교·군사 관계, 국정의 논의 과정, 의례(儀禮)의 진행, 천문관측 자료, 천재지변 기록, 법령과 전례 자료, 호구와 부세(賦稅)·요역의 통계자료, 지방정보와 민간 동향, 계문(啓聞)·차자(箚子)·상소(上疏)와 비답(批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록의 찬수 때마다 일정한 범례를 만들어 기사의 취사선택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는 하지만, 국정의 운영이나 사회의 동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실록에 수록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초기의 실록에는 유교적 규범의 관점에서 수록하기 곤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실록의 기사가 정치적 내용에 치우쳐 다양성을 잃게 되고 기록이 빈약하게 되었다.

실록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는가의 원칙은 찬수범례(纂修凡例)로 정해진다.

1. 태조실록

1)경기도를 좌 · 우도로 나누고, 양광도 · 강릉 교주도 · 서해도를 개칭하다

태조 6권, 3년(1394 갑술/명 홍무(洪武) 27년) 6월 23일 신묘 1번째기사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左右道)로 고치자고 청하니, 장단(長湍) · 파평(坡平) · 현주(見州) · 사천(沙川) · 포주(抱州) · 풍양(豊壤) · 서원(瑞原) · 행주(幸州) · 심악(深岳) · 한양(漢陽) · 부원(富原) · 과주(果州) · 철원(鐵原) · 영평(永平) · 승령(僧嶺) · 삭녕(朔寧) · 적성(赤城) · 임강(臨江) · 마전(麻田) · 송림(松林) · 연주(漣州) · 고봉(高峯) · 교하(交河) · 금주(衿州) · 양천(陽川) · 남양(南陽) · 안산(安山) · 인주(仁州) · 토산(兎山) · 안협(安峽)을 좌도에, 개성(開城) · 강음(江陰) · 해풍(海豊) · 배주(白州) · 연안부(延安府) · 평주(平州) · 재령(載寧) · 강화(江華) · 진강(鎭江) · 하음(河陰) · 교동(喬桐) · 서흥(瑞興) · 우봉(牛峯) · 신은(新恩) · 협계(俠溪) · 수안(遂安) · 곡주(谷州) · 부평(富平) · 동성(童城) · 통진(通津) · 수안(守安) · 김포(金浦) · 덕수(德水)를 우도에 소속시키고서,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로, 강릉 교주도(江陵交州道)를 강원도로 고치고, 서해도(西海道)를 풍해도(豊海道)로 고치었다.

【영인본】1책 65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2)통진 감무를 설치하고 동성과 수안을 합속시키다

태조 6권, 3년(1394 갑술/명 홍무(洪武) 27년) 11월 12일 무신 1번째기사

통진감무(通津監務)를 설치하고, 동성(童城)과 수안(守安)을 합속시키었다.

【영인본】1책 71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3)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 남은 · 심효생 등이 숙청되다

태조 14권, 7년(1398 무인/명 홍무(洪武) 31년) 8월 26일 기사 1번째기사

2. 태종실록

1)사신으로 가다가 되돌아 온 총제 박경을 통진으로 귀양보내다

- 태종 3권, 2년(1402 임오/명 건문(建文) 4년) 5월 4일 병술 5번째기사

총제(摠制) 박경(朴經)을 통진(通津)으로 귀양 보내었다. 처음에 측맹헌이 돌아갈 때, 박경이 봉사(奉使)로서 함께 갔었는데 길에서 단목지를 만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묻고 귀양보냈다.

【영인본】1책 234면 【분류】*사법-탄핵(彈劾)/*외교-명(明)

2)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안협감무 김흥조 등 5인을 파면하다

- 태종 6권, 3년(1403 계미/명 영락(永樂) 1년) 10월 30일 갑술 4번째 기사

안협감무(安峽監務) 김흥조(金興祖) · 승령감무(僧嶺監務) 강성안(姜成雁) · 통진감무(通津監務) 이치 · 과천감무(果川監務) 김진(金晉) · 흡곡현령(縣令) 안기(安紀)를 파면시켰다.

흥조(興祖)등이 그 직임(職任)을 감내하지 못하므로 정부(政府)에서 신문(申聞)하여 파면시킨 것이다. 헌사(憲司)에서 상서사(尙瑞司)에 이문(移文)하여 천거한 자를 물었으니, 천거한 자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치는 영(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인본】1책 282면 【분류】*인사-임면(任免)/*인사-선발(選拔)

3)통진 · 포주 · 풍양 · 양주 등지에 황충이 일다

- 태종 10권, 5년(1405 을유/명 영락(永樂) 3년) 8월 12일 을해 2번째 기사

통진(通津) · 포주(抱州) · 풍양 · 양주(楊州)에 황충(蝗蟲)이 일었다.

【영인본】1책 333면 【분류】*농업-농작(農作)

4)김포 · 통진 등 연해 14고을에 해일이 일어 농사에 피해를 입히다

《태종 14권, 7년(1407 정해/명 영락(永樂) 5년) 7월 3일 갑인 1번째 기사

김포(金浦) · 통진(通津)에서 남양(南陽) · 수원(水原)과 연안(延安) · 배주(白州) 등에 이르기까지 연해(沿海) 14고을에, 조수(潮水)가 창일하여 화곡을 손상시켰다.

【영인본】1책 403면 【분류】*과학-지학(地學)/*농업-농작(農作)

5)각기병을 잘 고치는 통진현 사람 전 내부시 소윤 이방선을 부르다

《태종 22권, 11년(1411 신묘/명 영락(永樂) 9년) 11월 5일 임술 5번째 기사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신(朴信)이 아뢰었다.

"통진현(通津縣) 사람 전 내부소윤(內府少尹) 이방선(李方善)은 사천(私賤)인데, 각기(脚氣)를 잘 고치어 사람이 그의 지은 약 한 냥쭝만 먹으면 곧 낫습니다." 임금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어 곧 명하여 불렀다.

【영인본】1책 608면 【분류】*의약-의학(醫學)

6)국마를 잘 기르지 못한 통진현감 한처령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명 영락(永樂) 12년) 2월 19일 계해 2번째 기사

통진현감(通津縣監) 한처령(韓處令) · 전 현감 이주(李珠) 등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또 수속(收贖)하지 말고 태(笞)를 때려서 후래(後來)를 경계하라고 명하였으니, 국마(國馬)를 기르면서 삼가지 않아서 야위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감양인리(監養人吏)를 경기(京畿)의 주현(州縣)에 돌려서 유시(諭示)한 뒤에 결죄(決罪)하도록 하였다.

【영인본】2책 7면 【분류】*사법-행형(行刑)

7)하윤이 통진과 고양포의 땅을 점유하고자 제방을 쌓았는데 이일에 협조한 관원을 파직시키다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명 영락(永樂) 12년) 5월 18일 경인 4번째 기사

인녕부윤(仁寧府尹) 이은(李殷)과 경기 경력(經歷) 이하(李玒)를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김훈(金訓)이 경기 경력이 되어서 하윤(河崙)에게 고(告)하기를, "통진(通津) 고양포(高陽浦) 땅은 비옥하니, 만약 제언(堤堰)을 쌓아서 조수(潮水)를 막는다면 곡식 2백여 석은 파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하윤이 사위 총제(摠制) 이승간(李承幹)을 보내어 가서 지품(地品)을 조사하고, 드디어 이승간을 시켜 아들 도총제(都摠制) 하구(河久)·사위 참의(參議) 홍섭(洪涉)과 예조판서 설미수·전사부령(典祀副令) 하연(河演)·직예문관(直藝文館) 박희중(朴熙中) 등과 더불어 연명(連名)하여 고장(告狀)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자 하니, 이은이 감사가 되고 이하가 경력이 되어서 부근 각 고을의 민정(民丁) 7백명을 징발하여서 제방(堤防)을 쌓았다.

수령(守令)으로서 혹은 따르지 않았던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몰래 중관(中官)을 시켜 이를 보게 하였더니, 과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까닭으로 이은과 이하의 직임을 파면하였다. 이리하여 헌부(憲府)에서 이를 알고 모조리 고장(告狀)한 사람을 탄핵하니, 임금이 장령(掌令) 이유희(李有喜)를 불러서 추핵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유희가 아뢰었다. "군정(軍丁)을 마음대로 조발(調發)하여 사역(私役)에 일을 시켰으니, 그 감사와 경력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와 교통(交通)하여 백성을 징발하여 사사 일을 경영한 자는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너의 말은 옳다. 그러나, 본래 곡식을 심고자 하였으니 나라에 무슨 해가 되느냐 다만 감사가 나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미 면하게 하였는데, 어찌 죄를 더하겠는가 또 공신(功臣)이 있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서는 또한 논할 수 없다." 김훈이 하윤의 집에 드나들어 몰래 그 역사(役事)를 이루고 이미 또한 그 땅을 많이 점유하였고, 이은은 또한 하윤의 문객(門客)이었다. 하윤의 문인(門人) 윤자견(尹自堅)이 하윤에게 고하기를, "고양(高陽)의 방축(防築)은 소민(小民)이 원망합니다."하니, 하윤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원망하는 자는 미혹하다. 만약 제방을 쌓아서 물을 막아서 비옥한 전지를 만든다면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는가 "

【영인본】2책 17면 【분류】*인사-임면(任免)/*농업-수리(水利)/*저정-역(役)/

8)각품에 따른 과전을 예전대로 지급하게 하고 경외의 용관을 도태시키다

· 태종 28권, 14년(1414 갑오/명 영락(永樂) 12년) 8월 21일 신유 4번째기사

명하여 각품(各品)의 과전(科田)을 옛날 그대로 하고 경외(京外)의 용관(冗官)을 도태(淘汰)하였다.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 등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내가 조운(漕運)하다가 사람이 상(傷)하는 것을 염려하여 각품(各品)와 과전(科田)을 하도(下道)에 옮기고자 하였으나, 어젯밤에 생각하니, 태조(太祖)의 성헌(成憲)을 다시 고치는 것은 심히 미편(未便)하다. 또 생각하니, 전지(田地)는 한(限)이 있는데 새로 와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끝이 없으므로 진실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본문중략〉

용구(龍駒)와 처인(處仁)을 병합하여 용인(龍仁)으로 하고, 금천(衿川)·과천(果川)을 병합하여 금과(衿果)로 하고, 교하(交河)를 원평(原平)에 붙이고, 김포(金浦)·양천(陽川)을 병합하여 김양(金陽)으로 하고, 〈본문중략〉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여 검교(檢校)가 녹(祿)을 받는 것은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서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기까지 10명으로 수를 정하고, 환관검교 (宦官檢校) 20명, 상의원(尙衣院) 사직(司直) 2명을 없애고, 각도도절제사도(各道都節制使道)·수군도절제사도(水軍都節制使道)에 수령관(首領官)을 없애고 삼군녹사 (三軍錄事)로 차임(差任) 하였다.

【영인본】2책 32면 【분류】*농업-전제(田制)/*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교통-수운(水運)/*군사-군정(軍政)/*군사-중앙군(中央軍)/*재정-국용(國用)

9)경기 도관찰사가 고을을 통폐합 함에 따른 시행 사항을 보고하다

태종 28권, 14년(1414 갑오/명 영락(永樂) 12년) 9월 8일 무인 5번째기사

경기도관찰사가 도내의 병합(併合)한 현읍(縣邑)의 사의(事宜)를 보고하였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용인현(龍仁縣)은 처인(處仁)의 인리(人吏)와 노비(奴婢)를 용구(龍駒)에 옮겨 붙이고, 장림(長臨)은 임강(臨江)을 장단(長湍)에 옮겨 붙이고, 마련(麻蓮)은 마전(麻田)을 연천(漣川)에 옮겨 붙이고, 안삭(安朔)을 삭녕(朔寧)에 옮겨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과(衿果)는 금천(衿川)의 인리(人吏)와 노비와 토착민(土着民)이 번성하나 과천(果川)이 비록 땅이 비좁고 인구가 적더라도 길옆에 있으며, 김양(金陽)은 김포(金浦)·양천(陽川)의 인물은 비록 비슷하더라도 경계와 땅의 형세로써 양천을 김포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양천이 경성(京城)에 가깝습니다. 위의 조건의 현읍(縣邑)을 옮겨 배속할 곳을 청컨대, 의정(議政)하여 주소서." 호조에서 과천을 금천에 옮기고 양천을 김포에 옮기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2책 35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신분-천인(賤人)

10)강화 둔전을 경영하라고 명하다

태종 28권, 14년(1414 갑오/명 영락(永樂) 12년) 9월 16일 병술 6번째기사

강화(江華) 둔전(屯田)을 경영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호조판서 박신(朴信)에게 일렀다. "금년에 강화(江華)의 제언(堤堰)을 쌓는다면 경작할 만한 땅은 얼마인가 1천 결에 이른다면 명년(明年)부터 시작하여 선군(船軍)으로 하여금 경종(耕種)하게 하여서 둔전(屯田)으로 삼으라. 만약 통진(通津)지방 고양(高陽) 방축(防築)에 경작할 만한 땅이 많지 않거든 마땅히 전인에 스스로 점거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라."

【영인본】2책 36면 【분류】*농업-전제(田制)/*농업-양전(量田)/*군사-지방군(地方軍)

11)과천 현감을 다시 설치하고 금천을 양천에 합하여 금양현으로 하다

◎태종 28권, 14년(1414 갑오/명 영락(永樂) 12년) 윤9월 24일 갑자 1번째기사

다시 과천현감(果川縣監)을 설치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지난번에 과천(果川)을 금천(衿川)에 병합하였으나, 경성(京城)에서 수원(水原)에 이르기까지 사객(使客)을 영송(迎送)하는데 길이 멀고 험하니, 과천(果川)을 다시 두도록 청합니다.

금천(衿川)을 양천(陽川)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金浦)는 부평(富平)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 김한로(金漢老)의 농장(農庄)이 과천(果川)에 있었는데, 김한로가 근신(近臣)에게 부탁하여 계달(啓達)하도록 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매, 어느날 들어가서 조계(朝啓)에 참여하였다가 드디어 스스로 진달(陳達)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허락하였다.

【영인본】2책 40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12)관찰사 허지의 실농 보고로 경기 인천 등 9읍의 요역과 번상을 면제하다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명 영락(永樂) 13년) 8월 23일 정해 1번째기사

경기 인천(仁川) 등 9읍(邑)의 요역을 면제하였는데, 관찰사 허지(許遲)가 인천(仁川)·부평(富平)·금양(衿陽)·통진(通津)·강화(江華)·교동(喬桐)·임단(臨湍)·원평(原平)·고양(高陽)이 모두 실농(失農)하였다고 보고한 때문이었다. 또 경기의 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의 번상(番上)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호조판서 윤향(尹向)이 경기의 절식(絕食)한 호수(戶數)를 아뢰니, 임금이, "백성이 굶주리면 의창(義倉)의 군자(軍資)를 모두 피내어 진휼하고 꾸어 주어야 한다. 들으니, 교동(喬桐)이 가뭄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절식한 사람이 어찌 16호(戶)만 되겠는가"하였다.

윤향이, "지금 당장 절식(絕食)한 자는 이것뿐입니다."하고, 얼마 아니 되어 허지(許遲)가 또 상언(上言)하기를, "통진현(通津縣) 백성이 장(狀)을 바치어 고칭(告稱)하기를, '한재로 인하여 실농(失農)하여 피곡(皮穀) 5두(斗)를 찌어야 겨우 쌀 1두, 혹은 7,8승(升)을 얻는데 모두 싸라기[碎米]이고, 콩도 또한 영글지 않아서 공세(貢稅)를 준비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위의 현(縣)이 실농이 더욱 심하여 봄 종자가 염려되니, 빌건대, 금년의 세미(稅米)를 경창(京倉)으로 바치지 말고, 다만 피곡으로 거두었다가 봄을 당하여 흩어 주어 종자를 하게 하고, 콩의 세(稅)도 또한 그와 같이 하소서."하니, 임금이 명하였다. "똑같이 실농하였으니, 인천 등 8읍도 또한 이 예에 준하라."

【영인본】2책 83면 【분류】*재정-역(役)/*재정-창고(倉庫)/*재정-전세(田稅)/*군사-부방(赴防)/*구휼(救恤)/*과학-천기(天氣)

13)경기 · 충청 · 전라도의 일부 합병한 군현을 종전대로 분할하다

◦ 태종 32권, 16년(1416 병신/명 영락(永樂) 14년) 7월 30일 기미 2번째기사

합병한 군현(郡縣)을 다시 나누어 예전대로 하였다.

경기(京畿)의 금천(衿川) · 양천(陽川) · 삭녕(朔寧) · 안협(安峽) · 마전(麻田) · 연천(漣川) · 김포(金浦), 충청도(忠淸道)의 온수(溫水) · 신창(新昌) · 전의(全義) · 연기(燕岐) · 황간(黃澗) · 청산(靑山), 전라도(全羅道)의 부령(扶寧) · 보안(保安)을 모두 복구하였다.

【영인본】2책 130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14)김포현 사람 김난의 집 소가 벼락을 맞다.

◦ 태종 33권, 17년(1417 정유/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28일 계미 1번째기사

김포현(金浦縣) 사람 김난(金難)의 집 소가 벼락맞았다.

【영인본】2책 170면 【분류】*과학-천기(天氣)

15)부평도 경차관 민문을 손과 실이 맞지 않은 때문에 파직하다

◦ 태종 34권, 17년(1417 정유/명 영락(永樂) 15년) 12월 27일 무신 2번째기사

부평도경차관(富平道敬差官) 소윤(少尹) 민문(閔文)을 파직시켰으니, 손(損)과 실(實)이 맞지 않은 곳을 고찰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개성(開城)의 전지를 전연 적간(摘姦)하지 않은 때문에, 개성유후사도사(開城留後司都事) 우경부(禹敬夫)를 파직하였다. 통진현감(通津縣監) 전유겸(全有謙) · 고양현감(高陽縣監) 유중문(柳仲聞)도 또한 모두 고찰을 잘못하였으므로 태(笞)를 때리어 환입시켰다.

【영인본】2책 197면 【분류】*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사법-행형(行刑)/*재정-전세(田稅)

16)민무구 형제를 외방으로 내치면서, 그 죄상을 일일히 열거한 교서

태종 16권, 8년(1408 무자/명 영락(永樂) 6년) 10월 1일 을해 4번째기사

17)민무구를 권왕이라고 칭한 전 지선주사 이사이를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 영락(永樂) 8년) 6월 28일 계해 2번째 기사

18)경기 도관찰사 허지가 구황 사목을 올려, 육조에 내려 의논케 하다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명 영락(永樂) 13년) 11월 15일 무신 3번째기사

3. 세종실록

1)대간이 박신의 죄를 청하니 전리로 돌아가게 하다

○세종 3권, 1년(1419 기해/명 영락(永樂) 17년) 4월 19일 계사 7번째기사

대간 이 박신의 죄를 논하므로, 통진(通津)의 전리(田里)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영인본】2책 313면 【분류】*사법-행형(行刑)/*사법-탄핵(彈劾)

2)상왕이 이원과 신상을 불러 위로하고, 이직 · 이숙번 · 황희등에 대해묻다

○세종 4권, 1년(1419 기해/명 영락(永樂) 17년) 5월 9일 계축 2번째기사

임금이 수강궁에 나가서 문안하였다. 상왕이 주연을 베풀고, 우의정 이원(李原)과 대사헌 신상(申商)을 위로하니, 두 사람은 사은사로 연경에서 돌아온 것이며, 상(商)은 새로 갈린 경상도로부터 온 감사이므로 위로한 것이다. 상왕이 말하기를, "이직(李稷)과 이숙번(李叔蕃)의 죄가 과히 심하지는 않으나, 직이 사는 성주(星州)는 그의 고장이며, 숙번은 생리(生理)가 어떠한가."하니, 신상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이 함양(咸陽)을 지나 그 사는 곳을 보니, 산업이 풍족하더이다."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이와 같은 것은 마음쓰지 않았으나, 김한로(金漢老)가 전에 구종수(具宗秀)의 일로 나에게 고할 때에, '세자가 시정 사람들과 접(接)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고 하니, 이로써 상고하건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세자에게 꺼려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니, 청주(淸州)에 옮겨 두는 것도 좋다. 황희(黃喜)는 그 죄가 더 가볍다. 희가 만일 전년 친문(親問)할 때에 실지대로만 대답했으면 옳을 것인데, 그대로 숨겨 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므로, 본향인 남원에 안치한 것이니, 그 처자를 거기에 보내어 편안히 생활하게 함이 가하고, 박신(朴信)은 그 죄가 중하다. 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이 이미 나타났으나, 특히 너그러이 하여 그가 살던 시골 통진(通津)에 두게하고, 박자청(朴子靑)은 본디 무지한지라, 족히 말할 것도 없으니, 다만 유사의 청하는 대로 따라 수원에 방치하였다가 소환할 것이며, 장윤화(張允和)는 실상 무죄하니, 어찌 이로써 기밀에 붙일 말을 누설하였다고 하겠는가. 내가 소환하여 쓰려고 한다."하였다.

【영인본】2책 315면 【분류】*왕실-의식(儀式)/*왕실-사급(賜給)/*사법-행형(行刑)/*인사-관리(管理)

3)경기 감사가 통진 조수가 불었음을 고하다

- 세종 7권, 2년(1420 경자/명 영락(永樂) 18년) 1월 25일 갑자 2번째기사

경기감사가 계하기를, "통진(通津) 조수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초3일까지 4척이나 더 불었고, 금년 정월 초2일에서 초3일까지 3척이나 더 불었다." 고 하였다.

【영인본】2책 367면 【분류】*과학-지학(地學)

4)두 임금이 김포 등지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 세종 7권, 2년(1420 경자/명 영락(永樂) 18년) 2월 5일 계묘 3번째기사

두 임금이 김포(金浦)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낮참에 김포 동구(洞口)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연안부(延安府)의 저동(猪洞)에 머물렀다.

【영인본】2책 374면 【분류】*왕실-행행(行幸)

5)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하다

- 세종 10권, 2년(1420 경자/명 영락(永樂) 18년) 11월 5일 기사 3번째기사

정부(政府)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守令)과 한산인(閑散人)으로부터 올려 보낸 여러가지 편의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으니, 〈본문중략〉

1. 통진현감(通津縣監) 신주(辛宙)가 말하기를, "〈육전(六典)〉에 빈민의 부채를 본전과 이자 외에는 더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채주가 본전과 이자 외에도 오히려 독촉하여 더 받아들여서, 빚진 자로 하여금 그의 살림을 다 팔아 주어도 마침내 그 빚을 갚지 못하여, 경작하던 밭으로 해마다 충당하여 갚다가 나중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니, 원컨대, 이것을 엄금하기를 바란다."하였고, 〈본문중략〉 이상 19가지 조목을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2책 414면 【분류】*정론(政論)/*교통(交通)/*물가(物價)/*농업(農業)/*재정(財政)/*행정(行政)/*인사(人事)/*금융(金融)/*수산업(水産業)/*구휼(救恤)/*윤리(倫理)/*사법(司法)/*풍속(風俗)/*신분(身分)/*군사(軍事)/*상업(商業)

6)태상왕이 통진의 대명관에서 사냥하는데 임금도 따라가다

세종 13권, 3년(1421 신축/명 영락(永樂) 19년) 9월 15일 을해 2번째기사

태상왕이 통진(通津)의 대명관(大明串)에서 사냥하는데 임금도 따라갔다. 저녁에 수레가 양천(陽川) 철관포(鐵串浦)에 이르렀다.

【영인본】2책 452면 【분류】*왕실-행행(行幸)

7)통진의 음동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저녁에 수레가 고리관에 이르다

세종 13권, 3년(1421 신축/명 영락(永樂) 19년) 9월 16일 병자 2번째기사

통진(通津)의 음동(陰洞)에 주정(晝停)하고 술자리를 폈는데, 효령대군 이보와 공녕군(恭寧君) 이인과 경녕군(敬寧君) 이비 및 우의정 이원·찬성 조연 등이 입시하고, 저녁에 수레가 고리관(古里串)에 이르렀다.

【영인본】2책 452면 【분류】*왕실-행행(行幸)

8)김점의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외방에 거주할 것을 전지하다

세종 14권, 3년(1421 신축/명 영락(永樂) 19년) 11월 27일 병술 3번째기사

김점의 아들 김의손(金義孫)을 불러 김익정으로 하여금 전지(傳旨)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서울 안에는 있을 수 없으니, 외방(外方)에 마음대로 거주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점이 나가서 김포(金浦)의 별업(別業)로 돌아갔다.

김점은 성품이 우둔하고 교활하여, 매양 다른 사람과 의논이 서로 합하지 않으면, 문득 팔뚝을 뽑내고 주먹을 휘둘러 그 뺨을 겨누며, 깊은 말로써 욕하니,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이론(異論)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탐포(貪暴)하더니, 이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처음에 태상왕이 숙공궁주(淑恭宮主)를 내쫓을 적에, 좌의정 박은이 김익정에게 말하기를, "김점은 비록 죄가 있지마는, 궁주(宮主)는 관계가 없는데, 김점이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궁주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그를 다시 후궁(後宮)으로 들이오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익정이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태상왕에게 이르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는 나로 하여금 와주(窩主)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영인본】2책 465면 【분류】*사법-형형(行刑)/*인물(人物)/*왕실-비빈(妃嬪)

9)호조에서 경기도의 각 고을은 환상 지급 절차에 대해 아뢰다

세종 19권, 5년(1423 계묘/명 영락(永樂) 21년) 2월 22일 계유 3번째기사

호조에서 계하기를, "경기 철원·원평(原平)·삭녕(朔寧)·장단(長湍)·임강(臨江)·마전(麻田)·연천(漣川)·통진(通津)·교하(交河)·안협(安峽) 등 각 고을 인민들의 환상(還上)은 부근 유후사(留後司) 창고의 미두(米豆) 각 1만6백석으로 지급하고, 부평(富平)·양주(楊州)·영평(永平)·김포(金浦)·고양(高陽)·양천(陽川)·가평(加平) 등 각 고을은 경기의 군량인 묵은 미두(米豆) 각 4천석으로써 지급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2책 528면 【분류】*구휼(救恤)/*재정-창고(倉庫)/*군사-병참(兵站)

10)한성부 윤 김소대와 대호군 고득종이 목장으로서의 강화부의 입지조건을 아뢰다

◎세종 30권, 7년(1425 을사/명 홍희(洪熙) 1년) 11월 8일 계묘 7번째기사

한성부 윤 김소대(金素大)와 대호군 고득종(高得宗)이 계하기를, "강화부 경내에 목장으로 적당한 곳은 남진강(南鎭江)에서부터 대청포(大靑浦)까지 1만1천6백 자[尺]이고, 서쪽으로는 건동을포(巾冬乙浦)까지 5천8백자이온대,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땅을 합쳐서 한 목장을 만들면 주위가 60리 가량이오니, 비록 만 마리의 말을 먹일지라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합니다. 또 강화를 제주에 비하면, 제주는 기후가 따뜻하여 풀과 나무가 겨울을 지나도 마르지 아니하오나, 강화는 겨울에는 눈이 많고 풀이 마르므로, 모름지기 마른 풀을 예비해서 한 겨울에 먹여서 길러야만 여위고 죽은 걱정을 면할 것입니다."하므로,

병조에 내려 위논하기를 명하니, 병조에서 의논하여 계하기를, "소와 말은 원래 들짐승이므로, 사철 놓아 먹여도 번식할 수 있으나, 목장을 만들 만한 곳이 없어서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므로, 곡초를 수합하고 먹이는 공을 허비하게 되니, 여러 해 동안의 폐단을 어찌 다 말하리까. 청하건대 아뢴 바에 의하여 각 고을에 분담시켜서 담을 쌓아 목장을 만들고는, 각 고을에 나눠서 기르는 말을 그 안에다 모아서 먹이고, 각 포구(浦口)에 당한 영선군(領船軍)으로 하여금 풀을 베어 말려서 목장 안에 쌓아 두었다가 겨울에 먹일 준비를 하면, 가히 오랫동안 나눠서 기르는 폐를 없앨 것이오니 가장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그 목장 안에 거주하는 백성 3백 38호는 금천(衿川)·개성·남양·통진 등의 목장을 혁파(革罷)한 땅에 자원대로 이주하기를 허락하며, 그들의 전토(田土)에 담을 쌓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2책 699면 【분류】*교동-육운(陸運)/*군사-지방군(地方軍)/*호구-이동(移動)

11)지정선군사 안수, 김포현령 이효지, 무주 현감 유중경 등을 인견하다

세종 30권, 7년(1425 을사/명 홍희(洪熙) 1년) 12월 8일 계유 2번째기사

임금이 지정선군사(知旌善郡事) 안수(安綏)·무주현감(茂朱縣監) 유중경(柳仲敬)·김포현령(金浦縣令) 이효지(李孝智)·삼가현감(三嘉縣監) 나홍서(羅洪緖) 등을 인견(引見)하고 일러 말하기를, "수령은 나가서 백 리나 되는 땅을 맡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다. 오늘 〈그대들을〉 인견하는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근래에 수재와 한해(旱害)가 연이어서 백성들의 삶이 염려되는데, 또 더구나 금년은 기후가 순조롭지 아니하여, 장차 흉년이 또 들까 두려우니, 이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본받아 백성들을 사랑해 기르는 일에 마음을 바치라. 긴급하지 아니한 공물(貢物)은 내가 이미 감면(減免)하였으니, 그대들은 그 완급(緩急)을 살펴서 마음을 써 처리하도록 하라."하였다. 중경이 대답하기를, "신이 재능 없는 몸으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조령(條令)을 받들어 시행하게 되었으니, 오직 날마다 힘쓰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리하라."하였다.

【영인본】2책 70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12)경기 부평·양천·김포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세종 31권, 8년(1426 병오/명 선덕(宣德) 1년) 2월 9일 계유 5번째기사

경기의 부평(富平)·양천(陽川)·김포(金浦) 등지에 지진이 일었다.

【영인본】3책 7면 【분류】*과학-천기(天氣)/*과학-지학(地學)

13)김포현령 이효지의 아내 유씨에게 태형 50대와 속전을 징수케 하다

세종 32권, 8년(1426 병오/명 선덕(宣德) 1년) 5월 15일 무신 7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김포현령(金浦縣令) 이효지(李孝智)의 아내 유씨(柳氏)가 조령(條令)을 따르지 않고 얼굴의 건(巾)을 걷고 출입하니, 형률에 의거하여 태형(笞刑) 50대를 치고 속전(贖錢)을 징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3책 26면 【분류】*사법-재판(裁判)/*의생활-예복(禮服)

14)영돈녕 이지의 아내 김씨의 음란한 행적과 이를 치죄하자는 대사헌의 상소문

세종 37권, 9년(1427 정미/명 선덕(宣德) 2년) 8월 8일 계해 2번째기사

겸대사헌(兼大司憲) 이맹균(李孟筠) 등이 상소하기를, "일찍이 돌아간 영돈녕(領敦寧) 이지(李枝)의 아내 김씨가 거짓으로 봉작(封爵)을 일컫은 죄에 대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만약 공신의 후손이라고 해도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면 본종(本宗)의 공로와 죄과(罪過)에 관계되지 않을 것이며, 공신(功臣)의 아내라고 해도 이미 이것이 음부(淫婦)라면 이지(李枝)의 정처(正妻)로서 논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더러운 행실이 온 나라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미워한 지가 오래입니다. 다만 범죄한 것이 사면(赦免)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감히 논청(論請)하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이를 두고 논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길이 존영(尊榮)을 누리게 한다면 부인의 절개를 힘써 닦게 할 수가 없을 것이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거짓으로 관명(官名)을 번 죄를 논하여, 그대로 밖으로 내쫓아 서울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도록 하소서."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니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조복초(趙復初)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서울 10리(里) 밖에서는 기내(畿內)와 기외(畿外)를 논할 것 없이 적원(直願)에 따라 거주하되, 서울 안에는 왕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하니, 김씨는 즉시 통진현(通津縣)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씨를 이미 밖으로 내쫓았으니 그 아들을 서용(敍用)하지 않음이 옳을 것이다."하니, 지신사 정흠지(鄭欽之)가 아뢰기를, "통진(通津)에는 이 여자의 전 남편의 농장이 있는데, 지금 귀양을 당하여 의(義)가 끊어진 집에 거주하게 함은 심히 옳지 못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맡은 관사(官司)의 책임이다."하니, 대언(代言) 등이 아뢰기를, "김씨의 아들 조심(趙深)이 지금 수령이고, 여러 아들도 또한 들어와 벼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신 등은 불편하다고 여깁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심은 뒤에 고쳐 임명할 수 있지만 조복초(趙復初)와 조유례(趙由禮)는 무반이다."하니, 대언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본인 등의 고신에 대성과 정조(政曹)의 이외가 서명하였습니다."하였다.

처음에 김씨는 조화의 아내였다. 조화가 일찍이 김씨의 어머니에게 간통하니 김씨가 이를 알고 김씨도 또한 허해(許咳)와 몰래 간통하였다. 하루는 조화가 첩을 데리고 외박을 하였는데 김씨도 또한 허해를 끌여들여 유숙시켰으나, 허해가 옷을 벗어 조화의 옷걸이에 걸어놓았다가 돌아갈 때에 잘못하여 조화의 옷을 입고 가버렸다. 조화가 새벽에 안방에 들어와서 옷을 꺼내 입으니 옷이 몸에 맞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알고 이를 힐문하니, 김씨가 대답하기를, "오늘 밤에 허해가 와서 유숙했는데 잘못 입고 갔습니다."하였다.

조화가 노하여 꾸짖으니, 김씨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어찌 나를 허물하는가. 당신이 만약 말을 퍼뜨리면, 당신이 먼저 수레에 오른 뒤라야 나도 다음 수레에 오른다."하므로, 조화는 그에게 침을 뱉았다. 김씨는 더욱 방사(放肆)하여 거리낌이 없어서 또한 가노(家奴) 박송(朴松)이란 자와 간통하였으므로, 조화가 이를 붙잡아 훈계하였다. 후에 김씨가 병환으로 무당을 불러 굿을 하니 가노(家奴)가 무당에게, "다른 귀신이 아니라 내가 빌미를 내리는 것이라."고 부탁하였는데, 여러 부녀들이 모두 귀를 가리고 부끄러워하면서 엎드렸었다.

조화가 죽은 뒤에는 이지(李枝)와 부부(夫婦)가 되기를 약속하였다. 혼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문을 닫고 들어 주지 않으므로, 이지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한번이 아닌데 아이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하느냐."하였다.

조계(朝啓) 때에 태종(太宗)이 측근의 신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영돈녕(領敦寧)이 어찌 오지 않느냐."하니, 모두 아뢰기를, "장가를 듭니다."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누구인가."하니, 대답하기를, "조화의 아내입니다."하였다. 태종이 만하기를, "어찌 장가 든다고 할 수 있겠는가."하였으므로, 헌사(憲司)의 청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유례(由禮)는 복초(復初)의 맏형 조명초(趙明初)의 아들이다.

【영인본】3책 85면 【분류】*윤리(倫理)/*풍속-예속(風俗)/*사법-재판(裁判)/*무역(貿易)

15)이지의 아내 김씨를 치죄하라는 논의를 중지시키다

세종 37권, 9년(1427 정미/명 선덕(宣德) 2년) 8월 20일 을해 3번째기사

집의 김종서(金宗瑞) 등이 상소하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람이 범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명칭(名稱)해 말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버려야만 악을 행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요사이 돌아간 영돈녕(領敦寧)으로 치사(致仕)한 이지(李枝)의 아내 김씨의 죄를 소(疏)에 갖추어 신청했사오나, 소를 대궐 안에 보류시켜 두고 몰래 밖으로 내쫓았으니 이것이 비록 전하께서 악을 숨겨주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 악을 징계하는 도리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더구나 통진(通津)의 전서(田鼠)는 원래 조화(趙禾)가 경영하던 것인데도, 김씨가 유숙하면서 음란한 행실을 하고, 또 다른 성(姓)에게 시집갔으므로 그가 조씨(趙氏)와는 의(義)가 끊어졌으니, 어찌 이 전서(田鼠)에 거처하면서 그 이로움을 누리겠습니까. 하물며 서울과 지극히 가까우니 더러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처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그를 기외(畿外)로 내쫓기를 명하여 악을 징계하여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게 하소서."하니, 〈임금께서〉 종서(宗瑞)와 우사간 김효정(金孝貞)을 불러서 말하기를, "김씨가 이미 종실(宗室)의 친척이 되었으니, 관작(官爵)을 거짓 인컫은 죄는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음란한 행실을 방자하게 행한 범죄는 사죄(赦罪) 전에 있은 일이었으나, 서울에는 산게 할 수 없으므로 밖으로 내쫓았던 것이다. 통진(通津)의 별업(別業)은 전 남편인 조화(趙禾)가 경영하던 곳이므로 억시 살 수 없으므로 강화(江華)로 옮겼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영인본】3책 87면 【분류】*윤리(倫理)/*사법-탄책(彈劾)/*사법-행형(行刑)/*정교(政敎)

16)병조에 전지하여 경기도와 황해도 등지에 있는 강무장을 혁파하라고 명하다

세종 38권, 9년(1427 정미/명 선덕(宣德) 2년) 10월 18일 임신 4번째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경기도 연천(漣川)의 성황당산(城隍堂山)과 삭녕(朔寧)의 장군사산(將軍寺山)·왕피고개(往被古介)·시고개(柴古介)·현벽(玄壁)·기이(岐伊)·진독(晉禿)·동가북산(同家北山) 등지(等地)와, 철원의 남산(南山)과 북변(北邊)의 수청산(水淸山)·관산(冠山), 영평(永平)의 지석(支石)·북변산(北邊山), 송림(松林)의 동·남·서촌(東南西村)·대덕산(大德山) 등지와, 해풍(海豐)의 동·남·북촌(東南北村), 개성·김포(金浦)·감로(甘露)·목촌평(木村平) 등지와, 평강(平康)의 진의촌(珍衣村), 희양(淮陽)의 경내(境內) 남곡(嵐谷)·성북(星北)·김화(金化)·산참(山站)·말흘천(末訖川), 강릉(江陵)의 진보역(珍寶驛)과 동쪽 홍계역(洪溪驛) 동구(洞口) 및 이천(伊川), 황해도의 평산(平山)과 해주 등지의 강무장(講武場)은 모두 혁파(革罷) 하라."하였다.

【영인본】3책 99면 【분류】*군사-병법(兵法)/*과학-지학(地學)

17)응사로 하여금 아골을 잡아오게 하다

세종 41권, 10년(1428 무신/명 선덕(善德) 3년) 7월 2일 임자 2번째기사

응사(應師) 3사람을 통진(通津)·해풍(海豐)·인천(仁川)등지에 보내어 아골을 잡게 하였다.

【영인본】3책 137면 【분류】*농업-임업(林業)/*개점-진상(進上)

18)생선간 오을마대 등이 고기를 잡다 익사하자 부의를 내리고 복호하게 하다

ㄴ 세종 42권, 10년(1428 무신/명 선덕(善德) 3년) 12월 6일 계미 3번째기사

사옹방(司饔房)의 생선간(生鮮干)인 김포(金浦)사람 오을마대 등 7명이 고기를 잡으려다가 익사(溺死)하니, 명하여 선군(船軍)에 예에 의하여 부의를 내리고 복호(復戶)를 하게 하였다.

【영인본】3책 156면 【분류】*재정-역(役)/*군사-군역(軍役)

19)사신이 두목을 보내어 황어를 잡게 하다

ㄴ 세종 44권, 11년(1429 기유/명 선덕(宣德) 4년) 5월 29일 갑술 3번째기사

사신이 두목(頭目) 세 사람을 통진(通津)·해풍(海豊) 등지에 보내어 황어(黃魚)를 잡게 하였다.

【영인본】3책 182면 【분류】*외교-명(明)/*과학-생물(生物)

20)절도범 말수를 교형에 처하다

ㄴ 세종 53권, 13년(1431 신해/명 선덕(宣德) 6년) 9월 27일 무자 2번째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통진(通津)사람 백정(白丁) 만수(末守)가 절도죄를 세 번 범하였사오니, 율이 교형(絞刑)에 처함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3책 344면 【분류】*사법-형형(行刑)/*사법-치안(治安)

21)통진현에서 남자 1인이 벼락을 맞아 죽다

ㄴ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명 선덕(宣德) 9년) 4월 27일 갑술 4번째기사

통진현(通津縣)에서 남자 1인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

【영인본】3책 562면 【분류】*과학-전기(天氣)

22)경기 통진 · 충청도 아산 등 고을에 교도를 임명하다

세종 65권, 16년(1434 갑인/명 선덕(宣德) 9년) 8월 4일 무신 1번째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기 통진(通津), 충청도 아산 등 고을은 5백호가 차오니, 《속전(續典)》에 의하여 교도(敎導)를 임명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3책 585면 【분류】*호구-호구(戶口)/*인사-임면(任免)/*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23)경기 통진의 수안현, 동성현에 벌레가 생겨 곡식의 싹을 먹다

세종 68권, 17년(1435 을묘/명 선덕(宣德) 10년) 6월 13일 계축 2번째기사

경기(京畿) 통진(通津) 관할내의 수안현(守安縣)과 동성현(童城縣)에 벌레가 생기어 곡식의 싹을 먹었다.

【영인본】3책 635면 【분류】*농업-농작(農作)

24)신전 · 조진경 · 선효림 · 이인숙 등이 효행이 있어 복호하게 하다

세종 68권, 17년(1435 을묘/명 선덕(宣德) 10년) 6월 17일 정사 5번째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김포(金浦)사람 전호군(護軍) 신전(辛琠)과 죽산(竹山)사람 조진경(曹進敬)과 토산(兎山)사람 선효림(宣孝臨)과 함열(咸悅)사람 이인숙(李仁淑) 등이 모두 효행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복호(復戶)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3책 637면 【분류】*군사-군역(軍役)/*윤리(倫理)

25)지해진군사 박흡 · 통진현감 유종서가 하직하다

- 세종 69권, 17년(1435 을묘/명 선덕(宣德) 10년) 7월 30일 기해 1번째기사

지해진군사(知海珍郡事) 박흡(朴洽) · 통진현감(通津縣監) 유종서(柳宗敍)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지금 온갖 곡식이 거의 익게 되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 햇곡식이 여물지 아니하여 흉년이 들는지 염려된다. 가서 그대의 직무에 나아가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라."하였다

【영인본】3책 645면 【분류】*인사-임면(任免)/*과학-천기(天氣)/*농업-농작(農作)

26)김포현령 안규와 이산현감 김자회가 하직하다

- 세종 70권, 17년(1435 을묘/명 선덕(宣德) 10년) 10월 26일 갑자 2번째기사

김포현령(金浦縣令) 안규(安規)와 이산현감(尼山縣監) 김자회(金自會)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요사이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로 인하여 백성의 생계가 심히 고생스러우니, 가서 백성을 사랑하라. 또 흉년이 들면 도적이 일어나서 반드시 범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로써 형벌을 엄하게 하지 말고 이를 신중히 함이 옳을 것이다."하였다.

【영인본】3책 657면 【분류】*인사-임면(任免)/*과학-천기(天氣)

27)통진현 선군 송물금이 바다에서 왜구를 만나 싸워 물리치다

- 세종 78권, 19년(1437 정사/명 정통(正統) 2년) 7월 6일 갑오 3번째기사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통진현(通津縣)의 선군(船軍) 송물금(宋勿金)이 소금을 팔기 위하여, 상선(商船) 3척을 거느리고 바다의 섬에 배를 정박하였다가, 밤에 왜구의 배를 만나서 서로 싸웠는데, 물금이 돌을 던지면서 힘공(挾攻)해서 적(賊) 3급을 베니, 적의 배가 뒤집혀 침몰하여 나머지 적들도 모두 죽었습니다."하였다

【영인본】4책 87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외교-왜(倭)

28)경기 통진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 85권, 21년(1439 기미/명 정통(正統) 4년) 6월 6일 임오 2번째기사

경기 통진현(通津縣)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영인본】4책 217면 【분류】*과학-지리(地理)

29)사조한 김포 현령 조안효를 불러 보다

세종 85권, 21년(1439 기미/명 정통(正統) 4년) 6월 23일 기해 1번째기사

김포(金浦)현령 조안효(趙安孝)가 사조하니, 불러보고 말하기를, "근년 이래로 해마다 가물어서 곡식이 잘되지 못하여, 이 백성들의 생활이 심로 염려스러웠는데, 지난해에 조금 풍년이 들어 내가 심히 기쁘게 여겼더니, 금년에 이르러 일찍부터 가뭄이 크게 심하여 추성(秋成)할 희망이 아직 기필할 수 없으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천변(天變)은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나 사람의 할 일은 극진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네가 그 고을에 가서 마땅히 농사를 권하는 임무에 힘쓸지어다."하였다.

【영인본】4책 220면 【분류】*농업-농작(農作)/*농업-관농(勸農)/*과학-천기(天氣)/*인사-임면(任免)

30)판김포현사 이보정 등이 하직하다

세종 92권, 23년(1441 신유/명 정통(正統) 6년) 2월 14일 신사 2번째기사

판김포현사(判金浦縣事) 이보정(李補丁)·지천안군사(知天安郡事) 이자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권장 독려하고 학교를 일으키며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렴을 적게 받는 것이 수령의 일이니, 가거든 힘쓰라."하였다.

【영인본】4책 33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31)한강변 양인과 공천 노자에게 내선에 생선을 공급케 하다

◦세종 92권, 23년(1441 신유/명 정통(正統) 6년) 3월 10일 정미 1번째기사

사옹방(司甕房)에서 청하기를, "한강(漢江)으로부터 통진(通津)에 이르는 물가의 각 고을 양인(良人)과 공천노자(公賤奴子) 1백호를 생선간(生鮮干)으로 정하고, 3번으로 나누어 잡역을 없애게 하고는 날마다 생선을 잡아 바쳐 내선(內膳)을 공급하게 하고, 사재감(司宰監)으로 하여금 규거(糾擧)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4책 337면 【분류】*재정-역(役)/*저정-국용(國用)/*신분(身分)

32)경기도 통진현 사람과 전라도 흥양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 95권, 24년(1442 임술/명 정통(正統) 7년) 3월 22일 계미 1번째기사

경기도 통진현(通津縣) 사람과 전라도 흥양현(興陽縣)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영인본】4책 405면 【분류】*과학-천기(天氣)

33)경기도 관찰사에게 재암과 사사를 부수는 일에 관해 전지하다

◦세종 96권, 24년(1442 임술/명 정통(正統) 7년) 5월 10일 기사 2번째기사

경기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무안군(撫安君)의 아내 왕씨(王氏)가 호소(呼訴)하기를, '통진현(通津縣)에 있는 재암(齋庵)은 병진년에 다시 지은 것인데, 지금 또 독촉하여 부수라고 합니다.' 고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사사(寺社)를 훼철(毁撤)하는 법은 금년 2월에 만들었는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었던 재암(齋庵)을 부셔버리는 뜻과 그 외의 부셔버린 사사(寺社)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라."하였다.

【영인본】4책 410면 【분류】*사상-불교(佛敎)

34)표류하던 배에 대해 아뢴 김포현 서원 박효진에게 목면 한 필을 하사하다

세종 100권, 25년(1443 계해/명 정통(正統) 8년) 6월 9일 임진 2번째기사

김포현 서원(金浦縣書員) 박효진(朴孝眞)이 와서 아뢰기를, "바람에 표류하던 배 중에 66척은 서강(西江)에 도착하였고, 16척은 갑곶[甲串]에 도착하였습니다."하니, 효진에게 목면(木綿) 한 필을 하사하고, 호조좌랑(戶曹佐郎) 신계조(辛繼祖)에게 서강에 가서 선박(船舶)과 군인(軍人)들을 점검(點檢)하여 계달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4책 481면 【분류】*교통-수운(水運)/*경사-사급(賜給)/*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35)토지에 파종을 하지 못하고 기근이 들게 한 경기 감사 이선을 문책하다

◎ 세종 104권, 26년(1444 갑자/명 정통(正統) 9년) 5월 5일 갑인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지인(知印)을 보내어 경기도 양천(陽川)·부평(富平)·인천(仁川)·김포(金浦)·풍덕(豐德)·강화(江華) 등지를 순행(巡行)하게 하였더니, 파종하지 못한 토지가 3분의 2나 되고, 혹은 3분의 1이나 되며, 혹은 기근(饑饉)으로 부황(浮黃)난 자도 있고, 혹은 양식이 떨어졌거나 혹은 5, 6구(口)의 가족에 단지 쌀 서너 되[升]만 있다든가, 혹은 3, 4구의 가족에 단지 쌀 한두 되만 있다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대경(大驚)하여 경기감사 이선(李宣)을 불러 문책하기를, "도내의 인민들이 어째서 기근(饑饉)을 당하게 되었으며, 파종은 어째서 시기를 잃게 하여 위임(委任)한 뜻이 이와 같단 말이냐, 전일에 조치한 상황을 모두 다 말하라."하니,

선(宣)이 아뢰기를, "금년은 종량(種糧)의 수가 작년보다 더 되어서 신은 족한 줄로만 여겼더니, 전월 20일 사이에 각 고을의 수령들이 치보(馳報)하기를, '종자와 양식이 모두 넉넉하지 못하다.' 하였으나, 신은 아직껏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정부에게서 전월 20일쯤에 본도(本道)의 종량(種糧)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렸었는데, 경이 들은 바도 그때였으니, 경은 위임(委任)된 자인데도 어째서 늦게 들었는가."하니,

선(宣)이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단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하니, 임금이 승지들을 시켜 선(宣)의 포치(布置)한 상황을 힐문하게 하고, 인하여 선에게 이르기를, "경의 말을 들으니 경의 계획이 엉성하여 이에 이르렀다.

내가 백성들의 일에는 비록 가까운 족친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용서하지 않았으니,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으면 경을 용서하지 않겠다."하였다.

【영인본】4책 55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농업-권농(勸農)/*농업-농작(農作)/*사법-단핵(彈劾)

36)판승문원사 이사맹이 초수로 여겨지는 것을 찾으니 사맹과 대호군 박강을 보내어 다시 찾게 하다

세종 104권, 26년(1444 갑자/명 정통(正統) 9년) 5월 13일 임술 3번째기사

판승문원사 이사맹이 아뢰기를, "신이 전자에 부평에 부임하여 온수(溫水)를 찾을 때에, 통진과 수원 같은 곳에서 물기가 솟아나는 데가 있었는데, 초수(椒水)가 아닌가 합니다."하니, 즉시 사맹과 대호군 박강(朴剛)을 보내어 다시 찾게 하였다.

【영인본】4책 556면 【분류】*과학-지학(地學)

37)경기 도관찰사 허후에게 초수를 찾아 보고하라고 다시 교유하다

세종 104권, 26년(1444 갑자/명 정통(正統) 9년) 5월 19일 무진 2번째기사

경기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허후에게 교유 하기를, "내가 들으니 통진현(通津縣)에서 물이 샘솟아 오른다기로, 판승문원사 이사맹(李師孟)과 대호군 박강(朴剛) 등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초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김포현(金浦縣) 사람은 와서 알렸는데, 통진현 사람은 와서 알리지 않으니, 이것은 수령이 구황하는데 여가가 없어, 전일에 〈초수를 보고하라는〉 유서(諭書)의 뜻을 민간에 효유하지 못한 것이리니, 전의 유서에 의하여 마땅히 각 고을 촌민(村民)으로 하여금 주지(周知)시키되, 소요하게 하지 말며, 만일에 알리는 자가 있거든 즉시 계달하게 하라."하였다.

【영인본】4책 557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과학-지학(地學)

38)전 이조 판서 박신의 졸기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12일 기축 4번째기사

전 이조판서 박신(朴信)이 졸하였다. 신(信)의 자는 경부(敬夫)이니 전라도 운봉(雲峰)사람이다. 을축년에 과거에 뽑혔고, 벼슬이 여러 번 옮겨서 사헌규정(司憲糾正)에 이르렀을 때에 태조(太祖)가 제군부(諸君府)를 설치하니, 그는 중랑장(中郎將)으로 군부도사(軍府都事)를 겸임하였으며, 예조와 형조의 정랑(正郎)을 역임하였다.

태조가 즉위(卽位)하였을 때에는 그에게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칭호를 주었으며, 다시 봉상소경(奉常少卿)이 되고, 여러번 옮기어 감문위대장군(監門衛大將軍) 겸 사헌중승(司憲中丞)이 되었으며,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에 전임되었고, 기묘년에는 형조전서(刑曹典書)에 승진하였다.

태종이 왕위를 계승한 뒤에는 발탁되어 승추부(承樞府)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임명되고, 신사년에는 우대언(右代言)에 옮기었고, 이듬해에는 특히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며, 계미년에는 판광주목사(判廣州牧事)로 나갔다가, 갑신년에는 개성유후(開城留後)와 한성부윤(漢城府尹)·승녕부윤(承寧府尹)을 역임하였다.

을유년에는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가 되었다가 곧 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간언(諫言)관계로 아주현(牙州縣)의 수령으로 폄직(貶職)되었으며, 병술년에는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에 임명되고, 정해년 여름에는 참지의정부사로 되었다가 겨울에 공조 판서로 승진하였다.

무자년에는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으나 기복(起復)하여 서북면 도순문찰리사가 되고, 기축년에는 또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였으나 기복되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 임명되었으며, 갑오년에는 호조판서로 전임되고, 을미년에 병조판서로 옮겼다. 병신년 여름에 의정부 찬성사(贊成事)로 승진하고 겨울에는 이조판서로 옮겼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찬성사로 되었다. 세종(世宗)이 왕위를 이은 뒤에 다시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로 되었더니, 선공감 관리의 불법(不法)행위의 공사(供辭)에 관련되어 통진현(通津縣)에 귀양살이 한 것이 모두 13년이나 되었다. 임자년에 소환(召還)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 83세이다.

부음(訃音)이 들리매, 철조(輟朝)하고서 치조(致弔)와 사부(賜賻)하였다. 시호(諡號)를 혜숙(惠肅)이라고 하였으니, 너그럽고 유후(裕厚)하며 자애롭고 어진 것을

혜(惠)라고 하며, 마음을 한결같이 굳게 가지고 견단성이 있는 것을 숙(淑)이라고 한다. 신(信)은 타고난 성품이 관후(寬厚)하고 풍채와 위의(威儀)가 대단히 뛰어났다.

통진현(通津縣)의 서쪽에 갑곶(甲串)이라는 나루가 있었는데, 오고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속을 수십보(數十步) 걸어가야 비로소 배에 오를 수 있고, 또 배에서 내려서도 물속을 수십 보 걸어가야 언덕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릴 때면 길 다니는 나그네들이 더욱 고통을 당하였는데, 신(信)이 재산을 의연(義捐)하고 고을 사람들을 이끌어 양쪽 언덕에 돌을 모아 길을 만들었더니, 길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공로를 힘입고 있다고 한다. 아들이 있으니, 이름을 종지(從旨)·종우(從愚)라고 한다.

【영인본】4책 576면 【분류】*인물(人物)

39)청주 지역의 옥 채굴을 금하는 수교 문구를 고치게 하다

세종 106권, 26년(1444 갑자/명 정통(正統) 9년) 10월 26일 신미 2번째기사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날 고려때에 원세조(元世祖)에게 옥띠[玉帶]를 바치었더니, 원나라 관리가 진짜 옥이 아니라 하여 죄주기를 청해 아뢴즉, 세조가 말하기를, '해외(海外)의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바쳤으니 무슨 죄가 있느냐. 죄주지 말라.' 하였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당 고종(唐高宗)에게 홍옥띠[紅玉帶]를 바쳤더니 세상에 드문 보물이라고 칭찬하였는데, 그 뒤 나라에 한재(旱災)가 생기매 모두들 이르기를, '나라의 세전(世傳)할 보배를 가벼이 내보낸 탓으로 그리 된 것이라.' 고 하였다.

내 일찍이 말한 일이 있거니와, 이 옥대들을 다른 나라에서 얻어온 것이겠지, 우리 나라에서는 옥이 난 일이 없다. 지금 수원(水原)에서 나는 옥으로 악기(樂器)를 만들어 보았으나 단단하고 정확하지 못하니, 이것은 돌로서 옥과 유사한 것이지 옥은 아니고 성천(成川)·의주(義州)와 황해도에서 나는 청옥·황옥·백옥은 수원의 옥에 비하면 조금 낫고, 지금 서울·김포(金浦)·청주(淸州)에 옥 나는 곳이 꽤 많으나, 그 품질이 청옥·백옥·벽옥(碧玉)과는 아주 다르다.

내 생각으로는 청주에서 나는 것이 진짜로 여겨지나, 그러나 앞서 의정부에서 옥 채굴을 금하는 수교(受敎)에 '진옥(眞玉)'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참으로 진짜 옥이면 '진옥(眞玉)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진짜가 아니면 어찌 후세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진옥(眞玉)' 이라는 문구를 고쳐서 '옥같은 돌[似玉之石]' 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과연 이것이 진짜 옥일진대 뒷사람들이 보고서 비록 '잘 몰랐다' 고 할지라도 역시 해로운 것은 없다." 하였다.

【영인본】4책 591면 【분류】*역사-고사(故事)/*광업-광산(鑛山)/*광업-채광(採鑛)/*의생활-장신구(裝身具)/*외교-원(元)

40)경기 도관찰사가 조전해 온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방법을 아뢰다

세종 106권, 26년(1444 갑자/명 정통(正統) 9년) 12월 23일 무진 3번째기사

경기도관찰사 허후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본도(本道)의 인구(人口)로써 금년 가을에 배로 실어들인 곡식[漕轉穀]을 계산하여 보오니 태반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서울에 있는 미곡(米穀)을 나누어 주어야 그들을 구제하여 살릴 수 있겠사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전(漕轉)해 온 곡식은 지금 물이 얼었기 때문에 모두 강화(江華)·통진(通津)·인천(仁川)·교동(喬桐) 등 4고을에 있사오니, 만약 그 조전해 온 곡식을 4고을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서 군자감(軍資監) 곡식을 주기로 하면, 도성(都城) 이동(以東)과 이북(以北)의 기민(飢民)들은 서울을 지나서 강화·인천·통진·교동의 4고을까지 가서야 곡식을 받게 될 것이니 매우 노고와 폐가 될 것이고, 또 조전해 온 곡식을 4고을과 서울 인읍(隣邑)의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면 다른 고을 백성들은 멀리 서울까지 와서 서울의 곡식을 받아 가야 할 것이니 역시 곤란할 것입니다.

신은 천하옵건대, 조전곡(漕轉穀) 2만여 석은 내년 봄을 기다려 군자감(軍資監)에 실어다 바치고 서울에 있는 곡식 2만여 석을 지금 곧 나누어 주면 도성(都城) 이서(以西)와 이남(以南)의 백성들은 4고을에서 받아가고, 도성(都城) 이동(以東)과 이북(以北)의 백성들은 서울에서 받아 가게 하면 거의 양편이 다 편리하고 폐가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의정부와 의논하여 알리라고 하였다.

【영인본】4책 611면 【분류】*교통-수운(水運)/*왕실-사급(賜給)/*군사-병졸(兵卒)/*구휼(救恤)

41)청주, 김포의 옥을 사사로이 채취하지 못하게 하다

- 세종 120권, 30년(1448 무진/명 정통(正統) 13년) 5월 7일 신묘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청주(淸州)·김포(金浦) 등지에 옥(玉)이 산출되는데, 복어(服御)에 쓰기에 적합한 물건이오니, 벽동(碧潼)에서 산출하는 옥의 예에 의하여 사람들의 채취하는 것을 금하여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하소서. 또 벽동의 옥을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은 여러 번 조령(條令)이 있었는데, 모리배들이 가만히 숨어서 채취하여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니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곳에서 채취하여 매매하는 자는 《대명률(大明律)》에, '용봉(龍鳳)의 문채를 금하는 것을 어기어 참람하게 쓴 자'의 예에 따라, 관민(官民)은 각각 장(杖) 1백에 도(徒) 3년을 처하고, 공장(工匠)은 장(杖) 1백 대를 때려 통렬히 징계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5책 64면 【분류】*광업(鑛業)/*사법-법제(法制)

42)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해 소나무에 관한 감독 관리에 대해 상신하다

- 세종 121권, 30년(1448 무진/명 정통(正統) 13년) 8월 27일 경진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병선(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을 하였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작벌(斫伐)하여 혹은 사사 배를 짓고, 혹은 집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여러 섬[島]과 각 곶(串)의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본문중략〉 통진현(通津縣)의 고리곶(古里串)·대명곶(大明串)·어모로(於毛老), 〈본문중략〉

상항(上項) 주현(州縣)의 도(島)와 곶(串)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는 것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 감사(監司)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守令) 만호(萬戶)로 하여금 감독 관리하고 배양하여 용도가 있을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5책 96면 【분류】*군사-군기(軍器)/*고통-수운(水運)/*농업-임업(林業)/*사법-법제(法制)

43)김종서 · 남지 · 윤형 · 김효성 · 안지 · 이변 · 조수량 · 김문기 · 김연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종 123권, 31년(1449 기사/명 정통(正統) 14년) 2월 1일 임자 2번째기사

김종서(金宗瑞)를 의정부 우찬성 지춘추관사 겸 판병조사(知春秋館事兼判兵曹事)로 삼고, 남지(南智)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윤형(尹炯)을 공조판서로, 김효성(金孝誠)을 지중추원사로, 안지(安止)를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변(李邊)을 형조참판으로, 조수량(趙遂良)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문기(金文起)를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로, 김연지(金連枝)를 겸지형조사로 삼았다.

임금이 권제 · 안지(安止) 등의 편찬한 《고려사(高麗史)》가 보태고 깎은 것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개찬(改撰)하기를 명하였는데, 이때 안지가 지춘추관사로 있다가 종서로 대신하게 하였다. 윤형은 대사간이 되어 하는 일 없이 보기만 하고 건백(建白)하는 바가 없었다. 일찍이 동렬(同列)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다가, 임금이 힐문(詰問)하게 되자, 처음에는 의논한 것과 같지 아니한 듯하여, 동렬들이 근심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판서에 오르매, 스스로 잘 되었다고 여겼다.

겸판이조사(兼判吏曹事) 박종우(朴從愚)는 농장이 통진(通津)에 있었다. 이극효(李克孝)가 일찍이 현감이 되어 부역(賦役)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므로, 종우(從愚)가 원망하더니, 극효가 중시(重試)에 올라, 고(考)가 차지 아니해서 경관(京官)으로 뽑히고, 인해사헌 감찰이 되었다.

극효(克孝)가 방주(房主)가 되었으니, 으레 5품에 오르는 것이 마땅한데, 종우가 해주판관(海州判官)으로 나가게 하매, 극효가 어버이가 늙으면 먼 지방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법에 의거하여 말을 올려서, 고치기를 명하니, 이에 이르러 종우가 성균주부(成均注簿)로 강등 제수시켰다.

【영인본】5책 117면 【분류】*인사-임면(任免)/*인물(人物)/*역사-편사(編史)

44) 김포현(金浦縣)

지리지/경기/부평 도호부/김포현

영(令) 1인. 본래 고구려의 금포현(黔浦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장제군(長堤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현종(顯宗) 무오에 이내 수주(樹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명종(明宗) 임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신종(神宗) 원년 무오에 왕(王)의 태(胎)를 현(縣) 땅에 묻고 현령관(縣令官)으로 승격시켰다.

본조 태종(太宗) 갑오 8월에 양천현(陽川縣)을 혁파하여 본현(本縣)에 합치고, 금양현(金陽縣)이라 하다가, 10월에 다시 양천을 금천(衿川)에 합치고, 김포현은 혁파하여 부평부(富平府)에 붙이었다가, 병신 7월에 다시 현령을 두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천에 이르기 15리, 서쪽으로 통진(通津)에 이르기 20리, 남쪽으로 부평에 이르기 7리, 북쪽으로 한강[大江]에 이르기 15리이다.

호수가 3백 18호, 인구가 6백 51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2명, 선군(船軍)이 59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정(鄭)·장(蔣)·금(琴)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안(安)이며, 촌성(村姓)이 1이니, 공(公)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기후는 바다가 가까와서 일찍 따뜻해진다.

간전(墾田)이 3천 32결(結)이요, 【논과 밭이 반반이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조·수수·팥·녹두·메밀·뽕나무·삼[麻]이다. 어량(魚梁)이 1곳이요, 【숭어·민어·골·미네굴이 난다.】 염소(鹽所)가 2곳이다. 봉화가 2곳이니, 주산(主山)과 【서쪽으로 통진(通津) 주산(主山)에 응하고, 동쪽으로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에 응한다.】 백석산(白石山)이다.

현(縣) 서쪽에 있다. 【북쪽으로 통진(通津) 약산(藥山)에 응하고, 남쪽으로 부평 싸리꽃이[杜車]에 응한다.】 조도(助島)【현(縣) 북쪽 강(江) 가운데에 있는데, 선공감(繕工監)의 풀갓[草場]이다.】

【영인본】5책 622면

45)통진현(通津縣)

지리지/경기/부평 도호부/통진현

본래 고구려의 평유압현(平唵鴨縣)인데, 신라가 분진(分津) 【일명(一名) 북사성(北史城)】으로 고쳤고,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수안현(守安縣)은 본래 고구려의 수이홀(首爾忽)인데, 신라가 술성현(戌城縣)으로 고쳤고,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동성현(童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동자홀현(童子忽縣) 【일명(一名) 동산현(童山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위의 3현이 신라 때에는 모두 장제군(長堤郡)의 영현(領縣)이 되었고, 고려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수주(樹州) 임내(任內)에 붙어 있었다가, 공양왕(恭讓王) 3년 신미에 비로소 통진감무(通津監務)를 두어 수안(守安)과 동성(童城)을 이에 붙였고, 본조 태종(太宗)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김포(金浦)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갑곶이[甲串]에 이르기 5리, 남쪽으로 부평에 이르기 26리, 북쪽으로 조강(祖江)에 이르기 7리이다. 호수가 4백58호, 인구가 9백71명이요, 군정(丘丁)은 시위군(侍衛軍)이 6명, 선군(船軍)이 1백 단(單) 10명이다.본현(本縣)의 토성(土姓)이 2이니, 석(石)·강(康) 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양(梁)이며, 없어진 차성[亡次姓]이 2이니, 길(吉)·종(宗)이요, 망래성(亡來姓)이 1이니, 이(李)이며, 없어진 촌성[亡村姓]이 1이니, 구(仇)이다. 수안현(守安縣)의 성(姓)이 3이니, 윤(尹)·이(李)·안(安)이요, 내성(來姓)이 1이니, 오(吳)이며, 망성(亡姓)이 1이니, 진(陳)이다. 동성현의 성(姓)이 4이니, 노(盧)·우(祐)·부(附)·이(異)요, 내성(來姓)이 2이니, 강(康)·백(白)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간전(墾田) 이 5천 3백 61결(結)이다.【논이 조금 많다.】 토의(土宜) 는 벼·조·기장·콩·팥·메밀이요, 토공(土貢) 은 지초(芝草) 이며, 약재(藥材)는 사자발쑥이다. 염소(鹽所)가 3곳이요, 어량(魚梁)이 2곳이다. 【주로 숭어·참치·미네굴·쌀새우[白蝦]가 난다.】

조강(祖江)은 현(縣) 북쪽에 있다. 【나룻배가 있다. 황대구[黃大魚]가 나는데, 〈이 고기는〉 다른 곳에는 없으므로 선덕(宣德) 때에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 와서 구해 갔다.】 봉화가 2곳이니, 주산(主山)과 【동쪽으로 김포(金浦) 주산(主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강화(江華) 송악(松岳)에 응한다.】 약산(藥山)이다. 현(縣) 남쪽에 있다. 【서쪽으로 강화 할미성[大母城]에 응하고, 남쪽으로 김포 백석산(白石山)에 응한다.】

【영인본]5책 624면

46)상호군 김시우를 보내 주본 3통을 받들고 북으로 가게 하다

- 세종 33권, 8년(1426 병오/명 선덕(宣德) 1년) 7월 1일 임진 6번째기사

47)명나라에 보낸 마적 · 여아 · 다반을 지을 줄 아는 부녀에 대한 주본

- 세종 37권, 9년(1427 정미/명 선덕(宣德) 2년) 7월 20일 병오 4번째기사

48)충청 감사 정인지가 흉년 구제의 방책을 올리다

- 세종 74권, 18년(1436 병진/명 정통(正統) 1년) 7월 21일 갑인 2번째기사

49)찬성 신개가 헌릉의 비문에 무인년 기사의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상언하다

- 세종 82권, 20년(1438 무오/명 정통(正統) 3년) 9월 25일 병오 1번째기사

50)의정부가 공법의 편의성에 대해 아뢰다

- 세종 90권, 22년(1440 경신/명 정통(正統) 5년) 7월 13일 계축 5번째기사

51)경기(京畿)

- 지리지/경기

52)부평 도호부(富平都護府)

- 지리지/경기/부평 도호부

53)강화 도호부

- 지리지/경기/강화도호부

54)양천현

- 지리지/경기/부평도호부

4. 문종실록

1)의정부에서 봄 · 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문종 3권, 즉위년(1450 경오/명 경태(景泰) 1년) 9월 19일 경신 8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各道)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常所]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都會)의 읍(邑)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郡縣)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雜物)을 수송 운반하는 즈음에는 온 경내(境內)가 소요(騷擾)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端)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都會)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 · 가을에 1도(道)의 1도회(都會)에서 염초(焰硝)를 구워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休息)하도록 하소서.

경기(京畿)는 양천(陽川) · 김포(金浦) · 통진(通津) · 강화(江華) · 교동(喬桐)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이(便易)하고, 과천(果川) · 금천(衿川) · 인천(仁川) · 고양(高陽) · 부평(富平) · 안산(安山)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표국(司豹局)에 흙을 운반하게 하고, 〈본문중략〉

또 흙을 가져올 적엔 공해와 사사(寺社) · 원관(院館)을 제외하고는 민호(民戶)에게서 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소목(燒木)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비하여 운반해 바치게 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軍器監)에서 미리 병조(兵曹)에 보고하고는 차례에 당한 도회(都會)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농한기(農閑期)에 소속된 각 고을로 하여금 수량에 의하여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都會所)의 수령(守令)이 미리 먼저 조치(措置)하지 못하여도 또한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取土匠)이 선물(膳物)을 받고자 공무(公務)를 핑계하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다단(多端)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들도 또한 흙을 운반하는 일을 꺼려서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을 던지 버리고는 도회소(都會所)에 와서 쓸모가 없는 잡토(雜土)를 가지고 속여서 바치려고 꾀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각 고을에서 일찍이 높은 직임(職任)을 지낸 강직(剛直)하고 명민(明敏)한 품관(品官)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친히 취토(取土)를 감독하여 봉함(封緘)해서 도회소

(鄰會所)로 압송(押送)하도록 하고, 그 작폐(作弊)한 장인(匠人)과 능히 고찰(考察)하지 못한 품관(品官)도 또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사(役事)의 기한은 봄에는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며, 염초(焰硝)의 많고 적은 것은 각도(各道)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을 비교 징험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품계(品階)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고, 가장 적은 사람은 핵문(劾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6책 285면 【분류】*군사-군기(軍器)/*군사-군역(軍役)/*공업-장인(匠人)

2)김포현령 주숙손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문종 5권, 즉위년(1450 경오/명 경태(景泰) 1년) 12월 9일 기묘 3번째기사

김포현령(金浦縣令) 주숙손(尙叔孫)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수령(守令)을 제수하는데는 반드시 정선(精選)을 더하여야 하지만, 간혹 그 직책에 마땅하지 아니한 자가 많다. 대개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쓴다면 거의 가(可)할 것이다. 너는 가서 삼가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6책 32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3)황해도 · 개성부 · 경기 등지의 악병이 전염된 곳에서 치제하게 하다

문종 9권, 1년(1451 신미/명 경태(景泰) 2년) 9월 20일 을묘 2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黃州) · 봉산(鳳山) 등 각 고을과 개성부(開城府), 그리고 경기(京畿)의 풍덕(豊德) · 원평(原平) · 교하(交河) · 통진(通津) 등지에 각종 악병이 전전하여 서로 전염되어 목숨을 잃는 자가 자못 많아서 장래가 염려됩니다.

옛사람들의 재앙이 급박하면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예에 의하여 위의 항목의 각처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전(奠)해 드릴 물품을 정결히 갖추도록 하고 조정 신하 중에서 근후(謹厚) 한 자를 택하여 황해도에 1인(人), 개성부와 풍덕에 1인, 원평 · 교하 · 통진에 1인을 나누어 보내고, 큰 고을에는 2 · 3개소, 작은 고을에는 1개소로 하되 각 마을 환자의 다소에 따라 임시(臨時)하여 날을 가려서 치제(致祭)하게 하고,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그 제문(祭文)을 짓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6책 438면 【분류】*보건(保健)

4)영의정부사 황희의 졸기

문종 12권, 2년(1452 임신/명 경태(景泰) 3년) 2월 8일 임신 1번째기사

5. 단종실록

1)명하여 김점의 고신을 도로 주게 하다

- 단종 10권, 2년(1454 갑술/명 경태(景泰) 5년) 3월 13일 갑자 2번째기사

명하여 김점(金漸)의 고신(告身)을 도로 주게 하였다. 김점은 일찍이 장죄(贓罪)를 범하여 김포현(金浦縣)에 안치(安置)되어 있었다.

【영인본】6책 677면 【분류】*인사-관리(管理)/*사법-형형(行刑.)

2)경기도 통진현의 여자가 벼락을 맞아 죽다

단종 14권, 3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6월 27일 신축 1번째기사

경기도 통진현(通津縣)의 여자 분지(粉之)와 분이(粉伊)가 벼락에 맞아 죽었으므로,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해괴제(解怪祭)를 지내게 하였다.

【영인본】7책 41면 【분류】*과학-천기(天氣)/*왕실-사금(賜祭)/*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6. 세조실록

1)경기 통진현 사람 봉산의 아내가 벼락에 맞아 죽으니 해괴제를 지내다

세조 1권, 1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윤6월 20일 갑자 3번째기사

경기(京畿) 통진현(通津縣) 사람 봉산(奉山)의 아내가 벼락에 맞아 죽으니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해괴제(解怪祭)를 지냈다.

【영인본】7책 65면 【분류】*과학-지학(地學)/*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2)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여 정종에게 매월 식량을 공급하도록 하다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8월 19일 임술 7번째기사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정종(鄭悰)을 통진(通津)으로 이배(移配)하니, 자기 농장(農莊)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허용하고, 전에 내린 유서(諭書)에 의하여 매월 양료(糧料)와 찬구(饌具)를 주도록 하라."

【영인본】7책 81면 【분류】사법-행형(行刑)/*반란-정변(政變)/*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재정-국용(國用)

3)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시킬 것을 청하다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9월 11일 계미 4번째기사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연해(沿海)의 요해지(要害地)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近方)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1. 경기(京畿)의 광주도(廣州道)는 그 중익(中翼)을 광주(廣州)·이천(利川)·양근(楊根)·양지(陽智)로 하고, 좌익(左翼)은 여흥(驪興)·천녕(川寧)·지평(砥平)·음죽(陰竹)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안성(安城)·진위(振威)·양성(陽城)·용인(龍仁)·죽산(竹山)으로 합니다. 다음 양주도(楊州道)는 그 중익을 양주(楊州)·원평(原平)·포천(抱川)·적성(積城)·가평(加平)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朔寧)·마전(麻田)·영평(永平)·연천(漣川)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豊德)·장단(長湍)·임진(臨津)·임강(臨江)으로 합니다. 다음 부평도(富平道)는 그 중익을 부평(富平)·인천(仁川)·양천(陽川)·금천(衿川)·고양(高陽)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과천(果川)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金浦)·교하(交河)·통진독진(通津獨鎭)·교동(喬桐)·강화(江華)·개성부(開城府)로 합니다. 〈본문중략〉

【영인본】7책 86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군사-군정(軍政)/*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4)사헌부에서 아전을 다스리지 못한 통진현감 송경의 파직을 청하다

세조 4권, 2년(1456 병자/명 경태(景泰) 7년) 5월 8일 병자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통진(通津)의 아전 득성(得成)·계산(繼山)등이 관가의 위엄을 빌어서 가난한 백성들을 침해하여 5호(五戶)를 유리(流離)하게 하였으며, 또 계산(繼山)이 양가(良家)의 딸과 관가의 계집종을 첩으로 삼아 거리낌없이 방자한 행동을 하여도 현감 송경(宋瓊)은 느리고 혼미(昏迷)하여 능히 제어(制御)하지 못하니, 청컨대 직책을 파면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송경이 안악 군사(安岳郡事)에서 통진으로 옮겨 임용되었는데, 그가 안악에 있을 때 고과(考課)에서 연달아 세 번 중(中)이었으니, 으레 파면되어야 하였으나 아들 송익손(宋益孫)이 〈정난(靖難)〉 공신인 까닭에 파면되지 않았었다.

【영인본】7책131면 【분류】*인사-관리(管理)/*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행형(行刑)/*호구(戶口)

5)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조 7권, 3년(1457 정축/명 천순(天順) 1년) 3월 23일 병술 4번째기사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를 가지고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에게 내려주고, 이유(李瑜)의 당진(唐津)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당진(唐津) 전지·양주(楊州) 전지는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에게 내려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에게 내려주고, 아지(阿只)·권자신(權自愼)·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윤영손(尹令孫)의 홍주(洪州) 전지, 권저(權苧)의 풍기(豊基) 전지는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내려 주고, 〈본문중략〉

유응부(兪應孚)의 포천(抱川)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김포(金浦) 전지는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본문중략〉 만약 가사(家舍)가 있는 곳에는 아울러 가재(家財)도 내려 주었다.

【영인본】7책 186면 【분류】*왕실-사급(賜給)/*왕실-종친(宗親)/*변란-정변(政變)/*농업-전제(田制)

6)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 · 좌익 · 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다

세조 9권, 3년(1457 정축/명 천순(天順) 1년) 10월 20일 경술 2번째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익(中翼) · 좌익(左翼) · 우익(右翼)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 〈본문중략〉

경기(京畿)의 수원진(水原鎭)에는 부평(富平) · 인천(仁川) · 금천(衿川) · 안산(安山) · 남양(南陽) · 진위(振威) · 안성(安城) · 양성(陽城)을 속하게 하고, 광주진(廣州鎭)에는 양근(陽根) · 지평(砥平) · 천녕(川寧) · 여흥(驪興) · 음죽(陰竹) · 죽산(竹山) · 이천(利川) · 양지(陽智) · 용인(龍仁)을 속하게 하며, 양주진(楊州鎭)에는 연천(漣川) · 마전(麻田) · 적성(積城) · 원평(原平) · 교하(交河) · 고양(高陽) · 수평(水平) · 포천(抱川) · 가평(加平)을 속하게 하며, 강화진(江華鎭)에는 김포(金浦) · 양천(陽川) · 통진(通津) · 교동(喬桐)을 속하게 하며, 개성진(開城鎭)에는 삭녕(朔寧) · 임진(臨津) · 풍덕(豐德)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본문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7책 230면 【분류】*군사-군정(軍政)/*군사-지방군(地方軍)/*군사-관방(關防)

7)까닭없이 아내를 버린 송현정 이견신을 외방에 유배시키다

세조 13권, 4년(1458 무인/명 천순(天順) 2년) 7월 29일 갑인 5번째기사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송현정(松峴正) 이견신(李堅信)이 까닭없이 아내를 버리고 통진(通津)의 집으로 보냈다가, 일이 발각되어 혁문하게 되자, 죄책을 면하려고 일찍이 제품(啓稟)하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통진(通津)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청컨대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니, 명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유배(流配)하게 하였다.

【영인본】7책 288면 【분류】*사법-징형(懲刑)/*인사-관리(管理)/*풍속-예속(禮俗)/*물리(物理)

8)병조에서 전국의 역의 정비에 대한 일로 아뢰니 따르다

세조 19권, 6년(1460 경진/명 천순(天順) 4년) 2월 5일 임자 4번째기사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여러 역(驛)에 역승(驛丞)을 없애고 찰방(察訪)을 두고서 혹은 한 도, 두 도, 세 도, 네 도를 아울러서 하나의 도로 하였으나, 역로(驛路)가 너무 멀어서 때때로 순시(巡視)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마(驛馬)를 타고 왕래하는 자가 한 도라고 생각하여 원근(遠近)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수일정(數日程)을 달려서 지나가다가 인마(人馬)가 함께 곤폐(困弊)하여지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경기(京畿)와 하삼도(下三道) 여러 역(驛)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도를 나누소서. 경기(京畿)의 중림도(重林道) 소관(所管)인 인천부(仁川府)의 중림역(重林驛)·경신역(慶新驛), 금천현(衿川縣)의 반유역(盤乳驛), 양천현(陽川縣)의 남산역(南山驛), 통진현(通津縣)의 종생역(種生驛), 부평부(富平府)의 금륜역(金輪驛), <본문중략> 창락도(昌樂道)의 소관(所管)인 7역(驛)과 안기도(安奇道)의 소관(所管)인 12역(驛)을 합하여 한 도로 하고, 안기도(安奇道)라고 칭하여 본도(本道)의 찰방(察訪)으로써 옛날 그대로 이를 맡아 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면】7책 367면 【분류】*교통-육운(陸運)/*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9)경기 관찰사 이극배가 김포현의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세조 24권, 7년(1461 신사/명 천순(天順) 5년) 4월 11일 신사 3번째기사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극배(李克培)가 와서 아뢰기를, "김포현(金浦縣) 걸포(乞浦)의 묵은 땅을 당번선군(當番船軍)을 부려서 경종(耕種)하는데, 지금 씨 뿌리는 것이 이미 늦어서 능히 다 갈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 선군(船軍)을 부리면 농우(農牛)와 기계(器械)가 없으니, 청컨대 근방의 백성으로 소 있는 자를 징발하여 모아서 이를 갈게 하고, 관청에서 구량(口糧)을 준다면 역사(役事)가 불과 하루나 이틀이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다만 가을이 되어서 얻는 바가 그 소비한 것을 보상하지 못할까 염려된다."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그 수확이 많고 적은 것은 신(臣)이 감히 추축하여 헤아리지 못하니, 마땅히 돌아가서 노농(老農)과 더불어 숙의(熟議)하여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정(民丁)을 부리되, 먹이지는 말라."하였다.

【영인본】7책 459면 【분류】*농업-개간(開墾)/*재정-역(役)

10)처남의 처를 아내로 삼은 최부의 고신을 거두고 평안도 강계부로 사민하다

세조 28권, 8년(1462 임오/명 천순(天順) 6년) 6월 14일 정축 1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김포(金浦)사람 검호군(檢護軍) 최부(崔富)는 그 처남(妻男)의 처(妻)를 간통하고, 인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온 가족을 평안도 강계부(江界府)에 옮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7책 539면 【분류】*윤리(倫理)/*사[illegible]-[illegible](裁判)

11)구주의 올적합 상호군 김포요마 등을 본처도 만호 등으로 삼다

세조 30권, 9년(1463 계미/명 천순(天順) 7년) 2월 28일 정해 1번째기사

구주(兀州)에 사는 올적합상호군(兀狄哈上護軍) 김포요마(金浦要麻)를 본처 도만호(本處都萬戶)로 삼고, 사지(斜地)에 사는 올량합지휘(兀良哈指揮) 임다내(林多乃)를 본처부만호(本處副萬戶)로 삼고, 보아하하다(甫兒河何多)에 사는 올량합 상호군(兀良哈上護軍) 임시음두(林時乙豆)를 본처 도만호(本處都萬戶)로 삼았다.

【영인본】7책 568면 【분류】*외교-이민(異民)/*인사-임면(任免)

12)호조가 경기 김포 등의 노적을 강경에 조운하여 배로 바꿀 것을 청하다

세조 32권, 10년(1464 갑신/명 천순(天順) 8년) 1월 23일 병자 2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김포(金浦)·봉진(通津)의 국둔전(國屯田)에서 생산된 도적(稻穧) 4천20석을 강변(江邊)에 노적(露積)했는데, 만일 봄에 물이 불어 넘치면 반드시 젖어서 훼손(毁損)될 것이니, 청컨대 경강(京江)에 조운(漕運)하여 시가(時價)에 따라 베[布]와 바꾸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7책 606면 【분류】*농업-전제(田制)/*교통-수운(水運)

13)호조가 국둔전의 수확이 끝나지 않은 김포 현령을 체임하지 말 것을 청하다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명 천순(天順) 8년) 12월 5일 갑신 4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김포현령(金浦縣令) 김원효(金元孝)가 국둔전(國屯田)을 관리하다가, 지금 수확(收穫)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임(解任)되었으니, 둔전(屯田)의 소출(所出)이 반드시 축나기에 이를 것이고, 또 전최(殿最)에 재차 중등(中等)인 자를 파임(罷任)하는 법(法)도 없으니, 청컨대 체임(遞任)하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7책 661면 【분류】*인사-임면(任免)/*인사-수령(守令)/*농업-전제(田制)

14)경기 관찰사 심선의 김원효 파출에 관한 상소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명 성화(成化) 1년) 3월 4일 신해 2번째기사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심선(沈瑄)이 글로써 아뢰기를, "김포현령(金浦縣令) 김원효(金元孝)는 본시 재덕(才德)이 없고, 한갓 교언(巧言)으로써 의세(依勢)하여, 이미 근근(謹謹)하지 않은데다 또 염치(廉恥)마저 없어, 백성에게 횡렴(橫斂) 하여 백성의 원망이 많으니, 청컨대 파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7책 675면 【분류】*인사-임관(任官)/*인물(人物)

15)사헌부에서 자격없는 관리를 서용한 이조 관리를 국문할 것을 건의하다

세조 35권, 11년(1465 을유/명 성화(成化) 1년) 3월 5일 임자 1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영동수령(永同守令)·단성수령(丹城守令) 등은 개월(箇月)이 차지 아니했는데도 까닭없이 개차(改差)하였고, 김포현령(金浦縣令) 김원효(金元孝)는 고과(考課) 성적이 연달아 중(中)이므로 산직(散職)으로 돌려야 마땅한데, 호조(戶曹)에서 둔전(屯田)을 다 거둔 뒤에야 체직할 것을 아뢰었다고 이조(吏曹)에서 지금까지 개차(改差)하지 않았으며, 용강현령(龍岡縣令) 강혼(姜渾)은 전년에 순안현령(順安縣令)에서 파직되었으며 무재(武才)를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급급히 먼저 서용(敍用)하였으니, 청컨대 이조(吏曹)의 관리를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바는 진신로 옳으나, 공사(公事)를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듯하니, 너희들은 그 정상을 알아서 다시 아뢰라."하였다. 당시에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사사로이 친압한 자를 천용(薦用)한 까닭으로 이런 명(命)이 있었다.

【영인본】7책 675면 【분류】*인사(人事)/*농업-전제(田制)/*사법-탄핵(彈劾)

16)호조에서 제방을 수축하지 않은 수령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세조 37권, 11년(1465 을유/명 성화(成化) 1년) 11월 10일 갑인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다만 제방을 수축하는 법만 싣고 수축하지 못하는 자는 벌이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조금도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많이 이지러지고 무너지니, 청컨대 이제부터 견고하게 쌓지 않은 자는, 수령은 자급을 내리고 해당 아전과 감고(監考)는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강화(江華)·통진(通津)의 사람 가운데 배를 잘 부리는 자를 사지(事知)라 칭하여 조선(漕船) 때 한 척마다 각각 한 사람씩을 정하여 선군(船軍)을 통솔하고 조전(漕轉)하여서 경강(京江)에 이르러 실은 쌀을 배를 영수하는 자에게 주고 곧 빈 배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결손된 쌀은 배를 영수한 자에게서만 징수하므로 사지(事知)란 자가 도용을 많이 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매 한 척마다 사지 두 명을 정하여 좌번(左番)·우번(右番)으로 나누어서 좌번 사지는 경강에 이르러 배를 영수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 쌀을 바치고 우번 사지는 빈 배를 가지고 돌아가되, 만일 결손이 있으면 아울러 사지에게서 징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7책 712면 【분류】*교통-수운(水運)/*농업-수리(水利)/*정정-지방정정(地方行政)

17)선전관 정훈을 추국하게 하다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 성화(成化) 2년) 7월 4일 계유 2번째기사

사헌부에 전교(傳敎)하기를, "선전관(宣傳官) 정훈(鄭訓)이 외조부(外祖父) 임효인(任孝仁)의 첩을 간음(姦淫)했으니 그를 추국(推鞫)하여 아뢰라."하였다.

정훈(鄭訓)이 포대기 속에 있을 때부터 임효인(任孝仁)의 집에서 길렀는데, 임효인(任孝仁)이 연로(年老)하여 관음비(觀音婢)란 소첩(小妾) 이 있으니, 정훈이 간통(姦通)하였다.

인리(隣里)와 족당(族黨)에 소문이 퍼져서 왁자하게 그치지 않았으나 임효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어느 날 임효인이 그 첩으로 하여금 김포(金浦)의 촌장(村莊)에 가서 추수(秋收)를 보도록 하니, 첩이 말하기를, "첩(妾)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가는 것은 마음에 편안치 못하니, 청컨대 정훈(鄭訓)과 함께 가도록 해 주소서."하므로, 임효인이 그대로 따랐다.

마침내 함께가서 한 방에 같이 거처하면서 몇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추잡한 소문이 더욱 떠들었다. 그 후에 정훈이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는데, 병조(兵曹)에서 정훈이 행실이 좋지 않다고 하여 하고(下考)에 처하였다. 임금이 병조(兵曹)에 묻기를, "무슨 이유로써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병조에서 사실대로 대답했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었다.

【영인본】3책 29면 【분류】'윤리-사회기강(倫理-社會紀綱)'/'사법-재판(司法)

18)병조에서 군기를 상정하여 아뢰다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 성화(成化) 2년) 7월 12일 신사 5번째기사

병조(兵曹)에서 군기(軍器)를 상정(詳定)하여 아뢰기를, 〈본문중략〉

파주(坡州) · 고양(高陽) · 교하(交河) · 통진(通津) · 김포(金浦) · 양지(陽智) · 삭녕(朔寧) · 마전(麻田) · 영평(永平) · 용인(龍仁) · 진위(振威) · 양천(陽川) · 지평(砥平) · 포천(抱川) · 적성(積城) · 금천(衿川) · 천녕(川寧) · 연천(漣川) · 음죽(陰竹) · 음성(陰城) · 가평(加平) · 죽산(竹山) · 과천(果川) · 〈본문중략〉

에는 각기 향각궁(鄕角弓) 17장(張), 마전(磨箭) 9부(部), 통전(筒箭) 8부(部), 장창(長槍) 7자루, 중창(中槍) 10자루, 환도(環刀) 17파(把), 궁현(弓絃) 34개입니다. 이상의 군기(軍器)는 1년에 한 번 제조하는데, 기모는 2년 만에 한 번 제조합니다. 상공(上貢)하는 수량 외에는 모두 거진(巨鎭)에 간수해 두고, 갑주(甲冑)와 쟁(錚)과 고각(鼓角)은 다만 거진(巨鎭)에서만 제조하여 바치게 하소서."하였다.

【영인본】8책 32면 【분류】*군사-군기(軍器)

19)중 성묵이 자신의 손을 자른 중 극호를 잡아오니 국문하게 하다

세조 43권, 13년(1467 정해/명 성화(成化) 3년) 7월 8일 신미 2번째기사

중 성묵(性默)이 중 극호(克浩)를 잡아오니, 임금이 명하여 형조(刑曹)에 하옥시키고 그 당류(黨類)를 국문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성묵이 강포(强暴)하고 횡려(橫戾)하여 남의 재물을 겁탈하고 사람을 죽인 것도 매우 많았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괴로워하였었다.

김포현감(金浦縣監) 고태보(高台輔)가 성묵을 대접하니, 자못 그 뜻에 차지 않았으므로 성묵이 이로 인하여 나쁜 짓을 하니, 고태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몰래 유나승(維那僧) 극호(克浩) · 계철(戒哲) 등을 사주하여 잡아서 때리고 그 양손을 잘라 버렸다. 일이 발각되자, 고태보는 관직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극호 등도 또한 망명(亡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성묵이 장용대(壯勇隊) 김영춘(金永春)과 같이 이를 잡아서 고발(告發)하였다.

【영인본】8책 95면 【분류】*윤리(倫理)/*사법-행헌(行刑)/*사상-불교(佛敎)

20)부평 · 통진 등지의 수령에게 범 잡을 때의 몰이꾼을 가려 붙이게 하다

세조 45권, 14년(1468 무자/명 성화(成化) 4년) 2월 16일 정미 2번째기사

부평(富平) · 통진(通津) · 김포(金浦) · 강화(江華) 등 고을의 수령(守令)에게 유서(諭示)하기를, "행첨지사(行僉知事) 오자경(吳子慶)의 말을 듣고, 강화(江華) 등지에서 범을 잡을 때의 구군(驅軍)을 가려서 붙여라."하였다.

【영인본】8책 161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21)11일에 홍복산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며 명나라 사신을 위로하려 하다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 성화(成化) 4년) 5월 7일 병인 1번째기사

임금이 장차 11일에 홍복산(洪福山)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며 명(明)나라 사신을 맞아 위로하려고 하여,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경기(京畿)의 양주(楊州) · 광주(廣州) · 포천(抱川) · 적성(積城) · 장단(長湍) · 파주(坡州) · 고양(高陽) · 양천(陽川) · 과천(果川) · 금천(衿川) · 양근(陽根) · 용인(龍仁) · 부평(富平) · 김포(金浦) · 통진(通津) · 영평(永平) · 연천(漣川) 등의 고을에 치서(馳書)하게 하기를, "재인(才人)과 백정(白丁) 등을 불러 모아라."하였다.

【영인본】8책 183면 【분류】*왕실-순행(行幸)/*외교-명(明)

7. 성종실록

1)호조에서 신하들의 진언 가운데에 행할 만한 것을 가려 아뢰다

성종 3권, 1년(1470 경인/명 성화(成化) 6년) 2월 24일 계유 5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진언(陳言)한 가운데에 행할 만한 조건(條件)을 아뢰기를,

1. 여러고을[邑]에서 공납(貢納)하는 금은 취련(吹鍊)하는 폐단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그 수를 양감(量減)하소서.

1. 경기(京畿)의 여러 고을의 긴절하지 않은 공물(貢物)은, 청컨대 임시로 감하소서.

1. 고을마다 양잠(養蠶)하는 것이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뽕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 도회(都會)를 베풀어 기르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사창(社倉)을 맡아서 지키는 자가 제마음대로 거두고 흩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니, 청컨대 혁파하소서.

1. 통진(通津) 등 여러 고을의 국둔전(國屯田)을 백성이 누구든지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세금(稅金)을 거두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8책 472면 【분류】*재정-공물(貢物)/*재정-창고(倉庫)/*농업-전제(田制)/*농업-양잠(養蠶)/*정론(政論)

2)호조에서 영릉·광릉의 경역 안에 있는 밭을 보상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성종 4권, 1년(1470 경인/명 성화(成化) 6년) 3월 10일 기축 4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영릉(英陵)·광릉(光陵)의 도국(圖局)안에 경작을 금한 밭과 수호군(守護軍)에게 전급(折給)한 밭이 모두 백성의 밭이니, 사리가 마땅히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컨대 통진(通津)·김포(金浦)의 국둔전(國屯田)으로 결복(結卜) 에 준(准)하여 보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8책 479면 【분류】*농업-전제(田制)/*왕실-종사(宗社)

3)예조에서 궁핍하여 시집을 못가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청하다

성종 9권, 2년(1471 신묘/명 성화(成化) 7년) 2월 27일 경오 2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광주(廣州)에서 사는 이계유(李季裕)·남양(南陽)에 사는 박신(朴愼)과 통진(通津)에 사는 선처공(宣處恭)은 딸이 장년(壯年)이 되었으나 집안이 궁핍하여 시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자장(資裝)을 지급하여서 제때에 시집가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8책 556면 【분류】*왕실-사법(法制)/*풍속-예속(習俗)

4)사헌부 대사헌 서거정 등이 금주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성종 28권, 4년(1473 계사/명 성화(成化) 9년) 3월 6일 병신 4번째기사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전일 본부(本府)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금주(禁酒)를 시행하기를 청하여 금령(禁令)이 처음 내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알아서 금령을 범하는 자가 적었었는데, 곧 사후(射侯)하는 자에게는 금하지 말라고 명하시매, 이때부터 술 마시는 일이 시작되어, 한가히 노는 시정(市井)의 무리가 사후를 핑계 삼아 모여서 술을 마시므로, 본부에서 날마다 단속하기는 하나, 궁시(弓矢)를 지닌 자는 금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난해의 홍수·가뭄·바람의 재해는 여러 도가 다 그러하나 경기(京畿)가 더욱 심하여, 지금 인천(仁川)·안산(安山)·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양천(陽川) 등에 사는 백성은 자산(資産)을 모두 팔아도 자급(自給)하지 못하여 오로지 진대(賑貸)에 의존하므로 기아(飢餓)가 잇달으며, 경중(京中)의 시가(市價)로는 면포(綿布) 1단(端) 의 값이 쌀 4두(斗)도 못되는데, 도시에 사는 백성은 어찌 다 집집이 넉넉하겠습니까마는, 습속(習俗)이 사치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주찬(酒饌)을 낭비하여 스스로 탕진하니, 금령이 엄하지 않으면 폐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추수 때까지는 무부(武夫)의 사후 때에도 모두 술을 금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9책 12면 【분류】*사법-법제(法制)/*물가-물가(物價)/*농업-농작(農作)

5)경기 관찰사 김양경이 도내의 충재 현황을 보고하다

성종 32권, 4년(1473 계사/명 성화(成化) 9년) 7월 22일 신해 6번째기사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김양경(金良璥)을 불러서 도내(道內)의 충재(蟲災)를 묻으니, 김양경이 아뢰기를, "신(臣)이 통진(通津)·김포(金浦)·금천(衿川)·교하(交河)·고양(高陽) 등의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충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근래 듣건대, 광주(廣州) 등지의 고을에는 처음으로 충재가 있었다 합니다.

구황(救荒)하는 여러가지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초식(草食)은 신(臣)이 이미 포치(布置)하였고, 그 나머지 구황(救荒)하는 잡물(雜物)은 신이 마땅히 가을철을 기다려서 다시 아뢰겠습니다."하므로, 전지하기를, "경(卿)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조치(措置)하라."하였다.

【영인본】9책 41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농업-농작(農作)

6)동지사 이승소가 흉년을 이유로 개성부의 능을 참배하는 것을 정지할 것을 청하다

- 성종 33권, 4년(1473 계사/명 성화(成化) 9년) 8월 11일 경오 4번째기사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금년은 기후(氣候)가 순조롭지 못하고 풍세(風勢)가 이상함을 보아 기근(飢饉)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대저 황해도(黃海道)의 병폐는 시절이 고르고 풍년이 들면 조금 가라앉을 것이나, 흉년이 되어 기근이 들면 크게 일어나 그 기세의 편침이 개성부(開城府)와 파주(坡州) 등지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지금 능(陵)을 알현(謁見)하기 위하여 개성(開城)에 거둥하고자 하시는데, 즉위(卽位) 초에 능을 배알함은 폐지할 수 없으나, 금년의 기후가 이와 같으니, 신(臣)의 생각으로는 능의 배알을 정지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해에 능을 참배하고자 했으나 흉년이 들어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 풍기(風氣)의 순조롭지 못함이 과연 말한 바와 같다면, 마땅히 천천히 결정하겠다."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유(金紐)가 아뢰기를, "실농(失農)한 제읍(諸邑)은 이미 군사를 징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신이 근자에 경기 관찰사의 서장(書狀)을 보니, 김포(金浦) 등 7고을은 이미 실농하였고, 그 나머지 제읍은 만약 때에 맞추어 구황(救荒)하지 않으면 또한 기근을 면치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상(院相)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하였다.

【영인본】9책 53면 【분류】*왕실-경연(經筵)/*왕실-의식(儀式)/*농업-농작(農作)/*구휼(救恤)/*과학-천기(天氣)

7)김사원 등 4인은 체임할 때 준직하고 홍긍 등 9인은 높은 등급으로 옮기게 하다

성종 34권, 4년(1473 계사/명 성화(成化) 9년) 9월 26일 갑인 2번째기사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수원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김사원(金嗣源)·남양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 민효남(閔孝男)·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 김원윤(金元潤)·강화도호부사(江華都護府使) 신윤중(申允宗)은 체임(遞任)할 때에 준직(准職)하고, 안산군수(安山郡守) 홍긍(洪矜)·고양군수(高陽郡守) 박숙무(朴叔楙)·양천현령(陽川縣令) 박준(朴儁)·과천현감(果川縣監) 김인문(金仁門)·통진현감(通津縣監) 안요경(安堯卿)·금천현감(衿川縣監) 안근(安謹)·김포현감(金浦縣監) 한숙륜(韓叔倫)·교동현감(喬桐縣監) 김수(金洙)·교하현감(交河縣監) 하맹순(河孟詢)은 체임할 때에 우등(優等)으로 옮기게 하라."하였으니, 진휼사(賑恤使) 한명회(韓明澮)의 계달로써 이 명을 내린 것이다.

【영인본】9책 62면 【분류】*인사-임면(任免)

8)정신석을 승정원으로 불러 와서 김용보의 죄상에 대해 묻도록 하다

· 성종 57권, 6년(1475 을미/명 성화(成化) 11년) 7월 12일 기미 3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정신석(鄭臣碩)과 김용보(金用寶)를 오게 해서 면질(面質)하도록 청합니다."하니,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정신석(鄭臣碩)은 전교(傳敎)를 받들어 부정(不正)을 적발했는데도, 죄수(罪囚)와 빙문(憑聞)하는 일은 적당하지 못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신석(鄭臣碩)을 승정원으로 불러 와서 묻도록 하니, 정신석이 아뢰기를, "김용보(金用寶)는 거도선(居刀船)㉞ 1척(隻)마다 각기 쌀 4, 5석(碩)과 죽피방석(竹皮方席)·피죽상자(皮竹箱子)·대죽 초둔(大竹草芚) 등 물건을 싣고서 김포(金浦)에 정박(停泊)하여 고양(高陽)에 있는 자기 첩(妾)의 집에 보내어 마당가에 쌓아 두었는데, 이 일은 첨지(僉知) 심응(沈膺)에게서 들었습니다.

김용보(金用寶)는 남포(藍浦)에 도착해서는 성문(城門)이 닫친 것을 틈개하여 현령(縣令)의 군관(軍官)을 가두니, 현령(縣令)이 노하여 김용보의 역마(驛馬) 4필로써 잡물(雜物)을 함부로 싣고, 또 2명의 여노(女奴)에게 남자 옷을 입혀 그대로 말을 타고 가서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려고 하다가 중지(中止)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신(臣)의 아들 충량(忠良)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臣)이 함께 기록하여 이를 아뢰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심응(沈膺)을 불러서 이를 묻어보겠다."하였다.

【원문】9책 241면 【분류】*사법-탄핵(彈劾)

9)심응이 부름을 받고 와서 김용보의 죄상을 아뢰다

성종 57권, 6년(1475 을미/명 성화(成化) 11년) 7월 13일 경신 2번째기사

심응(沈膺)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지난 5월 보름 때에 신(臣)이 김포(金浦)의 농사(農舍)에 가서 조선(漕船) 5, 60척(隻)이 포구(浦口)에 정박(停泊)한 것을 보고서 신(臣)이 조선지로감고(漕船指路監考)에게 묻기를, '사방에서 운반한 조선이 한 곳에 와서 정박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감고(監考)가 대답하기를, '이 곳에 경차관(敬差官)의 집이 있으므로 이 곳에 모였습니다.' 고 했습니다.

때마침 거도선(居刀船) 10여 척이 김용보(金用寶) 집으로부터 왔는데, 감고(監考)가 말하기를, '배 1척마다 모두 죽피방석(竹皮方席)과 대죽초둔(大竹草芚) 등의 물건을 싣고 경차관(敬差官)의 집에 운반해 바쳤고, 쌀가루[米]도 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臣)이 호조참판(戶曹參判) 김양경(金良璥)과 겸판서(兼判書) 조석문(曹錫文)에게 말했습니다만, 그 '거도선(居刀船) 1척마다 쌀 4, 5석(石)을 싣고 있었다는 말과 피죽상자(皮竹箱子)·죽피방석(竹皮方席)·대죽초둔(大竹草芚) 등의 물건이 김용보(金用寶) 첩(妾)의 집 마당가에 쌓여 있었다는 말은 신(臣)은 사실 말하지 않았으니, 지로감고(指路監考)에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지로감고(指路監考)에게 물어서 아뢰라."하였다.

【영인본】9책 241면 【분류】*사법-단핵(彈劾)

10)김포현령 서한이 하직하니 인견하다

성종 79권, 8년(1477 정유/명 성화(成化) 13년) 4월 26일 계해 4번째기사

김포현령(金浦縣令) 서한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수령(守令)의 직책은 칠사(七事)에 지나지 않으니, 네가 가거든 힘써라."하였다.

【영인본】9책 454면 【분류】*인사-임면(任免)/*왕실-국왕(國王)/*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11)우승지 김승경이 통진 학생 허침이 말채찍으로 형의 종의 아내를 치다가 어린아이를 죽인 죄를 논하다

· 성종 97권, 9년(1478 무술/명 성화(成化) 14년) 10월 26일 갑인 1번째기사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右承旨) 김승경(金升卿)이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통진(通津)의 죄수인 학생(學生) 허침이 말채찍으로 형 허담(許惔)의 종[奴]의 아내를 때리다가 잘못하여 안고 있던 어린애를 죽인 죄는, 율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허침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어미를 때리다가 잘못하여 그 아이가 맞아서 죽이에 이르렀으며, 또 그 아이는 태어난 지 두어 달이 못되었으므로 물거품과 다름이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정한다면, 물거품에 견주어 가볍게 논할 수 없다."하니, 진산군(晉山君) 강희맹(姜希孟)·예조참의(禮曹參議) 이맹현(李孟賢)이 말하기를, "허침은 고(故) 정승(政丞) 허조(許稠)의 손자인데 허조에게는 다른 후사가 없으며, 또 허침은 그가 묘(墓)의 나무를 벤 것은 노여워하여 그 어미를 때리다가 잘못하여 어린애를 죽였으니, 그 정상을 용서할 만합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율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나, 다만 허정승에게 후사가 없게 할 수는 없으니, 사형(死刑)을 감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9책 658면 【분류】*사법-치안(治安)/*사법-재판(裁判)/*형정-의식(儀式)

12)지평 안선과 허침을 통진현에 보내 형옥과 불법한 일을 살피게 하다

· 성종 98권, 9년(1478 무술/명 성화(成化) 14년) 11월 5일 임술 4번째기사

지평(持平) 안선(安瑄)을 경기(京畿) 수원부(水原府)에, 허침을 통진현(通津縣)에 보내어 형옥(刑獄)과 불법(不法)에 대한 일을 규찰하게 하였다.

【영인본】9책 660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재판(裁判)

13)사간 이숙문 등이 상벌의 공정하여야 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성종 100권, 10년(1479 기해/명 성화(成化) 15년) 1월 14일 신미 3번째기사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이숙문(李淑文)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상벌(賞罰)은 인주(人主)가 어세(馭世)하는 대권(大權)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로 혹 마땅함을 잃으면 권징(勸懲)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자에 수원부사(水原府使) 남청 · 안산군수(安山郡守) 김수말(金守末) · 통진현감(通津縣監) 유조(柳眺)는 모두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써 파직되었습니다.

최숙정(崔淑精)은 크고 작은 곡(斛)을 사용하여 제멋대로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고 하였으니, 그 죄가 큰데도 전하께서 그 사람만은 죄주지 않으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신 등은 법(罰)하심에 그 마땅함을 잃은 것으로 생각되니,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고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영인본]9책 688면 【분류】*정사-간쟁(諫爭)/*사법-단핵(彈劾)/*도량형(度量衡)

14)사간원에서 올린 양성지와 신정에 대한 탄핵안을 정승들과 의논키로 하다

성종 104권, 10년(1479 기해/명 성화(成化) 15년) 5월 1일 병진 1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임금이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에게 이르기를, "어제 간원(諫院)의 상소(上疏)를 여러 정승에게 보였는데, 정승은 보았는가 "하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원에서 양성지(梁誠之)와 신정(申淨)을 탐욕스럽고 혼탁하며, 청렴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이지마는, 대신(大臣)에게 아직 나타난 허물이 없는데, 한갓 외간(外間)의 물의(物議) 를 가지고 이를 탄핵한다면 뒷날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은 저들과 제배가 아니므로 무슨 일이 청렴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간의 물의는 있는 것입니다."하였다.

사정(司諍)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송(宋)나라 때에 어떤 한 간신(諫臣)이 말로써 대신을 배척(排斥)하였기 때문에, 대신이 간관(諫官)을 주의(注擬) 할 때에 반드시 사사로이 좋아하는 자를 간관이 되게 하여 자기의 우익(羽翼)을 삼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배척함에 따라 마침내 위태로운 풍속이 이루어졌으니, 진실로 편벽되게 외부의 논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은 말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간(諫)하는 자도 한 사람이 아니니,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하였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양성지는 성품이 본래부터 유약(懦弱)하여 능히 아랫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반드시 업신여길 것입니다.

하물며 공조(工曹)의 장인(匠人)은 무려 수백 명이나 되는데, 모두가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이니, 위엄이 있는 자가 아니면 능히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위엄이 있는 자를 가려서 그 직책을 맡게 하소서."하였고, 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은 말하기를, "신정은 재물이 누거만(累鉅萬)으로 부(富)가 일시(一時)에 극(極)했으니, 이(利)를 탐내어 속여서 얻은 자가 아니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장령(掌令) 안처량(安處良)은 말하기를, "양성지는 전교서(典校署)의 제조(提調)로 있은 것이 거의 30년이었는데, 서책(書冊)을 잘 팔아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통진(通津)에는 일찍이 한 이랑의 전토(田土)도 없었는데, 지금은 크게 농장(農場)을 개설하였으니, 이 또한 이(利)를 꾀하여 경영한 소치(所致)입니다. 또 신정

은 무릇 맡은 바 용무가 극히 정교(精巧)하나, 그가 더불어 사귀는 자는 모두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 또한 청렴하고 고요하게 근신(謹身)하는 자의 행위는 아닙니다."하였고, 대사간(大司諫) 성현(成俔)은 말하기를, "양성지는 그 자식을 위하여 관직을 구할 때에 반드시 수령(守令)으로 제수시켰으며, 일찍이 전교서(典校署)의 제조(提調)가 되었을 때에 그 관서(官署)의 종 박만(朴萬)을 여러 해 동안 부려먹기를 마치 그의 집 종[家]과 같이 한 바가 있었으니, 이러한 두어 가지 일로써도 징험 할 수 있습니다.

신정은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정원(政院)에 앉아서 종일(終日)토록 하는 바가 오직 구청(求請)하는 서간(書簡)만을 쓸 뿐이었습니다.

신정과 양성지는 모두 공신(功臣)의 반열(班列)에 있으니, 만약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법에 저촉이 되면 반드시 그 종말(終末)을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殿下)께서는 이들을 한가한 직책에 두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보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여러 정승들과 의논하겠다."하였다.

【영인본】10책 10면 【분류】*왕실-경연(經筵)/*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사법-탄핵(彈劾)/*정론-간쟁(諫諍)/*공업-장인(匠人)/*신분-천인(賤人) *역사-고사(故事)

15)횃불을 준비하지 않은 교동서원 조백공과 통진 호장을 처벌하다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명 성화(成化) 15년) 10월 14일 병신 3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교동서원(喬桐書員) 조백공(趙伯恭)과 통진호장(通津戶長) 사경(思敬)이 월개전(月介田) 거둥 때에 횃불을 이바지하지 아니하고 도피한 죄는 율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명하여 장(杖) 1백 대를 치게 하였다.

【영인본】10책 59면 【분류】*왕실-행행(行幸)/*사법-행형(行刑)

16)장령 이인석이 평안도 관찰사 김교를 다시 절도사로 서용할 것 등을 아뢰다

성종 119권, 11년(1480 경자/명 성화(成化) 16년) 7월 6일 갑신 3번째기사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인석(李仁錫)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심한(沈瀚)을 김교(金嶠) 대신으로 평안도(平安道)의 절도사(節度使)로 삼고, 김교를 관찰사(觀察使)로 삼았는데,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 등은 김교가 감사가 될 수 없고 심한이 또한 절도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평안도의 방어가 대단히 긴요한데, 김교는 오래 변방에 있어 군무를 고루 단련하였지마는 심한은 알지 못합니다. 또 한충인(韓忠仁)은 전에 충청도절도사(忠淸道節道使)가 되어 그 도의 수령과 혼인을 다투다가 파직되었고, 성품이 또 미치고 망령되니,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제수하였다가 대간이 탄핵하여 체임되었는데, 지금 창원부사(昌原府使)로 제수하였습니다.

고선경(高善慶)은 일찍이 전라도(全羅道)의 전세(田稅)를 감수(監收)하다가 장죄(贓罪)를 범하여 도망하였는데, 지금 통진현감(通津縣監)이 되었습니다. 강경손(康敬孫)은 벽단(碧團)의 병졸로서 갑자기 높은 직질(職秩)에 승진하여 지금 이산군수(理山郡守)가 되었으니, 그 관하의 군사는 모두 평소에 어깨를 나란히 하던 자들인데, 능히 복종하여 섬기겠습니까. 왕종신(王宗信)·김세적(金世勣)은 사사로운 죄를 범하고 파직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서용하였으니, 《대전(大典)》의 경년(經年)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고선경은 마땅히 개정하겠고, 다만 심한으로 김교를 대신한 것은 국가의 큰 정사이니, 대간의 알 바가 아니다. 한충인은 정승에게 의논하였고, 강경손은 전례를 상고하여 처리하였으며, 왕종신·김세적은 오로지 방어를 위한 것이다."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심한은 무략(武略)에 단점이 있고, 김교는 눈으로 글을 알지 못하니, 모두 사람과 관직이 서로 맞지 않는데, 사헌부에서 다만 김교가 험하고 평이한 것을 익히 안다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영인본】10책 147면 【분류】*인사-임면(任免)/*사법-법제(法制)/*사법-탄핵(彈劾)/*역사-사회(史學)

17)의금부에서 역적에 연좌된 사람을 안치 · 정속시킨 숫자를 기록하여 아뢰다

성종 125권, 12년(1481 신축/명 성화(成化) 17년) 1월 16일 신묘 3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역적에 연좌된 사람들을 그 족친이 보수(保授)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찬 자는 안치(安置)를 시키든지 혹은 여러 고을에 정속(定屬)시켜야 하므로, 그 숫자를 모두 기록하여 아룁니다. 역적 이시애(李施愛)의 첩의 딸 이비(李非)는 진도(珍島)의 관비(官婢)로 정속시키고, 〈본문중략〉

난신(亂臣) 김창손(金昌孫)의 아들 옥산(玉山)은 김포(金浦)의 관노로 정속시키고, 난신 노경손(盧敬孫)의 아들 말동(末同)은 장흥(長興)의 관노로 정속시키고,

〈본문중략〉

난신 이중순(李仲淳)의 삼촌 조카 말치(末致)는 하동에 안치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10책 187면 【분류】*사법-재판(裁判)/*사법-형정(行刑)/*가족-친족(親族)/*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신분-천인(賤人)

18)경기 진휼사 강희맹이 추종자가 많지 않았음을 아뢰자 송영을 추국토록 명하다

성종 138권, 13년(1482 임인/명 성화(成化) 18년) 2월 17일 병진 2번째기사

경기진휼사(京畿賑恤使) 강희맹(姜希孟)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과천(果川)과 금천(衿川) 등지를 본즉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이는 땔나무를 지다 팔아 양곡을 사서 생활을 꾸려 갑니다. 그래서 현재 굶주리는 기색이 없습니다만, 그 밖의 지역인 통진(通津)·부평(富平)·교동(喬桐)·강화(江華) 등 물가에 있는 군현(郡縣)들은 기근(飢饉)이 더욱 심합니다.

모름지기 양미(糧米) 20만 석이 있어야만 양맥(兩麥)이 익을 기간 동안 진휼할 수 있겠습니다. 또 김포(金浦) 등 물가에 사는 여러 군읍의 백성들이 와서 경창(京倉)의 환자미[還上米]를 받을 때에 그 관(官)에서 받은 환자미[還上米]를 가지고 가면서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경창의 조미를 거의 다 먹고 겨우 두서너 되[升]가 남습니다.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두서너 되의 양미(糧米)를 구하기 위하여 〈경창까지〉 오가는 폐단이 있으니, 모름지기 경창의 양미 20만 석을 관청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박(船舶)들을 동원하여 실어다가 물가에 쌓아두고 진휼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는 볍씨가 다 없어졌으니, 충청도에 요청하여 햇곡식을 다 먹기 전에 바꾸어서 운반하여 오도록 하여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을 〈진휼사로〉 파견한 것은 흉년을 구제하기 위함이지 폐단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듣건대, 경은 추종자들을 많이 인솔하고 가서 여러 군읍에 폐단을 끼친다고 하니,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하였다. 〈본문중략〉

경이 요청한 20만석을 지급하는 일과 조운(漕運)하여다가 나누어 주는 일과 곡식 종자의 다수를 〈충청도에서〉 무역하여 오는 인돌에 대하여는 속히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또 백성들이 혹은 굶주려서 죽거나 혹은 질병(疾病)으로 죽는 자들은 사망한 자의 수를 알지 아니할 수 없으니, 자세한 숫자를 알아내어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10책 300면 【본문】*인사-임면(任免)/*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구휼(救恤)/*재정-창고(倉庫)/*재정-국용(國用)/*교통-육운(陸運)/*교통-수운(水運)/*호구-호구(戶口)/*농업-권농(勸農)/*보건(保健)/*사법-재판(裁判)

19)진제미를 싣고 가다 죽은 자들의 수를 조사하도록 교동 현감 조복명에게 하교하다

성종 138권, 13년(1482 임인/명 성화(成化) 18년) 2월 29일 무진 4번째기사

교동현감(喬桐縣監) 조복명(趙復命)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듣건대 그 현에 사는 백성 40여 인이 통진현(通津縣)의 진제미(賑濟米) 3백여 석을 받아 가지고, 배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파선(破船)이 되어 빠져 죽은 자가 20여 인이 된다고 하니, 내가 매우 측은(惻隱)하게 여긴다.

그래서 특별히 빠져 죽은 사람의 처자(妻子)들을 진구(賑救)하려 하니, 자세한 수를 조사하여 기록해서 치계(馳啓)하라."하였다. 이는 호조 겸 판서(戶曹兼判書) 이극배(李克培)의 보고에 의한 것이었다.

【영인본】10책 304면 【분류】*교통-수운(水運)/*호구-호구(戶口)/*구휼(救恤)

20)경기 진휼사 권감이 돌아와 강화 · 김포 등의 고을에 볍씨가 부족함을 아뢰다

성종 140권, 13년(1482 임인/명 성화(成化) 18년) 4월 27일 을축2번째기사

경기진휼사(京畿賑恤使) 권감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비가 고르고 풍족하게 와서 양맥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교동(喬桐) · 강화(江華) · 김포(金浦) · 통진(通津) · 양천(陽川) 등의 고을은 볍씨[稻種]가 부족하니, 2천 석쯤 옮겨다가 주게 되면 거의 다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監司)가 〈그들에게〉 식량을 넉넉하게 주어서 그것으로 종자(種子)에 보태게 하려고 하였으나, 품지(稟旨)를 받지 못하여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양맥(兩麥)이 비록 무성하다고 하나, 어찌 그 유종(有終)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영인본】10책 329면 【분류】*인사-임면(任免)/*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노임-관노(官奴)/*농업-농작(農作)/*과학-천기(天氣)/*구휼(救恤)

21)경기 관찰사 이길보가 김포 · 교동 · 강화 · 통진의 빈궁한 자를 구휼하라고 아뢰다

성종 144권, 13년(1482 임인/명 성화(成化) 18년) 8월 24일 경신 3번째기사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길보(李吉甫)가 와서 아뢰기를, "바다 연안(沿岸)의 여러 고을이 거의 다 농사가 잘못되었는데, 김포(金浦) · 교동(喬桐) · 강화(江華) · 통진(通津)지방이 더욱 심합니다. 청컨대 경창(京倉)의 쌀을 내어서 빈궁(貧窮)함이 심한 자들을 가려 진휼(賑恤)하여서 구제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호조(戶曹)로 하여금 헤아려서 지급하게 하라."하였다.

이어서 묻기를, "금년의 농사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어떠하냐 "하니, 이길보가 말하기를, "논농사는 이미 희망이 없고, 밭곡식은 전년과 비슷합니다."하였다.

【영인본】10책 378면 【분류】*구휼(救恤)/*생활-창고(倉庫)/*농업-농작(農作)

22)도승지 노공필 등이 죄수 조검산 · 조순손 · 김선동의 형벌을 아뢰다

성종 149권, 13년(1482 임인/명 성화(成化) 18년) 12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都承旨) 노공필(盧公弼)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강화(江華) 죄수 백정(白丁) 조검산(趙檢山)이 이계륜(李季倫)의 집에 도둑질하고, 이계륜 등 네 사람을 쏘아 죽인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여석(金礪石)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통진(通津) 죄수 조순손(趙順孫)이 아비의 상(喪)을 당하여 기년(期年)안에 고기를 먹고 친어미를 구타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장수(長水) 죄수 양인(良人) 김선동(金善同)이 전도를 세 번 범한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였는데,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10책 417면 【분류】*강상-의식(儀式)/*사법-재판(裁判)/*윤리-강상(綱常)/*풍속-예속(禮俗)

23)홍문관 전한 김흔이 어버이를 뵈러 가니 술을 하사하다

성종 160권, 14년(1483 계묘/명 성화(成化) 19년) 11월 17일 병오 1번째기사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 김흔이 어버이를 뵈려고 말미[假]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경연관(經筵官)이 귀근(歸覲)하는 데에 말[馬]을 주는 예(例)가 없는가 김흔의 아비 김우신(金友臣)은 나의 어릴 때 사부(師傅)이다. 술 열 병을 하사하고, 또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하여금 음식물을 갖추어 주게하라."하였다. 김우신(金友臣)은 이때 통진현감(通津縣監)으로 있었다.

【원문】10책 544면 【분류】*정치-사급(賜給)/*인사-관리(管理)/*교통-육운(陸運)

24)승정원에 수리 도감 관원들에게 내리는 상사(賞賜)의 어서를 내리다

- 성종 171권, 15년(1484 갑진/명 성화(成化) 20년) 10월 4일 무오 2번째기사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수리도감도제조(修理都監都提調) 이극배(李克培)에게는 한 자급(資級)을 가하고 안장 갖춘 말 한 필을 내리며, 제조(提調) 한계순(韓繼純)·김겸광(金謙光)·정괄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가하고 양마(良馬) 한 필을 내리며, 와서 제조(瓦署提調) 성준(成俊)에게는 한 자급을 가하고, 〈본문중략〉 김포현령(金浦縣令) 김호(金岵)·영평현령(永平縣令) 김평(金枰)·포천현감(抱川縣監) 이철근(李鐵根)·제물만호(濟物萬戶) 황승조(黃承祖)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가하되 자궁(資窮)한 자는 대가(代加)한다. 와서별제(瓦署別提) 등은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고, 임중(林重)은 녹사(錄事)에 서용하되 국장도감(國葬都監)의 예(例)에 의하여 전의 등급으로 한다.

도감낭청(都監郎廳) 2등에게는 백록비(白鹿皮), 3등에게는 흑각궁(黑角弓), 4등에게는 대전(大箭)을 내리고, 화원 최경(崔逕)은 감역(監役) 벼슬에 올린다. 충의위(忠義衛) 1등에게는 호피(虎皮), 2등에게는 백록비, 3등에게는 적삼녹비(赤衫鹿皮), 4등에게는 각궁(角弓) 1정(丁)을 내린다.

산원(算員) 등은 벼슬을 올리고 서리(書吏)는 도목(都目)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거관(去官)한다. 감조(監造)인 공조낭청(工曹郎廳) 정숙돈(鄭叔暾)·성세명(成世明)·유익후(柳益厚)에게는 마장(馬粧)을, 의원(醫員) 세 사람에게는 대전(大箭)을, 다음 한 사람에게는 이마구(理馬具)를, 내관(內官) 이효자(李孝智)·김치선(金處善)은 말을 전하는 데 공이 있었으므로 말 한 필과 마장을 하사하라."하였다.

【영인본】10책 628면【분류】*왕실-종사(宗社)/*왕실-사급(賜給)/*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官理)/*건설-건축(建築)

25)풍산군 심응이 한성부의 관리가 체포한 종 기질동을 빼앗은 일을 국문토록 명하다

성종 173권, 15년(1484 갑진/명 성화(成化) 20년) 12월 17일 경오 2번째기사

한성부(漢城府)의 금란서리(禁亂書吏)와 조례가 종묘서(宗廟署)의 종인 기질동(其叱同)의 집에서 쇠가죽 두 장을 수색하여 찾아내고 기질동도 아울러 체포해 가는데, 풍산군(豊山君) 심응(沈應)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쇠가죽과 종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숨겨 두었다. 일이 알려지자 의금부에 명하여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심응은 무사(武士)로서 김포(金浦)에 전사(田舍)가 있었는데, 심응이 백성의 전지(田地)를 빼앗아 점유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부자(父子)가 본현(本縣)의 경재소(京在所)의 관원으로서 향리(鄕吏)를 학대하였으며, 속전(贖錢)을 징수한 것은 자기가 차지하였고, 혹 고을에 요구하였다가 그 욕심에 차지 아니하면 바로 수령을 꾸짖었는데, 그 탐악(貪惡)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영인본】10책 657면 【문목】*사법-재판(裁判)/*사법-판책(判決)/*신분-선인(士人)/*신분-중인(中人)/*역사-사학(史學)/*인물(人物)/*농업-전제(田制)/*농업-축산(畜産)/*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26)잠저에 있을 때 스승인 한성부 판관 조윤이 죽으니 물건을 내리게 하다

~ 성종 176권, 16년(1485 을사/명 성화(成化) 21년) 3월 18일 기해 1번째기사

임금이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조윤(趙崙)의 죽음을 듣고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의 사부(師傅)이었으니, 부물(賻物)을 보낸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한 자를 배웠더라도 스승과 제자 사이이다. 내 사부는 이제 다 죽었고, 김우신(金友臣)만이 살아 있는데 또한 나이가 많으니, 어찌 오래 벼슬 살 수 있겠는가 다음 정사(政事)때에 갈아서 경중(京中)의 좋은 벼슬을 제수(除授)하라."하였는데, 김우신은 이때 통진현감(通津縣監)이었다.

【영인본】10책 696면 【분류】*왕실-사급(賜給)/*왕실-국왕(國王)/*인사-위면(任免)/*윤리-강상(綱常)/*인물(人物)

27)형조에서 죄수 김장명 등을 사형에 처하도록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 성종 184권, 16년(1485 을사/명 성화(成化) 21년) 10월 22일 기해 1번째기사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회령(會寧)의 죄수 양인(良人) 김장명(金長命)이 야인[彼人]들의 말 세 필을 훔치고 또 체포되기를 거절하여 그 주인 위령(威靈)을 찔러 죽인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고, 통진(通津)의 죄수인 사노(私奴) 강녹(姜綠)과 백정(白丁) 자화동(者火同)이 도망중에 있는 산이소(山伊所)·문의동(文義同)·어질동(於叱同) 및 죽은 망룡(亡龍) 등과 더불어 강도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도망중에 있는 자도 쫓아가 체포하여 참(斬)하고, 위항의 각 사람의 처자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영구히 소재관(所在官)의 노비로 소속시키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11책 64면 【분류】*왕실-의식(儀式)/*사법-행형(行刑)/*신분-천인(賤人)

28)경기 통진의 양인 만동이 이성동을 국법을 멸시했다고 고하다

성종 196권, 17년(1486 병오/명 성화(成化) 22년) 10월 27일 무술 2번째기사

경기(京畿) 통진(通津)에 사는 양인(良人) 만동(萬同)이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서 고하기를, "신이 현감(縣監) 이중원(李仲元)의 계집종[婢] 계금(季今)을 얻어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중원의 첩이 낳은 아들인 이성동(李性同)이 신의 집에 와서 창문을 부수어 가져가므로, 신이 말리며 말하기를, '노복(奴僕)의 집이라도 본래 국법이 있는데, 어찌하여 위력(威力)으로 빼앗아 가는가' 하였더니, 이성동이 대답하기를, '국법이 있더라도 어찌하여 두려워하겠는가 내 나이가 스물이 되면 국가를 어지럽힐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들었으므로 감히 아뢰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만동의 말이 증오를 품고서 나온 것인 듯하나, 이 말은 국가에 관계되므로 허실(虛實)을 가려야 하겠으니,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하였다.

【영인본】11책 155면 【분류】*사법-재판(裁判)/*신분-천인(賤人)/*가족-가족(家族)

29)의금부에서 주인을 무고한 노만동을 참부대시에 처할 것을 아뢰다

성종 197권, 17년(1486 병오/명 성화(成化) 22년) 11월 30일 신미 4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통진(通津)에 있는 양인(良人) 노만동(盧萬同)이 아내의 주인인 이성동(李性同)을 무고(誣告)한 난언죄(亂言罪)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가산을 적몰(籍沒)하는 데 해당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대벽이므로 가볍게 논단(論斷)할 수 없으니, 내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를 불러 유생(儒生)의 강서(講書)때에 참여해 들어와서 의논해 결단하게 하라."하였다.

【영인본】11책 165면 【분류】*사법-재판(裁判)/*사법-치안(治安)

30)전한 성세명이 경기도 광주 · 남양 · 과천 등지의 수령의 불법을 아뢰다

· 성종 235권, 20년(1489 기유/명 홍치(弘治) 2년) 12월 17일 경자 2번째기사

전한(典翰) 성세명(成世明)이 경기(京畿)에서 돌아와서 광주(廣州) · 남양(南陽) · 과천(果川) · 금천(衿川) · 교하(交河) · 음죽(陰竹) · 풍덕(豊德) · 고양(高陽) · 지평(砥平) · 양성(陽城) · 진위(振威) · 김포(金浦) · 장단(長湍) · 마전(麻田) · 양근(陽根) · 삭녕(朔寧) 17고을의 불법(不法)한 일을 아뢰니, 사헌부에 회부하기를 명하였다.

【영인본】11책 555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司法)

31)제용감의 대청에, 통진현 안산의 백성이 벼락을 맞다

· 성종 241권, 21년(1490 경술/명 홍치(弘治) 3년) 6월 6일 정해 2번째기사

제용감(濟用監)의 대청(大廳)에 벼락이 떨어져 앞 기둥이 부서졌다. 또 이날 통진현(通津縣)의 백성 2인이 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안산(安山)의 백성이 벼락을 맞아 이미 매장하였는데, 또 벼락을 맞았다.

【영인본】11책 604면 【분류】*과학-천기(天氣)

32)통진현감 최급이 노공필에게 아부하는 일

성종 243권, 21년(1490 경술/명 홍치(弘治) 3년) 8월 13일 계사 3번째기사

통진현감(通津縣監) 최급(崔汲)은 판서(判書) 노공필(盧公弼)과 일가붙이였는데 항상 비위를 맞추어 아첨하고 추부(趨附)하여 관직을 얻었으니, 그가 통진(通津)에 보임 됨도 또한 노공필의 힘이었다.

최급이 이를 깊이 은혜롭게 여기어 말할 때마다 반드시 희량(希亮)을 일컬었는데, 하나의 선미(鮮味)를 얻으면 말하기를, "이것은 희량(希亮)이 즐기는 것이다." 하고, 하나의 새로운 나물을 얻으면 또한 말하기를, "희량(希亮)이 즐기는 것이다."하였다.

평소 사람을 대하고 손님을 접대할 때에 늘 희량(希亮)을 일컬으니, 관리가 처음에는 희량(希亮)이 무슨 물건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가 해가 오래되자 이에 실정을 살피었고, 일도(一道)에 전파되어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루는 우졸(郵卒)이 감사(監司)의 말고삐를 당기는 자가 되어 이르기를, "통진현(通津縣)에는 별미(別味)가 있습니다."하니, 감사(監司)가 말하기를, "어떤 물건이냐 "하였다. 우졸(郵卒)이 이르기를, "별미(別味)가 있으면 희량(希亮)이라고 하여, 태수(太守)가 너무 좋아하여 항상 입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하니, 그 말이 드디어 전파되어 전신(搢紳)이 기롱하는 바가 되었다. 희량(希亮)은 노공필의 자(字)이다.

【경인본】11책 630면 【분류】*인물(人物)

33)농사가 잘되지 못한 경기지방에 전교하다

- 성종 283권, 24년(1493 계축/명 홍치(弘治) 6년) 10월 29일 경인 7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경기(京畿)의 교동(喬桐)·강화(江華)·통진(通津)·김포(金浦)·양천(陽川)·부평(富平) 등의 고을은 농사가 매우 잘 되지 못하였고, 인천(仁川)·안산(安山)·남양(南陽)·고양(高陽)·교하(交河)·금천(衿川) 등의 고을은 다음인데, 위의 여러 고을의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직전(職田)과 사사전(寺社田)의 세(稅)는 아직 상납(上納)하지 말고, 모두 파곡(皮穀)으로 주창(倉)에 받아들여서 명년 종자(種子)로 준비하도록 하라."하였다.

【원인분】12책 430면 【분류】*재정-전세(田稅)/*재정-창고(倉庫)/*농업-권농(勸農)/*농업-농작(農作)

34)병조에서 지금의 군액 및 분번할 수와 3도 군정의 감액할 수 등을 기록하여 아뢰다

- 성종 3권, 1년(1470 경인/명 성화(成化) 6년) 2월 30일 기묘 4번째기사

35)이조와 병조 등 각 관사에 국상 중에 수고한 신하들을 논상하게 하다

- 성종 156권, 14년(1483 계묘/명 성화(成化) 19년) 7월 14일 갑진 2번째기사

36)지중추부사 이염의의 졸기

- 성종 269권, 23년(1492 임자/명 홍치(弘治) 5년) 9월 29일 정유 8번째기사

8. 연산군일기

1)정언 조원기가 신계원의 김포 현령 제수 등이 불가함을 아뢰다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 홍치(弘治) 9년) 12월 19일 임진 2번째기사

정언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신계원(愼繼源)을 처음 흡곡현령으로 제수하였는데, 어버이가 늙었다하여 사임하므로 근읍(近邑)으로 바꾸도록 명하며 김포(金浦)에 제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상언하여 말하자 특명을 내려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주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개정하기 바랍니다. 또 선릉참봉(宣陵參奉) 등을 종9품에서 뛰어 6품으로 하니 외람됨이 막심합니다. 역시 개정하기 바랍니다.

금년에 사당을 세우고 묘소를 옮기며 궁궐을 수리하는 일들을 백성에게 부역시켜 백성의 힘이 벌써 곤하였으니 채붕(彩棚)을 짓는 일에 다시 부역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희(貞熹)왕후 부묘 때에 성종께서 명하여 채붕 설치하는 것을 정지하였으니, 성종을 법받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선릉 참봉을 초서(超敍)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왕을 위한 것이다. 채붕에 관한 일은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신계원의 일도 함께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지평 곽종원(郭宗元)이 선릉 참봉 등의 승직이 온당치 않다고 아뢰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본】13책 174면 【분류】*정론-간쟁(諫爭)/*인사-임면(任免)/*재정-역(役)/*양신-의식(儀式)

2)구치곤이 불교를 숭봉하는 일, 신계원의 제수 등에 대해 아뢰다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 홍치(弘治) 9년) 12월 22일 을미 1번째기사

대사헌 구치곤(丘致崑) 등이 아뢰기를, "전 해에 대간들이 소상재(小祥齋)를 마련함이 온당치 못함을 들어 논란한지 여러 달에 이르렀지만 윤허를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또 대상재(大祥齋)를 마련하니 신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의 하교에 이르시기를, '공씨(孔氏)의 도를 일으키고, 석씨(釋氏)의 교를 줄어들게 한다.' 하였으며, 도첩(度牒)이 없는 중을 환속시키지 못하는 수령(守令)을 파면하였으니, 이 때문에 중외에서는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태종 대왕은 사사(寺社)의 농장과 노비를 혁파하였으니, 그 성덕(聖德)이 지극합니다. 세종께서도 초년에는 태종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절대로 〈불교를〉 숭봉하지 않았는데 만년에 가서 내불당(內佛堂)을 문소전(文昭殿) 북쪽에 창건하매 온 조정이 논란하여 간하였습니다. 그때 성균관의 유생들은 이르기를, '이단(異端)이 바야흐로 일어나려 하니 우리 도가 쇠해질 것입니다. 혓되이 구속되어 있을 수 없다.' 고 하면서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저 세종께서는 처음에는 숭봉하지 않다가도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처음에 어찌 이러하실 것입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천을 조심하기를 시초에서 한다.' 고 하였으니, 시초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신계원(愼繼源)은 전에 창녕현감(昌寧縣監)을 제수받아 부임한지 오래되었지만 어미가 늙었다 하였으므로 참작해서 경기도 죽산(竹山)으로 옮겨 주었는데 이계동(李季仝)이 경기감사가 되자 상피(相避)하는 관계로 〈신계원을〉 진천(鎭川)으로 바꾸었으나 그때 어미 나이 이미 73세였지만 아무 맏 없이 부임[赴任]하였습니다. 〈신계원이〉 지금은 김포현령(金浦懸令)으로 있는데, 품관(品官) 중 한환 같은 자가 작폐(作弊)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리며, 읍이 또 쇠잔하기 심하므로, 어미를 시켜 말씀을 올려서 국가를 기만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임지로 돌아가게 하소서. 선릉 참봉(宣陵參奉)을 모두 참직(參職)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선왕조에서 신구 광릉(光陵)·창릉(昌陵)·순릉(順陵) 참봉을 모두 직장(直長)에 제수하였으니 지금도 이 준례에 의거함이 가할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가독서(賜暇讀書)하는 일 및 시학(視學) 등의 일은 일체 거행하겠으나, 그 나머지는 모두 들어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영인본】:3 책 174면 【분류】*정론-간쟁(諫爭)/*안신-의식(儀式)/*사상-불교(佛敎)/*인사-관리(官吏)

3)사헌부가 신계원 · 윤구 등의 서용이 불가함을 상차하다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 홍치(弘治) 9년) 12월 27일 경자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상차하기를, "신 등은 신계원이 관직을 바꾸도록 하라는 일, 권종(權悰) 등에게 작위를 범람한 일, 윤구 · 윤우 · 윤후를 서용(敍用)한 일, 신돈의가 특명으로 선전관에 제수된 일, 박인손에게 직첩을 도로 준 것이 불가함을 우러러 신청(宸聽)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아직 쾌한 허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신계원이 전에 죽산(竹山) · 진천(鎭川)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어미의 나이가 이미 70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취임하여 기한을 채우고 체임(遞任)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포(金浦)의 수령이 되자, 그 읍이 잔폐(殘廢)함을 부족하게 여겨 경직(京職)으로 바꾸려 하여 천은(天恩)을 희망하면서 어미를 시켜 말씀을 올려서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3백 리 내에 서임하는 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권종 등이 3년 간 능을 모신 수고는, 성상의 선대에 효도하시는 마음으로 중한 상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신하가 된 자의 직분으로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하물며 조종조에서는 모두 7품관으로 하는데 불과하였는데, 전하에 와서 범람하게 6품관을 제수하니, 이것은 선왕의 기성 법규[成憲]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윤흥상(尹興商)은 전에 이천부사(利川府使)가 되었을 때에, 사사로이 고자[火者]를 기른 죄를 면하려 하여, 우연히 얻는 사람이라고 하며 거짓으로 감사에 보고하여 전문(轉聞)하게 해서 천청(天聽)을 기망하였다가 마침내 중한 죄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1년이 지나자 문득 서용(敍用)하도록 명하니, 이것은 사사 죄를 범한 자는 2년을 지나야만 서용하는 법이 크게 무너진 것입니다. 〈본문중략〉

전교하기를, "박인손의 일은 가사 오늘 죄를 입었더라도 내일 허물을 고치면 직첩을 도로 주어도 가할 것이다. 윤구 등의 일은, 천도(天道)라도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다. 죄를 입은 지 이미 오래었으니 서용함에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신돈의의 일은 특별한 사사 은혜일 뿐 나머지는 모두 들어 주지 않겠다."하였다.

【영인본】13책 175면 【분류】*정론-간생(諫諍)/*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

4)대사헌 구치곤 등이 관직 제수를 신중히 할 것, 경연을 열 것 등을 아뢰다

-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1월 4일 병오 3번째기사

대사헌 구치곤·김의 유빈(柳濱)·장령 이자견(李自健)·지평 강숙돌(姜叔突) 등이 아뢰기를, "신계원(愼繼源)은 전에 창녕(昌寧)·진천(鎭川)·죽산(竹山)에 부임할 때에는 늙은 어미가 있으면서도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포(金浦)에 가는 것은 3백리 안에 있으니 〈늙은 어미가 있더라도〉 법대로 부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를 시켜 글을 올려 말씀드리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포가 쇠잔한 고을이기 때문에 피하기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올린 것을 해조(該曹)에 내려 보내지도 않고 특명을 내려 경직(京職)으로 바꾸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근본을 바로잡으려는 첫 단계에는 무슨 일이나 바른 대로 하여야 할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를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김효강(金孝江)은 제 마음대로 아뢰어 법을 만들었으니 그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하였다. 정언 조원기(趙元紀)가 역시 찬례(贊禮)등의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다. 이어 상차(上箚)하기를, "신 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선왕의 성헌(成憲)을 법받으면 영원토록 허물이 없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수성(守成)하는 인군이 체념(體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수령의 소임을 중이 여기어 6년[六期] 안에는 정직(京職)으로 바꾸지 못하며,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서울에서〉 3백리 이내에 임명하니 이것이 성헌(成憲)입니다. 신계원은 어미가 늙었기 때문에 김포로 옮겨 임명한 것입니다. 김포는 서울에서 하루 거리도 못 되는 곳이며, 읍에서도 봉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임(外任)임을 꺼려 어미를 시켜 법을 무릅쓰고 진소(陳訴)하게 하였으니 당연히 징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경직으로 바꾸어 주니 선왕의 성헌(成憲)이 이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관작이 범람함을 염려하여 성헌을 만들었습니다. 참봉(參奉)이라는 것은 10여 년을 지나서야 봉사(奉事)로 승진하며 봉사가 된지 4, 5년이 지나야 직장(直長)으로 승진하고, 직장으로 승진된지 3, 4년이 지나야 참직(參職)으로 승빈됩니다. 한 품계를 오르기가 이렇게 어렵고 또 오랜 것인데 헌릉(獻陵) 참봉이 된지 20개월 사이에 바로 7품으로 승진했던 것은 이미 전례가 있지만 그것도 한때의 수고에 대한 보수로서는 극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종(權悰) 등은 종9품인 참봉에서부터 6품으로 뛰어오르니 관작의 범람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선왕의 성헌(成憲)이 이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관리 임용(任用)의 어려움을 중시하여, 작은 관직이라도 반드시 해조(該曹)에서 주의(注擬)한 다음에야 제수하게 하는데, 이것도 성헌(成憲)이었습니다. 지금 신돈의(愼敦漪)가 선전관이 된 것은 임금의 전지(傳旨)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니, 선왕의 성헌이 역시 이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저 다른 사람에게 관작을 줄 때에는 비록 기록할 만한 공과 쓸 만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천(公薦)을 얻은 다음에야 쓰는 것입니다.

기록할 만한 공이 없고 쓸 만한 재주가 없는데도 공천을 거치지 않고 법을 무너뜨리는 것도 근심하지 않으며 특별히 사정(私情)을 둔다는 것은 소원한 신하라도 오히려 또 불가한 일인데 하물며 이런 소소한 인아의 무리에게 특별히 사정을 두겠습니까. 대간이 논집(論執)하여도 굳이 거절하니 누가 이것을 전하의 한 마음이 지공(至公) 지정(至正)해서 그랬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내리신 명을 빨리 거두고 길이 성헌을 준수하소서."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본문중략〉

구치곤 등이 다시 김효강 · 강선 · 신계원(愼繼源) 등 및 이거 · 이전 등의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본】13책 177면 【분류】*정문-간쟁(諫爭)/*인사-관리(官吏)/*인사-임면(任免)/*왕위-공관(空官)/*왕신-경연(經筵)/*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5)대사헌 구치곤 · 사간 최부가 김효강 · 신계원의 일로 아뢰다

·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1월 7일 기유 3번째기사

대사헌 구치곤과 사간 최부(崔溥)가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이미 김효강이 아뢴 것을 그르다하여 쓰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그 간악하고 기짓됨을 통촉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낙산사(洛山寺)에 소금을 주었던 일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큰 죄를 지은 것이니 속히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또 신계원(愼繼源)은 처음에 창녕현감(昌寧縣監)으로 있었고 죽산(竹山)과 진천(鎭川)에 옮겨 임명되었는데, 그때 어미의 나이나 이미 70여 세였지만 모두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포(金浦)에 임명되었는데 어미를 시켜 말씀드리며 위의 은혜를 희망하였으니, 일정한 기간[准期] 서임하지 않든가, 혹은 본직에 도로 임명하소서."하니, 어서(御書)로 답하기를, "경 등이 이렇게 극간(極諫)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겠다. 대저 수령은 늙은 어미가 있으면 원방에 서임하지 말라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다. 그러므로 지금 경직(京職)으로 특별히 바꾼 것이다. 어느 시대인들 특은(特恩)이 없겠는가. 김효강은 바른 대로 말하면 전례가 있으므로 죄가 없다.

지금 경 등의 말을 들어서 이미 태형죄로 논단하였는데, 또 차마 성종의 수교(受敎)를 무너뜨리고 어찌 다시 죄 없는 사람을 논단하여 중한 법으로 다스릴 것인가."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경 등은 신계원이 어미를 시켜 말을 올렸다고 했다. 대저 늙은 어미는 그 아들이 멀리 떠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다. 대간 누군들 부모가 없겠는가. 어찌하여 어미를 시켰다고 말을 하는가?"하매, 다시 아뢰기를, "하교에 이르기를, '원방에 서임하지 말라는 것이《대전》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원방이라는 것은 3백 리 밖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지금 김포는 40리 길이니, 이것은 먼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쇠잔하고 피폐한 것을 싫어해서입니다. 전하께서는 사정(私情)으로 하교하고 신 등은 법으로 상달하는 것이니, 그 정중을 생각하시어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효강은 정해진 법을 변란하였으니 죄는 마땅히 참형(斬刑)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 다만 태형 40으로 속바치게 하였습니다.

김효강은 전에 제 마음대로 아뢰었던 때문에 장형(杖刑) 60으로 속바치게 하였는데도 아직 징계하여 고쳐지지 않고 또 고의로 중형(重刑)의 죄를 범하였으니 율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형벌 시행의 잘못됨을 생각지 않고 특

별히 고식적(姑息的)인 은혜를 베푸니 악행을 범한 자가 징계될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본】13책 179면 【분류】*정로-간쟁(諫諍)/*왕실-궁관(宮官)/*사법-탄핵(彈劾)/*사법-법제(法制)/*인사-관리(管理)

6)한환에 대한 율 적용을 달리하라고 명하다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1월 13일 을묘 2번째기사

한환의 추안(推案)를 내려 보내며 이르기를, "한환은 김포 고을 백성은 아닌데, 소속한 지부(知府)·지주(知州)·지현(知縣)을 욕보인 율을 적용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위력제박(威力制縛)조로 고쳐 율을 적용하도록 하라. 그 밖의 것은 다 버려두겠다."하였다.

【영인본】13책 182면 【분류】*사법-탄핵(彈劾)/*사법-재판(裁判)/*윤리-강상(綱常)

7)대간이 김효강 · 한환의 추안 문제로 여러 번 아뢰다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1월 14일 병진 2번째기사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김효강의 일을 논하고 이어 한환의 추안(推案)을 올리면서 율대로 논죄하기를 청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대간이 상차하기를, "삼가 어서를 보건대 이르기를, '김효강의 간악함을 안았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내가 만일 그 간악함을 알지 못하고 늙은 환관의 술수에 빠졌드라면 경 등을 벌주었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그 간악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간악함을 알면서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성상의 이 하교는 한갓 빈말이 될 뿐입니다. 이미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들고 세력을 빙자하면서 궁궐 안에 출입하기를 아직도 옛날 같이 하게 하였으니, 외간에서는 김효강을 보기를 '성중에 있는 여우는 물에 적실 수 없고 사옥(社屋)에 있는 쥐는 연기에 그을릴 수 없다.' 는 말처럼 〈안전하다고〉 보니, 김효강으로서는 아무런 기탄(忌憚)도 없이 크게 술수를 벌이며 전하의 안색을 받아 순응하고 전하의 마음을 옮겨 바꾸어 명이가 복중에 들[明夷入腹]이 두 아이가 고황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 전하께서 다른 날 끝내 빠져 들어가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그 간악함을 알았다는 것은 그 간악함을 키워 주기에 알맞은 것이니 이것은 곽공(郭公)이 악을 미워하면서도 제거하지 못함과 거의 같은 것이 아닙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늙은 간인의 죄를 깊이 다스리어 조정의 분함을 쾌하게 하여 주소서."하고, 이어 아뢰기를, "한환은 김포(金浦)에 농막이 있고, 부모의 묘소가 있으니 그곳 백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릇 재상으로서 누가 전장(田庄)을 외방 고을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수령이 그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수령 밑에 있는〉 아전들을 걸박해다가 볼기를 치면 수령(守令)이 어찌 수족을 쓸 수 있겠습니까."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영인본】13책 182면 【분류】*정교-간쟁(諫爭)/*사법-탄핵(彈劾)/*사법-법제(法制)/*사법-재판(裁判)/*왕실-궁관(宮官)/*문리-강상(綱常)/*농업-전제(田制)

8)대간이 임사홍 등의 벼슬 높임이 불가함을 서계하다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4월 16일 정해 1번째기사

어서로 대간의 사직장(辭職狀) 말미에 쓰기를, "내가 다시 거절하는 것은 비록 처음과 같지만, 경 등의 어그러진 생각 역시 처음과 같도다. 어찌 공신의 일로 하여 여러번 사직장을 올리느냐 옥송(獄訟)을 지연시키고 원왕을 쌓아 두게 하니 어찌 불가하지 않은가.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릇된 생각을 돌려 고치며, 빨리 나의 명을 따라 속히 일을 보라."하였다.

대간이 서계하기를, "복직의 명이 엄하오나 임사홍(任士洪) 같은 큰 간인배를 벼슬을 높이고 그 마음을 길러 준다면 사직의 관계가 경하지 않습니다. 송(宋)나라는 한 명 왕안석(王安石)의 등용으로 인하여 붕당을 끌어들여서 천하의 창생(蒼生)을 해쳤는데 하물며 이 여러 간사한 자들이겠습니까.

신들이 이목(耳目)의 관직에 있으면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용납하게 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다시 본직에 나가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소위 이 무리들이라는 것은 누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하매, 대간이 열서 하여 아뢰기를, "임사홍은 붕당 을 교결(交結)하여 조정을 탁란하였으며, 정숭조(鄭崇祖)는 장사치들과 교결하여 국고의 재물을 도둑질하였고, 한환은 본처를 박대하고 장인을 구타했으며, 금포(金浦)에서 탐욕을 부리고 내린 명령을 능욕했으며, 한치례(韓致禮)는 용렬세소하고 탐람비루하며, 양민을 억압하여 천인을 삼았으며, 조득림(趙得琳)은 내외가 천인이며, 윤반(尹磻) · 조헌(曺獻) · 윤준원(尹俊元)은 용렬무지하며, 설주(薛柱)는 용렬하고 무식하며, 이치남(李致南)은 천인으로서 교사하며, 신종흠(申從洽)은 탐오하고 염치가 없으며, 박윤(朴輪)은 성품이 본시 용렬하고 또 불의를 행하며, 유진(柳軫)은 광패(狂悖)하며, 김효강(金孝江)은 환관으로서 여러번 기망죄를 범하였으며, 안중경(安仲敬) · 서경생(徐敬生) · 이존명(李存命) 역시 모두가 환관입니다.

또 득림은 세조께서 특별히 가선(嘉善)을 하사하시면서 이르기를, '득림의 직위는 이미 다 되었다.' 하시었으니, 이것은 후세의 변동할 수 없는 전교입니다.

강귀손(姜龜孫) · 신수근(愼守勤)은 한 달이 지나지 못하여 재차 높은 품계를 제수받고, 이세좌(李世佐) · 노공필(盧公弼)은 육경(六卿)의 우두머리로서 역시 음직(蔭職)을 더하니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영인본】13책 212면 【분류】'정론-간쟁([illegible])'/'인사-관리(管理)'/'인사-임명(任命)'/'역사-고사(故事)'

9)승정원의 요청으로 강화·양천 등지의 위법 사건을 행대 감찰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다

◦ 연산 28권,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10월 14일 임오 3번째기사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성세순(成世純)이, 강화(江華)와 경유해 온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 등 각 고을의 법에 위반된 사건을 척간(擿奸)하여 오자,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건에 관여된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만약 모두를 금부(禁府)에 가두게 되면 반드시 소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선왕조(先王朝)에서 일찍이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보내어 국문하게 한 일이 있으니, 청컨대 그 예에 의하옵소서."하니, 좇았다.

【영인본】13책 287면 【분류】*사법-다스림(治獄)/*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10)경기 관찰사 김수동이 구휼 대책 등을 아뢰다

연산 47권, 8년(1502 임술/명 홍치(弘治) 15년) 11월 3일 임신 3번째기사

경기관찰사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京畿)의 각 고을은 모두 실농(失農)을 해서 봄에는 적지(赤地)에 종자를 뿌리지 못했고, 여름에는 홍수가 넘쳐 흘러 제방이 무너졌으니, 비단 기근(飢饉)이 겹쳐 이를 뿐 아니라, 명년에는 반드시 종자가 한 알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군량(軍糧)에 소요되는 것을 모두 피곡(皮穀)으로 거두어들여서 종자를 지급하도록 계청했는데, 윤허하시므로 신이 각 고을의 종자와 전결(田結)의 수효를 마련해 보니, 전결의 수효는 많고 곡식의 수량은 부족하여 비록 모두 지급하더라도 종자는 절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방이니, 도리상 마땅히 후한 은혜로 구제해야 하겠지만, 온 도(道)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만약 전량(全量)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음에 미안하므로, 다만 재해(災害)가 가장 심한 고을만 골라서 아뢰옵니다.

수원(水原)·안산(安山)·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과 같은 고을은 재해가 가장 심하고, 파주(坡州)·장단(長湍)은 그다지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두 고을은 네 갈래 길의 요충지(要衝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입거(入居)하는 백성들이 모두 이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백성들의 재력(財力)이 갑절이나 곤궁하게 된데다가, 명년에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더욱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적은 각 고을들은 금년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경창(京倉)으로 올리지 말고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고, 명년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지난 을묘년에 파선된 남양(南陽)의 조세는 지금 당연히 경창으로 징수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주창에 바치게 하여 다른 고을의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수동(金壽童)이 또 아뢰기를, "광주(廣州) 백성 이옥산(李玉山)이 그 형을 구타한 것은 진술한 증거가 명백하며 또 은(銀)으로 뇌물을 주어 그 일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엄폐(掩蔽)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간사합니다.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실정을 다 말할 때까지 형장(刑杖)을 받은 것이 15차례나 되고, 비록 문초(問招)에 승복(承服)하더라도 죄가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으니, 또 형신을 가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까닭으로 감히 품의(稟議)합니다." 하니, 수의(收

議)하기를 명했다.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이 옥산이 비록 문초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드러난 증거와 초사(招辭)가 명백하여 일이 애매하지는 않으니, 증거에 의거하여 형벌을 정하여 온 가족을 변방으로 보내는 것이 일의 대체에 적합합니다."하니, 그대로 좇았다.

【영인본】13책 526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농업-농작(農作)/*재정-전세(田稅)/*재정-창고(倉庫)/*교통(交通)/*사법-왕명(王命)/*호구-이동(移動)

11)서울과 경기 및 충청도에 지진이 일다

연산 50권, 9년(1503 계해/명 홍치(弘治) 16년) 6월 12일 정미 4번째기사

서울과 경기의 강화(江華)·안성(安城)·안산(安山)·양천(陽川)·김포(金浦)·죽산(竹山)과 충청도의 홍주(洪州)·청주(淸州)·충주(忠州)·공주(公州)·면천(沔川)·천안(天安)·온양(溫陽)·태안(泰安)·문의(文義)·당진(唐津)·진천(鎭川)·목천(木川)·평택(平澤)·직산(稷山)·신창(新昌)·전의(全義)·연기(燕岐)·해미(海美)·회인(懷仁)·보은(報恩)·예산(禮山)·음성(陰城)·청안(淸安)·진잠(鎭岑)·회덕(懷德)·제천(堤川)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본】13책 565면 【분류】*과학-지학(地學)

12)서울과 충청도 및 경상도 고을에 지진이 일다

연산 50권, 9년(1503 계해/명 홍치(弘治) 16년) 8월 23일 정사 1번째기사

서울과 충청도 충주·제천·정산(定山)·진천(鎭川)·청안(淸安)·아산·괴산(槐山)·결성(結城)·태안(泰安)·이산(尼山)·회인(懷仁)·면천(沔川)·임천(林川)·직산(稷山)·보령(保寧)·보은·공주·연산·진잠(鎭岑)·회덕(懷德)·문의(文義)·천안·홍주(洪州)·예산·덕산(德山)·은성(恩城)·남포(藍浦)·신창(新昌)·청주·연기(燕岐)·평택·서산·청풍(淸風)·당진·옥천(沃川)·해미(海美)·전의·목천(木川)·청산(靑山), 경상도 금산(金山)·개령·인동(仁同)·용궁(龍宮)·예천(醴泉), 경기의 광주·파천·양근(楊根)·지평(砥平)·여주·이천·양지(陽智)·용인·음죽(陰竹)·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수원·진위(振威)·양성(陽城)·안성·양천(陽川)·인천·부평·금포·통진(通津)·강화·파주·양주·포천·영평(永平), 전라도 익산(益山)·용안(龍安)·함열(咸悅)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본】13책 572면 【분류】*과학-지학(地學)

13)이궁을 지으려고 주민을 몰아내고 금표를 세워, 들어가는 자는 기시에 처하다

-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 홍치(弘治) 18년) 7월 1일 갑신 4번째기사

왕이 승정원에 묻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누구나 연회를 베풀고 놀이하는 곳이 있었다. 수(隋)에는 분양(汾陽), 당(唐)에 여산(驪山), 전조(前朝)에 이르러서도 장원(長源)이 있어, 고려의 시인(詩人)이 읊기를, 푸른 버들에 문 닫힌 여덟아홉 집이요, 밝은 달에 발을 걷은 서너 사람이더라" 한 글귀가 있다. 그 시사(詩辭)를 읊어보니, 곧 확려하고 진기한 경치를 천년 뒤에도 유연(悠然)히 상상할 만하다.

이제 장의문(藏義門) 밖에 산 밝고 물 고와 참으로 한 조각 절경이므로, 금표(禁標)를 세워 이궁(離宮) 수십 칸을 지어 잠시 쉬는 곳으로 하고자 하니, 의정부와 의논하여 지형을 그려서 바치라."하매,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하였다.

이로부터 동북으로 광주(廣州)·양주(楊州)·포천(抱川)·영평(永平)에서, 서남으로는 파주(坡州)·고양(高陽)·양천(陽川)·금천(衿川)·과천(果川)·통진(通津)·김포(金浦) 등에 이르는 땅에서 주민 5백여 호를 모조리 내보내고, 내수사(內需司)의 노자(奴子)를 옮겨서 채우고, 네 모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기시(棄市)를 하니, 초부(樵夫)·목동(牧竪)의 길이 끊겼다.

【영인본】14책 9면 【분류】*왕실-종사(宗社)/*왕실-국왕(國王)/*사법(司法)/*건설-건축(建築)/*과학-지식(地學)/*호구-이동(移動)/*재정-상공(上供)/*신분-천인(賤人)/*여사(巫史)

14)내관의 족친인 종성 부사 이지방 등을 파직하게 하다

-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 홍치(弘治) 18년) 7월 6일 기축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내관(內官)의 족친인 종성부사(鍾城府使) 이지방(李之芳), 김포현령(金浦縣令) 박영창(朴永昌), 광주판관(光州判官) 최인수(崔仁壽)를 파직하라."하였다. 왕이 더러운 행실과 악한 덕이 중관(中官)에게서 누설될까 늘 염려하였으므로, 관직이 있는 모든 족친을 모두 먼 지방으로 쫓았었다.

【영인본】14책 9면 【분류】*왕실-비빈(妃嬪)/*왕실-국왕(國王)/*인사-임면(任免)

15)망원정 이남 1백 리로 금표를 세우고 근처의 도로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다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 홍치(弘治) 18년) 8월 21일 계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망원정(望遠亭)의 이남으로 1백리를 한계로 하여 금표(禁標)를 세우고 양천현(陽川縣)을 혁파(革罷)하며, 망원정 근처의 도로에는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되, 이계동(李季仝)을 불러서 가서 금표를 세우게 하라. 하매, 계동이 아뢰기를, "망원정에서 이남으로 가면 부평(富平) 관아의 문에 이르는데, 관아를 거쳐 바닷가까지 40리쯤과, 양천으로부터 서쪽으로 김포(金浦)·통진(通津)을 거쳐 갑곶(甲串)에 이르는 70여 리쯤은 다 바다가 경계가 되므로 표를 세울 것이 없으며, 표를 세워야 할 곳은 망원정으로부터 부평에 이르는 사이뿐입니다. 그러나 먼저 금표를 세우면 세 고을에 사는 백성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다 양화도(楊花渡)를 거쳐서 분주히 나갈 것이므로 소요(騷擾)하게 될 것 같사오니, 감사(監司)로 하여금 먼저 모조리 내보내게 한 뒤에 표를 세우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좋다."하였다.

【영인본】14책 14면 【분류】*왕실-종사(宗社)/*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과학-지학(地學)

16)경기 관찰사 박원종이 김포 등이 금표 안에 들어가 운반 등을 할 수 없다 아뢰다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 정덕(正德) 1년) 2월 9일 기미 1번째기사

경기관찰사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김포(金浦)·통진현(通津縣) 등의 강가를 따라 사는 백성들은, 수로(水路)를 잘 알고 있으므로 배로 물건을 운반할 때에 침몰할 염려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금표를 물리고 민가를 쫓아내면 다만 도둑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배로 실어나를 때에 인도할 사람이 없어 복선(覆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白雲山)도 또한 금표 안에 들이라는 전교가 이미 계셨으나, 만일 그 근방의 땅을 모두 금표 안에 들인다면 함경도 쪽의 큰 길이 막힙니다. 또 조종(朝宗)·가평(加平) 등지도 역로(驛路)가 쇠잔하여 물선(物膳)의 운반과 사명(使命) 또는 야인(野人)이 왕래 시에 지판(支辦)이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광주관사(廣州館舍)가 또한 표 안에 들었으니 가평(加平)과 과천(果川)은 상거가 매우 먼데, 그 사이에 또한 응판(應辦)할 곳이 없어 갑히 아뢰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김포·통진 강가에 사는 민가와 옛 광주 관사는 표 안에 넣지 말고 백운산은 산 밑에 표를 세우라."하였다. 원종(元宗)이 다시 아뢰기를, "김포 등 고을[官]은 수령이 없어 백성을 관할할 자가 없으니, 공부(貢賦)나 부역을 어디에 공납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전과 같이 수령을 두게 하라."하였다.

【명인본】14책 40면 【분류】*왕실-종사(宗社)/*통정-지방행정(地方行政)/*교통-육운(陸運)/*교통-수운(水運)

17)윤필상 등이 산릉의 자리에 대해 아뢰니 광평 대군의 묘로 정하다

연산 2권, 1년(1495 을묘/명 홍치(弘治) 8년) 1월 10일 갑오 2번째기사

18)청천군 한환이 양인 김철산의 발을 빼앗은 일로 승정원과 의논하다

연산 20권, 2년(1496 병진/명 홍치(弘治) 9년) 12월 28일 신축 2번째기사

19)경연에 나가 유치연의 피살 사건 등의 일에 대해 듣다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1월 26일 무진 1번째기사

20)대간이 공신의 적장에게 가자한 일로 상소한 일에 대해 아뢰다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3월 16일 무오 2번째기사

9. 중종실록

1)유순 · 박원종 등이 백정 당래 · 미륵의 일을 의논하다

·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 정덕(正德) 2년) 3월 28일 신미 2번째기사

영의정 유순 · 좌의정 박원종 · 우의정 유순정 · 무령군 유자광이 아뢰기를, "백정(白丁) 당래(唐來) · 미륵(彌勒) 형제가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참여되어 있는데 그들은 난래고 용맹스럽기 짝이 없으며, 또 겁탈하는 일이 많아서 강도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숨고 나오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국가에서 죄를 풀고 포도장(捕盜將)에 붙여주면 도적들을 다 잡겠다.' 고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원종공신에 기록하였으니, 다행히 죄를 풀고 충찬위(忠贊衛)에 소속시키든가 혹은 포도장으로 소속시켜 도둑의 내막을 잘 아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잡게 함이 어떻겠습니까?"【당래 · 미륵은 강도로서 박영창(朴永昌)이 김포현령(金浦縣令)이 되었을 때 신임을 받았는데 정국(靖國)에 할 때에 박영문(朴永文)이 두 사람이 용맹하다고 천거하여 일을 시켜 원종공신에 참여하게 되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도를 충찬위에 소속시켜 대궐안에 섞여있게 할 수는 없다. 다만 포도장에 소속케 하여 숙지(熟知)라 칭명하여 도둑을 잡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고, 또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근래 나인과 환관들로서 범람한 일이 있는가?

경들이 들은 것이 있으면 다 말하고 숨기지 말라."하니, 아뢰기를,"상교가 지당하나 다만 신 등이 아직 들은 것이 없습니다. 범람한 일이 있다면 신들만이 아뢸 것이 아니라 대간도 말을 할 것입니다."하였다.

【영인본】14책 131면 【분류】*왕실-궁관(宮官)/*인사-관리(管理)/*사법-치안(治安)

2)대사간 남율 등이 음가와 박영문에 대한 일 등을 아뢰다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 정덕(正德) 2년) 12월 18일 정해 1번째기사

조강(朝講)을 하였다. 대사간 남율(南嵂)이 아뢰기를, "전일 대신(大臣)들의 의론은 모두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계책을 결정한 대신들은 감히 그 공로를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참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말하였고, 공신에 참여되지 못한 자는 혐의를 피하려하기 때문에 억시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계책에 협조한 자는 공로가 작음에도 상(賞)이 중하기 때문에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있어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공론(公論)인 듯하지만 또한 혐의를 피하려는 말입니다. 폐조를 겪은 국고는 텅 비게 되었고 유민(流民)은 돌아오지 않으며, 또한 질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태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공신들은 부유하고 건장한 노비들을 차지하여 주군(州郡)이 모두 텅비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공신을 보호하려면 먼저 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음가(蔭加)는 유자광(柳子光)의 간교한 계책에서 잘못된 것으로서《대전(大典)》에도 없는 법이며 고례(古例)도 아닙니다. 만일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반드시 이것을 예로 삼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이 또한 클 것입니다.

박영문(朴永文)은 하문(下問)하실 때에 '다른 곳에서 듣지 아니하고 다만 윤탕로(尹湯老)에게서 들었다.' 고 말하였는데, 지금 박원종(朴元宗)의 말을 들어 보건대, 또한 크게 서로 어긋납니다. 그 말을 번복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눈 앞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영문이 전일에 행한 바는 이미 신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포(金浦)의 백정(白丁) 미륵(彌勒)은 본래 큰 도적인데, 영문은 그를 가까이하였고, 영문의 형이 김포현령(縣令)이 되어 영문이 그 관아에 있을 때 주현(州縣)에서 도둑 두 사람을 급히 추적하고 있었는데, 박영문은 그들을 관가 안에 숨겨 주었고, 형조(刑曹) 나장(羅將) 향산(香山)도 도둑의 무리인데, 영문이 형조(刑曹) 낭관(郎官)이 되었을 때 비밀히 그와 친교를 두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정(反正) 후에는 원종(原從)의 반열에 함께 기록하였으니, 이는 모두 마음대로 하여 그 평소에 뇌물을 보낸 신세를 보답한 것입니다. 그가 사귀는 자는 모두 도적이나 시정배들이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조정을 시끄럽게 하며 공론을 저해하고 있으니

죄가 어찌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법률에 따라 논죄(論罪)하시고, 강홍(姜洪)은 사대부의 반열에 끼게 할 수 없으니, 그 직을 파면토록 하소서."하고, 지평(持平) 김안국(金安國)은 아뢰기를, "박영문(朴永文)에 대한 일은 남율(南慄)이 아뢴 바와 같이 마침내는 국사를 그르칠 것이며, 토전(土田)·장획(贓獲)과 음가(蔭加)에 관한 일도 망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안윤덕(安潤德)은 다만 그 음가만을 거두어 들일 수 없고, 강홍(姜洪)도 다만 경연관(經筵官)만을 체직할 수 없으니 조정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하고, 영사(領事) 신준(申浚)은 아뢰기를, "제책을 도운 사람 이하는 모두 공로가 없으니 대간(臺諫)의 말에 따르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14책 213면【분류】*왕실-경연(經筵)/*정론-간쟁(諫諍)/*인사-관리(管理)/*사법-탄핵(彈劾)/*농업-전제(田制)/*신분-천인(賤人)

3)포도대장 전림이 강도 당래 등 23인을 김포에서 잡아와 복명하니 술을 내리다

중종 7권, 4년(1509 기사/명 정덕(正德) 4년) 2월 1일 계해 6번째기사

포도대장 전림(田霖)이 강도(强盜) 당래(當來) 등 23인을 김포(金浦)에서 잡아와서 복명하니, 술을 내리게 하였다. 이때 궁민(窮民)이 서로모여 도둑이 되어 겁탈을 자행하되, 인천·김포가 더욱 심하였다. 명하여 전림을 포도대장으로 삼으니, 도둑들이 듣고 서로 말하기를, '차라리 맹호(猛虎)를 만날지언정 임(霖)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하였다.

임은 성격이 준엄하고 또 정직하였다. 일찍이 병조참판이 되었을 때에 한 소리(小吏)가 있어 간사한 꾀를 시험하고자 하자, 임이 이를 알고 문득 노하여 아전을 꾸짖기를, '그 목을 놀리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머리를 떼 버리겠다.' 하였다. 이로부터 아전들이 모두 두려워서 복종하여 능히 그 술책을 부리지 못하였다.

【영인본】14책 309면 【분류】*왕실-사급(賜給)/*인사-임면(任免)/*사법-치안(治安)

4)김포현령을 추고해야 할 일로 도사가 겸직하여 다스리게 하라고 전교하다

중종 7권, 4년(1509 기사/명 정덕(正德) 4년) 2월 2일 갑자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김포현령(金浦縣令)은 추고(推考)하는 것이 가하나, 그 현의 수령과 하리(下吏)가 모두 추문(推問)을 받게 되면 그 고을의 일에 반드시 허소함이 많을 것이니, 도사(都事)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여 다스리도록 하라."하였다. 【김포현 창고 안에 강도를 은닉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고하였다.】

【영인면】14책 309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탄핵(彈劾)/*사법-치안(治安)

5)조강에서 특진관 전림이 전 만호 최수문과 김포의 강도 은닉자를 처벌하자고 하다

중종 7권, 4년(1509 기사/명 정덕(正德) 4년) 2월 3일 을축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한효원(韓效元)이 각사(各司) 제조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특진관 전림(田霖)이 아뢰기를, "강도를 허접(許接)한 죄를 처벌하는 절목(節目)이 지극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나, 전 만호(萬戶) 최수문(崔守文)이 강도를 허접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오니, 함경도 온성(穩城)과 같이 잔폐한 고을에 관노(官奴) 로 정속(定屬) 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김포(金浦)의 관고(官庫)에 강도를 은닉한 자가 많은데, 고자(庫子)와 향리(鄕吏)들이 모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청컨대 이들을 모두 처벌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전림이 아뢴 것은 당연하다. 허접한 사람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전일의 법조(法條)가 있으나, 사족(士族)들도 반드시 은접(隱接)한 자가 있었을 것이다. 양계(兩界)는 본래 입거(入居)하는 땅이니, 최수문(崔守文)은 추문(推問)을 마친 뒤에는 양계에 들여보내라."하였다.

【영인면】14책 309면 【분류】*왕실-경연(經筵)/*정론-정론(政論)/*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사법-탄핵(彈劾)/*사법-치안(治安)/*재정-창고(倉庫)/*호구(戶口)/*신분-천인(賤人)

6)정원이 김포 등처의 포도 군졸이 민간에서 작폐하니 정지하자고 아뢰다

· 중종 8권, 4년(1509 기사/명 정덕(正德) 4년) 3월 25일 정사 4번째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김포(金浦) 등처의 포도 군졸이 민간에서 작폐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영인본】14책 322면 【분류】*사법-치안(治安)/*농업-권농(勸農)

7)심의의 일과 도적을 잡을 방책에 대해 의논하다

중종 9권, 4년(1509 기사/명 정덕(正德) 4년) 10월 5일 계사 1번째기사

조참(朝參)을 받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허지(許遲)가 아뢰기를, "심의(沈義)가 윤대(輪對)에서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君弱臣强]는 말을 아뢰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매우 의구(疑懼)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는 심술(心術)이 본래 비뚤어지고 험악하여 취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으로 있었으니, 어찌 사리를 알지 못하고 아뢰었겠습니까 추고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헌납(獻納) 조방언(趙邦彦)은 아뢰기를, "심의가 윤대에서 한 말은 과연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하게 하였으니, 비록 광패(狂悖)하다 해도 또한 마땅히 우악(優渥)하게 용서하셔야지 죄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 죄를 다스린다면 사체(事體)에 해로울까 싶습니다."하고,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은 아뢰기를, "들건대, 도적(盜賊)이 날로 심해져 황해도 · 개성부(開城府) 등지에는 이미 장수를 보내어 잡도록 했습니다.

전에 전임(田霖)이 포도대장(捕盜大將)이 되어 철저하게 잡아들였으나 그 여당(餘黨)이 아직도 남아 있어 거개 모두 보복(報復)하고 있습니다. 들건대, 장단(長湍) 사람으로 지휘(指揮)하여 도적을 잡게 한 자가 있었는데 적들이 곧 살해하였고, 또 인천(仁川) 수군(水軍)으로서 전임의 부하가 되어 도적 잡는 일을 지휘하던 자를 도적들이 보복하여 죽이며 말하기를, '전임이 이미 죽었는데 네가 인제 누구를 믿으랴'하는 등 참혹함이 이와 같으므로, 비록 민가에 지접(止接)하더라도 감히 발설(發說)하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인천(仁川)의 재인(才人)과 백정(白丁)들이 있는 소굴(巢窟)에 장수를 보내되, 사

냥한다고 핑계하여 사졸들도 알지 못하게 하고 느닷없이 야간(夜間)에 덮친다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도적들이 승정원(承政院)이나 병조(兵曹) 등의 곳을 날마다 엿보다가 그의 도당에게 급히 보고한다는데 조금이라도 지연되게 되면 비록 장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따로 계책을 마련함이 좋겠습니다."하고, 지사(知事) 권군(權鈞)은 아뢰기를, "인천만이 아니라 김포(金浦)·통진(通津) 등 지방에도 많이 있어 이리저리 서로 왔다갔다 하니, 만일 동시에 덮친다면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전임이 나가 돌아다니며 잡은 뒤에 거의 잡잡했었는데 지금 도로 번성함이 이러하니, 마땅히 신속하게 폐해를 제거해야 하겠습니다."하고, 조방언은 아뢰기를, "도적을 잡아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적이란 빈궁한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듣건대 민간(民間)이 지극히 빈곤하여 꾸어서 창곡(倉穀)을 상환(償還)한다 합니다.

도적을 없애는 계책은 마땅히 먼저 백성을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해야 할 것이니, 포흠(逋欠)한 것을 감해 주는 방도라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영인본】14책 377면 【분류】*왕실-경연(經筵)/*왕실-의식(儀式)/*정론-정론(政論)/*사법-치안(治安)/*사법-탄핵(彈劾)/*재정-전세(田稅)

8)박원종의 처 윤씨의 상언을 내리고, 어렵을 금하도록 한 사옹원의 관원을 추고하라 하다

중종 25권, 11년(1516 병자/명 정덕(正德) 11년) 6월 4일 갑인 3번째기사

박원종(朴元宗)의 처 윤씨(尹氏)의 상언(上言)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산림(山林)·천택(川澤)의 이(利)는 임금이 백성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난지포(難地浦)는 월산대군(月山大君)이 생존했을 때부터 입안(立案)을 받아서 고기를 잡았고, 대군이 죽은 뒤에는 부인(夫人)과 박원종의 처 윤씨가 다시 입안을 받아서 이제까지 고기를 잡았다.

김포(金浦)·통진(通津)·교하(交河)·양천(陽川)등에서도 위어(葦魚)를 잡아서 진상(進上)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제 입안을 받아서 오래도록 사렵(私獵)하는 포(浦)에 대하여 진상을 핑계삼아 어렵을 금하도록 넌지시 계청(啓請)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사옹원(司甕院)의 관원을 추고하라."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분부하신 백성과 함께 나눈다는 뜻은 지당하시나, 사옹원이 고기잡이를 금하도록 청한 것이, 소민(小民)의 물건인데도 이렇게 하면 백성과 함께 나누는 뜻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월산대군이 생존했을 때에 성종께서 내려 주신 것인데 박원종이 죽은 뒤에 부인이 계속 차지한 것이며, 사옹원의 뜻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사옹원의 관원을 추고하라고 명하신 것은 사체에 온편하지 못한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사옹원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진상에 채우고자 하니 이것을 내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상언에 대해서는 생전에 허가한다는 뜻으로 판부(判付)하라."하였다.

【영인본】15책 188면 【분류】*수산업-어업(漁業)/*재정-진상(進上)

9)부사정 김사귀가 통진현에서 백옥을 채굴하여 올리다

중종 26권, 11년(1516 병자/명 정덕(正德) 11년) 10월 4일 임자 2번째기사

부사정(副司正) 김사귀(金士貴)가 통진현(通津縣)에서 백옥을 채굴(採掘)하여 올리니, 상을 주도록 하였다.

【영인본】15책 219면 【분류】*재정-진상(進上)/*광업-광산(鑛山)/*왕실-사급(賜給)

10)삼공이 사인 김영을 보내어 통진의 옥을 흉년으로 추수 뒤에 채취할 것을 아뢰다

중종 27권, 12년(1517 정축/명 정덕(正德) 12년) 2월 17일 계해 1번째기사

삼공이 사인 김영을 보내어 아뢰기를, "통진(通津)에서 나는 옥(玉)은 마땅히 채취(採取)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흉년이 심하고 더구나 동작(東作) 때가 되어 폐단이 장차 적지 않을 것이니, 추수를 기다려 채취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15책 258면 【분류】*공업-채광(採鑛)/*구휼(救恤)

11)이행이 통진에서 캐는 옥을 급하지 않으면 시기를 미루도록 아뢰다

중종 29권, 12년(1517 정축/명 정덕(正德) 12년) 8월 24일 정묘 7번째기사

도승지(都承旨) 이행(李荇) 등이 아뢰기를, "통진(通進)에서 캐는 옥(玉)이 별로 급하게 쓰일 데가 없으면 백성을 부리는 것은 지극히 중한 일이니, 풍년이 들거든 캐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은 옳다. 그러나 입식(笠飾)으로 쓰는 백옥(白玉)을 병인년 이래로 중국에서 구하였으나 사오지 못하였는데, 이 옥이 입식에 알맞을 만하므로 캐려는 것이다.

다만 한 갓(笠)을 꾸미는 것이라면 무슨 폐해가 있으랴마는 합당치 않다면 굳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을 상의원(尙衣院)에 일러 옥의 품질을 보아서 캐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15책 323면 【분류】*공업-채광(採鑛)/*의생활-장신구(裝身具)/*외교-명(明)/*채정-역(役)

12)경기의 김포 · 양천 · 교동에 지진이 있었다

중종 34권, 13년(1518 무인/명 정덕(正德) 13년) 9월 7일 갑진(甲) 1번째기사

경기의 김포(金浦) · 양천(陽川) · 강화 · 교동(喬桐)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본】15책 479면 【분류】*과학-지학(地學)

13) 공경 대부가사치하는 폐단 등에 대한 김포 유학 박순의 상소

중종 36권, 14년(1519 기묘/명 정덕(正德) 14년) 9월 18일 기유 6번째기사

김포(金浦) 유학(幼學) 박순(朴珣)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천지(天地)에 참예하여 화육(化育)을 돕고, 도(道)를 강명하여 나라를 경륜(經綸)하는 것이 재상(宰相)의 직책이니, 만약 혹시라도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찌 신하된 사람의 도리를 다하여 임금을 요순(堯舜) 같은 성인이 되게 할 수 있고, 어찌 음양(陰陽)을 조화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우리 나라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은 권세를 끼고 방자한 짓 하기를 기탄없이 하고 막대한 재물을 거두어 모아 서로 사치를 숭상하며 자제(子弟)들의 저택도 궁궐처럼 찬탈합니다. 심지어 강가나 산 위에다 띠를 베고 돌을 캐며 땅을 파고 터를 닦아, 두어 달 동안이면 확려하고 나는 듯한 큰 정자가 서는데 눈부신 단청(丹靑)을 해 놓고 유관(遊觀)이라 하며 방탕하게 즐기는 장소로 삼으니, 어찌 '신하는 신하노릇 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이고, 하늘 받들기를 두려운 듯이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폐조(廢朝)가 패망한 것을 거울삼아 유관(遊觀)하는 곳을 허셨으니, 이는 신자(臣子)된 사람들이 마땅히 거울삼아 법받아야 할 일인데, 공경 대부들이 상의 뜻을 체득하지 않고 항시 확려하게 정자 짓는 것을 자랑삼아 하여 방탕함이 법도가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경외(京外)에 지은 정자들을 헐도록 명하여 신자(臣子)들이 모두 유신(維新)에 참여하도록 경계하신다면, 하늘에서 아름다운 징조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상소에 말한 정자를 지어놓고 유관한다고 한 것은 심정(沈貞)을 가리킨 것이니, 이때 정이 나이 젊은 사람들의 논박을 받게 되자, 때로는 더러 공암(孔巖)에다 지어 놓은 정자에서 놀았으므로, 그의 아우 심의(沈義)가 자기 형을 미워하여 가만히 박순을 교사하여 상소하게 한 것이다.'고 했다. 의(義)의 사람됨이 비록 우매하고 망령된 듯하지만, 형제간은 지친이어서 비록 집 안에서는 다투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모욕을 막아주는 것이므로, 만일 정을 논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의가 반드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의가 항상 그의 형을 비방하여 상소하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단지 이런 일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명인본】15책 569면 【분류】*정론-정론(政論)/*주생활-가옥(家屋)/*역사-사학(史學)

14)경기 김포현에 사는 김기정의 아내인 양녀 수덕에게 정문하다

중종 37권, 14년(1519 기묘/명 정덕(正德) 14년) 12월 15일 을해 2번째기사

경기 김포현(金浦縣)에 사는 김기정(金奇貞)의 아내인 양녀(良女) 수덕(水德)이 산골짜기에 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강박당했으나, 한사코 항거하다가 마침내 살해되었다. 이 일이 문달(聞達)되니, 정문(旌門)을 명하였다.

【영인본】15책 600면 【분류】*윤리(倫理)

15)경성 및 경기의 양주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중종 38권, 15년(1520 경진/명 정덕(正德) 15년) 3월 17일 을사(5) 3번째기사

경성(京城) 및 경기의 양주(楊州)·부평(富平)·인천(仁川)·김포(金浦)·양천(陽川)·통진(通津)·교동(喬桐), 충청도의 면천(沔川)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본】15책 634면 【분류】*과학-지학(地學)

16)경기 영평·통진 등에 잇따라 서리가 내리다

중종 39권, 15년(1520 경진/명 정덕(正德) 15년) 4월 6일 계해 4번째기사

경기 영평(永平)·통진(通津)에 6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리고, 평안도 성천(成川)에 우박이 내리고, 맹산(孟山)·영원(寧遠)·희천(熙川) 등 고을에 눈이 내리고 영변(寧邊)에 서리가 내리고, 전라도 낙안(樂安)에 3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영인본】15책 644면 【분류】*과학-천기(天氣)

17)경기 인천 · 남양 등에 지진이 있고, 충청도 대흥현의 민가에서 소가 기형의 새끼를 낳다

- 중종 39권, 15년(1520 경진/명 정덕(正德) 15년) 4월 8일 을축 5번째기사

경기 인천(仁川) · 남양(南陽) · 강화(江華) · 부평(富平) · 양천(陽川) · 김포(金浦) · 금천(衿川)과 충청도 면천(沔川)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7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의 민가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뒷다리의 큰 마디 아래에 두 다리가 더 났다.

【영인본】15책 644면 【분류】*과학-천기(天氣)/*과학-지학(地學)/*과학-생물(生物)

18)전국 각지에 우박이 내리다

- 중종 47권, 18년(1523 계미/명 가정(嘉靖) 2년) 윤4월 24일 갑자 5번째기사

경기(京畿)의 양주(楊州) · 부평(富平) · 이천(利川) · 양지(陽智) · 양천(陽川) · 적성(積城) · 포천(抱川) · 가평(加平) · 김포(金浦) · 용인(龍仁) · 안성(安城) · 수원(水原) · 풍덕(豐德) · 장단(長湍) · 양근(楊根) · 여주(驪州) · 고양(高陽) · 교동(喬桐) · 통진(通津)과 평안도의 영변(寧邊) · 덕천(德川) · 맹산(孟山) · 운산(雲山)과 황해도의 연안(延安) · 곡산(谷山) · 배천(白川) · 신계(新溪)와 강원도의 원주(原州) · 금성(金城)에 우박이 내렸다.

【영인본】16책 216면 【분류】*과학-천기(天氣)

19)경기 관찰사 조옥곤이 벌레의 재해에 대해 치계하다

- 중종 50권, 19년(1524 갑신/명 가정(嘉靖) 3년) 5월 25일 기축 5번째기사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조옥곤이 치계 하였다. "양주(楊州) 땅에 검은 바탕에 붉은 주둥이를 한 민보리를 먹는 벌레가 있으며, 김포(金浦)에 푸르고 검은 벌레가 있는데 크기가 두 잠 잔 누에만하고 보리 이삭과 조 · 피의 큰 줄기를 먹으며 위세를 떨치고, 화곡(禾穀)을 먹는 푸르고 검은 벌레가 있습니다."

【영인본】16책 310면 【분류】*과학-생물(生物)/*농업-농작(農作)

20)야대에서 심사손 등과 진하 · 양화도 나루 이전 등에 대해 의논하다

중종 52권, 19년(1524 갑신/명 가정(嘉靖) 3년) 10월 7일 무술 5번째기사

야대(夜對)에 나아갔다.〈본문중략〉

참찬관(參贊官) 남세준(南世準)이 아뢰기를, "물을 건너던 배가 물이 얕은 곳에서 뒤집혔으므로 구제하였더라면 죽은 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인데, 강변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처럼 참혹한 일이 있었으니, 특별히 죄를 다스려서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하고, 심사손이 아뢰기를, "양화도(楊花渡)는 연전부터 물이 얕아져서 여느 때에도 건너기가 어려우므로, 김포(金浦) · 통진(通津) 사람들이 감사(監司)에게 정장(呈狀)하여 하류에 나루를 옮기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나루에는 세 갈래 물이 있어 건너는 자가 괴로와하니, 하류에 나루를 옮기면 괜찮겠습니다."하였다.

【영인본】16책 345면 【분류】*왕실-경연(經筵)/*외교-명(明)/*교통-수운(水運)

21)양화도 나루 이전에 대해 경기 감사에게 묻게 하다

중종 52권, 19년(1524 갑신/명 가정(嘉靖) 3년) 10월 8일 기해 1번째기사

정원(政院)에 전교하였다. "무릇 강을 건너는 사람을 과중하게 실으므로 빠지게 되니, 사선(私船)은 없앨 수 없으나 한 배에 타는 수를 작정(酌定)하여 과중하게 싣는 것을 금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사(該司)를 시켜 정부와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야대(夜對)에서 경연관(經 官)이 아뢰기를 '양화도에는 모래가 쌓인 데가 있어서 건너기 어려우므로 김포(金浦) · 통진(通津)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루를 하류로 옮길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합니다.' 하였는데, 옮겨야 할 것인지를 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하서하여 물으라."

【영인본】16책 345면 【분류】*교통-수운(水運)

22)경기 김포 · 충청도 영춘 · 강원도 간성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19)중종 56권, 21년(1526 병술/명 가정(嘉靖) 5년) 4월 10일 임술 3번째기사

경기 김포(金浦), 충청도 영춘(永春), 강원도 간성(杆城), 경상도 선산(善山) · 안동(安東)에 우박이 내렸다.

【영인본】16책 506면 【분류】*과학-천기(天氣)

23)경기 광주 · 고양 · 금천 등지에 충해가 발생하다

ㄴ중종 57권, 21년(1526 병술/명 가정(嘉靖) 5년) 5월 9일 신묘 4번째기사

경기의 광주(廣州) · 고양(高陽) · 금천(衿川) · 교하(交河) · 과천(果川) · 통진(通津) 등 고을에 충재(蟲災)가 있었다.

【영인본】16책 510면 【분류】*과학-생물(生物)/*농업-농작(農作)

24)경기 장단 · 고양 등지에 황충이 발생하다

ㄴ중종 57권, 21년(1526 병술/명 가정(嘉靖) 5년) 7월 17일 무술 4번째기사

경기장단(長湍) · 고양(高陽) · 양천(陽川) · 부평(富平) · 광주(廣州) · 김포(金浦) · 금천(衿川) · 교하(交河) 등 고을에 황충이 발생하였다.

【영인본】16책 520면 【분류】*과학-생물(生物)

25)경기 김포현에 지진이 있다

ㄴ중종 58권, 22년(1527 정해/명 가정(嘉靖) 6년) 2월 22일 기사 2번째기사

경기의 김포현(金浦縣)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본】16책 550면 【분류】*과학-지학(地學)

26)경기 김포 · 양천 · 양지 · 양성과 충청도 진천에 우박이 내리다

중종 61권, 23년(1528 무자/명 가정(嘉靖) 7년) 4월 6일 정미 3번째기사

경기 김포(金浦) · 양천(陽川) · 양지(陽智) · 양성(陽城)과 충청도 진천(鎭川)에 우박이 내렸다.

【영인본】16책 648면 【분류】*과학-천기(天氣)

27)경기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일대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중종 61권, 23년(1528 무자/명 가정(嘉靖) 7년) 5월 9일 기묘 1번째기사

경기 통진(通津)에 새알만한 큰 우박이 내렸는데, 반 자 가량씩이나 쌓여 이틀이나 녹지 않으므로 곡식이 손상(損傷)되었다. 용인(龍仁) · 인천(仁川) · 양지(陽智) · 고양(高陽), 충청도 보령(保寧) · 홍산(鴻山) · 서천(舒川) · 한산(韓山), 황해도 배천(白川) · 강음(江陰) · 송화(松禾), 전라도 무장(茂長) · 태인(泰仁) · 흥덕(興德)에 우박이 내렸다.

【영인본】16책 661면 【분류】*과학-천기(天氣)/*농업-농작(農作)

28)삼공이 재변이 있어 관가와 작헌례 · 시학 등을 가을로 미루어 할 것을 건의하다

· 중종 61권, 23년(1528 무자/명 가정(嘉靖) 7년) 5월 13일 계미 2번째기사

영의정 정광필 · 좌의정 심정 · 우의정 이행이 아뢰기를, "요사이 일기가 순조롭지 못하여 4~5월 무렵에 잇달아 우박이 내리는 재해가 있었고 또한 뇌성하며 벼락치는 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신들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소치이기에 일찍이 와서 사직하고 싶으면서도 번독(煩瀆)스러워 실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듣건대 통진현(通津縣)에 우박이 내려 2~3일이 되어도 녹지 않으므로 벼와 곡식이 또한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비상한 변으로서, 신들이 직에 있기가 지극히 미안하므로 감히 사직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의 재변은 이런 것만이 아니다.

내가 즉위(卽位)한 이후로 20여 년 동안에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으니 이는 내가 부덕한 까닭이다. 삼공(三公)은 여러 차례 체대(遞代) 되었으므로 더욱 이 때문에 인책할 것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하매, 정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재변이 생김은 신들의 소치 아닌 것이 없고, 상께서는 조심하고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항시 해이해지지 않으려는 뜻을 가지신 것을 신들이 본래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변을 만나면 진실로 더욱 공경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의 관가(觀稼)하는 일은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재변이 있은지 순일(旬日)이 되지 못했으니 마땅히 안정하게 있으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관가하는 것이 한갓 재변을 만난 때의 도리에 합당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바야흐로 날씨가 몹시 더워 상의 옥체가 또한 수고로우실까 싶으니 가을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본문중략〉

【영인본】16책 662면 【분류】*인사-임면(任免)/*과학-천기(天氣)/*농업-권농(勸農)/*왕실-의식(儀式)

29)복성군 부인의 일 등을 대간이 건의하고 거둥 때 탐학했던 관리를 파직하라고 현부가 건의하다

중종 64권, 23년(1528 무자/명 가정(嘉靖) 7년) 윤10월 8일 병자 1번째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복성군 부인의 일은, 당초 논계(論啓)하였을 때에 상교(上敎)에 '대간의 논계를 들으면 스스로 내려갈 것이다.' 하였으나 이제까지 지체하여 거의 내려갈 생각이 없으니, 처음에 올라온 것과 올라와서 지체하여 돌아가지 않는 것은 가장(家長)이 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인범(尹仁範)이 조정이 놀라와하는 뜻과 상께서 머므르지 말아야 한다고 분부하신 뜻을 아는데도 곧 내려보내지 않으니, 이는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한데, 윤인범이 부인(婦人)을 꾀어 함부로 진소(陳訴)하여 버젓이 정원(政院)에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조정이 놀라와하고 상의 뜻이 윤허하지 않으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감히 진소한 까닭은 위로 상의 뜻을 시험하고 아래로 조정을 엿보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일은 작으나 앞으로 올 화(禍)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니, 윤인범을 조옥(詔獄)에 내려 추고하소서."하고, 현부가 또 아뢰기를, "영릉(英陵)에 거둥하실 때에 상께서 민폐를 없애고자 하여 지나는 각 고을로 하여금 호종(扈從)하는 인원에게 인정(人情)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천부사(利川府使) 박조(朴礁)·통진현감(通津縣監) 이성달(李成達)은 자공(支供)을 빙자해서 민간을 침학(侵虐)하여 매우 범람하게 거둬 들였으니, 저 백성이 어떻게 상께서 폐단을 없애려 하신 뜻을 알겠습니까? 곧 파직하소서.

이 두 사람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각 고을도 외람된 자가 있으므로 지금 문견(聞見)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중에서 더욱 심하므로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또 안종탄·변명윤을 놓아보내서는 안되겠다는 일은 대중(臺中)이 잘 알고서 논계(論啓)하였으니 유난(留難)하지 마소서."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상주목사·관관은 죄가 무거우므로 다시 가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상주(尙州)는 큰 곳이므로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부득이 빨리 갈아야 합니다."하니, 전교하였다.

"복성군(福城君) 부인(夫人)의 일은, 조정과 나의 뜻이 다 곧 내려가야 마땅하게 여기는데 이제까지 가지 않으므로 나도 의심하였더니 이제 들건대 이달 17일에 떠난다 한다. 부인(婦人)이 가는 것은 오늘 기별을 듣고 내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당초 올라올 때에 구종(驅從)과 말이 다 내려갔을 것이니, 이는 말과 구종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내려가려는 것일 것이다. 또 윤인범은 상중(喪中)이다.

서울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부인을 꾀었겠는가? 부인(夫人)이 당초에는 앓는 어버이를 보려고 올라왔는데, 우연히 상언(上言)을 올린 것이지 어찌 다 윤인범에게 의논해서 하였겠는가? 꾀어 시켰다는 일에 믿을 만한 꼬투리가 있다면 추고하는 것이 옳겠으나, 의심스럽기만 한 일로 상중인 사람을 추고할 수는 없다. 또 이천과 통진의 수령의 일은, 과연 그렇다면 파직하는 것이 옳겠으나 수령의 일은 그 실상을 모르고 먼저 파직할 수 없으니, 추고하여 실상을 알고 나서 파직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영인본】17책 68면 【분류】*정론-간쟁(諫諍)/*사법-탄핵(彈劾)/*사법-행형(行刑)/*왕실-종친(宗親)/*인사-임면(任免)/*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가족-가족(家族)

30)윤인범을 추고하라고 대간이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종 64권, 23년(1528 무자/명 가정(嘉靖) 7년) 윤10월 9일 정축 3번째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부인(夫人)이 지금 아직 내려갈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윤인범(尹仁範)이 시켜서 지체한다고 여겨도 괜찮겠으나, 이미 떠날 날을 정하였는데 어찌 지체하겠는가? 또 상언을 금하지 않은 일을 추고하려 한다면 오히려 말할 수 있겠으나, 부인(婦人)을 꾀어서 상언을 올려 상하의 뜻을 엿본다고 말한다면 내 생각에는 정리에 벗어나는 일로 여겨진다. 또 이천(利川)과 통진(通津) 등 고을의 수령의 일은, 대간이 아뢴 것을 부실하게 여겨서 추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저 조관(朝官)의 일은 추고하지 않고서 먼저 파직하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내가 대체를 거론한 것이었다. 과연 아뢴 바와 같이 이번 거둥에 상하가 다 민폐를 없애고자 하여 미리 수령에게 하유(下諭)하였는데, 수령이 된 자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꾀하였으니, 이제 파직하지 않으면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다. 아뢴 대로 파직하라.

상주목사·판관의 일은, 대간이 여러날 논계하였고 또 이제 바야흐로 공채(公債)를 바치는 때이므로, 그 고을을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모두 체직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니,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복성군 부인은 조종의 상하가 다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인범이 재촉하여 내려가게 하였다면 부인이 어찌 이제까지 지체하였겠습니까? 이는 윤인범이 시켜서 지체한 것이었을 것이며, 이는 조정을 업신여긴 것이니 죄가 진실로 무거우며, 부인을 꾀어 함부로 진소(陳訴)한 것은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대저 상언(上言)하는 일은 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그 생각이 다 윤인범에게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상하의 뜻을 엿본 것은 그 조짐이 작지 않으므로 부득이 조옥(詔獄)에 내려 추국(推鞫)해야 마땅하니 유난(留難)하지 마소서."하니, 전교하였다. "부인은 이제 이미 떠날 날을 정하였으니 윤인범이 시켜서 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상언한 일은 어째서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반드시 윤인범이 시켰겠는가? 윤인범이 시켰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조옥에 내려 추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하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영인본】17책 68면 【분류】*정로-간쟁(諫爭)/*사법-단핵(斷劾)/*사법-형정(行刑)/*인사-임면(任免)/*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왕실-종친(宗親)/*가족-가족(家族)

31)경기 금천과 통진에 누리가 생기다

중종 70권, 26년(1531 신묘/명 가정(嘉靖) 10년) 5월 29일 임자 5번째기사

경기 금천(衿川)과 통진(通津)에 황충(蝗蟲)이 발생하였다.

【영인본】17책 306면 【분류】*과학-생물(生物)

32)파직한 사람들이 서용이 시급하니 개정하도록 헌부에서 아뢰니 따르다

중종 77권, 29년(1534 갑오/명 가정(嘉靖) 13년) 4월 19일 을묘 1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무릇 파직한 사람들을 곧 도로 서용하는 것은 매우 구차한 일입니다. 또한 사천수호원(泗川宇浩源)과 같은 사람은 늙은 어미를 봉양하지 않았고 사리에 틀린 송사하기를 좋아하였으며, 부호군(副護軍) 김양필(金良弼)은 외람되게 항별을 가하여 사람을 죽였기에 영구히 서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급급하게 서용할 것이 없으니 개정하소서."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사천수 호원은 죄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도로 서용되었기에 죄 있는 사람들이 징계하여 고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공론도 행해지지 않을까 싶으니, 내리신 명을 도로 거두소서.

금성현령(金城縣令) 여세흥(呂世興)은 앞서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있을 때 국곡(鞫穀)을 거두고 내줄 적에 내주기만 하고 거두어들일 줄은 알지 못해서 국곡이 모두 민간에 나가 있게 하였습니다. 또 관의 일을 멋대로 하여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로지 이 사람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금성은 길가의 잔약한 고을이니 결코 이런 사람을 차임하여 보낼 수 없습니다. 체직시키소서."하니, 답하였다. "요사이 파직한 사람을 시급히 서용한 일은 아뢴 뜻이 지당한데, 나 역시 너무 빠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성부(漢城府)에 판윤(判尹)이 비어 있고 좌윤(左尹) 및 우윤(右尹)이 북경(北京)에 갈 차례에 당했는데, 각가지로 헤아려봐도 충차할 길이 없는데다 또 한성부 당상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도로 파직한 사람을 서용한 것이다. 심언경(沈彦慶)의 경우도 죄가 같은 사람들을 모두 이미 서용했기 때문에 서용한 것이다. 사천수와 김양필은 모두 아뢴 대로 하고, 여세흥 또한 체직시키라."

【영인본】17책 511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

33)대사헌 허항이 송사와 관계되어 체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중종 81권, 31년(1536 병신/명 가정(嘉靖) 15년) 5월 18일 임신 1번째기사

대사헌 허항(許沆)이 아뢰기를, "신이 침구(鍼灸)하느라 말미를 받은 뒤에 손발이 부자유스러워서 출사(出仕)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숙배(肅拜)하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또 지난해 봄에 신의 장모가 신에게 통진(通津)에 사는 한 명의 종을 주었는데, 그 종이 아내를 데리고 왔기에 양천 여부를 물어보니 '양녀이다. 평양 강서 지방의 태생으로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 통진으로 나왔다가 남편이 죽은 뒤에 다시 저의 아내가 되었다.' 고 하였습니다.

신의 장모는 그가 먼 지방의 태생이라서 근본을 살피기 어려우므로 곧 한성부에 정소하였고, 한성부에서는 사는 부(部)에 하체(下帖)하여 입안(立案)을 내온 후에 종을 따라 신의 집에서 거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양반 한 사람이 자기집에서 도망친 종이라 하고 잡아가고, 신의 장모 집을 상대로 형조에 송사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그의 종이라면 결급(決給)할 뿐이고, 양녀일 것 같으면 또한 돌아갈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신의 집에서 거처하다가 송사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 양반이 매번 신의 이름을 들추어 명기(名器) 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으니, 어찌 감히 풍헌(風憲) 의 자리에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 시켜 주소서."하니, 전교하였다.

"송사로 보면 경과는 관계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송사하는 사람이 공초(供招)할 때마다 이름을 들추면 또한 좋지 못한 듯하다. 이와 같은 송사는 요사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일이 후일의 격례가 될까 염려되고 대간 의 거취는 가볍게 처리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영인본】17책 658면 【분류】*인사-임면(任免)/*사법-재판(裁判)/*신분-천인(賤人)

34)경기도 강화 · 교하 · 통진 등의 고을에 충해가 있다

중종 87권, 33년(1538 무술/명 가정(嘉靖) 17년) 5월 20일 임진 2번째기사

경기도 강화(江華) · 교하(交河) · 통진(通津) 등의 고을에 충해(蟲害)가 있었다.

【영인본】18책 180면 【분류】*과학-생물(生物)

35)조만령의 집을 헐고 그 터에 못을 파서 미워함의 뜻을 보이게 하다

중종 90권, 34년(1539 기해/명 가정(嘉靖) 18년) 5월 3일 경오 2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번 이연수(李連守)가 제 아비를 죽여 그렇게 큰 사건이 없었는데, 지금 또 조만령이 제 계모와 서모를 간통했다. 내가 율문을 보건대 계모는 친모(親母)와 같았다. 그러한 사건은 너무나도 흉악하기 때문에 율문에도 분명히 밝혀 둔 곳이 없는게 아닌가. 그게 비록 저들 스스로 한 짓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왕화(王化)가 잘못된 소치이기도 하다. 조만령의 집이 통진(通津)에 있고 서울에도 있다고 하니 그 집을 헐고 그 터엔 못을 파서 매우 미워한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영인본】18책 287면 【분류】*윤리(倫理)/*사법-행형(行刑)

36)조만령의 집터에 못을 파지 말것을 헌부가 청하니 담당 아문에서 상고토록 하다

중종 90권, 34년(1539 기해/명 가정(嘉靖) 18년) 5월 12일 기묘 2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집을 헐고 그 터에 못을 판다는 것이 율문에는 없는 조항인데, 조만령(趙萬齡)의 죄악이 몹시 크다 하여 집을 헐고 못을 파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문 에 없는 것을 단서를 열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한번 단서가 열리고 나면 뒤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니, 집을 헐고 못을 파지 마소서."하니, 답하기를, "율문에 없는 것은 단서를 열어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매우 마땅하다. 다만, 조만령의 사건은 인륜의 큰 변괴로서 아비를 죽인 것과는 다르지만, 그 죄악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아비를 죽인 자에 대하여서는 외방인 경우 그가 사는 곳의 읍호(邑號)를 강등하게 되어 있는데, 그가 사는 곳이 바로 통진(通津)이어서 더 이상 강등할 이름이 없기에 집을 헐고 못을 파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저번에 금부 당상(禁府堂上) 이 빈청 에 모여 의논하여 아뢴 후 승낙 을 받들어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만약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단서를 열어 놓는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전례가 있는 일이어서 단서를 열어 놓는 예는 아니다."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반드시 집을 헐고 못을 팠던 전례가 있을 것이니, 담당 아문에서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영인본】18책 295면 【분류】*윤리(倫理)/*사법-재판(裁判)/*사법-행형(行刑)/*정론-간쟁(諫諍)/*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37)간원이 군자감 판관 최홍제와 김포현령 최숙의 파직을 아뢰니 윤허하다

- 중종 94권, 36년(1541 신축/명 가정(嘉靖) 20년) 3월 22일 무신 2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 최홍제(崔弘濟)는 인품이 비루하여 가는 곳마다 탐욕스럽고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뱉으며 더럽게 여깁니다. 마땅히 엄히 다스려 나머지 사람들을 힘쓰게 하소서. 김포현령(金浦縣令) 최숙(崔璹)은 전에 현감으로 있을 적에 가혹한 세금을 끝없이 거두어들여 체임되어 돌아갈 때에 짐바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관부(官府)는 텅 비고 온 지경이 피폐되었으니, 죄책(罪責)을 면한 것만도 이미 다행인데 승진시켜서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에 서용하셨으니, 탐욕스럽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자가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아울러 파직시켜 탐욕스런 풍습을 바로잡도록 하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영인본】18책 451면 【분류】*사법-탄핵(彈劾)

38)딸이 남편과 함께 어미를 죽인 사건이 나자 추고하게 하다

- 중종 99권, 37년(1542 임인/명 가정(嘉靖) 21년) 8월 26일 계묘 1번째기사

경기 관찰사 【신거관(愼居寬)】가 계본(啓本)을 올렸는데, 전교하였다.

"딸이 어미를 시해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인륜의 변고는 없다. 심상하게 추문해서는 안 된다. 이 공사를 준례에 따라 형조에 내리면 반드시 속히 회계(回啓)하지 않을 것이니, 경관(京官) 을 파견하는 데 대한 당부(當否)와 속히 회계한 내용으로 형조에 이르라." 【계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진(通津)에 사는 사비(私婢) 업이(業伊)가 남편 손효선(孫孝善)과 함께 어미 막금(莫今)을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업이의 남동생 백송(白松)의 말에 의하면 '밤에 어미가 우는 소리를 듣고 놀라 일어나서 보니 방문 밖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이들이 어미를 마당 가로 끌고 가서 칼을 빼어 찔러 죽였다. 두 사람은 손효선과 내 누이 업이였다.' 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명백합니다. 딸이 어미를 살해한 것은 인륜의 큰 변고이니 심상히 추고해서는 안됩니다. 경관 을 보내어 추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영인본】18책 618면 【분류】*윤리(倫理)/*사법-재판(裁判)/*헌정-지방행정(地方行政)

39)어미를 살해한 사건과 과거의 부정에 대해 논의하다

중종 99권, 37년(1542 임인/명 가정(嘉靖) 21년) 8월 28일 을사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경기 관찰사의 계본을 보니, 통진에 사는 여인이 그 남편과 동모하여 어미를 살해했다고 한다.

이는 인륜의 큰 변고로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니, 마땅히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추고해야 하겠다."하니, 집의(執義) 임호신(任虎臣)이 아뢰기를, "인륜의 변고가 과연 경악스럽습니다. 근래 기강이 확립되지 않아서 이런 변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치도(治道)에 큰 방해가 됩니다."하고, 영사(領事) 윤인경(尹仁鏡)은 아뢰기를, "인륜의 큰 변고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위에서 교화하는 방도가 극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이런 변고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끝까지 국문하여 통렬히 다스림으로써 그 죄를 바루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틀림없이 본원(本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교화가 밝혀지지 않는 탓이다."하였다. 〈본문중략〉

【영인본】18책 619면 【분류】*왕실-경연(經筵)/*윤리(倫理)/*사법-재판(裁判)/*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선발(選拔)/*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40)헌부가 통진 · 원주의 패륜사건을 아뢰고 읍호 강등 문제를 논의하다

중종 99권, 37년(1542 임인/명 가정(嘉靖) 21년) 9월 4일 신해 1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인륜이 밝혀지지 않아 풍속이 퇴폐함에 따라 강상(綱常)의 변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통진에서 어미를 살해한 딸이 있었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기전(畿甸) 은 왕화(王化)가 제일 먼저 미치는 곳인데도 이러한 변고가 발생하였으니 인륜이 멸절(滅絕)되어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는 교화가 행해지지 않은 소치이지만, 극악한 자를 베어 형법(刑法)을 바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중략〉

【영인본】18책 619면 【분류】*사법-행형(行刑)/*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정론-간쟁(諫爭)

41)윤은보 · 홍언필 · 윤인경이 통진 · 원주의 패륜사건을 아뢰다

중종 99권, 37년(1542 임인/명 가정(嘉靖) 21년) 9월 5일 임자 1번째기사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시역(弑逆)은 큰 죄이어서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살던 고을까지 아울러 강등시켜 왔던 것입니다. 유석의 죄는 처결한 지가 이미 오래이지만 형법(刑法)에 미진한 점이 있어 물정(物情)이 지금까지 울분을 품고 쾌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원주의 읍호를 강등시키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法司)가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언필은 의논드리기를, "예부터 적자(賊子)가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유석의 죄악은 치화(治化)를 더럽힌 것이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번 의논하여 정죄하였고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집을 파괴하여 못을 파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죄악을 징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읍호까지 강등시킨다면 통진도 읍호를 강등시켜야 하는데, 현감(縣監)을 더 이상 강등시킬 수 없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을 달리하는 것은 해로울 것 같으니, 집만 파괴하여 못을 파고 읍호는 강등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인경은 의논드리기를, "유석이 아비를 살해하려 했던 죄는 천지에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그가 살던 원주의 읍호를 소급해서 강등시켜 물정을 쾌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하였는데, 상이 홍언필의 의논을 따랐다.

【영인본】18책 619면 【분류】*정론-간쟁(諫諍)/*사상-유학(儒學)/*역사-고사(故事)/*풍속(風俗)/*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42)형조가 통진에서 어미를 죽인 업이의 죄를 대신과 의논할 것을 아뢰다

중종 100권, 38년(1543 계묘/명 가정(嘉靖) 22년) 3월 9일 계축 1번째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통진(通津)에 사는 여인 업이(業伊)가 어미를 죽인 죄는 당연히 능지처참(凌遲處斬)에 처해야 합니다. 업이의 남편 손효신(孫孝愼)은 사위로서 장모를 죽였는데, 율문(律文)에 의하면 '시마의 친족을 살해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하였고, 《대전(大典)》에 보면 '처부모의 상사에는 23일의 휴가를 준다.' 고 하였으니, 여기에 의하면 기년복(朞年服)의 친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년복의 친족을 살해한 자는 능지인데, 이 두 가지 견해를 형조에서 함부로 논단(論斷)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한 후에 조율(照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삼공과 의논하라고 전교하였다.

[영인본]18책 666면 【분류】*사법-재판(裁判)/*사법-행형(行刑)/*윤리(倫理)

43)사헌부가 패륜사건의 마을 읍호를 고치고 수령을 파직하라고 아뢰다

- 중종 100권, 38년(1543 계묘 /명 가정(嘉靖) 22년) 4월11일 을유 2번째기사

사헌부 가 아뢰기를, "근래 삼강의 변이 한꺼번에 겹치니 인심의 간악함과 교화가 밝지 못함이 지금보다 더한 적이 없습니다. 비단 오늘날에 경악스러울 뿐만아니라 후세의 조롱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원악(元惡)은 이미 죄를 받았지만 그들이 살던 읍은 아직도 그대로 변함이 없어 보는 사람들이 놀라 징계되도록 함도 없으니 특별히 간사함을 분별하는 뜻이 아니므로 물정(物情)이 대단히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돈이 살던 안성군(安城郡)과 윤승순이 살던 의성현(義城縣)을 원주(原州)의 예와 같이 읍호를 강등하고 이균이 살던 진천현(鎭川縣)과 업이(業伊)가 살던 통진현(通津縣)은 비록 강등 할 만한 호칭이 없더라도 옛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읍호를 고치소서. 양성현(陽城縣)은 삼강의 큰 변이 아울러 그 땅에서 발생했으니 읍호를 고치소서.

그리고 그 당시의 수령을 그대로 두는 것도 새롭게 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의성현령 정언룡(鄭彦龍)은 이미 파직되었고, 진천현감 이인홍(李仁弘)은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안성군수 유수천(柳壽千)과 양성현감 성해(成諧)와 통진현감 신광국(申匡國)도 모두 개차(改差)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말은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하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즉서 사관(史官)을 보내어 삼공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전번에 삼강의 큰 변이 일시에 겹친 것은 명령을 받들어 교화를 제대로 못한 소치이니 감사와 수령을 개차(改差)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화가 밝지 못한 것을 감사와 수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수령은 개차하면서 한 도(道)의 주인인 감사는 그대로 그 직에 있게 한다는 것도 온당치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감사는 체직은 하더라도 개차까지는 못하는 것이니 이러한 뜻을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

【영인본】18책 669면 【분류】*정론-간쟁(諫諍)/*윤리(倫理)/*사법-행형(行刑)/*사법-탄핵(彈劾)/*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44)삼공이 읍호 강등의 문제로 의논하니 윤은보의 의견을 따르다

중종 100권, 38년(1543 계묘/명 가정(嘉靖) 22년) 4월 12일 병술 1번째기사

영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극악 대죄가 반생한 고을의 읍호를 반드시 강등시키는 것은 사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죄인들이 살던 군현(郡縣)을 강등시킴으로써 깊이 미워하고 엄하게 단절하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천·양성·통진 같은 곳은 더 이상 강등할 만한 호칭이 없으니, 안성·의성은 모두 읍으로 강등하고 진천 등 세 읍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모두 옛 호칭을 고치게 하여 물정을 쾌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전항(前項)의 각읍이 소재한 도의 관찰사도 모두 체차(遞差)하여 제대로 교화를 펴지 못한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해야 하겠지만, 관찰사는 백성을 친접하는 관리와는 달리 단지 여러 읍을 순행하여 살필 뿐인데, 문책이 관찰사에게까지 미쳐 교체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면 소요스럽지 않을까 염려됩니다."하고, 좌의정 홍언필은 의논드리기를, "고을 사람 가운데 사형 받은 죄인이 발생하면 그 읍호를 강등시키거나 바꾸는 것은 근래에는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때에 악역(惡逆)을 범한 자의 집은 못으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오늘날의 저택과 같은 것입니다.

이돈(李墩) 등은 그들의 집터를 못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의 전례를 들어 읍호를 바꾸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바로 악을 깊이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라고 하여 어찌 악인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강등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이 끝도 없을 것이니, 도리어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하고, 우의정 윤인경은 의논드리기를, "강상의 큰 변이 일시에 겹쳐 발생하니 그 악역(惡逆)스러움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던 안성과 의성은 구례(舊例)대로 읍으로 강등시켜야 하고 양성 등 세 읍은 비록 강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시 호칭을 바꾸어서 간특함을 분별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을 받들어 교화를 펴는 것이 관찰사의 책임이라고 하지마는 만일 교화가 밝지 못한 책임을 관찬사에게 돌려 체직한다면 일의 체모에 있어서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뒤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신은 매우 어렵다고 여깁니다."하니, 은보의 의논을 따랐다.

【영인본】18책 669면 【분류】*윤리(倫理)/*사법-행정(行政)/*사법-단죄(斷罪)/*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45)충청 · 경기 관찰사의 계본에 따라 모두 정문하고 복호하라고 예조에 내리다

ㄷ중종 101권, 38년(1543 계묘/명 가정(嘉靖) 22년) 12월 22일 임진 3번째기사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정만종(鄭萬鍾)】의 계본(啓本)과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홍섬(洪暹) 】의 계본에 따라 모두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라고 예조(禮曹)에 내렸다.〈본문중략〉

경기의 계본은 이러하다. "김포(金浦)사는 유학(幼學) 홍한인(洪漢仁)은 13살 때에 어미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 살이하며 염장(鹽醬)을 먹지 않고 죽만 먹으며 몸소 제물을 가지고 조석으로 곡하면서 잔을 바치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아비가 병을 얻었는데, 허벅살을 네 번 베어서 아비를 먹였으나 끝내 효험을 얻지 못하고 죽으니, 모든 전례(尊禮)를 시종 초상 때와 같이 하고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시집가지 않은 누이를 때맞추어 혼인시키되 가난한 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문(禮文)대로 하였습니다. 동기간에 재산을 나눌 때에 가산(家産)을 죄다 나누어 주었고, 두 누이의 전민(田民)은 누이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는데, 다시 제 전민을 선택하여 요구하면 자기 것이라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문서를 고쳐서 주었습니다."】

【영인본]19책 29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윤리(倫理)/*풍속(風俗)/*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군사-군역(軍役)/*윤리(倫理)/*풍속(風俗)/*가족-가산(家産)

46)사헌부가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도 영선하는 역사가 늘어나는 폐단을 아뢰다

중종 102권, 39년(1544 갑진/명 가정(嘉靖) 23년) 4월 3일 신미 3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생들이 고달픔이 어느 때보다도 심한데, 바야흐로 수리하고 영선(營繕)하는 데가 매우 많아, 유위군(留衛軍)이 부족하므로 당령수군(當領水軍)까지 잡역(雜役)을 시켜서 그 수가 1천2백50명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병조(兵曹)가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따라 다시 두 도【충청도와 황해도이다.】의 수군을 조발(調發)하도록 청했습니다. 이러한 흉년에 양식을 싸가지고 멀리 가려면 굶주리고 고생하는 상황을 차마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궁(東宮)의 역사 같은 일은 정지할 수 없지만, 경원대군(慶原大君)의 집은 길례(吉禮)를 위해 이미 수리를 끝냈고,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은 새로 짓는 집으로 비록 다 짓지는 못했지만 행례(行禮)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다. 원래 배정한 유위군(留衛軍)이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닌데, 아울러 수군까지 잡역을 시켜 굶주리는 백성을 고생시킬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급하지 않은 역사는 일체 정지하여, 안태(安胎)【공주(公主)의 안태지는 동진(通津)에 있다.】와 예장(禮葬)【효정옹주(孝靜翁主)를 양천(陽川)에 장사했다.】 두 곳 외에 삼도(三道)【경기 · 충청 · 황해이다.】의 수군은 모두 잡역을 시키지 말게 하소서. 〈본문중략〉

사신은 논한다.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도 영선하는 역사는 더욱 번다하여, 유위군(留衛軍) 모두에게 잡역을 시켜도 오히려 부족하고 경기 수군까지 잡역을 시켜도 부족하자 충청 · 황해 두 도의 군사를 조발(調發)하게 되어 굶주림과 고생하는 상황을 차마 말할 수 없었으니, 사헌부가 감역관(監役官)을 추고한 것이 당연하다.

경대부(卿大夫)들이 주문갑제(朱門甲第)를 다투어 높고 크게 하기를 힘쓰고, 갖가지 방법으로 토색질하여 서로들 과시하며 자제할 줄도 모르고 또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니, 임금의 토목 공사하는 병폐를 누가 능히 간하여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영인본】19책 63면 【분류】*왕실-종친(宗親)/*왕실-의식(儀式)/*정론-간쟁(諫諍)/*농업-농작(農作)/*군사(軍事)/*재정-역(役)/*사법(司法)/*건설-건축(建築)/*역사-편사(編史)

47)영의정 정광필 · 좌의정 심정 · 우의정 이행이 헌부의 상소와 재변의 발생을 연유로 사직을 청하다

중종 65권, 24년(1529 기축/명 가정(嘉靖) 8년) 4월 28일 계사 1번째기사

48)삼공이 정전으로의 회복과 의옥 공사, 점마에 대해 건의하다

중종 65권, 24년(1529 기축/명 가정(嘉靖) 8년) 7월 8일 신축 1번째기사

49)헌부가 이응성 등의 역관들의 부정에 대해 징계 및 추고할 것을 아뢰다

중종 93권, 35년(1540 경자/명 가정(嘉靖) 19년) 9월 26일 갑인 2번째기사

50)강철의 우애를 칭찬하고 상을 주다

중종 97권, 37년(1542 임인/명 가정(嘉靖) 21년) 3월 10일 경인 2번째기사

51)윤은보 · 홍언필의 체직을 윤허하지 않고 패륜 사건에 대해 의논하다

중종 100권, 38년(1543 계묘/명 가정(嘉靖) 22년) 2월 18일 임진 1번째기사

52)간원이 재상을 잘못 기록한 수령의 파출을 청하다

중종 105권, 39년(1544 갑진/명 가정(嘉靖) 23년) 10월 5일 경오 2번째기사

10. 인종실록

1)대간이 성세창을 탄핵하다

인종 1권, 1년(1545 을사/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7일 경오 3번째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우의정 성세창은 인물이 소활하고 마음에 줏대가 없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까지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림(士林)이 공보(公補)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승 자리에 올랐으므로 물정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빨리 체직을 명하소서.

근일 누차 대신을 탄핵하여 인이 매우 소요스러워 진실로 미안한 줄 알지만 음양을 섭리(燮理)하는 중요한 자리를 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곡산군수(谷山郡守) 윤명은(尹鳴殷)은 술을 즐기고 아둔하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에 맞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김포현령(金浦縣令) 신수경(申秀瓊)은 교만하고 허탄하고 꺼림 없이 방자하여 마음 쓰는 것과 일하는 것이 매우 무상(無狀)하니,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기구 재상이 어찌 범연히 생각하여 복상하였겠는가 대신을 자주 체직하는 것도 소요스러운 일이니 개정할 것 없다.

윤명은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신수경은 파직하는 것은 지나치니 체직만 하라."하였다.

【영인본】19책 191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人事)/*사법-탄핵(彈劾)

11. 명종실록

1)여역으로 경기 가평 · 김포 · 영평에서 사람이 죽다

명종 3권, 1년(1546 병오/명 가정(嘉靖) 25년) 4월 22일 무신 4번째 기사

여역으로 경기 가평(加平)에서 1백 70인, 김포(金浦)에서 32인, 영평(永平)에서 1백 80인이 사망하였다.

【영인본】19책 411면 【분류】*호구(戶口)/*보건(保健)

2)황해도 · 평안도 · 함경도 · 강원도 · 경상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비가 오다

명종 3권, 1년(1546 병오/명 가정(嘉靖) 25년) 5월 23일 무인 3번째기사

황해도 우봉(牛峯) · 토산(兎山)과 경기 파주(坡州) · 광주(廣州) · 양주(楊州) · 연천(漣川) · 가평(加平) · 삭녕(朔寧) · 장단(長湍) · 마전(麻田) · 인천(仁川) · 고양(高陽) · 강화(江華) · 통진(通津) · 양천(陽川) · 죽산(竹山) · 진위(振威) · 금천(衿川) · 적성(積城) · 부평(富平) · 이천(利川) · 수원(水原) · 안성(安城) · 영평(永平) · 포천(抱川) · 음죽(陰竹) · 김포(金浦) · 교하(交河)와 충청도 직산(稷山) · 홍주(洪州) · 진천(鎭川) · 면천(沔川) · 평택(平澤) · 충주(忠州)에 지진이 일어났다. 〈본문중략〉

【영인본】1책 419면 【분류】*호구(戶口)/*과학-지학(地學)

3)청홍도 청주 · 홍주 등에 우박이 내리다

명종 10권, 5년(1550 경술/명 가정(嘉靖) 29년) 6월 4일 정유 4번째기사

청홍도(淸洪道) 청주(淸州) · 홍주(洪州) · 문의(文義)에 우박이 내렸는데 새알[鳥卵]만한 것도 있고, 팽안만한 것도 있고, 주먹만한 것도 있어 곡식이 모두 상했다. 경기(京畿)의 통진(通津) 백성 김개송(金開松)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영인본】19책 701면 【분류】*농업-농작(農作)/*호구-호구(戶口)/*과학-천기(天氣)/*과학-지학(地學)

4)조강에서 특진관 송세형이 군자창의 곡식, 저축, 종묘 중수 등을 말하다

명종 11권, 6년(1551 신해/명 가정(嘉靖) 30년) 4월 29일 정해 1번째기사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송세형(宋世珩)이 아뢰었다.

"전자(前者)에는 군자창(軍資倉)의 저축된 양곡이 1백만여 석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50만 석인데다가 일찍이 백성에게 흩어준 곡식이 거의 2만 5천 석이나 되고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다 진부(陳腐)한 것이어서 국용(國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것을 사용하고 새 것을 저축하는 것이 국가의 본의(本意)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줄 때 쌀이 혹 조금만 묵었으면 백성들이 받아가려 하지 않아서 3~4곳의 창고를 연 뒤에야 받아갔기 때문에 신이 친히 품질을 살펴보면서 나누어 주었는데, 다른 고을의 백성들은 받아갔으나 적성(積城)·연천(漣川)·양지(陽智)·통진(通津)·김포(金浦) 등 다섯 고을 백성들은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기근에 허덕인다면 어찌 쌀의 좋고 나쁜 것을 가릴 겨를이 있겠습니까. 또 그곳 백성들이 불공(不恭)한 말을 많이 하면서 관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느리고 온 수령을 이미 추고 하였습니다.

신이 전자에 종묘를 중수(重修) 하는 일로 인하여 살펴 보니, 기둥과 들보가 썩은 것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체로 아조(我朝)가 이곳에 도읍을 창건한 지가 거의 2백 년이나 되었으므로 공해와 궁궐(宮闕)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만약 장마가 져서 빗물이 스며든다면 일시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궁(泮宮)을 수리하고 비궁을 복구하는 등의 일은 아무리 흉년이라 해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종묘이겠습니까.

《춘추(春秋)》에 '세실(世室)의 지붕이 허물어졌다.' 고 기록한 것은 오래도록 수리하지 않은 것을 나무란 것입니다. 모름지기 속히 봉심(奉審)하여 수리해야 하겠습니다.

정업원(淨業院)은 중창(重創)하는 등의 일은 허비(虛費)만 될 뿐인데 그만둘 수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어 마땅히 해야 할 곳에 쓰신다면 다행하겠습니다."

【영인본】20책 23면 【분류】*왕실-경연(經筵)/*왕실-종사(宗社)/*재정-창고(倉庫)/*재정-국용(國用)/*건설(建設)

5)사간원에서 김포의 이생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성균관에 줄것을 청하다

- 명종 14권, 8년(1553 계축/명 가정(嘉靖) 32년) 5월 26일 신미 1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김포(金浦)의 이생지(泥生地)를 송사하는 이는 모두 사대부입니다.

상께서는 단지 김미의 탐욕스러움만 알았지, 유막손(劉莫孫)이라고 평계하여【우윤(右尹) 유진동(柳辰仝)이 유막손이라는 이름을 평계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다.】 같이 송사하는 자도 또한 모두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갓 김미에게만 허물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요즈음에는 학궁(學宮)에서 선비를 기르는데 쓰는 도구가 매우 박하여, 서책·지필 등의 물건을 유생들이 능히 스스로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래 모든 사사(寺社)의 토지를 다 도로 찾아 주도록 하면서 학궁에서는 어전(漁箭)까지도 도로 빼앗아 가므로, 주상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중들에게는 후하고 유생에게는 박하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사림(士林)이 모두 저상(沮喪)하여 있으니, 김포의 이생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성균관에 영원히 주소서.

그리고 방납(防納)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진성(陳省)【본읍(本邑)에서 바치는 공물(貢物)의 정장(呈狀)이다.】을 받아서 민생에 폐를 끼치므로 신들이 지난해 9월에 방납인과 서로 결탁하여 함부로 진성을 발급한 수령을 사면 전의 일을 막론하고 즉시 파직하라고 계문하여 법으로 세웠는데, 오늘날 거듭 발급한 수령을 사면 이전의 법으로 논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죄를 한번 범하여도 파직시키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 하물며 거듭 범한 자이겠습니까. 성첩(成貼)한 날짜가 어긋나는 것이, 혹 전관과 후관이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만들어 준 것 외에는 승전에 의하여 사면 이전을 가리지 말 것이며, 함부로 진성을 받은 사람 및 중간에서 술수를 부린 자도 아울러 사면 이전을 가릴 것 없이 전가사변(全家徙邊)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20책 134면 【분류】*정론(政論)/*사법-재판(裁判)/*농업-전제(田制)/*신분-양반(兩班)/*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사상-불교(佛敎)

6)이황이 김포의 속공전을 성균관에 하사한 데 대해 전을 올려 사례하다

명종 14권, 8년(1553 계축/명 가정(嘉靖) 32년) 6월 16일 신묘 1번째기사

예조판서 정사룡(鄭士龍)과 대사성 이황(李滉)【이황(李滉)은 천성이 담박하여 영리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가정에는 조금의 비축도 없었으나 항상 여유가 있는 것같이 하였다.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는 평이(平易)하고 간절하니 사람마다 애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등이 김포의 속공전(屬公田)을 성균관에 하사한 데 대해 전(箋)을 올려 사례하였는데 그 글에, "엎드려 산피니 성스러운 덕으로 임금이 될 운에 부응하여 임금의 표준을 세우셨고, 지치(至治)를 급선무로 삼아 교육하는 은혜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은택은 천하에 미치고 광채는 반벽(泮壁)에 넘쳤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정사룡(鄭士龍) 등은 재질이 모두 쓸모없고 학문도 미약한데 사장(師長)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니 어찌 교화의 효과를 보겠습니까. 외람되게 장보(章甫)를 쓰고 다만 문장만 일삼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비난이 두렵고 무익한 무리들이 왔다는 비방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찌 석뇌(錫賚)의 성전(盛典)이 권장하는 여러 방법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전(賜田)의 몇 만 이랑을 양현(養賢)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여 창고에 가득 곡식을 채울 수 있어서 때마다 곡식을 내려주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간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것은 만종록(萬鍾祿)에 가까와 외람됩니다. 부끄러움을 영광과 함께 느끼니 따라서 두려운 마음도 깊어집니다. 이것은 모두 주상전하의 정일(精一)한 심법(心法)으로, 지혜롭고 어짊을 몸소 솔선하였습니다. 순임금이 기(夔)에게 교육을 잘하라고 명하신 아름다운 뜻을 본받으셨고, 주 문왕(周文王)은 인재를 양성하는 큰 법을 넓히셨습니다.

사대부를 총애하여 영광되게 하셨으며 백성들에게 은덕을 입히셨습니다. 신 정사룡 등이 감히 교육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며 분연히 흥기하지 않겠습니까. 시서(詩書)를 강구하여 천명해서 위의 가르침을 받들어 선양하여, 자연스럽게 고무되는 진리를 터득해서 태평시대의 인재가 양성되기를 기약하겠습니다."【이황(李滉)의 글이다.】 하였는데, 사례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20책 142면 【보류】*양실-사급(賜給)/*농업-전제(田制)/*어문학-문학(文學)

7)서울에 큰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다

명종 21권, 11년(1556 병진/명 가정(嘉靖) 35년) 9월 13일 무진 5번째기사

서울에 큰 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 경기 파주(坡州)·수원(水原)·양천(陽川)·통진(通津)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황해도 곡산(谷山)에 눈이 3촌(寸)이 내렸다. 해주(海州)에는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렸고, 은율(殷栗)·신천(信川)·평산(平山)·문화(文化)에는 천둥이 쳤고, 옹진(甕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고, 배천(白川)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고, 강음(江陰)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고, 연안(延安)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새알만하였다. 안악(安岳)에는 눈이 내렸고, 봉산(鳳山)·토산(兎山)에는 눈이 내리고 천둥이 쳤고, 우봉(牛峯)에는 천둥이 치고 눈이 내리고 큰 비가 와서 내와 도랑의 물이 불어 넘쳤다. 전라도 남원(南原)의 봉수군(烽燧軍)인 김세견(金世堅)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담양(潭陽)에는 크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쳤다.

【영인본】20책 361면 【분류】*과학-천기(天氣)

8)경기 고양·양천 등지에 벌레가 발생하다

명종 23권, 12년(1557 정사/명 가정(嘉靖) 36년) 6월 2일 계미 5번째기사

경기 고양(高陽)·양천(陽川)·통진(通津)에 벌레가 발생했는데 모양이 두 잠잔누에 같은 것도 있고 세 잠잔 누에 같은 것도 있었다. 머리는 검고 몸뚱이는 누런 것이 조·피·벼 잎을 갉아 먹었다.

【영인본】20책 419면 【분류】*농업-농작(農作)

9)경기 삭녕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명종 29권, 18년(1563 계해/명 가정(嘉靖) 42년) 4월 1일 무신 5번째기사

경기 삭녕(朔寧)·금천(衿川)·교하(交河)·풍덕·고양(高陽)·김포(金浦)에 우박이 내렸다.

【영인본】20책 641면 【분류】*과학-천기(天氣)

10)남부 충의위 권응 등을 정문하다

명종 30권, 19년(1564 갑자/명 가정(嘉靖) 43년) 윤2월 2일 을해 1번째기사

남부(南部) 충의위(忠義衛) 권응(權擁), 〈본문중략〉 김포(金浦)의 사비(私婢) 자근금(者斤金), 【나이 16살에 그 아버지가 고창병(鼓脹病)을 만나 죽게되자,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술에 타서 드리니 한참 후에 병이 나았다.】 〈본문중략〉 정문하였다.

【영인본】20책 690면 【분류】*윤리(倫理)/*군사-군역(軍役)

11)간원이 전임 감사나 도사의 백성 부역을 금하도록 청하다

명종 31권, 20년(1565 을축/명 가정(嘉靖) 44년) 2월 30일 점유 1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생의 곤고(困苦)함이 어느 곳이나 다 그러합니다만, 경기 지방이 더욱 심해서 유망(流亡)하여 거의 다 없어졌으니, 폐해를 제거하고 쇠잔함을 소생시키기를 마땅히 물에 빠진 것을 건지고 불에 타는 것을 구해내듯이 해야만 남은 백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감사나 도사(都事)를 지낸 사람을 선생(先生)이라 하는데, 그 부모나 아내의 초상에 여막(廬幕)과 분묘(墳墓)를 설치하는 일을 감사가 각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면 각 고을에서는 민가(民家)에 역을 책임지워서 공공연히 조발(調發)하여 관가의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장지(葬地)가 원지에 있어서 나무나 돌을 실어 나를 수 없으면 반드시 쌀과 포목을 주어 사서 하게 하니, 나무 한 토막 돌 한 개도 그 값이 몇 갑절이 되어 부역 이외에 백성의 원망과 고통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청컨대 감사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일체 금지하여 그 폐해를 영원히 혁파하고 만일 전례를 핑계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으면 나타나는 대로 엄히 다스리소서."【이때 심전(沈銓)이 감사로서 어미의 상을 당하여 김포(金浦)로 귀장(歸葬)하였는데, 상려(喪廬)의 사치가 거실(居室)보다 더 과도하였고 영선(營繕)의 독촉이 국역(國役)보다 더 심하였으므로 아뢰었던 것이다. 대체로 심전의 탐욕 방자함이 일마다 다 이와 같았다.】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21책 8면 【분류】*사법-탄핵(彈劾)/*구휼(救恤)/*재정-역(役)

12)삼척 부사 등 수령에게 향표리를 내릴 것 등을 명하다

《명종 33권, 21년(1566 병인/명 가정(嘉靖) 45년) 11월 28일 갑신 3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삼척부사(三陟府使) 신의충(申義忠)은 마음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아 어루만지고 모든 일을 까다롭지 않게 하기를 힘썼으며, 조금도 백성을 침탈하는 폐단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형벌을 가볍게 덜어주었으며 부역은 모두 고르고 헐하게 해 주었으므로 온 경내가 편안해져 유민(流民)이 돌아와 안집하였다 한다.

남원부사(南原府使) 변영청(邊永淸)은 자신의 봉양에는 박하게 하면서 부역은 번거롭게 하지 않아 백성들이 매우 편히 여긴다 하며, 선산부사(善山府使) 송기충(宋期忠)은 청렴 간결하고 자애롭고 자상하여 백성 보기를 자식같이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각각 향표리(鄕表裏) 한 벌씩을 내리라.

통진현감(通津縣監) 이소(李韶)【음관(蔭官)으로 심연원(沈連源)의 외손이다.】는 청렴하고 삼가는 자세로 벼슬에 임하여 백성을 돌보고 폐단을 제거하였다 하니, 【일을 처리하는 재간이 있어서 혹 민폐를 제거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청렴하고 삼간다는 호칭을 소에게 붙일 수 있겠는가?】 갈려오면 직급을 올려주라."【전일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이런 하교가 있게 된 것이다. 선정(善政)을 한다고 서계한 것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 중에는 혹 전에 선정으로 상(賞)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세 사람만이 상을 받은 것이다.】

【명인본】21책 134면 【분류】*인사-관리(管理)/*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13)정탕 신광국이 공초하다

명종 2권, 즉위년(1545 을사/명 가정(嘉靖) 24년) 9월 5일 을축 14번째기사

14)갑사 전석정이 고변하다

명종 9권, 4년(1549 기유/명 가정(嘉靖) 28년) 6월 22일 경신 1번째기사

15)조강에서 이무강 등이 김영의 상소와 구수담의 일 등에 대해 아뢰다

명종 10권, 5년(1550 경술/명 가정(嘉靖) 29년) 5월 15일 무인 1번째기사

16)율부에 관한 일과 홍원관의 일 등을 사헌부에서 아뢰다

명종 16권, 9년(1554 갑인/명 가정(嘉靖) 33년) 5월 4일 계묘 1번째기사

17)사헌부가 남궁침의 체직을, 사간원이 심전 · 이택의 파직 등을 청하다

명종 33권, 21년(1566 병인/명 가정(嘉靖) 45년) 10월 5일 임술 1번째기사

12. 선조실록

1)경기 감사가 산릉에 쓸 돌을 제대로 대지 못한 통진 현감 유희규의 파직을 청하다

- 선조 12권, 11년(1578 무인/명 만력(萬曆) 6년) 1월 17일 기사 1번째기사

경기 감사가, 산릉(山陵)에 쓸 온돌석(溫突石)을 시기에 맞추어 실어 보내지 않았으니, 통진현감(通津縣監) 유희규(柳希規)를 파출시키라는 것으로 장계를 올렸다.

【영인본】21책 350면 【분류】*사법-탄핵(彈劾)/*왕실-종사(宗社)/*건설(建設)

2)경기 감사가 김포와 광주에 검은 안개가 끼었다고 보고하다

- 선조 22권, 21년(1588 무자/명 만력(萬曆) 16년) 11월 24일 계유 1번째기사

경기 감사의 서장(書狀)에, 도내(道內) 김포현(金浦縣)에는 이달 6일에 검은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였고 광주(光州)에는 이달 21일에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영인본】21책 455면 【분류】*과학-천기(天氣)

3)민병을 모아 싸운 김포현령 이조에게 당상을 제수하다

- 선조 28권, 25년(1592 임진/명 만력(萬曆) 20년) 7월 14일 신미 6번째기사

김포현령(金浦縣令) 이조(李調)는 병란이 일어난 뒤로부터 민병(民兵)을 모으고 군기를 정련(精練)하여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물러가지 않으니, 적이 감히 그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온전하였다. 비변사가 이 소문을 듣고 논상을 계청하니, 상이 당상(堂上)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21책 516면 【분류】*외교-왜(倭)/*군사(軍事)/*인사-관리(官理)

4)이조 · 김명원 · 유영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조 28권, 25년(1592 임진/명 만력(萬曆) 20년) 7월 15일 임신 4번째기사

이조를 동정대부 행김포현령(行金浦縣令)에, 김명원(金命元)을 의정부 좌참찬에, 유영경(柳永慶)을 승정원 승지에 제수하였다.

【영인본】21책 51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5)비변사가 의병들이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며 각 장수의 절제를 반도록 하자고 청하다

선조 30권, 25년(1592 임진/명 만력(萬曆) 20년) 9월 21일 무인 3번째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태평 세월이 오래되어 기강이 풀어진 끝에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무장(武將)으로서 고을을 맡아 지키는 자 대부분이 모두 적을 만나기만 하면 패하였으므로 뜻이 있는 자들이 소매를 떨치고 의에 분발, 의병을 규합하여 스스로 한 부대를 만들고서는 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제도(諸道)에서 창도한 까닭에 조정에서는 그들을 가상하게 여기고 모든 논상에서 다른 군인들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군부(軍簿)에 두고 있으면서도 난을 피해 도망하여 흩어져 간 자들까지 각기 떼를 지어 관가(官家)에 매이기를 기피하면서 이로우면 싸우고 강적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이기면 높은 상을 받고 패하여도 죄를 받지 않습니다. 각 부대가 뿔뿔이 흩어져 통속(統屬)된 데가 없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지금 바야흐로 가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대(沈岱)의 장계를 보건대, 장단(長湍)과 삭령(朔寧)의 의병은 이정암의 절제(節制)를 받게 하고, 이천(利川) · 여주(驪州) · 음죽(陰竹) · 죽산(竹山)의 의병은 성영(成泳)의 절제를 받게 하고, 통진(通津) · 양천(陽川)의 의병은 김천일(金千鎰)의 절제를 받게 하고, 파주(坡州) · 양주(楊州) · 광주(廣州)의 의병은 심대의 절제를 받게 하여 동서(東西)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계책이 온편하고 유익하며 일의 계획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내용으로 제장에게 하유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21책 546면 【분류】*군사-군정(軍政)/*군사-특수군(特殊軍)/*군사-전쟁(戰爭)/*외교-왜(倭)

6)사간원이 강화에 머물면서 적을 토벌하지 않은 최원을 파직하기를 청하다

◦선조 38권, 26년(1593 계사/명 만력(萬曆) 21년) 5월 5일 무오 2번째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훈련도정(訓鍊都正) 최원(崔遠)은 전에 전라 병사로 있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오랫동안 강화(江華)에 머물면서 한 해가 지나도록 물러나 움츠리고 있으면서 적을 토벌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김포(金浦)의 싸움에서도 관망만 하고 진격하지 않아 일군(一軍)이 적에게 함몰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사(巡察使) 권율(權慄)이 독성(禿城)에 와서 머물면서 함께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고자 하여 여러번 불렀으나 오지 않아 결국 1만 명에 이르는 군사가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의 다 죽었으니, 법으로 헤아려 보면 자연 그 죄에 해당하는 형률(刑律)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형벌을 면하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파직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명인보】21책 702면 【분류】*사법-탄핵(彈劾)/*외교-왜(倭)/*군사-전쟁(戰爭)

7)왜노에게 침탈당한 도와 침범당하지 않는 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

선조 39권, 26년(1593 계사/명 만력(萬曆) 21년) 6월 5일 무자 10번째기사

경략이 이자(移咨)하였는데 대략에, "본국의 팔도 중에 어느도 어느읍은 모두 왜노가 점거하였고, 어느도는 침범당하였으며, 어느도는 아직 침범받지 않았고, 어느곳 어느도는 전혀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세세히 갖추어 기록하여 자복(咨復)하도록 하십시오."하였는데, 회자(回咨)하기를, "평안도 평양부성(平壤府城) 및 중화(中和)·상원(祥原) 등의 군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겪었고, 〈본문중략〉등 현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겪었고, 단지 연안부(延安府) 한 성만은 수신(守臣)이 굳게지켜 용전 분투하여 적의 사기가 크게 꺾인채 도주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廣州)·여주(驪州)·파주(坡州)·양주(楊州)·수원(水原)·부평(富平)·이천(利川)·인천(仁川)·장단(長湍)·남양(南陽) 등 부진과 양근(楊根)·풍덕(豐德)·가평(加平)·안산(安山)·삭령(朔寧)·안성(安城)·마진(麻田)·고양(高陽) 등의 군, 그리고 용인(龍仁)·진위(振威)·영평(永平)·양천(陽川)·김포(金浦)·지평(砥平)·포천(抱川)·적성(積城)·과천(果川)·금천(衿川)·통진(通津)·교하(交河)·연천(漣川)·음죽(陰竹)·양성(陽城)·양지(陽智)·죽산(竹山)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화(江華)·교동(喬桐) 등의 부현은 아직 적이 지경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본문중략〉

【영인본】22책 4면 【분류】*외교-명(明)/*군사-전쟁(戰爭)

8)사간원이 황정욱 · 황혁의 일과 민곤서 · 임수형 등의 탄핵을 아뢰다

ㄴ 선조 42권, 26년(1593 계사/명 만력(萬曆) 21년) 9월 2일 계축 10번째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죄인 황정욱과 황혁을 속히 율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경기의 여러 고을은 난리를 겪은 이후로 탕패됨이 더욱 극심합니다. 이들을 잘 어루만져 안집시킬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위현령(振威縣令) 민곤서는 성품이 본래 탐욕스러운 데다가 오로지 착취만을 일삼고 있고, 지평현감(砥平縣監) 임수형은 김포(金浦)의 임시 수령으로 있을 적에 관가(官家)의 기물(器物)을 공공연히 가져갔었고, 지금 본고을의 현령이 되어서는 족속(族屬)들을 외람되이 데리고 와서 관가의 곡식을 많이 허비하였으니, 아울러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황정욱 등의 일은 헌부에 답한 것과 같다. 수령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영인본】22책 89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임면(任免)/*청론-간쟁(諫諍)/*사법-탄핵(彈劾)/*윤리-강상(綱常)/*군사-전쟁(戰爭)/*외교-왜(倭)

9)해주에 문안가는 내관의 행차에 사복시의 말을 지급하고 중도에 말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다

선조 48권, 27년(1594 갑오/명 만력(萬曆) 22년) 2월 21일 경오 3번째기사

전교하였다. "해주(海州)로 문안하러 다니는 내관(內官)이 왕래할 때 으레 쇄마(刷馬)를 타므로 각 고을에서는 소를 쇄출해서 지급하기까지 한다는데 요즘 같은 농사철에 어떻게 소를 쇄출할 수 있겠는가. 듣고 보니 놀라운 일이다.

무릇 문안(問安)하러 왕래할 적에는 2~3필의 말이 필요할 뿐이니 이제부터는 사복시(司僕寺)에 있는 양마(養馬)를 해주(海州)·연안(延安)·강화(江華)·통진(通津) 등에 평상시 분양(分養)하는 예에 따라, 각기 6필씩 나눠주고 기르게 하라. 이제부터 해주로 가는 자는 사복시의 말을 타고 가도록 할 것이며, 해주에서 오는 자는 분양한 말을 번갈아 갈아타고 올 것이며, 사람의 식량과 말먹이는 각각 그 출발지에서 노정을 헤아려 도급(都給)하라.

만약 중도에서 그전처럼 쇄마 및 공궤(供饋)와 말먹이를 내도록 책임지운다면, 본고을에서 즉시 그 노자(奴子)를 가두고 감사에게 이첩(移牒)하여 전계(轉啓)해서 치죄(治罪)하도록 하라. 이같이 한다면 엄연히 하나의 우전(郵傳)이 되어 조금이라도 중도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동궁(東宮)의 문안도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 다만 남방에는 역마(驛馬)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공사(公事)로 마련하여 행이(行移)토록 하라."

【영인본】22책 226면 【분류】*교통-마정(馬政)/*왕실-비빈(妃嬪)/*왕실-종친(宗親)

10)성문기찰의 임무를 소홀히 한 병조의 당상관을 추고하고 색낭청을 파직하도록 헌부가 건의하다

- 선조 85권, 30년(1597 정유/명 만력(萬曆) 25년) 2월 14일 을해 2번째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성문을 파수하며 출입을 기찰(譏察)함은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늘에 있어서는 더욱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달 13일에 김포(金浦) 군사 1백여명이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진법(陣法) 을 연습하라는 명에 따라 깃발과 무기를 지참하고 장사진(長蛇陣)을 이루며 행군하여 광주(廣州)로 향하다가 남대문(南大門)으로 들어와 동평관(東平館) 근처에 진을 쳤는데, 보기에 극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미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해조(該曹)에 단려와 고하지도 않았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날 남대문을 수직(守直)하던 수문장(守門將)과 별장(別將) 등을 잡아다 국문하라고 명하소서.

병조는 평소에 단속하지 못하여 기찰이란 중한 일을 항상 망각하고 있었으므로 명령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으니 역시 잘못입니다. 병조의 당상관을 추고하고, 색낭청은 파직시키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23책 163면 【분류】*사법-치안(治安)/*사법-탄핵(彈劾)/*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군사(軍事)

11)고양 · 김포 · 양천 등에 큰 우박이 내려 벼곡식이 손상되다

- 선조 88권, 30년(1597 정유/명 만력(萬曆) 25년) 5월 5일 을미 10번째기사

경기감사 홍이상(洪履祥)이 장계하였다. "고양군수(高陽郡守) 김운신(金澐身), 김포현령(金浦縣令) 박홍수(朴弘壽), 양천현감(陽川縣監) 성엽(成恬) 등의 첩보(牒報)에 '4월 28일 묘시(卯時)에 상기 각지방에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만하였고 작은 것은 개암만하였으며 한동안 쏟아지다가 그치 벼곡식이 곳곳에서 손상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는 변괴로 보통일이 아닙니다."

【영인본】23책 215면 【분류】*과학-천기(天氣)

12)헌부에서 이조의 잘못된 인사, 이여온 등 태만한 관리의 추고를 청하다

선조 94권, 30년(1597 정유/명 만력(萬曆) 25년) 11월 17일 갑진 2번째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국가가 위급한 때일수록 전조(銓曹)를 담당한 자는 마땅히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가림에 있어 한결같이 공도(公道)를 따르고 사정(私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서 정목(政目)이 한번 내려지면 사람들의 이목이 모두 새로와지게 해야 하는데, 지난날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차출할 적에 오직 청탁한 자의 고하에 따라 삼망(三望)에 비의(備擬)하였으므로 물정이 해괴해 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함께 추고 치죄할 것을 명하여 사정을 따르는 버릇을 혁파하소서.

신임현감 이여온(李汝瀛)은 전에 청주판관(淸州判官)이 되었을 적에 그곳이 잔박(殘薄)한 것을 싫어하여 고의로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직을 제수받았으므로 물정이 미편해 하니, 파직을 명하소서.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이순신(李純信)은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한만큼, 제수받은 그날에 당장 떠나가야 함에도 임의로 지체하며 머물다가 오래 된 뒤에 배사하였으니, 극히 오만합니다.

추고 치죄할 것을 명하여 장사(將士)가 제 편의대로 하는 버릇을 징계하소서. 또 병조를 담당한자는 당연히 서둘러 독촉하여 떠나보내야 함에도 평시와 같이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출발을 지체케 하였으니, 극히 미편합니다. 병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함께 추고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23책 340면 【분류】*인사-관리(管理)/*사법-탄핵(彈劾)

13)병을 핑계로 통진에 가 있는 최입에게 복명을 재촉하다

선조 97권, 31년(1598 무술/명 만력(萬曆) 26년) 2월 9일 갑자 3번째기사

동지(同知) 최입이 병으로 집에 돌아가 누워 있으면서, 자기 집 종을 시켜 감사(監司)에게 병장(病狀)을 올리게 하였는데 감사가 그대로 장계(狀啓)하니, 비망기(備忘記) 로 전교하였다.

"최입은 영위사(迎慰使)로서 복명(復命)하지 않은 채 태연스레 통진(通津)으로 내려갔으니 이 어찌 신하된 자의 의리인가. 설사 실지로 병이 있더라도 조석간에 죽을 병이 아니라면, 부축을 받고서라도 와서 복명해야 한다. 그러고서도 그의 집은 하루 일정이면 내려갈 수 있다.

최입의 마음속에는 나라에 임금이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글자를 배운 사람도 오히려 이러하니, 저 윤수익(尹壽益) 따위야 뭐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윤수익은 무인(武人)인데, 그 또한 접반사(接伴使)로서 곧바로 제 집으로 돌아갔다.】

【영인본】23책 380면 【분류】*인사-임면(任免)

14)우의정 이덕형이 연소함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선조 99권, 31년(1598 무술/명 만력(萬曆) 26년) 4월 26일 경진 2번째기사

우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젊은시절 재화(才華)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으나 임진 왜란을 당하여 서쪽으로 파천했을 때 군소배(群少輩)들과 어울려 예절을 상실하였고, 또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일하였는데 모든 일들이 보탬은 없고 해만 있었다. 일찍이 중국 장수의 접반관으로 있으면서 통진(通津) 쌀 1백 석을 어디에다 쓰는 양 통첩을 하고 통진으로 달려가 관가가 비어있는 시기를 이용하여 쌀 1백 석을 자기의 고을 농사(農舍)로 보냈었는데, 아전들이 붉뚝고 울면서 뒤에 오는 수령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고 호소하였으나 들은 체도 아니하고 공공연히 싣고 갔다.】 상소하기를, "복상(卜相)의 명령이 있자 잘못된 은총이 신의 몸에까지 미쳤습니다.

신은 그 제목(除目)을 보고부터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날이 갈수록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신이 약년(弱年)에 벼슬길에 올라 너무 빠르게 숭반(崇班)에까지 올랐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일생을 통하여 한낱 불행한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전복이 뒤따르는 것인데, 오늘에 와서 이러한 대배(大拜)를 받아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재앙과 허물을 더 보태어 이처럼 낭패가 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의 마음만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듣고 보는 자들도 신을 위해 걱정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중정(衆情)도 반드시 함께 놀라고 공의(公議) 또한 끝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므로, 쭈그리고 엎드려 명을 거두시기를 기다렸으나 달리 들리는 바 없다가 어제 엄교(嚴敎)를 받은 결과, 경리를 접응하는 일이 시급하니 빨리 출사(出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신은 황공하고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옛날 인재들이 배출되어 일찍 성취된 이들이 많았을 때도 40세가 되어서야 사진(仕進)하였고, 한(漢)나라 때의 효렴(孝廉) 천거에서도 그 나이로 한정하였으니, 이는 나이가 많아야 경력이 많고 경력이 많아야지만 일을 당했을 때 막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덕(德)이 없는 데다가 나이마저 못 미치면 설사 그에게 관정(官政)을 맡긴다 하여도 명기(名器)는 이미 수모를 당한 것이요 조정(朝廷)은 이미 가벼워지고 만 것입니다. 하물며 재상직을 일반 관원처럼 설불리 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금년 겨우 38세로서 자신을 돌아볼 때 한 가지도 남보다 나은 것이 없는

데, 기년(耆年)·구재(舊宰)를 젖혀두고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 뛰어오른다면 남들이 틀림없이 불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며, 신 역시 무슨 마음으로 백료(百僚) 위에 낯을 들고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천지 부모(天地父母)시여! 신의 충정이 의례적으로 사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살피시고 새로 제수하신 직명을 빨리 거두어 끝까지 신의 몸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급어살펴 주시면 후일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하여 성은에 보답하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경이 합당하기에 한 것이니 사양말라. 다만 아문에 들리는 말들이 많으니 되도록 빨리 출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나라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하였다.

【영인본】23책 422면 【분류】*정론-정론(政論)/*인사-임면(任免)/*군사-병참(兵站)/*외교-명(明)/*사법-탄핵(彈劾)

15)성균관에서 관학의 양성과 전답에 대해 건의하다

선조 105권, 31년(1598 무술/명 만력(萬曆) 26년) 10월 20일 임신 3번째기사

성균관이 아뢰기를, "난리 이후 관학(館學)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일체 폐지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년 이래로 거재 유생(居齋儒生) 10명의 식량을 해조(該曹)에서 비록 중국의 좁쌀로 지급하지만 모양이 말이 아니며, 국가의 예산에 있어서도 전혀 낭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京畿) 김포지역 관학의 전답(田畓)이 거의 1백여 섬지기인데 다만 임진년 이후로 묵었다고 핑계하여 전혀 추심(推尋)하지 않았으니 지금 마땅히 관원(館員)을 내려 보내 묵었는지 경작하였는지 조사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밑천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임진년의 변란에 성묘(聖廟)는 왜적이 불태웠고 다만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몇 칸만 남아 있었다. 관복(館僕)은 절반이나 병화에 죽고 생도(生徒)는 모두 지방으로 흩어졌으니, 비록 몇 칸을 수리하여 선성(先聖)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나 모양이 말이 아니었다. 거재 유생이 비록 두서넛 있지만 모두 민 지방에서와 기식(寄食)하는 자들인데 지공(支供)이 형편없고 재궁(齋宮)이 적막하며 글 읽는 소리가 끊겼다.

명륜당(明倫堂)의 옛터는 절반이나 길로 들어가고 벽송정(碧松亭) 의 앞길은 무성한 잡초로 덮여 조석으로 중국의 말이 떼를 지어 행단(杏壇) 아래에서 풀을 뜯어 먹고, 중국 군대는 재실 밖에서 떠들썩하여 수 백년 동안 성인(聖人)을 존숭하고 선비를 양성하던 곳이 이 지경이 되었으므로 식자(識者)들은 눈물을 뿌렸다.】

【영인본]23책 522면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농업-전지(田制)/*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16)사헌부가 경기감사 유희서, 문천군수를 추고하고 정죄할 것을 아뢰다

선조 109권, 32년(1599 기해/명 만력(萬曆) 27년) 2월 9일 기미 3번째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삼가 경기감사 유희서(柳熙緖)의 【고(故) 상신(相臣) 유전의 아들로서 아비의 음덕으로 재상의 반열에 뛰어올랐을 뿐 기타는 볼 만한 점이 없다.】 장계를 보니 '여주(驪州)·양주(楊州)·양근(楊根)·안산(安山)·통진(通津)·양성(陽城)의 수령과 수원판관(水原判官)·평구찰방(平丘察訪)이 제때에 서경(署經)을 하지않아 한 달이 지나도 부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은 본디 서경을 하지 않아도 될 관원이거나 또는 여러차례 사람을 바꾼 뒤에야 새 수령이 가까스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서경을 마친 사람이면서도 서경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 하여, 앞으로 서경을 없애자는 계청까지 하였습니다. 서경은 중대한 법이므로 저번에 언관(言官)의 계청에 의하여 조정도 감히 요동하지 못하였으니, 번신(藩臣)이 감히 요청할 일이 아닙니다. 그를 추고하소서.

이달 7일 전도독(陳都督)을 접견하실 때, 약간의 항왜(降倭)가 그 아문에 있었으니 사후(伺候)를 담당한 관원은 마땅히 미리 주선하여 그들을 멀리 피신시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원(政院)에 와서 고하여 조치하게 했어야 한 것인데도 태만히 이를 살피지 않아 대가(大駕)가 문앞에 도착하여 한동안 머물러 계시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였으니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상은 추고하고 색낭청(色郎廳)은 파직하소서. 〈본문중략〉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색낭청은 어찌 파직까지 해야겠는가. 추고하라."하였다.

【영인본】23책 573면【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탄핵(彈劾)/*사법-법제(法制)/*외교-명(明)/*외교-왜(倭)/*군사(軍事)

17)사헌부가 윤두수의 일 · 탐학 관리의 체차 · 경차관 파견 중지를 청하다

선조 115권, 32년(1599 기해/명 만력(萬曆) 27년) 7월 29일 병자 4번째기사

사헌부가 앞서 아뢴 윤두수의 일을 아뢰고, 이어 아뢰었다. "김포현령(金浦縣令) 이배달(李培達)은 마음 씀씀이가 형편없고 처사를 매우 함부로 하는데 도임한 후로 정사를 가혹하게 하고 부역이 균등치 못하여 온 경내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면천군수(沔川郡守) 신경희(申景禧)는 【앞서 통천군수(通川郡守)가 되어 궁한 백성들을 침해하여 사복을 채우는 데 전념하자, 그 범람히 작폐한 일을 흡곡 백성들이 헌부(憲府)에 고소하였다. 이에 헌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 탐욕을 부리고 방종한 일이 과연 사실과 같았다. 그러므로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았다.】 위인이 추악하고 교활한 데다가 탐욕을 부리기까지 하여 민생을 박해하면서 사욕을 채우는 것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둘 수 없으니,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장단부사(長湍府使) 한순(韓淳)은 위인이 용렬합니다. 앞서 수령이 되었을 때 처신이 보잘것없어 물의(物議)를 거듭 입었으니, 지금 다시 목민관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난리를 겪은 후로 각읍이 결딴나고 민력이 고갈되어 그 초췌하고 곤핍한 형상이 전일보다 극심하니, 조금이라도 민생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일체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을 보내는 일이 답험(踏驗)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데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이처럼 민간이 결딴난 때를 당하여서는 그 주전(廚傳)에 따른 폐단과 분요(紛擾)스럽게 되는 폐해를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근일 외방의 일을 보건대 하나의 사명(使命)을 없애면 곧 하나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재상(災傷)에 관한 일은 각도의 도사(都事)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 상세하게 답험하는 것도 반드시 경관(京官)이 한번 슬쩍 보고 지나는 것보다는 배나 나을 것입니다. 경차관은 우선 파견하지 말고 각도의 도사로 하여금 그전대로 맡아서 시행하게 하소서."

【영인본】23책 655면 【분류】*사법-탄핵(彈劾)/*인사-임면(任免)/*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물(人物)

18)사간원이 부정한 수령의 출척과 이조 당상 등의 추고를 청하다

◇ 선조 116권, 32년(1599 기해/명 만력(萬曆) 27년) 8월 5일 신사 3번째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김제군수(金堤郡守) 최시망(崔時望)은 인물이 오활하여 정사를 하리(下吏)에게 맡겼으므로 관사(官事)가 날로 조잔해지고 인민들이 거의 다 흩어졌습니다. 하루도 관직에 머물러 둘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기전(畿甸) 고을은 온갖 역무(役務)가 모인 곳이라서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피해가 많은데, 김포현령(金浦縣令) 정근(鄭謹)은 아직 평안도 정주(定州) 땅에 있어 부임할 기한이 없으니, 체차시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차임해 보내소서.

면천(沔川) 고을은 수차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겪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당패되어 이미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의당 십분 선택하여 보내야 할 것인데, 지금 새 군수(郡守) 유달증(兪達曾)은 연소하고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질 또한 경망합니다. 그 잔폐함을 소생시킬 책임을 결코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체차시키소서.

이조(吏曹)는 일찍이 수령을 신중히 선택해야 함을 생각지 않고 범연히 승전(承傳)을 받들어 빈 자리를 채우고 인기(人器)의 적합 여부는 묻지 않았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당상(堂上)과 색낭청(色郎廳)을 아울러 추고하소서.

결성현감(結城縣監) 정사준(鄭思竣)은 도임한 후 오로지 백성의 침학만을 일삼아 끝없이 징렴(徵斂)하므로 온 경내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하루도 직에 둘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하니, 양사에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근래 수령을 논박하는 일에 늘 등록(謄錄)의 말을 거론한다. 최시망·정사준의 파직을 청한 등등의 일은 다시 자세히 아뢰라. 정근과 유달증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이조는 추고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영인본】23책 660면 【분류】*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인물(人物)

19)사간원이 통진현감 남이성의 파직과 좌우 포도대장의 추고를 청하다

선조 119권, 32년(1599 기해/명 만력(萬曆) 27년) 11월 1일 병오 3번째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통진현감(通津縣監) 남이성(南以誠)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본직(本職)에 임명되었으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 망연(茫然)히 두서(頭緖)를 알지 못하고 문부(文簿)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을 부리는 대소사를 전적으로 아리(下吏)들의 손에 맡기고 있으므로 조발(調發)이 균등(均等)하지 못하고 징괄(徵括)하는 일이 너무도 심한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감당해내지 못해 장차 온 고을이 텅 비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포도대장(捕盜大將)을 둔 목적은 오로지 도적을 금하기 위해서인데 요즈음 도성(都城) 안에서 무뢰배들이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인을 유인하여 밤을 틈타 거리낌 없이 도적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마(牛馬)를 도살하기도 하고 남의 의복을 탈취하기도 하는데 도성문 밖에서까지 행인들의 소지품을 공공연히 노략질하고 있으므로 해가 진 뒤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으로 결딴나 간신히 살아 남은 백성들이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좌우 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이 부하들을 엄하게 신칙하여 날마다 순검하면서 체포하여 통렬히 다스리게 하였던들 여리(閭里)의 적도(賊徒)가 제멋대로 횡행함지 못한 뿐만 아니라 중국 군사들도 고소를 당할까 염려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의 소행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전혀 체포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좌우 포도대장을 모두 추고하여 치죄할 것을 명하소서."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24책 1면 【분류】*정론(政論)/*인사(人事)/*사법(司法)

20)윤두수의 간궤함과 이덕형의 탐오함을 들어 비판하는 사평

선조 121권, 33년(1600 경자/명 만력(萬歷) 28년) 1월 29일 갑술 5번째기사

윤두수는 탐오하고 음흉하며 교활한데 표독한 정철과 마음을 같이해서 기축년·정인년 사이에 많은 사류(士類)를 살해함으로써 유감을 마음껏 풀었다. 그리하여 최영경(崔永慶)을 죄에 얽어넣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덕형은 기복(起復)이 되어 이판(吏判)에 제수되었으므로 매양 검은 철릭을 입고 정석(政席)에 참여하였는데, 상기(喪紀)가 이 때문에 크게 무너졌으므로 물론(物論)이 그르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정사(呈辭) 내용에도 사승지(史崇之)의 기복에 대한 비난만 있게 되었다.' 는 말이 있었던 것이다. 병판(兵判)으로 있을 적에 병조의 군사를 사역시켜 남대문 밖 옛터에다 집을 지었는데 포루(砲樓)·별영(別營)의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 썼다. 홍경소(洪敬紹)가 사산감역(四山監役)으로서 이를 목견하고 말하였다.

덕형의 아비 민성(民聖)이 문화현령(文化縣令)이 되었을 적에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을 많이 내어 소 1백여 두를 사서 통진(通津)에 있는 전장(田庄)의 들에다 방목(放牧)하였는데, 들판이 누렸었다고 한다. 통진에다 집을 지을 적에는 창호(窓戶)를 모두 문화현에서 만들어 실어다가 썼다. 뒤에 그 아비가 통진현감에서 체직되자마자 덕형이 경리(經理)의 접반사가 되어 통진의 쌀 1백여 석을 취용(取用)하는 형식으로 공문을 내었다. 그리고는 근친(覲親)을 이유로 통진으로 달려가서 대청(大廳)에 앉아 급히 창고의 쌀 1백여 석을 내어다가 그 고을에 있는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러자 고을의 이속(吏屬)이 들어와서 호소하기를, "새 현감이 오면 무엇을 먹으라고 그러십니까?"하면서, 가져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덕형은 듣지 않고 급급히 실어가게 하였다.

채정선(蔡楨先)과 채경선(蔡慶先)의 농장이 통진에 있고 그들의 형 길선(吉先)이 민성(民聖)을 대신하여 문화현감으로 교대하였기 때문에 두 곳의 일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권반(權盼)이 덕형과 혼인한 적에, 정선이 만리기를, "아비를 시켜 죄를 범하게 하였으니 용심(用心)이 무례하기 그지없는 자이다. 혼가(婚家)를 정해서는 안 된다."하였으나, 권반이 따르지 않았다. 훈련도감 제조로 있을 적에는 2~3일 간격으로 매번 노자(奴子)를 보내어 쌀 3~4식과 적두(赤豆)와 대두(大豆) 2~3석을 가져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다 썼으며, 한번은 새로 난 밀 15석을 가져간 적도 있었다. 낭청 박자우(朴子羽)가 마침 도감의 공사(公事) 때문에 덕

형의 집엔 갔더니 밀을 짊어진 자가 덕형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뜰에다 멍석을 펴고 이를 말리더라고 하였다.

덕형은 또 반복스럽기가 극심하였다. 그의 처부(妻父) 이산해(李山海)는 동론(東論)을 극력 주장하였는데 덕형도 실은 산해와 마음을 같이 하였었다. 그런데 술을 가지고 서인(西人) 김권(金權)의 집에 가서는 처부의 잘못을 크게 말하였다. 경자년에 유성룡(柳成龍)이 논박을 받았을 적에 덕형이 차자(箚子)를 올려 성룡의 당류에 공박했으므로 성룡의 당류들이 원망했었다. 덕형이 그뒤 도로 성룡의 당류에 빌붙자 성룡의 당류는 그의 반복스러움을 모르고 자못 추존(推尊)하는 자까지 있었다.

덕형이 일찍이 유대정(兪大禎)에게 말하기를, "벼슬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번 번복해야만 고관대작(高官大爵)에 이를 수 있습니다."하자, 대정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감은 몇 번이나 길을 번복해서 정승에 이르렀소이까?"하니, 덕형이 크게 웃었다고 한다. 윤두수의 간궤함과 이덕형의 밥오하고 궤휼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복상(卜相)에 들었으니, 너무도 괴이한 일이다.

【영인본】24책 34면 【분류】*인사(人事)/*인물(人物)

21)이덕형이 해조의 담당 아전 등의 추고를 청하다

*선조 146권, 35년(1602 임인/명 만력(萬曆) 30년) 2월 30일 계사 1번째기사

겸경상등사도도체찰사(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 이덕형이 아뢰기를, "지난해 12월 사이에 경상도 순찰사 이시발(李時發)이 본도(本道)에 가정(加定)한 기인(其人) 10명을 특별히 감면해 줄 것으로 장계하고 사유를 갖추어 신에게 첩보(牒報)하였습니다. 신이 마침 비변사의 좌당(坐堂)에 참여하여 삼공과 같이 의논하여 장계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조 낭청을 불러 삼공이 분부 하기를 '이 장계를 가지고 호조관서에게 가서 고하고 체찰사와 자세히 의논하여 회계하라.' 하였는데, 그뒤에 오래도록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다시 공조의 아전에게 물어보았더니 낭리(郞吏)가 전혀 고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것은 해조의 담당 아전이 방납(防納)하는 사람과 중간에서 도모하여 본도의 가포(價布)를 거두어 차지하려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당상에게 속여 고하여 회계한 것이 분명합니다. 묘당(廟堂)에서 간곡히 분부한 말이 끝내 하리(下吏)에게 농락당하게 되었으니, 그때 분부를 듣고 간 낭청을 추고하여 치죄하고 속여 고한 담당 아전은 수금하여 추고하며, 본도에 가정한 기인은 장계에 의하여 감면하거나 혹은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기인이란 궐내에 땔나무와 숯의 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본국의 서리(胥吏)의 폐단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명종조의 처사 조식(曺植)이 그 폐단을 극력 말하여 '나라를 망치는 것이 반드시 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본 바가 없이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이것이 비록 한 가지 사례이나 그 나라를 좀먹는 형상은 하나 뿐이 아니니, 이는 모두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덕형은 난리 뒤에 어미 상을 만나 기복(起復)해서 이조판서가 되어 흑천력[黑天益]을 입고 공공연하게 정청(政廳)에 출입하였고, 훈련도감 당상이 되어서는 날마다 훈련도감의 쌀과 포목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그 아비가 문화현령(文化縣令)으로 있을 때는 이덕형이 공명고신(空名告身) 1백여장을 내어 문화현령 지방에 몰래 팔아서 수백마리의 소를 사들여 통진(通津)의 농장(農庄)에 두었다. 또 그 아비가 통진현감(通津縣監)으로 체직된 뒤에는 경리 접반사(經理接伴使)가 되어 통진현의 쌀1백여 석을 취용(取用)하는 것처럼 공문을 내어 공공연히 현의 쌀 1백여 석을 농장에 실어보냈다. 윤기(倫紀)에 죄를 얻은 사람으로 사리(私利)를 경영하고

나라를 좀먹는 짓을 끝없이 했는데 체찰사의 중임을 함부로 받았으니, 서리가 나라를 좀먹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무슨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영인본】24책 349면 【분류】*정론(政論)/*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司法)/*재정(財政)/*역사-사학(史學)/*인물(人物)

22)헌납 윤길이 황정욱의 사면 문제, 이기수 · 심윤의 비리 등을 논하다

ㅇ선조 152권, 35년(1602 임인/명 만력(萬曆) 30년) 7월 26일 을유 3번째기사

헌납 윤길이 【대사간 송순(宋諄)은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았다. 사간 김대래(金大來), 정언 유색(柳澀) · 채형(蔡衡)도 아직 숙배하지 않았다.】 내계(來啓)하기를, "급제(及第) 황정욱이 적에게 포로로 있을 때 안면을 바꿔 무릎을 꿇고는 관백(關白)을 전하(殿下)라 부르고 본조(本朝)에 대해서는 신하라 칭하지도 않았으며, 태연히 글을 보내 땅을 떼어 주라고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을 따른 그 죄는 십악(十惡)에 관계되니, 이것은 팔의(八議)의 대상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이 많은 원훈이라 하여 이미 석방하여 돌아가기를 허락하셨으니, 성상께서 노인을 우대하고 공신을 대접하시는 본의가 지극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리(田里)에서 늙어 죽도록 한다 해도 영예라 하겠는데, 어찌 그 죄를 완전히 석방하여 다시 도성(都城)에서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방송(放送)하라는 명이 한번 내려지자 여론이 모두 통분해 하니, 명을 도로 거두소서.

익산군수(益山郡守) 이기수(李墍壽)는 집이 은진(恩津)으로 본군과는 1일정(日程)의 거리에 있는데, 관고(官庫)의 물품을 끊임없이 실어 나르므로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통진현감(通津縣監) 심윤(沈淪)은 공무를 게을리하는데다 탐욕스럽기까지 하여 기전(畿甸) 가운데 조금 온전한 고을을 날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루도 관직에 둘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황정욱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원훈이니 석방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황정욱의 죄는 천지에 가득 찼으니, 설사 원훈이라고 해도 사면할 수가 없다. 양사(兩司)가 논한 것이 공론에서 나왔는데도 위에서는 여전히 흔쾌하게 따르지 않으니 시론(時論)이 탄식하였다.

【영인본】24책 401면 【분류】*정론(政論)/*인사(人事)/*사법(司法)/*변란(變亂)/*역사-사학(史學)

23)정언 채형이 재상의 부수에 탈이 있는 곳의 수령에 대한 과죄를 건의하다

선조 156권, 35년(1602 임인/명 만력(萬曆) 30년) 11월 6일 계해 1번째기사

정언(正言) 채형(蔡衡)이 내계하기를, "재상(災傷)을 복심(覆審)한 부수(負數)에 탈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 죄과가 법전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으니 해조가 마음대로 낮추고 올릴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 별도로 어사를 보내서 안핵하는 것은 체면이 자연히 구별되는 바, 경차관(敬差官)이 한 도를 두루 살피고 더욱 심한 곳만 논벌(論罰)하는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범(現犯)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일체 법전에 따라 시행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경기(京畿) 통진(通津) 고을은 재상(災傷)의 탈이 생긴 부수가 20여 부나 되는데도 논파하지 않고 애매하게 추고를 청했고, 황해도 옹진(甕津) 고을은 재상을 허위 보고한 수가 역시 10여 부를 웃도는데도 신해년 수교(受敎)의 더욱 심한 자는 계파(啓罷)한다는 예를 망령되이 끌어대었고, 또 감히 밭을 논이라 하여 문서를 위조했는데도 다 논계하지 않았으니 사정을 따라 한 자취가 현저합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등도 안핵하여 탈이 있는 각읍 수령은 모두 당연히 파직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당초에 잘못된 예를 끌어다가 법의 적용이 균일하지 못하다고 핑계대면서 모두 추고하도록만 청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끝내 어사에게 죄를 들렸는데, 어사는 해조가 추고하도록 청할 수 있는 관직이 아닌데도 감히 이렇게 하였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해조 당상을 추고하고 색낭청은 파직하며, 각도의 재상(災傷)에 탈이 있는 곳의 수령들에 대한 과죄는 모두 법전대로 시행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호조의 낭관(郎官)도 추고하라."하였다.

【영인본】24책 423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司法)/*농업(農業)

24)현부가 연충수의 일로 승지를 추고하고, 홍운해의 파직을 건의하다

선조 157권, 35년(1602 임인/명 만력(萬曆) 30년) 12월 28일 을묘 2번째기사

현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연충수(延忠秀)에게 내리는 주부(主簿)의 관교(官敎)를 잃어버렸으므로 입안(立案)하여 올려보낸 일에 관하(判下)하신 계목(啓目)을 보니 아뢴 대로 하라는 전지(傳旨)가 있었는데, 이는 정사호(鄭賜湖)의 원래 공사(公事)와 서로 조관(照管)되지 않은 듯하였습니다. 신들이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결말을 낼 수가 없어 정원(政院)에 통문(通問)하였으나 정원에서도 분명하게 회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공사를 계하(啓下)하였을 때 판부(判付)하신 일에 대하여 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으면 즉시 사유를 갖추어 품신하여야 했는데도 범연히 봉행하여 다시 살피지 않았고 본부에서 통문한 뒤에도 오히려 품재(稟裁)하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출납(出納)하는 직임에 있으면서 과연 이 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승지를 추고하고 그 공사는 다시 품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양근군수(楊根郡守) 홍운해(洪雲海)는 위인이 외람되어 가는 곳마다 근신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김포현령(金浦懸令)으로 있을 때에도 물의가 많았는데 갑자기 승서(陞敍)한다는 명을 받았으므로 물정이 더욱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파직시키고 개차(改差)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겠다만 이같은 일로 승지를 추고까지 할 수야 있겠는가. 홍운해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영인본】24책 436면 【분류】*정론(政論)/*인사(人事)/*사법(司法)

25)대사간 권희가 호종의 일로 사직을 청하다

선조 165권, 36년(1603 계묘/명 만력(萬曆) 31년) 8월 20일 계묘 2번째기사

대사간 권희(權憘)가 아뢰기를, "신은 임진년에 서울을 떠날 때 종묘령(宗廟令)으로서 묘주(廟主)를 받들어 모시고 평양부(平壤府)에 갔습니다. 그때 신의 어미는 나이가 82세로 병이 깊어 숨이 실오라기 같았는데, 신이 신주를 받들고 가기에 바빠서 어미와 서로 작별하지 못하고 다만 가족을 시켜 어미를 데리고 통진(通津)에 있는 선산 아래로 피난가게 하였습니다.

평양에 간 지 열흘이 못되어 황해감사의 장계(狀啓)로 말미암아 왜적의 한 무리가 통진을 향하고 김포(金浦)를 이미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신이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산란하여 신의 어미가 이미 적의 피해를 당했으리라 생각하고, 곧 아우인 권협과 함께 상소하여 돌아가 해골을 수습하기를 바랐더니,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어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나와 섬으로 가서 모자가 상봉할 수 있었는데, 떠돌며 굶주림에 지쳐 어미의 병이 더욱 위중해졌으므로 끝내 다시 행재소(行在所)로 가지 못하고 서로(西路)를 슬피 바라보며 애만 태웠습니다.

그후 오늘에 이르도록 스스로 중죄를 지은 것을 알고 몸둘 바를 몰라 하였는데, 어제 받은 성비(聖批)에 조신(朝臣)이 임금을 유기하였다고 분부하셨으니, 임금을 유기한 죄를 신이 참으로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러한 죄를 짓고서 언책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으면서 남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신의 직을 갈도록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24책 522면 【분류】*정론(政論)/*인사(人事)

26)경기감사 김수가 김포 · 양천 지역의 땅이 진동한 일을 아뢰다

선조 181권, 37년(1604 갑진/명 만력(萬曆) 32년) 11월 3일 기묘 3번째기사

경기감사 김수가 아뢰었다. "김포(金浦)지역에서 10월 29일 유시(酉時)에 남쪽에서 서쪽으로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나다가 잠시 뒤에 그쳤으니, 그날 양천(陽川) 지역에서는 북쪽으로부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화포 소리처럼 들려 산의 꿩이 모두 놀라 날았으니, 변이가 비상합니다."

【영인본】24책 691면 【분류】*과학-지학(地學)

27)경기감사 김수가 부평 부사 황치경 등의 선정을 아뢰고 포상을 청하다

선조 181권, 37년(1604 갑진/명 만력(萬曆) 32년) 11월 6일 임오 3번째기사

경기감사 김수가 아뢰었다. "도내에서 뚜렷하게 성효(成效)가 있는 수령(守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평부사(富平府使) 황치경(黃致敬)은 정사에 조리가 있어 온갖 피폐한 것이 다 흥기(興起)하였으므로 백성이 덕분에 편안하게 되어 참으로 간절히 유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천부사(利川府使) 이광길(李光吉)은 몸가짐이 염근(廉謹)하고 부역이 고르며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므로 온 경내가 편안합니다. 적성현감(積城縣監) 이유청(李幼淸)은 관사(官事)에 마음을 다하여 폐되한 것을 수거(修擧)하였으므로 가장 심하게 잔파된 고을이 모양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진현감(通津縣監) 윤진은 정사가 강명(剛明)하여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편안해 합니다. 이러한 수령을 각별히 포장(褒奬)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하소서."

【영인본】24책 691면 【분류】*정론(政論)/*인사(人事)

28)헌부가 구성 구속, 이세온의 체차, 심일취의 파직 등을 청하다

선조 182권, 37년(1604 갑진/명 만력(萬曆) 32년) 12월 22일 정묘 4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구성을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미 극진히 논열하였는데도 오래도록 윤허를 내리시지 않고 매번 공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교하시니, 성상께서 공에 보답하려는 뜻은 지극하다 할 만하나 토죄(討罪)하는 제왕의 법전에는 미진한 듯합니다.

정철이 모함으로 옥사를 이루어 선량한 선비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그 계획이 참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이때 권간에게 빌붙어 맨 먼저 재국(再鞫)하자는 논의를 주창해 간악한 정철의 뜻을 이루어 주었으니, 그의 죄악으로 말한다면 목숨을 보존한 것만도 이미 다행입니다. 일시 호종한 약간의 노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어찌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방환시켜 도하(都下)에서 편히 지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

통례원상례(通禮院相禮) 이세온(李世溫)은 인물이 용렬한데다 노쇠하여 본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체차시키고 후임자를 각별히 가려 제수하소서. 김포현령(金浦縣令) 심일취(沈日就)는 노쇠하여 직사(職事)를 폐하고 있는 데다 술에 젖어 날을 보내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도 직에 둘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구성은 간원에 답한 것과 같다. 체차와 파직은 윤허한다."하였다.

【영인본】25책 15면 【분류】*정론(政論)/*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사법-행형(行刑)/*사법-탄핵(彈劾)/*인물(人物)

29)유근 · 박홍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ㅇ선조 182권, 37년(1604 갑진/명 만력(萬曆) 32년) 12월 26일 신미 6번째기사

유근(柳根)을 우찬성으로, 박홍로(朴弘老)를 지중추부사로, 남이신(南以信)을 형조참판으로, 오억령(吳億齡)을 대사성으로, 이수광을 안변부사(安邊府使)로, 박이장(朴而章)을 영해부사(寧海府使)로, 이필영(李必榮)을 통례원 상례로, 이덕형(李德泂)을 사강원 보덕으로, 박동선(朴東善)을 사복시 정으로, 【재주가 범상하다.】〈본문중략〉

이유청(李幼淸)을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본문중략〉삼았다.

【영인본】25책 1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30)의금부에서 억울한 옥사로서 윤준제 · 이대춘 · 이영춘 · 백수채 · 홍운해 등을 보고하다

선조 191권, 38년(1605 을사/명 만력(萬曆) 33년) 9월 10일 신사 4번째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지난 8월 21일 승전(承傳)에 '지금의 이 풍재(風災)와 수재(水災)는 전에 없었던 일이다. 산이 무너지고 큰 나무가 뽑히고 가옥이 표류하고 인물이 익사하고 곡식이 모두 상하여 추수의 가망이 없음에 따라 기근이 닥쳐 죽음이 가까왔으니, 무엇으로 이 백성을 구제해야 할지 모르겠다.

구언(求言)하고 부역을 면제하고 조세를 감축하는 등의 일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옥사(獄事)에 이르러서도 원통하고 억울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 없지만 옥사(獄事)에 이르러서도 원통하고 억울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니 각별히 살피라.' 고 하였으므로, 지금 본부(本府)에 구금된 죄인을 다시 조사해 보았습니다.〈본문중략〉

홍운해(洪雲海)는 전에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있을 때 사복시(司僕寺)의 분양마(分養馬)를 제가 차지할 목적으로 죽었다고 진성(狀省)를 작성하여 본사(本司)에 거짓 보고하고 민간에 값을 받아 아마첩(兒馬帖)을 사서 바쳤으니 그 정상이 극히 해괴합니다. 그러나 쌀을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는 고을 하인에게 분배하고 그 사실을 이미 비변사에 해명하였습니다. 그의 공초에 의하면 납마(納馬)는 앞서 있었는데 논핵은 뒤에 있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진위(眞僞)는 의당 박윤(朴潤)을 추문해야 하겠으나 박윤이 이미 죽어서 증빙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들이 감히 함부로 논할 수 없습니다.〈본문중략〉

신들이 감히 함부로 논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죄인들을 보건대 모두가 용서하지 못할 장죄(贓罪)이다. 쇠세(衰世)의 군신(君臣)은 거개 나약해서 범법자를 주벌하지 못한다. 이것이 간사한 무리가 뜻을 얻게 되는 원인인 것이다.

수십년 이래 장죄로 옥에 수금된 자가 전후 잇따랐으나 금부(禁府)에서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그 죄를 다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본문중략〉

【영인본】25책 117면 【분류】*사법(司法)/*군사-군역(軍役)/*과학-천기(天氣)/*왕실-국왕(國王)

31)경기 암행어사 심집이 암행 결과를 보고하다

선조 197권, 39년(1606 병오/명 만력(萬曆) 34년) 3월 1일 기사 3번째기사

경기 암행어사 심집이 아뢰었다. "이천부사(利川府使) 이광길(李光吉)은 처사가 정미롭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농사에 전력할 수 있습니다. 신이 도내를 두루 다녀보았지만 광길과 같은 자는 졸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양근군(楊根郡)은 강 상류의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는데다 토지가 척박하여 사람이 살 길이 없으므로 성인구(成仁耉)가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개와 닭의 소리를 경내(境內)에서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포현령(金浦縣令) 이유청(李幼淸)은 인품이 너그럽고 치민(治民)에 익숙하여 명예에 힘쓰지 않고 매사를 착실히 처리하였으므로 처음에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으나 점차 실적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중략〉

【영인본】25책 167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

32)최황의 천장에 관곽 · 석회 · 조묘군을 제급하다

선조 203권, 39년(1606 병오/명 만력(萬曆) 34년) 9월 21일 정해 3번째기사

이상의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충훈부(忠勳府)의 계사(啓辭)에 '졸(卒)한 광국 평난공신(光國平難功臣) 최황(崔滉)은 처음에 광주(廣州) 땅에 장사지냈는데, 이제 장단(長湍)에 이장하려 한다.

조정의 상전(常典)은 당초에 이미 거행하였지마는, 이는 훈구노신(勳舊老臣)의 상(喪)이므로 이제 영구히 장사지내는 날을 당하여 혹 참작하여 거행할 일이 없지 않다. 그런데 본부(本府)의 등록(謄錄)에는 무릇 훈신(勳臣)이 출입하거나 앓을 때에 다 격외(格外)의 은전을 내린 전례가 있으나 천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문서가 산실(散失)되어 10분의 1도 남아 있지 않아서 찾아 상고할 수 없다. 이제 은전을 베풀자니 의거할 전례가 없고, 베풀지 말자니 결함이 있을 듯하다.

요즈음 듣건대, 청성군 이걸(淸城君李傑)을 통진(通津)에서 파주(坡州)로 이장할 때에도 조묘군(造墓軍)을 제급(題給)한 일이 있다 하므로, 감히 이렇게 품한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관곽(棺槨) · 석회(石灰) 등의 물건을 내려 주어야 할 듯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살펴서 처치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최황은 공신으로서 의정(議政)에 추증되었으므로 이장할 때의 관곽 · 석회 · 조묘군을 위에서 분부하신 대로 각각 해조로 제급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25책 266면 【분류】*인사-관리(管理)/*풍속-예속(禮俗)/*왕실-사급(賜給)

33)간원에서 함안 군수 전계신 · 용강 현령 이유청 등을 탄핵하다

- 선조 216권, 40년(1607 정미/명 만력(萬曆) 35년) 9월 25일 을묘 3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함안군수(咸安郡守) 전계신(全繼信)은 난후에 부정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심지어는 대마도를 왕래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공로가 있다 하여 당상의 실직(眞職)을 제수하기까지 하였으니 물정이 놀라고 분개해 합니다. 지금 본군에 부임하니 영남(嶺南)의 사론(士論)은 그 정상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고 경내의 사족(士族)도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모두 다른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의관(衣冠)의 반열에 끼이게 할 수 없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용강현령(龍岡縣令) 이유청(李幼淸)은 인품이 외람된데다 탐욕스럽고 방자합니다. 지난번 적성현감(積城縣監)으로 있을 때 아속(衙屬)이 너무 많아 법외의 재물을 많이 징수하였는데도 오히려 부족하여 원곡(元穀)을 대부분 축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염(魚鹽)을 팔고 백성에게 곡식을 거두어 들여 그 수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포상을 받고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도임한 후에는 수단이 더욱 교활해져 얼마 되지 않은 원곡을 과반이나 축내었으며 체임될 때에는 어염으로 수를 채워 사무를 인계하였습니다. 도처에서 이처럼 외람되고 교활한 짓을 하였으니 서로(西路)의 풍요로운 고을을 이 사람의 손에 맡겨서 관탕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25책 366면 【분류】*정론(政論)/*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사법(司法)/*무역(貿易)/*재정(財政)

34)윤암원에서 이덕형 등을 인견하고 중국군의 무기, 군량, 병력 등을 논의하다

선조 35권, 26년(1593 계사/명 만력(萬曆) 21년) 2월 19일 갑진 12번째기사

35)이덕형 등을 인견하고 이 제독이 탄핵을 받은 일, 중국 남 · 북군의 갈등을 논의하다

선조 35권, 26년(1593 계사/명 만력(萬曆) 21년) 2월 20일 을사 2번째기사

36)서성이 유 총병과 함께 지세와 왜적의 상황을 상의하고 아뢰다

선조 37권, 26년(1593 계사/명 만력(萬曆) 21년) 4월 20일 갑진 4번째기사

37)김응남이 도성 주변 상황, 분사 관원 태거, 진상 견감 등을 아뢰다

선조 42권, 26년(1593 계사/명 만력(萬曆) 21년) 9월 2일 계축 12번째기사

38)신곡 · 신기일 등을 국문하다

선조 48권, 27년(1594 갑오/명 만력(萬曆) 22년) 2월 6일 을묘 3번째기사

39)사헌부에서 항복한 왜인이 난동을 부리는 일을 아뢰다

선조 54권, 27년(1594 갑오/명 만력(萬曆) 22년) 8월 19일 갑자 1번째기사

40)폭정을 한 평안도 우후 이순신(李順信)을 파직하다

선조 66권, 28년(1595 을미/명 만력(萬曆) 23년) 8월 4일 갑진 2번째기사

41)비변사가 강화로 파천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명 만력(萬曆) 24년) 11월 15일 정미 2번째기사

42)간부가 유자신 · 이거 · 최입 등을 파직 또는 추국할 것을 건의하다

선조 97권, 31년(1598 무술/명 만력(萬曆) 26년) 2월 11일 병인 3번째기사

43)왜 사신 문제와 중국 군대를 위한 군량 조달 문제를 제독 이승훈과 환담하다

◦선조 116권, 32년(1599 기해/명 만력(萬曆) 27년) 8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

44)비변사가 허수를 월곶진 첨사로 임명하여 군사 조련시킬 것을 건의하다

◦선조 169권, 36년(1603 계묘/명 만력(萬曆) 31년) 12월 15일 병신 2번째기사

45)이덕형과 이항복의 전력

◦선조 195권, 39년(1606 병오/명 만력(萬曆) 34년) 1월 22일 신묘 2번째기사

13. 선조수정실록

1)김포현령 우복룡을 지평으로 삼다

선수 20권, 19년(1586 병술/명 만력(萬曆) 14년) 7월 1일 갑오 4번째기사

김포현령(金浦縣令) 우복룡(禹伏龍)을 지평으로 삼았으나 복룡이 모친의 병을 이유로 사양하자 전임에 그대로 있도록 명하였다. 【복룡은 학행으로 벼슬길에 나왔는데 관리의 재능이 있어 발탁되었다.】

【명인본】25책 547면 【분류】*인사-임면(任免)/*인물(人物)

2)조헌이 천문과 인사의 길흉을 헤아렸는데 이는 지극하게 시운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선수 26권, 25년(1592 임진/명 만력(萬曆) 20년) 8월 1일 무자 12번째기사

조헌의 자(字)는 여식(汝式)이고 호(號)는 중봉(重峯)이다. 본래 고려 충신인 원수(元帥) 조천주(趙天柱)의 후손으로 가세(家世)가 중간에 한미해졌다. 부친 조응지(趙應祉)는 김포현(金浦縣)의 교생(校生)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조헌은 유년시기에 자력으로 글을 배웠다.

나이 5세 때에 여러 어린이들과 임정(林亭)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높은 벼슬아치의 행차가 호창(呼唱)을 하면서 그 아래로 지나갔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보려고 다투는데도 조헌만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벼슬아치가 말에서 내려 감탄하고 칭찬하면서 손에 들었던 부채를 그에게 주었는데, 사양하면서 받지 않으니 더욱 기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뛰어난 인재감이다.' 하였다.

10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복(服)입는 예절을 성인(成人)처럼 하였다. 계모(繼母)가 그를 매정하게 대우하였으므로 외조모가 언젠가 조헌에게 계모를 비방한 적이 있었는데 조헌이 대답하지 않고는 이로부터 몇 달 뒤에야 가서 외조모를 뵈었다. 외조모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래도록 오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우리 모친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된 입장으로서는 차마 듣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오지 못했을 뿐이다.' 하였다. 외조모가 부끄럽게 여기며 감복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조헌이 정성을 다하여 종신토록 계모를 섬기자 계모도 감화되어 친모(親母)처럼 독실하게 사랑하면서 '이 아이가 참으로 내 아들이다. 단지 전인(前人)이 자기 배를 통하여 낳았을 뿐이다.' 하였다.

처음에 과거에 급제했을 때 문벌(門閥)에 막혀 청선(淸選)에 들지 못하고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가 되었다. 관례에 따라 향실(香室)에 입직하다가 불사(佛寺)에 내려주는 향을 봉(封)하는 때를 당하여 상소하기를 '입으로 성현(聖賢)의 글을 외면서 손으로 불공(佛供)하는 향을 봉하는 일은 신이 차마 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에 추고(推考)를 명하였으나 항거하며 불복(不服)하자 의금부에 옮겨 국문토록 하였는데 끝내 굽히지 않으므로 마침내 그를 석방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의 명성이 일세(一世)를 진동시켰다.

성혼(成渾)에게 종유(從遊)하면서 강학(講學)하였던 관계로 이발(李潑)·김우옹이 번갈아 칭찬하고 천거하여 장차 시종(侍從)의 반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 기대되었

으나 끝내는 남달리 고립되고 직선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지방관으로 나갔다. 조헌은 성혼과 이이(李珥)를 스승으로 섬겼지만 정철(鄭澈)의 사람됨은 좋아하지 않았다.

전라도사(全羅道事)가 되었을 때 마침 정철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자 그의 막하(幕下)에 있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즉시 벼슬을 버리고 떠나려 하였다. 이에 정철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공이 본래 나에 대하여 모를텐데 어떻게 해서 내가 소인이라는 것을 아는가. 잠시 서로 만나보고 나서 내가 참으로 옳지 못함을 안 뒤에 떠나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니, 조헌이 돌아와서 마침내 떠나지 않고 말하기를 '처음에 내가 남에게 오도되어 하마터면 공을 잃을 뻔 했다.' 하였다.

그 뒤 성혼과 이이가 무함을 당하게 되었으나 조헌은 더욱 정철과 가깝게 지내고 이발 등과는 엄격히 교제를 끊었다. 이 때문에 당인(黨人)들이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으며, 서로 알고 아끼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언론이 과격하고 처신이 고벽(孤僻)한 것을 보고는 사정에 오활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지함만은 언제나 칭송하기를 '지금 세상에 초야(草野)에서 인재를 보기가 드문데, 조여식(趙汝式)만은 안빈낙도하며 명예와 이익을 털어버리고서 지극한 정성으로 임금을 사랑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니, 옛날 사람 중에서 찾는다 해도 실제로 그와 짝할 만한 이가 드물다. 이 사람을 빼놓고는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였는데, 남들이 더러 그가 평론을 잘못했다고 의심하자, 이지함이 말하기를 '뒷날 응당 알게 될 것이니 내 말만 기억하라.' 하였다.

조헌이 정여립(鄭汝立)이 틀림없이 모반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발과의 오랜 교유를 끊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그의 예견대로 들어맞았다. 그리고 왜(倭)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사태를 앞서 걱정하는 자가 적었으며, 걱정한다 해도 성지(城池)를 방수(防守)하는 계책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헌만은 왜의 죄를 천하에 성토하고 그 모의를 꺾어 동병(動兵)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며, 동병하더라도 중국 군사가 때를 맞춰 와서 접응 한다면 그래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책이야말로 당시의 최상책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계책이 채택되지 않자 밤마다 천문(天文)을 우러러 산피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온종일 먹지 않기도 하였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늘 처자로 하여금 무거운 것을 지고 걷는 일을 연습하게 하였으며, 또 문인(門人)으로 하여금 글을 읽는 여가에 날마다 30리씩 걷는 연습

을 시키면서 말하기를 '머지 않아 왜적의 난리를 피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시급한 업무이다.' 하였는데, 문인들이 모두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신묘년 가을에 문인 박정로(朴廷老)와 함께 금산사(金山寺) 누각에 올랐는데, 붉은 기운 세 가닥이 하늘 북쪽에 길게 뻗치고 서남쪽으로 반쯤 뻗쳐 있는 것을 보고 박정로에게 말하기를 '수길(秀吉)의 군사가 이미 움직였으니 내년에 틀림없이 이 기운처럼 대대적으로 침입해 올 것이다. 모름지기 일찍 피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는 이 해 봄에 선조의 묘소에 성묘하고 제문을 지어 제사하며 난리가 일어날 것이므로 하직한다는 뜻을 고하였다.

그 뒤 처(妻)의 장례를 치르려고 친척과 빈객이 와서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우뢰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이에 '왜병이 바야흐로 바다를 건넜다.' 하고는 장례를 재촉하여 끝내고 공주(公州)로 돌아왔는데, 적이 과연 그날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다.

조헌이 천문과 인사(人事)의 길흉을 헤아렸으니 이는 지극한 정성으로 시운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술사(術士)처럼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잡서(雜書)를 보거나 사장(詞章)을 배우지 않고 경서(經書)만 읽었으며, 날마다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배송하였다. 붓가는 대로 지은 상소문과 서찰 등이 명백하고 준정(峻整)하여 모두 세상에 전할 만하였다.

【영인본】 25책 626면 【분류】 *인물(人物)

3)주학 제독관으로 제수된 조헌이 붕당의 시비와 학정의 폐단을 논한 상소문

·선수 20권, 19년(1586 병술/명 만력(萬曆) 14년) 10월 1일 임술 2번째기사

4)허성 · 윤두수 · 김수를 기록한 《실록》에 대한 사평

·선수 32권, 31년(1598 무술/명 만력(萬曆) 26년) 12월 21일 임신 3번째기사

5)이덕형과 이항복을 기록한 《실록》에 대한 사평

·선수 40권, 39년(1606 병오/명 만력(萬曆) 34년) 1월 1일 경오 3번째기사

14. 광해군일기

1)장오죄에 관계된 홍운해를 풀어주라고 하다

광해 3권, 즉위년(1608 무신/명 만력(萬曆) 36년) 4월 26일 임오 3번째기사

죄인 홍운해(洪雲海)가 옥중에서 상소하여 자신을 변명하니, 왕이 소장을 금부에 내렸다. 회계하기를, "홍운해에 대해 엊그제 심리할 때에 헌의(獻議)한 내용을 빠짐없이 진달하겠습니다. 그 당시 장흥(長興)의 옥사는 이미 용서해주는 은전을 받았는데, 본디 자기가 차지한 물품도 없었던 운해는 유독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원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의논한 일이 못되니 상께서 재단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판부(判付)의 안에 대신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오성 부원군 이항복(李恒福), 판중추부사 윤승훈(尹承勳)의 헌의에는 '맨 처음의 일은 비록 곡절을 자상히 모르겠지만, 끝에 가서는 자기가 차지한 물품이 없었으니, 장물을 계산하여 죄를 의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으며, 우의정 심희수(沈喜壽)의 헌의에는 '지난 계묘년 봄사이에 신이 사복시 제조로서 본현 분양마(分養馬)를 차지하려고 살아 있는 것을 죽었다고 한 김포현령(金浦縣令) 홍운해에 대한 실상을 알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대론(臺論)에 추문(推問)까지 받았습니다.

그뒤 바로 관의금이 되어 이 옥사를 반년이나 맡아 왔으니 그간의 곡절을 신보다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신을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비록 죄망에서 벗어나는 대 급하다 하더라도 이처럼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운해는 마첩(馬帖)을 소비했다가 본읍에 말을 도로 들여 놓았으니, 사복시에는 이익이 된 듯하며 운해 자신이 차지한 물품이 없었으니 설령 승복하더라도 장물을 따져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새로운 교화를 펴는 날에 있어 특별히 호생(好生)의 덕을 쓰시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고 하였으며, 청평 부원군 한응인(韓應寅)의 헌의에는 '이미 말을 들여 놓았고 또 마첩도 들여 놓았으니, 장물을 계산하여 죄를 논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가하시기 바랍니다."하니, 답하기를, "예로부터 인군은 장리법(贓吏法)을 중하게 다루지 않음이 없었다.

우리 나라에는 장리에게 징형을 베푼 적이 없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번

장오죄(贓汚罪)에 관계된 홍운해야말로 가볍게 용서하기 어려울 듯하나 대신들의 헌의가 이와 같으니, 이번만은 풀어주되 뒤에는 관례로 삼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홍운해는 좋은 분양마를 탐내어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 하고, 첩자(帖子)를 대신 들여 놓은 뒤에는 스스로 그 말을 타고 다녔는데 사복시에서 이를 알고 그 말을 빼앗아 왔다. 말과 마첩이 모두 남아 있으니, 비록 변명한다 하더라도 될 수 있겠는가.

〈마음씀의 형편없음이 평범하게 관물(官物)을 도적질한 것보다 심하였는데,〉 왕위를 이은 처음이라 하여 첫머리에 용서를 받았으니, 〈선왕들이 마련한 고의로 범한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벌한다는 의의에 어긋났다고 생각된다.〉 기강이 해이됨은 곧 이런 데서 말미암게 된 것이다.

〈통탄을 이길 수 있겠는가. 장흥(長興)의 옥사에서 풀려나려고 도모한 영경도 이에 비춰볼 때, 깊이 책망할 것이 있겠는가. 더욱 통탄스럽다.〉

【영인본】31책 303면 【분류】*정론-정론(政論)/*사법-탄핵(彈劾)/*교통-마정(馬政)

2)경기 암행 어사 박사제의 서계에 대하여 전교하다

광해 7권, 즉위년(1608 무신/명 만력(萬曆) 36년) 8월 16일 경오 1번째기사

경기 암행어사 박사제(朴思齊)의 서계에 대하여 전교하였다.

"양성현감(陽城縣監) 이의전(李義傳), 포천현감(抱川縣監) 홍서룡(洪瑞龍), 경기 수사 김거빙(金去病) 등은 우선 한 계급씩을 올려주고, 가평군수(加平郡守) 이집중(李執中), 김포현령(金浦縣令) 유호(柳浩), 연천현감(漣川縣監) 윤백순(尹百順) 등은 우선 파출할 것이며, 그 나머지 수령의 상벌 및 민간들의 병폐에 대한 일은 해조에 내려보내어 회계하도록 하라."

【영인본】31책 340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인사-임면(任免)

3)사헌부가 이진의 상사에 예관의 파견을 막지 못한 색승지를 체차하라고 아뢰다

○광해 16권, 1년(1609 기유/명 만력(萬曆) 37년) 5월 7일 정해 5번째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역적 이진의 상(喪)에 별도로 예관을 보내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원에서는 마땅히 의리에 입각하여 따져서 기어이 정지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출발시키게 하였으니 사리에 어두워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색승지를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대사헌 홍이상(洪履祥)이 '통진(通津)의 죄수인 사노(私奴) 덕복(德福)이 병신년 187) 8월에 수금되었는데 단지 일곱 차례만 형신하였다는 이유로 해조가 병신년 이후의 감사들을 남김없이 추고하라고 회계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감사로 있었으니 응당 추고받을 자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무릇 교체되는 기간이 1년이니, 14년 사이에 단지 일곱 차례만 형신한 것은 당초에 감사가 잘못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다만 언관으로서 이미 추고받는데 포함되어 있으니 형세상 직에 있기가 곤란합니다. 대사헌 홍이상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색승지에 대한 일은〉 이미 유시하였다." 하였다.

【영인본】31책 429면 【분류】*정론-간쟁(諫諍)/*사법-탄핵(彈劾)/*인사-임면(任免)/*왕실-종친(宗親)/*왕실-의식(儀式)

4)엎음으로 정박하고 있는 전세선을 엄히 지키게 하다

광해 97권, 7년(1615 을묘/명 만력(萬曆) 43년) 11월 29일 신축 2번째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호서의 전세선(田稅船)이 도착하여 통진(通津) 포구에 정박해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의 처리가 매우 적절하지 못합니다. 도감 군병의 12월달 식량을 먼저 지불하고, 그 대신 후에 오는 삼수량(三手粱)을 본조에서 가져다 쓰고자 하는 일을 계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산(瑞山)·임천(林川)·결성(結城) 등의 고을에서 보고한 바에 의거하면 각 고을의 세선 역시 뒤따라 오다가 부평(富平) 등지에서 언음에 막혀 있다고 합니다.

조운(漕運)하는 선박에 실린 것과 각 고을에서 전후로 도착한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그 수량이 거의 4천 석에 이르므로, 도감에 한 달 분을 지급하고도 남는 수량이 아직도 많습니다. 삼수량도 그 가운데 많이 있어서 전부 지급하기가 어려우니, 강 언덕에 유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수량은 도감으로 하여금 속히 처리하게 하고, 그 밖의 쌀과 콩의 전세는 해조의 낭청이 이제 내려갈 것이니, 본관으로 하여금 민가 근처로 옮겨 두고 군인을 많이 정해 사면에서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추운 때에 본관의 백성들 만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형세이니, 가까운 몇 고을에서 윤번제로 몇 명씩 정해 그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엄히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을에서 초관(哨官)과 무사(武士)를 정해 순라를 돌며 지키게 하여 혀술한 근심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부평에 도착한 쌀 배는 만약 강화(江華)의 해창(海倉)으로 돌아가 정박할 수 없을 경우 그 역시 낭청으로 하여금 가서 형세를 살펴서 일체로 시행하게 해야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32책 441면 【분류】*재정-전세(田稅)/*재정-국용(國用)/*교통-수운(水運)/*군사(軍事)/*물가-임금(賃金)

5)신궐 도감이 홍수로 떠내려 오는 재목의 습득을 아뢰다

광해 143권, 11년(1619 기미/명 만력(萬曆) 47년) 8월 12일 임술 4번째기사

신궐도감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큰 홍수로 국가와 개인의 목재가 떠내려가는 우환이 있었기 때문에 부장(部長) 이붕(李鵬)을 양천(陽川)·김포(金浦)로 보내 일일이 건지게 하였습니다. 지금에 김포현령 민응회(閔應恢)의 장계를 보니, 재목(材木) 91조(條), 누주(樓柱) 10조, 소부등(小不等) 8조, 대연(大椽) 16개, 대토목(大吐木) 1조, 중연(中椽) 4백 개가 떠내려가는 것을 건졌는데, 인제(麟蹄)에 사는 박응춘(朴應春)이라는 자가 자기 물건이라고 하였답니다. 사실 정확히 누구의 물건인지는 모르더라도 혹시라도 주인이 있으면 역시 값을 주고 사다 써야겠기에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주인이 있으면 빠짐없이 값을 주어 백성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속히 경덕궁으로 실어다 쓰라. 앞으로 떠내려오는 재목들도 모두 건져내어 쓰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33책 255면 【분류】*왕실-종사(宗社)/*건설-건축(建築)

6)원종 대왕 정원군의 졸기

광해 147권, 11년(1619 기미/명 만력(萬曆) 47년) 12월 29일 무인 6번째기사

【원종대왕(元宗大王)이 정원군(定遠君)을 추존한 칭호이다.】 홍(薨)하였다. 대왕은 어려서부터 기표(奇表)가 있었고 천성이 우애가 있어 특별히 선조(宣祖)의 사랑을 받아 전후로 선물을 내려준 것이 왕자에 비할 수 없이 많았다.

왕이 왕위에 올라 골육을 해치고는 더욱 대왕을 꺼렸다. 능창대군(綾昌大君)을 죽이고는 그 집을 빼앗아 궁으로 만들고, 인빈(仁嬪)의 장지(葬地)가 매우 길하다는 말을 듣고는 늘 사람을 시켜 엿보게 해서 죄에 얽어 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왕은 걱정과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느라 술을 많이 마셔서 병까지 들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 해가 뜨면 간밤에 무사하게 지낸 것을 알겠고 날이 저물면 오늘이 다행히 지나간 것을 알겠다. 오직 바라는 것은 일찍 집의 창문 아래에서 죽어 지하의 선왕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하였는데, 흥할 때의 나이가 40세였다. 상이 그 장기(葬期)를 재촉하고 사람을 시켜 조객을 기찰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양주(楊州) 곡촌리(谷村里)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다. 금상(今上)이 왕통(王統)을 계승하자 대원군(大院君)으로 진호(進號)하였다.

정묘년에 김포(金浦)에 개장(改葬)한 뒤 묘호(墓號)를 흥경원(興慶園)이라 하고, 임신년에 존호(尊號)를 '원종 경덕인현 정목장효 대왕(元宗敬德仁憲靖穆章孝大王)'이라 올리고, 비(妃)는 '경의정정인헌왕후(敬毅貞靖仁獻王后)'라 올리고, 묘호를 '장릉(章陵)'이라 하였다. 그리고 주청사 홍보 등을 보내어 책명(冊命)을 추청(追請)하니, 중국에서 '공량(恭良)'이란 시호를 내렸다.】

【영인본]33책 289면 【분류]*인물(人物)/*왕실-종친(宗親)

7)기한내에 전세와 삼수량의 추가 징수분을 바치지 않은 수령 감사의 처벌을 명하다

〈광해 162권, 13년(1621 신유/명 천계(天啓) 1년) 윤2월 7일 기묘 1번째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작년 가을에 경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경신년의 전세(田稅)와 삼수량(三手糧)의 추가 징수분을 올해 안으로 〈정하여〉 상납하라고 여러 차례 하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수령들이 태만한 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까지도 다 바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주(驪州)·〈음죽(陰竹)·이천(利川)·양성(陽城)·용인(龍仁)·진위(振威)·적성(積城)·김포(金浦)·통진(通津)·교동(喬桐)·포천(抱川)·영평(永平)〉등 열두 고을은 〈전세와 삼수량의 추가 징수분을〉 전혀 바치지 않았는데, 〈본도의 감사도 검칙하지 않고 있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와 여주 등 고을의 수령을 모두 되도록 중하게 추고하고, 이달 안으로 본도의 도사가 엄하게 독촉하여 상납하게 하되 기한 내에 다 바치지 못하면 감사와 도사는 녹봉을 감액하고 수령은 파직한다는 것을 다시 신칙하여 〈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영인본】33책 366면 【분류】*재정-전세(田稅)/*재정-국용(國用)/*사법-탄핵(彈劾)

8)홍명원·홍영·기준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광해 162권, 13년(1621 신유/명 천계(天啓) 1년) 윤2월 13일 을유 3번째기사

〈이날 정사가 있었다. 홍명원(洪命元)을 분병조 참판으로, 홍영(洪霙)을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기준격(奇俊格)을 병조좌랑으로, 〈홍서익(洪瑞翼)을 병조참의로,〉 남근(南瑾)을 좌빈객으로, 장만(張晩)을 병조판서로, 〈허자(許姊)를 부평부사(富平府使)로, 【자는 허희(許姬)의 형이다.】 김시보(金時輔)를 사복관관(司僕判官)으로 삼았다.〉

【영인본】33책 36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9)《선원록》의 기록을 시정해 줄 것에 관한 충의위 이덕린의 상소

광해 21권, 1년(1609 기유/명 만력(萬曆) 37년) 10월 1일 기유 1번째기사

10)검찰사 심돈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과 강도의 보장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광해 130권, 10년(1618 무오/명 만력(萬曆) 46년) 7월 2일 무자 10번째기사

11)양조 영정에 제사 거행 후 강화로 봉안하는 일을 예관에게 의논케 하다

광해 139권, 11년(1619 기미/명 만력(萬曆) 47년) 4월 3일 병진 6번째기사

12)동부승지 조찬한이 주사를 보완하는 시급함을 아뢰다

광해 141권, 11년(1619 기미/명 만력(萬曆) 47년) 6월 29일 경진 1번째기사

15. 인조실록

1)간원에서 양남과 양춘천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 인조 6권, 2년(1624 갑자/명 천계(天啓) 4년) 7월 29일 신사 2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백성을 좀먹는 해독으로는 간사한 아전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통진(通津)의 서원(書員) 양남(梁南)·양춘천(梁春天) 등은 일찍이 혼조때에 탐학한 관리에게 발붙어 백성의 살을 벗기고 뼛골까지 빨아먹으며 끝없이 침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변(徙邊)의 율(律)로 다스리려 하였는데, 갖가지로 청탁하여 고의로 그 옥사를 늦추게 하다가 마침내 면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공공연히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변란을 당하게 되어서는 말을 바쳐 요행히 면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데도 버려두면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삼가 성교(聖敎)를 보건대,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분부하셨으나, 어찌 한 때의 작은 신의 때문에 금석(金石) 같은 법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의 공사(公事)에 따라 율문(律文)대로 처단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변란 때문에 소석(疏釋)하였으니, 까닭없이 법을 폐기한 것과는 같지 않다. 신의를 잃어서는 안되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하였다.

이에 앞서 양남·양춘천 등이 고을 백성의 정소(呈訴)로 인하여 옥사(獄事)에 계루 된 지 오래 되었는데, 이괄의 변란 때에 김자점(金自點)이 말 두 필을 바치게 하여 자기 편비에게 주고 계청하여 석방시켰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꺼리낌없는 그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병조 판서 김상용(金尙容)이 아뢰기를, "전가사변(全家徙邊)에 해당되는 죄인을 말 두 필로 석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변의 율이 가난한 백성에게만 행해지고 부자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어 금석같은 법이 이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하니, 상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분부하였으므로, 간원이 논한 것이다.

【영인본】33책 633면 【분류】*정론-간쟁(諫諍)/*사법-행형(行刑)/*교통-마정(馬政)

2)총융사 이서가 통진 등의 고을에 천총을 둘 것을 건의하다

인조 6권, 2년(1624 갑자/명 천계(天啓) 4년) 8월 5일 정해 1번째기사

총융사(總戎使)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신이 우도(右道)를 순심(巡審)하여 통진(通津) 등 여덟 고을의 군사를 대상으로 먼저 대오(隊伍)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오를 만든 뒤에는 반드시 총령(總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덟 고을의 수령은 다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 출신이니, 도내(道內)의 무변(武弁)으로 전에 조관(朝官)을 지낸 한 사람을 가려 천총(千總)이라 칭하여 각 고을을 왕래하며 오로지 검칙하는 일을 맡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법(兵法)에 '군대에 선봉(選鋒)하는 일이 없으면 적을 제압할 수 없다.' 하였는데, 선봉하는 법은 반드시 후한 상이 있고서야 격려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해조에 저축된 당화(唐貨)나 속공(屬公)한 잡물(雜物) 가운데에서 상격(賞格)에 쓸 만한 것을 넉넉히 내려보내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33책 634면 【분류】*군사-군정(軍政)

3)간원이 김포현령 최경길을 개차하도록 아뢰다

인조 7권, 2년(1624 갑자/명 천계(天啓) 4년) 9월 24일 을해 3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김포현령(金浦縣令) 최경길(崔敬吉)은 전관(銓官)의 아우로서 수령에 제수되었으니, 상피(相避)해야 된다는 법전의 뜻과 어긋납니다. 설령 승진시켜 서용하라는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목(字牧)을 담당한 직책은 그 소임이 가장 중한 것이라서 예전부터 노고나 공에 보답하여 상을 주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최경길의 개차(改差)를 명하소서."하니, 따랐다. 최경길은 바로 최명길(崔鳴吉)의 아우이다.

【영인본】33책 644면 【분류】*인사-관리(管理)

4)간원이 박몽량·이시번의 정죄를 청하다

ㄴ 인조 8권, 3년(1625 을축/명 천계(天啓) 5년) 2월 29일 무신 1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김포만호(金浦萬戶) 박몽량(朴夢亮)은 역적 이괄(李适)이 서울을 범하던 날을 당하여 원주(原州) 중군(中軍) 원극함 및 무사(武士) 이시번(李時蕃)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양주(楊州) 지역까지 왔다가 역적들이 도성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는 이시번과 함께 원극함을 유혹하기를 '이때야말로 공명을 세울 기회이니 가서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는데, 원극함이 큰 소리로 꾸짖어 배척하면서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몽량과 이시번은 그들의 군사를 이끌고 도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 역적 이괄이 호군하는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했는가 하면 안현(鞍峴)의 전투에 나갔다가 역적이 패하고 난 뒤에는 제 고향으로 도망쳤으므로 온 도의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 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미하고 지역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도록 법망에서 빠져 있게 되었으니, 공론이 격발된 것도 이미 늦었다 하겠습니다.

박몽량과 이시번을 율대로 정죄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박몽량 등에게 그와 같은 죄가 있었다면 지난해에 반드시 누락될 리가 없었을 것이니, 다시 논하지 말라."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니, 따랐다.

【영인본】33책 685면 【분류】*사법-치안(治安)/*사법-탄핵(彈劾)/*변란-정변(政變)

5)계운궁의 묘소를 김포로 결정하다

인조 11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2월 9일 임오 1번째기사

예장도감(禮葬都監)이 아뢰기를, "도감의 당상인 이정구(李廷龜)·정광적(鄭光績)·김신국(金藎國)·구굉(具宏)이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김류·서성과 회동(會同)하여 전후 간산(看山)한 곳의 산론(山論)과 도형(圖形)을 가지고 다시 술관(術官)들에게 각기 소견을 쓰게 하여 그곳의 고하에 대한 등제를 매겼는데 모두들 고양(高陽)·김포(金浦)·교하(交河)를 일등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희주(鄭熙周)는 '교하 객사(客舍)의 뒷산이 귀격(貴格)은 있으나 주산(主山)이 파손된 데가 있는 것이 큰 흠이다.

고양 고군(古郡)의 뒷산은 형세가 매우 아름답지만 수파(水破)가 곧게 나간 것이 흠이다. 그러나 둑을 조금 쌓아 오방(午方)으로 흐르게 하면 매우 길하여 교하보다 낫다. 김포 객사의 뒷산은 별로 흠될 곳이 없다.' 하였고, 송견(宋堅)은 '고양 고군의 뒷산이 제일이고 다음은 김포이고 또 그 다음은 교하 객사의 뒷산이다.' 하였고, 이감생(李甲生)은 '김포 객사의 뒷산은 제일이고 그 다음이 고양 고군의 뒷산이고 또 그 다음이 교하 객사의 뒷산이다.' 하였고, 최남(崔楠)은 '교하는 길격(吉格)에 합치되지만 혈도(穴道)가 부서졌으니 보토(補土)한 뒤에야 쓸 수 있다.

고양의 옛고을은 형격(形格)이 매우 길하지만 수파(水破)가 정지(丁地)로 나 있으니 둑을 조금 쌓으면 매우 강하다. 김포는 형세(形勢)가 모두 순하여 달리 논할 것이 없다.' 하였고 오세준(吳世俊)은 '교하가 제일이고 김포가 제이이고 고양이 제삼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모두 풍수(風水)에는 어두워 그 우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자들이 논한 것을 가지고 되풀이하여 상의해 보건대 고양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말이 각기 같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이 좋다고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의 재결을 바랍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다시 간심(看審)하게 하여 고양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다시 외방의 지관들을 대동하고 간심하니 고양은 흠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김포에 가서 간심하라고 명하였는데 군의(群議)가 모두 길하다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그곳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영인본】34책 73면 【분류】*왕실-비빈(妃嬪)/*왕실-의식(儀式)/*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6)김포읍 아래 철가한 백성들을 복호로 정할 것을 명하다

ㄴ 인조 11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2월 23일 병신 1번째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김포읍(金浦邑) 아래에 사는 백성들이 지금 철가(撤家)하여 이사하게 되었으니 매우 측은하여 마음이 몹시 불안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년을 기한으로 복호(復戶)하게 하라. 화소(火巢)안의 민전(民田)에 대해서도 국둔전(國屯田) 가운데 좋은 곳을 가려 절급(折給)하여 안접(安接)할 수 있게하라."

【영인본】34책 75면 【분류】*군사-금화(禁火)/*군사-군역(軍役)/*왕실-종사(宗社)/*농업-전제(田制)

7)간원에서 상의 건강 걱정과 산릉에 행행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차자를 올리다

인조 12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3월 5일 무신 1번째기사

간원이 차자를 올리기를,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원이요 만화(萬化)의 근본으로서 성인이 《효경(孝經)》이라는 책에 자세히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왕의 효는 일반 신서(臣庶)들과는 다르니, 그 효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천지(天地)에 순응하고 조종(祖宗)에도 알맞으며 경과 사대부가 기꺼이 심복하고 만백성의 환심을 얻어야만 교화가 유통되고 나아가 기반이 공고해져서 바야흐로 성인으로서의 달효(達孝)가 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그 지극하신 덕과 순수한 행실이 천성에서 얻어진 것으로 보위에 오르시기 전부터 이미 그 효가 상하에 통하였고 보위에 오른 이후로는 위로 자전을 받들고 곁으로 별궁(別宮)을 모심에 있어 성과 예를 다하시어 그 누구도 뒤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운궁(啓運宮)이 병석에 누우신 후로는 시약(侍藥)과 치양(致養)하는 도리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지 않음이 없으셨는데 신(神)의 이치란 어려운 것으로 끝내는 대고(大故)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중략〉

아마 예관(禮官)이 말했던 것도 그 주된 뜻은 이런 범주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치 못한 바가 있어 오히려 성의 노여움을 격발시킨 나머지 산릉(山陵)에까지 뒤따라 가겠다는 하교가 있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관의 말이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그 지나친 점 때문에 도리어 당찮은 거동을 하신다는 것은 대성인으로서 사리를 따라 물정에 순응하는 바른 도리가 아닐 듯싶습니다. 이는 군신간의 정의(情意)가 돈독하지 못한 까닭에 한 마디 말만 맞지 않아도 금방 어긋나버리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니, 어찌 크게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포(金浦)와 서울과의 거리가 2사(舍)나 되는데, 발인할 때에 동원되는 인부와 군마 그리고 음식 등만 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대가(大駕)까지 지등하신다면 수많은 말과 수레로 백관이 뒤따를 텐데 기보(畿輔)의 물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 치루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불가한 점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길을 가야 하고 이튿날은 안조해야 하고 3일째에 반혼(返魂)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흘 밤과 사흘 낮 동안 바람과 이슬에 그대로 몸을 드러내는 셈인데 허묘(墟墓) 사이에서 곡벽을 하다 보면 성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이 반드

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가한 점입니다.

또 요즘 들어 이변이 겹겹이 나타나 무지개 등 요사스러운 기운들이 태양을 가리는가 하면 인심이 안정을 잃고 나라 형세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멀리 도성을 떠나 강 건너까지 행차하시어 여러 날을 보낸다면 전하 자신의 입장에서야 가볍게 여기실지 몰라도 종묘와 사직 그리고 자전의 입장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불가한 점입니다. 〈본문중략〉

신 등은 이번 일이 일시적인 격동과 촉발에 의하여 나온 것일 뿐으로서 필시 행해질리는 없으리라는 것을 본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심이 의혹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니, 또한 바라옵건대 분명하게 지휘(指揮)를 내리시어 전의 명령을 속히 개정하소서. 그러면 반드시 사방에서 보고 듣고 큰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아, 오늘날의 일을 말할 것들이 많으니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신들은 감히 자질 구레한 일들을 날날이 들어 슬픔에 잠기고 계신 성을 괴롭혀 드릴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명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셔서 예에 의하여 감정을 절제하시고 모든 일을 사리에 맞게 처리하심으로써 필부처럼 구차스레 어려운 길을 걷지 마시고 성인이 행하는 달효(達孝)의 도리를 다하도록 노력하소서. 그러면 종묘와 사직에 매우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차자 내용은 충분히 알겠다. 이토록 슬픔에 쌓인 와중에 조사(詔使)까지 온다고 하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상례(喪禮)로 말하면 사람마다 소견이 달라 시비(是非)가 엇갈리고 빈접으로 말하더라도 생각 밖의 일이어서 준비를 해낼 길이 없다. 어디 그뿐인가.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은 지도 이언 반 년이 되어가는데 난들 어찌 여러 경들을 한번 만나보고 위아래의 정의(情意)를 펴보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다만 예절로 보아 구애되는 일이 많은데다가 기력마저 미치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산릉에 가는 일은 지극한 정을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전(禮典)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리 경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하다. 조호(調護)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경들을 위하여 마음에 새기겠다. 하였다.

【영인본】34책 79면 【분류】*정론-간쟁(諫諍)/*왕실-비빈(妃嬪)/*왕실-의식(儀式)

8)예조에서 원소(園所)를 수호할 수묘군의 수를 아뢰다

인조 12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3월 11일 갑인 1번째기사

해조에 명하여 원소(園所)를 수호할 군사를 정하도록 했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덕흥군(德興君) 묘소는 선조 대왕이 대통(大統)을 이어 받은 뒤에도 수묘군(守墓軍)을 7호(戶)만 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례가 된 듯 싶습니다. 다만 김포(金浦)의 산소 부근에는 거주하는 백성이 적고 수목도 없는 벌거숭이 산이어서 수호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 청소 작업이나 초목(樵牧)을 금하는 데 손이 모자랄 염려가 있으니, 수를 늘려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15호를 골라 정하고 45명의 봉족(奉足)을 산 밑으로 옮겨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각기 위전(位田)을 주고 면세(免稅)와 복호(復戶)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상이 5호를 더 정하도록 명하였다.

【영인본】34책 81면 【분류】*군사-군역(軍役)/*농업-전제(田制)/*재정-전세(田稅)/*왕실-비빈(妃嬪)/*왕실-의식(儀式)

9)김포 산소의 묘호를 정할 것을 명하다

인조 12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3월 15일 무오 3번째기사

상이 하교하기를, "김포(金浦)의 산소에도 당연히 묘호(墓號)가 있어야 할 듯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한대(漢代)의 고사에 따라 논의하여 정하게 하라."하니, 예관이 유신(儒臣)들로 하여금 고사를 널리 상고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홍문관 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한선제(漢宣帝)가 즉위한 후 조서를 내리기를 「고 황태자(皇太子)를 호현(湖縣)에 장사하였지만 아직 시호(諡號)가 없고 세시(歲時)때 제사도 없었다. 태자의 시호를 의정하고 원읍(園邑)을 두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예문에 의거하면 남에게 입양되어 간 이는 입양한 사람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본생 부모에 대하여는 강쇄(降殺)의 예가 적용되어 친히 제사를 모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부를 존중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폐하는 효소황제(孝昭皇帝)의 뒤를 이어 조종의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 고 황태자 묘위는 호현에 있고 사양제의 무덤은 박망원(博望苑) 북쪽에 있으며 아버지 사황손(史皇孫) 묘위는 광명(廣明) 성곽 북쪽에 있다. 시법(諡法)에 의하면 시호란 그의 생전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시호는 도황(悼皇), 어머니는 도후(悼后)로 하고 제후왕(諸侯王)의 원(園)에 준하여 3백호(戶)의 봉읍(奉邑)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황태자의 시호는 여(戾)로 하여 봉읍 2백호를 두고, 사양제는 여부인(戾夫人)으로 하여 무덤지기 30호를 두며 원(園)에는 장승(長丞)을 두고 순찰하고 경비하기를 법대로 하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그리하여 호현 문향의 야리취(野里聚)를 여원(戾園)으로 하고, 장안(長安)의 백정(白亭) 동쪽을 여후원(戾后園), 광명(廣明)의 성향(成鄕)을 도원(悼園)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유사가 다시 아뢰기를 「예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士)이고 아들이 천자이면 제사를 천자의 예로 모신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원(悼園)에 대하여 당연히 존호(尊號)를 올려 황고(皇考)라고 하고 사당(廟)을 세울 것이며 묘원(墓園)을 침전(寢殿)으로 만들고 시절마다 제사를 올리는 한편 수호할 민가도 더 늘려 1천6백호가 되도록 하고 거기를 봉명현(奉明縣)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부인은 높여 여후(戾后)로 하여 원(園)과 봉읍(奉邑)을 두고 여원과 여후원의 봉읍을 늘려, 각각 3백 호가 차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고 하였

습니다.

신들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건대, 일단 한대의 고사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양한(兩漢)에 걸쳐 사친(私親)을 높이 받든 형제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제(桓帝)·영제(靈帝) 같은 이들은 모두 자기 친생 고비를 추존하여 황(皇) 또는 후(后)로 하였으므로 그들 장지(葬地) 역시 바로 능(陵)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예를 무시하고 제도에 어긋난 처사여서 성상께서도 매우 싫어하시어 그렇게 하시려고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선제(宣帝)는 능이라고 쓰지 않고 원으로 칭하였는데, 이밖에는 달리 근거 삼을만한 고사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하니, 예조가 이것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였다.

좌의정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능이라는 글자를 이미 쓸 수가 없고 원이라는 글자 역시 근래에는 쓰이지 않던 것이니, 성상의 하교대로 묘(墓) 자 위에 별도의 명칭을 붙여 일반 묘와 구별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하고, 우의정 신흠(申欽)은 아뢰기를, "김포 산소에 묘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예조에 내리신 전교를 삼가 받들고 이어 홍문관 이 널리 고사를 상고한 끝에 아뢴 내용을 보건대, 홍문관이 고출한 것은 묘가 아니고 원에 관한 일이어서 성상이 하교하신 본의와는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널리 상고해 본다는 뜻에서 그 원(園)의 기원을 고찰해 보건대, 삼대(三代) 이전에는 묘제(墓祭)가 없었다가 진(秦)대에 와서 비로서 묘옆에 침전(寢殿)을 두었는데, 한(漢)대에 전대의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모든 능에도 침전을 두어 생시에 기거하던 것과 똑같이 의복 등 모든 용구를 갖추어 두고 침원(寢園)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태상황(太上皇) 이하 고제(高帝)·혜제(惠帝)·문제(文帝)·경제(景帝) 등 대대로 있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원이란 바로 능을 달리 부르는 칭호인데, 옛 사람들의 문자상에도 원릉(園陵)이니 침원(寢園)이니 하여 천자 제후의 구별없이 써 온 것으로서 묘자와 능자의 사이에 별도의 원자를 두어 그것으로 위아래의 등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능이니 원이니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원(戾園)·도원(悼園)도 능처럼 침전을 두어 세시(歲時)에 제향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들 침전이 있는 곳에 그들 시호인 여(戾)·도(悼) 두 글자를 합쳐 여원 또는 도원으로 불렀던 것이니, 수릉(壽陵)이나 장릉(長陵)처럼 특수한 칭호로 만든 것은 아닌 듯합니다.

대체로 원이라는 호칭은 한대에는 성행하다가 당(唐)·송(宋)으로 내려 올수록 점점 줄어들고 원(元)·명(明) 이후로는 더욱 보기가 드물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원으로 칭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묘를 원으로 고쳐 부르려고 한다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이라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상의 하교대로 묘자 위에 색다른 명칭을 붙여 다른 묘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학(禮學)에는 원래 어두운 신으로서 절충을 취할 만한 소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억설을 올리면서 주상의 재가가 있기를 엎드려 바라는 바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한대의 고사에 의하도록 하교를 내렸었는데 대신들의 헌의(獻議)가 이와 같으니, 그들이 말한 '주상의 하교대로'라고 칭한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단문(短文)한 소치로 말이 부실하여 사체에 손상을 입힌 일을 저질렀으니, 이것이 나의 과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능과 원이 등급이 없지 않을텐데 저처럼 말하니 그 뜻도 나로서는 모르겠다."하였다. 대신들이 이로 인하여 대죄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제(帝)와 왕(王) 두 칭호가 원래는 높낮이가 없었던 것인데 진대에 와서 그것을 구별하여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다.

능과 원도 그것이 공통된 칭호라고 하나 한대와 송대에 구별을 둔 것이 어째 아무 뜻 없이 그러했겠는가. 더구나 원이라는 그 칭호가 원래 능명(陵名)처럼 참람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 선제가 했던 대로 김포의 산소에 대해서도 무슨 원(園)이라고 칭하여 조금은 구별하는 뜻을 나타내도록 하라."하였다. 이에 예문관 이 원의 호칭을 찬정(撰定)하였는데, 결국 육경(毓慶)으로 계하(啓下)되었다.

【영인본】34책 82면 【분류】*왕실-종사(宗祀)/*왕실-비빈(妃嬪)/*역사-고사(故事)

10)대제학 김류가 쓴 계운궁의 묘지문

)인조 12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3월 21일 갑자 7번째기사

상이 계운궁(啓運宮)의 행장(行狀)을 내려 대제학 김류에게 묘지명(墓誌銘)을 써 올리도록 하였다. 그 지문(誌文)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 대통(大統)을 이은 지 4년째 되는 병인년 1월 14일 무오에 계운궁의 병세가 악화되어 경덕궁(慶德宮)의 화상전(含祥殿)에서 세상을 하직하시니, 그때 춘추가 49세였다. 초빈하고 난 다음달 성상께서 세계(世系)와 언행에 관한 일체 사항을 써 주시면서 신 유에게 그것을 토대로 묘지명을 쓰도록 명하시었다. 신 유는 상소하여 감히 지을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일단 그 행장을 읽고나서 삼가 생각건대 옛날 주공(周公)은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대명(大明)과 생민(生民)의 시를 지어 노래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두 선조(先祖)와 선비(先妃)의 덕을 추모한 것들이었다. 예로부터 하늘의 명을 받아 왕위에 오른 이들치고 그 조상 적부터 장차 경운(景運)이 크게 열릴 수 있도록 덕을 심고 경사의 터전을 닦음으로써 하늘의 대명을 맞아들일 소지를 마련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던가. 그러고 보면 계운궁이라고 이름한 것이 그 얼마나 걸맞는 칭호인가. 아, 훌륭하다 하겠다. 이에 삼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계운궁은 성이 구씨(具氏)이고 파계는 능성(綾城)이다. 먼 조상인 휘(諱) 존유(存裕)가 고려조에 벼슬하여 이름이 있었고 국조(國祖)에 들어와서도 대대로 벼슬이 끊기지 않아 마침내 크게 현달했다. 증조는 영유현령(永柔縣令)으로 휘는 희증(希曾)이었는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조부는 사헌부 감찰로 휘가 순(諄)인데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휘 사맹(思孟)은 문학으로 문과에 우등으로 뽑히고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명종(明宗) 이래로 임금을 계속 섬겨 요직과 현직을 역임하였고 의정부 좌찬성으로 마감하였는데, 아들 구성(具宬)과 구굉(具宏)이 호성공신(扈聖功臣)과 정사공신(靖社功臣)에 녹훈됨을 인하여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순충병의보조(純忠秉義輔祚)의 공신호를 받았으며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에 봉해졌다. 의정은 평산신씨(平山申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신씨는 고려조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의 후예로서 영의정과 평주부원군(平洲府院君)에 추증된 화국(華國)의 따님이었다. 이 사이에서 바로 계운궁이 출생하였으니 때는 무인년 4월 17일 무술이었다.

계운궁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질이 남달리 총명하였으며 효성과 우애는 천성에서 발로된 것이었다. 겨우 4세에 이미 예(禮)로 몸가짐을 할 줄 알았고 5세가 되자 어린 티가 없이 의연하기가 성인과 같았다.

하루는 부모를 모시고 음식을 먹다가 몇 수저 뜨더니, 숟가락을 놓았다. 이상히 여긴 부모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배가 부르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밥상을 물릴 때 보니 그 음식에 오물이 섞여 있었다. 이때부터 부모는 그를 달리 보게 되었다. 부모는 그의 행동을 보려고 일부러 장난감을 다른 아이들에게만 주고 계운궁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에 부모가 그를 사랑하여 쓰다듬으며 말하기를 '내 딸은 진짜 딸이다.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문을 빛낼 것이다.' 하였다.

선조대왕은 평소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을 기국 이 있다고 여겨 사랑하였는데 경인년에 가례(嘉禮)를 치르려고 대등한 짝을 고르기 위해 사대부 집 딸들을 모두 대궐로 모이게 하고 친히 간선(簡選)하였다. 그런데 두 차례를 하고도 맞는 짝을 찾지 못하다가 계운궁을 한 번 보고는 금방 마음에 들어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빈어(嬪御)들도 모두 하례하였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그 해 10월 3일에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게 하였다. 대원군은 인빈(仁嬪)의 소생이었는데, 덕이 있고 식견이 높은 인빈도 늘 훌륭한 우리 며느리라고 칭찬하였다.

선조대왕이 여사(女史)에게 명하여 《소학(小學)》 등 여러 서적을 가르치게 하였는데, 그는 다 읽기도 전에 이미 그의 음의(音義)를 통하였다. 또 따스하고 인자한 가운데 말이 적었으며 기쁨과 노여움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높은 이는 높은 이대로 낮은 이는 낮은 이대로 맞게 행동하였으므로 궁중에서 더욱 그를 공경하였다.

대원군을 섬기면서도 순하고도 올바르게 받들어 활기차고 고운 얼굴로 뜻을 어긴 적이 없었으며, 감히 아내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측출(側出)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고 동사에게도 너그럽게 대하여 집을 다스리는데 있어 위아래 할 것이 없이 모두 법식이 있었으므로 대원군도 그를 매우 높이고 소중히 여기었다.

급기야 하늘이 돌보시어 성자(聖子)를 낳게 되었는데 때는 만력(萬曆) 을미년이었다. 이른바 덕을 심고 경사의 터전을 닦아 경운(景運)이 크게 열리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무신년에 선조께서 승하하시자 범도에 지나치도록 슬퍼하였고 인빈의 초상 때에도 그러하였다.

을묘년에 막내 아들 능창군(綾昌君)이 참혹한 화를 당하자 대원군이 비통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이때 계운궁은 병석을 떠나지 않고 여러 해 병시중을 들면서 약을 다리거나 더럽혀진 의복을 세탁하는 일 등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모두 손수하였다. 그러다가 대원군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는 물 한 모금 입에 넣지않고 울부짖다가 졸도까지 하였으며 삼년상을 마치도록 마음으로만 연명하였다. 그리고 동기간의 대접과 영첩들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대원군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후하게 대하였다.

겨레붙이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했고 남의 급한 일을 보살피는데 있어서도 가난하고 천한 이부터 우선 하였으며, 처음 능창군의 참화가 있었을 때 친속 중에서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 발걸음을 끊은 자도 있었지만 그들을 대할 때도 말이나 얼굴에 기색을 나타내는 일 없이 처음과 똑같이 대하였다.

한 평생 부귀의 티 없이 화사한 비단옷을 몸에 걸친 일이 없었고, 언제가 깊이 간직해두었던 진귀한 보배를 잃어버렸을 때 숨겨놓은 곳을 안면서도 그것을 불문에 부치고 말하기를 '남의 나쁜 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다.' 하였다. 어려서부터 대의(大義)에 밝아 경중과 완급을 알았는데 반정 때에는 금백(金帛)을 모두 꺼내 장사(將士)들을 위로하기도 하였으며, 거의(擧義)하던 날에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고 난을 진정시킨 뒤에도 좋아하는 빛이 없었다. 위기와 변란을 당하면서도 그때그때 알맞게 처리하여 대업을 달성하는데 한 몫을 하였고 그리하여 큰 터전을 다질 수 있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덕택이었던가. 갑자년 봄 역적 이괄(李适)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육박하여 왔을 때 대가가 남쪽으로 옮겨 수원(水原)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따르는 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싸여 쩔쩔히 흩어질 기미를 보이자 주머니를 털어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고, 대비(大妃)를 극진한 효성과 공경으로 받들고 곡진하게 순종하면서 이전히 부드러운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경황없는 상황이었지만 조금도 해이한 빛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병이 들어도 푸닥거리 같은 것을 일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비는 것이 헛된 일이라면 애당초 말아야 할 것이고, 응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미망인(未亡人)인데 빌어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정도로 사리에 밝아 현혹됨이 없었다.

무신년 이후 언젠가 꿈에 선왕(先王)이 계운궁을 불러 이르기를 '녀희 집에 천명을 받아 왕위에 오를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이어 옥새를 내어주면서 이르기를 '이것을 특별히 그에게 주고 나의 가르친 말을 전하라.' 하자 계운궁이 절하고 사

례한 후 묻기를 '신정(新政)에 최선을 다하면 이 나라를 진압하고 창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 하였는데, 그 역시 신묘한 일이었다.

아, 빛나신 열조(列祖)의 영령이 우리 성상을 격려하여 큰 어지러움을 가라앉히고 뒤를 이어 복을 받아 이 나라에 억만년토록 끝없이 빛나는 길을 열게 하였으니, 그 꿈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었다.

계운궁은 계해년에 병이 들어 갑자년에 점점 심해지다가 병인년에 드디어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으니, 아, 슬픈 일이다. 예빈(禮嬪)을 하고 예장도감(禮葬都監)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니 종백(宗伯)이 상례를 맡고 탁지(度支)가 일을 주관하였으며 빈궁(殯宮)은 장작(匠作)이 맡아 다스려 위아래가 총동원되어 일을 마쳤다.

반정 초기에 조정 대신의 논의에 따라 정원군(定遠君)에게 대원군(大院君)의 칭호를 붙였고 궁(宮)의 호를 계운으로 하였다. 누차에 걸쳐 임금이 근성(覲省)하려고 사제(私第)에 납시다가 그것으로 부족하여 직접 대내(大內)에 옮겨 모시고 별공(別供)과 시선(時膳)을 빠짐없이 갖추어 끝까지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새 택조(宅兆)를 김포현(金浦縣) 뒷산에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정하였는데, 그해 4월 25일 장례를 모시고 그 바른편 자좌오향(子坐午向) 자리는 대원군을 옮겨 모시기 위하여 비워두었다.

계운궁은 아들이 세 분인데, 맏이가 바로 당저로서 청주한씨(淸州韓氏)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준겸(浚謙)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보위에 올라 대통을 계승하였다.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는데, 맏이는 조로 왕세자에 책봉되고 다음은 아무 【금상(今上)으로 휘는 호(淏).】이고 다음은 요이고 다음은 곤(滾)인데 모두 어려 아직 봉호가 없으며 딸은 맨 끝이다. 그리고 계운궁의 둘째 아들은 능원군 이보인데 현재 슬하에 자녀가 없이 정원 대원군의 제사를 맡고 있고, 셋째는 능창군이전(綾昌君李佺)으로 호협하고 재주가 영특하였으나 지난 혼조(昏朝) 때 간사한 무리들의 날조된 모함에 빠져 섬으로 귀양갔다가 17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직 가정을 갖기 전의 일이었다. 명(銘)하기를, 〈본문중략〉

【영인본】34책 85면 【분류】*왕실-종사(宗社)

11)김포 원소의 광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도록 명하다

인조 12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4월 13일 을유 1번째기사

김포(金浦) 원소(園所)의 광(壙)속에 돌이 있으므로 바른편 산등성이로 옮겨 정할 것을 명하고, 지가(地家)의 살(殺) 제거하는 법을 채택하여 길일(吉日)을 다시 잡도록 하였다. 이때 심명세(沈命世)가 상소하여, 살 제거하는 법은 믿을 것이 못 되고 또 그곳의 산형(山形)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논하면서 이어 조사(朝士) 중에 풍수설을 아는 4, 5명을 추천하였는데, 다시 중의 를 널리 모으라는 명이 있었으나 명세의 말은 채택이 되지 않았다. 대사간 장유(張維) 역시 명세가 추천한 인물 속에 포함되었으므로 상으로부터 회의하도록 특명을 받았으나 두 차례나 인피하며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영인본】34책 91면 【분류】*왕실-의식(儀式)/*왕실-비빈(妃嬪)/*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12)간원에서 심명세의 상소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추고를 건의하다

인조 12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4월 18일 경인 1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풍수설(風水說)은 성인의 도가 아닙니다. 화복이 상응하는 까닭은 너무 아득하고 멀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유들이 논한 것도 하나는 흙이 두텁고 물은 깊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람을 갈직하고 기운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을 뿐, 후세의 경사(經師)·술사(術士)들이 실속없이 억지로 끼어 붙인 말들은 모두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번에 청운군(靑雲君) 심명세(沈命世)가 올린 상소문도 꼭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소견이 있었다면 훈척(勳戚)의 신하로서 비록 유배 중에 있었더라도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당초 김포(金浦)에 자리를 정할 때만 해도 언급한 것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 유배 중이라 하여 혐의롭게 여겼다면 풀려 난 후라도 즉시 원소(園所)로 달려가 형세를 살펴본 뒤 결단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 그때 글을 올려 조정에 알리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엿날의 희미한 소견을 내세워 큰 역사가 끝나가는 즈음에 와서야 이해의 설로 단안을 내렸습니다. 이때 만약 상께서 그 근거없는 논의를 진압하고 확고하게 결정된 주견을 내세우지 않으셨다면 막대한 물력과 경비는 그만두고

라도 막중한 양봉(養奉)의 시기가 늦어지게 되어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일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논의할 수가 없으니, 심명세를 추고하도록 명하소서."하니, 따랐다.

【임인본】34책 93면【분류】*정론-간쟁(諫諍)/*사법-탄핵(彈劾)/*왕실-의식(儀式)/*왕실-비빈(妃嬪)/*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13)서울에서 김포가는 길을 넓히는 사업으로 백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다

- 인조 12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4월 22일 갑오 1번째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서울에서 김포 가는 길이 큰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 너무 넓히면 백성들 전답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본도에서는 그 길을 너무 넓혀 백성에게 피해가 가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영인본】34책 93면 【분류】*교통-육운(陸運)/*농업-전제(田制)

14)김포 육경원에 행행하여 친제하다

- 인조 14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9월 4일 계유 1번째기사

상이 김포 육경원(毓慶園)에 행행하여 친제(親祭)를 거행하였다.

【영인본】34책 139면 【분류】*왕실-의식(儀式)/*왕실-행행(行幸)

15)예장도감에서 흥경원이장시 성내에서 대여가 머물 곳을 정하도록 아뢰다

인조 14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 6년) 9월 22일 신묘 1번째기사

예장도감(禮葬都監)이 아뢰기를, "흥경원(興慶園) 이장(移葬)시에 대여(大轝)가 성내(城內)를 경유하도록 하라고 전교를 하셨습니다. 흥경원에서 김포까지는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인데, 성내에서 밤을 보낼 때에 대여가 머물 곳은 아래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기에, 감히 품합니다."하니, 답하기를,"대여가 머물 곳은 남별궁(南別宮)으로 정하라."하였다.

【영인본】34책 142면 【분류】*왕실-종사(宗社)

16)비국이 정충신을 등용하고 경기도의 속오군을 강도에서 쓸 것을 청하다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1월 25일 계사 8번째기사

비국이 아뢰기를, "서쪽 변방의 노숙한 장수들은 모두 패전하여 죽었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정벌을 위임할 만한 자는 정충신만한 이가 없습니다. 비록 질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폐한 데 이르지는 않았으니, 신들의 생각에는 부원수에게 서북(西北)의 관병을 부여하고 삼남의 군병으로써 첨가하여 장만과 함께 상의해 확정하여 진퇴하도록 한다면 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류의 장계에 '경기의 수변과 해서 연해의 각 고을 창고에 있는 곡물을 모두 강도에 수송해 보내도록 하고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풍덕·인천(仁川)·부평(富平) 등 고을의 속오군(束伍軍)은 다 주즙(舟楫)에 익숙한 사람들이므로 남한 산성에 쓰면 조련하지 않은 군병이 되지만 강도(江都)에 쓴다면 이만큼 정예화된 군졸도 없다.' 하였는데, 김류의 소견은 실로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시행하소서.

대가가 출행하신 후에는 해로가 격절하여 빈신이 만일 하나하나 품명하려 한다면 반드시 늦어져서 일을 추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전수(戰守)의 방략이나 화호문서(和好文書)에 관계된 것은 체신으로 하여금 전담해 관장하도록 하여 먼저 시행하고 뒤에 아뢰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34책 164면 【분류】*인사-임면(任免)/*군사-전쟁(戰爭)/*군사-병침(兵站)/*의교-야(野)

17)양천에서 출발하여 김포를 경유하면서 육경원을 참배하고 통진에 행차하다

: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1월 27일 을미 1번째기사

상이 양천(陽川)에서 출발하여 김포(金浦)를 경유하면서 육경원을 참배하였다. 하교하기를, "비록 소상은 지났으나 곡례를 행하고자 한다."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군중에서는 거애(擧哀)하지 않습니다."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드디어 혼궁(魂宮)에 나아가 슬퍼 곡하였다. 그 뒤 막차(幕次)로 들어가 소복을 벗고 융복으로 갈아 입었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경기의 각 관아에서 원소(園所)의 제물을 전혀 차리지 않는다고 하니, 감사 이명(李溟)에게 하유하여 본관으로 하여금 준비되는대로 간략하게나마 제사를 지내어 궐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군인을 많이 정하여 수호하도록 하라."하였다. 또 이르기를, "이런 시기에 다담(茶啖)은 반드시 민폐가 되니, 각 관아로 하여금 마련하지 말도록 하라."하고, 저녁에 통진(通津)에 행차하였다.

【영인본】34책 165면 【분류】*왕실-종사(宗社)/*왕실-의식(儀式)

18)쌀의 운송 · 강도의 방비 등에 대한 논의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1월 27일 을미 3번째기사

비국이 아뢰기를, "경창의 쌀을 운반하는 일은 이미 유림(柳林)에게 분부하였으나 유림이 임진을 방어하라는 분부를 받았기 때문에 미처 주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검사 김자점으로 하여금 강도에 있는 선박을 재량껏 발동하게 하고 겸하여 본부의 초군(哨軍) 5백명을 주어서 급급히 운송해 들여가도록 하소서. 그리고 권도(權濤) · 송상인(宋象仁) · 이경증(李景曾) 세 사람을 독운어사로 차임하여 경상 · 전라 · 충청 등의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기한을 정해 운송해 들여가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김자점이 강도에서 와서 배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형세는 어떠한가?"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산하(山河)는 비록 아름다우나 수비가 몹시 허술합니다.

통진(通津) · 김포(金浦) · 안산(安山)과 강화는 입술과 이처럼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데 그 고을의 군병들이 모두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니 잘 된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적들은 모두 요령(遼寧) · 심양(瀋陽)에 오래 있던 병졸들이니 필시 수전(水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들을 감당하겠는가?" 하였다. 이정구는 아뢰기를, "임진년에 왜선들도 밟을 붙이지 못했는데 더구나 이들 적이겠습니까."하였다.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평산(平山) · 개성부(開城府)의 백성들이 장차 살륙을 당할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김자점이 아뢰기를, "그 백성들을 강도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도로 데려왔다가는 장차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강에 있는 선박을 수습하여 경창의 쌀을 운송하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군병들을 휴식시키고자 한다."하였다. 홍서봉(洪瑞鳳)이 아뢰기를, "상께서 강을 건너셔야 일이 이에 성취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건너소서. 기왕에 도성을 떠나셨는데 여기에 며칠 머문다 하여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하고, 이정구가 아뢰기를, "홍서봉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군마(軍馬)를 휴식시키고자 할 따름이다."하였다.

【영인본】34책 165면 【분류】*재정(財政)/*교통-수운(水運)/*왕실-종사(宗社)

19)이성신을 제용감 참봉으로 삼다

ㅇ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1월 27일 을미 4번째기사

이성신(李省身)을 제용감 참봉으로 삼았는데, 이는 상이 김포(金浦)에 이르렀을 때 이성신이 어가 앞에서 시사를 진언하였기 때문에 이런 분부를 한 것이다.

【영인본】34책 16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20)강화에서 과거를 실시하여 본부의 유생들을 위로하다

ㅇ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2월 17일 갑인 5번째기사

강화에서 과거를 실시하여 본부의 유생들을 위로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갑자년에 공주에서 정시(庭試)를 보일 때에 호종한 유생도 응시하도록 허락하였는가"하였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그때 호종한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으나 한수 이남의 유생에 대해서는 아울러 응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수효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듣자니 이 강화부는 유학(儒學)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출방(出榜) 할 때 모양이 이루어지기 어려울까 염려스러우니 호종한 유생도 응시하도록 허락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호종한 유생은 응시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통진(通津)·교동(喬桐) 등지의 고을 사람들은 응시하도록 허락하라."하였다.

【영인본】34책 175면 【분류】*인사-선발(選拔)

21)강화유생 한담이 외향에서 응시한 사람 중 허색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상소하다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3월 24일 신묘 5번째기사

강화유생 한담이 상소하기를, "3향(三鄕)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유래입니다. 이탁(李濯)은 양천(陽川) 사람으로서 통진(通津)에서 아내를 맞아왔는데 아내의 고향에서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한 후에 감히 상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방에 붙은 세 사람도 모두 외향에서 응시를 하였는데 유독 허색(許濇)만을 지적하여 그르다 하여 존삭(存削)을 갖게 하지 아니하니 매우 애매하고 억울한 일입니다."하였는데, 임을 예조에 내려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여 드디어 그대로 두게 하였다.

【영인본】34책 187면 【분류】*사법(司法)/*인사-관리(管理)

22)대가가 행궁을 출발하여 갑곶을 건너 통진에 머무르다

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4월 10일 병오 1번째기사

대가(大駕)가 행궁(行宮)을 출발하여 갑곶(甲串)을 건너 저녁에 통진(通津)에서 머물렀다.

【영인본】34책 193면 【분류】*왕실-종사(宗社)

23)대가가 통진을 출발하여 김포에 이르니 유학 한숙일이 치욕을 잊지 말도록 아뢰다

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4월 11일 정미 1번째기사

대가가 통진을 출발하여 김포(金浦)에 이르렀다. 유학(幼學) 한숙일(韓肅一)이 대가 앞에 나와 진언(進言)하기를,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마음을 가다듬어 강화(江華)의 치욕을 잊지 마소서."하니, 상이 술을 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34책 193면 【분류】*왕실-종사(宗社)/*왕실-사급(賜給)/*정론-정론(政論)

24)김포를 출발하여 육경원을 참배하여 현령 최규에게 상주고 양천에 머무르다

ㄷ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4월 11일 정미 2번째기사

상이 김포를 출발하여 드디어 육경원(毓慶園)으로 가서 재실에 들어가 담복(淡服)으로 갈아입고 참배한 다음 이어 육경원을 봉심(奉審)하고서 재실로 돌아왔다. 하교하기를, "육경원의 산지(山地)를 가려 정한 뒤로 현령(縣令) 최규(崔珪)가 원에 관계된 모든 일을 성심으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항상 가상하게 여겼다. 오늘 또 이곳에 이르니 병란을 겪은 뒤라서 슬픈 감회를 억제할 수 없다. 현령 최규에게 숙마 한 필을 주어 나의 뜻을 표하도록 하라."하였다. 이날 저녁에 상이 원소(園所)를 출발하여 양천(陽川)에서 머물렀다.

【영인본】34책 193면 【분류】*왕실-종사(宗社)/*왕실-궁관(宮官)/*왕실-사급(賜給)

25)흥경원 천장 때 공이 있던 신하들을 시상하다

인조 17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9월 16일 기묘 3번째기사

흥경원(興慶園) 천장(遷葬) 때 배행(陪行)한 좌의정 오윤겸(吳允謙)은 안구마(鞍具馬) 1필을 하사하고, 승지 김상(金尙), 대장 김자점(金自點)·유몽룡(劉夢龍), 감사 남이웅(南以雄)은 반숙마(半熟馬) 1필씩을 하사하고, 위장 이흥국(李興國), 차사원(差使員) 최유해(崔有海) 등은 아마(兒馬) 1필씩을 하사하고,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 김상용(金尙容), 지문제술관(誌文製述官) 이정구, 표석서사관(標石書寫官) 신익성(申翊聖), 행장제술관(行狀製述官) 이식(李植)에게는 숙마 1필씩을 하사하고, 종사관 양수진(楊秀津), 초관(哨官) 문건기(文建基), 봉백관(奉帛官) 심경구(沈景龜)·강세웅(姜世雄), 예모관(禮貌官) 장서린(張瑞麟)·여문창(呂文昌), 배설관(排設官) 이자·이립·유면중(兪勉曾) 등에게는 모두 한 자급씩 가자하되 그 중에 자궁(資窮)된 자는 대가(代加)하게 하였다.

지문서사관(誌文書寫官) 오준(吳竣), 현궁봉표관(玄宮封標官) 김여추(金汝秋)에게는 한 자급 가자해 주고, 김포현령 최규(崔珪)는 전후 예장 때 공로가 많다는 것으로 한 자급씩 가자해 주고, 여재관 이의제(李宜弟)·배명순(裵命純), 식재관(拭梓官) 조극선(趙克善)은 모두 직급을 올려서 서용하게 하고, 내관 박충립(朴忠立)·이대춘(李大春)은 부장궁(不粧弓) 1장을 주되 이미 상을 주었던 자에게는 중복해서 주지 말라 명하였다.

【영인본】34책 226면 【분류】*인사-관리(管理)/*왕실-시급(賜給)/*왕실-의식(儀式)

26)사헌부에서 산릉역 관계자를 시상할 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 인조 17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 7년) 9월 19일 임오 2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도감낭청(都監郎廳) 김어추(金汝秋)는 5품의 음관(蔭官)으로서 갑자기 당상관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산릉봉표관(山陵封標官)의 승급을 인용하여 전례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김포현령(金浦縣令) 최규(崔珪)는 수토관(守土官)으로서 작은 공로가 있었을 뿐입니다. 오준(吳竣) 역시 서사관(書寫官)인데 자급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아울러 개정하소서."하고, 여러난 논하였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34책 227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관리(管理)/*왕실-의식(儀式)

27)통진 · 김포 · 부평 · 인천 · 풍덕의 군병을 강화에 예속시키되 조련은 각 고을의 장관이 시키게 하다

: 인조 18권, 6년(1628 무진/명 천계(天啓) 8년) 2월 24일 병진 1번째기사

비국이 아뢰기를, "강화유수 신감(申鑑)의 치계에 의하면 '통진(通津) · 김포(金浦) · 부평(富平) · 인천(仁川) · 풍덕(豊德) 등 고을의 군병을 모두 본부(本府)에 예속시켜 독감이 조련시키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체신(體臣)이 총융사(摠戎使)와 이미 의논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단지 품하여 시행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신감의 의견도 이와 상부되니 이에 의거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고을은 모두 큰강에 가로막혀 있는데 예속시킨 뒤에 조련하는 일로 늘상 소집할 경우, 강을 건너 왕래하게 되어 군사들의 원망과 고통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각 고을의 장관(將官)들로 하여금 각자 조련시키게 하고 강화의 중군(中軍)이 농한기에 순찰하면서 검칙하고 교련시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관과 군졸들이 통속되어 있는 장수를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급할 때 조발하여 쓰는 데에도 불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총융사와 강화 유수에게 행회(行會)하소서."하였다. 상이 따랐다.

【영인본】34책 260면 【분류】*군사-군정(軍政)

28)사헌부가 다시 죽은 한준겸에게 주는 녹봉에 대해 아뢰다

· 인조 19권, 6년(1628 무진/명 천계(天啓) 8년) 11월 7일 갑자 1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고 영돈녕부사 한준겸에게 지급하는 녹을 환수하는 일로 매일 논열하였는데도, 성상께서는 전례가 없지 않다느니 너무 심한 논의를 속히 중지하라느니 하교하시니, 신들은 삼가 의혹스럽습니다.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심강(沈鋼)의 고사(故事)는, 3년이 지나기 전 궤연이 통진(通津)에 있었을 적에 매월 초하루가 되면 으레 내수사에서 제수(祭需)를 실어 보낸 것일 뿐이었지 생시의 직에 따라 그대로 녹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혼조(昏朝) 때에 유자신(柳自新)의 집에 녹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생시의 녹을 준 것이 아니고 단지 그의 아내인 정씨(鄭氏) 부부인(府夫人)의 녹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고증할 수는 없으나 '제수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쌀과 콩을 하사하라.' 고 한다면, 어찌 명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시의 관직에 따라 본과(本科)의 녹을 주는 것은 너무나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고집할 일이 아닌데 이와 같이 계속 소란스럽게 하니, 국모(國母) 대접이 너무 야박하다고 할 만하다."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고 영돈녕부사 한준겸의 품록(品祿)을 정월부터는 해조로 하여금 제급(題給)하지 말게 하고, 대간의 계사에 따라 매월 쌀과 콩 10석을 주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34책 304면 【분류】*정론-간쟁(諫諍)/*재정-국용(國用)/*왕실-비빈(妃嬪)

29)이조가 역적 임경사가 살던 고을에 대한 강등 문제를 아뢰다

· 인조 20권, 7년(1629 기사/명 숭정(崇禎) 2년) 5월 8일 임진 2번째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역적 임경사(任慶思) 등이 살던 삭령(朔寧)·광주(廣州)·김포(金浦)·통진(通津) 등의 고을은 당연히 읍호(邑號)를 강등해야겠으나, 광주와 김포는 침원(陵園)이 있는 곳이어서 강등하기가 미안하니 종전 예대로 수령만을 파직시키고, 삭령은 강등하고 통진은 혁파하소서."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그까짓 조무래기 역적들 때문에 고을을 혁파하고 수령을 파직시킨다는 것은 자못 타당치 못한 일이다. 모두 혁파하지 말아 백성들의 폐단을 없애라."하였다.

【영인본】34책 328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탄핵(彈劾)

30)서전을 강하고 나서 심열에게 진휼의 결과를 묻다

인조 20권, 7년(1629 기사/명 숭정(崇禎) 2년) 윤4월 19일 갑술 1번째기사

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상이 심열에게 이르기를, "경이 직접 가서 진휼을 하였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알 것이다. 모두 진달하라."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신이 보았을 때 일터에 혹 도시락을 지참한 자가 있었는데 그 도시락을 가져다 보았더니 모두가 초식일 뿐 쌀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범중엄(范仲淹)이 오매초(烏昧草)를 올리면서 6궁(宮)에 돌려 보일 것을 바랐다고 하였는데, 신 역시 성상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곳곳이 모두 그렇던가?"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김포(金浦)·양주(楊州)·부평(富平) 등의 고을이 더 심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미년과 비교해 볼 때 어떻던가?"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쌀값은 기미년에 비하여 조금 나은 편이지만 백성들 굶주림은 그때보다 더했습니다."하였다.

【영인본】34책 325면 【분류】*왕실-경연(經筵)/*구휼(救恤)/*역사-고사(故事)

31)《서전》을 강한 후 참찬관 이경용이 교동에 가서 수군을 점검한 일에 대해 아뢰다

인조 22권, 8년(1630 경오/명 숭정(崇禎) 3년) 5월 14일 계사 1번째기사

상이 소대(召對)를 명하여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참찬관 이경용(李景容)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교동(喬桐)에 가서 수군을 점검하였는데, 연로에서 들은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통진(通津)과 강화(江華)는 토질이 비옥하여 농사가 꽤 잘된 편입니다마는, 교동은 돌밭으로 척박해서 오곡이 잘되지 않아 해마다 흉년으로 백성들이 가난에 굶주리고 있는데다 원수(元帥)가 병영을 개설하였으므로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바다에 익숙하기 때문에 격군(格軍)으로 뽑힌 자가 매우 많아 유독 피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도리상 넉넉하게 구휼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수군을 보고서 마음에 저어되는 바는 없었는가?"하자, 경용이 아뢰기를, "수군이 자못 정돈되었고 기치(旗幟)도 선명했습니다."하였다.

【영인본】34책 379면 【분류】*왕실-경연(經筵)/*농업-농작(農作)/*군사-특수군(特殊軍)

32)공조 판서 심열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인조 22권, 8년(1630 경오/명 숭정(崇禎) 3년) 5월 25일 갑진 1번째기사

공조판서 심열(沈悅)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광해 때에 청류(淸流)가 모두 유배되고 쫓겨났으나 심열만은 면하여 함경 감사로 제수되었는데, 은 술잔을 바쳤다는 비난이 있었다. 반정 뒤에 호조 판서가 되어 재무 관리를 잘 하였는데, 그 뒤에 지경연에 제수되자, 연평 부원군 이귀가 조정에서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논사(論思)하는 자리는 숙덕(宿德)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심열 같은 무리가 있어서야 되겠는가."하였으므로, 심열이 부끄러워 통진(通津)으로 물러가 살았다. 참찬으로 불렀으나 나오지 않자, 또 이 직책을 제수하였는데, 상소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영인본】34책 381면 【분류】*인사-임면(任免)/*인물(人物)

33)호조참판 이경직이 교동에 돌아와, 통진에서 증미를 상환하는 폐단에 대해 역설하다

인조 22권, 8년(1630 경 오/명 숭정(崇禎) 3년) 6월 4일 임자 2번째기사

그 전에 호조참판 이경직(李景稷)이 교동(喬桐)에서 돌아와, 통진(通津)에서 증미(拯米)를 상환하는 폐단에 대해 역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현감 박유관(朴由寬)이 다시 상소하여 감해 줄 것을 청하였다. 상이 그 소를 호조에 내렸는데, 호조가 원래의 수량인 6백 석 중에서 반을 감해 주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34책 382면 【분류】*재정-전세(田稅)/*정론-간쟁(諫諍)

34)강화부사 이시백이 승천진에 창고를 설치해 곡물 운송을 편리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 인조 24권, 9년(1631 신미/명 숭정(崇禎) 4년) 1월 25일 기해 1번째기사

강화부사 이시백(李時白)이 치계하기를, "본부는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거의 4만 석이나 되므로 빌려주거나 받아들일 때면 백성들이 너무 고역을 겪습니다. 처음에 통진(通津)과 김포(金浦) 두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봄에 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게 하였으나 두 고을에서는 또 자기들만 고역을 치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천진(昇天津)가에 창고를 하나 더 설치한 뒤 풍덕(豐德)과 교하(交河)의 백성으로 하여금 통진과 김포의 두 고을과 더불어 빌려주고 받아들이는 일을 같이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하였는데, 묘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34책 412면 【분류】*정론-정론(政論)/*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재정-창고(倉庫)

35)경기도의 강화 · 교동 · 통진 등 10읍에 우박이 내리다

: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 숭정(崇禎) 4년) 9월 23일 갑오 1번째기사

경기도의 강화 · 교동(喬桐) · 통진(通津) · 김포(金浦) · 교하(交河) · 부평(富平) · 양천(陽川) · 인천 · 금천(衿川) · 양지(陽智) 등 10읍에 우박이 크게 내렸다.

【영인본】34책 443면 【분류】*과학-천기(天氣)

36)경릉과 창릉이 있는 김포를 군으로 승격시키다

: 인조 26권, 10년(1632 임신/명 숭정(崇禎) 5년) 5월 8일 을사 1번째기사

김포(金浦)를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성종 2년 고양현(高陽縣)에 경릉(敬陵)과 창릉(昌陵)의 두 능이 있기 때문에 군으로 승격시켰었으므로 김포도 이 전례를 따른 것이다.

【영인본】34책 48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왕실-종사(宗社)

37)헌부가 의식을 잘못한 국장 도감 관원과 술마신 배종 신하를 탄핵하다

인조 27권, 10년(1632 임신/명 숭정(崇禎) 5년) 10월 11일 을해 1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우주(虞主)를 혼전(魂殿)으로 봉안할 때에 소여(小輿)가 문지방과 맞지 아니하여 궁위령이 손으로 받들고 들어갔습니다. 의식을 미리 연습할 때에 어떻게 하였기에 높낮이를 헤아려보지도 않고 이렇게 신수함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 게으르고 소홀함이 대단합니다.

국장 도감 도청 및 해당 낭청과 숭전색을 모두 파직하소서."하였는데, 연속 아뢰었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산(因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침(仙寢)이 장차 닫히게 되었으니, 무릇 신민(臣民)에게 있어서 모두 부모를 여읜 듯한 슬픔이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종(陪從)한 신하들이 술을 실컷 마시고 흠뻑 취하여 혹은 도감(都監)의 임무를 살피지 않기도 하고, 혹은 술주정을 하여 재신(宰臣)을 욕하기도 하며, 혹은 술에 취해서 부축하여 말에 오른 자도 있고, 혹은 술을 마련하여 함께 취한 자도 있어, 예에 어긋나고 위의가 상실되어도 전혀 단속하지 않아 보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의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부사직(副司直) 이행원(李行遠), 통진현감(通津縣監) 정백형(鄭百亨), 금양위(錦陽尉) 박미, 부평부사(富平府使) 한회일(韓會一)을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못하도록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모두 우선 추고부터 하라."하였다.

【영인본】34책 501면 【분류】*정론-간쟁(諫爭)/*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왕실-의식(儀式)

38)강화도 유수 이시백이 회장관에게 욕을 먹은 것을 이유로 삭탈 관직을 청하다

- 인조 27권, 10년(1632 임신/명 숭정(崇禎) 5년) 10월 12일 병자 3번째기사

강화부 유수 이시백(李時白)이 상소하기를, "신이 회장관(會葬官)으로서 모시고 산릉(山陵)에 가다가 마침 통진현감(通津縣監) 정백형(鄭百亨)을 만났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앉은 좌석 중에서 신을 욕하고 심지어는 어버이의 잘못까지 거론하여 차마 듣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일신상에만 그치면 도리에 거스른 일이 닥치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의 불초함으로 연유하여 욕이 늙은 아버지에게까지 미쳤으니, 어찌 모욕을 참고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빨리 명하여 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다 알았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책을 살피도록 하라."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정백형의 일은 지극히 놀라우니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라."하였다.

【영인본】34책 501면 【분류】*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왕실-의식(儀式)

39)김포현 사람이 2남 1녀를 낳자 쌀을 하사하다

- 인조 27권, 10년(1632 임신/명 숭정(崇禎) 5년) 10월 30일 갑오 2번째기사

김포현(金浦縣) 사람으로 한 번 분만에 2남 1녀를 낳은 이가 있자, 상이 본도(本道)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쌀을 하사하도록 하였다.

【영인본】34책 504면 【분류】*왕실-사급(賜給)/*호구-호구(戶口)

40)경기의 강화부와 통진현에 지진이 발생하다

- 인조 28권, 11년(1633 계유/명 숭정(崇禎) 6년) 9월 15일 갑진 2번째기사

경기의 강화부(江華府)와 통진현(通津縣)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영인본】34책 533면 【분류】*과학-지학(地學)

41)정원이 이진행의 말로 신주에 비복이 올라 탄 일이 없음을 아뢰다

인조 35권, 15년(1637 정축/명 숭정(崇禎) 10년) 12월 14일 무신 2번째기사

정원이 대간에게 배척당하였다 하여 대죄하니, 답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또 이 일은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곧 그때에 시위한 관원을 불러 누구의 종이 어느 곳부터 타고 왔는지, 정상을 상세히 물어서 아뢰라."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종묘봉사(宗廟奉事) 지봉수(池鳳遂)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위하였으나 바야흐로 영남(嶺南)에 있으므로, 곧 사직참봉(社稷參奉) 이진행(李震行)을 불러서 물었더니 '정월 29일에 지봉수와 함께 윤방(尹昉)을 따라 묘사의 신주를 받들고 강도를 떠났는데, 다 걸어 갔으므로 이날 겨우 갑곶(甲串)에 이르러 머물러 자고, 그 이튿날에 통진(通津)에 이르니 청인이 다섯 필의 말을 주므로 드디어 세 필에는 묘사의 신주를 모시고 한 필에는 짐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천일(天日)이 위에 계신데 어찌 종이 걸터앉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삼전도(三田渡)에 이르러 신주를 실은 말에다 양식을 더 실으려 하였으나, 조문수(趙文秀)가 보고서 말렸습니다. 걸터앉아 갔다는 말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실로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중죄를 받더라도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하였다.

【영인본】34책 712면 【분류】*인사-관리(管理)/*왕실-종사(宗社)/*사법-치안(治安)

42)예조가 장릉의 지방 목패에 대해 계하다

- 인조 38권, 17년(1639 기묘/명 숭정(崇禎) 12년) 3월 30일 정해 4번째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장릉참봉(章陵參奉)이 능 위 혼유석(魂遊石) 사이에서 목패(木牌)를 얻어 본조에 봉해 보내왔는데, 이는 익명서(匿名書)입니다. 마땅히 버려두고 묻지 않아야 하나, 능 위의 변고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곧 열어 보았더니, 목패에 지방(紙榜) 하나를 붙이고서 모두 김포군수(金浦郡守)가 백성을 학대한 정상을 쓰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토주(土主)를 모함하기 위하여 능 위에서 변을 만들어낸 것이니 더욱 통분스럽고 놀랍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우승지 허계(許啓)가 아뢰기를, "익명서를 서로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릉의 지방목패(紙榜木牌)를 참봉이 해조에 봉해 보낸 것은 이미 극히 부당한데, 해조가 또 본원(本院)에 올린 것은 법례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신이 감히 입계하지 못합니다. 해조에 도로 보내어 태워버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35책 54면 【분류】*왕실-종사(宗社)/*사법-치안(治安)

43)가뭄에 대해 조처하도록 우의정 강석기가 아뢰다

- 인조 41권, 18년(1640 경진/명 숭정(崇禎) 13년) 8월 16일 을축 1번째기사

우의정 강석기가 아뢰기를, "신이 능묘를 봉심하는 길에 양천(陽川)·김포(金浦)·부평(富平)·금천(衿川) 등 네 고을의 지경을 거쳐오면서 서리가 내려 곡식이 피해를 입은 참상을 보고 매우 가엾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 심은 곡식은 비가 온 뒤에 비로소 소생했으나, 이삭이 패기만 하고 결실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말라 버렸으니, 앞으로의 농사 작황은 이미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변통, 조처하여 백성들이 굶어죽거나 떠돌아다니게 되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받아들였다.

【영인본】35책 97면【분류】*과학-천기(天氣)/*농업-농작(農作)/*구휼(救恤)

44)비국이 강도의 쌀 3백 석으로 부평 등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것을 청하다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 순치(順治) 3년) 3월 18일 을축 2번째기사

비국이 강도(江都)의 쌀 3백 석으로 부평(富平)·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교하(交河)·인천(仁川) 등 고을의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구제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영인본】35책 268면 【분류】*구휼(救恤)

45)경기의 부평·안산에 해일이, 양주·이천 일대에 우박이 내리다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청 순치(順治) 4년) 8월 11일 기묘 1번째기사

7월 2일에 경기의 부평(富平)·안산(安山)·김포(金浦) 등 여러 고을에 해일이 일어났고, 7월 27일에는 경기의 양주(楊州)·이천(利川)·여주(驪州)·양근(陽根)·지평(砥平) 등 여러 고을에 우박이 많이 내렸다.

【영인본】35책 307면 【분류】*과학-천기(天氣)/*과학-지학(地學)

46)홍처윤·이형익·이석룡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 순치(順治) 5년) 1월 6일 임인 2번째기사

홍처윤(洪處尹)을 정언으로 삼았다. 이형익(李馨益)을 김포군수(金浦郡守)로, 이석룡(李碩龍)을 괴산군수(槐山郡守)로 삼도록 특별히 명하였는데, 석룡은 곧 고변(告變)한 사람이다.

【영인본】35책 31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47)경기의 김포 · 장단 등에 우박이, 부평부에 벼락이 쳐서 김류라는 사람이 죽다

ㄴ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 순치(順治) 5년) 4월 16일 경술 1번째기사

경기의 김포(金浦) · 장단(長湍) · 안성(安城) · 금천(衿川) · 양천(陽川)에 우박이 내렸다. 부평부(富平府)에는 우박이 내리고 크게 천둥이 쳤는데, 그 고을 사람인 충의위(忠義衛) 김류(金瑠)가 벼락맞아 죽었다.

【영인본】35책 324면 【분류】*과학-천기(天氣)

48)경기의 가평 등 고을에 큰비로 제방이 무너지고 곡식이 손상되다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 순치(順治) 5년) 7월 9일 임신 1번째기사

경기의 가평(加平) · 안산(安山) · 음죽(陰竹) · 고양(高陽) · 김포(金浦) 등의 고을에 연일 큰비가 쏟아져 냇물이 넘쳐 제방이 무너지고 곡식이 손상되었다.

【영인본】35책 327면 【분류】*과학-천기(天氣)

49)동부승지 이성신의 군사에 대한 상소

ㄴ 인조 36권, 16년(1638 무인/명 숭정(崇禎) 11년) 1월 18일 임오 1번째기사

50)전 예조판서 조익의 탄핵을 변론한 병조 판서 이시백의 상소문

ㄴ 인조 37권, 16년(1638 무인/명 숭정(崇禎) 11년) 12월 30일 무오 2번째기사

51)인조대왕 묘지문[誌文]

52)인조대왕 행장(行狀)

16. 효종실록

1)비변사가 통진현 송도 어장의 본현 귀속, 가평 시장의 혁파를 아뢰다

효종 8권, 3년(1652 임진/청 순치(順治) 9년) 1월 16일 기축 1번째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의 계문을 보건대, 통진현(通津縣)의 송도(松島) 어장이 병술년부터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집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본현은 한 군데도 물고기를 잡을 곳이 없다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본현에 도로 소속시키도록 하소서.

가평군(加平郡)은 험한 산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장(柴場)으로 일컬어지는 곳을 나누어 점유하여 성안(成案)한 곳이 네 군데나 됩니다. 내수사에 소속된 곳이야 가벼이 의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궁가(宮家)에서 입안(立案)한 곳은 모두 혁파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통진은 해변 마을인데 고기잡을 곳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은 말이니, 혁파하지 말라. 가평의 시장도 갑자기 혁파하기 어렵다. 본군에 있는 김세룡(金世龍)의 처의 시장은 도로 본군에 소속시키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35책 527면 【분류】*왕실-종친(宗親)/*농업-임업(林業)/*수산업-어업(漁業)/*재정-상공(上供)/*재정-국용(國用)

2)경기감사 이시매 · 김포군수 심관 등에게 물건을 내려주고 치하하다

효종 15권, 6년(1655 을미/청 순치(順治) 12년) 9월 28일 기유 2번째기사

경기감사 이시매에게 호피를 하사하고, 김포군수 심관(沈悺)과 능참봉 두 사람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36책 30면 【분류】*왕실-행행(行幸)/*왕실-사급(賜給)

17. 현종실록

1)집의 목겸선과 장령 윤비경이 통진에 신설한 해량을 궁노가 불법으로 차지하고 침탈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많다고 아뢰다

ⓒ 현종 3권, 1년(1660 경자/청 순치(順治) 17년) 12월 26일 정미 1번째기사

집의 목겸선(睦兼善)과 장령 윤비경(尹飛卿)이 아뢰기를, "통진(通津)에 신설한 해량(蟹梁) 2개소는 수진궁(壽進宮)이 해조로부터 절수(折受)받은 일이 없는데, 궁노가 또 불법으로 차지하고 멋대로 침탈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많습니다. 해조에서 복계(覆啓) 한 대로 속히 새로 선치한 해량을 혁파하고 폐단을 일으킨 궁노를 법에 따라 다스리소서.

신들이 들으니,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의 선척은 4척을 규정 숫자로 하여 이 이상은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계하하여 이미 전교가 있었는데, 내수사에서 여러 달 덮어 두고 즉시 공조에 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컨대 내수사 관원은 파직시키고 선척 수는 전일의 전교에 따라 정한 숫자대로 시행하소서."하였는데,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고 해량에 대한 일은 특명으로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현부가 또 "황해 병사 이인하(李仁夏)가 군사를 뽑아 숯을 구우면서 수량을 부족하게 운반해 오는 자에게 징포(正布)를 징수해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라고 논계하니, 상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오래 지나서야 따랐다.

【영인본】36책 288면 【분류】*군사-군역(軍役)/*청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왕실-종친(宗親)/*재정-상공(上供)

2)호조가 통진의 해량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아뢰니 통진현감 이숙을 파출하라고 명하다

현종 4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1월 20일 경오 1번째기사

호조가 통진(通津)의 해량(蟹梁)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첨부하여 아뢰니 상이 해조에 명하여 거짓으로 호소한 궁노를 다스리라 하고, 또 통진현감 이숙을 파출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숙은 일을 경솔히 처리한 잘못은 있으나 궁노가 이미 죄를 받고 있는데 이숙이 또 궁노의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직된다면 처치를 중도에 맞게 한다는 도리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 듯합니다."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인데 어찌 불만족한 점이 있겠는가."하였다.

【영인본】36책 290면 【분류】*사법-재판(裁判)/*사법-탄핵(彈劾)/*인사-임면(任免)/*신분-천인(賤人)

3)국가의 미곡발매 등에 대해 의논하다

○ 현종 4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1월 23일 계유 1번째기사

상이 흥정당에서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중의 서민들은 지금 한창 식량의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미곡을 발매(發賣)하여 진휼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정사입니다. 다만 값이 헐하고 미곡이 많아서 다투는 자들이 많아 도리어 번잡하게 몰려드는 폐단이 있고, 시골 사람들은 국가에서 미곡을 발매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쌀을 싣고 도성에 들어오지 않아 백성들이 도리어 그 이익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뭇 의논이 모두들 '당분간 발매를 중지하고 다시 자세히 헤아려서 온당한 방책을 강구한 뒤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발매한 미곡이 몇 석이나 되는가?"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매일 1백석씩 방출하니 오늘로 8백석이 됩니다."하고, 호조판서 허적은 아뢰기를, "서울의 시장에는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가 전혀 없는데, 지금 정지한다면 편의에 따라 변통하는 즈음에 필시 5, 6일은 소요될 것이니 그 동안에 먹을 식량을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얻겠습니까."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쌀 시장에서 발매할 쌀을 대출받아 사사로이 화매(和賣)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고, 병조판서 홍명하가 아뢰기를, "호조로 하여금 이 일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한다면 반드시 잘 조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호조판서는 병이 있어 심신이 피로한데 어찌 또 이 일을 책임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혜청과 비국의 낭관 5, 6원에게 분정(分定)하여 각각 1개소씩 맡아서 단속하게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오부(五部)에 각각 5백석씩 나누어 별도로 5개소를 설치하고 5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발매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이조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5일마다 한 차례씩 발매하는 법 역시 불편합니다. 경중의 기민들은 하루하루 매매하여 명맥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5일 동안을 견디겠습니까. 날마다 5부에서 한 장소씩 설치하여 발매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하니, 상이 어영청미(御營廳米) 2백석을 시중에 나누어 주어 복설(復設) 문제를 강구하는 동안 사사로 매매하게 하였다.

조복양(趙復陽)과 유계(兪棨)가 홍명하의 차자 중에 '돌을 타서 이익을 꾀했다.' 는 말이 있다고 하여 잇달아 소를 올려 사면을 청하니, 상이 유계와 조복양에게

이것을 개의하지 말고 협심하여 국사를 의논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경억(李慶億)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어, 통진현감(通津縣監) 이숙을 특별히 파직시키라고 한 명을 다시 거둘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이러하니 이숙은 파직시키지 말고 추고만 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지평 정중휘(鄭重徽)가 연계(連啓)하여 군기 침정이 갑옷제조를 감독했다고 해서 자급을 올려 주기까지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니 새로 내린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했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영인본】36책 290면【분류】*왕실-국왕(國王)/*구휼(救恤)/*재정-창고(倉庫)/*정론-간쟁(諫諍)/*신분-천인(賤人)/*사법-탄핵(彈劾)/*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군사-전쟁(戰爭)

4)김포의 유학 이익현 등이 기아에 관한 일로 상소하여 죽음을 구제해 줄 것을 청하다

◎ 현종 4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4월 24일 계묘 3번째기사

김포(金浦)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이익현(李益賢) 등이 기아(飢餓)에 관한 일로 상소하여 죽음을 구제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이 사람들의 소가 본래 죽음을 구해보려는 나머지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나라에 체통이 없어지면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법이다. 수령이 백성의 산태를 파악하여 도신(道臣) 에게 보고하고 이에 도신이 계문하는 것이 원래의 체례(體例) 이다. 그런데, 지금 그만 이처럼 뛰어넘어 호소하다니, 매우 일이 부당하다. 그리고 정원이 봉입(捧入)한 것도 매우 타당치 못하다. 상소는 도로 내주고, 이 뒤로는 정원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도록 하라."

【영인본】36책 296면 【분류】*정론-정론(政論)/*구휼(救恤)

5)집의 오두인 등이 서원 현감 정기풍과 통진 현감 이익을 논핵하다

◎ 현종 5권, 3년(1662 임인/청 강희(康熙) 1년) 6월 24일 을축 1번째기사

집의 오두인(吳斗寅) 등이 논핵(論劾)하기를, "서원현감(西原縣監) 정기풍(鄭基豊)은 노쇠하여 극지(劇地)에 적합하지 않고, 통진현감(通津縣監) 이익(李翊)은 경악에 출입하던 신하로서 무단히 외방에 보임(補任)되었으니 정사(政事)의 체례(體例)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 체차시키소서."하고, 이어 정관(政官)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영인본】36책 338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

6)문묘 종사, 선신 포상, 언론, 경연 재개 등에 관한 진사 이영원의 상소

현종 6권, 3년(1662 임인/청 강희(康照) 1년) 11월 2일 임신 6번째기사

경기 김포(金浦)에 사는 진사 이영원(李榮元)이 상소하여, 이이(李珥)와 성혼(成渾) 두 신하를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할 것과,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 두 신하가 살고 있는 곳에 각각 몇 칸의 정사(精舍)를 짓게하여 종유(從遊)하는 선비들이 학업을 연마하는 곳으로 삼게 할 것과, 관원을 보내 김상용(金尙容)·홍명구(洪命耉)·정온(鄭蘊)·김상헌(金尙憲)·이상길(李尙吉)·이시직(李時稷)·심현 등에게 사제(賜祭)하고 그 후손들을 녹용(錄用)함으로써 충혼(忠魂)을 위로할 것과, 여섯 신하의 무덤에 봉식(封植)하고 더러 뇌제를 지낼 것과, 서필원(徐必遠)과 이지익(李之翼) 등 감언지사(敢言之士)의 기상을 북돋아 줄 것과, 날로 경연을 열고 친히 유신(儒臣)을 접하며 정심(正心)으로 근본을 삼을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그대의 진언(進言)을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영인본】36책 352면 【분류】*왕실-경연(經筵)/*정론-정론(政論)/*사상-유학(儒學)/*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인사-관리(管理)

7)경기 균전사의 보고에 따라 양전에 불성실한 수령들을 처벌하다

◦ 현종 6권, 4년(1663 계묘/청 강희(康熙) 2년) 2월 22일 신유 2번째기사

경기좌도 균전사(京畿左道均田使) 민정중(閔鼎重)이 매우 심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수령으로 금천현감(衿川縣監) 유익삼(柳益三)·광주부윤(廣州府尹) 김수흥(金壽興)·용인현령(龍仁縣令) 유탁연(柳卓然)·진위현령(振威縣令)·과천현감(果川縣監) 심억(沈億) 및 양근(楊根) 겸임 지평현감(砥平縣監) 이인석(李仁碩) 등 6읍(邑)의 수령을 초계(抄啓)하고, 우도 균전사 김시진(金始振)은 양주목사(楊州牧使) 정박(鄭樸)·장단부사(長湍府使) 이시징(李紳徵) 및 부평(富平)과 통진(通津)의 수령을 초계하였는데, 상이 일렀다. "양근·과천·양주 3읍의 수령을 잡아들여 죄상을 신문하라. 금천·광주·용인·장단 등 4읍의 수령은 본청(本廳)에 잡아들여 경중에 따라 견장(決杖)한 뒤 정직하게 조사 업무를 행하게 하라. 수원·진위의 수령은 우선 추고하라."사신은 논한다.

양전(量田)하는 목적은 민역(民役)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지금 원두표(元斗杓)가 등수(等數)를 너무 느슨하게 매겨 결부(結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달하여 등수의 다과(多寡)에 따라 수령의 수행능력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였다. 이에 수령된 자들이 명령대로 수행하여 죄벌을 면해보려는 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토품(土品)이 어떠한지는 묻지도 않고 오로지 등수를 올려 결부를 많이 늘리는 것만 일삼고 있으니,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과 비슷하게 되지 않겠는가. 두표는 입만 열면 백성에게 재앙을 끼치는 일만 골라서 말하는데, 사람이 어쩌면 이토록 한결같이 불인(不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경기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며 말하기를 "이 정승이 언제나 망하려는고. 이 정승이 망해야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고 하였다.

【영인본】36책 358면 【분류】*농업-양전(量田)/*사법-단핵(彈劾)/*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역사-편사(編史)

8)경기우도 암행 어사 여성제가 복명하여 선정을 한 유호연 등을 아뢰다

현종 9권, 5년(1664 갑진/청 강희(康熙) 3년) 11월 24일 신해 2번째기사

경기우도 암행어사 여성제(呂聖齊)가 복명하였다. 그 서계 가운데 수령으로서 잘 다스린 이는 김포군수 유호연(柳浩然), 고양군수 김중일(金重鎰), 양천현령 윤게, 마전군수 허질(許秩), 인천 전 부사 이단상(李端相)이었다. 상이 허질은 가자하고 유호연 · 김중일 · 윤게 · 이단상은 모두 숙마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영인본】36책 441면 【분류】*인사-관리(管理)/*왕실-사급(賜給)/*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9)경기 감사 김수흥이 장계하여 토포사를 총괄 지휘케 할 것을 아뢰다

현종 10권, 6년(1665 을사/청 강희(康熙) 4년) 2월 2일 기미 6번째기사

이때 경기 지방에 잇따라 흉년이 들어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10여명이나 혹 7, 8명씩 모여 숨어있으면서 재물과 곡식을 약탈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마음놓고 살지 못하였다. 이에 감사 김수흥이 장계하기를, "본도의 도적에 대한 걱정이 이와 같은데 토포사(討捕使)가 치우친 곳에 처해 있어 형세상 금하여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원(水原) · 장단(長湍) · 양주(楊州) · 죽산(竹山) · 파주(坡州) · 통진(通津) · 남양(南陽)과 같은 곳의 고을원은 혹 방어사를 겸임하거나 영장(營將)을 겸임합니다. 지금부터 정식을 만들어 방어사나 영장을 겸임한 수령으로 하여금 책략을 세워 모조리 체포하게 하되, 토포사가 총괄해 살피면서 신칙하게 한다면, 일이 착실해질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소서."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장계대로 시행하되, 감사로 하여금 일에 따라 지휘하게 하소서."하니, 따랐다.

【영인본】36책 450면 【분류】*사법-치안(治安)

10)강화의 세 진을 옮기고 육군을 나누어 주다

현종 11권, 7년(1666 병오 /청 강희(康熙) 5년) 2월 7일 무오 4번째기사

강화(江華)의 덕포진(德浦鎭)을 통진(通津)으로, 철곶진(鐵串鎭)을 풍덕(豊德)으로, 정포진(井浦鎭)을 교동(喬桐)으로 옮기고, 가까운 고을의 육군(陸軍) 3백 15인을 세 진(鎭)에 나누어 주었다.

【영인본】36책 497면 【분류】*군사-관방(關防)

11)통진현의 사비 사옥이 세 쌍둥이 딸을 낳다

현종 13권, 8년(1667 정미/청 강희(康熙) 6년) 3월 10일 갑신 5번째기사

통진현(通津縣)의 사비(私婢) 사옥(四玉)이 한 배에 세쌍둥이 딸을 낳았다. 두 딸은 각각 얼굴과 팔다리가 있었지만 두 배가 합쳐져서 하나였는데 곧바로 다 죽었다.

【영인본】36책 547면 【분류】*의약-의학(醫學)

12)안흥의 창고 설치, 서충립의 역, 구문치의 자급 개정 등을 의논하다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 강희(康熙) 8년) 1월 10일 갑진 1번째기사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제신들을 소대하고 《심경》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좌상 허적이 안흥(安興)에 창고를 설치하는 데 대한 세 가지 불편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뢰기를, "창고를 설치한 후에 부서지는 배가 더욱 많아질까 걱정입니다."하니, 상이 그 이유를 묻었다. 허적이 아뢰기를, "각 해에 부서진 배를 상고해 보면 봉상강(本上江)에서 부서지는 수가 많았지 안흥에서 부서진 수는 적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배를 일찍 띄우지 않아 경강(京江)에 올 때 쯤에는 매번 장마를 만나는데 배를 제어하지 못해 부서지게 됩니다. 지금 만약 새 창고에 봉납해 두었다가 다시 옮겨 실어 온다면, 반드시 절기가 늦어져 경강에서 부서지는 경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봉상강은 통진(通津)에 있다.

경강은 봉상강을 가리킨다.】 병관과 영상에게 자문하소서."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신이 정태화에게 물으니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다시 민정중에게 포구를 파면 편리한가에 대해 물고는, 주저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두 가지의 가부를 결정하는 동안에 인명만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년 동안 시험삼아 그 이해와 득실을 살펴보되, 전처럼 배가 부서지면 포구를 파도록 하라."하였다. 〈본문중략〉

【영인본】36책 607면 【분류】*인사-임면(任免)/*사법-단책(斷決)/*호구-호적(戶籍)/*왕실-경연(經筵)/*재정-창고(倉庫)/*교통-수운(水運)/*신분-천인(賤人)

13)김포유생 이만춘이 조헌의 서원 액호를 청하다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 강희(康熙) 8년) 3월 10일 계묘 9번째기사

김포(金浦)유생 이만춘(李萬春) 등이 상소하여,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의 서원 액호(書院額號)를 청하니, 상이 해조에 내렸는데, 후에 송준길의 말로 인하여 액호를 하사하였다.

【영인본】36책 620면 【분류】*정론-정론(政論)/*사상-유학(儒學)/*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14)송준길이 길재 · 김종직 · 제갈 무후의 사우에 사액을 청하다

◇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 강희(康熙) 8년) 3월 11일 갑진 2번째기사

송준길이 인동(仁同)의 길재(吉再), 밀양(密陽)의 김종직(金宗直), 김포(金浦)의 제갈무후(諸葛武侯)의 사우(祠宇)의 일을 진달하고 모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민시중(閔蓍重)이 남양 현감으로 있을 때 사우를 창건하고 제갈 무후와 호문정공(胡文定公)을 함께 배향하였으니, 대체로 주자(朱子)가 와룡강(臥龍岡)에 사우를 세운 뜻을 취한 것이다.

부사 윤계(尹棨)가 정축년의 난리에 사절하였다고 배향하여 사액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인동과 밀양 역시 일찍이 사액을 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데, 이때 일체로 시행하였다.

【영인본】36책 620면 【분류】*사상-유학(儒學)/*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15)경기 통진에 지진이 일어나다

◇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 강희(康熙) 9년) 윤2월 28일 을묘 4번째기사

경기 통진(通津)에서 이달 23일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본】36책 662면 【분류】*과학-지학(地學)

16)진휼 잘한 수령을 상주다

◇ 현종 19권, 12년(1671 신해/청 강희(康熙) 10년) 6월 17일 병신 3번째기사

경기감사 오정위(吳挺緯)가 도내에서 진휼을 잘한 수령을 보고하였는데, 음죽현감 이명빈(李明彬)에게는 숙마(熟馬)를, 포천현감 이형석(李馨錫)에게는 표리(表裏)를 하사하고 김포군수 강욱(姜頊)에게는 준직(准職)을 제수하였다. 그런데 강욱은 이미 준직을 거쳤으므로 별도로 상을 주었으면 하겠다고 허적이 아뢰니, 상이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36책 699면 【분류】*구휼(救恤)/*왕실-사급(賜給)/*인사-관리(管理)

17)대사간 이숙 등이 김포의 살인사건에 대해 아뢰다

현종 21권, 14년(1673 계축/청 강희(康熙) 12년) 8월 14일 신해 2번째기사

대사간 이숙, 사간 윤형성(尹衡聖), 헌납 어진익(魚震翼)이 아뢰기를, "김포사람 허징(許征)이 반노(叛奴)에게 해를 당하여 거의 죽었다가 소생되었고, 온 집안 식구가 거의 다 피살되었습니다. 포도대장 유혁연(柳赫然)이 비밀리 정읍현(井邑縣)에 공문을 보내어 반노(叛奴)를 잡아서 전주에 옮겨 가두었는데, 대략 이미 죄상을 자백하자 정읍향소(井邑鄕所) 유진형(柳晋亨) 등이 현(縣)을 혁파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워 영하(營下)에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옥사를 느긋이 해서 반노의 무리가 탈옥하여 달아나 5인이 도망하였는데 겨우 3인이 잡혔습니다. 마땅히 진작 계문하여 법대로 시행해야 했었는데 그때 감사가 도로 본현에 가두게 하였고, 진형 등이 공주(公州) 사람을 시켜 반노의 본래 주인이라고 자칭하여 송사의 단서를 야기하고 세월을 끌며 결단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듣는 자들이 놀라며 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해도(該道)로 하여금 반노를 기찰하여 잡아서 형률에 의해 처단하시고, 진형 및 형리·옥졸을 잡아 경옥(京獄)에 송치하여 각별히 엄형을 하시고 그때의 감사도 파직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나 감사의 파직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았다.

삼가 살피건대, 허징이 나그네로 떠돌면서 타인의 종을 협박하여 자기의 종이라고 하였으니, 죽인 자는 참으로 죽여야 하지만 그가 화를 만난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

유혁연이 망령되게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서둘러, 종이 주인을 시해한 것으로 다스려서 대계(臺啓)가 격발하게 만들고 마침내 강상의 옥사를 만들어 현을 혁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숙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에 있어서는 진실로 나무랄 것도 없지만 유혁연의 처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영인본】37책 44면 【분류】*사법-치안(治安)/*사법-탄핵(彈劾)/*윤리-강상(綱常)/*신분-천인(賤人)

19. 현종개수실록

1)집의 목겸선 등이 통진에 신설한 해량의 일로 아뢰다

현개 4권, 1년(1660 경자 /청 순치(順治) 17년) 12월 26일 정미 1번째기사

집의 목겸선(睦兼善) 등이 아뢰기를, "통진(通津)에 신설한 해량(鱟梁) 두 곳은 당초 수진궁(壽進宮)이 해조에게 절수받은 일이 없음에도, 궁노(宮奴)가 불법으로 점령하여 마음대로 침탈하며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조의 복계(覆啓)에 의거하여 신설한 해량을 속히 파기하고 작폐를 한 궁노는 법에 의하여 추문하여 다스리도록 하소서.

신들이 삼가 듣건대, 각 아문의 궁가 소속 배를 4척으로 한정하고 이 밖에 더 가질 수 없게 하도록 계하할 것을 이미 전교하였으나, 내수사가 그것을 여러 달째 덮어둔 채 공조에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내수사의 관원을 파직시키고 배는 종전 전교의 정수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따르지 않고 이르기를, "해량의 일은 이제 막 다시 조사토록 하였다. 어찌 꼭 그렇게 서둘러야만 되겠는가. 배 문제는 잘 처리하려 하였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하였다.

【영인본】37책 211면 【분류】*농업-전제(田制)/*신분-천인(賤人)/*사법(司法)/*재정-상공(上供)/*왕실-종친(宗親)/*왕실-사급(賜給)/*교통-수운(水運)

2)호조에서 통진해량에 대해 조사한 일을 가지고 복계하다

- 현개 5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1월 20일 경오 1번째기사

호조에서 통진해량(通津蟹梁)에 대해 조사한 일을 가지고 복계하였더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무소(誣訴)한 궁노(宮奴)를 추치(推治)하게 하고, 또 통진현감(通津縣監) 이숙을 파출하도록 명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숙에게는 비록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고 조심성없이 말을 구사한 잘못은 있지만, 그 본정을 추구하면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전후의 사핵에서 조금도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파출시키라는 명이 뜻밖에 나오니, 처치하는 일을 중도에 맞게 하는 방도에 부족함이 있는 듯싶습니다."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리상 당연한 바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하였다. 대개 고을 경계에는 민가의 해량이 많이 있었는데 이숙이 그것은 금하지 않고, 또 궁노를 꾸짖기를, "너희들이 문란을 일으키는 것이 혼조(昏朝)와 다름이 없다……."하였기 때문에 그런 분부를 하였던 것이다.

【영인본】37책 215면 【분류】*수산업-어업(漁業)/*사법-재판(裁判)/*신분-천인(賤人)

3)김포 유학 이익현 등이 기아의 상황을 상소하여 진술하다

- 현개 5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4월 24일 계묘 2번째기사

김포(金浦) 유학(幼學) 이익현(李益賢) 등이 기아(饑餓)의 상황을 상소하여 진술하고 죽음을 구제할 것을 간청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이들의 상소는 진실로 죽음을 구제하기에 급급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 나라에 체통이 없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수령은 민정을 모아 도신(道臣)에게 보고하고 도신은 이를 치계(馳啓)하여 알리는 것이 상례이다. 지금 이처럼 체계를 뛰어넘어 호소하였으니 일이 극히 부당하며, 정원이 이를 들인 것도 또한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 이 상소를 도로 내주라."

【영인본】37책 225면 【분류】*정론-정론(政論)/*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구휼(救恤)

4)정원에 이익현의 상소에 답하는 것으로 하교하다

ㄴ 현개 5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4월 24일 계묘 4번째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아침에 이익현(李益賢) 등의 상소 사연을 보았더니, 민생의 기곤(飢困)이 이미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 마음이 타는 듯하여 잠시도 편치 못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작해서 위급함을 구제하도록 하라."하였다. 그 날 정태화가 청대할 때에, 익현의 상소는 비록 매우 참월하지만 끝내 구휼하는 일이 없으면 성상의 체득한 인정(仁政)에 흠결이 있을까 두려우니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구제케 함으로써 백성의 바람에 위로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상이 이런 하교를 하게 된 것이다.

이때 수원(水原)·금천(衿川)·김포(金浦) 등의 기민(飢民)들이 비국(備局)에 와서 호소하여, 강도(江都)·남한(南漢)에서 옮겨온 곡식을 받기를 원하였다. 비국이 강도·남한 두 곳의 쌀 5천 석을 내어 경기 감사로 하여금 각읍에 나누어 진휼케 하기를 청하였다. 익현 등이 올라온 것은 미처 나누어 진휼하기 전이기 때문에 호조가 내려가 받아 먹게 하도록 청하였고, 상소한 80여 명에게 아울러 돌아갈 식량 1두씩을 지급하였다.

【영인본】37책 225면 【분류】*구휼(救恤)

5)헌부가 통진현감 이익을 체차하고 정관을 추고할 것을 아뢰다

ㄴ 현개 7권, 3년(1662 임인/청 강희(康熙) 1년) 6월 23일 갑자 5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통진현감(通津縣監) 이익(李翊)은 경연에 출입한 신하로서 외직에 전보해서는 안 됩니다. 체차하고 정관(政官)을 추고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37책 278면 【분류】*인사(人事)/*사법(司法)

6)사헌부가 전적 권진한을 본도가 형추하도록 청하다

현계 9권, 4년(1663 계묘/청 강희(康熙) 2년) 8월 13일 무신 3번째기사

전적(典籍) 권진한(權震翰)이 대각의 계청에 의하여 추고를 받게 되었는데, 3차에 걸쳐 이를 항거하였으므로 사헌부가 본도(本道)로 하여금 형추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추함(推緘)을 거역했다 하여 조정 관리를 외지에서 형추했던 전례가 있는가?"하니, 사헌부가 아뢰기를, "조정 관리로서 3차에 걸쳐 추함을 항거하면 서울에 있을 경우 직첩(職牒)을 환수하고 나와 추고를 받게 하며 형추를 아뢰어 청하고 나서 의금부로 이송하며, 외지에 있을 경우는 곧바로 형추할 것을 계문(啓聞)으로 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법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전부터 줄곧 써오던 법규입니다."하였는데, 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인견 때 대사헌 김수항이 구례가 그러하다고 아뢰었고, 영상 정태화도 아뢰기를, "신이 인조조(仁祖朝)에서 통진현감(通津縣監)으로 있었을 때 신의 신상과는 관계가 없는 추함이 있어 3차에 걸쳐 항거하였더니 헌부가 곧바로 본도로 하여금 형추를 하도록 청하였고 상은 특명으로 조율(照律)을 하게 하였습니다."하니, 상이 그제서야 그런 것으로 여겼다.

【영인본】3책 337면 【분류】*사법-탄핵(彈劾)/*사법-법제(法制)/*사법-행형(行刑)

7)조성보 · 이규령을 외직에 보임하고 비망기를 내려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다

◇ 현개 10권, 5년(1664 갑진/청 강희(康熙) 3년) 4월 18일 경술 1번째기사

정태화(鄭太和)를 내의원 도제조로, 이원정(李元禎)을 형조참의로, 정지화(鄭知和)를 형조참판으로, 맹주서(孟胄瑞)를 정언으로 삼았다. 이때에 전조(銓曹)에서 이규령(李奎齡)을 정언에, 조성보(趙聖輔)를 지평에, 조원기(趙遠期)를 통진현감(通津縣監)에 의망하였는데, 상이 그 의망을 쓰지 않고, 전 지평 이규령을 북청판관(北靑判官)에, 전 정언 조성보를 이성현감(利城縣監)에 특별히 제수하고는 당일 출발시켜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조원기(趙遠期)를 지평으로, 윤형성(尹衡聖)을 정언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상이 비망기를 내리기를, "근래 정사하는 모습을 보건대, 전관들이 사사로운 것을 따르는 것이 풍조를 이루고 있는데, 윤형성과 조성보의 일에서 더욱 사적인 당파만 비호하는 작태를 볼 수 있다. 전관들이 거리낌없이 행동하고 멋대로 권세를 쓰는 것이 요즈음보다 더 심한 때가 없어, 말하자니 한심스럽다.

당해 이조 당상과 낭청을 모두 우선 파직한 뒤 추고하라."하였다. 이때에 판서 김수항(金壽恒), 참판 민정중(閔鼎重), 좌랑 이민서(李敏敍)가 정청(政廳)에서 엄한 분부를 받고 물러나갔다. 정원에서, 정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조에 당상이 없다고 아뢰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판서를 차출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37책 377면 【분류】*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사법-탄핵(彈劾)

8)경기에 도적이 일어나 수원 등 방어사나 영장을 겸한 수령에게 잡게 하다

현개 12권, 6년(1665 을사/청 강희(康熙) 4년) 2월 2일 기미 6번째기사

이때 경기 지방에 잇따라 흉년이 들어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감사 김수흥이 장계하기를, "토포사가 치우친 곳에 처해 있어 형세상 금하여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원(水原)·장단(長湍)·양주(楊州)·죽산(竹山)·파주(坡州)·통진(通津)·남양(南陽)과 같은 고을에서 혹 방어사를 겸임하거나 영장(營將)을 겸임해왔으니 지금부터 정식으로 만들어 방어사나 영장을 겸임한 수령으로 하여금 책략을 세워 모조리 체포하게 하되, 토포사가 총괄해 살피면서 신칙하게 한다면, 일이 짜임새가 있을 것입니다."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장계대로 시행하되, 감사로 하여금 일에 따라 지휘하게 하소서."하니, 따랐다.

【영인본】37책 431면 【분류】*사법-치안(治安)/*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9)강화의 덕포진·철곶진·정포진을 옮기고 인근의 육군을 나누어 배치하다

현개 14권, 7년(1666 병오 /청 강희(康熙) 5년) 2월 7일 무오 3번째기사

강화(江華)의 덕포진(德浦鎭)을 통진(通津)으로, 철곶진(鐵串鎭)을 풍덕(豊德)으로, 정포진(井浦鎭)을 교동(喬桐)으로 옮기고, 가까운 고을의 육군(陸軍) 3백 15인을 세 진(鎭)에 나누어 주었다.

【영인본】37책 483면 【분류】*군사-관방(關防)/*군사-군정(軍政)/*군사-지방군(地方軍)

10)통진현의 사비가 한 배에 세 명의 여아를 낳다

현개 17권, 8년(1667 정미 /청 강희(康熙) 6년) 3월 10일 갑신 6번째기사

통진현(通津縣)의 사비(私婢)가 한 배에 세 명의 여아를 낳았다. 두 여아는 각각 얼굴과 팔다리가 있었지만 두 배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곧바로 다 죽었다.

【영인본】37책 552면 【분류】*호구(戶口)

11)좌참찬 송준길을 인견하여 온양 행차 때 포상할 것 등과 영릉의 봉심에 대하여 듣다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 강희(康熙) 8년) 3월 11일 갑진 1번째기사

상이 사관을 보내어 좌참찬 송준길에게 면유할 뜻을 전하였다. 양심합에 나아가 준길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본문중략〉

송준길이 또, 인동(仁同)의 길재(吉再), 밀양(密陽)의 김종직(金宗直), 김포(金浦)의 조헌(趙憲) 등의 서원과 남양(南陽)의 제갈무후(諸葛武侯)의 사우(祠宇)에 관한 일을 진달하고 모두 사액(賜額) 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처음에 민시중(閔蓍重)이 남양 현감으로 있을 때 사우를 창건하고 제갈무후와 호문정공(胡文定公)을 함께 배향하였으니, 대체로 주자(朱子)가 와룡강(臥龍岡)에 사우를 세운 뜻을 취한 것이었으며, 그곳 부사 윤계(尹棨)가 정축년의 난리에 사절하였다고 배향하여 사액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인동과 밀양·김포의 서원들도 역시 일찍이 사액을 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데, 이때 일체로 시행하였다.

【영인본】37책 659면 【분류】*인사-관리(管理)/*인사-임면(任免)/*역사-편사(編史)/*군사(軍事)/*왕실-행행(行幸)/*왕실-궁관(宮官)/*왕실-비빈(妃嬪)/*왕실-사급(賜給)/*왕실-의식(儀式)/*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군사(軍事)

12)백수증을 정려하다. 민성의 자손을 서용하게 하다

ㄱ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 강희(康熙) 9년) 윤2월 23일 경술 1번째기사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 및 여러 재상들을 인견하였다. 〈본문중략〉

이조판서 조복양이 아뢰기를, "통진(通津)의 사인(士人) 민성은 곧 여양군(驪陽君) 민인백(閔仁伯)의 아들입니다. 병자년 난리 때에 절의에 죽은 자가 12명이나 되는데도 민성 하나만 정표를 받았고 그 나머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을 사람들이, 증직하지 않은 것과 자손을 녹용하지 않은 것을 허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민성의 자손을 거두어 서용하라."하였다. 조복양이 또 아뢰기를, "고 참판 윤집은, 정릉중건청(貞陵重建廳) 당상으로 죽은 뒤에 가자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이러한 경우에는 으레 품계를 올려 증직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품계를 고쳐 추증(追贈) 하라."하였다.

【영인본】38책 14면 【분류】*왕실-행행(行幸)/*왕실-국왕(國王)/*윤리-강상(綱常)/*인물(人物)/*인사-관리(管理)

13)경기 통진현에 23일 지진이 발생하다

ㄱ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 강희(康熙) 9년) 윤2월 28일 을묘 3번째기사

경기 통진현(通津縣)에서 이달 23일에 지진이 있었다.

【영인본】38책 14면 【분류】*과학-지학(地學)

14)총융사 서필원이 경기 지형에 관해 아뢰다

현개 23권, 11년(1670 경술/청 강희(康熙) 9년) 12월 7일 경인 1번째기사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초복을 마치지 못했던 것은 끝마쳤다. 총융사 서필원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병영(兵營)을 옮길 일로 우러러 품의했었습니다.

경기의 고을에 나가서 지형(地形)을 살펴 보았더니, 인천(仁川) 소래산(蘇來山) 아래가 교장(敎場)을 설치할 만하였는데, 들으니 인평위(寅平尉)와 해숭위(海崇尉)의 둔장(屯庄)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본영에서 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평(富平)에 또 방영을 설치할 만한 묵혀둔 지역이 있었습니다.

통진(通津)과 남양(南陽) 두 병영을 이 두 지역으로 옮겨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서필원에게 이르기를, "자연도(紫燕島)에 가보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가서 보니, 그 지역은 둘레가 70리이고 땅이 기름졌으며 사방이 험난하여, 강도(江都)보다 나았습니다."하니, 상이 뒷날 도형을 그려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영인본】38책 44면 【분류】*왕실-행행(行幸)/*사법-형형(行刑)/*군사-군정(軍政)/*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15)경기감사 오정위가 진휼 잘한 수령을 보고하다

현개 24권, 12년(1671 신해/청 강희(康熙) 10년) 6월 17일 병신 4번째기사

경기감사 오정위(吳挺緯)가 도내에서 진휼을 잘한 수령을 보고하였는데, 음죽현감 이명빈(李明彬)에게는 숙마(熟馬)를, 포천현감 이형식(李馨植)에게는 표리(表裏)를 하사하고 김포군수 강욱(姜頊)에게는 준직(准職)을 제수하였다. 그런데 강욱은 이미 준직을 거쳤으므로 별도로 상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허적이 아뢰니, 상이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38책 67면 【분류】*인사-관리(管理)/*왕실-사급(賜給)

16)대사간 이숙 등이 법대로 집행하지 않은 감사에 대해 아뢰다

현개 27권, 14년(1673 계축/청 강희(康熙) 12년) 8월 14일 신해 3번째기사

대사간 이숙, 사간 윤형성, 헌납 어진익 등이 아뢰기를, "김포(金浦)에 사는 허징(許廷)이라는 사람이 반노(叛奴)에게 해를 당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고 일가족이 거의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포도대장 유혁연(柳赫然)이 비밀리에 정읍현(井邑縣)에 관문(關文)을 보내 반노를 체포하게 하고 전주(全州)로 이송해 수금한 뒤 대략 이미 자복(自服)을 받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읍의 향소(鄕所) 유진형(柳振亨) 등이 현을 혁파하는 폐해가 있게 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영하(營下)에 뇌물을 써 고의로 옥사(獄事)를 느슨하게 한 탓으로 반노의 무리들이 탈출하는 결과를 빚었고 도망자 5인 중에서 겨우 3인만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제때에 즉각 계문하며 법대로 집행해야 할 일인데 당시의 감사가 그저 본현에 도로 수감토록 하였습니다.

유진형 등이 공주(公州) 사람을 사주하여 스스로 반노의 주인이라고 칭하게 한 뒤에 송사(訟事)의 단서를 야기시켜 시간만 지연시킨 채 결말이 나지 않게 하였으므로 듣는 자들 모두가 놀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해도로 하여금 기찰(譏察)하여 반노를 잡게 하고 율(律)대로 적용하며 처단케 하소서. 그리고 진형 및 형리(刑吏) 옥졸(獄卒)은 경옥(京獄)에 잡아들여 각별히 엄하게 형신토록 하고, 당시 감사였던 오시수(吳始壽)는 파직하고 서용치 마소서."하니, 상이 따르고, 감사를 파직하는 일은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도승지 정익은 인재가 모자란 탓으로 외람되이 제수되어 물정이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판의금 조형(趙珩)은 유선(柔善)하다고 칭해지기는 하지만 본디 강과(剛果)한 면이 부족하니 옥사를 의논하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두 체차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형조판서 민희증(閔熙曾)은 강화유수(江華留守)로 있을 때 탐욕스럽고 잔단 짓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를 도살해 팔고 어부들을 침탈하면서 한 두 품의 이익을 모두 자신이 독점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열 마리의 소와 다섯 대의 수레를 서울 저택으로 갖춰 보내면서 기인(其人)의 시목(柴木)을 실어 보내고 고가(屈價)를 많이 받아내어 자기를 살찌울 밑천으로 삼았으므로 부(府)의 사람들 모두가 침을 뱉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하교하기를, "유선(柔善)한 것은 그다지 일에 해롭지 않다. 반드시 괴독(怪毒)한 뒤에야 일을 맡을 수 있는가. 정익의 일은 나도 모르게 놀라운 생각이 든다. 같은 패거리는 옹호하고 다른 쪽은 내치는

그대들의 뜻으로 논한다면 과연 그가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은 정말 매우 중오했던 것인데 지금 또 보게 되니, 나도 모르게 놀랍다."하였다.

【영인본】38책 155면 【분류】*정론-간쟁(諫諍)/*정론-정론(政論)/*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사법-행형(行刑)/*윤리-강상(綱常)/*신분-천인(賤人)/*왕실-국왕(國王)

17)홍문관 응교 심세정 등의 원기배양 · 사무를 줄임 · 구휼책에 대한 차자

현개 4권, 1년(1660 경자/청 순치(順治) 17년) 8월 3일 병술 2번째기사

18)부제학 유계 등이 구황책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현개 5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1월 4일 갑인 1번째기사

19)홍정당에 나아가니 영의정 정태화 · 우의정 원두표가 공사를 가지고 아뢰다

현개 5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1월 5일 을묘 2번째기사

20)홍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다

현개 5권, 2년(1661 신축/청 순치(順治) 18년) 1월 23일 계유 1번째기사

21)총융청 2번 장초군을 점호하여 광지영에 입직시키고, 전번군을 해산하다

현개 10권, 4년(1663 계묘/청 강희(康熙) 2년) 11월 14일 무인 2번째기사

22)경기우도 암행어사 여성제가 돌아와 수령들의 치적을 보고하다

현개 12권, 5년(1664 갑진/청 강희(康熙) 3년) 11월 24일 신해 3번째기사

23)강화유수 서필원이 강화도 군무에 대해 변통할 13개 조항을 진달하다

현개 13권, 6년(1665 을사/청 강희(康熙) 4년) 9월 28일 신해 2번째기사

24)북병영의 축성, 어상준의 상소, 성균관의 시사, 중추부 녹사 문제를 논의

현개 19권, 9년(1668 무신/청 강희(康熙) 7년) 7월 27일 갑자 3번째기사

20. 숙종실록

1)영의정 허적이 강화도에서 돌아와 강화도의 형세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다

숙종 3권, 1년(1675 을묘/청 강희(康熙) 14년) 4월 28일 병진 3번째기사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을 인견(引見)하였다. 그것은 허적이 강도(江都)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이다. 허적이 보고하기를, 〈본문중략〉

또 통진(通津)의 문수산(文殊山)은 강도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병자년에 적이 문수산에 쳐들어와서 장선(裝船)을 끌고 내려왔는데도 우리 군사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기에 전쟁에 졌습니다. 만약 조그마한 성을 문수산에 쌓아서 웅거하여 지킨다면 적이 오고 가는 것을 파리를 불고, 기를 휘둘러 통지(通知)할 수가 있습니다.

덕포(德浦)도 성을 쌓을 만한 곳이니, 비록 작지마는 험준(險峻)합니다. 겨울철에 갑진(甲津)에 얼음이 녹아서 흐를 때에 덕포만은 배를 수용(受容)할 만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곳에 성이 있게 되면 위급할 때에 먼저 이 성에 들어가서 배를 정돈하여 건너면 갑자기 닥치는 근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문중략〉

【영인본】38책 270면 【분류】*왕실-국왕(國王)/*왕실-의식(儀式)/*군사-군정(軍政)/*군사-관방(關防)/*과학-지학(地學)/*인사-선발(選拔)

2)병조판서 김석주 등이 강화도를 살피고 돌아와 지도와 서계를 올리다

- 숙종 7권, 4년(1678 무오/청 강희(康熙) 17년) 10월 23일 경인 2번째기사

대신(大臣)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引見)하였다. 병조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와 부사직(副司直) 이원정(李元禎)이 강도(江都)를 순심(巡審) 하고 돌아와서 곧 지도(地圖)와 서계(書啓)를 봉진(奉進)하였는데, 소정(所定)한 축돈처(築墩處) 49소(所)를 작성한 서계에 대략 말하기를, 〈본문중략〉

서울에 있을 때에 이미 귀에 익도록 문수산(文殊山)은 강도(江都)에 대봉(對峰)이 되고 규산(窺山)이 된다고 들었기에, 김포(金浦)의 갈 위에 있으면서 이 산을 바라보았더니 서북(西北)의 여러 산 가운데에서 우뚝이 일어났고, 통진(痛津)에 다다라서는 산이 현(縣)의 서북(西北)쪽 5, 6리(里) 남짓한 곳에 있었으며, 봉정(峰頂)에서 10여 보(步)를 못미쳐서 북쪽으로 굴러 한 산마루의 약간 편평한 데를 얻어 강도(江都)를 굽어보니, 정히 의자(椅子)에 앉아서 바둑판을 보는 것과 같았으니, 이는 대(對)함이 아니고 곧바로 압도(壓倒)함이었으며, 엿봄이 아니고 곧바로 방자하게 임(臨)함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담으로 삼을 수 없어서 한 구역 안을 바치어 적인(敵人)이 웅거하는 곳이 된다면, 강도(江都)의 사람은 모두가 장차 식사(食事)를 당하여도 삼켜 내리지 못할 것이니, 전날에 문수산(文殊山)에 축성(築城)하기를 의논한 자도 또한 터무니없는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역(大役)이 또 시작됨으로서 한데 아울러 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직은 먼저 승도(僧徒) 중 사리를 자세히 아는 자를 모집(募集)하여, 절 하나를 산 안의 천맥(泉脈)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요후(瞭候)를 숙련하게 하고, 기계(器械)를 간수(看守)토록 하여, 다시 1, 2년을 기다렸다가 약간 재력(財力)이 저축되면, 반드시 축성할 계책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본문중략〉

월곶진(月串鎭)은 곧 연미정(燕尾亭)이니, 중묘조(中廟朝)의 명장(名將) 황형(黃衡)의 유기(遺基)입니다. 조정에서 이미 이 진(鎭)을 설치한 뒤에 장차 대가(代加)하려고 하였는데, 황형의 후손(後孫)인 고(故) 대사성(大司成) 황감가 힘껏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황감의 아들 황익(黃益)이 가난하고 피폐하여 떨치지 못한다고 하니, 이제 만약 그 경작하지 않는 언전(堰田)을 헤아려 준다면 거저 빼앗았다는 기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소(墩所)로 정한 2, 3처(處)에는 혹은 인가(人家)도 있고 혹은 민전(民田)이 있는데, 신이 앞서 연미(燕尾) 의 대가(代加)를 주라고 청한 것도 또한 이 무리들의 마음을 위안(慰安)하려고 함이니, 바라건

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의(稟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예전에 정장(亭障)에다 임목(林木)을 많이 심었던 것은 대개 나무 뿌리가 크고 견고하여 지면 저절로 채책(砦柵)을 이루고, 나뭇가지가 서로 엉클어지면 치돌(馳突)하는 것을 방비하기에 족하며, 또 나의 몸을 엄폐하고 적(敵)을 사격하기에 편한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려(師旅)가 둔숙(屯宿)하는 지역은 더욱 나무를 찍고 풀을 베는 것으로 중함을 삼으니, 나무를 심는 정책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데, 근부(斤斧)가 찾게 되면 오래 기르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마니산(摩尼山) 외에는 거개가 모두 민둥민둥하니, 완도(莞島)와 변산(邊山)의 소나무를 취하여다 그 산둔덕의 경작 못하는 땅을 가려서 두루 갈아서 심으면, 수십년(數十年)을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울창하게 숲을 이루는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차례로 행하게 하였다. 〈본문중략〉

【영인본】38책 397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과학-지학(地學)/*건설-토목(土木)/*역사-전사(前史)/*군사-군역(軍役)/*농업-임업(林業)/*왕실-종사(宗社)/*사법-탄핵(彈劾)

3)임금의 친필을 올린 통진의 송시균에게 호피를 주다

숙종 7권, 4년(1678 무오/청 강희(康熙) 17년) 11월 8일 을사 2번째기사

통진출신(通津出身) 송시균(宋時均)이 현묘(顯廟)의 어필(御筆)을 올리면서 말하기를, "현묘(顯廟)의 보모(保母) 조씨(曹氏)의 집에서 얻었습니다."하니, 임금이 호피(虎皮)를 내려 주었다.

【영인본】38책 398면 【분류】*왕실-사급(賜給)/*재정-진상(進上)

4)의관 이동형을 김포군수로 제수한 명을 거두라는 사간원의 요청을 거절하다

숙종 10권, 6년(1680 경신/청 강희(康熙) 19년) 10월 3일 무자 5번째기사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의관(醫官) 이동형(李東馨)을 김포군수(金浦郡守)로 제수(際授)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영인본】38책 490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

5)이사명 등의 논죄 · 승직의 신중함 · 3학사 중 윤집 후손의 대우에 관해 논의하다

- 숙종 11권, 7년(1681 신유/청 강희(康熙) 20년) 2월 3일 정해 1번째기사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본문중략〉

대사헌(大司憲) 이단하(李端夏)가 말하기를, "윤집(尹集) 등 세 신하는 사우(祠宇) 세우는 일을 수의(收議)하라는 명(命)이 있었으니, 이것은 매우 성대하신 거사(擧事)였습니다.

신이 경기감사(京畿監司)로 대죄(待罪)하고 있을 때 김포(金浦)를 지나가는데 길 옆에 윤씨(尹氏)의 분산(墳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섬(尹暹)은 임진년에 사절(死節)하였고, 그 손자인 고(故) 부사(府使) 윤계(尹棨)는 병자년에 사절(死節)하였으며, 윤계의 아우 윤집(尹集)은 지금 사우(祠宇)를 세울 것을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집의 아우인 진사(進士) 윤상(尹燊)도 또한 효행(孝行)이 있어서 장령(掌令)을 추증(追贈)하였고, 그 방친(旁親)인 윤걸(尹傑)도 또한 강직(剛直)하기 때문에 간신(奸臣) 전복창(陳復昌)에게 구살(構殺)당하였습니다.

충성(忠誠) · 절개(節介) · 행신(行身) · 의리(義理)의 5인의 묘(墓)가 같이 한 산에 있는데, 묘지기[墓奴]가 호역(戶役)에 침해(侵害)받아 보존(保存)하지 못하며, 땔나무를 하고 방목(放服)하는 것을 금지(禁止)함도 없으니, 그 묘지를 특별히 복호(復戶)하여 수호(守護)하게 하는 것이 실로 포장(褒奬)하고 진휼하는 은전(恩典)에 한당합니다." 하였는데, 김수항 · 이상진이 모두 옳게 여기니, 임금이 명하여 묘지기 2인을 특별히 복호(復戶)하여 군역(軍役)을 면해 주어 영구히 수호(守護)하게 하였다.

【영인본】38책 515면 【분류】*왕실-국왕(國王)/*정론-간쟁(諫諍)/*인사-관리(管理)/*인사-선발(選拔)/*사법-단옥(斷獄)/*풍속-예속(禮俗)/*군사-군역(軍役)/*신분-천인(賤人)

6)강화 유수 이선이 강화의 사정에 관해 별단으로 아뢰다

숙종 11권, 7년(1681 신유/청 강희(康熙) 20년) 5월 21일 계유 3번째기사

강화유수(江華留守) 이선(李選)이 상소(上疏)하면서 별단(別單)을 붙여 바치고 편의(便宜)를 조목별로 진계(陳啓)하기를, "1. 본부(本府)의 형세(形勢)가 고려(高麗) 때에는 사면(四面)이 저택(沮澤) 이어서 배를 정박(停泊)할 곳이 단 몇 군데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박할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고려 때에는 부중(府中)에 이미 내성(內城)이 있는데다가 또 섬을 둘러 장성(長城)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팎으로 모두 성(城)이 없으니, 반드시 연변(沿邊)에 돈대(墩臺)를 돌아가며 설치하고, 부중(府中)에 내성(內城)을 견고하게 쌓고, 곁에 한두 성(城)을 설치하여 훈국(訓局)·어영청(御營廳) 및 총융사(總戎使)로 하여금 각각 한 군데를 수호(守護)하여 기각의 형세(形勢)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 갑곶이진[甲串津] 위 선원산(仙源山) 꼭대기에도 차례로 성(城)을 쌓지 않을 수 없고, 고려(高麗)의 토성[土築]도 아울러 마땅히 뒤따라 수선(修繕)하여 가운데에 큰 절(伽藍)하나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승도(僧徒)를 모으고, 군사를 늘려서 들어가 수어(守禦)하게 해야 할 것이며, 북쪽의 승천보(昇天堡)와 같이 남쪽의 덕진보(德津堡)와 서쪽의 인화석진(寅火石津)에도 모두 하나의 성(城)을 설치하여 연락의 형세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江) 밖의 관방(關防)에도 마땅히 모두 성(城)을 쌓아야 하는데, 백마(白馬)는 풍덕부(豐德府)를 옮겨 이곳에서 다스리고, 덕진(德津)은 김포(金浦)·부평(富平)으로 하여금 그때 그때에 입하여 입보(入保)하게 하고 문수산(文殊山)에도 그 봉우리에 성을 쌓아 통진(通津)으로 하여금 그때 그때에 입하여 입보(入保)하되, 겸해서 요망(瞭望)하기에 편하게 하고, 갑곶이[甲串] 수유현(水踰峴) 위에도 좌우로 돈대(墩臺)를 설치하여 그때 그때에 입하여 들어가 수어(守禦)하게 해서 미처 건너지 못하여 뒤에서 막는 곳이 되게 하소서.

1. 훈국(訓局)·어영청(御營廳)·총융청(總戎廳) 및 본부(本府)에서 수어(守禦)하는 신지(信地)는 미리 구획(區劃)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도의 근왕 주사(勤王舟師)도 또한 마땅히 미리 내왕(來往)하는 곳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월곶이[月串]부터 덕진(德津)까지는 강폭이 좁고 물살이 급해서 주사(舟師)를 쓰기가 어렵고, 적(賊)이 침범(侵犯)하기 쉽지만, 승천보(昇天堡)에서 인화석진(寅火石津)까지는 강(江)의 입구가 광활(廣闊)해서 주사를 쓸 수 있으며 적(賊)이 침범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곶이·적북도(赤北島)·통진(通津)·풍덕은 두 강의 경계(境界)가 나뉘어

지는 곳으로서, 수로(水路) 가운데 제일 요해처(要害處)가 되고, 배를 정박(停泊)하기도 편하니, 만약 월곶이부터 섬암(蟾巖)까지 그 사이에 주사(舟師)를 벌여 배치해 놓고 조석(潮汐)의 형세를 타서, 배를 운항시킨다면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본문증략〉

【영인본】38책 531면【분류】*정론-정론(政論)/*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군사(軍事)/*재정(財政)/*과학-지학(地學)/*구휼(救恤)/*교통-마정(馬政)/*교통-수운(水運)/*농업(農業)

7)김수항이 비리 어사들의 처벌을 아뢰고, 이숙이 이시빈의 처에 대해 정표할 것을 아뢰다

숙종 11권, 7년(1681 신유/청 강희(康熙) 20년) 6월 3일 갑신 1번째기사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근일에 제도(諸道)의 어사(御史) 가운데 안후태(安後泰)는 가는 곳마다 술을 마시고는 취하여 길에 쓰러져서 행인(行人)들에게 비웃음을 샀고, 여러 고을에서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목임일(睦林一)은 역마(驛馬)를 바꿔 탈 때 형장(刑杖)이 낭자(狼藉)하였으며, 또 본도(本道)의 찬방(察訪)·적객(謫客)과 어울려 산사(山寺)로 돌아다니며 놀았으며, 연포회(軟泡會)를 베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천군수(价川郡守) 김세진이 치적(治績)이 없는데도 포계(褒啓)에 첨입(添入)하니, 물정(物情)이 놀라 비웃었습니다.

김두명(金斗明)은 데리고 간 하리(下吏)가 각 고을에서 뇌물(賂物)을 징수(徵收)하여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모두 시종(侍從)의 신하로서 성상(聖上)의 이목(耳目)을 의탁하는 바 되었는데, 스스로 삼가고 경계하지 아니하여 조정(朝廷)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효종조(孝宗朝)에서는 어사(御史)로서 염문(廉問)을 잘하지 못한 자를 일찍이 나문(拿問)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죄가 없을 수 없고, 안후태와 목임일은 더욱 놀랄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명하여 안후태·목임일은 나문(拿問)하고, 김두명(金斗明)은 파직(罷職)하도록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숙이 말하기를, "신이 정축년의 변란(變亂) 때 사로잡혔는데, 전(前) 부사(府使) 이시빈(李時彬)의 처(妻) 우씨(禹氏)도 구략(驅掠)당하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金浦) 땅의 굴포(掘浦)가에 이르러 그 지아비와 서로 이별하게 되자, 곧 물에 뛰어들어 오랑캐의 화살을 무수히 맞고는 죽었습니다. 그 절의(節義)의 뛰어난 바가 이와 같은데, 오히려 정표(旌表)한 일이 없으니, 어찌 흠전(欠典)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하니, 명하여 특별히 정려(旌閭)하도록 하였다.

【영인본】38책 535면【분류】*왕실-국왕(國王)/*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윤리-강상(綱常)

8)감시와 초시의 시권 중에 이름을 숨기고 상변한 글

숙종 12권, 7년(1681 신유/청 강희(康熙) 20년) 8월 21일 신축 1번째기사

당시에 감시(監試)와 초시(初試)를 두 곳의 시장(試場)에서 베풀어 어떤 시권(試券) 을 얻었는데, 바로 이름을 숨기고 상변(上變) 한 글이었다. 이 글은 긴 문장[數千語]이었는데, 대체로 이르기를,

"김포(金浦) 지방의 사인(士人) 홍시림에게 아들이 있는데 나면서 이상한 징조가 있었고 가슴에 젖이 4개나 있습니다. 그가 뜻을 잃고 임금을 원망하는 무리인 전(前) 참판(參判) 오시복(吳始復), 참의(參議) 권수(權脩), 전 교리(校理) 권환, 전 집의(執義) 이석관(李碩寬), 사인(士人) 남중유(南重維)·이우진(李宇晉) 등과 합심(合心)하여 옹호(擁護)하면서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며 풍운경회도(風雲慶會圖)를 만들어 그들의 성명(姓名)을 나열하여 적고 함께 약속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바야흐로 김포 근처의 해도(海島) 안에 와서 모였는데, 제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협박당하여 있다가 그 당(黨)에 가입하도록 하므로, 마침내 거짓으로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남중유 등이 경회도(慶會圖)를 내어다 보이고 인해서 흐느끼며 분격하여 탄식하고 승여(乘輿)를 가리키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멋대로 하며 정치를 어지럽힌다는 것으로 김석주(金錫胄)와 김만기(金萬基) 등을 비방하였습니다.

제가 마땅히 바로 상변(上變)해야 하지만 잡아서 증거삼을 것이 없어서 우선 이름을 감추고 아룁니다. 조정에서 만약 권환의 집 종을 잡아다 국문(鞫問)하신다면 그 단서(端緖)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시관(試官)들이 그 글이 부도(不道)한 데 관계된다고 하여 역시 감히 사사로이 태워 없애 버리지 못하고 승정원(承政院)의 관원과 함께 의논하여 품달(稟達)하기로 하고 뒤에 마침내 그 글을 밀봉(密封)하여 아뢰자, 임금이 그대로 궁중에 머물러 두게 하고 이튿날 승정원에 전교를 내리기를, "지금 이름을 숨기고 상변(上變)한 글을 보니, 흉악하고 참혹하기가 측량할 수 없어 차마 바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추핵하여 실정를 알 방법이 없어서 대내(大內)에서 이미 불에 태워 버렸다. 이 뜻을 모두 알라."하였다.

【영인본】38책 547면 【분류】*인사-선발(選拔)/*사법-치안(治安)/*변란-정변(政變)/*왕실-국왕(國王)

9)경기관찰사 정재희가 김포군수 남두북의 개차를 청하나, 따르지 않다

숙종 12권, 7년(1681 신유/청 강희(康熙) 20년) 10월 10일 기축 4번째기사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정재희(鄭載禧)가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김포군수(金浦郡守) 남두북(南斗北)은 지난번 부평부(富平府)를 맡았을 때 어리석고 방자하여 잘 다스리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청컨대 빨리 개차(改差)하소서."하니, 임금이 전교를 내리기를, "남두북이 미치 도임(倒任)하지 않아 능력이 있고 없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날의 고을 백성들이 헐뜯고 비방한다고 해서 갑자기 체임(遞任)하도록 청하는 것은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듯하다. 그를 체임시켜 바꾸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38책 556면 【분류】*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왕실-국왕(國王)

10)사간원에서 김포 군수 남두북을 논핵하다

숙종 13권, 8년(1682 임술/청 강희(康熙) 21년) 10월 23일 병신 2번째기사

사간원(司諫院)에서 김포군수(金浦郡守) 남두북(南斗北)이 탐욕이 많아서 백성를 학대한 것을 논핵하면서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풍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답하였다가, 여러 번 아뢰자 마침내 윤허하였다. 이광한(李光漢)의 사건이 비로서 정지되었다.

【영인본】38책 605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

11)강화 유수 이민서가 상소하여 강도의 형편을 논하다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청 강희(康熙) 22년) 8월 3일 임인 2번째기사

강화유수(江華留守) 이민서(李敏敍)가 상소(上疏)하여 강도(江都)의 형편을 논하기를, "청컨대 문수(文殊) 【통진(通津) 땅이다.】와 백마(白馬) 【풍덕(豊德) 땅이다.】에 성책(城柵)과 둔병(屯兵)을 두고, 연안(延安)은 강도(江都)에 전속(專屬)시켜 절제(節制)를 받게하며, 장봉(長峰)·자연(紫燕) 두 섬에 또한 백성을 모으고 진(鎭)을 두게 하소서. 또 본부(本府)의 진강(鎭江) 북쪽의 한 목장(牧場)은 다른 곳에 옮기고 인호(人戶)를 불러모아 보장(保障)의 대계(大計)를 완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좌상(左相) 민정중(閔鼎重)이 윤지완(尹趾完)을 보내어 살펴보고 의논해 정할 것을 청하였다.

【영인본】38책 661면 【분류】*군사-관방(關防)/*군사-군정(軍政)

12)이단하 윤지선 목내선 이규령 최성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청 강희(康熙) 22년) 11월 14일 신사 2번째기사

비로소 개정(開政)하여, 이단하(李端夏)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윤지선(尹趾善)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목내선(睦來善)을 판윤(判尹)으로, 이규령(李奎齡)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삼고, 특별히 의관(醫官) 최성임(崔聖任)을 김포군수(金浦郡守)로 삼았다.

삼가 살펴보건대, 의관(醫官)이 성질(聖疾)에 분주하게 노력한 것은 곧 그 직분(職分)일 따름이니, 상(賞)과 은전(恩典)을 내려 줌에 있어서 도리어 너무 지나침을 경계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자목(字牧)의 직임(職任)을 내려 주고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명기(名器)를 아끼는 뜻이겠는가?

【영인본】38책 666면 【분류】*인사-임면(任免)/*역사-사학(史學)

13)사헌부에서 이인하를 파직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숙종 15권, 10년(1684 갑자/청 강희(康熙) 23년) 1월 6일 임신 1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총융사(總戎使) 이인하(李仁夏)는 통진(通津) 땅에서 습조(習操)할 때에 전 군수(郡守) 권대윤(權大胤)이 군진(軍陣) 밖을 지나갔는데, 이인하가 범마(犯馬)하였다 하여 끌어들여가 곤장(棍杖)으로 때리고 사납게 노하여 욕하였으므로, 듣는 사람이 다 놀라와 합니다. 이인하를 파직(罷職)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38책 674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군사-병법(兵法)

14)군사를 수원 · 장단에 분속시키자는 총융사 김석익의 장계를 처리하다

숙종 15권, 10년(1684 갑자/청 강희(康熙) 23년) 12월 3일 갑오 4번째기사

총융사(總戎使) 김석익(金錫翼)이 장계(狀啓)하기를, "본청(本廳)에 소속된 통진(通津) 등 12고을의 군병(軍兵)은 이미 강화(江華)에 갈라 준 것 이외에 아직 남은 군사가 2천4백여명이 있는데, 만약 그대로 본청에 소속시키면 두 곳을 구관(句管)하는 데 폐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청컨대 그 남은 군사를 수원(水原) · 장단(長湍) 두 방영(防營)에 분속(分屬)시키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당초 강도(江都)에 군병(軍兵)을 갈라 소속시키도록 마련하여 계하(啓下)할 때에 단지 그 원군(元軍)의 실수(實數)만 상고하여 분배해 이속(移屬)하고, 표하군(標下軍) · 잡색군(雜色軍)은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은 군사가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고을의 군병을 두 곳에 분속(分屬)하면 진실로 불편하니, 청컨대 다시 군안(軍案)을 상고하여 12고을의 원군(元軍)과 잡색군(雜色軍)의 총수[都數]를 참작하여 마련해서 계하(啓下)하여 반포(頒布)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영인본】39책 20면 【분류】*군사(軍事)

15)신하들과 전알 문수 산성 곡례에 대해 논하다

ㄴ 숙종 22권, 16년(1690 경오 /청 강희(康熙) 29년) 8월 7일 을축 1번째기사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청하기를, "휘릉(徽陵)에 전알(展謁)할 때에 휘릉·숭릉(崇陵)에는 위에서 친히 전알하시고 그 나머지 세 능에는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소서."하였다. 대개 임금의 편찮던 기후가 막 나았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굳이 거절하다가 마침내 윤허하였다. 목내선이 또 청하기를, "황해도의 대미(大米)·소미(小米)·피곡(皮穀) 1만 석(石)을 먼저 경강(京江)에 배로 날라 와서 얼음이 풀리거든 양남(兩南)에서 날라 가게 하고, 평안도의 대미 4만 석을 오는 2월에 옮겨 보낼 것으로 하소서."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병조판서(兵曹判書) 민암이 말하기를, "신(臣)이 통진(通津)으로부터 강도(江都)의 형세를 두루 보니, 문수산(文殊山)이 강화부성(江華府城)의 주산(主山)인데, 동북으로 갑곶이[甲串]·강화성중(江華城中)까지 다 눈 안에 들어옵니다. 예전부터 다들 강화(江華)를 지키려면 문수산(文殊山)에 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거니와, 5리를 미치 쌓지 않아서 곧 강에 이르니,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적이 오더라도 사방에 손댈 곳이 없습니다.

뒷날에 혹 대가(大駕)가 와서 머무는 때가 있더라도 도인(都人)·사녀(士女)가 지키기 매우 편리한데, 산은 높고 막힌 데가 많으므로 성을 만들 것 없이 인왕산(仁王山)·백악(白岳)처럼 여장(女墻)을 쌓으면, 이는 두어 리쯤에 지나지 않으므로 드는 힘은 적고 나타나는 공은 많을 것이고, 일할 군졸은 통진(通津) 한 고을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따라서 소매 안에서 한 폭의 그림을 내어 손으로 가리키며 아뢰기를, "이것이 고려산(高麗山) 이고 저것이 혈굴산(穴窟山)인데, 두 산이 모여 합친 곳은 겨우 두어 리쯤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작은 고개가 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베풀어 성을 만든 곳입니다. 그 터는 남한(南漢)과 다를 것이 없는데, 남한은 산 위가 트였으나, 이 산은 위가 높고 아래가 낮으므로 좌우에 용도(甬道)를 쌓아서 조운(漕運)을 통하면 곧바로 성밑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니, 지키고 싸우기가 다 편리하고 혹 지키지 못하더라도 바다에 떠서 피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수상(首相)이 출사(出仕)하거든 상의하여 처치하라고 명하였다.

예조판서(禮曹判書) 이관징(李觀徵)이 말하기를, "휘릉(徽陵)에 친히 거둥하실 때에 곡례(哭禮)를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마는, 근시(近侍)하는 신하들은 위

에서 곡하는 데에 따라서 곡하겠으나, 배제(陪祭)하는 백관(百官)은 혼전(魂殿)에서 배제할 때에 곡례가 없고, 《오례의(五禮儀)》에도 연제(練祭) 뒤에 백관이 곡림(哭臨)한다는 글이 없으니, 이번에 능소(陵所)에 배종(陪從)하는 백관은 곡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영인본】39책 226면 【분류】*왕실-종사(宗社)/*왕실-의식(儀式)/*재정-창고(倉庫)/*교통-수운(水運)/*군사-관방(關防)

16)경기 각 고을의 대동 수미를 감면하는 비망기를 내리다

숙종 23권, 17년(1691 신미/청 강희(康熙) 30년) 8월 6일 무자 1번째기사

임금이 강도(江都)에서 성을 쌓는 일과 먼 능(陵)에 가는 길을 닦는 일로 경기의 백성이 피폐하므로 돌보지 않을 수 없다 하여,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경기 각 고을의 대동수미(大同收米)를 감면하게 하였는데, 선혜청(宣惠廳)에서 말하기를, "성을 쌓는 공역의 수용(需用)은 모두 군문(軍門)에서 담당하므로 백성에게 미치는 해가 별로 없고, 능행(陵幸) 때에 길을 닦는 것도 몇 고을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하니, 금천(衿川)·양천(陽川)·김포(金浦) 등 고을의 수미(收米)만을 결(結)마다 1두(斗) 또는 1두 5승(升)씩 줄이도록 허락하였다.

【영인본】39책 251면 【분류】*군사-관방(關防)/*왕실-종사(宗社)/*재정-역(役)/*재정-공물(貢物)

17)좌의정 목내선 등이 청대하여, 능행 때 부교 사용 등의 문제를 아뢰다

◎ 숙종 23권, 17년(1691 신미/청 강희(康熙) 30년) 8월 8일 경인 2번째기사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호조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청대(請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능행(陵幸) 때에 노량진(露梁津)에 부교(浮橋)를 매어서 건너려 하는데, 강촌(江村)의 늙은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날씨가 온화하면 부교가 편하나, 혹 물이 벌창하고 바람이 어지러울 때를 만나면 용솟음쳐서 흔들리므로 배를 쓰는 것만 못하다.' 한다 합니다.

또 효종(孝宗)께서 능행하셨을 때에는 세 배를 이어서 승여(乘輿)를 모셨으니, 지금도 밧줄을 강의 좌우에 가로질러서 그 사이로 배를 부리면 편리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종 때의 전례뿐이 아니라, 일찍이 여주(驪州)에 갈 때에도 배를 매어 강을 건넜는데, 기울어 위태한 염려가 조금도 없었으니,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오시복이 또 말하기를, "어로(御路)의 너비는 25척(尺)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인데, 김포(金浦) 땅은 행행(行幸)을 겪지 않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연도(輦道)가 황폐하여 밭둑이 된 것이 많다 하니, 이제 법에 맞추어 닦으려면 백성의 밭을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하고, 목내선도 말하기를, "성안의 연도도 제한에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하니, 임금이 20척으로 줄여 정하여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하였다.

【영인본】39책 251면 【분류】*왕실-행행(行幸)/*사법-법제(法制)/*농업-전제(田制)/*역사-전사(前史)

18)김포 장릉에 전알하다

◎ 숙종 23권, 17년(1691 신미/청 강희(康熙) 30년) 9월 1일 임자 1번째기사

임금이 김포(金浦) 장릉(章陵)에 전알(展謁)하였다. 특별히 명하여 능행(陵行) 때에 부역(赴役)한 여러 고을의 가을 수미(收米)를 결(結)마다 각각 2두(斗)씩 줄이게 하였다.

【영인본】39책 252면 【분류】*왕실-행행(行幸)/*재정-역(役)/*재정-전세(田稅)

19)통진 · 문수산 등지에 성을 쌓을 것을 의논하다

숙종 25권, 19년(1693 계유/청 강희(康熙) 32년) 10월 3일 계유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통진(通津)과 문수산(文殊山)과 강도(江都) 를 요새지라고 하여 성(城)을 쌓아 지키도록 의논하자,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 등이 합사(合辭) 하여 이 일을 찬성하였다. 임금이 훈련대장(訓鍊大將) 이의징(李義徵)에게 가서 지형(地形)을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임인본】39책 287면 【분류】*군사-관방(軍防)

20)문수산성의 배속 · 희빈 장씨 예우 등을 논의하다. 어영대장 신여철의 파직에 대한 사론

숙종 27권, 20년(1694 갑술/청 강희(康熙) 33년) 9월 13일 무인 2번째기사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때 문수산(文殊山)에 성 쌓는 일이 이미 끝났다.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총융사(總戎使)에 전속(專屬)시키고, 통진(通津)을 총융사의 관할 밑에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통진 관원들을 성 안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병조판서 윤지선(尹趾善)이 아뢰기를, "좁아서 용신하기 어렵습니다."하고, 남구만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이 산은 물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성을 이미 쌓고 나서 천맥(泉脈)이 자못 많아지기는 했지만 땅은 진실로 협착합니다. 그러나 단지 관원이 있을 곳만 설치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니, 총융사를 보내어 가서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그뒤에 총융사 이기하(李基夏)가 명을 받고 가서 보고 돌아와 아뢰기를, "성 안에 단지 두 군데의 골[洞]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매우 작아 관거(官居)는 옮길 수 없을 듯합니다.

할 수 없다면 먼저 창고(倉庫)를 옮기고 이어 객사(客舍)를 【군현(郡縣)에서 사명(使命)을 띠고 온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다.】설치하여 앞날의 주필에 대비하도록 하고, 민가(民家)는 성 밖 북편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윤지선이 아뢰기를, "진실로 관거를 옮겨 놓으려고 한다면 어찌 용납할 수 없겠습니까 성의 밖은 지세(地勢)가 평탄하여 또한 백성들을 거주하게 할 만했습니다."하고, 남구만이 아뢰기를, "고(故) 상신(相臣) 조사석(趙師錫)이 이 성을 쌓으려고 했고, 윤지완(尹趾完)이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되었을 적에 또한 구획(區劃)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지선은 관거(官居)를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기하는 옮길 수 없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성을 쌓은 본 뜻은 단지 적인(敵人)들이 점거하여 내려다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땅을 넓게 차지하여 한갓 인력(人力)을 허비할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굳게 지키려고 한다면 관거는 의당 옮겨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올해는 비록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용히 해 가야 할 것이다."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당초에는 이를 총융사에게 전속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강화(江華)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니, 마땅히 강화에 전속시켜야 한

다.' 고 합니다."하니, 임금이 강화에서 구관(句管)하도록 윤허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통진(通津)은 이 산성(山城)의 주인이니, 마땅히 고을 명칭을 승격(陞格)시켜 중요시하여야 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縣)을 올려 부(府)로 만들고, 무신(武臣) 중에 품계(品階)가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사람을 가려 보내는 것을 일정한 규례로 삼으라."하였다. 비국에서 이 일을 강화유수(江華留守) 민진주(閔鎭周)에게 물으니, 민진주가 아뢰기를, "강화는 구관하는 데가 너무 많아 다시 이 성까지 총관(總管) 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남구만이 주청(奏請) 하기를, "군문(軍門) 에서는 기계(器械)를 관장하고 강화에서는 양향(量餉)을 주관하게 하며, 통진부사(通津府使)가 그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조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의논이 결정되지 않아 빈 성만 우뚝하고, 마침내 한 사람의 백성도 살지 않고 하나의 물건을 저장하지도 않았으므로, 식견있는 사람들이 한탄했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본문중략〉

【영인본】39책 348면 【분류】*왕실-비변(妃嬪)/*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임면(任免)/*인사-선발(選拔)/*사법-단핵(斷劾)/*군사-관방(關防)/*군사-군정(軍政)/*군사-병참(兵站)/*군사-병법(兵法)/*금융-화폐(貨幣)

21)대신과 비변사의 재신들을 인견하다

ㄱ 숙종 28권, 21년(1695 을해 /청 강희(康熙) 34년) 3월 3일 갑자 1번째기사

대신과 비변사(備邊司)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 민진주(閔鎭周)가 별장(別將)을 골라 임명하여 문수산성(文殊山城)을 주관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지금 모든 일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별장의 거처에 필요한 물품들을 갑자기 마련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통진부사(通津府使)로 하여금 전담해 관리하도록 하였다가, 겨울이 닥치기 전에 고사(庫舍)를 창설하고, 승려를 모집해 절을 만들어 성첩(城堞)을 지키는 용도로 활용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하고, 좌윤(左尹) 이세선(李世選)은 자연도(紫燕島)의 행궁(行宮)을 수리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본문중략〉

【영인본】39책 369면 【분류】*왕실-종사(宗社)/*인사-임면(任免)/*사법-단핵(斷劾)/*군사-관방(關防)/*사상-불교(佛敎)

22) 경기통진 등지에 큰 우박이 내리다

숙종 29권, 21년(1695 을해/청 강희(康熙) 34년) 9월 16일 을해 5번째기사

경기(京畿)의 통진(通津) 등지에 우박이 내렸으니, 크기가 비둘기 알만 하였다.

【영인본】39책 395면 【분류】*과학-천기(天氣)

23) 인천 · 김포 · 부평 등의 고을에서 지진이 있다

숙종 31권, 23년(1697 정축/청 강희(康熙) 36년) 윤3월 16일 병신 2번째기사

인천(仁川) · 김포(金浦) · 부평(富平) 등의 고을에서 지진(地震)이 있었다.

【영인본】39책 454면 【분류】*과학-천기(天氣)

24)서울에 기근이 심해 기한을 정하여 진휼청의 곡식을 발매하도록 하다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청 강희(康熙) 37년) 1월 28일 갑진 1번째기사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서울에 기근(飢饉)이 심한 까닭으로 2월 10일 전까지를 한도로 하여 진휼청(賑恤廳)의 곡식을 발매(發賣)하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지평 어사휘(魚史徽)가 경기수사(京畿水使) 민섬(閔暹)이 아내의 장지(葬地)로 통진(通津)의 대촌(大村)을 점거하였다 하여 파직(罷職)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최석정이 대계(臺啓)가 사실과 틀리다고 진달하고, 판돈녕(判敦寧) 서문중(徐文重)도 역시 그렇게 말하니, 임금이 파직하지 말고 그대로 유임(留任)시키도록 명하였다.

【영인본】39책 484면 【분류】*사법-탄핵(彈劾)/*인사-임면(任免)/*풍속(風俗)/*구휼(救恤)

25)지사 이유가 문수산성의 방비에 대해 청하다

숙종 38권, 29년(1703 계미/청 강희(康熙) 42년) 3월 6일 신해 1번째기사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문수산성(文殊山城)은 아주 강도(江都)의 요충(要衝)이 되는 땅인데, 이미 성을 쌓았다가 문득 버리게 되니 실로 애석합니다. 마땅히 1천여 보(步)를 더 쌓고 통진부(通津府)를 성 안으로 옮겨서, 갑진(甲津)과 마주 대하여 험요(險要)로 삼을 것이며, 또 김포(金浦)의 군사를 여기에 소속시켜 전란(戰亂)에 임하여 굳게 지키는 계책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에 물으소서."하였는데, 임금이 이때 바야흐로 큰 흉년이므로 고을을 옮길 수 없다는 이유로 조용히 의논해 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유가 일찍이 문수산성과 강도(江都)의 지세(地勢)를 가서 살펴보고 오기를 스스로 청하여 갔다 왔기 때문에 건의하여 아뢴 바가 있었으나,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영인본】40책 8면 【분류】*왕실-경연(經筵)/*군사-관방(關防)

26)종친부에 김해 · 강경포 등을 소속시켜 세를 거두게 하다

숙종 38권, 29년(1703 계미/청 강희(康熙) 42년) 5월 26일 경오 3번째기사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경진년 비망기(備忘記) 가운데 '왕자(王子)를 이미 봉작(封爵)하였으면 모든 수거(修葺)할 만한 해부(該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고 하였으니, 김해(金海) · 창원(昌原)의 초장(草場)과 은진(恩津) · 강경포(江景浦) · 사진포(肆津浦) · 김포(金浦) · 보소실(伏所室) · 통진(通津) · 조강(造江)을, 청컨대 본부(本府)에 모두 소속시켜 세(稅)를 거두어 수용(需用)에 보태게 하소서."하니, 허가하였다.

이때에 궁가(宮家)의 절수(折受)가 산과 바다에 두루 미쳐서 국력(國力)이 피폐하고 백성이 원망하여, 식자(識者)들이 절수의 폐해가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영인본】40책 29면 【분류】*왕실-종친(宗親)/*재정-상공(上供)/*농업-전제(田制)/*수산업(水産業)

27)통진의 유학 심상희 등이 고 평사 이목에게 포창하여 반작을 줄 것을 청하다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 강희(康熙) 45년) 3월 15일 계유 1번째기사

통진의 유학 심상희 등이 고 평사 이목에게 포창하여 관작을 줄 것을 청하다

통진(通津)의 유학(幼學) 심상희(沈尙熙) 등이 고(故) 평사(評事) 이목(李穆)을, 화를 같이 입었던 여러 신하를 포증(褒贈)한 것에 따라 할 것을 소(疏)로써 청하니, 해조(該曹)에 내렸다.

【영인본】40책 190면 【분류】*정론-정론(政論)/*인사-관리(管理)

28)어사 김흥경과 이명준이 복명하다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 강희(康熙) 45년) 5월 15일 임신 2번째기사

어사(御史) 김흥경(金興慶)·이명준(李明浚)이 복명(復命)하기를, "치정(治政)을 잘못한 이유로써 공주목사(公州牧使) 구지정(具志禎), 이산현감(尼山縣監) 박상빈(朴尙彬), 남포현감(藍浦縣監) 전이장(全爾樟), 김포군수(金浦郡守) 심현(沈玹)을 죄주고, 치정(治政)을 잘한 이유로써 홍주목사(洪州牧使) 이유민(李裕民)을 가자(加資)하였습니다."하였다.

【영인본】40책 19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사법-탄핵(彈劾)

29)강화도의 축성 문제를 여러 대신들과 논의하다

숙종 48권, 36년(1710 경인/청 강희(康熙) 49년) 6월 25일 기미 2번째기사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이여가 말하기를, "조태구(趙泰耉)가 일찍이 강도(江都)에 성(城)을 쌓은 후에 성첩(城堞) 을 지킬 군졸(軍卒)을 또한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통진부사(通津府使) 민순(閔純)이 진계(陳啓) 한 바에 의거해 삼군문(三軍門)의 보인(保人)과 본고을에 있는 원호(元戶) 3천여 명으로써 수첩군(守堞軍)을 삼되, 원호는 이웃 고을의 보인으로 서로 바꿀 것을 청합니다.

대개 문수성(文殊城)은 성첩이 1천 1백여 개에 이르는데, 통진의 본군(本軍)이 1천 명에 차지 못하여 파수(把守)할 수가 없으니, 만약 이 군사를 보충한다면 약간을 배치하여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통진부(通津府)는 지형이 비록 매우 협착하다 하더라도 본부(本府)를 성(城) 안에 옮긴 연후에야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니, 이 일이 어떠한가 "하자, 이여가 말하기를, "본성(本城)은 지형이 협착한데다가, 또 우물이 적어서 읍거(邑居)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박권(朴權)이 새로 강도(江都)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지형과 수원(水源)이 고을을 옮길 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만약 문수(文殊)로 옮겨 쌓는다면 조금 넓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臣)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城)은 급변(急變)에 임(臨)하여 잠시 주필할 곳으로 삼는 데에 지나지 않고, 또 갑곶이[甲串]에 다다라 힘써 굳게 지킴에 달려 있으니, 넓게 설치하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로써 박권에게 물으니, 박권이 말하기를, "문수(文殊)에 성을 쌓느라고 이미 물력(物力)을 많이 소비하였으니, 이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통진부를 꼭 성 안으로 옮겨 들인 후에야 성첩(城堞)을 수선하여 수비(守備)를 조치할 수가 있으니, 지형이 비록 좁더라도 오히려 한 고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관해와 창름을 풀어 옮길 즈음에 쓰일 물력이 셀 수 없으니, 통진부 각처의 지응(支應)을 만일 6, 7년 동안 제감(除減)하여 오로지 고을을 옮기는 데에 힘쓴다면 일의 두서(頭緖)가 잡힐 것입니다. 강도(江都)를 만약 의귀(依歸)할 곳으로 삼는다면 갑곶이가 물길이 좁아 건너기가 쉬운데, 이 성을 굳게 지킨다면 또한 갑곶이를 넉넉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하고,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강도(江都)에 부임(赴任)하였을 때 형편을 두루 살펴보았더니, 산성(山

城)은 한 면의 산등성이를 따라 쌓아 물가에 이르러 성문을 설치하였는데, 그 성 안이 비록 협착하더라도 오히려 통진(通津) 한 고을을 용납할 만하였습니다. 또 산성으로부터 관부(官府)까지의 거리가 겨우 10리에 이르므로, 편리함에 따라 옮겨 설치하는 것이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도(江都)는 곧 천참(天塹) 이어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의귀(依歸)할 곳으로 삼았으나, 안에 부성(府城)이 없으므로 천참을 지키지 못하면 존망(存亡)이 순식간에 결정될 것이다. 만약 내성(內城)이 있으면 서로 버티는 즈음에 근왕(勤王)의 군사가 이를 수 있어서 순식간에 망하는 형세는 없을 것이니, 결코 내성을 쌓아야 하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고려(高麗)가 강도(江都)에서 몽고란(蒙古亂)을 피할이 거의 50년이었으니, 강도를 버릴 수 없음은 대개 이에서도 알 수가 있다. 통진도 또한 모름지기 성 안으로 고을은 옮긴 후에야 성 안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인데, 비록 협착하더라도 오히려 한 부(府)를 받아들여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니, 마땅히 고을을 옮기되, 여러 가지 부역(賦役)도 또한 마땅히 감제(減除)하도록 하라."하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 김우항(金宇杭)이 말하기를, "이미 고을을 옮기기로 정하였으면, 혹 추성(秋成)을 기다리거나 혹은 내년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분부하신 연후에야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반드시 고을을 옮기려 함은 아니다. 비록 금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마땅히 이설(移設) 해야 할 것이다. 듣건대 문수성(文殊城)은 성가퀴가 많이 허물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후로는 훼손되는 대로 곧 보수하여 전과 같이 포기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0책 357면 【분류】*군사-관방(關防)/*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30)통진부를 통진현으로, 홍주목을 홍양현으로 삼다

숙종 49권, 36년(1710 경인 /청 강희(康熙) 49년) 12월 11일 신미 2번째기사

통진부(通津府)를 강등(降等)하여 통진현(通津縣)을 삼고, 홍주목(洪州牧)을 강등하여 홍양현(洪陽縣)을 삼았는데, 모두 삼성 죄인(三省罪人)이 태어난 고을이기 때문이었다.

【영인본】40책 380면 【분류】*사법-행형(行刑)/*군사-관방(關防)

31)신하들을 인견하고 통진을 강화도에 소속시키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숙종 52권, 38년(1712 임진/청 강희(康熙) 51년) 11월 5일 갑신 2번째기사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했다. 〈본문중략〉

강화유수(江華留守) 조태로(趙泰老)가 아뢰기를, "통진(通津)은 강도(江都)와 실로 순치보거(脣齒輔車)의 형세가 있는데, 문수산성(文殊山城)이 통진으로 가는 요해지(要害地)에 있어 그 위에 올라가면 강도의 형세가 환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같이 지키면서 기세를 합친 다음에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융사(摠戎使)에 소속되었으니 강도에 대해서는 실로 서로 의지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군정(軍情)을 들어 보건대, 모두 강도에 소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니, 하문(下問)하여 처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고, 이유도 또한, 이속(移屬)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하니, 임금이 이속시키도록 명하였다. 또 통진에 있는 읍(邑)을 문수산성으로 옮기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하문하자, 조태로가 아뢰기를, "성안이 아주 협하고 또 우물이 적으니, 고을을 옮김은 불편합니다."하고, 이유는 고을을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임금이 고을을 옮기기로 확정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본문중략〉

【영인본】40책 469면 【분류】*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군사-관방(關防)/*군사-군역(軍役)/*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탄핵(彈劾)

32)경기 수군의 일을 명하다

◇ 숙종 54권, 39년(1713 계사/청 강희(康熙) 52년) 11월 6일 경술 1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장문(狀聞)으로써 명하기를, "통진(通津) 수군(水軍) 1백2명을 부평(富平)으로 이정(移定)하고, 안산(安山)의 93명을 본도(本道)에 그대로 두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0책 520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33)강화도의 형편에 대해 강화유수 권성이 올린 소장의 내용

숙종 61권, 44년(1718 무술/청 강희(康熙) 57년) 4월 1일 기묘 6번째기사

강화유수(江華留守) 권성이 소장을 올려 본도(本島)의 형편을 논하기를,

〈본문중략〉

월곶이[月串] 이상에서 휴암 이하까지에 축조한 성은 조수에 충격을 받아 여장(女墻)과 더불어 파괴되어 떨어져 나갔으니, 개축하거나 부서진 곳을 보완하는 일은 결단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삿일이 바야흐로 한창이어서 백성들을 동원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지금 각창(各倉)의 회계(會計) 이외의 나머지 미곡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역사를 일으키되, 먼저 토성(土城)을 쌓아 그것이 완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여장(女墻)을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문수산성(文殊山城)의 일에 대해 삼가 개탄스럽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성의 설치는 처음 임금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축성한 뒤에 다시 조치(措置)한 적이 없어 군병(軍兵)도 많지 않고 기계(器械)도 준비되지 않고 양향(糧餉)도 부족한 등 어느 한 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정(閑丁)을 얻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군병(軍兵)을 첨가하여 주는 데 있어 실로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김포를 아울러 부평(富平)에 예속시키는 것은 크게 긴요한 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 김포를 통진(通津)에 이속시켜 협력하여 수비하게 한다면 일푼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향에 이르러서는 조정에서 전에 지급한 것이 또한 1천여 석에 이르렀습니다만, 염산(斂散)이 마땅하게 되지 못하고 간리(奸吏)들이 용사(用事)한 탓으로 그 태반이 귀록(鬼錄)에 기입되어 있어 성에 속한 요미(料米)가 지금 바야흐로 부족한 형편이므로 형세가 숫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통진에 맡긴다면 구부(舊套)를 그대로 답습할까 염려됩니다.

산성별장(山城別將)을 각별히 선택해서 임명하고 인신(印信)을 만들어 주어 조적과 기계(器械)를 수리하고 보충할 수 있게 한다면 본부(本府)에서 미곡과 금전을 적당하게 헤아려 별장(別將)에게 내주고 그로 하여금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식을 취하여 요량하여 개수(改修)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포(火砲) 등의 물건은 본부(本府)에서 참작하여 이급(移給)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하였다.

임금이 그 소장을 묘당(廟堂)에 내렸는데, 묘당에서 복주(覆奏)하기를, "홀돈대[土墩]를 더 설치하고 양암과 갈곶이를 혁파하자는 의논에 대해서는 그 유례가 이

미 오래되었으니, 따로 중신을 파견하여 다시 간심(看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괴되어 떨어져나간 구성(舊城)은 더욱 급히 먼저 수리 보수해야 하는데, 이는 본부에서 수시로 살펴 선처하여 완전하고 공고하게 만들기를 도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문수산성에 대해 논의한 것은 진실로 의견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부평에 소속한 김포를 떼어내어 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별장(山城別將)은 병조에서 각별히 선택하여 임명하게 하소서. 인신을 만들어 주어 조적과 군향(軍餉)·기계(器械) 등 제반 일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모두 본부(本府)에서 선처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41책 13면 【분류】*군사-궐방(闕防)

34)군자감 정 김민주와 사과 이상성을 파직할 것을 사간원에서 청하니, 따르지 않다

숙종 63권, 45년(1719 기해/청 강희(康熙) 58년) 5월 17일 기축 3번째기사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사과(司果) 이상성(李相成)은 작년에 상서(上書)하여 자기를 탄핵(彈劾)하였던 대관(臺官)을 도리어 구함(構陷)하였으니, 풍습(風習)이 가증스럽습니다. 진실로 이는 천신(薦紳)의 수치(羞恥)인데도 도리어 뽐내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바가 없으니,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통진부사(通津府使) 박태도(朴泰道)는 문자(文字)를 해득(解得)하지 못하여 소장(訴狀)의 제사(題辭)를 오로지 하리(下吏)에게 위임(委任)하였고, 칙사(勅使)의 수용(需用)이라고 핑계대고서 가호(家戶)를 헤아려 돈을 받아들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고 서용하지 마소서."하였는데, 세자가 답하기를, "김만주(金萬胄)와 이상성(李相成)의 일은 논핵한 바가 자못 정도에 지나친데 관계된다."하였다.

후일에 발론(發論)한 대관(臺官) 김여(金礪)가 인피(引避)하면서 말하기를, "김만주가 염치(廉恥)와 의리(義理) 없음을 무릅쓰고 탄핵(彈劾)을 감내(堪耐)하면서 시험을 관장한 것은 진실로 진신(搢紳)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상성의 경우는 지난해 한 통의 상서(上書)가 공의(公議)에 버림을 받았고, 조사한 일이 허투(虛套)로 돌아갔는데, 죄벌(罪罰)을 요행히 면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처(自處)하는 도리에 있어서 오직 물러가 엎드려 허물을 반성해야 할 것인데, 전후의 시임(試任)에 득의양양(得意揚揚)하여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신이 논핵한 바도 참작(參酌)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하고, 인하여 물러가 기다렸는데, 사간(司諫) 조언신(趙彦臣)이, '뒤따라 논핵(論劾)을 가하는 것이 이미 공심(公心)이 못되는데, 억지로 허투로 돌아갔다고 한 것은 더욱 매우 그릇된 것이다.' 라고 처치(處置)하여 김여를 체차(遞差)하기를 청하니, 세자(世子)가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41책 67면 【분류】*정론-간쟁(諫爭)/*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

35)통진 부사 박태도를 파직시키다

숙종 63권, 45년(1719 기해/청 강희(康熙) 58년) 5월 22일 갑오 1번째기사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언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니, 세자가 다만 박태도(朴泰道)의 일만 따랐다.

【영인본】41책 68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

36)비국을 인견하여 북한 산성의 수축과 삼남에 순무 파견하는 일을 논하다

숙종 2권, 1년(1675 을묘/청 강희(康熙) 14년) 1월 24일 계미 2번째기사

37)김포유학 이만형이 재이에 대하여 올린 상소

숙종 3권, 1년(1675 을묘/청 강희(康熙) 14년) 4월 26일 갑인 2번째기사

38)평안 감사 이세화가 본도를 순행하여 살핀 바를 열거하여 아뢰다

숙종 12권, 7년(1681 신유/청 강희(康熙) 20년) 11월 27일 병자 1번째기사

39)사균 개적 등에 관하여 영의정 유상운이 아뢰다

숙종 31권, 23년(1697 정축/청 강희(康熙) 36년) 6월 3일 신해 1번째기사

40)대사간 한성우가 절검과 김만근의 일에 대하여 소를 올리다

숙종 39권, 30년(1704 갑신/청 강희(康熙) 43년) 7월 8일 병오 2번째기사

41)여주 유학 심일녕이 매부 이만운이 그 누이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호소한 옥사

숙종 50권, 37년(1711 신묘/청 강희(康熙) 50년) 9월 2일 무자 2번째기사

42)경기의 재결에 결마다 수미를 3두씩 감하도록 하다

숙종 51권, 38년(1712 임진/청 강희(康熙) 51년) 1월 10일 갑오 1번째기사

43)연은문 패서사건에 관한 서종철 · 윤메의 국문내용

숙종 53권, 38년 11월 15일(갑오) 1번째기사

44)대신들이 송도 총융청의 군수보 사용의 폐단과 《가례원류》의 간행 등에 대해 논하다

숙종 53권, 39년(1713 계사/청 강희(康熙) 52년) 5월 20일 병신 1번째기사

20. 경종실록

1)양사에서 탐학한 김포군수 이서태와 전 병사 이휘 등을 삭거 사판할 것을 청하다

- 경종 10권, 2년(1722 임인/청 강희(康熙) 61년) 12월 15일 병인 2번째기사

양사(兩司) 【사간(司諫) 이진순(李眞淳)·지평(持平) 김시엽(金始燁)이다.】에서 합계(合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간원(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김포군수(金浦郡守) 이서태(李瑞泰)는 더 많이 보고한 재결(災結)이 2백 결(結)에 이르렀는데, 민간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 수량이 매우 적었으며, 잡역(雜役)으로 징수한 돈이 전에 비하여 갑절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선(敗船)의 중미(拯米) 수백석을 가려 두고, 썩어서 상한 남은 쌀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는 실속없이 성책(成册)하며 그 사용(私用)한 자취를 엄폐하였습니다. 이른바 가려 둔 수백 석은 간 곳이 명확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탐학(貪虐)하고 불법(不法)한 사람은 자목(字牧)의 직임에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

전(前) 병사(兵使) 이휘(李暉)는 일찍이 옹곤과 유읍을 역임하면서 오로지 가렴주구(苛斂誅求)하여 제몸을 살찌우는 것만 일삼고, 집에 전포(錢布)를 쌓아 둔 채 불쓰듯 하였습니다. 널리 점유한 전토(田土)가 경기·충청도에 퍼져 있는데, 아직도 아정(阿鼎)에 안치(按治)하는 법에 벗어나 있으니, 오래도록 물정(物情)의 분완을 초래하였습니다. 작년에 무소(武所)에서 시강(試講) 할 즈음에는 그가 친한 사람과 뇌물(賂物)을 보낸 사람은 정(丁)자조차 알지 못하는 자도 모두 다 통(通)을 매기고, 그 나머지 본시 모르는 사람은 비록 잘 독해(讀解)하더라도 문득 반드시 조(粗)를 매겼으므로, 중외(中外)의 원망과 비방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카를 양자를 삼아 데려다 기른 지 십수 년이 지난 뒤에 양자의 동생인 이제항(李齊恒)이 문과(文科)에 등제하자, 이제항을 양자로 고치려고 하였으니, 놀랍고 가증스러운 자취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탐도하며 불법(不法)하고 의리를 어겨 윤기(倫紀)가 없는 사람은 용원(戎垣)의 장병(將兵)의 반열에 둘 수 없으니,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

재해(災害)로 군포(軍布)를 견감한 것은 실로 조정의 진휼(軫恤)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으나, 외방(外方)의 영문(營門)에서 더러 일체(一體)로 봉행(奉行)할 수가

없습니다. 각 영문(營門)에서 상납(上納)하는 것은 장령(將令)에 의하여 감하여 받고, 영문에 소속된 진졸(鎭卒)에게는 다 2필(匹)을 받는데, 이와 같이 구별(區別)하여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으니, 지극히 놀랄 만한 것입니다. 또 황해 병영(黃海兵營)에서 진졸(鎭卒)의 군포(軍布)를 강제로 세목(細木)으로 받는 것은 이미 잘못된 규례입니다. 2필을 판비하는 값이 6냥 전(錢)에 이르는데, 이는 곧 3필(匹)의 역(役)이 되어 배(倍)나 감당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각도와 해영(該營)에 분부(分付)하여 재년(災年)의 진졸의 군포는 한결같이 서울에 바치는 예에 의하고, 감징(減徵)하는 승수(升數) 또한 서울에 바치는 예에 의하여 수봉(收捧)하는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여 민폐(民弊)를 제거하소서."하니, 말단(末端)의 세 가지 일만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41책 270면 【분류】*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군사-군역(軍役)

21. 영조실록

1)민진원의 정사로 심택현 외 14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영조 3권, 1년(1725 을사/청 옹정(雍正) 3년) 1월 23일 임술 1번째기사

심택현(沈宅賢)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박사익(朴師益)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정호(鄭皓)를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이교악(李喬岳)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김동필(金東弼)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권업을 우윤(右尹)으로, 신방(申昉)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중협(李重協)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신임을 혜민서제조(惠民署提調)로, 정호를 장원서 제조(掌苑署提調)로, 이의현(李宜顯)을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로, 이의록(李宜祿)을 김포군수(金浦郡守)로, 신사적(申思迪)을 평강현감(平康縣監)으로, 황유후를 교하현감(交河縣監)으로, 김상훈(金相勛)을 삭녕군수(朔寧郡守)로, 홍우제(洪禹濟)를 부평부사(富平府使)로 삼았는데, 이조 판서 민진원의 정사였다.

【영인본】41책 46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2)성유열 등 5인에게 급제를 내리다

- 영조 9권, 2년(1726 병오/청 옹정(雍正) 4년) 2월 22일 을유 8번째기사

성유열(成有烈) 등 5인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 숙종(肅宗)의 어용(御容)을 강도(江都)에 봉안(奉安)하고, 임금이 그 지방민(地方民)을 위한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중신(重臣) 이병태(李秉泰)를 보내 교통(喬桐)에서 과시(科試)를 보이니, 통진(通津) 사람도 아울러 과장(科場)에 나아갔다.

【영인본】41책 583면 【분류】*인사(人事)/*왕실(王室)

3)권이진 · 호서 부임을 꺼린 수령 이수신 · 통진부사 이완을 논한 허옥의 상소

영조 30권, 7년(1731 신해/청 옹정(雍正) 9년) 12월 25일 갑인 3번째기사

사간 허옥(許沃)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권이진(權以鎭)은 경재(卿宰)가 된 몸으로 시골에서 넉넉하게 살면서 다만 곡물(穀物)에 대해 인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언사(言辭)가 해괴하고 패망하였으니, 마땅히 그 관직을 삭탈하고 그 곡식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호서(湖西)의 쇠잔한 고을을 싫어해 회피한 사람은 마땅히 무겁게 책벌(責罰)을 가해야 하며, 이기헌(李箕獻)이 논핵한 이수신(李守身)의 일은 한 번 조사를 거쳐서 그 허실(虛實)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먼저 이수신을 잡아다 문초하여 핵실하여 치치하소서.

통진부사(通津府使) 이완(李莞)은 일찍이 군읍(郡邑)을 다스렸는데 이미 해괴한 행위가 많았고, 또 그 이력(履歷)이 이 고을에 합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그 직(職)을 체직시켜 바꾸어야 합니다."하니, 비답하기를, "권이진의 일은 거조(擧措)가 진실로 지나치니 파직시키도록 하되, 애당초 조정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니, 하필 그 곡식을 되돌려 줄 것까지야 있겠는가?

호남 고을의 수령들에 대해서는 이미 문비(問備)를 행하였으니, 하필 추가로 문책할 것까지 있겠는가? 이수신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이완의 일은 사조(辭朝)한 지가 얼마 안되니, 마땅히 시험해 보는 것이 옳으며, 자주 체직시키는 것은 아마 민폐(民弊)를 끼칠 것이다."하였다.

대개 권이진이 공주(公州)에 사는데, 어사(御史) 황정(黃晸)이 장곡(庄穀)을 억지로 분배하여 사고(私庫)를 봉(封)하는 데까지 이르자, 권이진이 '이미 재연(宰列)에 있었으니 부민(富民)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사고를 봉하는 조처를 하고 억지로 분배하는 명령을 하는 것은 조정의 체모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편지를 보내 황정을 책망하였는데, 그 말이 화평을 잃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대간(臺諫)의 상소에서 언급하게 된 것이다.

【영인본】42책 292면 【분류】*정론-정론(政論)/*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탄핵(彈劾)/*재정(財政)

4)김동필이 문수 산성의 방어를 위한 대책을 건의하다

- 영조 37권, 10년(1734 갑인/청 옹정(雍正) 12년) 2월 20일 병인 3번째기사

강화유수(江華留守) 김동필(金東弼)이 문수산성(文殊山城)이 강도(江都)를 굽어보고 있는데, 수비(守備)가 단약(單弱)하여 적에게 점거당하기 쉽다는 것을 이유로 통진(通津)의 부치(府治)를 문수(文殊)로 옮겨 단독의 진(鎭)으로 만든 다음 덕포진(德浦鎭)을 거기에 예속시키게 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양천(陽川)·김포(金浦)를 합쳐 양천의 현치(縣治)에다 하나의 웅부(雄府)를 설치한 것을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영인본】42책 421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군사-군정(軍政)

5)대신 및 여러 신하들과 차사원, 수령들을 불러 대동미를 특별히 감할 것을 분부하다

- 영조 39권, 10년(1734 갑인/청 옹정(雍正) 12년) 9월 15일 정해 1번째기사

임금이 장릉(章陵)에 거둥하여 김포군(金浦郡) 관사(館舍)에서 유숙하였다. 밤에 대신(大臣) 및 여러 신하들과 차사원(差使員), 수령(守令)들을 인견하고 분부하기를, "신미년에 선조(先朝)께서 시행한 전례에 의하여 지방관(地方官) 및 병참읍에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물어 올 가을에 새로이 받을 대동미(大同米)에서 매결(每結) 2두(斗)씩을 특별히 감하도록 하라. 그리고 지방관은 또 숙소(宿所)의 역(役)을 담당했으니, 더욱 고휼(顧恤)함이 마땅하다. 올 봄에 정퇴(停退)한 대동미를 또한 견감하고 그 밖에 연조(年條)가 오래 되어 탕감할 만한 것은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2책 453면 【분류】*왕실-행행(行幸)/*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재정-공물(貢物)

6)김포군에 있는 조헌의 서원과 윤섬 · 윤계의 묘소 등에 치제할 것을 명하다

영조 39권, 10년(1734 갑인/청 옹정(雍正) 12년) 9월 15일 정해 2번째기사

김포군(金浦郡)에 있는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의 서원(書院)과 증(贈) 영의정 윤섬(尹暹) · 증 판서(判書) 윤계(尹棨) 의 묘소와 파천현(果川縣) 장빈(呂嬪) 안씨(安氏)의 묘소, 육신사(六臣祠)와 금천현(衿川縣) 명빈 박씨(朴氏)의 묘소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다. 또 몸소 제문(祭文)을 짓고 금천현 연령군(延齡君) 현의 묘소에 근시(近侍)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영인본】42책 453면 【분류】*풍속-예속(禮俗)/*인사-관리(管理)

7)김포에서 유생들의 학문을 독려하고, 본군의 향교에 위전을 획급하도록 명하다

영조 39권, 10년(1734 갑인/청 옹정(雍正) 12년) 9월 16일 무자 2번째기사

대가(大駕)가 김포(金浦)에 이르자 고을의 여러 유생(儒生)을 불러 보고 성현(聖賢)을 존중히 여기며 경전(經傳)을 독실히 강습(講習)하라고 면려하였다. 그리고 본군(本郡)의 향교(鄕校)에는 유독 위전(位田)이 없으므로 도신(道臣)에게 규례에 의하여 획급(劃給)하도록 명하였으며, 또 기로(耆老)에게 식물(食物)을 하사하고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였다.

【영인본】42책 453면 【분류】*왕실-행행(行幸)/*왕실-사급(賜給)/*농업-전제(田制)/*윤리-강상(綱常)/*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사법-행형(行刑)

8)민택수가 통진 부사 유동무 등이 땔나무를 뇌물로 쓴 것 등을 아뢰다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청 건륭(乾隆) 1년) 10월 13일 계유 1번째기사

정언 민택수(閔宅洙)가 상소하여 논하기를, "통진부사(通津府使) 유동무(柳東茂)는 배를 빼앗아 땔나무를 운반하여 뇌물로 바쳤으며, 영암군수(靈巖郡守) 윤하는 전에 호남의 두 고을을 맡았을 적에 1천여 결(結)을 재결(災結)로 만들어 도용(盜用)했으므로 남쪽 고을 사람들이 적쉬라고 지목하고 있으니, 모두 삭직(削職)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진달한 수령은 이미 치효(治效)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영인본】42책 521면 【분류】*정론(政論)/*인사(人事)/*재정(財政)/*사법-탄핵(彈劾)/*교통-수운(水運)

9)양역의 폐단을 막기 위해 양정 어사를 파견하는 일을 의논하다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청 건륭(乾隆) 1년) 10월 27일 정해 1번째기사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양정어사(良丁御史)를 품지(稟旨)하여 발송하려 하고 있는데, 외부의 의논은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도 하니, 먼저 아주 심한 고을에만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이는 임금을 대신해서 여러 고을을 순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 기읍(畿邑) 가운데 풍덕·김포(金浦)와 호서의 아주 심한 고을에 우선 먼저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두서너 고을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이 어찌 수성(修省)하는 도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영인본】42책 522면 【분류】*왕실-국왕(國王)/*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10)황해도 장연부에 11월 23일 천둥이 치고, 경기 등지에 천둥이 치다

영조 42권, 12년(1736 병진/청 건륭(乾隆) 1년) 12월 4일 계해 1번째기사

황해도 장연부(長淵府)에 11월 23일 크게 천둥하였고, 경기의 부평(富平)·인천(仁川)·김포(金浦)·양천(陽川) 등 고을에는 이달 초1일 오시(午時)에 햇빛이 어두침침하면서 크게 천둥하였다.

경상도의 영해부(寧海府)에는 10월 초5일 밤에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 노도(怒濤)가 하늘에 닿을 듯이 소용돌이쳐서 해변의 촌락이 물에 뒤덮인 곳이 많았으며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벼락이 크게쳤다.

영덕현(盈德縣)에는 10월 초6일에 천둥하며 벼락이 크게 쳤고, 사천현(泗川縣)에서는 10월 17일에 천둥하고 벼락이 크게 치면서 비가 내렸으며, 성산현(星山縣)에서는 11월 19일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는데 천둥 소리 같았다.

【영인본】42책 528면 【분류】*과학-천기(天氣)

11)태복시 주원의 낭관은 김취로와 인척이므로 다시 조사하자는 이우하의 상소

영조 45권, 13년(1737 정사/청 건륭(乾隆) 2년) 9월 27일 임자 3번째기사

호군(護軍) 이우하(李宇夏)가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이 망령되게 한 소를 올려 김취로(金取魯)의 세 가지 일을 비방해 논한 데 대하여 엄히 조사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태복시(太僕寺)와 주원(廚院)의 두 낭관은 모두 김취로의 인척(姻戚)이어서 그 위세를 두려워해 곧바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니, 아!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공선(御供船) 한 조항은 신이 일찍이 위어소(葦魚所) 어부(漁夫)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제 그가 공초한 바는 분명 정상을 숨김이 있으니, 만약 다시 임자년 이후의 어관(漁官)에게 조사해 물으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교마(駕轎馬) 한 조항은 신이 상소를 할 때 마적리(馬籍吏) 이유장(李裕昌)을 불러서 물으니, '변마(邊馬) 1필을 곧바로 김포(金浦) 늑방교(勒防橋) 가에서 바쳤는데 변마는 교마(轎馬)와 서로 교대해 어승(御乘)에 쓴다.' 고 하였으니, 다른 아전과 헌부의 노복(奴僕)들도 모두 참여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마(卜馬)의 첩(帖)을 주었다는 말은 어찌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복마는 한번 나가면 원래 들어오는 규정이 없으니, 다시 바쳤다는 말 역시 아주 근거가 없습니다.

금오랑(金吾郎)의 공초에 이르러서는 바로 김취로의 전번 소 가운데 있는, '말에서 떨어졌다.' 는 등의 말을 가지고 부합시켰습니다마는, 김취로는 성문 밖에서 유숙하여 원래 말을 탄 일이 없으니, 어찌 말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겠습니까? 아! 신의 전번 상소가 올려지기 전에 먼저 누설되어 김취로가 당로(當路)에 애걸하여 만류하고 두 번씩이나 그 집 사람을 보내어 조용히 말하였으니, 그의 방자하고 곤궁에 처한 정상은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신의 이 소를 내려 다시 그 실상을 구핵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우하가 진달한 이유장을 해조로 하여금 사문(査問)하여 아뢰도록 하라. 예조판서가 성문 밖에 나갈 때 말을 탔는지 가마를 탔는지도 나졸(羅卒)을 사문(査問)하여 아뢰고, 원소(原疏)는 정원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 하였다.

【영인본】42책 571면【분류】*정론-정론(政論)/*교통(交通)/*사법-탄핵(彈劾)/*사법-재판(裁判)/*재정-상공(上供)

12)사간 심성진이 용천부사 정세장 · 통진부사 이진환 등의 개차를 청하다

영조 47권, 14년(1738 무오/청 건륭(乾隆) 3년) 7월 15일 음축 2번째기사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사간원에서 【사간 심성진(沈星鎭)이다.】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금오랑(金吾郎)은 음로(蔭路)의 청선(淸選)인데, 임환과 이필(李珌)은 모두 천얼(賤孼)로서 매술(賣術)하는 무리인데도 또한 의망(擬望) 받았으니, 마땅히 전조(銓曹)의 당상을 추고(推考)해야 합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용천부사(龍川府使) 정세장(鄭世章)은 전혀 이력이 없고, 통진부사(通津府使) 이진환(李震煥)은 용렬하여 어리석고, 강령현감(康翎縣監) 상이창(尙履昌)은 사람됨이 너무도 잔약하니, 아울러 개차(改差)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정세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자,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정세장은 일찍이 아산(牙山)을 맡았을 적에 잘 다스려서 승자(陞資)되었고, 또한 십고십상(十考十上)에 들었습니다."하고, 이조판서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일찍이 표리(表裏)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진환을 물으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일찍이 이진환을 보았는데 자못 작책을 거행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고, 형조판서 김시형(金始炯)이 아뢰기를, "신이 영남 방백으로 있었을 때 이진환이 진주영장(晋州營將)에서 과만(瓜滿)하여 체직되었으므로, 신이 그의 재질을 애석하게 여겨 전관(銓館)에게 서신을 보냈었는데, 이어 칠곡(漆谷)에 제배되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간관(諫官)과 재상(宰相)이 서로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마당에 비록 대신이 혹시 말이 있었다 하나, 이조판서와 형조판서가 어찌 감히 비답이 내리기도 전에 분소(分疏)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추고(推考)하도록 하라. 대관(臺官)이 아뢴 말은 그대로 윤허한다."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정희보(鄭熙普)의 상소에 이른바 '만일 수창한 사람을 형벌한다면, 많은 선비들이 반드시 함께 죄 받기를 청하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어찌 앞질러 이런 말을 하여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야기(惹起)할 수 있겠습니까 체차(遞差)하는 데 그칠 수 없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42책 600면 【분류】*왕실-국왕(國王)/*인사-관리(官吏)/*인사-임면(任免)/*인물(人物)/*정론-간쟁(諫諍)/*사법-탄핵(彈劾)/*신분(身分)

13)전 대사성 심성희가 김포 등 여덟 고을의 전결 세금을 면세시켜 줄 것을 청하다

- 영조 52권, 16년(1740 경신/청 건륭(乾隆) 5년) 12월 3일 기해 1번째기사

전 대사성 심성희(沈聖希)가 본관의 물력(物力)이 조잔(凋殘)하다 하여 상소하여 김포(金浦) 등 여덟 고을의 전결(田結)에서 내는 세금을 도로 면세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계(覆啓)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뒤에 호조 에서 곤란하다고 복계한 것으로 인하여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영인본】42책 689면 【분류】*재정-전세(田稅)/*재정-국용(國用)/*정치-중앙정치(中央行政)

14)조명건이 기근에 안일했던 윤용 등을 벌주기를 청하다

영조 57권, 19년(1743 계해/청 건륭(乾隆) 8년) 1월 9일 갑자 5번째기사

정언 조명건(趙明健)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북로(北路)는 기근이 거듭 든데다가 전염병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때에 안찰(按察)하는 관원은 참으로 여러 방면으로 구획(區劃)해 주휼하고 안정시키며 보호하는 방도로 삼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경감사 윤용(尹容)은 작년의 진정(賑政)이 이미 지극히 조잡하고 허술하였으므로 비방을 크게 불러 일으켰으며, 지금처럼 근심거리가 눈에 가득한 날에 이르러서는 팔짱을 끼고 편안히 앉아 있으면서 별달리 시설(施設)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사(政事)는 총애하는 편비(偏卑)에게 내맡겨 드리에 어긋난 일이 많으니, 체개(遞改)를 명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세도(世道)가 점차 떨어져 관방(官方)이 갈수록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전 참의(參議) 김우철(金遇喆)은 누차 주군(州郡)을 맡았는데, 오로지 궤휼과 거짓을 행하여 그 추비하고 탐오(貪汚)한 정상을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 추세(趨勢)를 타서 후한 뇌물을 썼기에 외람되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얻어 곧 쓸 만한 사람이 되었으니, 전후의 통의(通擬)는 남우가 아님이 없습니다. 마땅히 사판(仕版)에서 깎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곤수(坤帥)의 직책은 책임이 심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통진부사(通津府使) 이의풍은 북관(北關)에서 당한 바가 비록 뜻하지 아니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무수(武帥)가 되어 아녀자의 손에 찔려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겁이 많고 형편없이 무능하여 융원(戎垣)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므로, 해곤에 차견(差遣)한 것이 이미 물정(物情)에 어긋났는데 통제사(統制使)에 수의(首擬)하였으니, 더욱 적절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다시는 곤수에 의망(擬望)하지 않음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윤용은 청백리(淸白吏)의 아들로 그 아비의 풍도가 있어 그 직무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였으며 기민(飢民)을 구제하였으니, 지금 논척(論斥)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김우철은 이치(吏治)에 부지런하였고, 이의풍이 지난 번에 논척받은 것은 또한 지나친 일이있다. 또 어찌하여 이 전례를 따른단 말인가? 마땅히 공정한 마음을 가지기에 힘써 새해와 더불어 함께 새로와지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3책 79면 【분류】*정론-장론(庄論)/*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인물(人物)

15)강화성의 축성과 문수 산성을 관방으로 만드는 일을 논하다

◎ 영조 57권, 19년(1743 계해/청 건륭(乾隆) 8년) 4월 5일 무자 2번째기사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 을 인견하였다. 이에 앞서 강화유수(江華留守) 김시혁이 벽돌을 구워 성(城)을 쌓는 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장신(將臣)에게 가서 살펴보라고 명한 적이 있었다. 훈련대장 김성응(金聖應)이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 그 형편에 대해 진달하기를, 〈본문중략〉

"문수산성(文殊山城)이 성 안을 굽어보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싸울 곳이 됩니다. 만약 통진부(通津府)를 문수산성으로 옮겨 한 진(鎭)을 만들고, 수목을 성 안팎에 심어 울연(蔚然)히 하나의 관방(關防)이 되게 한다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다시 대신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본 뒤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본문중략〉

【영인본】43책 97면 【분류】*왕실-국왕(國王)/*군사-군정(軍政)/*군사-관방(關防)/*인사-관리(官吏)/*외교-이(野)

16)바닷가에서 실농한 김포·통진이 북한산에 이전하는 쌀을 봄까지 연기시켜 주다

◎ 영조 60권, 20년(1744 갑자/청 건륭(乾隆) 9년) 11월 21일 갑오 5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바닷가에 있는 고을은 실농(失農)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김포(金浦)와 통진(通津)의 두 고을에서 북한산에 이전(移轉)하는 쌀은 마땅히 봄철까지 기다렸다가 갖추어서 바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43책 164면 【분류】*재정(財政)

17)비국당상이 모여 강화도의 길목에 있는 문수산성과 주위의 방비를 논하다

영조 61권, 21년(1745 을축/청 건륭(乾隆) 10년) 3월 11일 계미 4번째기사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신이 강도(江都)에 가는 길에서 문수산성(文殊山城)의 지형을 보았는데 밖은 좁고 안은 평평하며, 동쪽과 서쪽은 강이요, 북쪽은 철벽(鐵壁) 같은 높은 봉우리이며 남쪽은 치첩(雉堞)이 빙 둘렀기 때문에 신의 생각에는 통진(通津)을 독진(獨鎭)으로 하여 산성으로 읍(邑)을 옮기고 부평(富平)과 양천(陽川)은 합쳐서 한 고을로 삼는 것이 가할 줄로 여깁니다. 또 부평은 서쪽으로 해변(海邊)에 가깝고 돌곶[石串]은 진소(津所)로 삼아 첨사(僉使)를 둠이 마땅하니, 덕포첨사(德浦僉使)를 돌곶으로 옮긴다면 부평은 비록 이읍(移邑)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영상(領相)·우상(右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덕진(德津)은 인천(仁川) 땅에 있는데 당초에 설치한 뜻이 있으니 무기(武器)와 환곡(還穀)을 조처하여 수어(守禦)와 군량에 충분히 대비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은 각기 소견을 진달하도록 하라."하였다.

형조판서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강도(江都)는 효묘조(孝廟朝) 때부터 이미 보장(保障)의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문수산성은 고(故) 상신(相臣) 김석주(金錫胄)의 계사(啓辭)에, '만약 의자(椅子)에 앉아서 바둑판을 보는 듯하여 그 곳을 적이 점거하면 강도 사람들은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산성을 쌓았던 것인데, 신에게는 별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문수산성으로 이읍(移邑)하여 나무를 기른 후에 적이 점거해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든다면 장차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수목이 자라고 백성들이 조밀하게 살면 반드시 서로 다투는 땅이 되기 쉽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대로 두고 때에 임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하고, 송인명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도 역시 적을 길러주는 밑천이 될까 염려됩니다. 통진은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되었는데, 통진을 만약 잃으면 이는 강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하였으며, 이종성이 말하기를, "덕포(德浦)를 옮기는 일은, 갑곶(甲串)이 얼어붙어 뱃길이 막히면 광성(廣成)이 손돌목[孫石項] 아래에 있어 창졸간에 변란이 일어날 때 뱃길이 광성을 거치게 되니 당초 덕포(德浦)를 설치한 뜻이 있습니다.

덕진을 조치한 데에 대해서는 신의 의견 역시 이와 같으며, 양천(陽川)·부평(富平) 고을을 합치는 것은 신이 하고자 하던 바입니다."하고, 훈련대장(訓鍊大將) 김성응(金聖應)이 말하기를, "강화(江華)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면 문수산성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한 별장(別將)으로서 지키게 한다면 매우 허술하니 군정(軍丁)을 만약 변통한 수만 있다면 통진을 독진(獨鎭)으로 하여 고을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산성(山城) 안에는 끝내 배치하기 어렵고 성 밖 장항(獐項)이 넓어 고을을 수용할 수 있고, 만약 위급한 일을 당하면 산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호조판서 서종옥(徐宗玉)이 말하기를, "삼군문(三軍門)에서 성을 쌓을 때 도형(圖刑)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 모두가 '문수산성은 반드시 다툴 땅이 되는데 외따로 떨어진 성에 후원(後援)이 없으면 곤란하다.' 라고 하였으니, 통진을 독진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읍기(邑基)는 장항(獐項)이 좋지 않아서 1년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진부사(通津府使)에 중군(中軍)이 있으니 만약 군졸을 조련하여 성을 지킬 방도를 하게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제 만약 양천과 부평을 합친다면 군정(軍丁)을 변통할 길이 있으니, 통진을 독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에는 대선(大船)이 4척에 불과한데 삼남(三南)에 있는 배가 1백 척에 가까우니, 만약 조운(漕運)한 후에 올려 보내고 바람이 높을 때에는 강화에 머물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공조판서 유엄(柳儼)은 말하기를, "문수산성은 수목을 기르기가 어렵고 수유현(水踰峴)은 바로 천험(天險)의 요새이니 만약 5리의 성을 쌓으면 관부(官府)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천을 공암(孔巖) 진두(津頭)에 둔 것은 오로지 강도 땅을 위해서인데, 불행하게도 병자년 같은 변이 있게 되면 나루에 배가 없으니 어떻게 급히 건너겠습니까 나룻배 10여 척을 양화도(楊花渡)에서 더 준비해 내야 합니다."하였다. 어영대장(御營大將)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수성(守城)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방도가 있으니 장수(將帥)·군사(軍士)·지형(地形)·기계(器械)·양식(粮食)이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수성을 하기가 어려운데 주위 2백 리나 되는 성 안을 채우지 않고서 다만 빈 성만 쌓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수성하는 방도는 마땅히 윤탁(尹鐸)이 그 호수(戶數)를 줄인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유수(留守)를 문득 명관(名官)이 승자(陞資)하는 제제(階梯)를 삼거나 아니면 나이 든 재상(宰相)이 병을 요양하는 장소를 삼아 이렇게 자주 교체되니, 어떻게 성을 지키겠습니까 만약 수성을 하고자 한다면 성을 지키고 성을

쌓은 만한 자를 가려서 오래 재임시켜 혹 10여 년, 혹은 5, 6년을 한정해 효과를 이루기를 책임지워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관방(關防) 에 관계되니, 통진부사(通津府使)를 불러서 절목(節目)을 만들어 후일 등대(登對)할 때에 강정(講定)하는 것이 마땅하겠다."하였다.〈본문중략〉

【영인본】13책 177면 【분류】*군사(軍事)

18)어영 대장 박문수가 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다

영조 61권, 21년(1745 을축/청 건륭(乾隆) 10년) 4월 25일 정묘 1번째기사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보다 앞서 어영대장(御營大將) 박문수(朴文秀)를 보내어 강도(江都)를 간심(看審)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복명하여 형편을 두루 진달하기를, "전에 비록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치욕을 당했지만 만약 한때의 적을 피하려면 남한 산성이 더 좋으며, 만약 지구책(持久策)을 쓰려면 강도가 조금 낫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이미 살펴 보았으니 방략(方略)을 지획함이 옳다."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천시(天時)는 지리(地理)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도리를 생각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너진 성첩(城堞)이 얼마나 되는가?"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50여 리의 성 가운데 단지 4리 남짓만 무너졌습니다."하고,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김시혁이 70세가 된 늙은 신하로서 이 중대한 역사를 완료했으니, 비록 조금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정성이 가상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어떠한가?"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바로 금성탕지(金城湯池)입니다.

비록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도성(都城)은 비릴 수 없습니다. 만승(萬乘)의 나라로서 어찌 한 성을 지켜 보장(保障)의 장소를 두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수산성(文殊山城)을 만약 수호한다면 강도의 외원(外援)이 되겠는가?"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통진(通津)을 독진(獨鎭)으로 삼아 문수산성을 수호하게 하여 혹 위급한 일이 있게 되더라도 그대로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강도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실로 안팎이 서로 호응하는 형세가 있겠습니다."하였다.

【영인본】43책 180면 【분류】*군사(軍事)

19)통진의 읍치를 문수산성으로 옮기고, 육상궁에 억매된 장연의 민전을 내어주도록 청하다

영조 63권, 22년(1746 병인/청 건륭(乾隆) 11년) 2월 15일 신해 1번째기사

장령 박첨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통진(通津)의 읍치(邑治)를 문수산성(文殊山城)으로 옮겨 강도(江都)의 방어가 되게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장연(長淵)의 민전(民田) 가운데 육상궁(毓祥宮)에 억매(抑買)된 것은 일체 아울러 도로 내어주게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첫 번째 일은 이미 강구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의 일은 도신에게 분부하여 그 폐단을 엄히 징계하도록 하겠다."하였다.

【영인본】43책 204면 【분류】*정론-정요(政要)/*농업(農業)/*군사-관방(關防)/*사법(司法)

20)통진의 전 부사 이은춘에게 말을 내려주다

영조 67권, 24년(1748 무진/청 건륭(乾隆) 13년) 4월 22일 을해 2번째기사

수원부사(水原府使) 송수형(宋秀衡)을 체포하여 하옥하고, 통진(通津)의 전 부사 이은춘(李殷春)에게 말을 내려 주었는데, 암행어사 권승(權崇)의 회주(回奏)로 인하여 이 명이 있게 되었다.

【영인본】43책 289면【분류】*왕실(王室)/*행정(行政)/*인사(人事)/*사법(司法)

21)경기 암행 어사 권승이 돌아와 통진 · 교하 · 양성의 수령들을 논죄할 것을 아뢰다

영조 68권, 24년(1748 무진/청 건륭(乾隆) 13년) 7월 20일 임인 2번째기사

경기 암행어사 권승(權崇)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통진(通津) · 교하(交河) · 양성(陽城) 세 고을에서는 군보(軍保)를 어린아이로 충정(充定)시켰는가 하면 도망한 사람에 대한 기한이 넘었는데도 보충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찼는데도 아직도 노제(老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이 법 밖에 관계되는 것이니, 진후 수령들을 아울러 논죄해야 합니다."하였다.

유사(有司)가 《속대전(續大典)》의 감등률(減等律)을 모방하여 이미 체직된 사람은 의금부에서 결장(決杖)하게 하고 직임에 있는 사람은 영문(營門)에서 결장하게 하였는데, 일에 좌죄(坐罪)되어 방태(榜笞)당한 사람이 18인이었다.

【영인본】43책 300면 【분류】*행정(行政)/*군사(軍事)/*사법(司法)

22)이이장이 김포와 남양에 암행하고 돌아와서 민간의 역질로 사망한 상황을 고하다

영조 70권, 25년(1749 기사/청 건륭(乾隆) 14년) 12월 13일 정해 5번째기사

경기어사(京畿御史) 이이장(李彛章)이 김포(金浦)와 남양(南陽)에 암행(暗行)하고 돌아와서 민간(民間)에서 역질(疫疾)로 사망한 상황을 말하니, 임금이 이를 민망히 여기고는 제도(諸道)에 하교하여 조세와 포적을 면제하게 하고 전 남양부사(南陽府使) 윤지태(尹志泰)와 전 김포군수(金浦郡守) 이광진(李光進)은 모두 잡아다가 처리하게 하였다.

【영인본】43책 357면 【분류】*행정(行政)/*사법(司法)/*재정(財政)

23)김포군 명화적의 난동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군수 윤득중 등을 잡아들이다

영조 77권, 28년(1752 임신/청 건륭(乾隆) 17년) 8월 3일 신묘 1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김포군의 명화적(明火賊) 수백명이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고서 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며 곳곳에서 도둑질을 하여 다친 사람이 많은데, 본군(本郡)에서 감영(監營)에 보고한 것이 지극히 더디었으니, 군수 윤득중(尹得中)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잡아오고, 감사(監司) 및 토포사(討捕使)는 중추(重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기찰(譏察)해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43책 459면 【분류】*사법(司法)/*인사(人事)

24)김포 군수 심영 · 영평 현령 이시건 등을 체차하다

영조 81권, 30년(1754 갑술/청 건륭(乾隆) 19년) 2월 1일 신사 1번째기사

진청(賑廳)의 쌀 2만 곡(斛)을 팔아서 경기 백성의 진자(賑資)에 보태는 것을 허락하고, 파주목사 신종하(申宗夏)에게 새서표리(璽書表裏)를 내리고, 고양군수 이석희(李錫禧) · 교하군수 유언탁(兪彦鐸)을 모두 승서(陞敍)하며, 김포군수 심영 · 영평현령(永平縣令) 이시건(李蓍建) · 적성현감(積城縣監) 이현경(李顯憬) · 포천현감 조명욱(趙明勗) · 양천현감(陽川縣監) 정찬교(鄭纘敎) · 개성경력(開城經歷) 이인호(李仁好)를 모두 체개(遞改)하라고 명하였다. 심흡사(審恤使) 한광조(韓光肇)가 아뢴 바에 따른 것이다.

【영인본】43책 513면 【분류】*구휼(救恤)/*인사(人事)/*행정(行政)

25)지평 정석천의 상서에 의해 통진 부사 · 포천 현감 등을 추문토록 하다

-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청 건륭(乾隆) 20년) 1월 14일 무자 4번째기사

지평 정석천(丁錫天)이 상서하여 논하기를, "통진부사(通津府使) 김양정(金養正)은 간활한 향리(鄕吏)와 부동(符同)하였으며, 포천현감(抱川縣監) 이도길(李道吉)은 오로지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만 일삼았으니, 청컨대 모두 삭직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왕세자가 모두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추문하게 하였다.

【영인본】43책 555면 【분류】*사법(司法)

26)삼강 어사 남태저 · 홍양한이 복명에 따라 폐단을 조치토록 하다

영조 89권, 33년(1757 정축/청 건륭(乾隆) 22년) 5월 23일 계축 2번째기사

삼강어사(三江御史) 남태저(南泰著) · 홍양한(洪良漢)이 복명하니, 임금이 통명전(通明殿)의 여차(廬次)에서 소견하였다. 남태저가 종신(宗臣) 서청수(西淸守) 축(蹴)이 이웃에 사는 박씨 성[朴姓]의 사람을 죽인 일을 아뢰니, 잡아다 추문(推問)하여 엄중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또 아산(牙山)에 살고 있는 홍호(洪暠)의 아들이 역적(逆賊) 이성의 딸로 본부(本夫)와 이이(離移)한 자와 몰래 간통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홍호의 자식은 정의현(旌義縣)에 형배(刑配)하고, 이성의 딸은 비(婢)로 삼아 절도(絕島)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홍양한이, 광흥수(廣興守) 이태상(李泰祥)이 지나치게 공인(貢人)의 종[奴]에게 곤장을 때려 죽이기에 이른 정상을 아뢰니, 해부(該府)에 명하여 엄중히 조사하게 하였다. 홍양한이 인하여 양창(兩倉)에 거짓으로 기록된 실상과 빙호(氷戶)에게 돈을 거두는 폐단을 아뢰니, 모두 낭관(郎官)을 잡아다 추문하도록 명하였다. 홍양한이 또 통진(通津) · 김포(金浦) · 양천(陽川) · 부평(富平) 등 고을의 유민(流民)이 강가에 와서 살며 저절로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호적에도 누락되었고 더러는 폐단을 일으킨다고 아뢰고, 한성부로 하여금 찾아 모아 입적(入籍)시키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은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의 백성들이다. 모두 모아서 경적(京籍)에 소속시키도록 하고, 네 고을의 수령은 잡아다 처분하도록 하라."하였다.

홍양한이 또 아뢰기를, "서잠실(西蠶室)이 한강(漢江)가에 있는데, 이는 바로 공상(公桑)의 중지(重地)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말라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인하여 그 지역 안에서 경작하고 있는데, 내시부(內侍府)에서는 그 지역의 지세(地稅)를 이롭게 여겨 또한 묻지 않으므로, 뽕나무 밭이 아주 없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자못 설치한 본 뜻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잠실(蠶室)은 후비(后妃)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궐 안에도 일찍이 잠판(蠶板)이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듣건대, 내시들이 뽕나무를 없애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신하보다 심하다. 특별히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고, 단지기[壇直]는 형배(刑配)하도록 하라."하였다. 또 강촌(江村)의 호강(豪强)한 사람을 정배(定配)하고 합몰(合歿)한 가호에 대하여 돌보아 구휼할 것을 아뢰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영인본】43책 649면【분류】*왕실(王室)/*사법-치안(治安)/*사법-행형(行刑)/*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재정(財政)/*호구(戶口)/*농업(農業)/*구휼(救恤)

27)김포군수 김근행이 권학에 힘쓰자 《소학》 1부를 내리다

◦ 영조 94권, 35년(1759 기묘/청 건륭(乾隆) 24년) 12월 21일 정유 3번째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어사 김응순(金應淳)이 아뢴 바에 의하면, 김포군수(金浦郡守) 김근행(金謹行)이 지성(至誠)으로 학문을 권장(勸奬)하였다고 하니, 《소학(小學)》 1부를 특별히 본군(本郡)에 하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용동(聳動)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4책 27면 【분류】*왕실-사급(賜給)/*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28)경기 암행 어사 김응순의 복명에 의해 수령들의 치적에 따라 상벌을 내리다

◦ 영조 96권, 36년(1760 경진/청 건륭(乾隆) 25년) 11월 12일 임자 6번째기사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김응순(金應淳)이 복명(復命)하였다. 금천현감(衿川縣監) 신희가 치적(治績)이 제일임으로써 승서(陞敍)하였고, 죽산부사(竹山府使) 이석유(李碩儒)는 치정(治政)이 하(下)에 있음으로써 파직하였으며, 광주부윤(廣州府尹) 원경렴(元景濂)은 환곡을 대신 돈으로 받았고, 통진부사(通津府使) 윤병연(尹秉淵)은 죄수를 사역한 것으로써 모두 나처(拿處)를 명하였으니, 암행어사의 아뢴 바에 인한 것이었다.

【영인본】44책 51면【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재정-역(役)/*재정-잡세(雜稅)/*금융-화폐(貨幣)

29)경기 통진의 백성이 물에 빠져 죽은 일을 강화 유수가 장문하다

◦ 영조 101권, 39년(1763 계미/청 건륭(乾隆) 28년) 3월 10일 정묘 1번째기사

경기 통진(通津)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은 일을 강화 유수(江華留守) 심성진(沈星鎭)이 장문(狀聞)하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

【영인본】44책 129면 【분류】*호구-이동(移動)/*구휼(救恤)

30)교동독운어사 이석재가 통진 · 김포에 환곡이 부족함을 진달하니 묘당에 명하여 구획하게 하다

영조 105권, 41년(1765 을유/청 건륭(乾隆) 30년) 1월 27일 계유 5번째기사

교동독운어사(喬桐督運御史) 이석재(李碩載)가 복명하여 통진(通津)과 김포(金浦) 양읍(兩邑)에 환곡(還穀)이 부족한 상황을 진달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구획(區劃)하여 주도록 하였다.

【영인본】44책 191면 【분류】*재정-국용(國用)/*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구휼(救恤)

31)양남에서 올라온 세선이 취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을 조사하게 하다

영조 105권, 41년(1765 을유/청 건륭(乾隆) 30년) 4월 3일 무신 2번째기사

이보다 앞서 양남(兩南)에서 올라온 세선(稅船)이 취재(取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정에서 여러 번 신칙하였으나 일부러 치패(致敗)시킨 자가 꼬리를 이었다. 서천(舒川)의 곡식 수천 곡(斛)이 또 통진(通津)지방에서 치패(致敗)되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선격(船格)을 일률(一律)로 다스려서 대증들을 깨우치게 하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짐을 마구 실었다는 것으로써 먼저 해당 군수를 귀양보내고, 어사 박사해(朴師海)를 보내어 가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영인본】44책 196면【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단핵(彈劾)/*저정-국용(國用)/*재정-역(役)/*교통-수운(水運)

32)진전의 재실에서 재거하다. 윤승렬을 김포로 귀양보내다

영조 105권, 41년(1765 을유/청 건륭(乾隆) 30년) 6월 7일 신해 1번째기사

임금이 진전(眞殿)의 재실(齋室)에서 재거(齋居)하였다. 몸소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서 향 · 축(香祝)을 전하였다. 대축(大祝) 윤승렬(尹承烈)이 공복(公服)을 벗고 전사청(典祀廳)에서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하여 윤승렬을 김포군(金浦郡)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영인본】44책 201면 【분류】*왕실-의식(儀式)/*사법-형형(行刑)

33)영의정 홍봉한이 통진읍의 산성을 옮기는 것 등의 사항을 아뢰다

○ 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청 건륭(乾隆) 30년) 10월 18일 경신 4번째기사

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훈련대장 구선복(具善復)이 강도(江都)의 목장과 문수산성(文殊山城)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와 아뢸에 미쳐서 말이 근간(懃懇) 함이 많았는데, 통진읍(通津邑)을 산성(山城)으로 옮기는 것과, 강화부(江華府)에서 수륙대장(水陸大將)을 겸하는 것과 김상목장(古祥牧場)에 제언(堤堰) 을 쌓아 물을 저장하는 것과, 목장안의 호환(虎患)에 대하여 군사를 내어 사냥하는 등의 네 가지 조건을 청함에 이르러서는 모두 경장(更張)에 관계되어 가벼이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장의 호환으로 말의 종자[馬種]가 장차 없어지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니,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사냥해 잡도록 함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또한 우리 백성이니, 어찌 바다를 건너 사냥을 하게 하겠는가 또한 그냥 둠이 가하다."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사간 이하술(李河述)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계청하기를, "단아(端雅)하고 정직한 선비를 극진히 선택하여 동궁을 보도(輔導)하는 방책을 다하게 하고 감포(減逋) · 분재(分災)한 고을을 엄중히 신칙하여 간리(奸吏)가 농간하는 습속을 방지하소서."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이어 녹비(鹿皮)를 하사하였다.

【영인본】44책 209면 【분류】*왕실-경연(經筵)/*왕실-사급(賜給)/*군사-군정(軍政)/*군사-관방(關防)/*재정-국용(國用)/*교통-마정(馬政)/*농업-수리(水利)/*과학-생물(生物)/*구휼(救恤)

34)수령들에게 조세에 대해 엄히 신칙하도록 하교하다

영조 107권, 42년(1766 병술/청 건륭(乾隆) 31년) 10월 9일 을사 1번째기사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하교하기를, "제도경차관(諸道敬差官)이 요즈음 단지 그 이름만 있고, '경(敬)'이라는 한 글자의 중함을 알지 못하면서 그 명예만 요구하려고 하여 경비(經費)만 탕갈(蕩竭)시키며, 그 이름만 취하려고 하여 몹소 담협(踏驗)하지 아니하고 단지 강제로 실(實)을 만든다. 아! 내가 비록 덕이 박할지라도 아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정사를 조금 아는데 맹랑(孟浪)하게 은혜를 베푸니, 어찌 참은혜라고 이르겠는가? 근래에 비총(比總)이 오로지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제도감사(諸道監司)를 모두 적임자(適任者)를 얻었으면 내가 마땅히 정섭(靜攝)하는 가운데에서도 근심이 없겠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도신(道臣)이 어찌 신칙하지 아니하겠는가마는, 수령(守令)은 팔도(八道)라고 하더라도 바로 3백 60고을이다.

옛사람의 말에, '사람이 요순(堯舜)이 아니면 일마다 어찌 다 잘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미 비총을 하였으면 일도(一道)가 스스로 고르게 분배(分排)되었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고르게 분배하였다고 이르지 말 것이다. 비총은 비록 고르다 하더라도 여러 고을은 오직 수령에게 달려 있다. 가까운 경기(京畿)로써 말하더라도 양천(陽川)은 그 결총(結總)은 혹시 많으나 빠진 것이 있고, 김포(金浦)는 그 결총이 과연 적으나 지나치게 비총(比總)한 것이 있으므로, 3백 60고을로써 통틀어 말한다면 원수(元數)에 모자람이 없으니, 도신(道臣)에게 폐단이 없고 경비(經費)에도 흠축(欠縮)이 없다고 이를 만하다.

아! 나의 늙은 나이에 어찌 사소(些小)하고 과분(過分)함을 계교하겠는가? 만약 혹시 재결(災結)에 해당함에도 재결에 들지 않은 것이 있어 비총 가운데 섞여서 들어갔다면, 경비는 비록 줄어짐이 없을지라도 외로운 백성들이 어찌 능히 구중(九重)에 호소하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이 마음이 어찌 놓이겠는가? 아! 3백 60주(州) 백성은 모두 옛 해에 사랑하고 가여워하던 백성인데, 혹시 수령의 잘못으로 인하여 만약 고르지 못한 폐단이 있으면, 어찌 늙은 나이에 백성을 위하는 뜻이겠는가? 분등(分等)이 지난 뒤에 마땅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근만(勤慢)을 염문(廉問)할 것이니, 이를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팔도에 분부하여 수령에게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4책 232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35)모화관에 행행하여 금군·훈국 등에게 편곤을 시예하다

영조 108권, 43년(1767 정해/청 건륭(乾隆) 32년) 5월 16일 기묘 1번째기사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행행하여 금군(禁軍)·훈국(訓局)·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기사(騎士)에게 편곤(鞭棍)을 시예(試藝)하였는데,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였다. 편곤에서 여섯 번을 맞힌 홍기창(洪起昌)·최중태(崔重泰)에게 가자하기를 명하였다. 이동백(李東白)에게 적량 침사(赤梁僉使)를 제수하였다.

기백(畿伯)과 충용사(摠戎使)를 잡아들이라 명하여, 수원 마군의 인로써 엄히 신칙하고 나졸(拿出)하였다. 환궁할 때에 김포(金浦) 백성 가운데 범필한 자가 있어, 응교 서명선(徐命善) 등이 청대하여 고원도사(考喧都事)의 정배(定配)를 청하고, 협련장(挾輦將)은 군율(軍律)에 의해 시행하기를 청하며, 범필한 사람은 형을 가하여 멀리 정배하기를 청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영인본】44책 251면 【분류】*왕실-행행(行幸)/*인사-관리(管理)/*사법-행형(行刑)/*군사-병법(兵法)

36)도승지 김응순이 함경 감사·강원 감사 등의 추고를 청하다

영조 111권, 44년(1768 무자/청 건륭(乾隆) 33년) 12월 15일 기사 2번째기사

도승지 김응순(金應淳)이 아뢰기를, "함경감사(咸鏡監司) 심수와 강원감사 이언형(李彦衡)의 계본(啓本) 가운데 수령(守令)·찰방(察訪)이 한 사람도 하고(下考)에 든 자가 없고, 통진부사(通津府使) 정여중(鄭汝曾), 김제군수(金堤郡守) 서일수(徐日修), 곡성부사(谷城府使) 유언술(俞彦述), 황주목사(黃州牧使) 김이장(金履長), 재령군수(載寧郡守) 이용중(李龍中), 안동부사(安東府使) 한필수(韓必壽), 영천군수(榮川郡守) 조덕호(趙德浩), 진보현감(眞寶縣監) 박상규(朴相圭), 이성현감(利城縣監) 남익초(南益初)는 부지런하였는데 하(下)에 점(點)하였으니, 전최(殿最)를 엄명(嚴明)하게 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청컨대 제도(諸道)의 도신을 추고(推考)하소서."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좌부승지 이한풍(李漢豊)이 아뢰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 정상순(鄭尙淳), 통제사(統制使) 이한응(李漢膺), 남병사(南兵使) 김범로(金範魯), 황해수사(黃海水使) 신대현(申大賢), 전라좌수사 윤희동(尹僖東),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전득우(田得雨)의 계본(啓本) 가운데 변장(邊將)이 한 사람도 하고에 든 자가 없으니, 청컨대 추고하소서."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영인본】44책 312면 【분류】*인사-관리(管理)/*사법-탄핵(彈劾)

37)건명문에 나아가 강백능을 잡아들이다

영조 120권, 49년(1773 계사/청 건륭(乾隆) 38년) 1월 25일 음묘 2번째기사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강백능(姜百能)을 잡아들였다. 이때에 기전(畿甸)에 기근(饑饉)이 들어 임금이 어사(御史)에게 명하여 제읍(諸邑)의 진휼하는 정사를 염찰(廉察)하게 하였는데, 어사 임득호(林得浩)가 통진(通津)에 이르러 봉고(封庫)하고 이어 부사 강백능을 파출(罷黜)하였다. 이날 임금이 친국(親鞫)하여 형추(刑推)한 뒤에 차꼬를 씌워 남간(南間)에 가두고, 어사의 복명(復命)을 기다리게 하였다.

【영인본】44책 445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사법-행형(行刑)/*구금(拘囚)

38)경기어사 임득호가 들어와서, 진휼의 일로 수령들을 포폄하다

ㅇ영조 120권, 49년(1773 계사/청 건륭(乾隆) 38년) 2월 3일 임술 2번째기사

경기어사 임득호(林得浩)가 들어와서 진정(賑政)을 삼가지 않은 일로 통진부사(通津府使) 강백능(姜百能)과 장단부사(長湍府使) 구세온(具世溫)을 탄핵하여 아뢰었다. 그리고 포창(褒彰)하도록 아뢴 사람으로는 부평부사(富平府使) 윤심위(尹心緯)가 첫째이고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방일(李邦一)이 그 다음이었다.

【영인본】44책 446면【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사법-탄핵(彈劾)/*구휼(救恤)

39)이배의 공초

ㅇ영조 16권, 4년(1728 무신/청 옹정(雍正) 6년) 3월 27일 정축 9번째기사

40)목함경의 공초

ㅇ영조 16권, 4년(1728 무신/청 옹정(雍正) 6년) 3월 28일 무인 8번째기사

41)박도창의 조카 박성건을 국문하다. 옥사를 끌다가 10월 을미일 이후 처리하다

ㅇ영조 30권, 7년(1731 신해/청 옹정(雍正) 9년) 8월 28일 무오 2번째기사

42)대신들과 양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ㅇ영조 37권, 10년(1734 갑인/청 옹정(雍正) 12년) 1월 22일 기해 4번째기사

43)사묘에서 환궁하다. 경기 감사 등을 인견하여 농사 등을 묻고 감세하게 하다

ㅇ영조 50권, 15년(1739 기미/청 건륭(乾隆) 4년) 8월 20일 갑오 1번째기사

44)어용을 봉안하는 전각과 그 호칭을 의결하고, 강화도 보장의 편의를 묻다

영조 61권, 21년(1745 을축/청 건륭(乾隆) 10년) 1월 9일 신사 3번째기사

45)어진을 강화부 만녕전에 봉안하게 하고 절목을 마련하다

영조 61권, 21년(1745 을축/청 건륭(乾隆) 10년) 2월 20일 임술 2번째기사

46)좌의정 조현명이 흉작 해일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진휼에 관한 차자를 올리다

영조 66권, 23년(1747 정묘/청 건륭(乾隆) 12년) 9월 20일 정미 3번째기사

47)김주천의 공초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청 건륭(乾隆) 20년) 3월 14일 정해 3번째기사

48)경기 암행 어사 정상순 · 비국 당상 이성중 · 김치인을 소견하다

영조 87권, 32년(1756 병자/청 건륭(乾隆) 21년) 2월 16일 갑인 5번째기사

49)사간원에서 이정철 · 민우수 · 이성중 등을 체직하라는 상달

영조 88권, 32년(1756 병자/청 건륭(乾隆) 21년) 윤9월 4일 기해 1번째기사

50)인제 · 회양 · 풍덕 등의 고을에 대해 징수를 연기할 것을 명하다

영조 111권, 44년(1768 무자/청 건륭(乾隆) 33년) 12월 9일 계해 2번째기사

51)대신등을 인견하여, 하교의 정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다

영조 121권, 49년(1773 계사/청 건륭(乾隆) 38년) 11월 18일 계유 5번째기사

22. 정조실록

1)통어영을 강화부에 합치는 것에 관한 심염조의 건의와 대신들의 논의, 구선복의 별단

◎ 정조 7권, 3년(1779 기해/청 건륭(乾隆) 44년) 3월 8일 임진 1번째기사

통어영(統禦營)을 강화부(江華府)에 합쳤다. 이보다 앞서 무술년에 변고 어사(反庫御史) 심염조(沈念祖)가 별단(別單)을 올리기를, 〈본문중략〉

1. 월곶진(月串鎭)은 승천보 동쪽 20리쯤에 있는데 곧 신정(神京)의 해문(海門)이요 삼남과 양서의 수로(水路)가 합쳐지는 곳이니, 그 긴요(緊要)함이 여기보다 더한 데가 없습니다. 또 그 윗쪽에는 연미정이 있어 삼로(三路)의 수로(水路)를 굽어 보고 있고 앞에는 문수산성(文殊山城)을 마주 대하고 있어 곧 기각의 형세를 이루어 서로 응원할 수 있으니, 이는 하늘이 만들어 준 참호(塹壕)인 것으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더욱 자별합니다.

〈본문중략〉

1. 통진(通津)·문수산성(文殊山城) 밖의 남쪽 산기슭 한 줄기가 활을 잡아당긴 것 같은 모양으로 뻗어 내려가 강(江)에 닿아서 끝났으며, 나머지 산기슭들도 이리저리 빙빙 감돌아 곁에 조애(阻隘)를 이룬 곳이 많습니다. 길이 그 위로 나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수유현(水踰峴)입니다. 통진부(通津府)와의 거리는 겨우 3리쯤 되고 갑진(甲津)과의 거리도 또한 수리(數里)가 못되니, 신로 강도(江都)로 들어가는 인후(咽喉)가 되는 곳입니다. 한 번 그 길로 올라서면 강도의 허실을 역력히 지적할 수 있으니 견고하게 지켜야 할 곳이요 등한하게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지세(地勢)를 논하면 산성(山城)은 마땅히 이 산기슭에 축조해야 되고 통진은 이 산기슭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둘레가 조금 넓어서 옮기는 데 폐단이 있을 것 같으므로 이제 정술히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 의견은 수유현 한 산기슭에 그 길을 막아서 단절시키고 나무를 심어 금양(禁養)케 함으로써 목책(木柵)이 이루어져 은연중 방수(防守)의 형세가 되게 해야 하며, 서울로 통하는 큰 길은 통진읍(通津邑) 뒷산 산골짝 사이에 있는 낮고 평평한 옛길을 고쳐 전대로 개통(開通)시킨 다음 문수(文殊)의 진두(津頭)에 도착한 연후에야 비로소 외성(外城)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도리(道里)로써 논하여 보더라도 또한 우회(迂回)하는 일이 없고 관방(關防)을 설치하여 변방을 공고하게 하는 방도에 있어도 전보다는 더욱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1. 문수산성이 강도를 내려 굽어보고 있으니 그 요해가 되는 것이 또한 조(趙)나라의 북산(北山)이나 남한(南漢)의 한봉(汗峯)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산성만 설치하였을 뿐 수군(水軍)이 없습니다. 이는 비록 군정(軍丁)을 얻기 어려운 데 연유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허술한 조처인 것입니다. 신의 의견에는 통진부사(通津府使)가 이미 강도(江都)의 좌영장(左營將)을 겸하고 있는데, 거느리고 있는 원군(元軍)이 또한 팔초(八哨)입니다.

매양 습조(習操)할 때를 당하면 그전에 해온 대로 강도로 와서 거처하면서 늘 정칙(整飭)시키는 곳으로 삼고, 사변이 있을 경우에는 강도로 오지 말고 산성을 신지(信地)로 삼아서 들어가 수유현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목책(木柵)이 이미 완성된 뒤에는 통진부사로 하여금 군병을 거느리고 먼저 수유현을 지키게 하여 적병이 달려와 돌격하는 형세를 막게 하되 적병의 형세를 살펴가면서 물러가 산성을 지키게 한다면 적병의 예봉(銳鋒)을 늦출 수가 있고 산성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軍民)들이 바다를 건널 즈음에 창황하여 바다에 빠지는 탄식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중략〉

【영인본】45책 95면 【분류】*군사-군정(軍政)/*군사-관방(關防)/*정론-정론(政論)

2)경기의 진휼을 마치다

◎정조 17권, 8년(1784 갑진/청 건륭(乾隆) 49년) 4월 20일 갑진 2번째기사

경기에 진휼(賑恤)을 베풀었는데, 정월에서 시작하여 이 때에 이르러서 진휼을 마쳤다.【공진(公賑)으로, 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豐德)·통진(通津)·남양(南陽)·죽산(竹山)·인천(仁川)·부평(富平)·고양(高陽)·김포(金浦)·교하(交河)·양천(陽川)·광주(廣州)·양주(楊州)·수원(水原)·용인(龍仁)·양지(陽智)·과천(果川) 등의 고을과, 덕포(德浦)·화량(花梁)·주문(注文)·덕적(德積)·장봉(長峯) 등의 진(鎭)에, 총 기민(飢民) 34만3천8백38구(口)이며, 진곡(賑穀) 3만6백32석 영이었다. 강화(江華)는 계묘년 12월부터 진휼을 설행하여 이해 5월에 진휼을 마쳤는데, 총 기민은 2만9천2백35구(口)에, 진곡은 7백95석 영이었다.】

【영인본】45책 441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구휼(救恤)

3)승지 이병모를 통진부사로 보직하다

◎정조 20권, 9년(1785 을사/청 건륭(乾隆) 50년) 9월 17일 계해 1번째기사

승지 이병모(李秉模)를 특별히 통진부사(通津府使)에 보직(補職)하였으니, 이병모는 대관(臺官)의 탄핵(彈劾)으로 인책(引責)하여 소명(召命)을 어긴 때문이었으며, 곧 그 곳에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으니, 각신(閣臣)의 사은숙배(謝恩肅拜)는 합문(閤門)에서 하는 것이 준례인데 이병모는 지방의 보직(補職)에 사은(謝恩)하면서 정하여진 준례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

【영인본】45책 539면 【분류】*인사(人事)

4)경기 · 영남 · 호남 · 호서 · 관동 · 관북 여섯 도의 진휼을 마치다

정조 23권, 11년(1787 정미/청 건륭(乾隆) 52년) 5월 23일 기축 1번째기사

경기(京畿) · 영남(嶺南) · 호남(湖南) · 호서(湖西) · 관동(關東) · 관북(關北) 여섯 도(道)의 설진(說賑)을 정월(正月)부터 베풀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휼을 마쳤다.【경기. 광주(廣州) · 수원(水原) · 통진(通津) · 풍덕(豊德) · 인천(仁川) · 부평(富平) · 김포(金浦) · 고양(高陽) · 교하(交河) · 과천(果川) 등의 고을과 덕포(德浦) · 덕적(德積) 등의 진(鎭)의 총 기민(饑民)은 17만8천9백39구(口)이고, 〈본문중략〉

여러 도(道)의 도신(道臣)이 진휼을 마쳤다고 아뢰니,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경기의 통진부사(通津府使) 황인영(黃仁煐)과 파주목사(坡州牧師) 홍인묵(洪仁默)은 계제직(階梯職)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하고, 김포군수(金浦郡守) 유한위(兪漢緯)는 준직(準職)을 제수하고, 통진 전 군수(通津前郡守) 이홍수(李弘逢)는 가자(加資)한 후 실직(實職)에 조용하고, 〈본문중략〉

【영인본】45책 653면 【본류】*구휼(救恤)/*항실-사급(恒給)/*인사-임면(任免)

5)경기 관찰사 김사목이 교동 · 부평 · 인천 등의 해일 피해에 대해 보고하다

◎ 정조 30권, 14년(1790 경술/청 건륭(乾隆) 55년) 7월 10일 무자 3번째기사

경기 관찰사 김사목(金思穆)이 장계하기를, "교동(喬桐) · 부평(富平) · 김포(金浦) · 인천(仁川) · 안산(安山) · 통진(通津) · 풍덕(豊德) · 영종(永宗) 등 8개 고을과 진(鎭)은 이달 17일 조수가 불어났을 때 동풍이 갑자기 불며 파도가 높이 밀려오는 통에 바닷가의 제방이 충격을 받아 파손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짠물이 넘쳐서 모든 곡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동에서는 무너지고 깔린 민가가 71호이고 부평 석관면(石串面)과 모월관면(毛月串面)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무너지고 터진 제방이 모두 51개소나 됩니다. 피해를 입은 밭은 40여 섬지기나 되며, 파괴된 소금가마는 20개 정도됩니다.

김포의 검단면(黔丹面)은 여러 곳에 제방을 쌓았지만 피해를 입은 전토는 모두 58섬지기이며, 민가 3호도 무너지고 깔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가마가 9개 정도 파괴되었습니다. 인천 · 안산 · 통진 · 풍덕 · 영종 등 5개 고을과 진의 바다를 낀 여러 면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터져 토지가 피해를 입은 곳이 형언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해일은 근래에 없었던 일로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너지고 깔린 민가의 구제는 곡물과 달풀로 구별하여 주어서 안정을 되찾게 하고, 무너진 제방과 침몰된 소금가마는 물이 빠지는 대로 고쳐 쌓도록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교동 수사의 장계로 인하여 금방 글을 만들어 하교하였는데, 부근 고을의 무너진 소금가마와 교동의 기본조세는 감사와 의논하여 즉시 탕감하여 턱없이 세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돌보아 구제하는 것도 또한 교동의 전례대로 하라."하였다.

【영인본】46책 154면 【분류】*과학(科學)/*구휼(救恤)/*재정(財政)

6)형조가 신문고를 친 사람의 내용을 보고하다

정조 31권, 14년(1790 경술/청 건륭(乾隆) 55년) 8월 2일 경술 4번째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신문고를 친 사람인 통진(通津)의 진사 유득로(柳得魯)가 남경용(南景容)의 벼슬을 회복한 실례를 들어 자기 아비인 유채(柳綵)의 죄명을 벗겨 달라고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원통함을 호소하니 그의 사람됨이 매우 용렬하다.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회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남경용의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라."하였다.

【영인본】46책 161면 【분류】*사법(司法)

7)승지 이경오를 통진 부사에 보임시키다

정조 31권, 14년(1790 경술/청 건륭(乾隆) 55년) 11월 15일 신묘 2번째기사

승지 이경오(李敬五)를 통진부사(通津府使)에 보임하였다. 이경오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신기현(申騏顯)은 얼마나 극악한 역적인데 승지의 특별 제수가 갑자기 내린단 말입니까. 성명한 세상에 이런 예사롭지 못한 조치가 있음 줄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빨리 하명을 거두고 해당되는 율문을 적용하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경오의 경연 진술은 몹시 시끄럽고 외람되다. 통진부사로 제수하라."하였다.

【영인본】46책 181면 【분류】*인사(人事)/*사법(司法)/*변란(變亂)

8)경기지방 고을 중 재해를 입은 곳의 환곡과 신포를 탕감하도록 명하다

※ 정조 33권, 15년(1791 신해/청 건륭(乾隆) 56년) 9월 7일 기묘 1번째기사

경기관찰사 서정수(徐鼎修)를 불러보고,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사관을 보내서 양천(陽川) 백성들을 위로하고 효유하여 각기 믿고 안정되게 살도록 하였다. 이제 가을도 늦어가니 세금을 줄여주고 구제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루고 있었던 것은 도백이 산하 고을들을 순행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이제 조정으로 돌아온 기회에 백성들의 실정을 자세히 물으니, 전에 들은 것과 차이가 없다. 재해를 특히 심하게 당한 양천의 면리(面里)에 대해서는 환곡과 신포(身布)를 탕감해주고 기한을 물려주는 것을 마땅히 조정의 명령대로 거행하되, 비록 물려주거나 탕감해주는 등급에 끼지 못한 자라도 반드시 규례대로 징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그들도 환곡과 신포를 3분의 1은 기한을 물려주고 균량미는 받아두도록 하라.

부평(富平)·김포(金浦)·금천(衿川)·고양(高陽) 등 강변 고을의 면리(面里) 가운데 재해를 특히 심하게 당한 곳은 비록 양천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재해를 입은 곳의 백성들 실정이 황급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니, 구제해주는 정사를 어찌 한 곳에는 실시하고 한 곳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앞의 네 고을은 면리 단위로 등급을 나누는 일반 규례에 구애받지 말고, 한개 면 한개 리 가운데서도 각별히 가려내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양천의 사례대로 세금 징수를 중지하고 감면해주도록 하라. 그 수량도 꼭 3분의 2에 구애받지 말고, 비록 절반 이하라도 도백으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절충해 배당함으로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소외를 당한 탄식이 없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6책 241면 【분류】*구휼(救恤)/*재정(財政)

9)영남 후조창의 배 4척이 통진에서 침몰하니, 관련된 관리들을 문책하다

정조 35권, 16년(1792 임자/청 건륭(乾隆) 57년) 7월 3일 경자 2번째기사

영남의 후조창(後漕倉) 조선(漕船) 4척이 다시 통진(通津) 지경에서 침몰되니, 도차사원(都差使員) 밀양부사 이복섭(李復燮)은 곧바로 그곳에서 정배하고, 기선차사원(騎船差使員) 제포만호(薺浦萬戶) 남궁심(南宮深)은 결곤(決棍)하고, 해도영호차사원(海道營差使員) 장봉만호(長峰萬戶) 김경희(金慶禧), 지방관(地方官) 통진부사(通津府使) 이달관(李達觀)은 결곤하여 파출(罷黜)하였으며, 경희는 해당 진(鎭)의 노군(櫓軍)으로 충원하였다.

【영인본】46책 320면 【분류】*교통(交通)/*사법(司法)/*인사(人事)

10)경기도사 · 중군 · 경력 · 통진부사 · 김포군수를 모두 잡아오도록 명하다

정조 39권, 18년(1794 갑인/청 건륭(乾隆) 59년) 4월 10일 병인 5번째기사

경기도사 · 중군 · 경력 · 통진부사 · 김포군수를 모두 잡아오고, 경기관찰사와 강화유수의 병부는 후임이 교대할 동안 기억(畿驛)의 찰방을 가도사(假都事)로 임명하여 임시로 차재 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46책 461면 【분류】*사법(司法)

11)병조판서 이명식이 경재 · 시종 · 백관과 함께 합문 밖에 나아와 면대를 청하다

정조 39권, 18년(1794 갑인/청 건륭(乾隆) 59년) 4월 12일 무진 5번째기사

병조판서 이명식이 경재 · 시종 · 백관과 함께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합문 밖에 나아와 면대를 요청하였다. 명식은 귀양보내고 따라온 경재들은 모두 김포군(金浦郡)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영인본】46책 463면 【분류】*사법(司法)

12)전 강화유수 이홍재, 통진부사 김이용 등을 석방하다

· 정조 39권, 18년(1794 갑인/청 건륭(乾隆) 59년) 4월 12일 무진 10번째기사

전 강화유수 이홍재(李洪載), 통진부사(通津府事) 김이용(金履容), 감포군수(金浦郡守) 유한준(兪漢雋), 양천현감(陽川縣監) 김반, 정기도사(京畿都事) 김기상(金基象), 강화경력(江華經歷) 권이성(權彝性) 등을 석방하였다.

【영인본】46책 463면 【분류】*사법(司法)

13)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 사관에게 별도로 내린 유시. 여러 어사와 사관의 결과 보고

정조 41권, 18년(1794 갑인/청 건륭(乾隆) 59년) 11월 16일 경자 1번째기사

경기 각읍의 암행어사와 적간사관(摘奸史官)에게 별도로 유시하기를,【광주(廣州)·죽산(竹山)·양성(陽城)의 어사는 박윤수(朴崙壽)이고,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豊德)의 어사는 홍낙유(洪樂游)이고, 이천(利川)·여주(驪州)·음죽(陰竹)의 어사는 정내백(鄭來百)이고, 적성(積城)·마전(麻田)·연천(漣川)·삭녕(朔寧)의 어사는 정약용(丁若鏞)이고, 양천(陽川)·김포(金浦)·부평(富平)·통진(通津)·교하(交河)의 어사는 채홍원(蔡弘遠)이고, 영평(永平)·포천(抱川)의 어사는 정이수(鄭履綏)이고, 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인천(仁川)의 어사는 유사모(柳師模)이고, 과천(果川)·용인(龍仁)·진위(振威)의 어사는 이조원(李肇源)이고, 양지(陽智)·안성(安城)의 어사는 정동관(鄭東觀)이고, 양근(楊根)·가평(加平)의 어사는 정만석(鄭晩錫)이고, 교동(喬洞)·강화(江華)의 적간 사관(摘奸史官)은 조석중(曹錫中)이고, 양주(楊州)·광주(廣州)의 적간 사관은 서준보(徐俊輔)와 구득로(具得魯)이고, 금천(衿川)·수원(水原)·광주(廣州)의 적간 사관은 정문시(鄭文始)이고, 지평(砥平)의 적간 사관은 이면승(李勉昇)이다.】"수령의 잘잘못을 규찰하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는 것이 어사의 직임이다. 비단옷을 입는 것은 그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요, 도끼를 지니는 것은 그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근래 혹 각도에 보낸 사람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어찌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책할 수 있겠는가. 조정이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파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세세히 살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천리나 되는 경기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혜택이 아래로 미치지 않고 폐단이 위로 보고되지 않는지라, 고을이 황폐해져서 마을 개가 꼬리치지 않으며 못에 기러기가 모여든다 하니,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어사뿐이며, 관리들이 눈짓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어사일 뿐이다.

조정이 빙문(憑聞)하여 권면하고 장계하는 것도 오직 어사의 말을 믿고 징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명하는 거조가 있는 것이니, 보고 듣기에 전심하고 그 종적을 비밀스럽게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몇 고을을 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찌를 뽑아 아래 사정을 구별하

면 자연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맡은바 직분을 삼가하여 관부와 시장, 촌락을 드나들면서 세세히 조사해 모아서 조정에 돌아올 때에 일일이 조목별로 나열해 아뢰도록 하라. 인(印)과 장부를 현장에서 잡은 경우가 아니면 혹시라도 경솔하게 먼저 창고를 봉하지 말라. 무릇 황정(荒政)에 도움이 되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한 것들도 탐문하여 아뢰고, 특별히 뽑은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도록 하라.

〈본문중략〉하고, 양천·김포·부평·통진·교하 5개 읍의 어사 채홍원이 서계하기를, "양천 현령 심공엽(沈公爕)은 조세를 견감해줄 전결을 뽑을 때 혹 원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양천은 재해를 구제해주는 정사를 함에 있어 실로 몹시 어려운 폐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어서 황폐해진 것이 29결인데 호의 이름이 양안(量案)에 들어가 백징(白徵)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변통을 시행해야 될 듯합니다.

부평부사 강명길(康命吉)은 재결은 훔쳐먹고 군보에게는 첨징하여 허다한 불법을 저질렀으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통진부사 김이용(金履容)은 물에서 건진 쌀과 돈을 가지고 요판(糾販)하였고, 환자미의 조세로 이익을 남겼으며, 칙사의 접대 비용을 제멋대로 썼고, 뱃사람들에게 가징(加徵)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하여 중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본문중략〉 "해부로 하여금 엄하게 캐물어 실정을 알아내서 법에 따라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라."하였다. 이소가 또 아뢰기를, "어사의 서계 중에서 논한 전 통진부사(通津府使) 김이용(金履容)의 탐욕스럽고 불법을 저지른 죄에 대해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조사하게 하고, 사사로이 쓴 것은 부평부사(富平府使)의 예에 따라 민간에 돌려주게 하소서. 〈본문중략〉

【영인본】46책 521면 【분류】*왕실(王室)/*행정(行政)/*재정(財政)/*구휼(救恤)/*호구(戶口)/*사법(司法)/*인사(人事)

14)을묘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회방을 맞은 이육에게 상을 주라 명하다

ㆍ정조 41권, 18년(1794 갑인/청 건륭(乾隆) 59년) 11월 19일 계묘 3번째기사

통진부(通津府)에 명하여 을묘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회방(回榜)을 맞은 사람 이육(李堉)에게 해도로 하여금 입을 거리와 먹을 거리를 넉넉히 지급하게 하고 총관(總管)에 자리가 있거든 의망 해 들이라고 하였다.

【영인본】46책 523면 【분류】*인사(人事)

15)경기에서의 진휼을 끝마치다

정조 43권, 19년(1795 을묘/청 건륭(乾隆) 60년) 7월 5일 갑인 2번째기사

경기에서 진휼을 1월부터 실시하여 이때에 와서 끝마쳤다.【교동(喬桐)·남양(南陽)·부평(富平)·인천(仁川)·풍진(通津)·풍덕(豊德)·안산(安山)·김포(金浦)·교하(交河)·양성(陽城) 등 고을과 영종(永宗)·화양(花梁)·덕포(德浦)·주문(注文)·덕적(德積)·장봉(長峯) 등 진(鎭)을 대상으로 총 기민 14만8천4백90구에게 곡물 1만2천3백30석을 나누어 주었다.】

【영인본】46책 586면 【분류】구휼(救恤)

16)제도의 고을 수령들을 자주 체차시키는 폐단과 관련하여 품처토록 명하다

정조 43권, 19년(1795 을묘/청 건륭(乾隆) 60년) 8월 5일 계미 3번째기사

상이 제도(諸道)의 고을 수령들을 자주 체차시키는데 따른 폐단과 관련하여 전조(銓曹)에게 품처(稟處)토록 명하니, 이조가 묘당에 나아가 의논한 뒤 광주부윤(廣州府尹) 서미수(徐美修), 파주목사(坡州牧使) 서영보(徐英輔), 양주목사(楊州牧使) 한광근(韓光近), 장단부사(長湍府使) 신광로(申光輅), 풍진부사(通津府使) 황인영(黃仁煐), 직산현감(稷山縣監) 조중진(趙重鎭), 전주판관(全州判官) 윤광수(尹光垂), 함평현감(咸平縣監) 김기현(金箕炫), 고창현감(高敞縣監) 남이범(南履範), 안동부사(安東府使) 이집두(李集斗), 김해부사(金海府使) 서배수(徐配修), 신천군수(信川郡守) 조후진(趙厚鎭)은 그 지역 수령으로 잉임(仍任)시키고 오래 근무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아뢰었다.

【영인본】46책 592면 【분류】인사(人事)

17)강도 유생들의 시권을 심사하여 뽑힌 자들을 직부 전시토록 하다

《정조 43권, 19년(1795 을묘/청 건륭(乾隆) 60년) 8월 21일 기해 1번째기사

강도(江都) 유생들의 시권(試券)을 심사하여 강화(江華)의 진사 이장후, 통진(通津)의 유학 민창려(閔昌呂), 교동(喬桐)의 유학 남궁성(南宮惺), 강화의 유학 정진명(鄭進明) 등을 뽑고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토록 하였다.

【영인본】46책 595면 【분류】*인사(人事)

18)강화유수 김이익이 고한 궁궐의 가마의 왕래 일로 관원을 체직 · 파직하다

《정조 44권, 20년(1796 병진/청 순치(順治) 1년) 2월 17일 계사 1번째기사

남소영(南小營)에 행차하여 내금위의 춘등(春等)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전날 저녁에 강화유수 김이익(金履翼)이 와서 주대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명이 있으면 의당 와서 기다려야지 어찌 감히 주대를 청하는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익이 아뢴 내용을 보니, "신이 양천(陽川)에 도착하여 중군(中軍)의 보고를 받았는데, 내사(內司)의 별제(別提) 두 사람이 가마 셋을 인솔하고서 죄인을 지키는 곳에서【바로 인을 찬배한 곳이다.】나왔고, 또 가마 두 채는 다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마 한 채의 간 곳을 아직 탐지하지 못해서 천만 어쩐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하교를 받들어 부득이 내려갑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김포군수의 첩보에 의하면, 어제 해시(亥時)에 가마 한 채가 또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이른바 가마 셋이 온 곳과 간 곳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니, 강화 유수를 다시 올라오게 하라."하였다.

이에 각신 심환지 등이 아뢰기를, "강화 유수의 아룀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분명히 하교하소서."하고, 여러 승지들이 또 번갈아 아뢰기를, "전년처럼 뜻밖의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신들이 어찌 입제히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엄고(嚴鼓)가 이미 울렸다."하고는, 마침내 환궁하여 여러 승지를 다 체직하고 각신 및 별운검(別雲劍)을 아울러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홍낙성이 여러 재신들을 거느리고 주대하기를 요청하니, 물러가라 명하

고, 또 전교하기를, "어찌 확실치 않은 일을 가지고 연석에서 발설한단 말인가. 또 더구나 궁궐의 가마가 왕래한 것은 예전에도 흔히 있었던 일이니, 특별히 징증할 만한 말이 없고 형적도 없는데 이로써 죄를 가한다면 도리어 일이 전도되게 된다. 오늘 파체한 제신은 아울러 분간하라."하였다.

【영인본】46책 630면 【분류】*왕실(王室)/*군사(軍事)

19)어가가 지날 도로의 보수를 백성에게 맡기지 말고 삯군을 쓰게 하다

›정조 45권, 20년(1796 병진 /청 순치(順治) 1년) 9월 10일 임자 2번째기사

경기관찰사 이면응(李冕膺)이 아뢰기를, "어가가 지나갈 양천(陽川)의 도로도 인근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힘을 합하여 보수하게 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양천과 김포의 백성에게 해마다 폐를 끼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노역을 시키겠는가. 전부 삯군을 쓰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6책 671면 【분류】*왕실(王室)/*재정(財政)

20)경진년 온천에 행차할 때 배종했던 이들에게 추증 또는 시상하다

›정조 45권, 20년(1796 병진/청 순치(順治) 1년) 10월 24일 병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경진년 온천에 행차할 때에 배종했던 사람들을 이번 봄에 찾아내어 기록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경기와 호서(湖西) 두 도가 비로소 나란히 보고해 왔다. 그중 나이 90세인 경기 포천(抱川)에 사는 정헌(正憲) 이세걸(李世傑)과 통진(通津)에 사는 정헌(正憲) 조흥복(趙興馥)은 가자하여 실직 동지(同知)에 단독으로 천망하고, 백살에 가까운 충청도의 서두금(徐豆金)은 첨지에 단독으로 천망하라. 아울러 경기인(京畿人)의 예대로 한 대(代)만 추증하도록 하라. 그 밖에 지방 관아의 아전, 향임(鄕任) 이하와 경기의 84세 12명과 충청도의 82세 17명에게 첨지를 내리고, 경기와 호서의 7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쌀 세 말을,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두 말을 주도록 하라."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4백30명이었다.

【영인본】46책 675면 【분류】*왕실(王室)/*인사(人事)

21)부른 명에 따르지 않은 홍대협 · 최헌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ㅇ정조 46권, 21년(1797 정사/청 가경(嘉慶) 2년) 1월 24일 을축 1번째기사

승지 홍대협(洪大協)을 김포군수(金浦郡守)로, 최헌중(崔獻中)을 인동부사(仁同府使)로, 교리 정동관(鄭東觀)을 강릉현감(康翎縣監)으로 특별히 보임하였다. 이는 부른 명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인본】47책 5면 【분류】*인사(人事)/*사법(司法)

22)15일에 장릉을 참배할 때 진무사가 나가 주둔하게 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청 가경(嘉慶) 2년) 8월 7일 계묘 1번째기사

이달 15일에 상이 장릉(章陵)을 참배하려 하는 일과 관련, 병조에서 행행할 때의 척후와 복병을 표신(標信)과 병부(兵符)를 내어 정발하기를 청하는 일로 계품하니,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진무사(鎭撫使)가 중군(中軍) 종사관(從事官)을 거느리고 장려(壯旅)와 의려(義旅) 각 1초(哨)씩을 뽑아내어 통진부사(通津府使)와 함께 어가(御駕)가 가기 하루 전에 김포(金浦) 숙소에 주둔해 있다가 표신을 기다려 계엄을 풀도록 하라."하였다.

우의정 이병모가 상차(上箚) 하기를, "병조의 계목(啓目)에 대해 판부(判付) 하신 것을 보고는 밤새도록 지극히 방황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전후로 성상께서 하교하시어 정신(廷臣)을 준절히 책망하시면서 매양 망령되게 헤아리고 억측으로 요량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하셨는데,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긴 합니다. 그러나 망령된 헤아림과 억측의 요량도 매양 혹 불행히도 맞는 적이 있으니, 오늘날 전하의 조정에 특향하여 섬기는 자가 깜짝 놀라며 움찔 두려워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참으로 다른 일은 없고 다만 보장(保障)의 군용(軍容)을 보고자 하실 뿐이라 하더라도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전하의 지나친 거조가 이미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무릇 국가가 군민(軍民)과 굳게 결속하여 위급한 때에 의뢰함이 있는 것은 하나의 신(信)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막 섬 지방의 농사가 여물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조련을 정지시켜 뭇 민정(民情)이 기뻐하고 감격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연히 장려(壯旅)와 의려(義旅)를 뽑아내어 주둔시켜 하룻밤을 지내게 한다면 기뻐하던 자가 시름겨워하며 기가 죽고 감사하며 축원하던 자가 놀라 의심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대중을 따라 급히 서두르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정성이 조금도 미더움을 받지 못하여 죄만 더욱 쌓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국가 형세를 논하건대, 반드시 정항(鄭沆)처럼 불가(不可)한 도신(道臣)만을 얻은 뒤에야 유지할 수가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진무사(鎭撫使)가 나가 주둔하라는 명을 특별히 중지시키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선조(先朝)께서 행행하여 서교(西郊)에서 묵을 때의 호위도 진무영(鎭撫營)의 군병을 썼는데, 하물며 김포(金浦)의 숙소는 진무영과의 거리가 다만 근교(近郊)

사이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다면 해영(該營)의 군병을 조발(調發)하여 해군(該郡)의 숙소를 호위하는 것은 옛날의 전례에 비하면 크게 폐해를 제거했다고 할 만하고 또한 크게 비용을 줄였다고 할 만하다. 이에 앞서 조련을 정지하라는 명은 바로 이번에 뽑아내어 쓰기 위함이었다.

2만여 명을 휴식시키는 것을 2백여 명의 징발과 비교하면 그 많고 적음과 어려움과 쉬움이 또 과연 어떠하겠는가. 경이 차자로 진달한 것은 도리어 근래의 지레 헤아리는 속습(俗習)을 본받은 것임을 면하지 못하니, 저으기 경을 위해 취하지 않는 바이다. 의사로써 뜻을 지레 헤아리며 뜻으로써 일을 지레 헤아려 알마다 모두 지레 추측하는 공부를 쓰려 한다면 세상에 어찌 조치할 만한 일이 있겠는가. 또 진실로 이와 같다면 장릉(章陵)에 행행하는 것까지도 어찌 명령을 내리던 초기에 중지하기를 청하지 않았는가."하였다.

【일인본】47책 37면 【분류】*왕실-행행(行幸)/*군사-군정(軍政)/*군사-중앙군(中央軍)/*군사-병법(兵法)

23)장릉을 배알하고 김포행궁에 가면서 김수동 등의 묘에 치제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청 가경(嘉慶) 2년) 8월 15일 신해 2번째기사

상이 고(故) 상신(相臣) 김수동(金壽童)·김응남(金應南)·심수경(沈守慶)·김익의 무덤이 어가가 지나가는 길가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하교하기를, "고 영의정 김수동은 중흥 때를 당하여 위아래로 두루 다스렸으니 노성(老成) 의 전형을 상상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무덤이 고을에서 7리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한다.

고 우의정 김응남은 황제 앞에서 정책을 주달 하여 칭찬을 받기에 이르렀고 중간에 군사에 관한 소임을 담당하면서 임기응변하였으니, 호종(扈從) 한 공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 우의정 심수경은 김응남과 동시의 명 재상으로 국가의 일에 근로하였는데 그들의 무덤이 또한 행차하는 길가에 있다고 한다. 세 대신의 무덤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고 영의정 김익의 무덤에도 그 아들인 중신(重臣) 김재찬(金載瓚)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하였다.

제신(諸臣)이 물러갔을 때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신광리(申光履)가, 역적 인이위리(圍籬)를 뛰쳐나간 일로 치계(馳啓)하니, 상이 그 장계를 물리쳤다. 이에 대신·경재(卿宰)·각신·승지·삼사(三司)의 제신이 번갈아가며 면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오시(午時)가 지난 뒤에 상이 비로소 양천(陽川)의 행궁(行宮)으로부터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우의정 이병모가 말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오늘날 조정 신하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또 섬의 역적이 위리를 뛰쳐 나간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사태가 너무도 위급하기만 합니다.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대신의 직에 있는 이상 일이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므로 의리상 일각도 지체할 수가 없어 곧장 환배(還配)하라는 뜻으로 방금 강화 유수에게 분부하였습니다만, 또한 감히 다급히 우러러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환배하라는 청을 어서 윤허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일단 환배를 청하였으니 나도 윤허한다. 비국(備局)에서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비답을 받은 뒤에야 문적(文蹟)을 작성하고 문적이 있은 뒤에야 거행할 수 있습니다."하고,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설사 문적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을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지 않으면 신들이 장차 어떻게 거행하겠습니까."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고 마침내 출발하여 2, 3리(里)를 갔다. 이익

운 등이 따라가면서 아뢰기를, "대신이 주달 한 말에 비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는 내용으로 비지(批旨) 를 써서 반포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간 김달순(金達淳), 집의 이기양(李基讓), 부수찬 한치응(韓致應) 등이 소회를 진달하고, 배소(配所)로 잡아 들려보내는 동시에 원계(原啓) 안에서 청한 바를 윤허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대신의 청을 따랐다."하였다. 천등현(天登峴)에 이르러 본 고을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보고 고통을 묻었다.

장릉(章陵)에 이르러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한 다음 능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하고, 승지에게 이르기를, "산의 형세가 비단을 펼친 듯하고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양쪽에서 호위하여 기세가 길게 멀리 뻗었으니 만년의 큰 복이 실로 여기서 기인하였다."하였다. 재실(齋室)로 돌아와서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의 후손 구규석(具圭錫) 등과 비변사 당상 이서구(李書九) 등을 불러 보았다. 상이 이서구에게 하문하기를, "선조(先朝) 갑인년에 장릉에 행행하셨을 때에 연로(沿路)에 조세를 감면한 혜택이 어떠하였는가 " 하니, 이서구가 대답하기를, "연로의 고을에는 대동미(大同米) 2두를 모두 감면하였고, 본 지방에는 정퇴(停退)한 그 해의 봄 대동미를 특명으로 탕감하였습니다.

대동미를 감면하는 것은 진실로 큰 혜택이기는 하나 전지가 없는 백성은 혜택을 고루 입지 못합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혹 요역을 감면하기도 하고 혹은 예전 환곡(還穀)을 감면하기도 하는 것이 혜택을 널리 베푸는 방도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가을에 행행하여 장릉(章陵)을 배알(拜謁)하는 것은 우리 영고(寧考) 의 갑인년의 성적(聖蹟)을 우러러 계술(繼述) 하려는 것이다. 지리에 나아가 예를 행하니 이미 슬퍼져 감회가 일어난다.

삼가 생각건대, 매년 남전(南殿)을 참배할 적에 제3실(室)의 수용을 공손히 보면 마치 친히 말씀을 듣는 것만 같았다. 지금와서 상설(象設) 앞에서 주선하니 혼령의 오르내림이 더욱 가까워서 지척에 임하신 것 같다. 간절한 소원을 조금 펴니 슬픔과 기쁨이 함께 이른다. 내가 여기에서 더욱 느껴지는 바가 있다. 배알하는 일을 봉행한 끝에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 큰 강의 남쪽에 높은 산이 천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용이 오르고 봉황새가 날아 올라가는 듯하고, 강물이 빙 둘러서 빛나고 있다. 이미 이어지면서 멀리 뻗었으며 험준하지 않으면서 높으니, 아름다운 기운이 어린 바이고 길한 운세가 발원(發源)된 바로서 억만년토록 무궁한 복을 받게 될 형세라 하겠다.

우리 장릉(長陵)의 지극한 효성이 위로 하늘에 사무쳐서 마침내 이 기막힌 명당

자리를 내려주셨다. 그리하여 먼저 부장하는 예를 경영하고 능을 옮김으로써 우리의 태산 반석과 같은 크나큰 터전을 열게끔 하셨다. 이날 이 땅에 마땅히 이 감회를 적고 이 뜻을 표시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릉(本陵)의 국구(國舅)의 집은 공신의 집인 동시에 외척의 집이기도 하니, 대대로 우례(優禮)를 받는 것이 다른 외척의 집에 비할 바가 아니다. 능안 부원군(綾安府院君) 구사맹(具思孟)과 서원 부부인(西原府夫人) 신씨(申氏)의 묘소에 근시(近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집의 봉사손(奉祀孫)은 당연히 조용(調用)해야 하나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어느 때인들 할 수 없겠는가. 직계파(直系派)인 유학(幼學) 구규석(具圭錫)을 본릉 능관(陵官)에 단부(單付)하라. 그리고 본릉의 능관 홍석은 승서(陞敍)하고, 참봉 한백연(韓百衍)은 승륙(陞六)시키고, 수복(守僕)·수호군(守護軍) 등에게는 넉넉하게 시상하라. 본군의 지방관 홍대협(洪大協)에게는 대내에서 내리는 녹피(鹿皮) 1령(令)을 사급(賜給)하고, 도백(道伯) 이재학(李在學)에게는 표비(豹皮) 1령을 전례에 의하여 사급하도록 하라.

부로(父老)들에게는, 고을에 가면 고통을 물어보겠지만 우선 1년 동안 급복(給復)해 주되 근례(近例)에 따라 환향(還餉)의 모곡(耗穀)을 대신 감면하도록 하라. 이 고을의 오래된 환곡이 소민들의 뼈에 사무치는 폐해가 된다는 것을 익히 들었다. 향곡(餉穀)·환곡(還穀)을 막론하고 오래된 환곡으로 이름 지어진 것은 호방 승지(戶房承旨)가 읍민을 모아서 그 문서를 가져다가 불에 태움으로써 일분의 폐해라도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갑인년 행행 때의 의장(儀仗)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70, 80 이상인 조관(朝官)·사인(士人)·서인은 각각 한 자급(資級)씩 올려주도록 하라."하였다.

상이 재실(齋室)에서 출발하여 장차 김포군(金浦郡)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때 외정(外廷)에서는 역적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우의정 이병모가 어가 앞에 나아와 아뢰기를, "조금 전에 아뢴 것에 대해 이미 비답을 받기는 하였으나, 신들이 추환(推還)하지 못하는 것을 강화 유수가 또한 어떻게 찾아내어 잡아가겠습니까. 신들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하고, 승지 조진관 등이 번갈아가며 속히 유사(有司)에게 회부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엄숙하고 공경해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한단 말인가."하였다. 은행교(銀杏橋)에 이르러 경기 관찰사 이재학과 지방관 홍대협을 불러 보고 길가의 부로(父老)에게 고통을 물어보도록 명하였는데, 모두 오래된 환곡이라고 대답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하교한 바가 있다."하였다. 어가가 김포 궁문 밖에 이르러 진

무영(鎭撫營)의 호위 군사를 점열(點閱)하고 진무사 신광리(申光履)에게 호피 1령(令)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김포 행궁에서 묵었다.

【영인본】47책 37면 【분류】*왕실-행행(行幸)/*왕실-사급(賜給)/*왕실-의식(儀式)/*왕실-비빈(妃嬪)/*윤리(倫理)/*인사-관리(管理)/*군사(軍事)/*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24)유배지를 이탈한 인의 일을 논의하고, 조헌 · 윤우신 등을 치제하게 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청 가경(嘉慶) 2년) 8월 15일 신해 3번째기사

대신 · 경재(卿宰) · 승지 · 각신(閣臣) · 삼사(三司)의 제신(諸臣)이 면대(面對)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경기 관찰사 이재학이 면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시임(時任) · 원임(原任) 각신이 재차 상차(上箚)하여 속히 압송(押送)을 명하라고 청하고, 여러 승지가 아뢰어 속히 대신(大臣) · 대신(臺臣)의 청을 윤허하라고 청하고, 삼사의 제신이 아뢰어 속히 아침에 하교한 대로 섬의 배소(配所)로 압송해 보내는 동시에 삼사의 원계(原啓)의 청을 따를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보지 않았다.

우의정 이병모가 경재를 거느리고 합문(閤門)에 엎드려서 아뢰기를, "신들이 강화의 보고를 잇달아 접하건대 섬에 유배된 역적이 뛰쳐나간 자취가 김포에 이르러 끊어지고 말았다 합니다. 이는 신들이 모두 알 뿐만 아니라 실로 군민(軍民)이 모두 함께 본 사실입니다. 도로 유배보내라는 칭을 윤허하셨으니 받들어 주선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만, 강화부에서는 형세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묘당에서도 어떻게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외면상으로는 신들의 소청을 윤허하였으나 실은 윤허하지 않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습속이 참되지 못함을 민망히 여겨 일찍이 성(誠)이라는 한 글자에 간절히 마음을 쓰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강화의 역적 한 가지 일에 있어 지나친 거조가 없었던 바는 아니었으나 또한 일찍이 왔으면 왔다고 말하고 돌아갔으면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환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감에 미쳐서는 백관과 만백성이 금석(金石)처럼 봉행하였습니다.

그 근심은 지나친 거조가 정말 비상함에서 나온 것에 있을 뿐이었지 흉인의 종적이 향한 곳을 알지 못함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 유수의 보고를 보니, 어리둥절하여 그 단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배소로 돌려보내려 해도 사세가 미치지 못하고 지휘도 할 수 없는 것은 앞서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신들이 어찌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행궁(行宮)의 합문(閤門)에서 이런 거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밝은 명을 내리시어 섬의 배소로 돌려보내도록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아침에 경들의 말을 윤허한 것은 분란을 그치게 하려 함이었지 윤허한 뒤에 아끼거나 막으려고 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가(朝家)에서 상관할 바가 아닌데, 경들이 복합(伏閤)하니 이 무슨 거조인가. 이미 백일(白日)에 날아서 올라간 것이 아닌 바에는 참으로 이른바 '다만 이 산속에 있을 뿐이다. [只在此山中]'라는 것인데, 도리어 어리둥절하다는 등의 말을 계사(啓辭) 안에 어려움 없이 쓰는 것은 정말 어떻다 하겠는가."하였다. 이병모 등이 재차 진계(陳啓)하니, 비답하기를, "금방 돌려보냈다. 이미 보낸 뒤에 만 사람이 모두 보았으니 경들은 물러가도록 하라."하자, 이에 제신이 물러갔다.

승지를 보내어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의 우저서원(牛渚書院)과 정현공(貞獻公) 윤우신(尹又新)·문열공(文烈公) 윤섬(尹暹)·충강공(忠康公) 윤형갑(尹衡甲)·충간공(忠簡公) 윤계(尹棨)의 무덤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문열공 조헌의 도덕과 절의는 해와 달처럼 밝게 빛나므로 그 유집(遺集)을 열람할 적마다 나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곤 한다. 지난해 김 문정공(金文正公)을 문묘(文廟)에 올려 제향할 적에 어찌 혹시라도 그 사이에 취하고 버리며 높이고 낮춤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는가. 다만 아울러 거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걸려 잊혀지지 않는다. 들건대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거리에 있다 하니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정헌공 윤우신·문열공 윤섬·충간공 윤형갑·충간공 윤계의 일문(一門)의 충절은 항상 개연(慨然)히 흠모하던 바이다. 지금 그 묘소를 지나가면서 어찌 뜻을 보이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선조(先朝) 갑인년의 고사에 의거하여 치제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7책 38면 【분류】*왕실(王室)/*정론(政論)/*사법-행형(行刑)/*인물(人物)/*윤리 강상(倫常)/*풍속-예속(禮俗)/*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풍속-예속(禮俗)/*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25)김포군수와 과천 현감을 불러 고을의 폐단을 묻고, 화성으로 출발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청 가경(嘉慶) 2년) 8월 16일 임자 1번째기사

김포군수(金浦郡守) 홍대협(洪大協)과 과천현감(果川縣監) 김이유(金履裕)를 불러 보고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고통을 물어보았다. 홍대협이 아뢰기를, "본군의 민호(民戶)는 1천여 호에 지나지 않는데 군액(軍額)은 1천 7백여 명이니, 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도록 명하였다. 김이유가 아뢰기를, "개울이 되어버린 옛날 재결(災結) 13결(結)이 영재(永災)에 들어가지 않아서 해마다 생판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하니, 상이 탕감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화성(華城)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김포 행궁에서 출발하였다. 수찬 한치응(韓致應)이 도중에 차자를 올리기를, "어제의 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바로 환송(還送)한 것은 만 사람이 눈으로 본 바라고 확답하셨으므로 신들이 감히 믿지 않을 수 없어 모두 즉시 물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서 들으니 분위기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밤부터 새벽까지 또한 한 사람도 돌려보낸 일에 대해 들어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교외의 황벽(荒僻)한 처소에서 홀로 역적 놈과 안온히 밤을 지냈는데, 대신·각신(閣臣)·삼사·시위(侍衛)의 신하는 태연히 사처(私處)에 물러가 거처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신하의 분의(分義)가 쓸어낸 듯 다 없어졌습니다. 신들의 죄는 죽어도 남음이 있으니, 처분을 내려 신들의 불충(不忠)한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만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여러 신하들이 대면을 청하며 합문(閤門)에 엎드려 있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니, 어서 삼사의 소청대로 전형(典刑)을 분명히 바루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어가가 능곡리(能谷里)에 이르러 머물러서 조금 쉬었다. 승지가 아뢰기를, "대신이 옥당(玉堂)의 차자의 말과 관련하여 감히 반차(班次)에 태연히 있지 못하겠다 하여 산반(散班)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가를 수행하는 대신은 오직 한 사람뿐인데, 이처럼 의리를 내세워 피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하였다. 낮에 부평(富平) 행궁에서 쉴 때 지방관 윤광석(尹光頡)을 불러 보고 조금 뒤에 출발하여 안산(安山)의 행궁으로 향하려 하면서 하교하기를, "숙원(淑媛) 조씨(趙氏)의 묘소가 화유귀주(和柔貴主)의 무덤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예전 일을 돌이켜 생각하니 어찌 슬픈 감회를 견딜 수 있겠는가. 어가가 지나

갈 때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여천위(驪川尉) 민자방(閔子芳)은 선릉(宣陵)의 의빈(儀賓)으로서 그 묘소가 어가(御駕)가 지나는 길 옆에 있고, 영신군(永新君)과 함원군(咸原君)은 모두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예로 그 묘소가 바라다 보이니, 또한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고 영의정 문간공(文簡公) 이천보(李天輔)가 수립한 우뚝한 공로를 내가 어찌 차마 잊겠는가. 지금 그 묘소가 있는 고을을 지나가니, 현걸차게 조정에 출사하던 의용(儀容)을 마치 엄숙하게 앞에서 보는 것만 같다. 어가를 멈춰 출발을 늦추고 치유(致侑)의 제문(祭文)을 부르는 데로 쓰게 하여 그 손자인 대교(待敎) 이존수(李存秀)를 보내 유제(侑祭)하도록 하라. 고(故) 중신(重臣) 이문원(李文源)은 바로 훌륭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조정에서 벼슬할 적에 시속을 따르지 않았고 지위가 정경(正卿)에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 시호(諡號)가 내려지지 않았으니, 곧 본가로 하여금 속히 시장(諡狀)을 지어 홍문관으로 이송(移送)하도록 하라."

【영인본】 47책 38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人事)/*군사-군정(軍政)/*왕실-행행(行幸)/*왕실-비빈(妃嬪)/*정론(政論)/*사법(司法)/*풍속(風俗)/*가족(家族)/*재정(財政)/*농업(農業)/*호구-호구(戶口)

26)김포 · 안산 등의 구환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제술 등의 시험을 지시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청 가경(嘉慶) 2년) 8월 18일 갑인 2번째기사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작은 표적을 설치하고 왕이 다섯 차례 쏘았는데 화살 8발이 맞았다. 여러 장신(將臣)에게 편을 갈라서 활을 쏘도록 명하였다. 상이 경기관찰사 이재학(李在學)에게 이르기를, "행차가 지나온 고을 가운데 김포는 구환(舊還)을 탕감하였고, 안산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천과 부평의 제읍(諸邑)은 어떻게 혜택을 베풀어야 하겠는가 " 하였다.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남양부사의 말을 들으니, 민정(民情)이 모두 구환의 감면을 원하나, 외람되이 감히 아뢰지 못한다 합니다."하고, 장용 내사(壯勇內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근래 외읍의 환곡은 분부를 받들어 정퇴(停退)한 것도 있고 그대로 수납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혼동하여 구환이라 일컫고 있는 등 너무도 뒤죽박죽입니다. 감면하는 절차를 차라리 간략하게 할지언정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곡에서 모곡(耗穀)을 받는 것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다. 백성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너무 많은데, 어찌 구환의 감면을 아끼겠는가."하고, 하교하기를, "이번에 장릉(章陵) 참배를 인하여 다행히 한 해 안에 재차 원침(園寢)을 배알(拜謁)하게 되었는데, 경유한 길이 과천 · 시흥 · 김포 · 부평 · 인천 · 안산 · 광주 · 남양 · 수원 등 모두 10개 고을이다. 우리 백성의 혜택을 바라는 마음을 생각하건대 어찌 한갓 의장(儀仗)의 성대함만을 바라보게 할 수야 있겠는가.

김포는 처음 역참에서 묵을 때 선조(先朝) 갑인년 이후로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이미 특별히 혜택을 베풀었고, 양천도 감면하는 조처가 있어서 구환(舊還) 중 가장 오래된 연조(年條)의 것을 탕감하였다. 부평 · 안산의 구환은 가장 오래된 1년 조를 탕감하고, 당년의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 을 특별히 면제하라. 인천 · 남양은 비록 행차가 지나가기만 한 고을이나 처음으로 의장을 본 곳이다. 지나간 곳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구환으로서 문서에 실려 있는 것은, 원근을 논하지 말고 지방관이 백성을 모아 놓고 효유한 뒤에 문권(文券)을 불태우라.

시흥 · 과천 · 광주만 유독 누락시킬 수는 없다. 하물며 처음 지나간 곳인데 또한 어찌 달리하겠는가. 출궁(出宮)과 환궁(還宮) 때 행차가 지나간 곳의 백성이 지고 있는 구환은 또한 그 문권을 불태우도록 하라. 구포(鷗浦) 역시 처음 지나간 곳인데 기유년 이후로 백성들의 편중된 노고가 많았다. 구환은 문권을 불태우고 환포

(還耗)는 방척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뜻을 보이도록 하라. 행차가 지나간 지방의 벼가 혹 짓밟힌 곳이 있으면 해당 도로 하여금 곡식 소출(所出)의 수량만을 환산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유생은 제술(製述)에 응시하고 장교와 군졸은 활 쏘기를 시험 보게 하되 지난해 하교한 대로 거행토록 하라."하였다.

【영인본】47책 39면 【분류】*왕실-행행(行幸)/*왕실-의식(儀式)/*구휼(救恤)/*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군사(軍事)/*재정(財政)/*인사-선발(選拔)

27)이재학의 건의에 따라 양천의 백성들도 환곡의 모곡을 감면받게 하다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청 가경(嘉慶) 2년) 8월 25일 신유 1번째기사

경기관찰사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이번 연로(輦路)의 고을로서 김포·부평·안산 등의 고을 백성들은 모두 당년의 환곡의 모곡을 감면받는 혜택을 입었으나 양천만은 홀로 동일하게 대우받는 혜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하니, 똑같이 모곡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47책 40면 【분류】*왕실-행행(行幸)/*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재정(財政)

28)경기관찰사 서정수가 노복들의 약탈 행위에 대한 장계를 올리다

정조 52권, 23년(1799 기미/청 가경(嘉慶) 4년) 11월 6일 경신 4번째기사

경기관찰사 서정수(徐鼎修)가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초하루에 내사(內司)의 노복 10여 명이 김포(金浦)의 민가에 들입하여 문을 부수고 수색하면서 사람들을 구타한 뒤 돈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만약 통렬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뒷날의 폐단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난동 부린 내사 소속의 노복들에 대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법 규정을 살펴 엄히 단속토록 하고, 내사의 관원에 대해서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니, 하교하기를, "내사에 소속된 자들이 민간에 폐를 끼치면서 허다하게 범법 행위를 저지르다니 정말 증오스럽기 그지없다. 형조에 엄히 신칙하여 형장(刑杖)을 되우쳐서 공초(供招)를 받은 뒤 보고하라고 분부하라. 그리고 만일 한 명이라도 누락될 경우에는 차지중관(次知中官)을 또한 엄히 처치할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요즘 듣건대 사복시에 소속된 자들이 지방에 내려갈 때에도 폐단을 끼치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다. 몰이꾼들을 각별히 단속하라는 뜻으로 해랑(該郎)이 패(牌)를 내줄 적에 엄히 신칙토록 하라. 그리고 이 뒤로 사(司)에 속한 자들이 폐단을 일으킬 경우에는 일일이 감영에 보고토록 하고, 만약 혹시라도 덮어둘 때에는 그 수령 역시 죄를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뜻으로 형조에 회유(回諭)하고 공초를 받아 보고토록 하라." 하고, 하교하기를,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나 엄하게 신칙했던가. 그런데도 단속할 줄 모르다니 정말 증오스럽기 그지없다. 이른바 재복(再福)이라는 자는 경기 감영에 내려 보내도록 하라. 그리하여 즉시 해(該) 군수로 하여금 그 고을의 양반과 천민들을 그 일이 발생한 곳에 모이도록 한 뒤 그를 엄히 다스리게 하고 나서 바로 갑곶진(甲串鎭)의 사공(沙工)으로 충정(充定)토록 하라. 그리고 앞으로 사(司)에서 강화에 내려가는 자들이 폐단을 일으킬 경우, 그 당사자는 우선 놔두고라도 당해(當該) 차지 중관은 양화도(楊花渡)의 관령(管領)으로 충정하고, 두목과 이예(吏隷)들은 모두 형추(刑推)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각별히 엄하게 신칙 하고, 이를 관아의 벽에 써 붙여놓고 준행토록 하라." 하였다.

【영인본】47책 217면 【분류】*신분-천인(賤人)/*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치안(治安)

29)세곡의 폐선이 빈번하자 호송한 지방의 수령과 변장을 문책하다
- 정조 10권, 4년(1780 경자/청 건륭(乾隆) 45년) 7월 20일 병신 2번째기사

30)경기 관찰사 이형규가 국경 수비에 대해 아뢴 상소문
- 정조 12권, 5년(1781 신축/청 건륭(乾隆) 46년) 12월 9일 정축 3번째기사

31)진휼에 대한 논공 행상을 행하다
- 정조 15권, 7년(1783 계묘/청 건륭(乾隆) 48년) 5월 23일 계축 2번째기사

32)비변사의 인사 · 과거 · 군량 등에 대한 논의
- 정조 21권, 10년(1786 병오/청 건륭(乾隆) 51년) 2월 29일 계묘 1번째기사

33)고 부사 이장옥의 아내 김씨가 연호궁의 제사 비용 문제로 아뢰다
- 정조 35권, 16년(1792 임자/청 건륭(乾隆) 57년) 9월 25일 신유 5번째기사

34)임금이 교외의 처소에서 머무는 것을 여러 각신들이 만류하다
- 정조 31권 14년 11월 18일(갑오) 2번째 기사

35)경기관찰사 박우원이 법성포에 침몰한 조운선의 쌀 문제로 장계하다
- 정조 37권, 17년(1793 계축/청 건륭(乾隆) 58년) 4월 20일 임오 2번째기사

36)총융사 정민시가 북한 산성의 환곡 폐단을 아뢰다
- 정조 39권, 18년(1794 갑인/청 건륭(乾隆) 59년) 1월 9일 정유 4번째기사

37)영남 위유사 이익운이 별단을 올리다
- 정조 41권, 18년(1794 갑인/청 건륭(乾隆) 59년) 12월 30일 계미 2번째기사

38)부교리 정래백이 형정의 부당함과 기강 · 언로 · 재용 등의 폐에 대해 상소하다
- 정조 43권, 19년(1795 을묘/청 건륭(乾隆) 60년) 10월 21일 무술 6번째기사

39)배를 북쪽 해안에 정박시킨 강화 유수 김이익을 나포하려다가 용서하다

정조 44권, 20년(1796 병진/청 순치(順治) 1년) 4월 29일 갑진 2번째기사

23. 순조실록

1)경기 · 해서에서 진휼을 끝마치다

ㅇ순조 6권, 4년(1804 갑자 /청 가경(嘉慶) 9년) 6월 13일 경오 1번째기사

경기 · 해서에서 진휼(賑恤)을 끝마쳤다.【경기 통진(通津) 등 다섯 읍진(邑鎭)의 기민(饑民)이 3만3천9백78구(口), 진휼 곡식이 3천1백70석 영(零)이었고, 해서는 연안(延安) · 배천(白川) 두 읍의 기민이 5만6천4백95구, 진휼 곡식이 2천6백70석 영이었다.】

【영인본】47책 482면 【분류】*구휼(救恤)

2)효자 이복운 등에게 증직하고 급복하다

ㅇ순조 10권, 7년(1807 정묘/청 가경(嘉慶) 12년) 3월 17일 기미 2번째기사

예조에서 효자인 양주(楊州)의 선비 이복운(李復運)과 공주(公州)의 선비 민언수(民彦洙)를 증직(贈職)하고, 효부(孝婦)인 민언수의 처 박씨를 급복(給復)하며, 효자인 덕산(德山)의 선비 이덕재(李德采)와 서원(西原)의 고 통덕랑(通德郎) 이규관(李奎觀)을 증직하고, 자인(慈仁)의 고 장사랑(將士郎) 김경복(金景復)을 급복하며, 열녀인 통진(通津)의 고 통덕랑 권화언(權 彦)의 처 이씨와 효부인 춘천(春川)의 고 통덕랑 이현정(李鉉鼎)의 처 신씨(申氏)를 정려(旌閭)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모두 유생(儒生)들이 상언(上言)하였기 때문이다.

【영인본】47책 576면 【분류】*윤리-강상(綱常)/*인사(人事)/*재정-역(役)

3)전국의 효자 · 충신 등에게 정려 등을 내리다

순조 30권, 28년(1828 무자/청 도광(道光) 8년) 10월 9일 을해 1번째기사

효자(孝子)로 뽑힌, 고 승지(故承旨) 심규로(沈奎魯), 김제(金堤)의 사인(士人) 김한명(金漢明), 무장(茂長)의 고 동지(故同知) 김치관(金致瓘), 단양(丹陽)의 사인(士人) 이상문(李尙文)에게는 정려(旌閭)를 내리고, 문의(文義)의 사인(士人) 김성대(金聲大), 흥양(興陽)의 사인(士人) 김경집(金慶集), 원주의 통덕랑 이사원(李思遠), 김포의 통덕랑 이재직(李載稷), 철원(鐵原)의 사인(士人) 이훈(李燻), 무안(務安)의 사인(士人) 김약화(金躍華), 영암(靈巖)의 사인(士人) 조성윤(曹聖允)에게는 증직(贈職)을 내렸으며, 진주(全州)의 사인 권내언(權來彦)에게는 호역을 면제하였다.

단종 때의 충신인 진사 조완규(趙完珪)에게는 증직을 내리고, 병자란(丙子亂)에 순절한 증(贈) 참판(參判) 배명순(裵命純)에게는 정려를 내렸으며, 고부(古阜)의 증(贈) 집의(執義) 김남식(金南式)은 충절로써 증직하였고, 그 아들 김이성(金履成)은 효행으로써 정려하였다. 부안의 고(故) 주부(主簿) 김억일(金億鎰)은 순효비(純孝碑)를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선묘조(宣廟朝)에 특명으로 비를 세운 것이었으나 광해군(光海君) 때에 그 전에 세자 책봉을 간쟁하였다는 이유로 그 비석을 허물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두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예조에서 회답한 것이었다.

【영인본】48책 315면 【분류】*인사-관리(管理)/*군사-군역(軍役)/*윤리-강상(綱常)

4)경기감사 김렴이 10여 명을 살해하고 2만여 냥을 턴 사건을 보고하다

ㄴ 순조 30권, 29년(1829 기축/청 도광(道光) 9년) 10월 8일 기사 1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 김렴의 장달(狀達)에 이르기를, "통진부사(通津府使) 구재묵(具載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9월 19일 조수(潮水)때 한 익사(溺死)한 남자가 강녕포구(康寧浦口)에 떠내려 왔는데, 칡넝쿨로 양팔을 묶인 흔적이 있고 오른쪽 눈을 빼어버렸습니다. 남에게 결박을 당하여 물에 던져진 것이 확실하므로 임시 매장하고 표(標)를 세워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어 본관(本官)을 특별히 신칙하여 탐문 조사하게 하고 각 고을에 관문(關文) 을 보내어 시체를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9월 28일 경강(京江)의 상민(商民) 김종형(金宗亨) 등과 난지도(蘭芝島)의 거민(居民) 김득성(金得成) 등의 정장(呈狀)에 이르기를, '지난 8월 21일 무미전(貿米錢) 1만7천3백 냥을 난지도(蘭芝島)의 차여진(車汝辰) 선척(船隻)에 싣고 사격(沙格) 14명이 떠났습니다. 한 달이 넘어도 끝내 도착하지 않는 까닭에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널리 탐문하니, 파괴된 선척(船隻)이 강녕포(康寧浦) 바닷가에 엎어져 있고, 결박 당한 시체 10여 구가 조수를 따라 출몰하였는데, 1구는 통진(通津)으로부터 나온 관리가 건져내어 검험(檢驗)하였고, 1구는 본리(本里)에 거주하는 백성이 자발적으로 묻어 두었으며, 또 3구의 시체가 강화(江華) 장곶포(長串浦)에 표류해 왔는데 모두 칡넝쿨로 결박하여 눈을 제거하고 엇빨을 빼버렸고, 입은 찢어지고 얼굴은 깨뜨려진 상태였으며, 선체(船體)는 강녕포에 사는 임만석(林萬石) 등 여덟 놈이 탈취해 갔다.' 고 합니다. 또 심영(沁營)의 이문(移文)을 받아보니, 9월 21일 썰물[汐水]에 익사(溺死)한 3구의 시체가 장곶보(長串堡)에 표류해 왔는데, 혹은 칡넝쿨로 결박하고 혹은 삼[麻]으로 꼰 새끼로 두 손을 묶었으며, 1구의 시체는 호패(號牌)가 있었는데, 한산(韓山)에 사는 양귀룡(梁龜龍)으로 나이가 59세였으므로 묻어두고 입표(立標)하였다고 합니다.

각 진영(鎭營) 및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관문을 발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였으며, 별도로 신영(臣營)의 교졸(校卒)을 파견하여 다각도로 탐색 조사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28일 오시(午時)의 밀물 때 주인 없는 선척(船隻)이 초서(草嶼)에 걸려 있어서, 강녕포(康寧浦)에 사는 임만석(林萬石) 등 여덟 놈이 빈 배를 가서 보고 배 안에 남아 있는 돈[錢]을 각자가 나누어 가졌는데 그 소문이 낭자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임만석 등을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엄중

히 문초하게 하였더니, 혹은 5백냥, 혹은 2, 3백냥씩 나누어 가져 합계가 1천8백 냥이었습니다. 10여 인명(人命)을 살해하고 수만전(數萬錢)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결코 심상한 수적(水賊)이 아니므로, 널리 탐문 조사하여 기어히 체포하려 합니다.

임만석 등이 당일(當日)의 사변(事變)을 비록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더라도, 처음에 관아에 고(告)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정상(情狀)은 매우 해괴한 것입니다. 도적놈들을 잡아오는 동안 임시로 엄중히 가두고, 우선 급히 보고합니다."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이 장달(狀達)을 보건대, 단지 마음으로 놀랄 일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여 명의 인명을 한꺼번에 바다에 던져버리고, 만여(萬餘) 냥의 돈을 어려움 없이 약탈하였으니, 이것은 수십 명의 강도(强盜)가 할 수 있는 바의 일이 아니며, 또 근기(近畿)의 땅에서 이런 변이 있기에 이른 것은, 어찌 소름끼치는 일이 아니겠으며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잡아가든 여덟 놈이 적정(賊情)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니, 충분히 구명하여 밝혀내어 애매하게 걸려드는 근심이 없도록 하며, 흉악(凶惡)을 저지른 여러 도적들은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섯 진영(鎭營)에 엄히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잡아들이게 하라. 만약 제 때에 잡아오지 못하면, 별도의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거행하라."하였다.

【영인본】48책 331면 【분류】*사법-치안(治安)/*사법-탄핵(彈劾)

5)비국에서 장용영의 철파 · 호조 등의 노비공 급대에 관해 아뢰다
순조 4권, 2년(1802 임술/청 가경(嘉慶) 7년) 9월 12일 경진 3번째기사

6)경기 암행 어사 홍의영이 수원 유수 이집두 등 각 고을 수령의 실정을 아뢰다
순조 11권, 8년(1808 무진/청 가경(嘉慶) 13년) 12월 17일 무신 2번째기사

7)비국에서 제도와 각도의 전후 진폐 책자를 가지고 조목조목 회계하다
순조 14권, 11년(1811 신미/청 가경(嘉慶) 16년) 3월 30일 무인 2번째기사

8)예조에서 각 식년 경외의 충 · 효 · 열의 문서를 보고하다
순조 15권, 12년(1812 임신/청 가경(嘉慶) 17년) 3월 13일 을유 2번째기사

9)경기 · 호서 · 영남 · 관동의 진제를 마치다
순조 17권, 14년(1814 갑술/청 가경(嘉慶) 19년) 5월 8일 무술 2번째기사

10)경기 · 관서 · 북관 · 관동의 진휼을 끝마치다
순조 25권, 22년(1822 임오/청 도광(道光) 2년) 5월 29일 임인 3번째기사

11)고 이돈서 · 박심원 · 김성에게 증직하다
순조 27권, 24년(1824 갑신/청 도광(道光) 4년) 3월 21일 갑신 2번째기사

12)호조에서 아뢰어 재결을 마음대로 편리하게 한 도신 · 수재를 벌하게 하다
순조 28권, 26년(1826 병술/청 도광(道光) 6년) 1월 25일 정미 2번째기사

13)경기 암행 어사 권복의 서계대로 상법을 시행하다
순조 28권, 26년(1826 병술/청 도광(道光) 6년) 6월 14일 갑자 2번째기사

14)효행과 열행을 한 유생들에게 포상하기를 예조에서 복계하다
순조 32권, 31년(1831 신묘/청 도광(道光) 11년) 7월 14일 갑자 1번째기사

15)예조에서 각 식년에 충 · 효 · 열에 대해 장계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분등하여 초계하다

○순조 32권, 32년(1832 임진/청 도광(道光) 12년) 4월 13일 기축 2번째기사

16)목사 · 현감 · 군수의 실정과 선정에 대해 암행 어사 이시원이 서계하다

○순조 33권, 33년(1833 계사/청 도광(道光) 13년) 10월 2일 기해 3번째기사

24. 헌종실록

1)우의정 조인영이 소장의 서계와 감부하지 못한 수령의 문제를 아뢰다

헌종 8권, 7년(1841 신축/청 도광(道光) 21년) 3월 15일 경자 1번째기사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도왜(島倭)의 접대에는 본디 약조가 있으므로 털끝만큼이라도 어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데, 연전에 대찰(代察)의 서계(書契)를 아뢴 것은 매우 의람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당해 수령(守令)을 문비(問備)하고, 인하여 효유(曉諭)하여 물리쳐 보내게 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이제 4년 뒤에 또 번거롭게 아뢰면서 전에 들지 못한 소장(小將)이 서계한 것으로 거듭하니, 변방(邊方)의 체례(體例)로 생각하면 아주 놀랍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대찰의 서계는 약조에 어그러지기는 하나 이미 아뢰었고, 차왜(差倭)가 오래 지체하는 것도 일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먼 데 사람을 회유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였으나, 별폭(別幅)은 더욱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소장의 서계에 이르러서는 곧 약조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므로 대찰의 서계와 같은 예(例)로 논할 수 없습니다. 이 뜻으로 해부(該府)에 분부하여 하나는 허락하고 하나는 허락하지 않는 사리(事理)를 관왜(館倭)에게 상세히 칙유(飭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적법이 아주 무너진 것이 이미 말할 수도 없어서 전에 수시로 폐단을 바로잡을 뜻으로 적곡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守令)을 차례로 감등(減等)하는 율(律)을 청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근래에 잔폐(殘弊)한 국지(局地)에서는 오로지 면하려고 꾀하는 것을 일삼아, '당년에 감부(勘簿)하지 못하면 그 죄가 작으나 뒷날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은 크다.' 하여 모두 편리한 방법을 가리는 버릇을 부려서 체임(遞任) 되기를 꾀하는 계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일에 김포(金浦)·풍기(豐基) 두 수령의 일을 보더라도 그 말은 실속을 힘쓰는 듯하나 그 일은 실로 규피(規避)하는 데로 돌아갑니다. 대저 겨울을 지내도 감부하지 못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이후로 감부하지 못한 수령은 한결같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하고, 제도(諸道)·제도(諸都)에 공문을 보내어 알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48책 485면 【본문】*외교-왜(倭)/*재정-국용(國用)/*구휼(救恤)

2)경기 암행어사 이제달을 소견하고 한익언 · 이서 · 김의순 등을 차등있게 죄주다

헌종 9권, 8년(1842 임인/청 도광(道光) 22년) 7월 22일 무진 1번째기사

25. 철종실록

1)서계하여 전 양지현감 최집 등을 탄핵한 경기 암행어사 유안을 불러 보다

철종 3권, 2년(1851 신해/청 함풍(咸豐) 1년) 3월 29일 병진 2번째기사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유안(柳晏)을 불러 보았는데, 전 양지현감(陽智縣監) 최집(崔鏶), 파주목사(坡州牧使) 이길구(李吉求), 전전 여주목사(驪州牧使) 이규헌(李奎憲), 전 교동부사(喬桐府使) 오치현(吳致賢), 전전 장단부사(長湍府使) 구성희(具性喜), 전전 통진부사(通津府使) 구춘희(具春喜), 이천부사(利川府使) 심석규(沈碩奎), 전전 고양군수(高陽郡守) 김효구(金孝求) 등에게 죄를 줄 것과, 마전군수(麻田郡守) 홍재응(洪在應)을 포장하여 승서(陞敍)할 것을 서계(書啓)하였다.

【영인본】48책 561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인사-관리(管理)/*사법-탄핵(彈劾)

2)부평 · 김포 등의 고을에 휼전을 내리다

철종 3권, 2년(1851 신해/청 함풍(咸豐) 1년) 8월 25일 기묘 2번째기사

부평(富平) · 김포(金浦) · 시흥(始興) · 과천(果川) 등 고을의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영인본】48책 563면 【분류】*구휼(救恤)

26. 고종실록

1)훈련 도감 중군 이용희가 이양선이 아직 석곡에 정박하고 있다고 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8월 20일 병오 4번째기사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중군(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이양선(夷洋船)이 어제 해시(亥時)경에 김포(金浦) 석곡(石谷)에 가서 정박하였는데 아직까지 전진할 기미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또 서강(西江)에 나가 진을 치고 있던 장졸들에 대하여 지금 우선 계엄을 풀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231면 【분류】*외교-프랑스[法]/*군사-군정(軍政)/*군사-중앙군(中央軍)/*교통-수운(水運)

2)경기 감사와 통진부사, 덕포첨사가 팔미도에 정박한 이양선의 이동을 보고하다

·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7일 계해 6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영종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올린 등보(謄報)에 의하면, 「이달 5일 오시(午時)경에 이양선(異樣船) 3개의 돛을 단 배 3척과 2개의 돛을 단 배 4척이 신의 수영(水營)의 경내에 있는 팔미도(八尾島) 외해(外海)에서부터 부평 경계의 물치도(勿雉島)와 호도(虎島)사이에 가서 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방비를 계속 강화하도록 엄히 신칙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또 '통진부사(通津府使) 이공렴(李公濂)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이양선 3척이 이달 6일 사시(巳時)경에 응도(鷹島)에서 출발하여 위로 거슬러 올라왔는데 2척은 이미 본부(本府)의 죽진(竹津) 앞바다를 지났고, 1척은 손돌목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감시하던 장수와 교리(校吏) 등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위로 올라간 3척 외에 자그마한 배 1척과 먼저 올라간 배와 같은 배 1척이 또 그 뒤를 따라 올라왔는데, 이미 강화의 기포(圻浦)를 지나갔으며 큰 배 1척은 응도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덕포첨사(德浦僉使) 이두현(李斗賢)이 올린 첩정(牒呈)의 내용에서는, 「이달 6일 사시경에 이양선 4척이 갑자기 물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2척의 배는 경강(京江)의 세미 운반선보다 거의 배나 컸습니다. 1척의 배에는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종선(從船)이 8척이었고, 1척의 배에는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종선이 7척이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경강선(京江船)의 종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올라탄 사람들은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척의 배는 경강의 조선(漕船)보다 약간 컸는데 두 척이 모두 일시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 본 진(鎭)의 앞바다를 지나갔으며 이어 갑곶 앞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큰 배 4척과 자그마한 종선 15척은 오늘 사시에 올라갔으며 부평(富平) 알대에 가서 정박하고 있는 3척의 배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232면 【분류】*외교-프랑스[法]/*교통-수운(水運)

3)경기감사 유치선이 이양선 1척이 응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보고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8일 갑자 14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이양선(異樣船)에 있는 여러 놈들이 각기 작은 배를 타고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는 바람에 문정(問情)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진(通津) 일대로 올라갔던 저들의 배 1척이 7일 유시(酉時)에 다시 내려와서 응도(鷹島)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233면 【분류】*외교-프랑스[法]/*군사-군기(軍器)/*교통-수운(水運)

4)강 연안의 고을들에 적의 상황을 순찰하도록 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9일 을축 12번째기사

총융청(總戎廳)에서 '이번에 강 연안을 순찰하고 방수(防守)할 때, 연로(沿路) 각 고을의 척후(斥候)·보경(報警) 등 문제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신이 있는 총융청(總戎廳)에서 우선 양천(陽川), 김포(金浦), 통진(通津), 고양(高陽), 교하(交河), 파주(坡州), 장단(長湍) 등의 고을에 전령(傳令)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영인본】1책 234면 【분류】*군사-군정(軍政)

5)강화도에 침입한 적의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부사 이공렴을 문책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10일 병인 12번째기사

또 아뢰기를, "강화도(江華島)를 잃은 후 적들의 실태의 허실에 대해 전혀 보고하는 일이 없습니다. 통진(通津)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며칠이 되도록 한 번도 치보(馳報)를 보내지 않았으니, 일의 소홀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 부사(府使) 이공렴(李公濂)을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대임으로 부호군(副護軍) 신재지를 차하(差下)하여 즉시 내려보내소서. 비록 도신(道臣)을 놓고 말하더라도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일이므로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월봉(越俸)의 법을 시행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I책 234면 【분류】*사법-치안(治安)/*인사-임면(任免)/*재정-국용(國用)/*사법-행형(行刑)

6)선봉 중군 이용희가 서양 외적의 정황을 보고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11일 정묘 7번째기사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 중군(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이단 10일 술시(戌時)에 보내온 보고를 보니, 「대진(大陣)이 당일 신시(申時)경에 통진(通津) 부근의 양릉교(陽陵橋)에 도착하니, 해당 부사(府使) 이공렴(李公濂)이 인부(印符)를 싸가지고 혼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어제 오시(午時) 경에 양적(洋賊) 50여 명(名)이 각기 총 칼을 가지고 마을에 돌입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는데, 소와 가축, 의복들을 남김없이 모두 가져갔고, 이어서 관사(官舍)에 들어가 공사전(公私錢) 6, 700냥(兩)을 모두 가지고 갔으며, 심지어는 관복과 여러가지 기구들까지도 모두 남김없이 가져갔습니다.

관가에는 이속(吏屬)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고, 여염(閭閻)에는 남녀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외촌(外村)의 백성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모두 도망쳐 흩어져 버렸는데, 부사가 홀로 있다가 앉아서 살해당하면 안 되겠기에 부득이 걸어서 산에 올라가 잠시 피하여 5, 6리밖에 있는 민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지금 막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듣고보니 몹시 놀랍고 통분스러워 우선 몇 명의 군교를 급히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미복(微服)으로 먼저 가서 앞길의 좌우를 자세히 살펴 적정(賊情)의 허실과 복병(伏兵)의 유무를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또 몇 명의 군교를 먼저 보내어 좌우 촌락으로부터 고을 안까지 먼저 돌아다니면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타일러주도록 하고, 대진(大陣)이 이어서 바로 진군하였습니다.

유시(酉時) 경에 해부(該府)의 앞길에 도착하여 방진(方陣)을 치고서 변고에 대비하였습니다. 대군(大軍)이 도착하자 못 사람들이 다같이 기뻐하면서 삼삼오오(三三五五) 백성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는데 그 중 한두 백성이 와서 고하기를, 「어제 양적(洋賊)이 마을로부터 차츰 문수산성(文殊山城)으로 올라갔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마치 험지(險地)를 점거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니 고을에서 10리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장수에게 순시하게 하고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군졸들에게도 음식을 먹이면서 한편으로는 환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환란을 제어 할 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책 234면 【분류】*외교-프랑스[法]/*군사-군정(軍政)/*군사-군기(軍器)/*재정-잡세(雜稅)

7)선봉 이용희가 양이들이 문수 산성에 들어갔다가 철수하여 돌아갔다고 보고하다

ㄷ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12일 무진 7번째기사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先鋒) 이용희(李容熙)의 보고를 보니, 「11일 신시(申時)에 문수산성(文殊山城)에 들어갔던 양이(洋夷)들이 대군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는 모두 철수하여 배들도 통진(通津)에는 감히 침범하지 않았지만, 산에 올라가 감시한 것에 의하면 쌍(雙) 돛을 단 배 2척이 갑곶진(甲串津)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다가 1척은 남쪽을 향해 떠나가고 1척은 월곶진(月串津)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대체로 배가 있어야 강을 건너 접전할 수 있는데 바다를 따라 오르내려도 거룻배 하나 없어서 우선 통진(通津)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235면 【분류】'외교-프랑스[法]

8)순무영에서 선봉 중군 이용희가 치보를 올리다

ㄷ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21일 정축 5번째기사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치보(馳報)한 것을 보니, 「통진부사(通津府使) 신재지가 보낸 첩정(牒呈)에, 「본부 초입에서 망을 보고 있던 색리(色吏)의 보고에서 돛 없는 흰 색의 큰 이양선(異樣船) 1척이 20일 저녁 조수를 타고 올라와서 영종(永宗) 마서(馬嶼)섬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238면 【분류】'군사-군정(軍政)

9)사헌부에서 이인기와 이용회를 사형에 처하도록 아뢰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29일 을유 1번째기사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차자(聯名箚子)에, 【대사헌(大司憲) 최우형(崔遇亨), 대사간(大司諫) 송돈옥(宋敦玉), 집의(執義) 김석보(金錫輔), 사간(司諫) 이응진(李應辰), 장령(掌令) 민희식(閔羲軾), 지평(持平) 신헌구(申獻求)·김양연(金亮淵), 헌납(獻納) 이만기(李晩耆), 정언(正言) 조병직(趙秉稷)·황익수(黃益秀)이다.】

"신 등은 지금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한 죄인 이인기(李寅夔)와 이용회(李龍會)에 대하여 사형에 처한 것을 아뢰면서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성토(聲討)하느라 다른 문제는 미처 언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통진(通津)에서 적들이 어지럽게 날뛴 변고도 강화도(江華島)와 다름없습니다.

아, 저 이공렴(李公濂)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일정한 구역을 책임지운 벼슬에 있었으니 의리상 응당 적들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몇 놈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일시에 날뛰게 되자 쥐구멍을 찾아 숨어버리고 적들이 제멋대로 포악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자기 맡은 구역을 버리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리신 전교(傳敎)에 의하면 다만 원악지정배(遠惡地定配)의 법조문만을 적용하였으니 이로 인해 국법은 굽혀지게 될 것이고 공론은 점점 거세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라건대 크게 용단을 내려 우선 이공렴에게 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신하로 나라를 배반하고 구차스럽게 목숨이나 부지하려는 자들에게 징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을 내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영인본】1책 240면 【분류】*왕실-국왕(國王)/*정론-간쟁(諫爭)/*사법-행정(行政)

10)선봉 중군 이용희가 이양선의 동향을 보고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29일 을유 6번째기사

순무영(巡撫營)에서, '선봉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이달 28일 술시(戌時)에 보내온 급보에 의하면 '그날 유시에 통진부사(通津府使) 신재지의 공문과 문수 별장(文殊別將) 신도혁(申道爀)의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보고하기를,

「오늘 신시(申時)쯤에 갑곶진에 정박하고 있던 작은 이양선(異樣船) 2척이 제수돈대(鷄壽墩臺)에까지 가서 사방을 감시한 다음 도로 갑곶진으로 갔으며 큰 이양선 1척은 하류 쪽으로 향해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달아 접수한 덕진첨사(德津僉使)의 급보에서는, 「큰 이양선 1척이 아래로 내려와 본 진영 앞바다를 통과하여 부평(富平) 일대로 향해 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240면 【분류】*외교-프랑스[法]/*군사-군정(軍政)

11)순무영에서 갑곶진에 정박하고 있던 이양선이 부평 일대로 향해 갔다고 보고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10월 5일 경인 1번째기사

순무영(巡撫營)에서, '통진부사(通津府使) 신재지의 보고에 의하면 당일 진시(辰時)에 갑곶진(甲串津)에 정박하고 있던 크고 작은 이양선(異樣船) 전부가 닻을 올리고 아래로 내려가 덕적진(德積津) 앞바다를 지나 부평(富平) 일대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242면 【분류】*외교-프랑스[法]/*교통-수운(水運)/*군사-군정(軍政)

12)양이가 침입하였을 때 문묘의 신위를 옮겨 모신 이동학에게 가자하라고 명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10월 22일 정미 2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의 장계 등본을 보니, 통진부사(通津府使) 신재지의 첩정(牒呈)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지난달 9일 서양 오랑캐가 쳐 들어와 약탈을 감행하며 남의 신주(新主)를 불태울 때에 당장(堂掌) 이동학(李東學)은 화가 성묘(聖廟)에 미칠까 염려하여 오성(五聖)의 위판(位版)을 여금산(如金山) 석실(石室) 안에 임시로 모셔두었습니다. 지금 환안(還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위안제(慰安祭)에 쓸 향과 축문을 속히 내려보내고, 이동학에게 낭관의 품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246면 【분류】*외교-프랑스(佛)/*인사-관리(官吏)/*풍속-예속(禮俗)/*어문학-문학(文學)

13)김포, 양천, 고양, 시흥의 군포 가운데 3분의 1을 탕감해 주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10월 25일 경술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지난번 서양 오랑캐들이 침입하였을 때에 통진(通津) 역시 그 피해를 받아 공화(公貨)를 약탈당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당한 것은 큰 액운이었다. 그런데도 40일 동안 대진(大陣)의 군사들을 도와준 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갖은 고초를 겪은 실상이 눈에 선하여 한밤중에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자주 일어나곤 한다.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예에 따라 돌봐주는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영에 바치는 포(布) 가운데서 통진은 금년분 전량을 탕감해 주고, 김포(金浦), 양천(陽川), 고양(高陽), 시흥(始興)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특별히 탕감해 주어서 조정에서 후하게 구휼해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영인본】1책 247면 【분류】*구휼(救恤)/*재정-공공(貢物)

14)호조에서 새로 주조한 돈을 내려서 진해와 성첩과 무기를 수리하도록 하다

◎고종 4권, 4년(1867 정묘/청 동치(同治) 6년) 1월 25일 경진 6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이의익(李宜翼)이 의 보고한 바를 보니, '통진부(通津府)의 문수산성(文殊山城)은 바로 관방(關防)의 요충지인 만큼 진해와 성첩(城堞)과 무기 등의 허다한 수리를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고 하였습니다.

호조(戶曹)에서 새로 주조한 돈 가운데에서 1만냥(兩)을 절계(折計)하여 획송(劃送)하여 차례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257면 【분류】*금융-화폐(貨幣)/*군사-군정(軍政)

15)문수 산성이 무너져 보수하도록 하다

◎고종 4권, 4년(1867 정묘/청 동치(同治) 6년) 7월 4일 을묘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문수산성(文殊山城)이 모두 무너졌다고 하였다. 새로 쌓은 성첩(城堞)이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모두 무너졌다고 하니, 공력을 다하지 않고 단지 겉치레만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도에서 군사 장비를 일신(一新)했다는 것도 한갓 명목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부사(府使) 이방희(李邦熙)는 용서하기 어려우니 귀양 보내는 형벌을 시행하고 감독한 여러 사람들은 경기 감영으로 하여금 경중을 나누어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성첩의 수축은 한시가 급하니, 통진부사(通津府使) 대신으로 울진현령(蔚珍縣令) 백낙선(白樂善)을 특별히 제수(除授) 하여 즉시 내려보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행하여 기한 안에 완공한 것을 보고하게 하라."하였다.

【영인본】1책 268면 【분류】*군사-관방(關防)/*군사-군정(軍政)

16)경기 암행어사 박제관을 소견하다

고종 4권, 4년(1867 정묘/청 동치(同治) 6년) 9월 17일 정묘 2번째기사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박제관(朴齊寬)을 소견(召見)하였다. 올린 서계(書啓)에, "개성부 전 유수(開城府前留守) 이승보(李承輔), 안성군수(安城郡守) 이승로(李承老), 인천부사(仁川府使) 조운섭(趙雲涉), 이천부사(利川府使) 장익(張翼), 가평군수(加平郡守) 김진(金瑨), 파주 전 목사(坡州前牧使) 조희풍(趙羲豊), 남양 전 부사(南陽前府使) 정태호(鄭泰好), 통진부사(通津府使) 신재지, 지평 전 현감(砥平前縣監) 유치도(兪致道), 음죽 전 현감(陰竹前縣監) 김순근(金恂根), 영화찰방(迎華察訪) 박연용(朴演鏞) 등에게는 죄를 주고, 양주목사(楊州牧使) 임한수(林翰洙), 지평현감(砥平縣監) 정기석(鄭箕錫)에게는 새서(璽書)와 표리(表裏)를 주며, 양근 전 군수(楊根前郡守) 박효헌(朴孝憲), 고양 전 군수(高陽前郡守) 민태호(閔台鎬), 여주목사(驪州牧使) 김익현(金翼鉉), 파주목사 유환(柳晥), 교동부사(喬桐府使) 이근영(李根永), 김포군수(金浦郡守) 윤영하(尹永夏), 고양 전전 군수(高陽前前郡守) 고석현(高奭鉉) 등에게는 차등있게 포상(褒賞)하소서."하였다.

【영인본】1책 273면 【분류】*왕실-국왕(國王)/*왕실-사급(賜給)

17)부평, 통진, 풍덕의 포수에게 도시를 쳐서 1명씩 뽑아 직부전시하도록 명하다

고종 4권, 4년(1867 정묘 /청 동치(同治) 6년) 11월 1일 경술 4번째기사

부평(富平)·통진(通津)·풍덕(豐德)의 포수들을 매년 가을마다 도시(都試)에서 우수한 사람 1명을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 진무사(鎭撫使)가 장청(狀請)한 것으로 인하여 묘당(廟堂)의 계사(啓辭)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인본】1책 275면 【분류】*인사-선발(選拔)

18)경기 암행어사의 서계에 따라 지방관을 죄주거나 표창하다

◦ 고종 5권, 5년(1868 무진/청 동치(同治) 7년) 10월 15일 무오 2번째기사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정순조(鄭順朝)를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에 의하여, 죽산 전 부사(竹山前府使) 정형기(鄭亨基), 통진 전 부사(通津前府使) 백낙선(白樂善), 부평부사(富平府使) 서광두(徐光斗), 진위현령(振威縣令) 송병찬(宋秉瓚) 등에게 죄를 주고, 안성군수(安城郡守) 정기석(鄭箕錫), 영평 전 군수(永平前郡守) 이헌경(李憲絅), 용인현령(龍仁縣令) 박용민(朴容珉), 양지현감(陽智縣監) 이헌문(李憲文), 과천현감(果川縣監) 이병제(李秉悌), 적성현감(積城縣監) 조운주(趙雲柱), 음죽현감(陰竹縣監) 김두하(金斗河) 등에게는 모두 표창으로 승서(陞敍)하였다.

【영인본】1책 303면 【분류】*왕실-국왕(國王)/*사법-행형(行刑)/*인사-관리(管理)

19)통진부사 백낙선이 군사 기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정배하도록 하다

◦ 고종 7권, 7년(1870 경오/청 동치(同治) 9년) 7월 18일 임오 2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통진부사(通津府使) 백낙선(白樂善)이 성첩(城堞)을 수리하고 관청 건물을 세우며 군기(軍器)를 갖춘 것이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그 죄상에 대해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전날 보고 된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전 부사 백낙선을 즉시 정배(定配)시키고 제반 일들은 다시 영건(營建)하여 전날의 보고와 부합되게 한 뒤에 경기 감영에서 치계(馳啓)하여 보고하라."하였다.

【영인본】1책 337면 【분류】*사법-행형(行刑)/*군사-지방군(地方軍)

20)러시아에 도망가 있는 백성들을 돌려오는 문제로 북경에 공문을 보내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청 동치(同治) 9년) 윤10월 4일 병인 2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보고한 것을 보니, '도내(道內)의 우심읍(尤甚邑)은 통진(通津), 교동(喬桐), 풍덕(豐德), 장단(長湍), 교하(交河), 파주(坡州), 고양(高陽), 영종(永宗) 등 8개의 읍진(邑鎭)인데, 요호(饒戶) 및 재해를 당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규례대로 거두어들이고, 기호(饑戶)로 뽑힌 집은 바쳐야 할 환자(還上)를 모두 우선 정퇴(停退)하고, 지차읍(之次邑) 중에서 양주(楊州)는 절반은 본색(本色)으로 내게 하고 절반은 대전(代錢)하게 하며, 포천(抱川), 적성(積城), 마전(麻田)은 본색과 소미(小米), 황두(黃豆)를 가리지 말고 백성들의 희망에 따라서 거두어 들이고, 김포(金浦)의 경우는 우선 요호 및 재해를 당하지 않아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집부터 규례대로 독촉하여 받아 내고 가난한 백성 가운데 재해를 유난히 심하게 입어서 받아낼 도리가 없는 자들을 뽑아 특별히 정퇴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신(道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이미 묘당(廟堂)에서 품처하라는 명이 이미 있었고, 말씀이 간곡하여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감동하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실정과 백성들의 힘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여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과 북병사(北兵使) 김기석(金箕錫)의 장계를 보니, '비류(匪類)를 데려올 차사원(差使員)이 훈춘琿春)으로 달려가보니 협령(協領)이 벌써 두 번이나 러시아 변경 지역에 가서 먼저 기미를 탐지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려하고 또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쇄환(刷還) 등의 절차는 삼가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문(衙門)의 이문(移文)과 문답기(問答記)를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류를 데려오는 일은 실로 중국에서 권고하였고 데려올 날짜는 또 협령이 보고한 것에 따라 그에 맞춰 갔는데, 이제 와서 협령이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어 또 가지 말라고 만류하여 마지않으므로 사세를 참작건대도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쇄환 등의 절차는 우선 내버려두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또한 사유를 갖추어 자문(咨文)을 보내야 하니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자문을 짓게 해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342면 【분류】*외교-러시아(露)/*재정-전세(田稅)/*호구-이동(移動)/*어문학-문학(文學)

21)선혜청 창고의 쌀을 획하하여 통진 등 8개 고을의 흉년을 구제하도록 하다

고종 7권, 7년(1870 경오 /청 동치(同治) 9년) 윤10월 22일 갑신 5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올린 장계(狀啓)에, "통진(通津) 등 8읍(邑)이 가뭄 피해를 입은 결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내년 봄에 진휼(賑恤)을 설행하여야 하겠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자미(賑資米)를 특별히 획하(劃下)하라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기내(畿內)의 몇 개 읍이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밤낮 근심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고 있다. 농사를 망치고 씨앗을 잃은 저 불쌍한 백성들이 무슨 수로 살아가겠는가 이번에 곡식을 청한 일은 하루가 급한 문제이니, 선혜청(宣惠廳)에 저치된 유고미(留庫米) 중에서 2,000석(石)을 특별히 획하하여 진휼에 정성을 다해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에 부합되게 하여 백성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하라."하였다.

【영인본】1책 344면 【분류】*구휼(救恤)/*재정-창고(倉庫)

22)경기 연해의 각군에 포군을 두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1월 25일 을묘 2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진무영(鎭撫營)에 별무사(別武士) 401인(人), 별효사(別驍士) 201인, 효충사(效忠士) 103인, 장의사(壯義士) 223인, 승군(僧軍) 21인, 우방어영(右防禦營)의 교동부(喬桐府)에 포병(砲兵) 100인, 전영(前營)의 부평부(富平府)에 포군(砲軍) 300인, 좌영(左營)의 통진부(通津府)에 의포사(義砲士) 256인, 우영(右營)의 풍덕부(豊德府)에 별포사(別砲士) 203인, 후영(後營)의 연안부(延安府)에 화포군(火砲軍) 50인, 백천군(白川郡)에 포군 50인, 덕포진(德浦鎭)에 포병 44인, 문수산성(文殊山城)에 별포군(別砲軍) 25인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좌방어영(左防禦營)의 영종진(永宗鎭)에는 별무사 200인, 별총군(別銃軍) 200인 외에 의익사(義翊士) 105인을 이번에 가설(加設)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353면 【분류】*군사-군정(軍政)/*군사-지방군(地方軍)

23)전국의 서원 중에서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폐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 /청 동치(同治) 10년) 3월 20일 경술 4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 중첩하여 세운 서원(書院)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신 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大院君) 앞에 나아가 품의(稟議)한 결과, 「성묘(聖廟) 의 동쪽과 서쪽에 배향하는 제현(諸賢)과 충절(忠節)과 대의(大義)를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판을 떼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액(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한 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경기(京畿)의 개성(開城) 숭양서원(崇陽書院), 용인(龍仁) 심곡서원(深谷書院), 파주(坡州) 파산서원(坡山書院), 여주(驪州) 강한사(江漢祠),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김포(金浦) 우저서원(牛渚書院), 포천(抱川) 용연서원(龍淵書院), 과천(果川) 사충서원(四忠書院), 양성(陽城) 덕봉서원(德鳳書院), 과천(果川) 노강서원(鷺江書院), 고양(高陽) 기공사(紀功祠), 충청도(忠淸道)의 연산(連山) 돈암서원(遯巖書院), 홍산(鴻山) 창렬사(彰烈祠), 청주(淸州) 표충사(表忠祠), 노성(魯城) 노강서원(魯岡書院), 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전라도(全羅道)의 태인(泰仁) 무성서원(武城書院),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 장성(長城) 필암서원(筆巖書院), 경상도(慶尙道)의 경주(慶州) 서악서원(西嶽書院), 선산(善山) 금오서원(金烏書院),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 예안(禮安) 도산서원(陶山書院), 상주(尙州) 옥동서원(玉洞書院), 안동(安東) 병산서원(屛山書院), 순흥(順興) 소수서원(紹修書院), 현풍(玄風) 도봉서원(道峯書院),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상주(尙州) 흥암서원(興巖書院),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진주(晉州) 창렬사(彰烈祠), 고성(固城) 충렬사(忠烈祠), 거창(居昌) 포충사(褒忠祠), 강원도(江原道)의 영월(寧越) 창절서원(彰節書院),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금화(金化) 충렬서원(忠烈書院), 황해도(黃海道)의 해주(海州) 청성묘(淸聖廟),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 장연(長淵) 봉양서원(鳳陽書院), 함경도(咸鏡道)의 북청(北靖) 노덕서원(老德書院), 평안도(平安道)의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안주(安州) 충민사(忠愍祠), 영변(寧邊) 수충사(酬忠祠), 평양(平壤) 무열사(武烈祠), 정주(定州) 표절사(表節祠)이다.】

【영인본]1책 358면 【분류】*사상-유학(儒學)/*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24)이양선이 포를 쏘면서 손돌목을 지나가다

고증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4월 14일 계유 4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통진부사(通津府使)의 보고에, 「좀 작은 이양선(異樣船) 2척(隻)이 4척의 종선(從船)을 거느리고 오늘 미시(未時)쯤에 곧바로 손돌목(孫石項) 쪽으로 향하였으므로 광성진(廣城津)에서 먼저 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사가 약속대로 그에 호응하여 크고 작은 모든 대포를 일제히 쏘니, 그 배들도 이 대포소리를 듣고 대포를 마구 쏘면서 거침없이 손돌목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방어한 일을 돌이켜보면 매우 송구스럽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하였습니다. 요해지의 길목으로는 손돌목 만한 데가 없고 방어대책도 미리 세웠건만 초기에 격침시키지 못하고 결국 놓쳐버렸으니 군사 지휘체계를 놓고 볼 때 대단히 해괴한 일입니다. 해당 부사 홍재신(洪在愼)을 우선 파출(罷黜)시키소서.' 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우선 용서하여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라."하였다.

【영인본】1책 362면 【분류】*외교(外交)/*군사-전쟁(戰爭)/*인사-임면(任免)

25)이양선을 경계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게 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4월 15일 갑술 4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 에서 아뢰기를, "인천(仁川)은 양선(洋船)이 정박해 있는 곳에서 직통길이므로 여기에 군사를 더 늘여 방어하고 계엄 상태도 한층 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군사 1초(哨)와 수어영(守禦營)의 별파진(別破陣) 50명(名)을 인천 부사(仁川府使) 구완식(具完植)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서울의 군영들에 대해서는 본 삼군부에서 비밀 계(啓)를 가지고 군사를 동원시키며, 지방의 군영들에 대해서는 병부(兵符)를 발송하거나 병부를 맞추어볼 때에도 비밀리에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화약 1,000근(斤)과 탄환 1만 5,000개에 대해서는 각 군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분배하여 내려 보낼 것입니다. 듣자니, 통진(通津)에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니 호조(戶曹)의 저류미(儲留米) 300석(石)을 주교사(舟橋司)에서 운반해가도록 분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병부를 발송할 필요 없이 지금은 비밀 보고서를 가지고 본 삼군부에서 조용히 군사를 동원시키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영인본】1책 362면 【분류】*군사-군정(軍政)/*외교(外交)/*군사-중앙군(中央軍)/*군사-병참(兵站)

26)이양선이 포를 쏘아 포군 오삼록이 졸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4월 15일 갑술 5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통진부사(通津府使)의 보고에, 「저들의 배들이 광성진(廣城津)에 와서 닻자마자 모두 닻을 내리고 이 진의 성(城)을 향하여 대포를 수없이 마구 쏘아댔으며 얼마 있다가 모든 배가 도로 내려가다 손돌목(孫石項)에 이르러 또 대포와 조총을 쏘아댔는데 날아오는 탄환이 빗발치듯하였습니다. 덕포(德浦)의 포군(砲軍) 오삼록(吳三祿)이 대포에 맞아 부상을 입고 이어 죽었습니다. 그 배들은 차츰 도로 내려가 모두 전과 다름없이 호도 앞바다에 가서 닻을 내렸습니다.」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362면 【분류】*외교(外交)/*군사-전쟁(戰爭)

27)서양인들과 광성진에서 교전하였으나 아군이 이기지 못하고 광성진을 잃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4월 24일 계미 5번째기사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통진(通津)의 진지에서 보고한 내용 중, 「적의 괴수가 북쪽으로 대모산(大母山)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육지로 대포를 실어다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마구 쏘아대고 소총으로도 일제히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미시(未時)에는 적의 괴수가 광성진(廣城津)으로 꺾어 들어가서 성과 돈대(墩臺)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성진에서 일제히 조총을 쏘아대어 한바탕 혼전을 벌였는데 한참 뒤에 광성진은 붕괴되고 적들이 광성진의 위아래 돈대를 차지하였습니다.

덕진(德津)에 정박하고 있던 적선(賊船)도 광성진을 향하여 기동하므로 손돌목(孫石項) 남성두(南星頭)에서 연이어 대포를 쏘니 적선도 그대로 닻을 내리고 대포를 무수히 난발하여 손돌목의 성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적들은 광선진을 탈취하고 그곳 진사(鎭舍)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병거지를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돌목을 내려다보니 성안에서도 대포를 쏘았습니다. 바다와 육지로 공격해오니 적은 수의 군사가 의지하여 무기를 사용할 곳이 없었고, 좌우가 이미 서로 의탁할 형편이 못된 조건에서 막아낼 길이 전혀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덕포진(德浦鎭)에다 진지를 옮겼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383면 【분류】*외교-미국[美]/*군사-전쟁(戰爭)

28)표창에서 빠진 군사들에게 훈전을 베풀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5월 21일 경술 2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의 장계(狀啓)를 보니, '통진부사(通津府使) 홍재신(洪在愼)의 첩정(牒呈)을 입입이 들면서 아뢰기를,「전번에 양이(洋夷)와 서로 싸움이 붙었을 때, 포군(砲軍) 강선도(姜善道)는 대포를 쏘아 적함의 갑판을 부수고, 차재준(車載俊)·하도현(河道玹)·방대진(方大振) 등은 총으로 서양놈 두 놈을 죽였으니 장려하는 정사에 있어서 응당 포상(褒賞)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포로 선판(船板)을 부수고 총으로 서양놈을 죽여 저 더러운 놈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하였으니, 군사를 철수한 다음 상등례(上等例)에 따라 삼군부에서 넉넉하게 시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366면 【분류】*군사-출병(抽兵)/*인사-관리(管理)

29)진무영과 연해 각 진의 계엄을 해제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5월 22일 신해 2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서양놈들이 이제는 멀리 달아나고 전혀 자취가 없는 상황에서 허다한 군사들이 한 달이 넘도록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 민망한 일입니다. 진무영(鎭撫營)의 대진(大陣) 및 영종(永宗)·교동(喬桐)·인천(仁川)·부평(富平)·통진(通津)·풍덕(豊德)을 비롯한 각진(各鎭)은 모두 표신(標信)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본부(本府)에서 통지하여 강화도와 통진에서 영솔하고 있던 군사는 경기중군(京畿中軍) 양주태(梁柱台)로 하여금 인솔하여 올라오게 하고, 영종과 인천에서 영솔하고 있던 군사는 출정한 장사(將士) 이재정(李在靖)으로 하여금 인솔하여 올라오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366면 【분류】*군사-군정(軍政)

30)강화도에 군사를 증원하고 보루를 튼튼히 할 것을 명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5월 25일 갑인 3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심도(沁都)에 군사를 늘리고 보루(堡壘)를 튼튼히 하는 것은 양이(洋夷)들을 막는 방도이다. 무릇 군무(軍務) 의 절제는 한결같이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규례대로 마련하여, 무부(武府)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의처(議處) 하고 진무사(鎭撫使) 와 의견을 교환하여 십분 합당하게 하라.

손돌목(孫石項) 의 좁은 입구에 포(砲)를 설치하여 방어하는데 있어서는 각진(各鎭)의 군사도 수효를 늘려 마련하고 통진(通津), 덕포(德浦)의 군사도 진무영(鎭撫營)의 원래 군액(軍額)으로 첨부하도록 분부하라. 이렇게 하는 의도는 뒷날의 우환을 막기 위한 것이니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은 하나하나 강구하여 심도의 좁은 입구를 견고하게 하여 다시는 서쪽을 염려하는 근심이 없게 하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본문중략〉

【영인본】1책 367면 【분류】*군사-군정(軍政)/*사법-치안(治安)/*인사-임면(任免)/*왕실-국왕(國王)/*군사-편방(邊防)

31)싸움에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의 공로를 평가하여 표창하게 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6월 1일 경신 3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올린 장계(狀啓)에, '본영(本營)의 중군(中軍) 이봉억(李鳳億), 천총(千總) 김현경(金鉉璟), 별무사(別武士) 별장(別將) 유준(劉俊)이 분발하여 화포를 쏘며 한바탕 싸움을 벌여 적선을 파손시키고 서양군사 2명을 죽였으니 이것은 손돌목(孫石項)에서의 한차례 승리였습니다. 초지진첨사(草芝鎭僉使) 이렴(李濂), 별효사별장(別驍士別將) 김양규(金陽奎)가 깊은 밤에 군사를 모아 곧바로 적진에 돌입하였으니, 비록 장수의 목을 벤 공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남달리 뛰어난 대담성을 볼 수 있으니 마땅히 표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성(廣城)이 함락당할 때 중군 이하가 절개를 지켜 죽은 인은 이미 특별히 비슬을 추증하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별장 박치성(朴致誠)은 적의 무리가 돌입할 때 자기 혼자서는 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신(印信)을 품고 강에 몸을 던져 칼로 자결하였습니다. 유예준(劉禮俊)도 광성이 함락당할 때 중군을 엄호하다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적선에 잡혀 갔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는 것을 여러 군사들이 다같이 보았습니다.

중군의 겸종 임지팽(林之彭)은 식량을 타먹는 군교도 아니고 또 군적에 등록된 군사도 아니지만 끝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청지기 김덕원(金德源)은 인신을 몸에 감추고 위험을 무릅쓰며 뛰쳐나왔으니, 모두 전장(戰場)에서 죽었거나 부상당한 장교와 병졸과 함께 1등급에 놓아야 합니다. 전장에서 죽은 군사들에게 별도로 특별한 은전을 베푼 연후에야 군사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대로 성책(成冊)해서 올려 보냅니다.

덕포진(德浦鎭)의 포수(砲手) 강선도(姜善道)가 대포로 양선(洋船) 파손시키고 통진(通津)의 포수 차재준(車載俊) 등 세 사람이 총으로 두 놈의 적을 죽인 것은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좌영장(左營將) 홍재신(洪在愼)은 미리 포수를 매복시켰다가 먼저 두 놈의 적을 죽임으로써 배에 가득한 적들을 일시에 혼비백산케 하였습니다. 덕포진첨사(德浦鎭僉使) 박정환(朴廷煥)은 백발의 늙은 장수로 전진(戰陣)에 임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포를 지휘하여 적선을 부쉈으니 포상(褒賞)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합당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이(洋夷)들이 기승을 부릴 때 무릇 포상할 만한 조그마한 공로라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뜻을 표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선이 손돌목에 침입하였을 때 중군 이봉억(李鳳億)이 미리 시설을 해두었던 것은 탁월한 장수로서의 지략이 있었고, 외로운 군사들을 단속(團束)하여 한마음으로 명령을 따르게 하고 대포와 총을 쏘아대며 용기를 떨쳐 싸우게 하여 흉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하였으니, 그 큰 공로가 성대하여 기록할 만합니다. 지금 비록 체차(遞差)되어 돌아갔지만 가자(加資)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적도들이 초지진에 상륙하였을 때 해당 첨사 이렴은 적의 예봉을 잘 피하여 3리쯤 물러나 지키다가 밤이 깊어지자 군사를 모아 적진에 포를 쏜 것 또한 뒷수습을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가자해 주소서.

별효사 별장 김양규가 분주하게 힘을 쓴 것은 별로 다들 것이 없으니 또한 상가(賞加)해 주소서. 광성진 별장(廣城津別將) 박치성은 인신을 품고 주머니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떳떳이 의(義)에 나갔으니 뛰어난 절개가 분명하나 이미 증직(贈職)의 은전을 베풀었으니 특별히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그러한 기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별무사 별장(別武士別將) 유예준은 첫 승리에서 공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성진이 함락될 때 앞뒤에서 막고 지키다가 끝내 탄환에 맞아 쓰러졌고 포로로 붙잡혔을 때도 의연하게 굴하지 않았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특별히 상가해 주소서. 중영(中營) 청지기 김덕원은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인신을 품고 있다가 바쳤으니 본영으로 하여금 상당과에 차급(差給)하게 하소서.

중군의 결종 임지팽은 백리(百里) 밖까지 주장(主將)을 따라가서 위험한 고비에서 주선하다가 값지게 한목숨을 바쳤으니 자질(子姪)을 방문(訪問)하여 수용(收用)하소서. 전장에서 죽은 무사들과 덕포진의 포수 오삼록(吳三錄)은 만일 아들이 있다면 본영으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수용하게 하소서.

좌영장(左營將) 통진부사(通津府使) 홍재신(洪在愼)은 기묘한 전법을 써서 적을 섬멸하여 흉적들이 놀라 달아나게 하였으니 가자해 주소서. 덕포진 첨사 박정환은 포를 쏘아 적의 배를 부수고 지휘를 잘 하였으니 상가해 주소서.

서울과 지방의 군졸들의 분등(分等)과 성책을 가져다 보니 비록 서울에서 분등한

것과 조금 다른 점은 있으나 공로를 평가하여 상을 줌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에 비교적 가까우니 모두 성책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368면 【분류】*인사-관리(管理)/*군사-공병(工兵)/*군사-전쟁(戰爭)/*군사-관방(關防)/*왕실-사급(賜給)

32)박영보에게 기근 구제사업에 힘쓸 것을 명하다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 동치(同治) 10년) 12월 2일 정사 1번째기사

진강(進講)을 마쳤다. 강관(講官)【경기감사(京畿監司)】박영보(朴永輔)에게 하교하기를, "일전에 장계(狀啓)를 보았다. 굶주리는 백성들에 대한 진휼 정책을 지난해의 규례대로 하는가?"하니, 박영보가 아뢰기를, "지난해에 재해를 입은 고을들이 금년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한 것은 8개의 고을과 진이었는데, 이번에는 11개의 고을과 진이며 굶주리는 인구는 지난해에 비하여 거의 1만 명가량 더 많습니다. 진제장을 설치하는 규례는 모두 지난해의 규례대로 하고 있습니다."하였다. 하교하기를, "언제부터 진제장을 설치하며 며칠 간격으로 나누어주는가?"하니, 박영보가 아뢰기를, "11개 고을과 진 중에서 교동(喬桐)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여기는 벌써 진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통진(通津)이 그 다음이므로 여기는 세전(歲前)에 진제를 시작하며 그 나머지 고을은 세후(歲後)에 시작하겠습니다. 20일에 한 번씩 분급(分給)하는데 남자 어른은 쌀 1말을, 여자 어른과 노약자들은 이에 비하여 조금 줄여 나누어주겠습니다.

진휼 자금 때문에 한창 우려하고 있는데 전 부사(前府使) 이재선(李載先)이 조(租) 500석(石)을 바쳐왔으므로 이미 교동에 보내어 진휼하게 하였으며, 전 현감(前縣監) 한봉교(韓鳳敎)는 1만 냥의 돈을 내어 진휼에 보충하게 하였으므로 각 읍에 나누어 보냈는데 도움이 되는 바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해에 흉년이 들고 올해에 또 그러하니 백성들의 형편이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진휼하는 정사에 반드시 실효가 있은 후에야 흉년 구제를 할 수 있다."하니, 박영보가 아뢰기를, "이 때문에 밤낮 걱정하면서 죽거나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하지만 맡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하였다.

【영인본】1책 381면 【분류】*왕실-경연(經筵)/*구휼(救恤)/*호구-호구(戶口)

33)해미현감 강윤과 통진부사 홍재신을 바꾸어 임명하다

고종 10권, 10년(1873 계유/청 동치(同治) 12년) 5월 19일 병신 2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각영(各營)의 군기(軍器)를 금위영(禁衛營)에 국(局)을 설치하여 만들고 있는데 본부(本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국(訓局) 본청(本廳)의 장무관(掌務官) 강윤(姜潤)이 지금 해미 현감(海美縣監)에 제수(除授)되었습니다. 번잡한 일을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기 어려우므로 해미 현감 강윤과 통진 부사(通津府使) 홍재신(洪在愼)을 서로 바꾸어서 그로 하여금 간역(看役)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412면 【분류】*인사-임면(任免)/*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34)익산군, 강진현, 김포현 등에 포군을 두다

고종 10권, 10년(1873 계유/청 동치(同治) 12년) 8월 5일 신사 1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익산군(益山郡)에 별포군(別砲軍) 20명, 김포현(金浦縣)에 화포군(火砲軍) 20명, 강진현(康津縣)에 별포사(別砲士)를 가설(加設)한 결과 도합 100명, 옥과현(玉果縣)에 화포군 20명, 동복현(同福縣)에 포군(砲軍)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416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35)강화 군영의 군사 대오의 규율을 잘 잡은 정기원, 김선필의 후손을 등용하게 하다

ㄴ고종 10권, 10년(1873 계유/청 동치(同治) 12년) 9월 27일 임신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적간(摘奸)하러 갔던 중사(中使)와 군직 선전관(宣傳官)의 서계(書啓)를 보니, 강화군영(江華軍營)의 많은 부대에서 군마(軍馬)를 성심껏 조련하고 군사 대오(軍士隊伍)의 규율도 있으며 군영도 다시 채색하였다고 한다. 전후의 수령(守令)들이 성의를 다하여 부지런히 수고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전 진무사(前鎭撫使) 정기원(鄭岐源)과 진무사(鎭撫使) 김선필(金善弼)의 아들이나 조카들 중에서 이름을 알아보고 임기가 거의 찬 참봉(參奉) 자리를 내어 조용(調用)함으로써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각 읍과 진에서 포병(砲兵)을 설치하여 항상 조련하는 일은 비록 직분 안에 속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돌기에 또한 가상한 일이니, 영종 전 첨사(永宗前僉使) 이유증(李儒增), 첨사(僉使) 이병숙(李秉淑), 통진 전 부사(通津前府使) 홍재신(洪在愼), 인천부사(仁川府使) 구완식(具完植), 부평부사(富平府使) 이정하(李貞夏)에게 각각 대궐 안에서 내려 보내는 사슴가죽(鹿皮) 1령(領)씩을 사급(賜給)하도록 하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진무사 이하 관리들에게 방금 뜻을 보여주었으니, 군사들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내탕금(內帑金) 3,000냥을 내려 보내니, 무부(武府)에서 적당히 나누어 보내어서 군사들에게 호궤하도록 분부하라."하였다.

【영인본】1책 417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인사-관리(管理)/*왕실-사급(賜給)

36)용진 아래의 세 진에 포대를 새로 세우는 일을 의논하다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청 동치(同治) 13년) 3월 20일 임술 2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진무사(鎭撫使) 신헌(申櫶)의 장계(狀啓)를 보니, '용진(龍津) 이하 세 진을 지키기 위하여 포대를 새로 세웠고 병제를 부(部)로 나누고 민병(民兵)을 성정군(城丁軍)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옛 제도를 답습하여 적절히 변통하겠습니다.

교동(喬桐)과 통진(通津)에 병력을 더 보충하여 방비하는 것은 응당 강구해야 하겠는데, 판관(判官)을 수성장수(守城將帥)로 하비(下批)하고 중군(中軍)이 하방(夏防)하는 것의 여부는 품처하도록 창설하는 제도와 관계되는 만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포대를 새로 세우는 것은 적정을 감시하는 데에 중요하고 군졸을 부로 나누는 것은 대오(隊伍)를 편성하는 법이며 민병을 성정군으로 하는 것은 보갑제도(保甲制度)입니다. 옛날을 상고하고 오늘날을 참작해서 좋은 쪽으로 변통하였으니, 반드시 앞날을 고려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판관을 수성 장수로 하비하는 것은 원용할 만한 전례가 많으니 윤허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중군이 하방하고 교동과 통진에 군사를 보충하여 방어하는 것도 타산이 있을 듯하니, 편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452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37)새로 만든 대포, 중포, 소포를 진무영과 영종 등에 나누어 보내다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청 동치(同治) 13년) 7월 17일 정사 1번째기사

삼군부(三軍府)에서, '새로 만드는 군기(軍器) 중에서 대포(大砲)·중포·소포를 먼저 만드는 대로 진무영(鎭撫營)과 영종(永宗)·인천(仁川)·통진(通津)에 나누어 보내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469면 【분류】*군사-군기(軍器)/*군사-지방군(地方軍)

38)통진 경계의 안행동 등에 포대를 설치하게 하다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청 동치(同治) 13년) 11월 20일 기미 1번째기사

일강(日講)을 하였다. 강이 끝나자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의 별단(別單)과 관련하여 통진(通津) 경계의 안행동(雁行洞)에 진을 설치하는 것의 편리 여부를 강화 진영(鎭營)에 관문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해당 수령의 장계(狀啓)를 보니, '암행어사의 논의가 타당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덕포(德浦)가 있어 거리가 가깝고 편리하니 망을 보는 일은 본진의 진장(鎭將)이 겸해서 담당하여 거행하도록 하고 안행동을 비롯한 여러 곳에는 별도로 포대(砲臺)를 설치하는 것이 진을 두는 것보다 나으니 묘당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안행동이 덕포와 가깝다는 것은 사실 장계의 내용과 같고 포대를 설치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으니 이번 요청이 실로 매우 좋습니다. 해당 고을에 통지하여 성심껏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483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양쉴-경연(經筵)/*군사-군정(軍政)

39)이양선이 연해에 들어왔으므로 역관을 파견하여 사유를 따지게 하다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청 광서(光緖) 1년) 8월 23일 정해 2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낯선 배가 내양(內洋)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무슨 일로 와서 정박하고 있는지 상세히 문정(問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에 밝은 역관(譯官) 몇 사람을 사역원(司譯院)에서 특별히 선정하게 하여 하직 인사는 그만두고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가 보고한 바를 보니, '통진부사(通津府使)가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덕포(德浦)의 손돌목(孫石項)에서 파수(把守)하고 있는데 군량을 획급(劃給)하는 것이 과연 시급하니 모(某) 아문(衙門) 의 쌀 300석(石)만 특별히 획하(劃下) 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낯선 배가 내양에 침입한 만큼 방수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읍(邑)에는 창고에 남아 있는 양식이 없고 군대에는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다. 외창(外倉)에 있는 쌀 중에 300석을 즉시 획송(劃送)하라고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낯선 배가 경기 연안에 와서 정박하고 있은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나 외양(外洋)의 여러 고을에서 그 배가 지나간 형적에 대해 수계(修啓) 한 곳이 한 곳도 없으니, 어찌 이러한 변정(邊政)이 있겠습니까 망을 보는 일이 이처럼 소홀하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니며 너무나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선 삼남(三南)과 양서(兩西)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으로 그 신칙하여 그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여서 치문(馳聞)하게 하여 엄하게 감처(勘處)하도록 하고, 이후의 거행은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신칙하여 감히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504면 【분류】*교통-수운(水運)/*군사-관방(關防)/*어문학-어학(語學)/*군사-군정(軍政)/*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신분-중인(中人)

40)접견 대관이 일본 군함에 가서 정박 사유를 물은 것에 대해 보고하다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청 광서(光緖) 2년) 1월 13일 을사 3번째기사

접견대관(接見大官)이, '이달 10일 오시(午時)에 통진부(通津府)에 도착하여 곧 해당 부사(府使) 이규원(李奎遠)의 보고를 받아보니, 「그들의 큰 배 5척(艘)이 일제히 올라와서 항산도(項山島)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배가 벌써 거슬러 올라오고 있으므로 신들이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본부(本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배에 대한 소식을 계속 탐지하였습니다.

이달 11일 인시(寅時)에 접견하여 사유를 물으러 간 관리 오경석(吳慶錫)과 현석운(玄昔運)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본원(本員)들이 이달 8일 해시(亥時)에 초지진(草芝鎭)에서 배로 떠나 9일 묘시(卯時)에 팔미도(八尾島) 앞바다에 이르니, 그들의 배 5척이 연기를 뿜으며 올라왔으므로 즉시 그들의 배로 가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배가 몹시 빨라서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박한 항산도로 쫓아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를 만나 우리 조선에서 접견대관(接見大官)과 부관(副官)을 파견하여 장차 귀국의 사신배가 정박하고 있는 곳에서 접견하려 한다는 것과 접견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였습니다.

모리야마 시게루가 말하기를, 「귀국에서 이미 파견한 대관이 강화에 와서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인천부(仁川府) 지방관에게서 들었으며, 접견하는 절차와 날짜는 우리가 내일 강화성(江華城)으로 들어가 유수(留守)와 만나서 면담한 다음 의정하겠으니, 이것을 강화유수(江華留守)에게 가서 알리고 군사와 백성들은 타인러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접견 절차와 날짜는 우리 대관이 바로 의정할 것이니 강화부(江華府)에 가서 의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문제는 우리 조정의 명령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 말도 건네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저들의 배에서 내려가라고 독촉하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배로 돌아왔습니다. 신들은 강화부로 급히 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1책 514면 【분류】*고도-수운(水運)/*군사-관방(關防)/*외교-일본(日本)/*군사-군기(軍器)

41)홍우창을 일본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타다의 반접사에 임명하다

고종 14권, 14년(1877 정축/청 광서(光緖) 3년) 10월 12일 계사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본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호남(湖南) 개항지대의 수심(水深)을 측량한 뒤에 이어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개항지역을 지적하는 것은 비록 약조(約條)에 들어 있긴 하지만 통상하는 일로 수도에 주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부(東萊府)에서 여러 번 타일렀지만 그들은 기어코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호(友好)를 지속시키려면 또한 강하게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접대하는 절차는 각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작년의 전례로 참작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예조참판(禮曹參判) 홍우창(洪祐昌)을 반접관(伴接官)으로 차하(差下)하고 통진부사(通津府使) 이규원(李奎遠), 김포군수(金浦郡守) 이중윤(李重允), 양천현령(陽川縣令) 이민선(李敏淳)을 모두 연접관(延接官)으로 차하(差下)해서 역참(驛站)마다 교대로 호위하게 할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어 호송관(護送官)을 그대로 겸하게 하도록 모두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561면 【분류】*외교-일본(日本)/*인사-임면(任免)/*교통-육운(陸運)

42)통상관계 문서를 만들어 동래의 왜관에 보내도록 하다

고종 14권, 14년(1877 정축/청 광서(光緖) 3년) 11월 17일 무진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사신 일행과 통상하는 배가 통진(通津)을 경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개항의 사안에서 중요한 곳에 대해서는 의논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하여 일본 사신은 마음대로 결단하기 어려우니 본국(本國)에 돌아가서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질정(質定)해서 서계(書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조사(措辭)하여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도록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563면 【분류】*외교-일본(日本)/*교통-수운(水運)

43)경기 암행어사의 서계와 관련하여 파주 전 목사 등을 표창하다

고종 15권, 15년(1878 무인/청 광서(光緖) 4년) 3월 9일 기미 1번째기사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이헌영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 때문이다.

서계(書啓)와 관련하여 파주 전 목사(坡州前牧使) 이낙희(李樂熙), 가평 전 군수(加平前郡守) 서홍순(徐弘淳), 안산군수(安山郡守) 이직현(李稷鉉), 영평군수(永平郡守) 전동혁(全東赫), 김포군수(金浦郡守) 이중윤(李重允), 풍덕 전 부사(豊德前府使) 이문영(李文永), 시흥 전 현령(始興前縣令) 이기석(李起錫), 양성 전 현령(陽城前縣令) 조병업(趙秉業), 연서찰방(延曙察訪) 방효린(方孝麟), 덕적 전 첨사(德積前僉使) 한봉득(韓鳳得), 임진별장(臨津別將) 김한갑(金漢甲) 등에게는 죄를 주고 진위 전 현령(振威前縣令) 이승우(李勝宇)는 표창하고 승서(陞敍)하였다.

【영인본】1색 569면 【분류】*인사-관리(官吏)/*왕실-국왕(國王)

44)인천부의 급료를 주는 비용은 부근 고을에서 포량미와 잡비까지 합쳐서 이획하여 충당할 것을 윤허하다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청 광서(光緖) 5년) 윤3월 13일 병술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인천부사(仁川府使) 임백현(林百鉉)의 보고를 보니, '본 부는 방영(防營)으로 승격된 뒤 주교사(舟橋司)의 쌀 500석(石)을 매년 이획(移劃)하여 지방(支放)하는 비용으로 삼았습니다만 이는 한때만 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단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매번 지방이 정지되곤 합니다.

강화영(江華營)의 포량미(砲糧米) 500석(石)을 취해서 인천(仁川), 부평(富平), 시흥(始興), 안산(安山), 과천(果川), 김포(金浦), 양천(陽川) 등 읍에서 바치는 것을 모두 잡비로 구획(區劃)하여 본 부로 직접 획급하게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부(該府)는 해문(海門)의 요충지이고 또 방어사(防禦使), 절제사(節制使)를 창설한 곳이니 조정에서 진념(軫念)하는 것이 그전보다 갑절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사미(舟司米)를 실어가기 곤란한 것이 과연 보고한 내용과 같다면 특별히 청한 바에 따라 위에서 말한 부근 고을에 있는 포량미(砲糧米)로써 이 수량만큼 모두 잡비로 획급하라는 내용으로 강화 유수(江華留守)와 본 도의 감사(監司)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부(東萊府)의 장계(狀啓) 등보(謄報)를 보니, '일본 공사(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지금 장차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기(京畿) 바다의 만(灣)에 가서 수심을 측량한 후에 강화(江華)를 경유해서 곧바로 서울로 가려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접대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몇 년 전 그들이 머물 때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지럽게 모여든 것은 이미 극도로 수치스러웠는데, 하물며 모래와 돌을 던져 일부러 소란을 일으킬 단서를 만들기까지 한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저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어찌 먼저 잘못하면 스스로 수모를 받게 된다는 의리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닻을 내리고 통과하는 길에서 다시 혹시라도 이와 같은 버릇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효시(梟示)할 것이며, 신칙(申飭)하지 못한 지방관은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나문(拿問)한다는 내용을 연해(沿海)의 제읍(諸邑)에 일일이 선포할 것을 해당 감사(監司)와 수령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595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재정-국용(國用)/*재정-전세(田稅)/*군사-군정(軍政)/*외교-왜(倭)

45)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를 접대와 관련된 일에 대해 윤허하다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청 광서(光緖) 5년) 윤3월 21일 갑오 2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본공사(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장차 머지않아 수도에 올라올 것입니다. 접대와 관련된 모든 일은 각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이전 규례를 참작하여 시행하게 하며, 행호군(行護軍) 홍우창(洪祐昌)을 강수 겸 반접관(講修兼伴接官)으로 차하(差下)하고, 통진(通津), 김포(金浦), 양천(陽川) 세 고을의 수령은 모두 연접관(延接官)으로 입명하여 역참(驛站)에서 교대하여 호위하게 하며 돌아갈 때에도 그대로 이내 호송관(護送官)으로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1책 595면 【분류】*교통-육운(陸運)/*외교-왜(倭)/*인사-임면(任免)

46)김홍집을 김포군에 찬배하다

고종 18권, 18년(1881 신사/청 광서(光緖) 7년) 6월 24일 갑인 5번째기사

김홍집(金弘集)을 김포군(金浦郡)에 찬배(竄配)하였다. 누차 신칙(申飭)을 내렸으나 끝내 나와 숙배(肅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었다.

【영인본】2책 13면 【분류】*사법-형형(行刑)

47)통진의 선혜청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김홍집이 보고하다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청 광서(光緖) 9년) 2월 26일 정축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 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보고를 보니, '통진(通津)에서 신사년(1881)에 선혜청(宣惠廳)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지 못한 것이 755석(石)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흉년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다 구제를 바라는 만큼 본색(本色)으로 받아들일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신사년의 결가(結價) 대로 매 석당 11냥 8전씩 쳐서 특별히 대납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구제 정사가 한창이고, 춘궁기에 백성들의 사정도 돌봐주어야 합니다. 지금 본색으로 받아낸다는 것은 과연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니 신사년조의 시가(時價)에 따라 보고한 대로 돈으로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책 89면 【분류】*재정-전세(田稅)/*금융-화폐(貨幣)

48)창녕현의 조운선이 침몰한 일에 관하여 선혜청에서 보고하다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청 광서(光緖) 10년) 4월 27일 신미 1번째기사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창녕현(昌寧縣)의 임오년 조(條) 대동미(大同米)를 실은 배가 통진(通津)에 이르러 파선한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래에 조운법(漕運法)이 해이해져 농간을 부리고 고의로 파선시켜 항상 통분하였는데, 이 배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갇혀 있는 선주(船主) 하명추(河命楸)는 파선시킨 곳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통진부(通津府)에서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게 하고, 하남갑(河南甲)은 이미 도망쳤으니 두 도(道)의 진영으로 하여금 체포한 뒤에 등문(登聞)하게 하되, 파선시킨 조 이외에 범장(犯贓)한 곡물도 모조리 본색(本色)으로 징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책 144면 【분류】*교통-수운(水運)/*재정-공물(貢物)/*사법-재판(裁判)

49)창녕현의 선혜청 미태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의정부에서 아뢰다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청 광서(光緖) 10년) 8월 10일 신사 2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가 올린 보고를 보니, '창녕현(昌寧縣)의 신사년과 임오년 조(條)의 선혜청(宣惠廳)의 미태(米太) 가운데 764석(石) 남짓은 바로 통진(通津)의 고의로 배를 파손시킨 사공(沙工) 하명추(河命樞)와 하남갑(河南甲)이 바쳐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하명추는 이미 처단되었고 하남갑은 그길로 도망쳐 달아나서 받아낼 길이 없으니, 특별히 고을과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은 제도를 세운 본의가 매우 중하여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노릇이기는 하지만 한편 생각할 때에 해읍(該邑)이 극도로 피폐하고 죄를 저지른 사공도 이미 벌을 받았으니 이것은 응당 변통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해서 속히 장부를 깨끗이 정리하게 하고, 도망친 놈은 기어코 잡아내어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책 167면 【분류】*사법-행형(行刑)/*교통-수운(水運)

50)경기감사 김명진이 각 능에 함부로 나무를 찍는 등의 변고에 대해 해당 수신을 신문하여 처결하도록 하다

고종 24권, 24년(1887 정해/청 광서(光緖) 13년) 1월 30일 무오 2번째기사

경기감사(京畿監司) 김명진(金明鎭)이 장계(狀啓)하기를, "각 능(陵園)에 함부로 나무를 찍고 몰래 장사지내며 능지를 개간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변고입니다.

계미년 이후부터 병술년 봄까지 해마다 봄가을에 봉심(奉審)하였습니다. 가승지(假承旨)와 지방관들인 파주목사(坡州牧使) 이주홍(李周興)·윤홍대(尹弘大)·심의홍(沈宜弘)·민상능(閔相能), 장단부사(長湍府使) 이동현(李東鉉)·이응진(李應辰)·임상호(任尙鎬)·이인만(李寅晩)·현제보(玄濟普), 풍덕부사(豊德府使) 이문영(李文永)·박난수(朴蘭壽), 양주목사(楊州牧使) 신태운(申泰運)·신석년(申錫年)·이태진(李泰鎭)·조영하(趙榮夏)·박정화(朴鼎和)·윤성진(尹成鎭)·박희방(朴熙房)·임순현(林淳憲), 죽산부사(竹山府使) 이동수(李東洙)·방천용(方天鏞), 남양부사(南陽府使) 조희순(趙義純), 이천부사(利川府使) 이긍주(李兢柱), 통진부사(通津府使) 서형순(徐珩淳)·심헌지(沈憲之), 부평부사(富平府使) 허진(許璡) 등이 봉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흐리멍덩하게 검속(檢束)하지 못한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개성(開城)·광주(廣州)·수원(水原)의 각 해당 유수들은 의례적으로 봉심하나 이미 본영 관할이 아니어서 일체 현고(現告)하지 못하겠습니다."하니, 하교하기를, "모두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고 처결하게 하라. 삼피지 않은 해당 수신(守臣)은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현고를 받고 일체로 잡아다가 신문하고 처결하게 하라."하였다.

【영인본】2책 261면 【분류】*농업-개간(開墾)/*사법-행형(行刑)

51)의정부에서 통진부의 포량미를 강화진 심영에 바치게 할 것을 아뢰다

ㅇ고종 24권, 24년(1887 정해/청 광서(光緖) 13년) 11월 14일 정묘 3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京畿監司) 김명진(金明鎭)의 보고를 보니, '통진부(通津府)에서 심영(沁營)으로 포량미(砲糧米)를 바칠 때는 애당초 운반비를 별도로 구획한 적이 없었는데, 부평 해방영(富平海防營)에 이속(移屬)되자 선잡비미(船雜費米) 8홉[合]씩을 민간에서 더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해영(該營)이 서울로 이설된 것 때문에 각종 비용이 따라서 불어나 앞으로 더 많이 징수해야 할 형편이 되었으니 또한 백성들의 원망이 없지 않습니다.

이전대로 심영(沁營)에 다시 소속시키고, 해방영(海防營)에 바치던 것은 편의대로 가까운 경기의 다른 고을에 이획(移劃)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잡비를 계속 더 징수하는 것은 백성과 고을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니 변통하는 방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통진부(通津府)의 포량미(砲糧米)를 올해부터 전처럼 심영(沁營)에 도로 보내고 해방영(海防營)에 바치던 것은 그 수량을 계산해서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고을로 바꾸어 지정하도록 해도와 해영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책 279면 【분류】*물가 · 임금-운임(運賃)/*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52)통진부, 양근군, 풍덕부에 5년간 조세를 면제하도록 명하다

고종 28권, 28년(1891 신묘/청 광서(光緖) 17년) 10월 24일 을묘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전 감사(京畿前監司) 조병식(趙秉式)의 장계(狀啓)를 보니, 통진부(通津府)에서 강락결(江落結) 12결(結) 83부(負) 2속(束)과 양근군(楊根郡)에서 래락결(汰落結) 1결 8부 4속과 풍덕부(豊德府)에서 포락결(浦落結) 39결에 대해서 이미 10년간 조세(租稅)를 감면받았으나 하나도 환기(還起)한 것이 없어 백성들의 사정이 딱하게 되었으니, 모두 10년간 더 조세를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락되어서 이미 개간할 진흙이 생겨난 것이 없는데 가난한 백성들에게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은 신료 돌보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고을의 허결(虛結) 52결 92부 6속에 대해서는 특별히 5년간 조세를 정지하여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고 감영(監營)과 고을에 각별히 신칙하여 총 면적대로 기경(起耕)하도록 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慶尙監司) 이헌영의 장계를 보니, '목화농사가 몹시 흉작이 되었다는 상황을 자세히 진달하고 도내(道內)의 열읍(列邑)에서 각영(各營)과 각 아문(衙門)에 납부할 군포(軍布)와 악공보포(樂工保布)를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봉(代捧)하게 하고, 친군영(親軍營)에 납부할 포보포(砲保布)는 5분의 4까지 대봉하도록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군수물자가 바닥난 것은 비록 더없이 딱한 일이지만 백성의 힘으로 갖추기 어려운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병조(兵曹)와 각 영에 납부할 것은 3분의 1까지를 전(錢)으로 대봉하게 하고, 각 사(各司)에 납부할 것은 순전으로 대봉하게 하되, 포보포는 사체(事體)가 매우 다르니 그만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全羅監司) 민정식(閔正植)의 장계를 보니, 거문도(巨文島)의 진결(陳結) 21결 40부 4속에 대한 조세(租稅)를 특별히 상정례(詳定例)로 영구히 대납(代納)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면적을 회복할 때까지만 특별히 상정례로 대납하게 하고 기필코 점차 환기하도록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책 399면 【분류】*군사-군역(軍役)/*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재정-전세(田稅)/*군사-군정(軍政)/*재정-공물(貢物)

53)내무부에서 통진, 풍덕, 영종, 장봉의 둔전을 해연 총제영에 이속시킬 것을 아뢰다

○ 고종 30권, 30년(1893 계사/청 광서(光緖) 19년) 2월 7일 경신 2번째기사

내무부(內務府)에서,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의 제치절목(制置節目)을 써서 들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해연 총제영을 막 신설하였으니 이전 해방영(海防營)에서 관할하던 통진(通津), 풍덕(豐德), 영종(永宗) 장봉(長峯)에 있는 둔전답(屯田沓)을 모두 해영(該營)에 이속시켜 군수(軍需)에 보충하여 쓰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책 448면 【분류】*농업-전제(田制)/*군사-지방군(地方軍)/*재정-군자(軍資)

54)의정부에서 총제영에 소속된 인천, 부평, 김포, 양성에 주관하는 군영의 필요성을 아뢰다

○ 고종 30권, 30년(1893 계사/청 광서(光緖) 19년) 6월 10일 경신 2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京畿監司) 이경직(李耕植)의 보고를 보니, '남양(南陽)을 지금 총제영(總制營)에 이속(移屬)하였습니다. 해읍(該邑) 소속 인천(仁川), 부평(富平), 김포(金浦), 양성(陽城) 등 네 고을에 있는 군대에 주진(主鎭)을 두어야 할 것이나 군정(軍政)에 관계된 일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제와 관계되는 만큼 응당 소속이 있어야 할 것이니 남양 대신 인천부(仁川府)로 주진을 정하여 관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책 459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정정-지방행정(地方行政)/*군사-군정(軍政)

55)호조에서 재난을 당한 성균관 토지인 김포의 전답의 조세에 대해 유예하도록 아뢰다

고종 30권, 30년(1893 계사/청 광서(光緖) 19년) 6월 22일 임신 1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겨울 성균관(成均館)에서 계하(啓下) 받은 문서와 관련하여 성균관에서 절수전(折受田)으로서 경기(京畿),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본조에 환속시켜 원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조세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 중 김포군(金浦郡)에 있는 70결(結) 23부(負) 1속(束)의 밭과 논은 오랫동안 포락(浦落)되어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누차 보고가 그치지 않으니 해군(該郡)에 있는 성균관 토지를 모두 원 토지대장에 올리고 조세를 내는 것과 대신 획급해 주는 문제는 아직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인본】2책 459면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재정-국용(國用)/*농업-양전(量田)

56)의금부에서 민영달을 김포군에 투비한다고 보고하다

고종 32권, 31년(1894 갑오/청 광서(光緖) 20년) 7월 19일 계사 4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민영달(閔泳達)을 김포군(金浦郡)에 투비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영인본】2책 508면 【분류】*사법-행형(行刑)

57)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고종 33권, 32년(1895 을미/청 광서(光緖) 21년) 5월 26일 병신 1번째기사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우리나라의 유신(維新)을 맞아 실지 혜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니 짐의 말을 명심하여 들을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백성을 보존하는 방도는 정사를 하는 관리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 왕조의 지방 제도가 완전히 훌륭한 것이 못되다 보니 주(州), 현(縣)이 일정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관리가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거듭 거두는 폐해가 백출(百出)하여 위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위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아! 거문고와 비파가 조화되지 않으면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정사하는 도리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제정해야 한다. 이제 감사(監司), 유수(留守) 등 낡은 제도를 없애고 부(府)와 군(郡)의 새 규정을 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막아버림으로써 만백성과 함께 태평한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니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은 짐의 뜻을 체득하라."하였다.

칙령(勅令) 제97호,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監營按撫營竝留守廢止件)〉을 제가하여 반포하였다.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지방 제도(地方制度)〉

제1조전국을 23부(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한성부(漢城府), 인천부(仁川府), 충주부(忠州府), 홍주부(洪州府), 공주부(公州府), 전주부(全州府), 남원부(南原府), 나주부(羅州府), 제주부(濟州府), 진주부(晉州府), 동래부(東萊府), 대구부(大邱府), 안동부(安東府), 강릉부(江陵府), 춘천부(春川府), 개성부(開城府), 해주부(海州府), 평양부(平壤府), 의주부(義州府), 강계부(江界府), 함흥부(咸興府), 갑산부(甲山府), 경성부(鏡城府)

제2조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牧), 부(府), 군(郡), 현(縣)의 명칭과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명(官名)을 다 없애고 읍(邑)의 명칭을 군(郡)이라고 하며 읍의 장관(長官)의 관명을 군수(郡守)라고 한다.

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漢城府)【한성군(漢城郡), 양주군(楊州郡), 광주군(廣州郡), 적성군(積城郡), 포천군(抱川郡), 영평군(永平郡), 가평군(加平郡), 연천군(漣川郡), 고양군(高陽郡), 파주군(坡州郡), 교하군(交河郡)이다.】

인천부(仁川府)【인천군(仁川郡), 김포군(金浦郡), 부평군(富平郡), 양천군(陽川郡), 시흥군(始興郡), 안산군(安山郡), 과천군(果川郡), 수원군(水原郡), 남양군(南陽郡), 강화군(江華郡), 교동군(喬桐郡), 풍진군(通津郡)이다.】〈본문중략〉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한성】, 인천부【인천 제물포(濟物浦)】, 충주부【충주】, 홍주부【홍주】, 공주부【공주】, 전주부【전주】, 남원부【남원】, 나주부【나주】, 제주부【제주】, 진주부【진주】, 동래부【동래 부산(釜山)】, 대구부【대구】, 안동부【안동】, 강릉부【강릉】, 춘천부【춘천】, 개성부【개성】, 해주부【해주】, 평양부【평양】, 의주부【의주】, 강계부【강계】, 함흥부【함흥】, 갑산부【갑산】, 경성부【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영인본】2책 564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사법-법제(法制)

58)의화군 이강을 특파 대사에 임명하여 답례 방문을 명하다

고종 33권, 32년(1895 을미/청 광서(光緖) 21년) 8월 25일 계사 3번째기사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특파대사(特派大使)에 임용하고 이어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각국을 답례 방문하라고 명하였다. 법부대신(法部大臣)인 종1품 서광범(徐光範)을 학부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고 착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3품 장박(張博)을 법부협판(法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는 동시에 대신(大臣)의 사무를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통진군수(通津郡守) 정인흥(鄭寅興)을 법부민사국장(法部民事局長)에 임용하고 착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금구군수(金溝郡守) 조중응(趙重應)을 법부형사국장(法部刑事局長)에, 정주군수(定州郡守) 조지현(趙持顯)을 의주부관찰사(義州府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임인본】2책 571면 【분류】*인사-임면(任免)/*외교-러시아[俄]/*외교-독일[德]/*외교-영국[英]/*외교-구미(歐美)

59)안산에 불법으로 무덤을 쓴 윤상희를 방면하도록 하다

고종 34권, 33년(1896 병신/대한 건양(建陽) 1년) 12월 9일 양력 3번째기사

궁내부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제릉(齊陵)의 안산(案山)에 불법으로 무덤을 쓴 충주 윤상희(尹相熙)를 이미 풍덕군(豊德郡)에서 잡아 가두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만큼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나획(拿獲)한 다음 조율(照律)하여 엄히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후의 재관(齋官)들로 말하면 더없이 중요하고 삼가야 할 곳에서 신중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없지 않은 만큼 모두 법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풍덕군수서리(豊德郡守署理)인 통진군수(通津郡守) 강위영(姜緯永)은 지방관의 신분으로서 훈령(訓令)을 받고도 지체하면서 제때에 거행하지 않았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역시 법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이제 들건대 제릉을 봉심(奉審)할 때 적발된, 안산에 불법으로 무덤을 썼다는 윤상희에 대한 일은 여러 사람들이 본 것과는 이미 사실이 어긋나는 만큼 특별히 방송(放送)하고, 전후의 재관들에 대해 감처하기를 청한 것은 그만두며, 훈령을 지체한 해당 지방관은 견책(譴責)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영인본】2책 609면 【분류】*사법-재판(裁判)

60)조병식을 통진군으로 3년 동안 귀양보내다

고종 38권, 35년(1898 무술/대한 광무(光武) 2년) 10월 1일 양력 2번째기사

법부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연해 지역에 찬배(竄配) 한 죄인 조병식(趙秉式)의 배소(配所)를 통진군(通津郡)으로 정하였는데, 연한(年限)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삼가 폐하의 재결(裁決)을 기다립니다."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3년으로 마련하라."하였다.

【영인본】3책 58면 【분류】*사법-형형(行刑)

61)조병식을 특별히 놓아줄 것을 명하다

고종 38권, 35년(1898 무술/대한 광무(光武) 2년) 10월 11일 양력 3번째기사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참작할 일이 없지 않으니, 통진군(通津郡)으로 3년간 찬배(竄配)되는 처분을 받은 죄인 조병식(趙秉式)을 특별히 놓아 주라."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종1품 조병식에 대해 징계를 특별히 면제하라."하였다.

【영인본】3책 61면 【분류】*사법-형정(刑)

62)백성을 구제한 심능원과 이승조의 공로에 대한 표창을 명하다

고종 42권, 39년(1902 임인/대한 광무(光武) 6년) 4월 3일 양력 2번째기사

내부(內部)에서 아뢰기를,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근명(李根命)의 보고서에, 통진군(通津郡)에 사는 전 참봉(前參奉) 심능원(沈能遠)이 의연금(義捐金) 수천 냥을 내어 부근의 백성 76호를 지난 해 음력 10월부터 지금까지 구제하였으니 표창하는 은전을 특별히 베풀어주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을 따져보면 참으로 가상하니 관직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참봉을 지냈으니 6품으로 승급시켜 주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양군(靑陽郡)에서 군의 유생(儒生)에 대하여 올린 장계에, 그 군(郡)에 사는 진사(進士) 이승조(李承祚)는 의연금 8만냥을 내어 한 고을을 구제하였고 계속하여 배천군(白川郡)에서 군(郡)의 유생에 대하여 올린 장계에, 그 군에 사는 유학(幼學) 안교욱(安敎郁)은 의연곡 수백포를 내어 죽을 쑤어 가지고 떨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하면서 모두 표창하는 은전을 베풀기를 청하였습니다. 훌륭한 행위를 표창하는 정사에서 볼 때 마땅히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본부(本部)에서 적절히 조용하게 하라."하였다.

【영인본】3책 247면 【분류】*인사-관리(管理)

63)비변사에서 영암과 나주의 조운선이 파손된 사건의 문제점을 보고하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 동치(同治) 3년) 1월 23일 을축 1번째기사

64)대왕대비가 죄수를 마음대로 풀어 준 민희경의 처벌을 명하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 동치(同治) 3년) 1월 27일 기사 3번째기사

65)대왕대비가 죄수를 마음대로 풀어준 민희경의 처벌을 명하다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 동치(同治) 3년) 2월 5일 병자 7번째기사

66)의정부에서 양근, 통진부, 연천 지방의 조세 포흠에 대해 아뢰다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 동치(同治) 4년) 3월 28일 계해 3번째기사

67)전최에서 성과를 보인 수령들에게 시상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6월 18일 을사 2번째기사

68)평안 감사 박규수가 이양선에 평양 감영의 중군이 억류되었다고 보고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7월 22일 무인 2번째기사

69)영종 방어사가 이양선 1척이 부평지경에 들어섰다고 보고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8월 13일 기해 3번째기사

70)역관을 보내어 월곶진에 정박한 이양선의 내막을 알아보게 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8월 16일 임인 5번째기사

71)이양선이 강화도에 침범하였으므로 장녕전의 어진을 백련사에 임시로 모시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9월 8일 갑자 3번째기사

72)이양선의 문제로 일본에 편지를 보내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10월 15일 경자 3번째기사

73)출정했던 군사들에게 호궤하고 시상하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 동치(同治) 5년) 10월 20일 을사 1번째기사

74)세자의 사, 부, 빈객들이 올리는 글에 세자라는 글을 쓰지 말고 시강원을 쓰게 하다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청 광서(光緖) 1년) 7월 29일 계해 1번째기사

75)영의정 이최응이 풍덕과 인천 등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할 것을 청하다

고종 15권, 15년(1878 무인/청 광서(光緖) 4년) 8월 27일 갑진 1번째기사

76)조선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정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다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청 광서(光緖) 9년) 6월 22일 경오 7번째기사

77)김집 등을 문묘에 배향하는 일 등에 관하여 김병국이 아뢰다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청 광서(光緖) 9년) 11월 15일 임진 1번째기사

78)해안을 방어하는 일에 관하여 민영목이 상소하다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청 광서(光緖) 10년) 4월 14일 무오 1번째기사

79)각 관리들을 승급시키다

고종 42권, 39년(1902 임인/대한 광무(光武) 6년) 5월 5일 양력 4번째기사

80)조중응이 나인영 등의 공술에 대해 보고하다

고종 48권, 44년(1907 정미/대한 광무(光武) 11년) 7월 6일 양력 3번째기사

27. 순종실록

1)서남쪽 지방을 순찰할 때의 관찰사, 군수들을 표창하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대한 융희(隆熙)⑪ 3년) 10월 23일 양력 2번째기사

서쪽지방과 남쪽지방을 순찰할 때의 연로지방 관찰사(觀察使), 군수(郡守)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진호(李軫鎬),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유혁로(柳赫魯), 경상남도 관찰사(慶尙南道觀察使) 황철(黃鐵),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박중양(朴重陽), 창원부윤(昌原府尹) 신석린(申錫麟), 의주부윤(義州府尹) 서상면(徐相勉), 김포군수(金浦郡守) 조동선(趙東善), 개성군수(開城郡守) 박우현(朴宇鉉), 평양군수(平壤郡守) 안승렬(安承烈)은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영인본】3책 541면 【분류】*인사-관리(管理)

28. 순종부록

1)이왕직의 차관 고쿠분 쇼타로과 곤도 시로스케에게 수원, 개성 등지에 나가 목장 및 삼림 상황을 시찰하고 오라고 하다

◦ 순부 8권, 10년(1917 정사/일 대정(大正) 6년) 9월 12일 양력 1번째기사

이왕직 차관(李王職次官) 고쿠분쇼타로國分象太郎) 및 사무관(事務官)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에게 수원(水原), 김포(金浦), 개성(開城) 금천(金川) 등의 군(郡)의 목장(牧場) 및 삼림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출장하라고 명하였다.

【영인본】3책 600면 【분류】*외교-일본(日本)/*농업-임업(林業)/*농업-축산(畜産)

2)고 이희 공의 면례에 돈을 하사하다

◦ 순부 11권, 13년(1920 경신/일 대정(大正) 9년) 10월 7일 양력 2번째기사

특별히 고(故) 이희 공(李熙公)의 면례(緬禮)에 장례 비용으로 일금 500원(圓)을 하사하였다.【김포(金浦)에서 양주군(楊州郡) 화도면(和道面) 마석(磨石) 우리(隅里)로 이폄하였다.】

【영인본】3책 616면 【분류】*풍속-예속(禮俗)/*왕실-사급(賜給)

부 록

김포실록 용어사전

ㄱ

가[可] : 어떤 행위가 허용되거나 가능함 또는 좋음을 이르는 말.

가경[嘉慶] : 〈역사〉중국 청나라 인종 때의 연호(1796~1820).

가노[家奴] : 사삿집에서 부리는 종. 가노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으므로 법제상 재물로 간주되어 주인의 호적에 부적되었으며, 소유주에게는 노동력의 공급원이었고 군사력으로도 이용될 수 있었음.

가례[嘉禮] : 길(吉)·흉(凶)·군(軍)·빈(賓)·가(嘉) 등 오례(五禮)의 하나로 경사스러운 의례(儀禮)라는 뜻. 임금의 성혼(成婚)·즉위나, 왕세자·왕세손의 성혼·책봉 같은 때의 예식.

가산[家産] : 한 집안의 재산. ≒가자(家資).

가선[嘉善] :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시대 문관(文官)으로 종2품 하(下)의 품계. 가선(嘉善).

가설[加設] : 1.덧붙어거나 추가하여 설치함. 2.관직을 임시로 더 늘림.

가자[加資] : 〈역사〉조선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가장사초[家藏史草] : 예문관(藝文館) 소속의 전임관인 8명의 사관, 즉,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대교(待敎, 정9품), 검열(檢閱, 정9품)이 기록하는 사초를 '가장사초(家藏史草)'라 하는데, 보통 사초라 할 때 이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가정[嘉靖] : 〈역사〉중국 명나라 세종 때의 연호(1522~1566).

각기[脚氣] : 〈의학〉비타민 비 원(B*1*)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영양실조 증상. 말초신경에 장애가 생겨 다리가 붓고 마비되며 전신 권태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각기병·각질(脚疾).

각방[各房] : 임시 관청인 도감(都監)에서 각각의 사무를 보던 곳

각사[各司] : 경사(京司). 서울에 있는 관청의 총칭. 정1품부터 종6품까지의 관청. [유사어]: 경각사(京各司).

각신[閣臣] : 규장각(奎章閣)의 벼슬아치

각품[各品] : 각 물건(物件)

간관[諫官] : 국왕의 옳지 못한 처사나 과오에 대하여 간언하는 관리. 비록 3품 이하의 관직이지만 이들은 국왕에게 간언하는 이외에도 서경권(署經權)을 가지고 관리들의 인사 문제에 관여하였고, 백관의 근태(勤怠)를 감찰하고 비위(非違)·불법을 탄핵하며 풍속의 교정, 관리의 천거 등을 관장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분과 능력, 성격 등을 엄선하여 채용하였음.

간리[奸吏] : 간사한 관리나 공리(公吏).

간본[刊本] : 금속이나 나무로 판면(版面)을 만들어 인쇄한 서적. 판본(版本)이라고도 한다.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筆寫本)에 대응되는 말이다. 간산[看山] : 명당에 묘를 쓰기 위해 산을 돌아보는 것.

간선[簡選] : 여럿 중(中)에서 골라 냄

간심[看審] : 〈역사〉농사가 잘되고 못됨을 자세히 보아 등급을 매기던 일.

간원[諫院] : 〈역사〉=사간원.

간원[諫院] : 〈역사〉=사간원[司諫院] 조선 시대에, 삼사 가운데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원년(1401)에 설치하여 연산군 때 없앴다가 중종 때 다시 설치하였다. 늑미원(薇院).

간인[刊印] : 판을 새기어 간행물을 인쇄함.

간전[墾田] : 진전(陳田)이나 황무지와는 달리 현재 개간되어 경작하고 있는 전지(田地)를 말함.

간지[干支] :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 또는 간(干)과 지(支)를 조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늑지간(支干).

감고[監考] : 〈역사〉조선 시대에, 정부의 재정 부서에서 전곡(錢穀) 출납의 실무를 맡거나, 지방의 세금 및 공물의 징수를 담당하던 벼슬아치.

감무[監務] : 〈역사〉고려 중기·조선 전기에,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지 못한 지방의 작은 현(縣)을 다스리기 위하여 두었던 지방관. 태종 13년(1413)에 현감(縣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늑감무관.

감부[勘簿] : 실물과 장부를 맞춤.

감사[監司] : 〈역사〉=관찰사

감사[監事] : 〈역사〉조선시대에, 춘추관에 속하여 시정(時政)의 기록을 맡아보던 정일품 벼슬. 좌의정, 우의정이 겸임하였다.

감사[監司] : 조선시대 각 도(道)의 장관. 일명 관찰사(觀察司). 중요한 정사에 대해

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으나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는 경찰권 · 사법권 · 징세권 등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 감사의 관청을 감영(監營)이라고 하며, 문관직으로서 각 도마다 1인씩 둠.

감시[監試] : 〈역사〉1.=국자감시. 2.=소과[小科]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 ≒감시(監試) · 사마 · 사마시.

감영[監營] : 〈역사〉조선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상영(上營) · 순영(巡營) · 영문(營門) · 포정사.

감처[勘處] : 죄를 심리(審理)하여 처단(處斷)함감천궁(甘泉宮)이 봉화(烽火)의 위급함 : 비상임.

갑곶[甲串] : 〈지명〉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마을. 고려 23대 고종 때에 몽골군이 침입하자, 집권자였던 최우가 조정을 이끌고 피란한 곳으로, 군사의 갑옷만 벗어 쌓아도 건널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갑술[甲戌] : 〈민속〉육십갑자의 열한째.

갑신[甲申]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한째.

갑오[甲午] : 〈민속〉육십갑자의 서른한째.

갑인[甲寅] : 〈민속〉육십갑자의 쉰한째.

갑인년[甲寅年] : 1734 영조 10년.

갑자[甲子] : 〈민속〉육십갑자의 첫째.

갑자년 : 1624 인조 2년.

갑주[甲冑] :갑옷과 투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갑옷투구 · 개주.

갑진[甲辰]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한째.

갓[笠] : 햇볕이나 비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관모. 기본적으로는 방립형(方笠型) · 평량자형(平凉子型)의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용구로서 입형(笠形) 관모를 쓰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중에 재료 · 수식(修飾) · 제작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조선시대에 여러 종류의 갓이 출현하였다. 그 중에서 흑립(黑笠)은 갓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마지막에 정립된 입제(笠制)로서, 조선시대 500년을 이어오는 대표적 관모이다. 따라서 갓이란 광의로는 방립형 · 평량자형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것을 말하나, 협의로는 흑립을 지칭하는 것으로, 후세의 '갓'이란 흑립을 말한다.

강[康] :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신천(信川), 곡산(谷山), 재령(載寧) 등 10여 본이 현존한다.

강녕포구[康寧浦口] :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에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세곡선들과 화물을 실은 배들이 강화도의 좁은 바닷길을 지나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던 큰 포구였다. 반농반어촌으로 수로교통이 발달한 곳이었으나 휴전 직후 철책선이 설치되면서 뱃길이 닫혀 현재는 갯벌로 남아있다.

강도(江都) : 〈지명〉 '강화(江華)'의 다른 이름.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고의 침입으로 도읍을 이곳으로 옮긴 후, 원종 11년(1270)에 환도(還都)할 때까지 39년 동안 임시 수도로 삼았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강등[降等] :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낮아짐. 또는 등급이나 계급을 낮춤.

강무장[講武場] :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이 신하, 백성들과 강무(조선시대에 국왕의 친림(親臨) 아래 거행된 군사훈련을 겸한 수렵대회)를 행하던 곳. 강원도 김화, 평강, 회양, 횡성 등지와 경기도 광주, 해주, 황해도 등지에 있었다. ≒강무소.

강상[綱常] : 유교의 기본 덕목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말함.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임. 오상은 사람이 항상 행(行)하여야 하는 5가지 바른 행실. 곧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또는 아버지의 의(義), 어머니의 자(慈), 형의 우(友), 동생의 공(恭), 아들의 효(孝)를 말함.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뜻함. [참고어]: 강상죄(綱常罪).

강서[講書] : 옛글의 뜻을 강론(講論)함

강쇄[降殺] : 등급(等級)을 아래로 낮춤

강습[講習] : 1.일정 기간 동안 학문, 기예, 실무 따위를 배우고 익히도록 지도함. 2.옛글을 강론하여 익힘.

강정[講定] : 강론하여 결정함.

강포[强暴] : 완강(頑强)하고 포악(暴惡)함. 우악스럽고 사나움

강학[講學] : 학문(學問)을 닦고 연구(硏究)함

강희[康熙] : 〈역사〉중국 청나라 성조(聖祖) 때의 연호(1662~1722). 이를 본떠 성조를 강희제라고도 한다.

개수[改修] :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듦.

개연[慨然] : 개연하다'의 어근. 개연하다, 억울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하다.

개장[改葬] : 1.다시 장사 지냄. 2.=이장(移葬). 이장[移葬] 무덤을 옮겨 씀.

개차[改差] : 〈역사〉벼슬아치를 갈던 일.

개찬[改撰] :책 따위를 고쳐 다시 지음.

객사[客舍] : 〈역사〉고려 · 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하여 외국 사신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숙소. 늑객관(客館) · 관사(館舍) · 관소(館所).

거도선[居刀船] : 선체(船體)가 가볍고 속력이 빠른, 돛을 달지 아니한 규모가 작은 거룻배. 1척에 4, 5석 정도 실을 수 있었음. 조운대선(漕運大船)에 딸려 땔감이나 식수(食水) 등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거나 해안의 주민들이 해산물 채취 등의 생업(生業)에 쓰이기도 하였음. 세종 12년(1430)부터는 일본의 해적선을 쫓을 목적으로 검선(劍船) 1척마다 거도선 2, 3척을 따르게 하였음. [유사어]:비거도(鼻居刀). 비거도선(鼻居刀船).

거사[擧事] : 큰일을 일으킴. 늑사거(事擧).

거애[擧哀] : 곡읍(哭泣)하는 예.

거의[擧義] : 의병을 일으킴.

거재유생[居齋儒生] : 〈역사〉조선시대에, 성균관이나 사학(四學) 또는 향교의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학문을 닦던 선비. 늑거재생.

거조[擧條] : 임금에게 아뢰는 조항.

거주[擧主] : 관리를 임명할 때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천거하는 사람. 거주의 자격은 동반(東班)은 6품 이상이었고, 서반(西班)은 4품 이상이었으나, 대개 당상관(堂上官)인 경우가 많았음. 거주는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추천한 사람이 관원에 임명되어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거주도 공동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하였음.

건[巾] : 1.헝겊 따위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2.〈민속〉=두건(頭巾).

건륭[乾隆] : 〈역사〉중국 청나라 고종 때의 연호(1735~1795).

걸포[傑浦] : 김포시 걸포동이다. 법정동으로, 행정은 김포1동이 관할한다. 북쪽에 한강이 흐르고, 48번국도와 98번 국가지원지방도가 지나는 교통 요충지이다. 동쪽으로 고촌면(高村面), 남동쪽으로 북변동(北邊洞), 서쪽으로 감정동(坎井洞) · 운양동(雲陽洞), 북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고양시와 접한다. 서쪽에 나진포천이, 북쪽에 한강이 흐른다. 삼국시대에는 고구

려 김포현(黔浦縣), 통일신라 때는 김포현, 고려시대에는 금양현·부평현에 속하였다. 1414년(태종 14) 김포현 관할이 된 뒤, 1895년(고종 32) 김포군 군내면 관할이 되었다.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군내면 북변리가 된 뒤, 1938년 김포면 관할이 되었다.

검교[檢校] : ①고려·조선시대에 산직(散職) 제도로 설치된 벼슬 이름의 하나. 이는 관료의 공훈과 관료 승진에 따른 실직(實職) 제수의 한계가 드러나고 또한 관원에 대한 우대 차원 등의 이유로 정원 외의 관원을 늘리거나 실지 사무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도록 마련된 것임. 대개 검교 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처럼 벼슬 이름 앞에 붙임. [참고어]: 동정직(同正職). 산직(散職). 첨설직(添設職). ②실정에 대해 조사함. [유사어]: 핵실.

검칙[檢飭] : 점검하여 바로잡음.

검험[檢驗] : 1.검사하여 증명함. 2.〈역사〉조선시대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조(刑曹)의 검관(檢官)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고 사망 원인을 밝혀 검안서를 쓰던 일.

검호[劍豪] : 검술에 통달한 사람.

격발[激發] : 기쁨이나 분노 따위의 감정이 격렬히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견감[蠲減] : 흉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나라에서 조세(租稅)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 견면(免). 견복(復).

결[結] : 〈역사〉논밭 넓이의 단위. 세금을 계산할 때 썼다. 1결은 1동의 열 배로,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늑목.

결가[結價] : =결금[結-] 〈역사〉조선시대에, 토지의 한 결에 대하여 매기던 조세의 액수. 늑결가(結價).

결급[決給] : 판결을 내려 지급함.

결복[結卜] : 토지에 매기는 목[結]·짐[負]·뭇[束]의 통칭(通稱).

경강[京江] : 〈지명〉1.예전에, 서울의 뚝섬에서 양화 나루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이르던 말. 서울로 오는 세곡, 물자 따위가 운송되거나 거래되었다. 2.경기도와 강원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경강선[京江船] : 〈역사〉조선시대에, 주교사에서 관리하여 한강의 수운에 사용하던 개인의 배.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에 임시 다리를 놓거나, 전라도 및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세곡을 운반하는 일에 사용하였다

경관[京官] : 중앙의 관아에 소속된 관직, 또는 중앙 관청. 주로 지방관에 대하여 구별하여 이렇게 불렀음. [유사어]: 경관직(京官職). 경직(京職). [반의어]: 외관(外官). 지방관(地方官).

경년[經年] : 해를 보냄

경녕군[敬寧君] : 이비(태종대왕과 효빈김씨의 소생) ?~1458(세조 4) :이름은 이비, 자는 정숙(正淑)으로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제1서자이며 어머니는 효빈 김씨(孝嬪金氏)로 조선 전기의 왕족이다. 천성이 어진고 어려서부터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학문에 밝아 양녕 · 효령대군과 세종에게 글을 가르쳤다. 태종대왕(太宗大王) · 세종대왕(世宗大王) · 문종대왕(文宗大王) · 단종대왕(端宗大王) · 세조대왕(世祖大王) 5대에 걸쳐서 왕실과 국정에 충성을 다하였다.

경덕궁[慶德宮]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新門路) 2가에 있던 궁궐. 1617년(광해군 9) 인경궁(仁慶宮) · 자수궁(慈壽宮)과 함께 건축을 시작하여 1620년 10월에 완공하였다. 처음에는 경덕궁(慶德宮)이라 하였으나, 1760년(영조 36) 경희궁으로 고쳤다. 경희궁 자리는 원래 인조(仁祖)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뒤에 元宗으로 추존)의 잠저(潛邸)였는데, 여기에 왕기(王氣)가 서렸다고 하여 광해군(光海君)이 빼앗아 궁궐을 지었다. 숭정전(崇政殿) · 융복전(隆福殿) · 집경당(集慶堂) · 흥정당(興政堂) · 회상전(會祥殿) · 흥화문(興化門) · 황학정(黃鶴亭) 등의 여러 부속건물이 있었으나 1829년(순조 29)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燒失)되었으나, 1831년에 중건하였다.

경력[經歷] : ①고려시대 문하부(門下府), 도총도통사(都總都統使),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인 경력사(經歷司) 등에 두었던 3, 4품의 실무 담당 관직. [참고어]: 경력사(經歷司). 도총도통사(都總都統使). 문하부(門下府). ②조선시대 도평의사사, 관찰사의 속관(屬官), 충훈부(忠勳府), 의빈부(儀賓府), 의금부(義禁府), 개성부(開城府),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사평부(司評府) 등에 속하여 실무 처리를 맡았던 종4품의 벼슬.

경릉[敬陵] : 서오릉의 하나. 경기도(京畿道) 고양군 신도읍에 있는 조선(朝鮮) 덕종과 그의 비 소혜(昭惠) 왕후(王后)의 능

경리[京吏] : 〈역사〉=경아전[京衙前] 조선시대에, 중앙 관아에 딸려 있던 모든 구실

아치. 대부분 중인(中人) 계급에 속하였다.

경서[經書] : 유교의 경전(經典).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말하는데, 사서는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이며, 오경은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이다.

경술[庚戌]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일곱째.

경신[庚申] : <민속>육십갑자의 쉰일곱째.

경신환국[庚申換局] : 조선 숙종 6년(1680)에 남인(南人)이 축출되고 서인(西人)이 득세한 사건. 서인인 김석주·김익훈(金益勳) 등이, 남인인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이 종실인 복창군(復昌君)·복선군(復善君)·복평군(福平君)의 3형제와 역모한다고 고발하여 옥사(獄事)가 일어남. 복창군의 3형제와 허견, 허적 등이 죽거나 유배되었고, 남인들이 축출되었음. [유사어]: 경신출척(庚申黜陟).

경연[經筵] : <역사>1.고려·조선시대에,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신하를 불러 경서(經書) 및 왕도(王道)에 관하여 강론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자리.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였다. ≒경악(經幄)·경유. 2.=경연청 .

경연관[經筵官] : <역사>고려·조선시대에, 경연에 참여하던 벼슬. 주로 학문과 덕망이 높은 문관이 겸임하였으며, 이들의 주된 임무는 임금의 학문 지도였지만 왕도(王道)에 대하여 강론하고 중요한 정치 문제를 토의하기도 하였다.

경오[庚午]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일곱째.

경인[庚寅]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스물일곱째.

경자[庚子]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서른일곱째.

경장[更張] : 1.고쳐서 확장함. 2.정치적·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함. 3.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맴.

경재[卿宰] : 재상(宰相) ①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官員)을 지휘(指揮) 감독(監督)하는 벼슬 자리에 있던 사람을 두루 이르던 말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에는 정3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이상(以上)으로 임금을 보좌하며 나라의 일을 처리(處理)하던 관직(官職)을 재상(宰相)이라 하였음 경상(卿相) 경윤(卿尹) 경재(卿宰) 재신(宰臣) ②승상(丞相)

경재소[京在所] : 지방의 명망이 있는 자나 유력자 등을 서울에 재류(在留)시켜 그 지방의 일을 의논하고 중앙과 지방 관청과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게 하는 곳.

경제[景帝, BC 188~BC 141] : 중국 전한(前漢)의 제6대 황제(재위 BC 157~BC 141). 황제 일족의 영지 삭감을 시도했다. 이에 오·초 등 7국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했다. 군국제 성격을 개정하고, 무제 이후의 중앙집권적 군현제도 확립의 기초를 닦았다.

경증[耕種] :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꿈

경중[京中] : 서울 안

경진[庚辰] : 〈민속〉육십갑자의 열일곱째.

경차관[敬差官] :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 벼슬.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民政)을 살피는 일을 맡았음.

경창[京倉] : 조선(朝鮮) 때, 서울 한강(漢江) 가에 있던 창고(倉庫)

경태[景泰] : 〈역사〉중국 명나라 대종 때의 연호(1450~1456).

경회도[慶會圖] : 새해 첫날이나 임금의 생신, 회갑 등 국가 및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군신(君臣)이 모여 축하하는 것을 그린 그림.

계[啓] : 아룀. 신(申).

계달[啓達] : 임금에게 의견을 아룀. 계품(啓稟).

계루[繫累] : 연계시켜 얽어맴.

계목[啓目] : ①임금에게 조목별로 자세히 보고하던 것. ②종래의 소식을 고친 것. 【용례】→상언(上言).

계묘[癸卯]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마흔째.

계문[啓聞] : 신하가 정무에 관하여 임금에게 아룀. 옛날 중국에서는 황제에게 아뢰는 것을 주문(奏聞)이라 하였음. 우리 나라 조선 초에는 신문(申聞)이라고 하던 것을 세종 15년(1433) 9월에 계문으로 고쳤음. [유사어]: 계달(啓達). 계품(啓稟).

계미[癸未]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스무째.

계본[啓本] :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에게 큰일을 아뢸 때 제출하던 문서 양식. 태종 12년(1412)에 장신(狀申)을 고친 것이다.

계사[癸巳]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서른째.

계사[啓辭] : 임금에게 사실(事實)을 적어 올리는 서면(書面)

계술[繼述] : 조상(祖上)의 하던 일이나 뜻을 끊지 아니하고 이어 감

계운궁[啓運宮] : 조선시대 인조(仁祖)의 생모(生母)이자 원종(元宗)의 비(妃)인 인헌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 혹은 구씨가 거처하는 궁(宮)의 칭호.

계유[癸酉] : 〈민속〉육십갑자의 열 번째.

계제[階梯] : 1.사닥다리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진량(津梁). 3 〈운동·오락〉기계 체조에 사용하는, 옆으로 비스듬히 세운 사닥다리.

계좌정향[癸坐丁向] : ①뒷자리나 집터가 계방을 등지고 정방을 바라보는 방향(方向) ②또는 그렇게 앉은 자리

계청[啓請] : 임금께 아뢰어 청함

계축[癸丑]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쉰째.

계품[啓稟] : 〈역사〉조선시대에, 신하가 글로 임금에게 아뢰던 일. ≒계달(啓達)·계문(啓聞)·계주(啓奏).

계하[啓下] : 〈역사〉임금의 재가(裁可)를 받던 일.

계해[癸亥]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예순째

고과[考課] : 관원의 근만(勤慢)과 공과(功過) 등을 사정(査定)하여 표폄(褒貶)하는 인사행정(人事行政)으로, 매년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두 차례의 도목정사(都目政事)로 실시되었음.

고각[鼓角] :〈역사〉군중(軍中)에서 호령할 때 쓰던 북과 나발.

고려산[高麗山] : 높이는 436m로 강화읍내에서 5km쯤 떨어져 있는 산이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옛 명칭은 오련산(五蓮山)이다.

고리관[古里串] : 지금의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대를 말한다.

고비[考妣] :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고사[庫舍] : =곳집[庫-] :1.예전에, 곳간으로 쓰려고 지은 집. ≒경(京)·고사(庫舍)·부고(府庫)·창(倉)·창름 . 2.=상엿집.

고신[告身] : 〈역사〉=직첩[職牒]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고신(告身)·사첩(謝牒).

고양[高陽] : 지금의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를 말한다.

고양포[高陽浦] : (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를 말한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

된 〈호구총서〉에 들어있는 〈통진부읍지〉로 통진부 내면 소속으로 고양포리와 능동이 편재되어 있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 예전부터 설치되었던 두 개 리를 병합해 고양리로 하고 신설된 월곶면에 편입하였다.〈지명유래집. 김포군. 1995〉

고자[庫子] : 조선시대 창고를 지키고 출납을 맡아보던 사람. 창고의 곡식을 축내었을 때는 그 양에 따라 처벌하였는데, 70섬 이상을 축내면 해당 지역 수령은 삭직(削職)되고, 고자는 절도(絕島)의 종으로 만들고, 아전(衙前)은 장(杖) 1백 유(流) 3천리에 처하고, 40섬 이상일 때는 고자는 장 1백 유 3천리에 처하고, 15섬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그 관할 관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음. [유사어]: 고직(庫直). [참고어]: 창고(倉庫).

고장[告狀] : 그 사정을 진술하여 위에 호소하는 것. 소장(訴狀)을 제출하는 것. [유사어]: 소지(所志).

고제[高帝, 427~482] : 중국 제나라를 세운 황제. 송나라 말 내란에서 공을 세워 중령군 장군이 되자 중앙군을 완전히 장악하여 순제를 폐위시키고 479년 제나라를 세웠다. 우완지의 건의에 따라 호적 정리를 실행하였으나 반발이 심했다. 재위 4년만에 병사하였다.

고창병[鼓脹病] : 헛배가 땡땡하게 부른 병. 고(蠱). 【용례】→고질(蠱疾)㉠.

고하[高下] : 1.나이의 많음과 적음. 2.신분이나 지위의 높음과 낮음.

고황[膏肓] :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심장의 하부와 격막(隔膜)의 상부를 말하는 것인데, 병이 여기에 들어가면 고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중한 병을 고황의 병이라고 한다. 또 병이 이곳에 자리잡으면 침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어떠한 일을 비유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진후(晉侯)가 병이들때, 진백(秦伯)에게 의원을 요청하였다. 미처 의원이 도착하기 전에 진후가 꿈을 꾸니 자기 형이 두 아이로 변하여 하는 말이 '양의가 오니 고황으로 숨어야겠다.'고 하였다. 의원이 와서 보고 병이 고황 속에 들어갔음을 알았다 한다.

고휼[顧恤] : 불쌍하게 생각하여 돌보거나 도와줌.

곡례[曲禮] : ≪예기(禮記)≫의 편명(篇名)으로, '자잘한 여러 예의'라는 뜻. ≪예기≫는 유교 경전으로 5경(五經)의 하나임. 곡례편은 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하로 되어 있음. 조선 시대 예학(禮學)의 발달과 함

께 많은 주석서(註釋書)가 나왔음. [참고어]: 예기(禮記).

곡림[哭臨] : 임금이 죽은 신하를 몸소 조문함.

곡벽 : ≪효경(孝經)≫ 천(喪親)에 나오는 곡읍벽용의 준말로, 소리내어 울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뜻. 어버이를 잃어 애통해 하는 예절임.

곤폐[困弊] : 괴롭고 피곤함.

공납[貢納] : 세제(稅制)의 하나. 곧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국가에 바치게 하는 것으로, 고려의 경우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의 제도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토산물과 전결(田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분정(分定)하였는데, 대납(代納)이 사정에 따라 금지, 혹은 허용되기도 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는 대동법(大同法)으로 바뀌었음. [유사어]: 공물(貢物), 공부(貢賦), 세공(歲貢). [참고어]: 공법(貢法), 대납(代納), 대동법(大同法), 방납(防納).

공보[公輔] : 〈역사〉임금을 보좌하던 삼공(三公)과 사보(四輔)를 아울러 이르던 말.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의 삼공과 진의(前疑) · 후승(後丞) · 좌보(左輔) · 우보(右輔)의 사보를 이른다.

공복[公服] : 〈역사〉삼국시대부터 관원(官員)이 평상시 조정(朝廷)에 나아갈 때 입던 제복. 신라 진덕여왕 2년(648)부터 착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곡령(曲領)에 소매가 넓은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홀(笏)을 들었다. ≒조의(朝衣

공부[貢賦] : 국가에서 각 군현 단위에 부과한 현물세. [유사어]: 별공(別貢). 상공(常貢). [참고어] : 공물(貢物).

공사[供辭] : 죄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한 말. [유사어] : 공초(供招).

공세[貢稅] : 해마다 나라에 바치는 공물(貢物)

공신[功臣] : 국가나 왕실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신하.

공암[孔巖] : 현 서울시 양천구의 옛 지명

공장[工匠] : 수공업 장인(匠人). 공인(工人).

공조[工曹] : 〈역사〉1.고려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산택(山澤) · 공장(工匠) · 영조(營造)를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24년에 설치하였는데 공민왕 5년(1356)에는 공부(工部)라 불렀으며, 한때 전공사(典工司)라고 하다가 공양왕 원년(1389)에 다시 이 이름으로 바꾸었다. 2.조선시대에, 육조(六 曹) 가운데 산택 · 공장 · 영선(營繕) · 도야(陶冶)를 맡아보던 정

이품 아문. 태조 1년(1392)에 설치하여 고종 31년(1894)에 공무아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늑공관(工官) · 수례(修例) · 수부(水府) · 수조(輸曹) · 전공(典工).

공천[公賤] : 〈역사〉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되어 관아에 속하게 된 종. 조선 시대 관부(官府)에 예속된 남자 종과 여자 종. 이들은 죄를 지어 종이 된 자 또는 관청 소속의 기생(妓生) · 나인(內人) · 관노비(官奴婢) · 역졸(驛卒)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관노비였음. [참고어]: 공노비(公奴婢). 관노비(官奴婢). [반의어]: 사천(私賤).

공초[供招] :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

공해[公廨] : 관가(官家)의 건물. 늑공청.

공화[公貨] : =공금(公金) .

과전[科田] : 고려 · 조선 왕조에서 국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한 대가로 문무양반 등 직역자(職役者)에게 그 직책의 품(品)을 기준으로 한 과(科)에 따라 일정한 특권을 갖도록 지정한 토지. 〈역사〉과전법에 따라 관원에게 나누어 주던 토지. 문무백관은 18등급으로 나누어 재직, 휴직을 불문하고 그 지위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전(私田)에 속하였지만 수조권(收租權)은 인 대에 한하였다.

관가[觀稼] : 임금이 들로 나아가 농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관거[官居] : =읍거[邑居] :읍민(邑民)들이 거주하던 마을, 또는 촌락(村落). 일반적으로 관사(官舍)가 있고 읍치(邑治)가 행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관거(官居)라고도 했음. 특히 행정상의 필요나 변방의 방어와 관련하여 새로 성(城)을 쌓고 읍(邑)을 설치하기도 했고, 인근의 읍거(邑居)를 옮겨 새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읍거 지역은 매장(埋葬)을 금지하여 읍치 지역으로서 보호했음.

관고[官庫] : 관가의 창고.

관노[官奴] : 관아(官衙)에 소속되어 있는 종.

관령[管領] :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의 행정 구역인 5부(部)의 각 방(坊)과 성 주변 10리 안의 각 이정(里正) · 이장(里長)과 같은 서열의 직임. 당시 한성에는 47개의 방이 있었으며, 성저 십리(城底十里)의 관령은 15인이었는데, 이들은 방내의 모든 행정 사무를 책임지고, 성저 십리의 경우는 권농의 임무, 즉 도로 관리 · 호적 작성 · 호구 관리 · 도적 체포 · 무

당 축출·부역 차출·환자[還上] 분배 등의 일까지 담당하였음. 이외 노비 살해자를 신고하거나 가사법(家舍法)을 어긴 관원의 집을 신고해야하는 의무도 있었음. 이들은 죄를 지어도 한성부와 호조(戶曹)에서만 논죄할 수 있었는데, 위의 모든 일이 관령의 책임 업무로써 처벌이 따랐기 때문에 천역화(賤役化) 되었음. 이들이 권한을 이용하여 부역·호구 조사·환자 등의 임무에서 농간을 부리는 경우도 많았음.

관문[關文] : 〈역사〉1.조선 시대에, 동등한 관부 상호 간 또는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로 보내던 공문서. 2.관청에서 발급하던 허가서. 늑관자(關子).

관방[關防] : 1.국경을 지킴. 2.부정행위를 막음. 3.변방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요새.

관부[官府] : 관아. 정부.

관상감[觀象監] : 〈역사〉조선시대에, 예조에 속하여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수(曆數), 기후 관측, 각루(刻漏)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세종 때 서운관을 고친 것이다. 늑운감(雲監)·운대(雲臺).

관서[官署] : 1.관청과 그 부속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늑국서(局署). 2.=관아(官衙). 3.〈역사〉조선시대에, 문서에 관인(官印)을 찍던 일. 부(部), 처(處), 원(院), 청(廳), 국(局), 서(署), 소(所) 따위로 나뉜다.

관왜[館倭] : 관수왜[館守倭] 조선시대에, 부산에 둔 왜관(倭館)을 맡아 관리하던 왜인(倭人). 왜관 내에 출입하는 자를 검색하고 잠상(潛商)을 적발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왜인을 쓰시마(對馬) 섬에 통보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관직[官職] : 〈역사〉관직(官職)과 작위(爵位)를 아울러 이르는 말.

관정[寬政] : 너그럽게 다스리는 정치(政治)

관찰사[觀察使] : ①고려 성종(成宗) 때 주(州), 부(府)의 벼슬 ②조선(朝鮮) 때 외관직(外官職) 무관(武官)의 종2품(從二品) 벼슬

관학[官學] : 1.나라에서 세운 학교나 학원 따위의 교육 기관. 2.〈역사〉나라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 국자감,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 따위이다.

관학[館學] : 조선시대 교육 기관인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을 통틀어 이르던 말. 성균관은 고려 충선왕(忠宣王) 때 국학(國學)을 성균관으로 개명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어 조선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조선 시대 최고 교육 기관이었음. [참고어]: 사학(四學). 성균관(成均館).

관해[官廨] : =관아[官衙]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곳. 늑공아[公衙]·공당[公堂]·공부[公府]·공서[公署]·관부[官府]·관사[官司]·관서[官署]·관사[官舍]·관윤[官尹]·관해·마을·부서[府署]·아부[衙府]·전아[殿衙]·청사[廳舍].

관후[寬厚] : 너그럽고 후함.

광[壙] : 광중(壙中). 무덤 속.

광무[光武] : 〈역사〉조선 고종 때 사용한 연호(1897~1907).

광서[光緖] : 〈역사〉중국 청나라 광서제 때의 연호(1875~1908).

광성진[廣城津] : =광성보(廣城堡) :〈고적〉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에 있는 성(城). 고려가 몽고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로 천도하였을 때 쌓았다. 신미양요 때에는 미국과의 격전지였다. 사적 제227호. 늑광성진.

광연루[廣延樓] : 창덕궁 광연루를 말한다.

광패[狂悖] : 행동[行動]이 도의에 벗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사납고 막됨

교결[交結] : 서로 사귀어 교제 관계를 맺음. [유사어]: 교류(交流).

교대시[絞待時] : 고려·조선 시대 사형 방식의 하나인 교형(絞刑)을 집행할 때, 추분(秋分)에서 춘분(春分)까지의 시기를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것. [참고어]: 교(絞). 교부대시(絞不待時). 대시(待時).

교도[敎導] : 고려·조선시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

교리[校理] : 〈역사〉조선시대에, 집현전, 홍문관, 교서관, 승문원 따위에 속하여 문한(文翰)의 일을 맡아보던 문관 벼슬. 정오품 또는 종오품이었다.

교생[校生] : 조선시대 향교(鄕校)의 유생(儒生). 향교 생도(鄕校生徒)의 준말. 이들은 대개 기초 교육을 마친 양반과 양인의 자제로서, 정원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부(府)와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은 90인, 도호부는 70인, 군은 50인, 현은 30인이었으나 이 규정은 곧 유명무실해짐. 향교에 설치된 기숙사에 기숙하면서 공부했으며, 수령과 관찰사가 학업을 평가하여 향시(鄕試)를 면제하고 바로 복시(覆試)에 응시하는 혜택을 주거나 성적 우수자에게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고, 서리(書吏), 역관직(譯官職), 훈도(訓導)로 채용하기도 하였음. [유사어]: 생도(生徒). 향교생도(鄕校生徒). [참고어]: 공생(貢生). 액외교생(額外校生). 유학(幼學). 향교(鄕校).

교서관[校書館] : 조선시대의 관청. 경적(經籍)의 인쇄(印刷)·반포(頒布) 및 향축(香祝)·인전(印篆)의 일을 관장하였음.

교언[巧言] : 교묘하게 꾸며 대는 말. 늑교어 (巧語).

교유[敎誘] : 잘 달래고 가르치어 이끎.

교형[絞刑] : 〈법률〉=교수형.

구관[句管/勾管] : 맡아서 다스림.

구군[驅軍] : 사냥을 할 때에 짐승 몰이를 하거나, 짐을 실어 나를 때에 마소[馬牛]를 모는 사람.

구량[口糧 · 口粮] : 식량. 사람의 수효대로 내어주는 양식.

구례[舊例] :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관례.

구사파의[仇斯波衣] : 김포지방에 있던 고구려 때 지명. 동자홀(童子忽) · 당산현(幢山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동성현(童城縣)으로 고쳐 장제(長堤:富平)의 영현(領縣)으로 하고, 고려시대에 수주(樹州:仁川) · 통진(通津)에 속하였다가 1907년(융희 1) 통진과 함께 김포에 병합되었다.

구적[寇賊] : 나라를 침범하는 외적.

구종수[具宗秀, ?~1417] : 조선 전기의 문신. 선공감 종3품 부정 때, 근신 중인 세자(양녕대군)에게 환심을 사고자 주연을 베풀고, 형 종지 · 종유와 함께 뇌물을 바친 사실이 탄로나 유배되었다. 다른 죄의 추가로 두 형과 함께 참수당했다.

구중[九重] : 궁궐.

구실[構殺] :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여 그 죄로 몰아 죽임.

구성[舊城] : 예전의 성

구청[求請] : 금전이나 물건을 요구하여 청함.

구투[舊套] : 옛 방식이나 방법.

구환[舊還] : 갚을 때가 지난 환곡.

구황[救荒] : 흉년 등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에 빠진 빈민(貧民)을 구제하는 일. [참고어]: 구황방(救荒方). 구황청(救荒廳).

구획[區劃] : 1.토지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 또는 그런 구역. 2.[북한어] 도시나 마을 따위에서 도로 따위로 경계를 이룬 일정한 부분.

국구[國舅] : 왕비(王妃)의 친정(親庭)아버지. 곧 임금의 장인(丈人)

국둔전[國屯田] : 조선시대 군사들이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군자(軍資)에 충당하던 토지.

국마[國馬] : 나라에서 특(特)히 기르던 말

국문[鞫問/鞫問] : 〈역사〉국청(鞫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하던 일

국용[國用] : 1.나라의 소용(所用). 2.나라의 비용(費用).

국장도감[國葬都監] : 〈역사〉조선시대에, 국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임시 관아.

국조[國祖] : 나라의 시조.

국지[局地] : 일정하게 한정된 지역.

군기[軍器] : 전쟁에 쓰는 도구나 기구.

군무[軍務] : 1.군사(軍事)에 관한 일. 2.군인으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일.

군문[軍門] : 1.'군대(軍隊)'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군영(軍營)의 입구. ≒기문(期門). 3.군영의 경내(境內). ≒병문(兵門)·아문(牙門)·영문(營門)·원문(轅門). 4.〈역사〉훈련도감이나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따위 군사 관계의 관아나 국방에 관한 군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군부[軍簿] : ①고려시대 군사들의 군적부(軍籍簿). ②군부사(軍簿司)를 줄여서 이르는 말. [참고어]: 군부사(軍簿司).

군소배[群小輩] : 소인(小人)들의 무리. ≒군소(群小).

군액[軍額] : 1.나라의 일에 쓸 인부의 수효. 2.〈군사〉군인의 숫자. ≒병액(兵額). 3.〈군사〉군대에서 쓸 곡식의 양.

군역[軍役] : ①군적(軍籍)에 등록(登錄)된 신역(身役) ②군대(軍隊)의 복무(服務)나 부역(賦役) ③전쟁(戰爭)이나 정벌(征伐) 고려·조선 시대의 국역(國役)의 일종. 대상자인 군정(軍丁)들의 성명(姓名)·본관(本貫)·가계(家系)·병종(兵種)·봉족(奉足)의 성명 등을 기록한 군적(軍籍)에 근거하여 부과됨.

군용[軍容] : 군사의 형태, 곧 군사의 진용.

군의[群議] : =중론(衆論). 1.여러 사람의 의견. ≒군의(群議)·중의(衆議). 2.〈불교〉종파의 우열이나 진위를 결정짓는 논문.

군자[軍資] : =군자금.

군자감[軍資監] : 조선시대 군량미 등 군수품의 저장·관리·출납을 맡아본 관청.

군자창[軍資倉] : 〈역사〉조선시대에, 군자감에 속하여 군량미를 저장하던 창고. 전국의 군전(軍田)으로부터 받아들인 군자곡을 저장하였다.

군정[軍丁] : 〈역사〉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丁男)으로,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勞役)에 종사하였다.

군정[軍情] : 군대 내의 정세나 형편.

군정[軍丁] : 군역(軍役)의 의무를 지는 장정(壯丁). 고려시대 이래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하고 군적(軍籍)에 등재하였음. 이들은 현역병인 정군(正軍)과 정군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봉족(奉足)으로 구분됨. [유사어]: 정남(丁男). [참고어]: 군역(軍役).

군포[軍布] : 〈역사〉조선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 들이던 베. ≒군보(軍保) · 군보포 · 군역포 · 군포목.

군향[軍餉] : =군량. 군대의 양식. ≒경계(庚癸) · 군향(軍餉) · 병량(兵糧) · 병식(兵食) · 양향(糧 餉) · 향궤(餉饋).

군현[郡縣] : 〈역사〉 1.군현 제도에서의 군(郡)과 현(縣)을 아울러 이르는 말.=군읍[郡邑] :군과 읍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역사〉지방 제도인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 ≒군현(郡縣) .

궁가[宮家] :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 공주(公主) 옹주(翁主)의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조선 후기에 이르러 토지 제도가 변질함에 따라 이들 궁가는 면세 조처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집적하여 문제를 일으켰음. 궁방(宮房).

궁노[宮奴] : 〈역사〉궁방(宮房)에 딸리어 있던 사내종. ≒궁노자

궁시[弓矢] : 활과 화살을 아울러 이르는 말. ≒궁전(弓箭).

궁위령 [宮闈令] : 〈역사〉조선시대에, 내시부에 속하여 종묘 제사에서 왕후의 신주를 받드는 일을 맡아 하던 환관.

귀격[貴格] : 귀(貴)하게 될 모습 또는 체격(體格)

귀근[歸覲] :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뵘.

귀록[鬼錄] : 거짓 기록, 또는 거짓을 기록한 문서.

규거[糾擧] : 규탄하고 살피게 함.

규례[規例] : 일정한 규칙과 정하여진 관례.

규장각[奎章閣] : 〈역사〉조선 정조 즉위년(1776)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 역대 임금의 글이나 글씨 · 고명(顧命) · 유교(遺敎) · 선보(璿譜) · 보감(寶鑑) 따위와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많은 책을 편찬 · 인쇄 · 반포하여 조선 후기의 문운(文運)을 불러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규피[規避] : 피할 길을 꾀함.

극지[蒙地] : 번화한 지역.

근간[懃懇] : '근간하다'의 어근. [형용사] 은근하고 간절하다.

근기[近畿] : 서울에서 가까운 곳. 늑기근(畿近) .

근부[斤斧] : 도끼

근성[覲省] : 지방 출신의 관리가 3년에 1차례 정도 휴가를 받아 부모를 찾아 뵙는 것. 혹은 노환이나 병환 등의 이유로 부모를 찾아 문안하고 보살피는 것. [유사어]: 근성부육(覲省俯育), 근친(覲親). [참고어]: 급가(給暇).

근시[近侍] : ①임금을 측근에서 모시는 일. 또는 그러한 신하. 주로 왕명의 출납(出納)을 담당하는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나 환관(宦官), 사관(史官) 등을 말함. [유사어]: 근신(近臣). ②→근시위(近侍衛). [참고어]: 근습(近習).

근신[近臣] :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 늑근습(近習) · 근시 · 시신(侍臣).

근왕[勤王] : 임금이나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

근후[謹厚] : 조심스럽고 온후함.

금란서리[禁亂胥吏] : 금란리[禁亂吏] -조선시대 나라에서 금지하는 법령(法令)을 어기거나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금지시키는 이서(吏胥)를 말함. 이들은 대개 법사(法司) 곧 사헌부(司憲府)나 의금부(義禁府), 한성부(漢城府), 형조(刑曹) 등에 소속되어 풍속의 규찰이나 시전(市廛)의 소란 금지, 종친 및 관리의 감찰 등의 금란의 일을 하였으며, 궐내 잡인(雜人)의 규찰은 병조 소속의 금란리(禁亂吏)가 맡았음. [유사어]: 금란리[禁亂吏], 금리(禁吏).

금령[禁令] :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늑금법[禁法]

금백[金帛] : 금과 비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금부[禁府] : 의금부(義禁府)의 약칭.

금부당상[禁府堂上] : 의금부(義禁府)의 당상관(堂上官)을 말함. 의금부의 당상관으로는 판사(判事) · 지사(知事) · 동지사(同知事)가 있는데, 모두 다른 관리들이 겸직함. [참고어]: 의금부(義禁府).

금상[今上] : 현재 왕위에 있음. 또는 그런 임금.

금양[禁養] :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여 가꿈.

금표[禁標] : 조선시대 연산군이 사냥 등의 유흥을 위해 도성 외곽 경기도 일원에 민간인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그 경계에 세운 통행금지 표지. 일반백성들의 출입과 행동의 제약을 표시하는 비석. 이 구역을 금한(禁限)이라고 하고, 동금표(東禁標)·서금표·남금표 등 경계의 요소요소에 금표비(禁標碑)를 세우고 무단통행자를 사형 등의 극형에 처하였다. 금표 내의 출입을 경고하는 금표비는 고양·파주·광주·양주·시흥·김포 등 경기도 일원에 세워졌으나, 중종반정 이후 파괴매몰되어 그 실재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1995년 경기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높이 1.47m, 너비 0.55m, 두께 0.23m의 이 화강암 비석에는 "금표내범입자 논기훼제서율(禁標內犯入者 論棄毁制書律:금표 안으로 들어온 자는 삼족멸족이 가능한 기훼제서율로 다스린다)"이라 새겨져 있다.

급복[給復] : 〈역사〉조선시대에, 충신·효자·절부 등에게 요역과 전세 이외의 잡부금을 면제하여 주던 일.

기[夔] : 1.외발을 가졌다는 상상 속의 동물. 2.외발을 가진 짐승 모양으로 빚은 그릇.

기각[掎角] : ①앞뒤 서로 응(應)하여 적을 견제(牽制)함 ②두 영웅(英雄)이 각각 대립(對立)하여 서로 버팀

기국[器局] : 사람의 도량(度量)과 재간(才幹).

기내[畿內] : 1.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 나간 가까운 행정 구역의 안. 늑기전(畿甸) . 2.조선시대에, 경기도 일대를 이르던 말. 늑기전 .

기년[耆年] : 예순 살이 넘은 나이.

기년[期年·朞年] : ①1주년. 기년(朞年)으로도 표기함.②오복(五服) 중의 두 번째 복(服)을 의미하는 기년복(朞年服)의 준말.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일년간 거상(居喪)하는데 장기(杖朞)와 부장기(不杖朞)의 구분이 있음. 장기는 부친이 생존해 있는데 모친의 상을 당했을 때 3년상을 낮추어 기년복을 입고 장(杖)을 짚는 것이며, 부장기는 그 외의 자최 기년에 장을 짚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부모·자·장자의 처·적손·형제자매·백숙부모·고모·질(姪) 등의 상에 입는 복입. [유사어] : 기(期). 기년복. 기복(期服).

기년법[紀年法] : 나라나 민족이 역사적으로 경과한 햇수를 계산할 때, 어떤 특정한 연도를 기원으로 하여 그로부터 햇수를 세는 방법. 기원의 근거에 따라 정치적 기년법, 종교적 기년법, 천문학적 기년법 따위가 있다.

기년복[朞年服] : 일 년 동안 입는 상복. ≒기년(朞年) · 기복(朞服).

기로[耆老] : 연로하고 덕이 높은 사람.

기롱[譏弄] : 실없는 말로 놀림.

기롱[欺弄] : ①(남을)속이어 희롱하거나 농락함 ②실없는 말로 시시덕거림

기망죄[欺罔罪] : 속이거나 기만한 죄. 특히 임금을 속인 경우 엄벌에 처함.

기묘[己卯]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열여섯째.

기미[己未]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쉰여섯째.

기민[飢民/饑民] : 굶주린 백성.

기보[畿輔] : 왕조의 수도(首都)를 달리 이르는 말. 경사(京師).

기복[起復] : 상중에 벼슬함.

기사[己巳] : 〈민속〉육십갑자의 여섯째.

기사관[記事官] : 〈역사〉조선시대에, 춘추관에 둔 벼슬. 품계는 정육품에서 정구품까지 있었으며, 실록을 편찬할 때 기초 자료로 삼았던 시정기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기시[棄市 · 棄尸] : 죄인의 목을 베어 그 시체를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형벌. 주로 나라를 크게 위태롭게 한 반역범이나 부모 형제 등을 살해한 강상·죄인에게 적용시킴.

기식[寄食] : 남의 집에 붙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냄. ≒탁식(託食).

기유[己酉]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여섯째.

기유각서[己酉覺書] : 〈역사〉1909년 7월 12일에 일본이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 처리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외교 문서. 이완용과 소네 아라스케 통감 사이에 맺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법부(法部)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司法廳)으로 옮겨졌다.

기유년 : 1789 정조 13년.

기전[圻甸 · 畿甸] : 경기도 일원을 부르던 칭호. 본래는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왕도(王都) 주위 사방 오백 리 이내의 지역을 말함. [유사어]: 기내(畿內), 기현(畿縣). [참고어]: 경기(京畿).

기주관[記注官] : 〈역사〉조선시대에, 춘추관에 속하여 사료(史料)가 될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정오품·종오품으로 의정부·육조·홍문관 따위에서 같은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가 겸직하였다.

기찰[譏察] : 1.행동 따위를 넌지시 살핌. 2.예전에,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인을 검문하던 일.

기축[己丑]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여섯째.

기치[旗幟] : 군중(軍中)에서 쓰는 온갖 기(旗).

기해[己亥] : 〈민속〉육십갑자의 서른여섯째.

긴절[緊切] : 썩 필요(必要)하고 실지에 꼭 맞음

김문정공[金文正公] : 김인후(金麟厚).

김한로[金漢老, 1367~?] :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의 장인. 태종과는 문과에 함께 급제한 동방으로 조선 개국 뒤 태종의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세자궁에 여자를 출입시키고, 보관하던 사초를 불태우는 등의 인로 자손들의 벼슬길도 막히게 하였다.

김홍집[金弘集] : 〈인명〉조선후기의 정치가(1842~1896). 초명은 굉집(宏集). 지는 경능(敬能). 호는 도원(道園)·이정학재(以政學齋). 임오군란 뒤에 한국 전권 부관(全權副官)으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홍범 조〉를 발표하였으며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과격한 개혁과 아관 파천으로 친러파 내각에 밀려나게 되었고 광화문에서 폭도들에게 피살되었다. 저서에 《이정학재일록(以政學齋日錄)》이 있다. 늑김굉집.

ㅇ

나장[羅將] : 조선시대 병조에 속한 하급직원. 나졸(羅卒)이라고도 하며, 칠반천인(七般賤人)의 하나이다. 의금부 ·병조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사헌부 ·사간원 ·평시서(平市署) ·전옥서(典獄署) 등에 배속되어, 고급관원의 시종과 죄인을 문초할 때 매질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난언죄[亂言罪] : 정사(政事)와 관련된 것을 꺼리지 않고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을 다스리는 형벌. ≪경국대전≫에는 난언한 자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조사케 하고 장(杖) 1백대, 유(流) 3천리의 형에 처하며, 만약 임금에게 저촉되고 실지로 해로운 말을 할 경우에는 참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였음.

남별궁[南別宮] : 〈역사〉조선시대에, 지금의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 호텔 자리에 두었던 별궁. 선조 때 의안군(義安君) 성(城)의 신궁으로서 1593년에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주둔한 이래로 중국 사신의 여사(旅舍)로 썼다.

남우[濫竽]: 재주가 없으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우([濫竽]: 생황)를 좋아하여 반드시 3백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우를 불게 하니 남곽 처사(南郭處士)라는 이가 자기도 같이 불기를 청하자 이를 허락하여 함께 두었는데, 선왕이 죽은 후 아들 민왕이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남곽 처사가 도망하였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남전[南殿] : 남별전(南別殿). 영희전(永禧殿)의 옛 이름. 조선 시대 세조(世祖)의 영정과 인조(仁祖)의 생부 원종(元宗)의 영정을 봉안하던 건물로, 숙종 때 태조의 영정을 봉안하고 영희전이라 고쳤음. [유사어]: 남전(南殿).

낭관[郎官] :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5~6품관인 정랑(正郎)·좌랑(佐郎)의 통칭. 정랑은 정5품, 좌랑은 정6품관으로 6조의 중견관리였다. 특히 이조와 병조의 낭관은 전랑(銓郎)이라 하고, 관리의 전형(銓衡) 때 피천자(被薦者)의 명단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으로 천망(薦望)명단에 기록하지 않는 권한도 있어, 문 ·무관의 인사권이 좌우되기도 하였다

낭청[郎廳] : 조선시대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오군영 등에 두었던 실무관직.

낮참 : 1.낮에 일을 하다가 잠시 먹는 간단한 음식. 2.일을 하다가 점심 전후에 쉬는 동안.

내관[內官] : 백제 때 궁중에서 쓰는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맡은 관청.

내부[內府] : ①고려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이나 물품을 맡아보던 관청을 말함. ②조선시대 영흥부(永興府)의 동반 토관(土官)의 한 관아. 부중(府中)의 일을 총괄하였음. 태종(太宗) 7년(1407)에 도부사(都府司)라 하였음. ③내시부(內侍府)의 약칭.

내사[內司] : 내수사(內需司). [유사어]: 본궁(本宮). 조선시대의 관청. 궁중에서 쓰는 미포(米布)와 잡물(雜物)·노비(奴婢)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음.

내수사[內需司] : 〈역사〉조선시대에, 왕실 재정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궁중에서 쓰는 쌀, 베, 잡물(雜物), 노비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는데, 세조 12년(1466)에 내수소의 격(格)을 올려 이 이름으로 하였다. 늑내사(內司).

내양[內洋] : 사방이 육지에 에워싸이어서 해협(海峽)을 통해서만 대양(大洋)과 통하는 바다, 또는 둘 이상의 해협에 의하여 공해(公海)로부터 막혀 있는 바다. [유사어]: 내해(內海). [반의어]: 외양(外洋). 외해(外海).

노농[老農] : 1.농사를 짓는 늙은 사람. 2.농사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 늑농로.

노도[怒濤] :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 : 〈책명〉《단종실록》의 처음 이름. 조선 세조 3년(1457)에 단종이 노산군으로 격하됨에 따라 실록에 붙여진 명칭으로 숙종 30년(1704)에 《단종실록》으로 바뀌었다.

노성[老成] : '노성하다'의 어근. 노성[老成] :①숙성하여 의젓함 ②많은 경력(經歷)을 쌓아서 세상일(世上-)에 노련(老鍊)하고 익숙함 ③(급이나 기에 따 위가)착실하고 세련(洗練)됨

노자[奴子] : 노복(奴僕). 사내 종. 노자(奴子).

노적[露積] : 농가의 마당이나 넓은 터에 곡식단이나 미곡을 담은 가마 등을 쌓아 두는 것. [유사어]: 낟가리. 노적가리. 야적(野積).

노제[老除] : 나이가 많은 군인을 역(役)에서 면제시킴.

녹[祿] : 〈역사〉=녹봉[祿俸] 조선시대에 현물로 지급한 관료의 보수를 말한다. 조선시대 관리에 대한 보수는 토지로 지급한 과전(科田)과 현물로 지급한 녹봉(祿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녹비[鹿皮] : 사슴의 가죽.

녹사[錄事] : 신라 때 왕실의 사원을 관리한 관청에 속한 벼슬. 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영묘사성전(靈廟寺成典) 등에 속한 4등관으로서, 청위(靑位)를 경덕왕 때 잠시 고친 이름이다. 위계(位階)는 나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 있다.

녹용[錄用] : 1.=채용(採用). 2.=채용.

녹피[鹿皮] : '녹비'의 원말. 사슴의 가죽

농사[農舍] : 〈역사〉=농장(農莊).

농우[農牛] : 농사용으로 부리는 소.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동력의 구실을 하였음.

누거만[累巨萬] : 여러 거만이라는 뜻으로, 썩 많은 액수를 나타내는 말

누주[樓柱] : 누각의 기둥감으로 쓰는 굵고 긴 통나무.

능관[陵官] : 〈역사〉능을 지키는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던 말. 능령(陵令), 별검

(別檢),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따위이다

능명[陵名] : 능의 명칭

능소[陵所] : 능(陵)이 있는 곳.

능지문[陵誌文] : 왕이나 왕비의 생몰일과 행적 등을 적은 글

능창대군[綾昌大君] : 〈인명〉조선 인조의 아우(?~1615). 이름은 전(佺). 광해군에게 시기를 받아 오다가, 1615년 신경희(申景禧)의 추대로 왕이 되고자 한다는 혐의로 사형당하였다. 인조 10년(1632) 대군(大君)으로 추봉(追封)되었다.

능행[陵幸] : 임금이 능에 거둥함.

ㄷ

다담[茶啖] : ①원래 불가(佛家)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어놓는 다과(茶菓)를 가리키는 말. 고려시대는 숭불 사상(崇佛思想)이 천저하여 다담상(茶啖床)에 육류 대신 차와 병과류(餠菓類)가 주로 올랐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차를 마시는 풍습이 쇠퇴하고 술을 위주로 하는 교자상(交子床)차림으로 바뀌게 됨. 지방 관아에서 관찰사 등 사신(使臣)을 대접하기 위하여 차려 내는 교자상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상차림이라는 의미에서 다담상이라 함. ②일본식 돗자리.

단[端] : 시작이라는 의미

단[單] : 오직, 다만, 단지의 뜻. 수와 관련(關聯)되는 어떤 명사(名詞) 앞에 쓰일

단문[短文] : 글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함. 짧은 글

단부[單付] :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단거(單擧).

단서[端緖] : 1.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의 첫 부분. 늑서단(緖端). 2.어떤 일의 시초. 늑서단.

단약[單弱] : 외롭고 약함

달효[達孝] : ①한결같고 변(變)함없는 효도(孝道) ②만인이 효행(孝行)이라고 인정(認定)할 만한 효도(孝道)

담복[淡服] : 색이 옅은 의복으로, 상 중에 있는 사람이 입는 상복임.

당[唐] : 〈역사〉618년에 중국의 이연(李淵)이 수나라 공제(恭帝)의 선양(禪讓)을 받아 세운 통일 왕조. 도읍은 장안(長安)이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나, 안사(安史)의 난 이후 쇠퇴하여 907년에 주전충(朱全忠)에게 망하였다.

당류[黨類] : 같은 무리나 편에 드는 사람들.

당번선군[當番船軍] : 번(番)을 당하여 입역(立役)하는 선군(船軍).

당부[當否] : 1.옳고 그름. 또는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 ≒당부당. 2.적당함과 부적당함.

당상[堂上] : 〈역사〉조선시대에 둔, 정삼품 상(上)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 종친은 명선대부, 의빈(儀賓)은 봉순대부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당상관(堂上官).

당상관[堂上官] : 조선시대 관리들의 품계 가운데 정1품부터 정3품까지를 가리키는 말. 동반(東班) 의 정3품 이상과 서반(西班)의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당상관이라 불렀다.

당해[當該] : 이름씨[名詞] 앞에 붙어 그 사물에 관련됨을 표하는 말. 【용례】→삼한(三限).

당화[唐貨] : 중국의 물건. 조선시대 중국의 물자는 중국과의 사행(使行) 왕래 때에 이루어졌는데 세폐(歲幣)·예물 등의 국가 공식 예물을 운송·관리하는 업무 외에 사신들과 그 수행원, 그리고 역관(譯官)들은 소량의 사물(私物)을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를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음. [유사어]: 당물(唐物).

대가[大駕] : 1.〈역사〉=어가(御駕). 2.[북한어] '임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가[代加] : 조선시대 정3품 이상의 현직 문무(文武) 관리에게 품계(品階)가 더해질 경우, 이를 해당 관리의 친족이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는 제도. 대가제는 세종(世宗) 31년(1449)에 세자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여 백관들에게 산계(散階) 1자급(資級)을 더하였을 때 당상관(堂上官)들을 대신하여 그 친족에게 산계를 주었던 것에서 시작되어 세조(世祖)·성종(成宗) 때에 이르러 제도화되었음

대간[臺諫] : 〈역사〉조선시대에, 대관과 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대성(臺省)·제대(諸臺).

대경[大驚] : 크게 놀람.

대계[臺啓] : 조선시대 대간이 논하여 아뢰는 일. 특히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유죄임을 밝히려고 임금에게 올리는 계사(啓辭). 사헌부(司憲府)·사간

원(司諫院)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계본(啓本)·계목(啓目). 대관(臺官)은 국정의 모든 면에 대해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이 대계였음. 대계는 주로 정책의 비판과 관리들의 탄핵에 이용되었으며, 죄의 유무(有無) 판결과 경중(輕重) 판정이 부당할 경우, 반대 의견을 계속 고수하였음. 따라서 그 권위와 영향력이 커서 언론 활동의 주요한 수단이었고, 대계를 통한 논의는 대론(臺論)이라 하여 존중되었음.

대고[大故] : ①임금의 죽음. 부모의 상사(喪事). ②큰 사고. ③아주 못된 짓. 대악(大惡). 악역(惡逆).

대내[大內] : 임금을 비롯하여 왕비, 왕대비들이 거처하는 곳을 두루 이르는 말. 임금이 거처하는 곳은 대전(大殿), 왕비가 거처하는 곳은 중전(中殿)이라 하고, 대비가 거처하는 곳은 대비전(大妃殿)이라 하는데, 대내는 이들을 모두 일컫는 말임.

대동미[大同米] : 〈역사〉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대명관[大明串] : 지금의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를 말한다.

대명률[大明律] : 〈책명〉중국 명나라 때의 형법전(刑法典). 당나라의 법률을 참고하여 편찬했으며, 명례율·이율·호율·예율·병률·형률·공률의 7편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의 《경국대전》 및 《경제육전》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0권. ≒명률(明律).

대미[大米] : '쌀'로 순화.

대배[大拜] : 〈역사〉의정(議政) 벼슬을 받음.

대벽 : 오형(五刑)의 하나. 곧 사형(死刑)을 말함.

대비[大妃] : 〈역사〉선왕(先王)의 후비(后妃). ≒상왕비.

대사간[大司諫] : 〈역사〉조선시대에 둔, 사간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으로, 임금에게 정사의 잘못을 간(諫)하는 일을 맡았다.

대사성[大司成] : 〈역사〉고려·조선시대에 둔, 성균관의 으뜸 벼슬. 정삼품의 벼슬이다. ≒반장(泮長)·사유장.

대사헌[大司憲] : 〈역사〉1.고려시대에 둔, 사헌부의 으뜸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3년(1311)에 품계를 정이품에서 정삼품으로 낮추었다. 2.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대헌(大憲)·도헌(都憲).

대상재[大祥齋] : 상기(喪期)가 25개월째 되는 대상(大祥) 때에 행하는 재계, 또는 상기의 3주기(周忌) 때에 행하는 재계.

대신[大臣] : 1.군주 국가에서 '장관(長官)'을 이르는 말. ≒대관. 2.〈역사〉의정(議政)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정승. 3.〈역사〉조선 고종 31년(1894) 이후에 둔 내각 각부의 으뜸 벼슬. ≒대관(大官)·아형(阿衡).

대신[臺臣] : 사헌부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의 벼슬아치.

대여[大璽] : 상여(喪輿).

대역[大役] : 중대(重大)한 임무(任務)·큰 책임(責任)이 있는 일. 대임(大任). 나라의 큰 역사(役事)

대연[大椽] : 추녀의 일종

대오[隊伍] : 편성된 대열. ≒대(隊).

대원군[大院君] : 조선시대에 임금이 후사(後嗣) 없이 죽어 종친(宗親)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그 임금의 친아버지에게 봉하던 작위(爵位). 대원군은 선조(宣祖) 아버지인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 인조(仁祖) 아버지인 정원 대원군(定遠大院君), 철종(哲宗) 아버지인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 고종(高宗)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 등 4인이 있었음. 이 가운데 흥선 대원군만 생전에 대원군으로 봉해지고 나머지 3인은 죽은 뒤에 추존되었음.

대전[大典] : 1.나라의 큰 의식(儀式). 2.중대한 법전(法典).

대정[大正] : 〈역사〉 '다이쇼'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다이쇼 [Taish [大正] 일본 다이쇼 천황의 연호(年號)(1912~1926).

대제학[大提學] : 〈역사〉1.고려 시대에, 보문각·우문관·진현관에 둔 정이품 또는 종이품 벼슬. 2.조선시대에 둔, 홍문관과 예문관의 으뜸 벼슬. 정이품으로, 태종 1년(1401)에 대학사를 고친 것이다. ≒문형(文衡).

대죄[待罪] :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 ≒대벌(待罰).

대진[大陣] : 많은 군사로 이루어진 진영.

대찰[代察] : 남을 대신하여 직무를 맡아봄.

대청[大廳] : 〈건설〉한옥에서, 몸채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당(堂)·대청마루·청(廳).

대축[大祝] : 제사 때에 축문을 읽는 사람.

대통[大統] : 임금의 계통.

대통력[大統曆] : 〈역사〉중국 명나라의 누각박사 원통(元統)이 만든 역법. 홍무 17년(1384)을 역원(曆元)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받아들여 효종 때까지 사용하였다.

대한[大韓] : 대한(大韓) 제국(帝國),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호군[大護軍] : 〈역사〉1.고려시대에 둔, 종삼품의 무관 벼슬. 공민왕 때 대장군을 고친 것이다. 2.조선시대에, 오위(五衛)에 속한 종삼품의 무관 벼슬.

덕진진[德津鎭] : 조선시대에 강화해협을 지키던 요새. 소재지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시대 조선시대, 지정 사적 제226호/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덕진진에 포함되어 있는 포대. 강화 12진보(鎭堡)의 하나이며, 덕진진은 덕포진과 더불어 해협의 관문을 지키는 강화도 제1의 포대였다. 덕진진은 본디 수영(水營)에 속하여 첨사(僉使)를 두고 있었는데, 1666년(현종 7년)에 강화유수 서필원(徐必遠)이 임금에게 청하여 첨사를 경기 김포시 덕포로 옮기고 이곳에 별장을 두었다. 1677(숙종 3년)에는 유수 허질(許秩)이 임금에게 청하여 만호(萬戶)로 승격시켰다. 1874년(고종 11년)에 축조한 남장 포대는 15문의 포대가 남아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양헌수(梁憲洙)의 부대가 밤의 어둠을 타서 이 진을 거쳐 삼랑성(三郎城:일명 정족산성, 鼎足山城)으로 들어가 프랑스군을 격파하였고, 1871년 신미양요 때는 J.로저스 중장이 이끄는 미국 극동함대와 이곳에서 치열한 포격전을 벌었다. 그러나 초지진(草芝鎭)에 상륙한 미국해병대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때 성첩(城堞)과 문루(門樓)가 모두 파괴되고, 문루터만 남게 되었다. 1976년에 문루를 다시 세우고 돈대(墩臺)를 보수하였으며 남장 포대도 개축하였다.

덕포진[德浦鎭] : 강화의 초지진(草芝鎭)·덕진진(德津鎭)과 더불어 강화해협을 통하여 수도 서울로 진입하려는 외세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선시대의 군영.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사적 제292호. 서해로부터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진입되는 인후인 손돌항에 천험의 요새를 이용한 군사의 요충지로 창설시기는 임진왜란의 쓰라린 체험을 겪은 조선왕조의 선조조로 추정된다. 1981년 9월 25일 사적 제292호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大串

面) 신안리(新雁里)에 소재하며, 지정면적은 4만 8794㎡이다. 설치된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666년(현종 7) 이미 강화에 예속된 진이었다. 1679년(숙종 5) 강화의 광성(廣城) ·덕진(德津) ·용두(龍頭)의 여러 돈대(墩臺)와 함께 이곳에도 돈대가 축성되었으며, 1866년(고종 3) 9월 병인양요(丙寅洋擾) 때는 프랑스 함대와, 1871년 4월 신미양요(辛未洋擾) 때는 미국함대와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던 곳이다. 1980년 포대 ·돈대 및 파수청(把守廳) 터의 발굴조사에서 1874년에 만든 포와 포탄, 조선시대의 화폐인 상평통보 및 주춧돌과 화덕 등이 출토되었다. 파수청은 유구(遺構)로 보아 포대와 돈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포를 쏘는 불씨를 보관하던 장소인 등시에 포병을 지휘하던 장대(將臺)로 추정된다.

덕흥군[德興君] : 고려 제26대 충선왕(忠宣王)의 셋째 아들.

도[徒] : 오형(五刑 : 笞. 杖. 徒. 流. 死)의 하나로 1~3년간 노역(勞役)을 부과하는 형벌

도감[都監] : 〈역사〉1.고려 · 조선시대에, 나라의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던 관아. 2.=훈련도감.

도관찰사[都觀察使] : 벼슬이름. ①고려시대 지방 장관이었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의 준말. ②고려 후기 한 도를 맡아 그 지방 관리의 인사 · 사법권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지방 장관. 관찰사의 품계가 2품 이상이면 도관찰사, 3품 이하면 관찰사라 불렀음. ③조선 초기 각 도의 장관. 고려의 제도를 따라 태조 3년(1394) 대간의 천거를 받은 자를 임명하여 각 도에 보냄.

도국[圖局] : 임금의 능묘(陵墓)나 태실(胎室)의 경역(境域)을 말함.

도만호[都萬戶] : 고려 후기 ·조선 전기의 관직. 충렬왕 때 설치되어 경찰업무를 관장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장관으로, 상만호(上萬戶) ·만호 ·부만호 ·진무(鎭撫) ·천호(千戶) 등의 관원을 통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해상방어를 맡은 관직으로 충청좌도도만호, 충청우도도만호, 경상도 염포(鹽浦)도만호, 경상도 가배량(加背梁)도만호, 전라좌도도만호, 전라우도도만호 등 6명이 있었다.

도목[都目] : 〈역사〉1.=도목정사. 2.국가 차원에서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을 적어 놓은 조목.

도배[島配] : 〈역사〉섬으로 귀양을 보내던 일. 늑도류(島流)·배도(配島).

도백[道伯] : 고려 및 조선시대에 도 道 에 배치되었던 지방장관을 말한다 고려 초기에는 중앙 정부의 재상들이 지방장관을 겸임하였었다 도백 道伯 · 감사 監司 등으로도 불렸던 관찰사는 행정권은 물론 사법권·경찰권·징세권까지 행사하였다

도사[都事] : ①고려시대 상서성(尙書省) 또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한 분장(分掌)인 경력사(經歷司)의 5품 또는 6품 벼슬을 말함. ②조선 시대에 주로 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아보는 종5품의 벼슬. 중앙의 경우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의금부(義禁府)·개성부(開城府)·충익부(忠翊府)·중추부(中樞府)·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등에 딸렸으며, 각 도 감영(監營)의 경우에는 감사 다음가는 벼슬로 지금의 부지사(副知事)와 같으며 지방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봄.

도승지[都承旨] : 고려와 조선에서 왕명의 출납 등을 맡은 관직. 고려 시대에는 왕명의 출납(出納), 숙위(宿衛), 군기(軍機)에 관계되는 일을 맡았으나, 조선 건국 이후 임무가 왕명의 출납 만으로 한정되었음. 승정원(承政院)의 우두머리로 정3품 벼슬이었음. [참고어]: 광정원(光政院). 도령(都令). 밀직사(密直司). 승지(承旨). 지신사(知申事).

도시[都試] : 〈역사〉조선시대에, 무사를 선발하던 시험. 태조 4년(1395)부터 무재(武才) 발굴과 무예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였는데, 중앙에서는 훈련도감의 당상관과 의정부의 제조도총부가 시험관이 되어 1년에 한 번 실시하였고, 지방은 공동으로 관찰사와 병마절도사 등이 1년에 두 번 실시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도신[道臣] : '관찰사(觀察使)'의 딴이름(異稱)

도인[都人] : 도회지에 사는 사람. 늑도인사.

도절제사[都節制使] : 〈역사〉1.고려시대에, 외방에 둔 군직. 공양왕 원년(1389)에 도순문사를 고친 것이다. 2.조선 전기에, 의흥친군위에 속한 군직.

도직[稻稷] : 벼와 기장

도첩[度牒] : 정부에서 준 승려 증명서.

도청[都廳] : 조선 시대 실록청(實錄廳)의 한 부서.

도체찰사[都體察使] : 조선시대에 의정(議政)이 맡은 전시(戰時)의 최고 군직(軍職). 국가비상시 왕명에 따라 1개 도(道) 또는 몇 개 도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였다.

도총제사[都總制使] : 고려 말의 최고 군사지휘관. 삼군도총제사라고도 함. 공양왕 3년(1341) 전국의 군사권을 장악하는 군 통수기관으로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를 설치하고 그 지휘관으로 도총제사를 두었음. 인원은 1명이며, 시중(侍中) 이상의 관원이 임명됨. 이성계(李成桂)가 첫 도총제사로 임명되었음. 조선 건국 후 삼군도총제부가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바뀌면서 폐지되고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使)가 두어졌음. [참고어]: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

도태[淘汰] : 물에 일고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①여럿 가운데 쓸데없거나 적당(適當)하지 않은 것이 줄어 없어지거나 줄어서 없어지게 함 ② 물에 넣고 일어서 쓸데없는 것을 가려서 버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 관련항목-도병마사. 고려 후기 국가의 최고 정무기관. 고려 전기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후신으로 일명 도당(都堂)이라고도 한다.

도형[圖形] : 1.그림의 모양이나 형태. 2.〈수학〉점, 선, 면, 체 또는 그것들의 집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각형, 원, 구 따위를 이른다.

도회[都會] : 각 도마다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곳.

독진[獨鎭] : 〈역사〉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독립하여 있던 진영(鎭營).

돈대[墩臺] : "돈대"는 주변보다 높고 평평한 곳을 뜻하는 말로, "돈"이라고도 한다. 돈(墩)과 대(臺)는 같은 뜻이고, "돈대" 라고하는 대신에 "돈" 이라고도 함.

동모[同謀] : 어떤 일을 함께 꾀함.

동병[動兵] : 군사를 일으킴.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속한 정3품 관직.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조선 태종(太宗:재위 1400~1418) 때 다시 독립 관서로 설치하고 동부대언(同副代言) 등의 관직을 새로 두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승정원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편하면서 동부승지는 우부승선(右副承宣)으로 이름을 고쳤다.

동성[童城] : 지금의 김포시 하성면 지역을 말한다.

동성현[童城縣] : (지금의 김포시 하성면 지역을 말한다) 본래 고구려의 동자홀현(童子忽縣)이 【일명 당산현(幢山縣)이라고도 하고 구사파의(仇斯波

衣)라고도 함.]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장제군(長堤郡)의 영현(領縣)로 삼았고 고려에서도 그대로 소속시켰다가 공양왕(恭讓王) 3년에 통진 감무(通津監務)를 두어 현(縣)을 이에 소속시켰다. 〈고려사 지리지(地理志)〉

동작[東作] : 봄철 농사.

동재[東齋] :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의 명륜당(明倫堂) 앞의 동쪽에 있는 집. 유생(儒生)들이 거처(居處)하여 글을 읽었음

동지[同知] : 〈역사〉=동지중추부사.

동지관사[同知館事] :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의 약칭

동지사[同知事] : 〈역사〉조선시대에 둔 종이품 벼슬. 돈령부 · 의금부 · 경연청 · 성균관 · 춘추관 · 삼군부 따위에 약간 명씩 두었는데, 소속 관아명 앞에 동지(同知)를, 뒤에 사(事)를 붙여 불렀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 =동지관사[同知館事]. ①고려시대 춘추관의 관직으로 충숙왕 12년(1325)에 처음 설치하였는데, 2품 이상의 타관(他官)이 겸임하였음. ②조선 시대 춘추관의 종2품 벼슬. 정원은 2인이었음.

동치[同治] : 〈역사〉중국 청나라 목종 때의 연호(1862~1874).

동평관[東平館] : 조선 전기에 일본 사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한 관사로 왜관(倭館)이라고도 함. 동평관은 일본과의 외교와 무역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지금 서울의 예관동(藝館洞)에 있었음. 태종 7년(1407)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세종 2년(1420)에는 감호관(監護官)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음.

두[斗] : ①(말로)곡식(穀食)이나 액체(液體)를 되는 분량(分量)의 단위(單位). 말 ②두성(斗星)

두목[頭目] : ①집단이나 조직의 우두머리. 예컨대 군(軍) 조직 중 대소 두목(大小頭目)이나, 선군(船軍) 조직의 영선두목(領船頭目) 또는 관노비 10구(口)마다 두는 두목노비(頭目奴婢) 등의 경우. ②조선 초기 함길도에 시행하던 인보법(隣保法)에서 50호를 거느리던 자. 10호 단위의 통(統)을 5개 거느렸으며 주로 향촌 치안 또는 제반 역의 부과 단위를 맡음.

두서[頭緒] : 일의 차례나 갈피.

둔장[屯長] : 한 둔(屯)의 우두머리. 연해지(沿海地)나 변경(邊境) 지역에서 왜구 및 야인(野人)의 습격에 대비해 둔성(屯城)을 쌓고 그 수비를 위해 대개 지모(智謀)와 용력(勇力)이 있어 변란에 대처할 수 있는 자를 뽑아 둔장(屯長)으로 정하였음.

둔전[屯田] : 둔전은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하여 군량에 충당한 토지로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기도 하였음. 전자는 국둔전(國屯田), 후자는 관둔전(官屯田)으로 구분하기도 함. 국둔전은 삼국통일기에 처음 등장하였으나 기록은 고려 시대에 와서 나타났음. 관둔전은 고려 숙종 4년(1099)에 처음 설치되었음. [유사어]: 관둔전(官屯田). 군둔전(軍屯田). 영문둔전(營門屯田). 아문둔전(衙門屯田).

득중정[得中亭] : 득중정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로 편액을 정조가 직접 써서 걸었고, 상량문은 홍양호가 짓고 썼다. 정조는 행차시에 매번 활쏘기를 하였는데, 1790년(정조 14)에 새로 만들어진 이 정자에서 활을 4발 쏘아 4발 모두 맞히고는 이를 기념하여 '득중정'이라고 한 것이다. 득중정은 "활을 쏘아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射中 則得爲諸侯 射不中 則不得爲諸侯)" 라고 한 구절에서 '득'자와 '중'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원래는 낙남헌 자리에 있었지만 1794년 (정조 18)에 이곳으로 옮겨 짓고 정조가 쓴 편액도 옮겨 달았다. 북쪽으로는 노래당이 이어져 있으며, 계단 앞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아 어사대를 두었다. 1795년(정조 19) 을묘원행 때에는 이 곳에서 주간과 야간에 활쏘기를 하였으며, 활쏘기가 끝난 후에는 '내화시방(불꽃놀이)' 행사가 벌어졌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12월에 복원된 것이다.

등대[登對] : 어전(御前)에 나아가 임금을 직접 대함.

등보[謄報] : 원본을 베껴서 보고함.

등제[等第] : 〈역사〉조선시대에, 벼슬아치들의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던 일. 해마다 두 차례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승진이나 유임, 좌천, 파직 따위를 결정하였다.

ㅁ

마니산[摩尼山] : 〈지명〉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에 있는 산. 해마다 전국 체육 대회의 성화를 점화하는 곳이다. 높이는 468미터.

마전[磨箭] : 〈역사〉사냥이나 강무(講武) 때 쓰던 화살. 길이는 4자 또는 3자 8치로, 깃은 좁고 촉은 매우 작은 쇠로 만들었다. 막차[幕次] : 막(幕)을 쳐서 임시로 만들어 주련(駐輦)하던 곳.

막하[幕下] : 1.지휘관이나 책임자가 거느리는 사람. 또는 그런 지위. 2.〈역사〉주장(主將)이 거느리던 장교와 종사관. 늑장하.

만력(萬曆) : 중국(中國) 명(明)나라 신종 때의 연호(年號). 서기(西紀) 1573년부터 1619년까지

만종록[萬鍾祿] : 아주 많은 녹봉(祿俸).

만호(萬戶) : ①씩 많은 집 ②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때 치안(治安)을 맡는 순군만호부를 둔 뒤 공민왕(恭愍王) 때 둔 무관(武官) 벼슬 ③조선(朝鮮) 때 고려(高麗)의 제도(制度)를 받아들여 두었던 종4품(從四品)의 무관(武官) 벼슬. 육군(陸軍)에 딸린 병마만호, 해군(海軍)에 딸린 수군만호가 있었음

만화[萬化] : 천만가지로 한없이 화함

말단[末端] : 맨 끄트머리.

망성[望姓] : 이름 높은 성씨(姓氏).

망원정[望遠亭] : 양화도(楊花渡) 동쪽 언덕에 있던 정자로, 원래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희우정(喜雨亭)이었음. 성종 갑진년(1484)에 월산대군(月山大君)이 고쳐 짓고 망원정이라 함. 희우정이란 세종이 내린 이름임.

면려[勉勵] : ①스스로 애써 노력(勞力)함. 힘써 함 ②(남을)고무(鼓舞)하여 힘쓰게 함

면례[緬禮] : 〈민속〉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냄. 또는 그런 일.

면세[免稅] : 세금을 면제함.

면유[面諭] : 면전에서 말로 잘 타이름.

면포[綿布] : 솜을 자아 만든 실로 짠 베. 무명

멸절[滅絕] : 멸망하여 아주 없어짐. 또는 멸망시켜 아주 없애 버림.

명기[名器] : 어떤 직위와 그에 따르는 수레나 옷이라는 뜻으로, 벼슬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명륜당[明倫堂] : 고려 · 조선시대 성균관과 향교에 설치한 교육장. 중앙에 위치한 주 건물임. 학문의 요체는 오륜을 밝히는데 있다는 유학의 사상에 따라 명륜당이라고 명명했음. 성균관에서는 강의와 시험, 국왕의 강연과 과거, 왕세자 입학 같은 중요한 행사를 이곳에서 행했음. 향교에서는 향음례(鄕飮禮)를 행하기도 함. 조선 시대 성균관에서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남쪽에 문묘 동쪽에 존경각(尊經閣), 북쪽에는 향관청(享官廳)을 두었음. 더 북쪽은 울창한 송림을 조성했음.

명빈[明嬪] : 조선 태종의 후궁(後宮). 김구덕(金九德)의 딸로서 처음에 숙공궁주(淑恭宮主)에 봉해졌다가 태종 11년(1411)에 명빈으로 개봉(改封)됨.

명이가 복중에 듦[明夷人腹] : 간악한 자가 왕의 측근에 달라붙어 있음을 뜻함.

명화적[明火賊] : 조선 철종 · 고종 연간에 지방을 중심으로 횡행한 도둑의 무리. 임진왜란 · 병자호란을 겪은 뒤 국토는 황폐화되고, 민생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정(三政)이 극도로 문란해져 살길이 막히자, 농민들은 자연히 유민(流民) ·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명화적은 횃불을 들고 부호가를 습격하였기 때문에 '화적'이라고도 하였다. 30~40명씩 떼지어 다녔으며 말을 타거나, 포(砲)를 쏘기도 하였다. 명화적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중하여 보통 사형시켰으며 이들을 고발하거나 잡은 사람들에게도 신분에 따라 커다란 상을 내렸음.

모[某] : [Ⅰ][대명사] [주로 성(姓) 뒤에 쓰여] '아무개'의 뜻을 나타내는 말.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쓴다. [Ⅱ][관형사] '아무',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 앞에 쓴다.

모곡[耗穀] : 〈역사〉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모미(耗米).

목책[木柵] : 말뚝을 박아 만든 울타리. 역사적으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만든 성(城)을 가리키기도 한다. 급히 방어시설을 만들거나 임시로 성을 만들 경우, 또한 대량의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방에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단종실록》(4권)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거제도(巨濟島) 등 도서 요충지에 목책을 세워 방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목패[木牌] : 나무로 만든 패문(牌文). 패문은 중앙 관서에서 도(道) 부(府) 이하에 내리는 공문서의 한 명칭.

묘당[廟堂] : 〈역사〉1. '의정부'를 달리 이르던 말. 2.종묘와 명당을 아울러 이르는 말. ≒묘정(廟庭).

묘시[卯時] : 〈민속〉1.십이시의 넷째 시. 오전 다섯 시에서 일곱 시까지이다. ≒묘(卯). 2.이십사시의 일곱째 시. 오전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 반까지이다. ≒묘.

묘원[墓園] : 공원처럼 꾸며 놓은 공동묘지.

묘위[墓位] : 〈역사〉=묘위토[墓位土] 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밭. ≒묘위 · 위토.

묘제[墓祭] : 무덤 앞에서 지내는 제사. ≒묘사(墓祀). 1 =시향(時享). 2 =묘제(墓祭).

묘호[廟號] : 존호/시호/묘호 :조선시대 왕을 부르는 호칭에는 관례를 행하면서 받는 호칭인 자(字), 이름인 휘(諱), 자신이 스스로를 표시하기 위해 붙이거나 스승 또는 친구들이 붙여주는 일종의 별명인 호(號), 왕이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경우, 신료들이 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칭인 존호(尊號),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일생을 평가하고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짓는 호칭인 시호(諡號), 왕의 삼년상이 끝나고 신주가 종묘에 들어가면 종묘에서 그 신주를 부르는 호칭인 묘호(廟號) 등이 있다.

무변[武弁] : 〈역사〉1.=무관(武官). 2.중국 주나라 때, 무관들이 쓰던 관(冠)의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에 순(錞), 독(纛) 따위를 연주하는 악공이 썼다.

무부[武夫] : ①용맹(勇猛)스러운 사내 ②무예(武藝)를 익히고 무도를 닦아서 전쟁(戰爭)에 종사(從事)하는 사람

무상[無狀] : 1.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여 버릇이 없다. ≒무상하다(亡狀-). 2. 일정하게 정해진 모양이 없다. 3.내세울 만한 선행이나 공적이 없다. [북한어]사리에 밝지 못하다.

무소[誣訴] : 없는 일을 꾸며서 관청에 고소함.

무술[戊戌] : 육십갑자의 서른다섯째.

무술년[戊戌年] : 1778 정조 2년.

무신[戊申]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다섯째.

무오[戊午] : 〈민속〉육십(六十) 갑자(甲子)의 쉰 다섯째

무오사화[戊午士禍/戊午史禍] : 〈역사〉조선 연산군 4년(1498)에 유자광 중심의 훈구파가 김종직 중심의 사림파에 대해서 일으킨 사

화.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로, 〈성종실록〉에 실린 사초 〈조의제문〉을 트집 잡아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목을 베고,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을 죽이고 귀양 보냈다.

무옥[誣獄] :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듯이 꾸며 내어 그 죄를 다스림. 또는 그 옥사.

무인[戊寅] : 〈민속〉육십갑자의 열다섯째.

무자[戊子]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다섯째.

무진[戊辰] : 〈민속〉육십갑자의 다섯째.

문객[門客] : 권세 있는 대가(大家)의 식객(食客).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는 사병이 정권에 주요한 무력기반이 되었는데, 이들을 이르는 말로도 쓰임.

문관[文官] : 1.〈법률〉군인의 위계(位階)나 군적(軍籍)을 가지지 않은 관리. 2.〈역사〉문과(文科) 출신의 벼슬아치. 늑문리(文吏).

문달[聞達] : 이름이 세상(世上)에 드러남

문묘[文廟] : 〈고적〉공자를 모신 사당. 원래 선사묘(先師廟)라고 하였다가 중국 명나라 성조 때 문묘(文廟) 또는 성묘(聖廟)라고 하였으며, 청나라 이후 공자묘(孔子廟)라 하였다. 중국 산둥 성(山東省) 취푸(曲阜)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성균관과 향교에 있는데 곳에 따라 사성(四聖), 공자의 제자, 역대의 거유(巨儒) 및 신라 이후의 우리나라의 큰선비들을 함께 모신 곳도 있다. 늑근궁 · 성당(聖堂) · 성묘(聖廟).

문벌[門閥] : 대대(代代)로 이어 내려오는 집안의 사회적(社會的) 신분(身分)이나 지위(地位). 가문(家門). 문지(門地). 문호(門戶). 지체. 집안

문비[問備] : 관원에게 비위(非違)의 혐의가 있을 때 사헌부에서 글로 묻고, 힐문받은 자가 승복하거나 변명하는 사연을 갖추어 답하는 것. 사헌부에서 힐문하고 피의자가 답하는 글은 함서(緘書)로 왕래하므로, 함문 · 합답이라 함.

문적[文蹟] : 나중에 상고(詳考)할 문서(文書)와 장부(帳簿)

문정[問情] : 1.사정을 물음. 2.〈역사〉조선 말기에, 외국의 배가 처음으로 항구에 들어왔을 때나 외국인이 표류하여 왔을 때 관리를 보내어 그 사정을 알아보던 일.

문제[文帝, 407~453] : 남조시대 송나라의 제3대 황제(재위 424~453). 무제의 셋째 아들. 왕홍 · 왕답수 등 귀족을 중용하여 문치를 주로 한 화려한

'원가의 치(治)'를 열었다. 안정기였으나, 서민층이 대두하였고, 대외정책에 실패가 많았다.

문채[文采] : 문채(文彩). ①아름다운 광채(光彩) ②문의

물력[物力] : 물자(物資)와 노력(勞力). 집 짓는 데 쓰는 돌, 기와, 흙 따위를 통틀어 일컬음

물선[物膳] : ①음식을 만드는 재료. ②임금과 왕족의 생인에 선물로 바치는 물건.

물의[物議] : (대개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 ≒물론(物論).

물정[物情] : 주로 '알다', '모르다'와 함께 쓰여) 세상의 이러저러한 실정이나 형편. ≒풍정(風情).

미시[未時] : 1.십이시(十二時)의 여덟째 시. 오후 한 시부터 세 시까지이다. ≒미(未). 2.이십사시(二十四時)의 열다섯째 시. 오후 한 시 반부터 두 시 반까지이다. ≒미

미편[未便] : 편안(便安)하지 아니함

민병[民兵] : 〈군사〉=민군(民軍).

민영달[閔泳達, 1859~?] : 한말의 문신. 갑오개혁 후 김홍집 내각의 내부대신에 기용되었고, 을미사변 후 사직했다. 일본정부가 남작 작위를 수여했으나 거절했다. 민족지 《동아일보》 창간을 위해, 5천 원을 출자하였다. 본관 여흥, 호 우당(藕堂), 본관 여흥. 호 우당(藕堂). 군수 관호(觀鎬)의 아들. 1885년(고종 22)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1892년 경기도관찰사, 형조 ·예조판서, 좌참찬을 지냈다. 갑오개혁 후 김홍집(金弘集) 내각의 내부대신에 기용되었으며,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사직하였다. 국권피탈 뒤 일본정부가 남작(男爵)의 작위를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1921년에 민족지 《동아일보》 창간을 위하여 5천 원을 출자하였다.

민전[民田] : 고려 · 조선 등 중세 시대 조상 대대로 전래하여 오는 인민의 사유지. 민전의 소유자는 대다수가 농민 계층이며 그들은 자기의 소유지인 민전을 경작하여 국가에 일정한 양의 조세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로 생계를 꾸려 나갔음.

민정[民丁] : 부역(賦役) 또는 군역(軍役)에 소집된 남자. 장정(壯丁).

ㅂ

박신[朴信, 1362~1444] :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정몽주의 문인. 조선 개국 후 원종공신에 책록되고 봉상시소경, 대사성에 이르렀다. 태종 때 대사헌, 공조판서, 호조판서, 찬성사 ·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세종 때 선공감 관리의 부정에 관련, 유배되었다.

박자청[朴子靑, 1357~1423] : 조선 전기의 무신. 중랑장, 선공소감, 호익사 대장군 겸 동북면선위사, 공조 · 예조의 전서, 중군총제 겸 선공감사, 공조판서, 참찬, 우군도총제부판사 등을 지냈다.

반궁[泮宮] : 성균관.

반노[叛奴] : 예전에, 상전을 배반한 종을 이르던 말.

반벽[泮壁] : 받은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 보낸다는 뜻.

반정[反正] : ①잘못된 것에서 온바른 것으로 되돌아감. 잘못된 정치 또는 타락한 풍속에서 온바른 정치나 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함. ②폐정(弊政)을 행하는 나쁜 임금을 폐위시키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 잡는 일.

반혼[返魂] :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하고 그 혼을 집안으로 다시 불러들임

방납[防納] : 조선시대에 백성이 바쳐야 할 공물(貢物)을 대신 관가에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이윤을 붙여 받은 일. [참고어]: 대동법(大同法).

방납인[防納人] : 공납자(貢納者)의 공물(貢物)을 대신 관아(官衙)에 바치고 그 댓가를 공납자로부터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폐단이 많아지자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보게 됨. [참고어]: 대동법(大同法). 방납(防納).

방사[放肆] :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구는 것.

방주[房主] : 〈역사〉=방주감찰.

방축[防築] : '방죽'의 원말. [북한어]둑을 쌓아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음.

방친[旁親] : 방계의 친족.

배소[配所] : 죄인을 유배시킬 곳. 또는 유배되어 있는 곳. 유배지(流配地).

배제[陪祭] : 임금이 제사를 지낼 때 대신이 모시고 배례하는 일.

배종[陪從] : 〈역사〉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가는 일. 늑배호(陪扈).

배향[配享] : 공로(功勞)가 있는 신하(臣下)의 위패를 종묘(宗廟)에 모심. 학덕(學德)이 있는 사람의 위패를 문묘(文廟)나 사당, 서원(書院) 등(等)에 모심

백관[百官] : 모든 벼슬아치.

백료[百寮/百僚] : =백관(百官). 모든 벼슬아치. 늑백공(百工) · 백규(百揆) · 백료(百寮) · 백사(百司) · 서관(庶官) · 서규(庶揆) · 제사(諸司) · 천관(千官).

백석산[白石山]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소재.

백행[百行] : 온갖 행실.

번독[煩瀆/煩黷] : 1.너저분하게 많고 더럽다. 2.개운하지 못하고 번거롭다.

번상[番上] : 지방의 군사가 군역(軍役)을 치르기 위해 번(番)의 차례에 따라 서울로 올라오는 것.

범마[犯馬] : 아랫 관원이 윗 관원의 앞을 지나면서 말에 내리지 않는 것.

법사[法司] : 〈역사〉조선시대에, 형조와 한성부를 아울러 이르던 말.

베[布] : 1.삼실, 무명실, 명주실 따위로 짠 피륙. 배를 짜다. 2.=삼베.

벽동[碧潼] : 평안북도(平安北道) 벽동군(碧潼郡)의 북부(北部) 중앙(中央)에 위치(位置)하는 군청(郡廳) 소재지(所在地).

벽송정[碧松亭] : 고령군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정자.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건물의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홑처마집이다.

벽옥[碧玉] : 〈광업〉푸른빛을 띤 옥, 산화철로 된 불순물을 함유한 불투명한 석영. 조직이 치밀하며, 그 안에 섞인 불순물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산화철을 함유한 것은 녹색 또는 붉은색이며, 수산화철을 함유한 것은 누런 녹색이다. 도장 재료나 가락지 같은 장신구를 만드는 데 쓴다.

변진[邊鎭] : 변경을 지키는 군영(軍營).

별궁[別宮] : 왕이나 왕세자의 혼례 때에 비(妃)를 맞아들인 궁전. 조선시대에는 왕이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이나 왕세자(王世子)가 비(妃)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궁전을 말한다. 또 왕의 잠저(潛邸:왕이 즉위하기 전에 산던 집)를 일컫기도 한다.

별단[別單] :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에 덧붙이던 문서(文書)나 인명부(人名簿)

별무사[別武士] : 〈역사〉조선시대에, 훈련도감의 마병(馬兵),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騎士)들 가운데 뽑혀 윗자리의 벼슬을 받던 병졸.

별사파아[別史波兒] : 김포시 월곶면(月串面) 일대에 있던 고구려의 지명. 별사파의(別使波衣) · 모사성(毛史城) · 북사성(北史城) · 평유압(平唯押) · 평회압(平淮押)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 때는 분진(分

津)이라 개칭하고 장제군(長堤郡)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 초기 940년(태조 23) 통진으로 개칭하고 장제군의 속현이 되었다. 현종 때 수주(樹州)에 이속시켰고 공양왕 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시대는 1413년(태종 13)에 통진현(通津縣)이 되어 현감을 두었고, 1694년(숙종 20)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인천부에 속한 통진군이 되었고, 1896년 경기도 관할이 되었으며, 1914년에 김포군에 편입되었다. 고려시대 몽고군이 강화도를 공략하기 위해 주둔하였으며, 고려 말기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조선시대는 군사적으로 서울 외곽을 방어하는 곳이어서 해안지방에 덕포진(德浦鎭)이 있었다. 문수산(文殊山)·동성산(章城山)·수안산(守安山) 등에는 옛 성이 있었다. 수안산과 남산에 봉수가 있었고, 김포의 북성산 봉수를 통하여 서울과 연결되었다.

별시[別試] : 〈역사〉조선시대에, 천간(天干)으로 '병(丙)' 자가 든 해,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보이던 임시 과거 시험.

별업[別業] : 별장.(別莊)

별장[別將] : 〈역사〉1.고려시대에 둔, 낭장(郎將) 다음의 정칠품 무관의 벼슬. 2.조선 전기에, 의흥친군위에 속한 정칠품 벼슬. 3.조선시대에 둔, 용호영의 종이품. 또는 용호영 이외의 각 영의 정삼품 벼슬. 4.조선시대에, 지방의 산성(山城)·나루·포구·보루(堡壘)·소도(小島) 따위의 수비를 맡아보던 종구품 무관의 벼슬. 5.군(別軍)의 장교. 6.조선시대에, 광산이나 둔전(屯田) 따위에 세금 징수를 위하여 파견하던 벼슬아치.

별파진[別破陣] : 〈역사〉1.조선시대에, 군기시에 속한 벼슬. 2.병법(兵法)에서 행하던 군사 대오(隊伍) 편성의 하나. 주로 화기(火器)를 다루며 무관 잡직으로 편성되었다. 늑별파군진.

별패[別牌] : ①조선 초기 임금과 대신들의 행차의 경호 경비를 담당하던 특수 부대 성격을 지닌 군사. ②조선 후기 지방의 일반 백성들로 구성된 예비군 성격의 군사.

별폭[別幅] : 폭을 이루고 있는 물건에 덧댄 다른 쪽지나 조각.

별효사[別驍士] : 〈역사〉조선 정조 17년(1793)에 총융청의 외영(外營)인 남양·파주·장단에 둔, 말을 타는 이백 명의 군사. 늑별효기사.

병부[兵符] : ①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에 표지로 쓰이던 명령서 형식의 부절(符節)로 모양은 동글납작하였음. 한 면(面)에 발병(發兵)이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진호(鎭虎) 등을 기록하여 한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임금의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려 주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하였음. [유사어]: 발병부(發兵符). 호부(虎符). [참고어]: 밀부(密符). ②군대를 다스리는 병법(兵法)이나 그 기략(機略)을 비유함.

병사[兵史] : 〈역사〉고려시대에,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병술[丙戌]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셋째.

병신[丙申] : 〈민속〉육십갑자의 서른셋째.

병오[丙午]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셋째.

병인[丙寅] : 〈민속〉육십갑자의 셋째.

병인년 : 1506 중종 1년.

병자[丙子] : 〈민속〉육십갑자의 열셋째.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병장[病狀] : 〈역사〉병으로 일을 쉰다는 뜻을 적어 윗사람에게 올리던 일. 또는 그런 글.

병조[兵曹] : 〈역사〉1.고려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무선(武選), 군무(軍務), 의위(儀衛)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이전의 군부사를 고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 이름을 고쳤다. 2.조선 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군사와 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기성(騎省)·기조(騎曹)·서전(西銓).

병조판서[兵曹判書] : 〈역사〉조선시대에 둔, 병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으로,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괄하였다. ≒기판(騎判)·본병(本兵).

병진[丙辰] : 〈민속〉육십갑자의 쉰셋째.

병화[病火] : 병으로 생긴 화증(火症).

보도[輔導/補導] :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 감. ≒보익(輔翊)·익찬(翊贊).

보루[堡壘] : 1.〈군사〉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 늑보채 · 영루(營壘). 2.지켜야 할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보인[保人] : 〈역사〉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보임[補任] : 어떤 직(職)에 보충하여 임명함.

보장[保障] :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보첨[補添] : 보충하여 덧붙임.

보토(補土) : 패인 곳에 흙을 보충함.

복계[覆啓] : 어떤 일을 임금에게 거듭 아룀.

복명[復命] :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늑반명(反命) · 보명(報命) · 복신(復申).

복상[卜相] : 〈역사〉새로 정승을 가려 뽑음.

복선[覆船] : ①배가 엎어짐 ②또는 그 배

복어[服御] : 천자(天子)가 쓰는 의복이나 탈것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복주[覆奏] :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여 임금에게 아뢰.

복합[伏閤] : 〈역사〉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조신(朝臣)이나 유생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상소하던 일.

복호[復戶] : 〈역사〉조선시대에, 충신 · 효자 ·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

본관[本官] : 〈역사〉1.고을의 수령을 이르던 말. 늑본수(本@054). 2.감사(監司)나 병사(兵使)가 있는 곳의 목사(牧使), 판관(判官), 부윤(府尹)을 이르던 말. 늑본수. 3.견습, 고원(雇員) 및 촉탁 따위가 아닌 보통의 관직. 4 여러 관직을 겸하는 이의 주된 관직.

본부[本府] : 1.지방관이 자기가 있는 관부(官府)를 스스로 이르던 말. 2.본디 살던 곳. 3 남의 본집을 높여 이르는 말.

봉사손[奉祀孫] : 조상(祖上)의 제사(祭祀)를 맡아 받드는 자손(子孫)

봉식[封植] : 1.영지(領地)를 주고 제후로 봉함. 2.흙을 북돋워 심음.

봉심[奉審] : 〈역사〉임금의 명(命)으로 능이나 묘를 보살피던 일.

봉입[捧入] : 백성의 청원(請願) 서류로서 임금에게 올린 것을 승정원(承政院)에서 접수하거나, 각조(各曹) 각사(各司)에서 수리하여 승정원에 회부(回付)

진달(進達)하여 올리는 것을 말함.

봉작[封爵] : 1 제후(諸侯)로 봉하고 관작(官爵)을 줌. 2 〈역사〉의빈(儀賓), 내명부, 외명부 따위를 봉하던 일

봉족[奉足] : 조선시대 평민의 남자가 부담한 국역(國役).

봉진[奉進] : 받들어 올림

부[負] : 토지 면적과 수확량을 동시에 표시하는 단위. 파(把)·속(束)·부·결(結)로 이루 어진 결부법(結負法) 단위의 하나로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통일신라시대에는 채택되어 대체로 전시과체제가 무너지는 고려 후기 무렵까지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였다. 이후 결부법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면적과 아울러 그 토지에서 내는 수확량, 국가에서 거둠 토지세 액수를 표시하는 단위의 하나로 되었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실시된 뒤부터 그 면적은 각 등급의 토지를 측량하는 자로 사방 10척의 정사각형 면적이 되었다. 1902년(광무 6) 100㎡인 1a를 1부로 정하였다.

부도[不道] : ①도리(道理)에 어긋남 ②도리(道理)가 아님

부렴[賦斂] : 〈역사〉조세 따위를 매겨서 거두던 일.

부령[副令] : ①고려시대 4품의 관직. 고려 시대 전교시(典校寺)·전의시(典儀寺)·종부시(宗簿寺)·사복시(司僕寺)·전객시(典客寺)·내부사(內府司:內府寺)·선공사(繕工司:繕工寺)·사재시(四宰寺)·사수시(司水寺)의 차관(次官)에 해당함. 품계는 정4품에서 종4품이며, 소감(少監)·소경(少卿)·소윤(少尹)을 고려 후기에 부령으로 고쳤음. 또 오부(五部)의 종6품직으로 충렬왕(忠烈王) 13년(1287)에 부사(副使)를 이 이름으로 고쳤음. ②조선 시대에는 종친부(宗親府)의 종3품직. 세종 25년(1443) 12월에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를 정하면서 영(令)을 설치하였음. 그런데 영이 영과 부령(副令)으로 명확히 구분된 것은 세조 3년(1457) 7월이었음. ③조선 시대 승정원(承政院)의 부승지(副承旨)를 달리 지칭한 말. [유사어]: 부승지(副承旨).

부로[父老] : 한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부사[府使] : 〈역사〉1.고려시대에 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으뜸 벼슬. 2.조선 시대에 둔 대도호부사와 도호부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

부사정[副司正] : 〈역사〉조선시대에, 오위에 속한 종칠품 무관 벼슬. 현직에 있지

않은 문관·무관, 그리고 기타 잡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등용하였다.

부사직[副司直] : 〈역사〉조선시대에, 오위에 속한 종오품 무관 벼슬. 현직에 있지 않은 문관·무관, 그리고 기타 잡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등용하였다.

부세[賦稅] : 〈법률〉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양세(量稅).

부수찬[副修撰] : ①조선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에 딸린 벼슬아치의 하나. 세조 2년(1456) 집현전을 혁파하면서 없어짐. ②조선 성종 원년(1470) 예문관(禮文館)에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둔 벼슬아치의 하나로 품계는 종6품이며, 정원은 3인임. ③조선 성종 9년(1478) 예문관을 분리 개편하면서 설치한 홍문관(弘文館)에 딸린 벼슬아치의 하나로 품계는 종6품이며, 정원은 2인.

부원군[府院君] :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 즉 국구(國舅) 또는 정1품 공신(功臣)에게 준 작호(爵號). 받는 사람의 본관(本貫)인 지명(地名)을 앞에 붙였으며, 같은 호칭이 여럿 생길 때에는 연고(緣故) 있는 지명 또는 다른 합자를 넣어 불렀다. 일반적으로 딸이 궁중에 들어와 정실 왕후가 되면, 왕비의 부친은 자동적으로 부원군이 되었다. 초기에는 국구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중기 이후에는 정치에 참여하여 많은 폐단을 낳았다.

부의[賻儀] :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 ≒전의(奠儀)·향전(香奠).

부장[附葬] : =합장(合葬) :여러 사람의 시체를 한 무덤에 묻음. 또는 그런 장사. 흔히 남편과 아내를 한 무덤에 묻는 경우를 이른다. ≒부장(附葬)·부폄·합부·합폄.

부장[部長] : ①고구려 때 지방 행정 구역을 5부(部)로 나누었는데, 그 각 부마다의 우두머리를 뜻함. ②군대 편성 방식의 하나였던 부(部)의 우두머리를 뜻함. 부장(部將). [참고어]: 사상(舍上).

부전지[附箋紙] : 〈법률〉=부전[附箋]. 무슨 서류(書類)나 문건에 간단(簡單)한 의견(意見)을 써서 덧붙이는 쪽지.

부치[府治] :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부(府)의 읍치(邑治). 읍치는 고을의 관아가 설치되어 있는 중심 지역을 말함.

부황[浮黃] :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부황병(浮黃病).

북인[北人] : 〈역사〉조선시대에, 사색당파 가운데 이발(李潑),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당파. 우성전, 유성룡 등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人)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분산[墳山] : 무덤이 있는 산.

분양[汾陽] : 중국(中國) 산서성(山西省) 서부(西部), 분수(汾水) 상류(上流) 서쪽에 있는 도시(都市). 태원시(太原市)의 남서(南西) 약 100㎞ 지점(地點). 소흥주(紹興酒)와 아울러 일컬어지는 분주(汾酒)의 특산지로 유명(有名)함. 인구(人口) 6만 5천

분원 : =분개(憤慨). 몹시 분하게 여김

분재[分災] : 6분에서 9분까지 재상을 입어 감세(減稅)받게 된 재상전(災傷田)을 말함.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수세조(收稅條)에 보면, 반이 넘게 재상(災傷)을 입은 전지(田地)로서 그 재상이 '6분에 이른 것은 6분을 면세하고 4분을 수세(收稅)하되, 9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한다.' 하였음. 조선 숙종 때에 이르러 흉년(凶年)이 들면 각도의 전결 원장(田結元帳)에서 예정된 그 해의 재상전(災傷田)의 결수(結數)를 붙여서, 1결(結)에 대동미(大同米) 1~2두(斗)씩을 감면(減免)해 주던 제도로 변하였음.

분진[分津] : 통일신라 시대의 통진, 즉 월곶지역을 말한다.

불공[不恭] : 겸손하지 않다

불궤[不軌] :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 모반을 꾀함.

불사[佛寺] : 절. 사(寺)·찰(刹)·암(庵). 15세기 문헌에서는 '덜'로 표기하였음.

붕당[朋黨] : 이해(利害) 또는 주의(主義)가 서로 같은 사람끼리 모여 만든 당(黨).

비[妃] : 〈역사〉임금이나 황태자의 아내.

비국[備局] : 조선시대 비변사(備邊司)의 별칭. [참고어]: 비변사(備邊司).

비국당상[備局堂上] : 〈역사〉조선시대에, 비변사의 당상관을 이르던 말. 통정대부 이상의 벼슬아치를 이른다. ≒주당(籌堂).

비궁 (閟宮) : 종묘(宗廟).

비답[批答] : 상소(上疏)에 대(對)하여 임금이 내리는 답

비망기(備忘記) : 임금이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던 문서. 비망(備忘).

비문[碑文] : 비석에 새긴 글. ≒비지(碑誌)·비판(碑版).

비변사[備邊司] : 〈역사〉조선시대에,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중종 때 삼포 왜란의 대책으로 설치한 뒤, 전시에만 두었다가 명종 10년(1555)에 상설 기관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정치의 중추 기관이 되었다. ≒비국(備局)·주사(籌司).

비지[批旨] : 신하가 올린 상소(上疏)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비답(批答)의 말씀.

비총[比摠] : 매년 가을에 호조에서 조세(租稅)의 총수(總數)를 상당년과 비교 상량하여 조정하던 일.

빈궁[殯宮] : 발인(發靷) 때까지 왕세자(王世子)나 또는 왕세자(王世子)의 아내의 관(棺)을 모시던 곳

빈어[嬪御] : 임금의 첩. 빈잉. 빈첩(嬪妾).

빈접[賓接] : 손님을 접대함. 혹은 사행(使行)을 인도하여 접대함. [유사어]: 빈대.

빈청[賓廳] : 〈역사〉1.조선시대에, 비변사의 대신이나 당상관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하던 곳. 궁중(宮中)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매월 3회씩 회의를 열었으나 숙종 24년(1698)부터 매월 6회씩 열었다. 2.조선시대에,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 집무하던 곳.

빙문[憑問] : 증거를 대며 물음.

ㅇ

사간[司諫] : 〈역사〉조선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종삼품 벼슬. 세조 12년(1466)에 지사간원사를 고친 것이다.

사간원[司諫院] : 〈역사〉조선시대에, 삼사 가운데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원년(1401)에 설치하여 연산군 때 없앴다가 중종 때 다시 설치하였다. ≒간원(諫院)·미원(薇院).

사객[使客] : 연로(沿路)의 수령이 해당 지역을 지나치는 봉명사신(奉命使臣)을 가리켜 부르는 말. 출장중인 국내 관원 뿐 아니라 외국 사신까지도 모두 해당됨.

사격[沙格] : 사공과 그 곁꾼.

사경[司經] : ①고려시대 동궁(東宮)에 소속되어 세자의 교육을 돕던 관직. 공양왕 2년(1390)에 설치된 6품직으로 좌사경(左司經)·우사경(右司經)의 2인이 있었음. ②조선 태조·태종 대에는 서연관(書筵官)으로 정6품직

이었으나 세종 2년(1420) 정7품 이하가 경연관(經筵官)으로 임명되어졌고, 그 이후 정7품직의 경연관으로 확정되었음.

사공[沙工] : ①고려시대 동계(東界)의 원흥진(元興鎭)에 설치된 주진군(州鎭軍)의 한 부류. 그 임무는 해군(海軍)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두 4대(隊)로 구성되었음.②뱃사공.

사관[史官] : ①고려시대 시정기(時政記)를 기록하던 관리. 넓은 의미의 사관에는 변동이 있었으나 시중(侍中)이 겸임하는 감수국사(監修國史), 2품 이상의 관원이 겸임하는 수국사(修國史)와 동수국사(同修國史), 한림원(翰林院)의 3품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는 수찬관(修撰官), 그리고 직사관(直史館) 4인이었고, 일반적인 의미의 사관에는 겸임관을 제외한 춘추관의 하위관원을 이름. ②조선 시대 사초를 작성하는 벼슬아치. 곧 예문관(藝文館)의 참하직(參下職)인 봉교(奉敎) 2인, 대교(待敎) 2인, 검열(檢閱) 4인의 8명이 전임 사관으로서 시정기를 기록하였음. 또는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가 포함되기도 함. 고려 시대와 같이 춘추관의 관직을 겸한 관원들을 넓은 의미에서 사관이라고도 함. [유사어]: 사신(史臣). [참고어]: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사급[賜給] : 관부에서 내리어 줌

사노[私奴] : 〈역사〉=사노비[私奴婢] 권문세가에서 사적(私的)으로 부리던 노비. 특히 조선 시대에는 주인에 의하여 재물처럼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되기도 하였다.

사대부[士大夫] : 〈역사〉1.사(士)와 대부(大夫)를 아울러 이르는 말. 문무 양반(文武兩班)을 일반 평민층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2.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사부(士夫).

사려[師旅] : 전쟁이나 군대를 이르는 말. 고대 중국의 군대 편성에서 500명을 여(旅), 5려를 사(師)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사례[士禮] : 선비의 예식(禮式).

사론[史論] : 역사에 관한 주장이나 이론.

사리[事理] : 사물의 이치.

사림[士林] : =유림[儒林] 유학을 신봉하는 무리.

사마시[司馬試] : 〈역사〉=소과(小科).소과[小科]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 ≒감시(監試)·사마·

사명[使命] : ①사자(使者)로서 받은 명령(命令) ②맡겨진 임무(任務). 맡은 일

사부[賜賻] : 〈역사〉임금이 특명으로 신하에게 부의(賻儀)를 내려 주던 일. 단문(袒免)의 종친, 시마 이상의 이성 왕친(異性王親), 종이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功臣), 공사(公事)로 외방에서 죽은 자와 전사자에게 행하였다. 늑치부(致賻). 사변[徙邊] : 변방에 강제로 이주를 시킴.

사복시[司僕寺] : ①고려시대 임금의 여마 구목(輿馬廐牧), 즉 임금이 타는 수레와 말 등을 관리하는 관아. 문종 때 설치한 태복시를 충선왕이 사복시로 고치고 상승(尙乘)·전목(典牧)·제목감(諸牧監)과 합하였음.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1인 종2품으로 겸직, 정(正) 2인 정3품으로 그 중 1인은 겸관이었음. 또한 부정(副正)은 2인으로 정4품인데 그 중 1인은 겸관이며 부령(副令)은 종4품, 승(丞)은 종6품, 직장(直長)은 종7품 등을 두었음. 공민왕 5년(1356)에는 다시 태복시라 하였음.[참고어]: 태복시(太僕寺). ②조선시대 여마 구목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태조 원년(1392)에 정한 관원은 판사 2인 정3품이고, 경 2인 종3품이고, 소경 2인 종4품이고, 주부 1인과 겸주부 1인은 종6품이고, 직장 2인 종7품 등이었음. 태종 3년(1403) 6월에는 판사와 경을 각각 1인씩 감하였음. 사복시 관원들은 주로 무과 출신자들로 채워졌으며 조관(朝官) 외에 많은 제원(諸員)이 소속되었음. 단종 때에 그 수가 1천 8백인에 달하여 삼번(三番)으로 나누어 근무케 하였음.

사사[寺社] : 불교의 사원(寺院)과 신앙 결사(結社)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社)는 자발적인 민간의 후원과 승려 공동의 불교 모임 혹은 불교 모임이 있는 사찰을 이르는 말로써, 고려 시대의 경우 수선사(修禪社)·백련사 등이 대표적인 예임. 사(社)는 후에 사(寺)로 바뀐 경우가 많음.

사사[事事] : 이 일 저 일이라는 뜻으로, 모든 일을 이르는 말.

사시[巳時] : 〈민속〉1.십이시(十二時)의 여섯째 시. 오전 아홉 시부터 열한 시까지이다. 늑사(巳). 2.이십사시(二十四時)의 열한째 시. 오전 아홉 시 반부터 열 시 반까지이다. 늑사(巳).

사숭지[史嵩之] : 송(宋)나라 사람으로 벼슬이 우승상 겸 추밀(右丞相兼樞密)에 이르렀고 영국공(永國公)에 봉해졌다.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적에 이종(理宗)이 기복(起復)시키려 하였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일이 있음.《송사(宋史)》 권173 사숭지 열전(史嵩之列傳).

사액[賜額] : 〈역사〉임금이 사당(祠堂),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사역원[司譯院] : 고려(高麗), 조선(朝鮮) 때 중국말(中國), 몽고말, 만주(滿洲) 말, 일본말 따위의 외국어(外國語)의 번역(飜譯)과 통역을 맡아 보던 관청(官廳)

사옥[社屋] : 신을 모신 집.

사옹원[司饔院] : 조선시대의 관청으로 어선(御膳)의 공급과 궐내(闕內)의 공궤(供饋)를 관장하던 정3품 아문.

사우[祠宇] : =사당(祠堂).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사당집 · 사우(祠宇).

사의[事宜] : 이치에 맞아 일이 마땅함. 사의에 맞도록 타이르다.

사인[舍人] :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되어 있던 관직으로 정원은 2인이었음. 임금과 의정부 대신 사이에서 양자 간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하는 구실을 담당하던 관원으로 재직 기간이 만료되면 승천(陞遷)되었고,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 이하 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음. 고려 시대의 문하 사인(門下舍人)적 성격을 지닌 사간원(司諫院)의 내서 사인(內書舍人)이 의정부로 이관되면서 태종 3년(1403)에 하륜(河崙)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정부 사인(議政府 舍人)으로 고쳐짐. 이후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 존재함.

사인[士人] : 학식(學識)이 있되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사자

사장[師長] : ①고려시대 지방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 성종은 12목(牧)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지방 자제의 교육을 장려하였으며 목종 또한 3경과 10도의 박사와 사장으로 하여금 교육에 힘써 공로가 있는 사람을 보고케 하여 교육을 장려하였음. ②조선시대 대사성(大司成)의 다른 이름.

사장[詞章] : 문장(文章)과 시부(詩賦)의 통칭. 주로 한당시(漢唐詩)와 당송고문(唐宋古文)을 모범으로 하고 수사적 기교에 중점을 둔 장식적인 문학론에 충실했음. 조선 왕조를 성립시킨 신흥사대부 세력은 국가 · 사회의 모든 제도 · 문물을 개혁하고 각 학교에 4서 5경과 ≪소학(小學)≫을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한편, 문과에도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초장(初場)에 강경시험(講經試驗)을 보게하는 등 경학(經學)을 장려했음.

사재감[司宰監] : ①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사재시(司宰寺)를 고친 이름. 사진감(司津監). 도진사(都津司). ②조선시대의 관청. 태조 원년(1392) 7월 관제 신정(官制新定) 때 사재감(司宰監)을 두어 어량

(魚梁)·산택(山澤)의 일을 맡게 하고, 사수감(司水監)을 두어 전함(殿艦)을 영수(營修)하고 전수(轉輸)를 감독케 하였는데, 태종 3년(1403) 6월에 사수감을 사재감에 합쳤음.

사전[賜田] : 고려·조선시대에 나라에 공을 세운 왕족이나 벼슬아치에게 일정 기간 수조권(收租權)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지(田地)를 하사하여 수전자가 각자수세(各自收稅)케 하는 토전(土田). 흔히 별사전(別賜田)이라고 하며 그 규모는 조선 세종 22년(1440) 3월 현재로 3천여 결(結)에 이르렀음. 사패(賜牌)를 받은 것은 자손상전(子孫相傳)이 허용되고, 사패가 없는 것은 그렇지 못하였음.

사절[死節] : ①목숨보다 아끼는 절개(節槪) ②절개(節槪)를 위(爲)하여 죽음

사제[賜祭] : 〈역사〉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지내 주던 일. 단문(袒免) 이상의 종친, 시마 이상의 이성 왕친(異姓王親), 종이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功臣) 및 공사(公事)로 외방(外方)에서 죽은 자와 전사자 등에게 지내 주었다.

사제[私弟] : 개인 저택. 사저(私邸).

사조[辭朝] : 관리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사족[士族] : 사대부지족(士大夫之族)의 준말로 사대부가 될 수 있는 족속 곧 조선시대 지배층을 통칭하는 말.

사죄[赦罪] : 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석방함.

사지[事知] : 어떤 일에 매우 익숙함. 또는 그러한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사직[司直] : ①신라시대의 수도 경주의 동·서·남쪽에 설치된 동시전(東市典)·서시전(西市典)·남시전(南市典)에 2인씩 임명하였던 관직. 본래 서생(書生)이라고 하였는데, 창고의 물품 재고 조사 및 회계 장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경덕왕 18년(759)에 사직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서생으로 환원하였음. ②조선 시대의 5위(五衛)에 속하는 정5품의 무관직(武官職). 고려시대에 영(領)의 부지휘관(副指揮官)으로 정5품의 중랑장(中郎將)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 건국 초까지 그대로 지속되다가 태조 3년(1394)에 이르러 사직(司直)으로 개칭되었음.

사직장[辭職狀] : 맡은 바 직무를 내놓고 물러날 때 올리는 글.

사진[仕進] :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간에 근무지로 출근함.

사창[社倉] : 조선조 때 민간에서 운영하던 창고로서 가을철에 곡식을 사들였다가

봄철 춘궁기(春窮期)에 싼 값으로 방출하였음. 의창(義倉)의 환곡(還穀)이 모자라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이 환곡으로 전용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저리(低利)의 이식을 붙여 거두었음.

사천[私賤] : 개인에 의해 사역되고, 매매·상속되었던 노비. 사노비(私奴婢)라고도 하며, 공천(公賤)에 대한 대칭(對稱)임.

사체[事體] : 일의 이치와 정황.

사초[史草] : 〈역사〉조선시대에,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둔 사기(史記)의 초고(草稿). 실록(實錄)의 원고가 되었다.

사친[私親] : ①종실(宗室)에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은 임금의 생가(生家) 어버이. ②빈(嬪)으로서 임금의 생어머니. ③서자(庶子)의 생어머니. ④자기의 친족(親族).

사판[仕版] : 〈역사〉벼슬아치의 명부(名簿).

사표국[司豹局] : 조선조 세종(世宗) 때 대궐의 내사복시(內司僕寺) 남쪽편에 비밀히 설치하였던 염초(焰硝)를 굽던 곳. 화약과 무기(武器)의 개량(改良)을 위하여 궁내에 특별히 설치한 것임.사핵[査核] : 실제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힘.

사헌부[司憲府] : 〈역사〉고려.조선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헌중승[司憲中丞] : 〈역사〉=중승(中丞).

사후[射候] : 후(侯)에 활을 쏘아 시험하는 것으로, 후는 사방(四方) 10척(尺)의 베[布]에 곡(鵠)을 그린 과녁을 말함.

삭거[削去] : 깎아서 버림

삭직[削職] : 관직을 삭탈(削奪)함. 곧 임관(任官)을 말소(抹消)하는 것. [유사어]: 삭탈관직(削奪官職).

산릉[山陵] : 〈역사〉국장(國葬)을 하기 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새 능.

산삭[刪削] : 필요 없는 글자나 글귀를 지워 버림. 늑산거(刪去)·산생(刪省)·산제(刪除).

산원[算員] : 〈역사〉조선시대에, 호조에 속하는 경비사에서 서울의 경비 지출과 왜인(倭人)의 양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산엽본[散葉本] : 그 유래를 아직 밝힐 수 없는 실록(實錄)의 산엽본(散葉本)은 정종(定宗)부터 광해군(光海君)까지에 이르는 총(總) 558장의 낱장들로서, 오랫동안 규장각(奎章閣) 도서(圖書) 중에서 파지(破紙)로

존치(存置)되어 오다가, 1972년 6월에 서울대학교(大學校) 도서관(圖書館) 당국에 의해 21책(冊)의 책자(冊子)로 정리(整理) 장책(裝冊)된 것을 말한다.

산절[刪節] : 어구(語句)를 깎아내어 줄임. 산생(刪省).

삼강[三綱] :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을 이른다. ≒삼정(三正).

삼공[三公] : 〈역사〉1.고려시대에,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의 세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삼사(三師)와 함께 임금의 고문 구실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초기에 두었다가 공민왕 때에 없앴다. ≒삼보(三輔)·삼태(三台)·태사(台司). 2.=삼정승

삼군[三軍] : 고대 중국 주(周)나라 때의 군사제도. 전쟁 때에 천자는 6군(軍), 봉건 대영주(大領主)는 3군, 중영주는 2군, 소영주는 1군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군은 1만 2500명이다. 이 말이 바뀌어 대군(大軍)의 뜻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우익·중앙·좌익의 각 군 또는 선봉·중군·후위의 각 군을 총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육·해·공 3군을 총칭한 국군 전체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군문[三軍門] :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삼영문(三營門).

삼군부[三軍府] : 〈역사〉1.=의흥삼군부. 2.조선 후기에, 중요한 군무(軍務)를 의논하던 관아. 고종 5년(1868)에 비변사를 없애고 대신 설치하였다가 고종 9년(1872)에 폐하였다.

삼남[三南] : 〈지명〉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삼남삼도·하삼도.

삼복[三覆] : 〈역사〉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세 번 심리하던 일. 1차를 초복(初覆), 2차를 재복(再覆), 3차를 삼복(三覆)이라 하였는데, 고려 문종 원년(1047)부터 실시하였다. ≒삼복제.

삼사[三司] : ①고려시대 국가 전곡(錢穀)의 출납·회계 사무를 총괄하였던 관아. 태조가 태봉의 조위부(調位府)를 고쳐 삼사로 함. ②조선 초기에 재정을 맡아 보던 관아. 태조 원년(1392) 7월에 설치되었는데, 태종 원년

(1401) 7월에 사평부(司平府)로 고치고 동왕 5년(1405) 1월에 이를 혁파하여 호조(戶曹)에 귀속시킴. ③조선시대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합하여 부른 말. ④삼법사(三法司)·삼의사(三醫司) 등의 준말.

삼성죄인[三省罪人] : ≪대명률(大明律)≫에 규정된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 등의 10악(十惡)을 비롯하여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여, 임금의 특지(特旨)를 받고 합좌(合坐)한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형조(刑曹), 혹은 의정부(議政府)·사헌부·의금부(義禁府), 혹은 의정부·대간(臺諫)·의금부 등으로 구성된 삼성(三省)의 추국(推鞫)을 받는 죄인(罪人). [참고어]: 삼성(三省).

삼전도[三田渡] :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던 한강 상류의 나루. 1439년(세종 21)에 신설된 나루로, 도성(都城)의 중심지로부터 30리 지점, 상류의 광나루[廣津]와 하류의 중랑포(中浪浦) 사이에 있었다. 당시 서울과 광주의 남한산성을 이어주는 나루로서, 종9품의 도승(渡丞)을 두어 이를 관리하였다.

삼향[三鄕] : 자신의 본향(本鄕)과 외가가 있는 외향(外鄕), 그리고 처가가 있는 처향(妻鄕)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상[上] : '임금'의 높임말.

상거[相距] : 서로 거리(距離)가 떨어져 있는 두 곳의 거리(距離) 또는 떨어져 있는 사이

상격[賞格] : 1.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을 주는 규정. ≒상전(賞典). 2.〈역사〉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임금이 하사하던 책. ≒상전(賞典).

상고[上考] : 관리의 근무 성적을 관리의 성적 고과에서 상등(上等)을 맞는 일. [참고어]: 고적(考績).

상변[上變] : 임금께 전쟁이나 난리와 같은 변(變)을 보고함. 고변(告變).

상사[喪事] : =상변(喪變) 사망, 돌아가심.

상서사[尙瑞司] : 고려 및 조선시대의 중앙인사행정기관. 고려 시대에는 최씨 집권 당시 정무 (政務)를 행하고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正房)이 상서사로 개칭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상서사는 새보(璽

寶)·부패(符牌)·절월(節鉞)을 맡아보는 기관으로 국초에 설치되었다가 세조 때에 상서원(尙瑞院)으로 개칭되었다.

상설[象設] : 무덤 앞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본떠 만든 석물(石物).

상신[相臣] : 〈역사〉=상국[相國]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늑상신[相臣].

상언[上言] : 〈역사〉1.신하가 사사로운 일로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2.백성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상의원[尙衣院] :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일용품, 보물 따위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상의사(尙衣司)로 고쳤다. 늑상방(尙方)·장복(掌服).

상차[上箚] : 관료가 임금에게 차자(箚子)를 올리는 일. 차자는 소장(疏章)의 일종으로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단히 사실만을 기록하여 올리며, 상소보다는 형식은 간단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표현하는 이점이 있음. 상소처럼 단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연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음. [유사어]: 주차(奏箚), 차문(箚文). [참고어]: 소차(疏箚).

상참[常參] : 〈역사〉의정(議政)을 비롯한 중신(重臣)과 시종관(侍從官)이 매일 편전(便殿)에서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아뢰던 일.

상항[上項] : 위의 항목.

상호군[上護軍] : 고려·조선시대 중앙군의 최고 지휘관.

색랑청[色郞廳] : 색리와 낭청. 당상관과 구분하는 용어로서 당하관을 포함한 실무관리 및 서리를 통칭함. 색리는 조선 후기 말단 향리를 가리키며 제반 실무를 맡았음. 그리고 낭청은 본래 낭관(郞官)과 같은 뜻으로 당하관을 지칭하였으며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오군영 등의 실무직 관직으로 자리하면서 종6품을 기준으로 품계를 고정시키지 않고 선임하여 부렸음. 대체로 관결의 임무를 띤 관원이 아닌 색랑청의 경우에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피제를 적용치 않기도 함. [참고어]: 낭청(郞廳), 낭관(郞官), 색리(色吏).

색리[色吏] : 〈역사〉감영이나 군아에서 곡물을 출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생리[生理] : 생활하는 습성이나 본능.

생선간[生鮮干] : 조선시대에 궁중에 물고기를 잡아 바치던 역(役)을 부담하였던 천역자(賤役者). 간(干)이란 고려 때부터 신분은 양인(良人:평민)

에 속하나 왕실이나 사원(寺院) 등 특정기관에 집단으로 예속되어 특수한 역(役)을 세습하다가 신분적 지위가 묶인 천역 부담자를 이르게 된 것이다.

서간[書簡] : 소식을 알리거나 용건을 적어보내는 글.

서강[西江] : 서울 양화도(楊花渡) 일대를 서강이라 함.

서계[書啓] :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은 벼슬아치가 일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만들던 문서.

서교[西郊] : ①서쪽의 교외(郊外) ②서울의 서대문(西大門) 밖

서리[書吏] : 〈역사〉조선시대에, 중앙 관아에 속하여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하급의 구실아치. 늑서제(書題).

서모[庶母] : 아버지의 첩.

서용[敍用] : 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

서인[西人] : 〈역사〉조선 선조 때에,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여 동인(東人)과 대립한 당파. 또는 그에 속한 사람. 뒤에 청서 · 훈서, 소서 · 노서, 노론 · 소론, 시파 · 벽파 따위로 시기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서장[書狀] : ①서간(書簡) · 간찰(簡札) · 편지(便紙) · 서첩(書帖) 등의 문서. 공사(公私)에 자유롭게 왕래된 문서로서 고정된 형식이 없어 폭넓게 이용되었음. 이러한 점 때문에 공문서로 이용되는 경우 사사로이 악용된 경우도 있어 점차 여타의 다른 고정된 문서 형식으로 대체되어감. [유사어]: 서소(書疏). 서자(書字). ②서장관(書狀官). 고려와 조선 시대 외교문서의 작성과 사절 일행의 감찰에 관한 일을 맡았던 사절의 하나. ③불교를 배우는 기본적인 네 가지 책 가운데 하나. 곧 서장 · 도서(都序) · 선요(禪要) · 절요(節要)를 사집(四集)이라 함.

서재[西齋] : 조선조(朝鮮朝) 때 유생(儒生)이 거처하고 공부하던 곳. 성균관 또는 향교(鄕校)의 명륜당(明倫堂)의 앞 서쪽에 있었음

서책[書册] : =책(册).

선공감[繕工監] : 〈역사〉1.고려시대에, 토목과 영선(營繕)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24년(1298)에 장작감을 고친 것으로 뒤에 선공사, 선공시, 장작감 따위로 여러 번 바꾸었다. 2.조선시

대에, 공조에 딸려 토목과 영선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원년(1392)에 설치되었고, 고종 31년(1894)에 폐지되었다.

선군[船軍] : 〈역사〉=기선군[騎船軍] :고려 말기 · 조선 전기에, 왜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수군(水軍).

선격[船格] : 배를 부리는 곁꾼.

선덕[宣德] : 〈역사〉중국 명나라 선종 때의 연호(1425~1435).

선릉[宣陵] : 성종의 능. 곧 성종을 가리킴.

선미[鮮味] : 1.신선하고 산뜻한 맛. 2.새로운 안주. 또는 새로운 요리.

선봉[先鋒] : 1.부대의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늑선봉군(先鋒軍) · 전봉(前鋒). 2.무리의 앞자리. 또는 그 자리에 선 사람.

선성[先聖] : ①옛 성인(聖人). ②주(周) 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인 주공(周公)을 일컫는 말. ③당(唐) 나라 태종 이후의 공자(孔子)를 일컫는 말.

선왕조[先王朝] : 선대의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 또는 그때의 세상.

선전관[宣傳官] : 〈역사〉조선시대에, 선전관청에 속한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정삼품부터 종구품까지 있었다. 늑선전.

선제[宣帝, BC 91~BC 49] : 중국 전한(前漢)의 제9대 황제(재위 BC 74~BC 49).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상평창 설치로 빈민구제를 도모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격파했고 소위 서역 36국과 남 흉노도 복속시켰다. 전한의 여러 황제 중에서도 현제(賢帝)로 꼽히고 있다.

선척[船隻] : 배. 제포(諸浦)에 관선(官船)으로 배치된 병선(兵船) · 조선(漕船) 등을 가리킴.

선혜청[宣惠廳] : 〈역사〉조선시대에, 대동미와 대동목, 대동포 따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선조 41년(1608)에 두었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늑혜청.

섭리[燮理] : 음양(陰陽)을 고르게 다스림.

섭행[攝行] : 1.일이나 직책 따위를 대신 행함. 2.다른 일도 겸하여 행함. 3 =섭사(攝祀).

성교[聖敎] : 1.책봉할 때에 내리던 임금의 교명(敎命). 2.성인(聖人)의 가르침. 3 〈가톨릭〉=가톨릭교. 4.〈종교〉=불교. 5.〈불교〉올바른 이치에 합하는 교리. 석가모니의 교법이나 성인의 불교 전적을 이른다.

성균관[成均館] : 〈역사〉1.고려시대에, 유학을 전수하던, 나라의 최고 학부. 충렬왕 34년(1308)에 성균감을 고친 것이다. 2.조선시대에, 유학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와 유학을 강론하는 명륜당 따위로 이루어지며, 태조 7년(1398)에 설치하여 융희 4년(1910)에 없앴다. 늑관(館) · 반관(泮館) · 태학(太學) · 학궁(學宮).

성모[聖廟] : 〈고적〉=문묘(文廟).

성모[聖廟] : 성균관(成均館)과 각 지방 향교(鄕校)에 있는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을 가리킴.[유사어]: 문묘(文廟).

성비[聖批] : 임금이 신하가 올린 상소(上疏)에 적어 내리는 대답.

성적[聖蹟] : 성스러운 사적, 또는 고적(古蹟)

성전[盛典] : 성대(盛大)한 의식(儀式)

성지[城池] : 성과 그 주위에 파 놓은 못.

성책[成册] : 책으로 됨. 또는 책을 만듦.

성첩[城堞] : =성가퀴.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여기에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한다. 늑보원(堡垣) · 성첩(城堞) · 여담(女-) · 여장(女墻) · 여첩(女堞) · 치성(雉城) · 치첩(雉堞) · 타구.

성헌[成憲] : 성문 헌법(成文憲法)

성혼[成渾, 1535~1598] : 조선 중기의 문신 · 학자. 동서 분당기 때 서인과 정치노선을 함께 했고 이이와 함께 서인의 학문적 원류를 형성했다. 그의 학문은 이황과 이이의 학문을 절충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소론학파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본관 창녕, 호 우계 · 묵암, 별칭자 호원 시호 문간, 출생지 서울 순화방, 주요저서 《우계집》《주문지결》 등, 본관 창녕(昌寧). 자 호원(浩源), 호 우계(牛溪) · 묵암(默庵), 시호 문간(文簡).

성화[成化] : 〈역사〉중국 명나라 헌종 때의 연호(1465~1487).

세계[世系] :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계통.

세목[細木] : 올이 가늘고 고운 무명.

세미[稅米] : 조세(租稅)로 바치던 쌀

세시[歲時] : 1.=설. 2.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

세실[世室] : 〈역사〉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위패(位牌)를 모시던 종묘(宗廟)의 신실(神室).

세전[世傳] : 대대로 전함. 또는 대대로 전하여 내려옴.
세주[細註] : 1.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주석(註釋). 2.=잔주(-註).
세초[洗草] : 〈역사〉조선시대에, 실록을 편찬한 뒤 그 초고를 없애 버리던 일. 자하문 밖 조지서에서 그 사초(史草)를 물에 씻고, 그 종이를 제지 원료로 다시 사용하였다.
소미[小米] : 좁쌀
소민[小民] : =상사람 : 조선 중기 이후에 '평민'을 이르던 말. 늑상인(常人).
소무등[小不等] : 그리 굵지 아니한 둥근 나무.
소상[小祥] : 죽은 뒤 1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참고어]: 대상(大祥).
소상재[小祥齋] : 상례(喪禮)의 하나인 소상제(小祥祭)가 불교의식과 결합되어진 형태.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13개월 되는 기일(忌日)에는 소상제를 지내고 그달 그믐에 소상제(小祥祭)를 지냈다고 함. 소상은 초상(初喪)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 즉 1주기에 지내는 제사를 말함. 상제들은 하루 전에 목욕재계를 하고 세탁하여 다듬은 상복인 연복(練服)을 준비함. 신주(神主)를 영좌(靈座)에 모시고 상제들이 곡을 한 다음 연복을 갈아 입고 다시 곡을 하고 제를 올림. 소상 이후에는 조석곡(朝夕哭)을 폐하고 삭망(朔望)에만 곡을 하게 됨.
소석[疏釋] : ①소방(疏放). ②경전(經典)의 소(疏)에 대한 해석.
소윤[少尹] : 〈역사〉1.신라 때에, 오 소경(五小京)에 둔 외관(外官) 벼슬. 늑사대사. 2.고려 시대에, 전중감 · 전중시 · 예빈시 · 대부시 · 소부시 · 위위시 · 군자시 · 사재시 따위에 둔 종사품 벼슬. 소감(少監) 또는 소경(少卿)을 고친 것으로, 윤(尹)의 다음이다. 3.고려 시대에, 지방의 민정을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던 유수관 벼슬. 판관(判官)을 고친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되었다. 4 조선 초기에, 한성부 · 개성부 · 상서사 따위에 둔 정사품 벼슬.
소장[疏章] : 〈역사〉상소하는 글.
소재관[所在官] : 해당 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수령(守令).
소정[所定] : ①정한 바 ②정(定)해진 바
소첩[小妾] : 부인이 남편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소학[小學] : 8세 전후의 어린아이들이 유학 교육의 필수 과정으로서 배우던 수신

서(修身書). 송(宋)나라 주희(朱熹)의 지시로 제자인 유자징(劉子澄)이 편찬하였는데, 총 6편으로 내편 4권은 입교(入敎)·명륜(明倫)·경신(敬信)·계고(稽古)이며, 외편 2권은 가언(嘉言)·선행(善行)으로 구성되었음.

속[束] : 묶음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노비나 물건, 또는 금제품(禁制品)·장물(贓物) 따위를 관부에 귀속(歸屬)시키는 것.

속공전[屬公田] : 범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관부(官府)에 소속시킨 전지(田地).

속습[俗習] : 1.세속의 풍습. 2.저속한 풍습.

속오군[束伍軍] : 〈역사〉역(役)을 지지 아니한 양인과 천민으로 편성한 군대. 선조 27년(1594)에 두었으며,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게 하고 나라에 일이 있거나 훈련할 때에 소집하였다.

속전[續典] :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 :〈책명〉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속속육전(續六 典)·속전(續典).

속전[贖錢] :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손[損] : 손해(損害)

손돌목[孫石項] : 손돌목은 인천 앞바다에서 마포나루까지 올라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에서 강화군 광성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을 일컫는다. 이 곳은 평상시는 세곡미를 운반하는 뱃길로 이용되었다. 전시에는 적을 방어하는 진지로 사용되었다. 손돌추위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송사[訟事] : 1.〈법률〉=소송(訴訟). 2.〈역사〉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던 일.

수[隋] : 〈역사〉581년에 중국 북주(北周)의 양견(楊堅)이 정제(靜帝)의 선양(禪讓)을 받아 세운 왕조. 581년에 개국하였으며, 589년에 진(陳)나라를 합쳐 중국을 통일하였으나, 618년에 당나라 고조 이연(李淵)에게 망하였다.

수거[修舉] : 잘 다스려서 좋은 성과를 올림.

수강궁[壽康宮] : 〈고적〉조선 세종 1년(1419)에 태종을 위해 창덕궁 동쪽에 지은 궁전. 성종 14년(1483)에 중건하고 이름을 창경궁으로 고쳤다.

수계[修啓] : 문서나 글을 작성해서 국왕에게 보고함.

수교[受敎] : 〈역사〉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리던 교명(敎命).

수령관[首領官] : 행정 말단의 실무 담당자. 본래는 중국에서 원나라가 한족(漢族)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임. 고려 후기에 수령관으로는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속관인 경력(經歷)과 도사(都事)가 해당됨. 조선시대에는 각도의 경력과 도사 및 중앙관청 소속의 5품과 6품의 남행(南行) 관리를 지칭함.

수릉[壽陵] : 임금이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임금의 무덤.

수말[首末] : 1.머리와 끝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수미(首尾).

수묘군[守墓軍] : 왕실의 중요 묘소(墓所)를 수호하는 잡류(雜類)에 속하는 역인(役人). 선후(先后)와 왕비(王妃)의 부모 묘소에 각기 2명씩을 배정하였으며, 친진(親盡)된 선후(先后)의 부모 묘소에는 배정하지 않았음.

수미[收米] : 쌀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쌀.

수복[守僕] :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나 향실(香室)을 관장하던 교서관을 비롯해 각 단(壇)·능(陵)·궁(宮) 등에 소속되어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던 잡직(雜職). 조선 건국 이후 고려 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상소(上所)로 설치되었다가 세종 20년(1438)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수복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서 제도화됨. 종묘서에 30인, 교서관 향실에 3인, 문소전(文昭殿)에 4인이 배속되었고, 조선 후기 정조 때에는 장헌세자(莊獻世子)와 그의 비(妃)인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사당인 경모궁(景慕宮)에 새롭게 4인이 배정됨.

수봉[收捧] : 1.세금을 징수함. 늑수쇄(收刷). 2.남에게 빌려 준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거두어들임.

수속[收贖] : 죄인이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거두어들임.

수신[帥臣] : 〈역사〉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수안[守安] : 지금의 김포시 양촌면, 대곶면 지역을 말한다.

수안현[守安縣] : (지금의 김포시 양촌면/대곶면 지역을 말한다.) 본래 고구려의 수이홀(首爾忽)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수성(戍城)으로 고쳐 장제군(長堤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소속하였는데 명종(明宗)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나 공양왕(恭讓王) 3년에 처음으로 통진 감무(通津監務)를 두매 현(縣)이 이에 속해있다. 〈고려사 지리지(地理志)〉

수어[守禦] :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의 침입을 막음.

수영[水營] : 조선(朝鮮) 때 수군(水軍) 절도사(節度使)의 군영(軍營)

수용 : =진용(眞容) 임금의 초상. 어진(御眞).

수의[收議] : 각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 [유사어]: 상의(相議).

수이홀[首尉忽] : 삼국사기 〈지리지〉편에 고구려 장수왕 63년(475년) 현 김포시 양촌면, 대곶면 지역을 수이홀이라 지칭했다.

수주[樹州] : 인천광역시 부평의 옛 이름

수직[守直] :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또는 그런 사람. 늑직수.

수진궁[壽進宮] : 조선시대 궁전의 이름. 봉작(封爵)을 받기 전에 죽은 대군(大君) · 왕자(王子)와 출가하기 전에 죽은 공주(公主) · 옹주(翁主)를 제사 지내던 곳.

수찬관[修撰官] : 조선시대에, 춘추관에서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삼품 당상관 벼슬. 승정원의 승지, 홍문관의 부제학이 겸임하였다.

수파[水破] : 묘소(墓所) 앞으로 흐르는 물. 중국 송(宋)나라 풍수(風水) 학자인 호순신(胡舜申)의 ≪지리신법(地理新法)≫에 '묘소 앞의 물이 길방(吉方)에서 와서 흉방(凶方)으로 흘러가면 생생하는 기운을 산출하여 길하고, 반대로 흉방에서 흘러와 길방으로 들어가면 생왕(生旺)하는 기운을 충파(衝破)하여 흉하다.' 하였음. 조선 초기이래 호순신의 물길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풍수설이 유행하였음.

수호군[守護軍] : 수릉군[守陵卒] 역대 임금과 비의 능(陵) · 원(園) · 묘(墓)를 수호하는 역인(役人).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잡류(雜類)조에는 선왕릉(先王陵)과 선왕후릉(先王后陵)에는 각각 70인의 수릉군을 배정하도록 하였음. 복제(服制)의 대(代)가 다하여 신위(神位)를 묘(廟)에서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면, 5인의 수릉군을 배정함. 여타의 능묘에는 2~3인의 수릉군을 배정하였음.

숙마[熟馬] : 1.길이 잘 든 말. 2.〈역사〉벼슬아치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던 상사(賞賜) 가운데 熟馬一匹下賜(숙마일필하사)' 라는 글을 적은 첩지. 이를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갈 때 길이 잘 든 말 한 필을 얻어 탈 수 있었다.

숙배[肅拜] : ①종친 · 백관이 임금에게 공손히 절하는 예(禮). 전정(殿庭)에서 국궁사배(鞠躬四拜)함. ②서울을 떠나 임지로 가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하직(下直).

숙의[熟議] :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늑숙론.

순금사[巡禁司] : =의용순금사 義勇巡禁司 :〈역사〉조선시대에, 죄인의 옥(獄)을 다스리던 관아. 태종 3년(1403)에 순위부를 고친 것으로, 태종 14년(1414)에 다시 의금부로 바꾸었다.

순무영[巡撫營] : 〈역사〉조선시대에, 순무사가 임시로 거처하던 군영. 영조 4년(1728)에 두었으며, 고종 31년(1894)에 동학교도를 토벌하기 위하여 서울에 두기도 하였다.

순심[巡審] : =순찰. 순행(巡行)하면서 사정(事情)을 살핌

순일[旬日] : 10일.

순치[順治] : 〈역사〉중국 청나라 세조 때의 연호(1644~1661).

순치보거(脣齒輔車) : 입술과 이, 광대뼈와 잇몸. 서로 긴밀하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관계를 말함.

술사[術士] : 술수(術數)의 학(學)에 통하고, 태현(太玄)에 조예가 깊은 사람. 곧 술가(術家).

술성현[戌城縣] : 지금의 대곶면, 양촌면 지역을 말하며 고구려의 옛 지명 수이홀을 경덕왕이 술성현으로 개명했다.

술시[戌時] : 〈민속〉1.십이시(十二時)의 열한째 시. 오후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이다. 늑술(戌). 2.이십사시(二十二時)의 스물한째 시. 오후 일곱 시 반부터 여덟 시 반까지이다. 늑술.

숭릉[崇陵] : 〈고적〉조선 현종과 그의 비(妃) 명성 왕후 김 씨의 능. 동구릉의 하나이다.

숭반[崇班] : 높은 지위나 벼슬. 늑숭위(崇位).

숭정[崇禎] : 〈역사〉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 때의 연호(1628~1644). 명나라가 망한 뒤에도 조선은 청나라 연호를 쓰는 것을 꺼려 이 연호를 사용하였다.

습속[習俗] : 습관(習慣)된 풍속(風俗)

습조[習操] : 군사훈련

승[升] : ①용량 단위(容量單位)의 한 가지. 되. 열홉[十合]. ②피륙의 짜인 날을 세는 단위(單位). 새. 포(布) 팔십루(八十縷)를 일승(一升)이라 함.

승군[僧軍] : 중들로 조직된 군대. 늑승병(僧兵).

승도[僧徒] : 중의 무리. 치려(緇侶). 치류(緇類). 치문(緇門)

승륙[陞六] : 7품 이하(以下)의 벼슬아치가 6품에 오름

승서[陞敍] : 벼슬을 올려 줌

승수[升數] : 피륙의 날(올)을 세는 단위로 곱고 거친을 알려주는 말. 곧 그 승수가 높을수록 고운 것이었음.

승여[乘輿] : 대가(大駕). 임금이 타는 수레.

승자[陞資] : 〈역사〉직위가 정삼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던 일. ≒승질(陞秩).

승전[承傳] : 1.이어받아서 전함. 2.임금의 뜻을 전함.

승전[承傳] : 임금의 뜻이나 명령을 받아 관계관에게 전달하는 일. 승정원(承政院)과 승전색(承傳色)이 담당하였음.

승정원[承政院] : 〈역사〉조선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을 고쳐 도승지 이하의 벼슬을 두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승선원(承宣院)으로 고쳤다. ≒은대(銀臺)·정원(政院)·후원(喉院).

승지(承旨) : 고려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왕명의 출납(出納)을 담당했던 관직. ①고려 전기의 추밀원을 고려 후기에 밀직사(密直司)로 고치면서 승선을 승지로 고쳤음. 품계는 정3품, 정원은 5인으로 지신사(知申事),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를 두었음. 뒤에 다시 승선, 대언(代言) 등으로 개칭되었음. 왕명 출납 외에도 근시로서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음. ②고려시대의 이속(吏屬). 비서성, 합문, 예빈승, 상승국, 내고(內庫)의 이속(吏屬)에 40~50인이 배치되어 있음.

승추부[承樞府] : 〈역사〉조선 전기에, 군무(軍務)를 통할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태종 원년(1401)에 의흥삼군부를 고친 것으로, 태종 3년에 삼군도총제부로 개편하면서 따로 독립하였다가 5년에 폐하여 병조에 속하게 했다.

시가[時價] : 그 때의 값, 그 때의 시가(市價).

시가[市價] : 시장(市場)에서 물건(物件)을 팔고 사는 금새. 장시세(場時勢)

시강[試講] : 경전(經典)이나 ≪통감(通鑑)≫·≪국조보감(國朝寶鑑)≫, 무경(武經) 등을 시험할 때 강(講)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참고어]: 강경(講經), 강무(講武).

시관[試官] : 〈역사〉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 관계되는 관원을 통틀어 이르던 말.

시권[試券] : 과거 시험 답안지. 글장.

시마[緦麻] : 오복(五服) 중에서 가장 짧은 석달 동안 입는 상복. 즉 본종(本宗)의

종증조(從曾祖) · 삼종형제(三從兄弟) · 증증손(衆曾孫) · 증현손(衆玄孫)과 외친(外親)의 당형제자매 · 처모(妻母) 등의 상사(喪事)에 입는 상복(喪服). 익힌 삼베로 만드는데 대공(大功) 보다는 거칠고, 소공(小功) 보다는 고운베로 만듦. [유사어]: 시복.

시법[諡法] : 죽은 사람에게 시호(諡號)를 붙이는 법. 시호를 의정하던 규정.

시비선악[是非善惡] : =시비곡직[是非曲直] :옳고 그르고 굽고 곧음. ≒시비곡전

시서[詩書] : 시전(詩傳)과 서전(書傳). 시와 글씨

시역[弑逆] : =시살[弑殺] 부모나 임금을 죽임. ≒시륙(弑戮) · 시해(弑害).

시위군[侍衛軍] : 〈역사〉조선 초기에, 병종(兵種) 가운데 중앙에 번(番)을 들러 올라오는 지방의 장정. 세조 5년(1459)에 정병(正兵)으로 고쳤다. ≒시위패.

시위패[侍衛牌] : 고려 말 ·조선 초 중앙군의 병종(兵種). 일명 시위군이라고도 하였다. 왜구의 출몰과 전란이 잦은 고려 말 각 도의 절제사를 겸임하고 있던 조정 중신들은 통제력이 약화된 정부를 대신하여 직접 군대를 징발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휘하의 사병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하고, 상경시켜 자신의 거처를 시위케 하기도 하였으므로 절제사의 사병이라 하기도 하였다. 시위패라는 이름은 이때 붙여진 것이다. 그들은 사병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중앙 국방력의 일부를 구성하는 군대였다. 이성계(李成桂)의 정치 ·군사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 몫을 담당했던 것도 이 시위패의 한 부류였다.

시임[時任] : 1.=현임(現任). 2.현재의 관원.

시장[諡狀] : 〈역사〉재상이나 유교에 밝은 사람들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임금에게 건의할 때에, 그가 살았을 때의 일들을 적어 올리던 글.

시장[試場] : 과거 시험장. 시소(試所).

시장[諡狀] : 시호(諡號)를 내리기 위해 대상되는 사람에 대한 행적과 공적을 적은 행장(行狀).

시정[市井] : 1.인가가 모인 곳. 중국 상대(上代)에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가구(街衢) · 방간(坊間). 2.=시정아치.

시정기[時政記] : 〈역사〉임금이 정무를 집행할 때에, 그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역사에 남을 만한 자료를 사관(史官)이 추려 적은 기록.

시종[侍從] : 1.〈역사〉=시종신. 2.〈역사〉조선 말기에, 궁내부의 시종원에 속한 주

임관 벼슬. 임금을 곁에서 모시어 어복(御服)과 어물(御物)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으며, 정원은 18명이었다. 3.〈가톨릭〉=시종직.

시책문[諡册文] : 제왕(帝王)이나 후비(后妃)의 시호를 임금께 아뢸 때에, 그 생전의 덕행을 칭송하여 지은 글.

시헌력[時憲曆] : 〈역사〉태음력의 구법(舊法)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만든 역법. 중국 명나라 숭정 초기에 독일의 선교사 아담 샬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인조 22년(1644)에 김육이 연경에서 들여와서 효종 4년(1653)부터 사용하였다.

시호[諡號] :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임금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에는 임금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음.

식물[食物] : =먹을거리.

식사[食事] : ①여러 가지 음식(飮食)을 먹는 일 ②또는, 그 음식(飮食)

식자[識者] : 학식, 견식, 상식이 있는 사람.

신묘[辛卯]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여덟째.

신미[辛未] : 〈민속〉육십갑자의 여덟째.

신사[辛巳] : 〈민속〉육십갑자의 열여덟째.

신상[申商, 1372~1435] : 고려 말 조선 초 문신.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경상도 도관찰사 · 대사헌 · 이조참판 · 우군도총제 겸 평안도 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425년 형조판서, 이듬해 예조판서가 되었다.

신서[臣庶] : ①신하(臣下)와 서민(庶民) ②또는, 많은 신하(臣下)

신시[申時] : 〈민속〉1.십이시의 아홉째 시. 오후 세 시에서 다섯 시까지이다. ≒신(申). 2.이십사시의 열일곱째 시. 오후 세 시 반에서 네 시 반까지이다. ≒신 · 포시(晡時)

신유[辛酉] : 〈민속〉육십갑자의 쉰여덟째.

신임옥사[辛壬獄事] : =신임사화[辛壬士禍] :〈역사〉조선 경종 원년(1721)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사화.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정무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이들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하여 사대신이 극형에 처해지게 하였다.

신정[新政] : 새로운 정치.

신종[神宗] : 〈인명〉고려 제20대 왕(1144~1204). 이름은 탁(晫). 초명은 민(旼). 자는 지화(至華). 최충헌이 옹립하였던 왕이다. 재위 기간은 1197~1204년이다.

신주[新主] : 새로운 주군

신지[信地] : 1.=목적지. 2.〈역사〉정해진 순찰 구역.

신청[宸聽] : 임금이 듣는 것을 높이는 말.

신축[辛丑] : 〈민속〉육십갑자의 서른여덟째.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신하는 신하노릇 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 :《서경》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이다.

신해[辛亥]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여덟째.

실록[實錄] : 1.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 2.한 임금이 재위한 동안의 정령(政令)과 그 밖의 모든 사실을 적은 기록. 임금이 승하한 뒤, 실록청을 두고 시정기(時政記)를 거두어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록청[實錄廳] : 조선시대에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기구. 실록찬수청(實錄纂修廳)의 약칭이다. 임금이 죽고 새 임금이 즉위하면 실록청을 임시로 설치하고 총재관(總裁官)과 당상(堂上) ·낭청(郎廳)을 임명하여 여러 부서(部署)로 나누어 전왕대(前王代)의 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대개 도청(都廳)과 3방(房)으로 나누어 일을 분담하였다.

심도[沁都] : 강화도(江華島)의 별칭(別稱).

심법[心法] : ①정신(精神) 곧 사물(事物)을 의식(意識)하는 마음 ②마음을 쓰는 법

십고십상[十考十上] : 관리의 근무성적이 10차례 평정(評定)하여 10번 모두 상등(上等)인 것을 말함.

싸라기 : 1.부스러진 쌀알. 2.=싸라기눈.碎米[쇄미]

ㅇ

아골 : 금조(禽鳥)(날짐승)의 하나. 나친. 난추니라고도 함.

아문[衙門] : 관아(官衙)의 총칭.

아전[亞銓] : 조선시대 문·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은 전조(銓曹)의 버금가는 벼슬이라는 뜻으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참판(參判)을 달리 이르는 말.

아정[阿鼎] : 죽임을 당하는 것. 중국 전국 시대(戰國時代) 아대부(阿大夫)는 치민(治民)이 엉망이었으나 근신(近臣)들에게 뇌물을 바쳐 항상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를 안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그를 팽형(烹刑)에 처하였음.

아조[我朝] : 우리 왕조.

안접[安接] :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머물러 삶. 즉 거주지가 정확치 않은 사람을 편호(編戶)하여 일정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

안행동[雁行洞]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마근포리[麻近浦里]이다. 한강이 마을을 둘러싸는 형세이다. 자연마을로는 안행동, 덕개 등이 있다. 안행동은 기러기가 줄지어 날으는 형세라 하여 기러기 안(雁)자와 갈 행(行)자를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개에는 포구가 있어 인천과 서울을 왕래하는 많은 운반석과 어선들로 성황을 이룬 적도 있었다 하여, 지덕이 좋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졌다.

애책문[哀册文] : 제왕이나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글.

야대[夜對] : 임금이 밤중에 신하들 불러서 경연(經筵)을 베풀어 경사(經史)의 고금(古今) 치란(治亂)에 대하여 강(講)하던 일. [참고어]: 야대법(夜對法).

약년[弱年] : 나이가 어림. 또는, 어린 나이

약산[藥山] : 현 김포시 대곶면 약암2리 소재, 해발 135미터로 옛 문헌에는 약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조선지지자료〉에 승마봉으로 기재되어 있다. 봉수대가 있었으나 일제가 산의 혈을 끊기위해 정상에 쇳물을 끓여 부었다고 한다.

양감[量減] : 크기 혹은 그 수를 줄이다.

양계[兩界] : 고려·조선시대의 특별 행정구역.

양남[兩南] :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을 아울러 이르는 말.

양력[陽曆] : 〈천문〉=태양력.

양맥[兩麥] : 보리와 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양봉[襄奉] : 장례를 모심.

양사[兩司] : 조선시대의 양사(兩司)는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합한 말이다. 대간(臺諫)이라고도 한다. 사헌부관 정치의 시비에 대한 언론활동 및 백관(百官)을 규찰하며 기강·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았으며, 그 책임자는 대사헌이다.

양서[兩西] : 〈지리〉황해도와 평안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늑황평양서.

양성지[梁誠之, 1415~1482] :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 《동국지도》 등을 찬진하였고 홍문관 설치를 건의하였다. 《예종실록》 등의 편찬에 참여하고 공조판서 ·대사헌 등을 거쳐 홍문관대제학이 되어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하였다. 본관 남원(南原). 자 순부(純夫). 호 눌재(訥齋) ·송파(松坡). 시호 문양(文襄). 1441년(세종 23) 진사와 생원에 합격하고,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경창부승 ·성균관주부를 거쳐, 이듬해 집현전(集賢殿)에 들어가 부수찬 ·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겸 고려사수사관(高麗史修史官)으로 《고려사(高麗史)》 개찬(改撰)에 참여하였다. 이어 집현전직제학(直提學)에 승진, 1453년(단종 1) 왕명으로 《조선도도(朝鮮都圖)》 《팔도각도(八道各圖)》를 작성하고, 이듬해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찬진(撰進)하였다. 1455년(세조 1)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편찬, 1463년 왕명으로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찬진하고 홍문관(弘文館) 설치를 건의하여 책을 보관하게 하였다. 1469년(예종 1) 중추부지사(知事) ·홍문관제학(提學) ·춘추관지사를 겸직하며 《세조실록》, 1470년(성종 1) 《예종실록》 등 편찬에 참여하고, 공조판서를 거쳐 1471년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1477년 대사헌에 재임되었고, 1481년 홍문관대제학(大提學)으로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관여하였다. 그해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 1482년 서적의 인간(印刊) ·수장(收藏)에 관한 12조의 건의문을 올렸다.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으며, 문집에 《눌재집》, 저서에 《유선서(論善書)》 《시정기(時政記)》 《삼강사략(三綱事略)》 등이 있다.

양심합[養心閤] : 창덕궁 재실(齋室)

양위[讓位] :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선양(禪讓) · 선위(禪位).

양이[洋夷] : 서양(西洋)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서양(西洋) 오랑캐

양인[良人] : 벼슬아치를 하지 못하고 천인이 아닌 상사람, 신분이 귀족 · 평민 · 천민의 엄격한 분류에서 양인 · 천인(賤人)의 2분 분류를 거쳐 근대에 들어오면서 소멸하는 과정에서, 천인에 대응하는 말이었지만 시대마다 지위와 구성이 일정하지 않았다.

양잠[養蠶] : 누에를 칠. 누에치기.

양종[兩宗] : 조계종과 천태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교종과 선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양천[陽川] : 양천은 지금의 서울시 강서구를 말한다.

양천현[陽川縣] : 경기도 김포군 동부를 차지하고 있던 옛 행정 구역이며 1914년에 김포군에 통합되었음. 고호는 제차파의(齊次巴衣) · 공암(孔岩) · 제양(齊陽) · 파릉(巴陵) · 양평(陽平) · 양원(陽原) 등임. 현 서울시 양천구

양향[粮餉] : ①양식(糧食) ②군사(軍士)의 양식(糧食). 군량(軍糧)

양향[糧餉] : 군량.

양현[養賢] : 뛰어난 인재를 키움.

양화도[楊花渡] : =〈지명〉양화진[楊花津] :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 북안(北岸)에 있던 나루. 양화도(楊花渡)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한양(漢陽)에서 강화(江華)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상에 있던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조운(漕運)을 통하여 삼남(三南) 지방에서 올라온 세곡(稅穀)을 저장하였다가 재분배하는 곳이었다. 또 한양의 천연방어선을 이루는 요지였으므로 진대(鎭臺)를 설치하였다.

양화진[楊花津] :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 북안(北岸)에 있던 나루. 양화도(楊花渡)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한양(漢陽)에서 강화(江華)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상에 있던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조운(漕運)을 통하여 삼남(三南) 지방에서 올라온 세곡(稅穀)을 저장하였다가 재분배하는 곳이었다. 또 한양의 천연방어선을 이루는 요지였으므로 진대(鎭臺)를 설치하였다.처음에는 도승(渡丞)을 배치하였다가 뒤에 별장(別將)으로 바꾸었으며, 10척의 선박이 배치되었고, 어영청(御營廳)이 관할하였다. 세곡을 관리하기 위하여 호조(戶曹)에서는 점검청(點檢廳)을 두었다. 한편 이 지역은 정자

가 많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름이 났을 뿐만 아니라, 초기 천주교도들이 순교한 곳인가 하면 상해에서 암살당한 개화의 선각자 김옥균(金玉均)의 시체가 청나라와 정부에 의해 능지처참 당한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 지역에 양화진 순교자 기념관과 한만 한국의 개화에 공헌한 외국인들의 공동묘지인 외인묘지가 있다.

어가[御駕] : 〈역사〉임금이 타던 수레. 늑거가(擧駕) · 금여 · 난거(鑾車) · 대가(大駕) · 대로(大輅) · 보가(寶駕) · 봉가 · 봉차(鳳車) · 승여 · 연곡 · 왕가(王駕) · 용가 · 용거.

어량[魚梁] : 물이 한 군데로만 흐르도록 물살을 막고 그 곳에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도록 한 곳.

어서[魚書] : 임금이 외방에 나가는 신하에게 주는 부절(符節)로, 그 위에 글씨를 새겨 줌.

어영대장[御營大將] : 〈역사〉조선시대에 둔 어영청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이품이다. 늑어장(御將).

어전[漁箭] : 고기가 들도록 물 속에 싸리 · 참대 · 장목 등을 둘러 꽂아 둔 울. 어살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관에서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등급을 나누어서 대장(臺帳)을 만들어 호조 · 도(道) · 고을에 비치하여 일정한 어전세를 거두었다.

어휘[御諱] : =어명[御名] 국서에 쓰는 임금의 이름을 이르던 말.

억매[抑買] : =강매(强買) 강권에 못 이겨 남의 물건을 억지로 삼. 늑늑매(勒買)

언전[堰田] :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개간한 밭.

엄교[嚴敎] : 1.엄격한 가르침. 2.엄한 교지나 분부. 3.남의 가르침을 높여 이르는 말.

여당[餘黨] : 패하거나 망(亡)하고 남은 무리

여묘[廬墓] :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무덤 근처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

여사[女史] : 여자 종

여산[驪山] : 중국 옹주(雍州) 신풍현 남쪽에 있는 산. 진(秦)나라 시황(始皇)의 장지인데, 군국(郡國)에서 역도(役徒)를 보내어 역사하게 하였음.

여역: 〈한의학〉전염성 열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늑여질 · 역려 · 온역(瘟疫).

여원[戾園] : 중국 한(漢)나라 무제의 태자 여(戾)의 무덤. 태자가 강충(江充)의 무고로 죽자 무제가 시호를 '여'로, 그의 무덤을 높여 '여원'이라 하였음.

여장[女墻] : 성(城) 위에 낮게 쌓은 담.

역[驛] : 〈역사〉중앙 관아의 공문을 지방 관아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 벼슬아치의 여행과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곳. 주요 도로에 대개 30리마다 두었다. 늑우역(郵驛).

역[役] :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람은 누구나 포괄적인 의미의 역을 부담하였음. 이보다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벼슬을 제외한 역역(力役 : 육체 노동)을 지칭하기도 하였음. 또 가장 좁은 의미로는 그 중에서 요역)만을 가리키기도 하였음.

역관[譯官] : 고려와 조선시대에 통역, 번역 등 역학(譯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

역로[驛路] : 역마(驛馬)를 바꿔 타는 곳과 통하는 길.

역법[曆法, almanac] :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겨나가는 방법으로 시간단위를 정할 때 주로 달과 같은 천체의 주기적 현상이 기본이 된다.

역승[驛丞] : 〈역사〉고려 · 조선시대에, 전국에 설치한 역을 관장하던 종구품 벼슬. 조선 중종 30년(1536)에 찰방으로 고쳤다.

역질[疫疾] : 급성(急性) 전염병(傳染病)의 한 가지. 처음 걸리면 연이 몹시 오르고 오슬오슬 떨리며, 홍역처럼 발진이 온몸에 나는 데 따지가 저절로 떨어지기 전(前)에 긁으면 곰보가 됨. 천연두(天然痘)를 韓方(한방)에서 일컫는 말

연령군[延齡君] : 연령군은 1699년(숙종 25)에 조선 제19대 숙종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도총관을 지냈으나 21세에 요절하였다. 어머니는 명빈박씨이다

연로[沿路] :=연도[沿道] :큰 도로 좌우에 연하여 있는 곳

연명[連名] : 연명(聯名). 두 사람 이상(以上)의 이름을 한 곳에 잇달아 씀

연명차자[聯名箚子] : 〈역사〉두 사람 이상이 연명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글.

연미[燕尾] : 제비의 꼬리.

연미정[燕尾亭]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에 있는 정자. 지정번호 인천유형문화재 제24호. 최초 건립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고려 제23대 왕 고종이 구재(九齋)의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면학하도록 했다는 기

록이 있다. 그뒤 조선시대 삼포왜란 당시 왜적을 무찌르고 1512년 함경도 지방 야인(野人)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등 국가에 공로가 많은 황형(黃衡)에게 조정에서 세워 하사하였다고 한다. 연산 2년(1496년) 12월 숭문당(崇文堂)을 고쳐 희정당(熙政堂)이라 칭하였으며,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다가 1917년 대화재 이후 경복궁의 강녕전(康寧殿)을 이전하여 1920년 12월에 재건된다. 희정당은 왕의 침전(寢殿)으로 사용되었다가, 순조대에 이르러서는 편전(便殿)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조 30년 5월에는 효명세자(후에 익종으로 추존)가 이곳에서 승하했으며, 고종이 경복궁 완공 전까지 머물던 곳이다.현재 보물 815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안부[延安府] : 황해 연백군에 있던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고구려 때 동음홀(冬音忽), 통일신라 때 해고군(海皐郡), 고려 초에 염주(鹽州), 고종 때 영응현(永膺縣) ·복주(復州), 원종 때 석주(碩州), 충렬왕 때 온주(溫州) 등으로 고쳐 내려오다가, 충선왕 때 연안부로 고쳤다. 조선 태종 때는 연안도호부로 올려 경기도에서 황해도로 이관하고 1895년 군(郡)으로 되었으며 1914면 배천군(白川郡)을 합하고 평산군(平山郡)의 일부를 편입하여 연백군이 되었다.

연제[練祭] :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돌아간 어머니의 한 돌 만에 지내는 소상(小祥)을 미리 다가서 열 한 달만에 지내는 제사(祭祀). 연제사(練祭祀)

연조[年條] : 1.어떠한 일에 종사한 햇수. 2.사물의 역사나 유래. 3 어떠한 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조목.

연포회[軟泡會] : 꼬챙이에 꿴 두부를 닭국에 끓여 놓고 모여서 먹고 노는 일.

연한[年限] : 정하여지거나 경과한 햇수. 늑연기(年期).

연희방[燕喜坊] : 조선시대 행정조직상의 단위 구역. 1394년(태조 3) 한양으로 천도(遷都)한 태조는 1395년 6월 한양부(漢陽府)를 한성부(漢城府)라 고치고, 9월에는 종묘사직 궁궐을 완성하였다. 1396년 백악산(白岳山) · 낙산(駱山) · 목멱산(木覓山:南山) · 인왕산을 연결하는 약 18km의 도성(都城)을 쌓았으며,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부(五府:東部 · 西部 · 南部 · 北部 · 中部) 52방(坊)으로 하고, 각 방에는 방명표(坊名標)를 세웠다. 연희방은 동부12방 중에 하나다.

열무[閱武] : 임금이 몸소 군대를 사열함.

열서[列敍] : 나열하여 서술(敍述)함

열조[烈祖] : 커다란 공로와 업적이 있는 조상.

염산[斂散] : 전세(田稅)나 혹은 진휼곡(賑恤穀) 등을 거두고 흩음.

염소[鹽所] : 소금을 굽는 곳. 곧 염장(鹽場).

염장[鹽醬] : 1.소금과 간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음식의 간을 맞추는 양념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영[令] : 역사)1.신라 때 중앙 관아의 으뜸 벼슬 가운데 하나. 병부, 조부, 예부, 사정부, 좌·우이방부, 경성주작전, 사천왕사 성전, 감은사 성전, 봉은사 성전, 봉성사 성전, 창부, 승부, 예작부, 선부, 영객부, 위화부 따위에 두었다. 2.백제 때 전국을 다섯으로 구획한 지방 행정 단위인 방(方)의 으뜸 벼슬. 3.고려 시대 중앙 관아의 으뜸 벼슬 가운데 하나. 경시서·내부사를 비롯한 종부시·사복시·선공사·전객시 따위에 두었고, 품계는 삼품에서 구품까지였다. 4.조선 시대 종친부의 정오품 벼슬. 부령(副令)의 위, 부수(副守)의 다음이다. 5.조선 시대 중앙 관아의 으뜸 벼슬 가운데 하나. 소격서·종묘서·사직서·평시서·사온서·의영고·장흥고·각 전(殿)과 능(陵) 따위에 두었는데, 품계는 종오품이다. 6.대한 제국 때 중앙 관아의 판임(判任) 관직 가운데 하나. 원구단 사제서(圓丘壇祠祭署), 종묘서, 사직서, 영희전, 목청전(穆淸殿), 경효전, 각 능 따위에 두었다.

영[零] : 값이 없는 수. '0'으로 표기한다. 늑공(空)·제로(zero).

영건[營建] : 집이나 건물을 지음. 늑영구(營構).

영고[寧考] : 재위 기간 동안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 가신 부왕(父王)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의 선고(先考)이자 선왕(先王)을 높여 호칭하는 말.

영돈녕[領敦寧]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조선 시대에 종친(宗親)의 일을 담당하던 돈녕부(敦寧府)의 정1품 관직으로, 정원(定員)은 1인임. 약칭(略稱)하여 영부사(領府事)나 영사(領事)라고도 함.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 조선시대에 종친(宗親)의 일을 담당하던 돈녕부(敦寧府)의 정1품 관직으로, 정원(定員)은 1인임. 약칭(略稱)하여 영부사(領府事)나 영사(領事)라고도 함.

영락[永樂] : 〈역사〉1.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391~412). 2.중국 명나라 성조의 연호(1403~1424).

영사[領事] : 삼사(三司) 춘추관(春秋館)의 장(長)

영상[領相] : 〈역사〉=영의정.

영송[迎送] :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는 일.

영위사[迎慰使] : 〈역사〉조선시대에,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임시 벼슬.

영의정[領議政] : 〈역사〉조선시대 의정부의 으뜸 벼슬. 정일품의 품계로 서정(庶政)을 총괄하는 최고의 지위이다. ≒상상(上相)·수규(首揆)·수상(首相)·영규(領揆)·영상(領相)·영합(領閤)·원보(元輔).

영재[永災] : 영구히 재결(災結)로 처리하는 것.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 고려와 조선시대에 춘추관에 두었던 관직. 정1품 관직으로 1인이며 영관사(領館事)라고도 한다. 1308년(충렬왕 34)에 사관(史館)이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바뀌었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뉘면서 영관사와 감관사(監館事)를 두어 수상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다시 예문춘추관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영관사 1원을 설치하여 시중(侍中) 이상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그 뒤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이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뉠 때 각관에 영관사가 다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영하[營下] : 조선시대 각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유수영(留守營) 따위의 관청 건물 내부나 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있는 고을을 두루 일컫기도 함. [유사어]: 영하읍(營下邑).

예관[禮官] : 〈역사〉고려 초기에 둔 육관의 하나. 예의·제향·교빙·과거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성종 14년(995)에 상서예부로 고쳤다.

예문[禮文] : ①예법(禮法)에 관(關)한 글 ②예법(禮法)과 문물(文物) ③예불하는 의식(儀式)

예문관[藝文館] : 고려 ·조선시대의 관청. 고려시대에는 제찬(制撰)과 사명(詞命: 임금의 말이나 명령)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개국 당시에는 태봉(泰封)의 관제(官制)를 계승하여 원봉성(元鳳省)을 두었다가 뒤에 학사원(學士院) ·한림원(翰林院)으로 고쳤다. 1275년(충렬왕 1) 문한서(文翰署), 1298년 사림원(詞林院), 1308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등으로 불리오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하였다.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 〈역사〉1.고려시대에,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구품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예문춘추관에 두었다가 공민왕 11년(1362)에 예문관에 소속시켰다. 2.조선시대에, 예문관에서 사초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정구품 벼슬.

예봉[銳鋒] : 1.창이나 칼 따위의 날카로운 끝. ≒기봉(機鋒). 2.날카롭게 공격하는 기세. 3.날카로운 논조나 표현.

예장도감[禮葬都監] : 예장(禮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처음에는 임시 관아이던 것을 조선 세종 6년(1424) 10월에 조묘(造墓) 예장(禮葬) 두 도감(都監)을 합하여 예장도감(禮葬都監)이라 하였음

예장[禮葬] : 종친·공신(功臣)·종1품 이상의 문·무신이 죽으면 나라에서 예를 갖추어 장사지내준 일.

예조[禮曹] : 고려·조선시대에 존속하였던 관청으로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예조판서[禮曹判書] : 〈역사〉조선시대에 둔 예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 문관의 벼슬이다. ≒종백(宗伯).

예학[禮學] : 예법에 관한 학문.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났는데 특히 상장 제례(喪葬祭禮)를 중시하였다. 예(禮)의 본질과 의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탐구하는 유학(儒學)의 한 분야. 본래 중국 고대의 종교적 제사 의식(祭祀儀式)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예는 주대(周代)에 와서 인간행위의 규범이자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정형화되면서 고대문화 전반을 의미하였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유하을 창시한 공자(孔子)는 바로 이러한 예에 정통했던 인물로 예치(禮治)를 행함으로써 당시 혼란했던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며, 예의 형식뿐만 아니라 본질을 강조하였다.

오례의[五禮儀] : 책이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약칭. 조선시대 허조(許稠) 등이 세종의 명에 의하여 중국의 예서(禮書)인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의방(依倣)하여 오례(五禮)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며, 세조가 다시 오례 중 실행할 만한 것을 채집하고 적출하여 편찬할 것을 강희맹(姜希孟)에게 명하고,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도 함께 일하게 하였으나, 결국에는 성종 5년(147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하였음. 이 서적의 규정은 대체로 국가의례(國家儀禮)의 의범(儀範)이 되었음.

오방[午方] : 〈민속〉이십사방위의 하나. 정남(正南)을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의

방향이다. ≒오(午).

오성[五聖] : 1.고대 중국의 다섯 성인. 황제(黃帝), 요(堯), 순(舜), 우(禹), 탕왕(湯王)을 이른다. 2.문묘(文廟)에 함께 모시는 다섯 성인. 공자(孔子),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를 이른다

오시[午時] : 십이시의 일곱째 시. 오전(午前) 열 한 시부터 오후(午後) 한 시까지의 동안. 24시의 열 셋째 시. 오전(午前) 열 한 시 반부터 오후(午後) 열 두 시 반까지의 동안

오활[迂闊] : 1.곧바르지 아니하고 에돌아서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2.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다. 3.주의가 부족하다.

옥송[獄訟] : 형사(刑事) 상(上)의 송사(訟事)

옹곤[雄閫] : 지역이 넓고 산물이 많은 큰 번읍.

옹정[雍正] : 〈역사〉중국 청나라 세종 때의 연호(1723~1735).

와신상담[臥薪嘗膽] : 섶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고자 고생을 참고 견디는 일을 가리키는 고사성어(故事成語). 중국 춘추 시대(春秋時代) 오(吳)나라 임금 부차(夫差)가 월(越)나라 임금 구천(句踐)을 쳐서 부왕(父王)의 원수를 갚고자 매양 섶 위에서 잠을 자면서 고생을 하였으며, 또한 월나라 임금 구천은 오나라를 쳐서 회계(會稽)의 치욕을 씻고자 쓸개를 으며 보복을 잊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음.

와주[窩主] : 여기서는 죄인의 보호자라는 뜻임.

왕화[王化] : 임금의 덕행으로 감화하게 함. 또는 그런 감화.

외간[外間] : ①친척(親戚)이 아닌 남 ②자기(自己) 집 밖의 다른 곳

외방[外方] : 1.서울 이외의 지방. ≒외소(外所) · 외하방. 2.=외지(外地). 3.=바깥쪽.

외조[外朝] : ①군왕(君王)이 국정(國政)을 듣는 곳. 외정(外廷) ②외국(外國)의 조정(朝廷)

외해[外海] : ①육지의 주위(周圍)에 있는 바다 ②외양(外洋). 대양(大洋). 원양(遠洋)

요미[料米] : 관원(官員)에서 급료(給料)로 주는 쌀. *요(料)

요역[徭役] : 〈역사〉나라에서 정남(丁男)에게 구실 대신 시키던 노동.

요충[要衝] : =요충지[要衝地] :지세(地勢)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 ≒요충(要衝) · 요해지 · 형승.

요항[要項] : 중요한 사항.

요해지[要害地] : =요충지.

용관[冗官] : 별로 중요(重要)하지 않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용구[龍駒] : 현 이름. 지금의 경기도 용인. 본래 고구려 구성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에 거서현으로 고쳐서 한주에 붙였고, 고려 초기 용구현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종 9년(1018)에 광주에 붙였다가, 명종 2년(1172)에 다시 현으로 복원. 조선 태종 13년(1413)에 처인현과 합하여 용인현이라 하였음.

용도[甬道] : 양쪽에 담을 쌓은 길.

용동[聳動] : 두렵거나 놀라서 몸을 솟구쳐 뛰듯 움직임.

용렬[庸劣] :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

용봉[龍鳳] : 1.용과 봉황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뛰어난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사[用事] : =용권(用權). [명사]권세를 부림. 늑용사(用事).

우대언[右代言] :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속한 정3품 관직.

우등[優等] : 높은 등급.

우례[優禮] : 예를 두텁게 함

우상[右相] : 〈역사〉1.발해 때에 둔, 중대성(中臺省)의 으뜸 벼슬. 2.=우의정.

우승지[右承旨] : 〈역사〉1.고려시대에, 밀직사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삼품 벼슬. 충렬왕 2년(1276)에 우승선을 고친 것이다. 2.조선시대에, 중추원이나 승정원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삼품 벼슬. 태종 원년(1401)에 우대언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우악[優渥] : 은혜(恩惠)가 매우 넓고 두터움

우익[羽翼] : 보좌하는 인,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우졸[郵卒] : 역졸(驛卒). 역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우주[虞主] : 궁중에서 우제(虞祭)를 지낼 때에 모시는 뽕나무로 만든 신주(神主).

울연[蔚然] : '울연하다'의 어근. 1.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지다. 산에 나무가 울연하다. 2.크게 성하다.

웅부[雄府] : 웅장하게 큰 고을.

원관[院館] : 나라에서 경영하는 여관. 고려·조선시대 역(驛)과 역 사이에 두었던, 출장하는 관원을 위한 국영의 여관. 원우(院宇). 원(院).

원소(園所):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과 왕의 사친(私親) 등(等)의 산소(山所)

원계[原啓] : 원(院)자로 끝난 이름을 가진 관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공문서. 일반적으로 승정원(承政院)의 계사(啓辭)를 말함.

원릉[園陵] : 임금의 능.

원악지정배[遠惡地定配] : 〈역사〉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귀양을 보내던 일.

원왕: 원굴(寃屈) 원통(寃痛)하게 누명을 써서 마음이 맺히고 억울(抑鬱)함. 원억

원임[原任] : 1.=전관(前官). 2.본디의 벼슬.

원종공신[原從功臣] : 조선시대에 큰 공을 세운 정공신(正功臣)을 정할 때 그에 따라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

원침[園寢] : 능침(陵寢). 또는 능(陵) 곁에 세워두어 제사(祭祀)에 사용하던 건물.

월곶진[月串鎭] : 강화5진의 하나. 강화읍 월곶리. 강화5진-제물진(강화읍 갑곶리), 용진진(강화 선원면 연리,향토유적 제8호), 덕진진(강화 불은면 덕성리. 사적 제226호), 초지진(강화 길상면 초지리. 사적 제225호).

월대[月臺] : 궁전 앞에 있는 섬돌.

위리[圍籬] : 〈역사〉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던 일. 늑위극(圍棘).

위어소[葦魚所] : 조선 시대 사용원(司饔院)의 한 분장(分掌). 웅어[葦魚]의 명산지인 한강 하류 고양(高陽)에 있었으며, 웅어를 잡아 왕가(王家)에 진상하는 곳임.

위안제[慰安祭] : 〈민속〉산소나 신주가 놀라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

위의[威儀] : ①무게가 있어 외경(畏敬)할 만한 거동(擧動). 예법(禮法)에 맞는 몸가짐 '계율(戒律)'의 다른 이름 ③장사(葬事)에 쓰는 항오(行伍)

위전[位田] : ①고려시대 지방의 각 역(驛)이나 향교, 또는 국가에서 정한 성황(城隍) 따위의 제사장(祭祀場) 운영 및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지장(紙匠)·묵척(墨尺)·수급(水汲)·도척(刀尺) 등에게 지급하였던 토지로 녹과전(祿科田)의 하나였음. ②조선 시대에 들어서도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각 역이나 향교·서원·제사장 등에 지급하는 위전 이외에, 왕실의 원당이 된 사찰에도 위전을 지급하였으며, 때로는 지방 관공서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된 공해전 등의 토지 명목을 위전이라 일컫기도 하였음. 한편, 논을 '위답(位畓)', 밭을 '위전(位田)'이

라 구별하기도 하였음. [유사어]: 위토(位土).

위판[位版] : =위패(位牌). 단(壇), 묘(廟), 원(院), 절 따위에 모시는 신주(神主)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목주(木主) · 위판(位版).

위호[位號] : 벼슬의 등급 및 그 이름.

유관[遊觀] :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함.

유나승[維那僧] : 절의 모든 사무를 맡고, 모든 일을 지휘하는 중

유년칭원법[諭年稱元法] : 〈역사〉고려 · 조선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때 왕이 죽은 그 해는 전 왕의 연호를 그대로 쓰고, 다음 해부터 새 왕의 연호를 쓰도록 정한 법. 단종, 연산군, 광해군 등 폐위된 왕의 경우에는 폐위년을 그대로 다음 왕의 원년으로 사용하였다.

유사[有司] : ①어떠한 단체(團體)의 사무(事務)를 맡아보는 직무(職務) ②교회(敎會)의 제반 사무(事務)를 맡아보는 직무(職務)

유사[攸司] : 그 맡은 관아(官衙).

유서[諭書] : 〈역사〉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들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

유수[留守] : 고려 · 조선시대의 지방관. 조선의 유수는 개성 · 강화 · 광주 · 수원 등에 설치했는데, 품계는 정2품 또는 종2품, 정원은 각각 2명씩 두었다. 1407년(태종 7) 종래의 개성부를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로 고치고, 유후를 두었다가 1438년(세종 20) 다시 개성부로 승격하면서 유수를 두었는데,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품계는 종2품으로 하되 유수 가운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하게 하고, 대신에 행정과 군사업무는 전임(專任) 유수가 담당하였다.

유시[諭示] : (관청(官廳)에서 백성(百姓)에게)타일러 가르침, 또는 그 문서(文書)

유시[酉時] : 〈민속〉1.십이시(十二時)의 열째 시.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이다. ≒유(酉). 2.이십사시(二十四時)의 열아홉째 시. 오후 다섯 시 반부터 여섯 시 반까지이다. ≒유

유신[儒臣] : 1.〈역사〉홍문관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2.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

유읍 : 풍요한 고을.

유종[有終] : 시작한 일에 끝이 있음.

유집[遺集] : 죽은 사람이 생전에 써서 남긴 원고를 모아 묶은 책.

유후사[留後司] : 〈역사〉조선초기에, 개성(開城)을 통치하기 위하여 둔 지방 관아.

서울을 한양으로 옮긴 뒤에 그 뒤처리를 위하여 두었는데, 뒤에 개성부로 고쳤다.

육경[六卿] : 육조(六曹) 판서(判書)의 아칭(雅稱)

육경[毓慶] : 경사(慶事)를 쌓음. 축하(祝賀)할 만한 즐겁고 기쁜 일

육경원[毓慶園] : 조선시대 인조(仁祖)의 생모인 인헌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의 묘.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풍무리에 있는 장릉(章陵)의 이전 명칭. 인조 10년(1632) 정원군이 원종(元宗)으로 추존됨에 따라 인헌왕후로 추존되고, 능호도 정원군의 묘인 흥경원(興慶園)과 함께 장릉으로 바뀌었음.

육상궁[毓祥宮] : 〈역사〉조선시대에, 역대 임금 가운데 정궁(正宮) 출신이 아닌 임금의 생모 신위를 안치한 사당.

육전[六典] : 6조(曹)의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된 법전. 이전(吏典) ·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 ·공전(工典)의 6전을 말한다.

육조[六曹] : 고려·조선시대에 기능에 따라 서정(庶政)을 분담하고 집행하던 6개의 중앙관청인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의 총칭.

윤계[尹棨, 1583~1636] : 조선시대 문신. 1627년 정묘호란 때 상소하여 척화를 주장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자, 근왕병을 모집하던 중 청군에게 잡혀 참살되었다. 본관 남원(南原), 호 신곡(薪谷), 시호 충간(忠簡), 별칭 자 신백(信伯), 활동분야 정치, 본관 남원(南原). 자 신백(信伯). 호 신곡(薪谷). 시호 충간(忠簡).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 1627년 정묘호란 때 상소하여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배속되었다.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서 전적(典籍)으로 승진, 이어 교리가 되고 남양(南陽)부사에 이르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자,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던 중 청군에게 잡혀 참살되었다.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윤당[允當] : 진실(眞實)로 맞음. 이치(理致)에 적합(適合)함

윤대[輪對] : 조선시대에 문무 관원이 윤번으로 궁중에 참석하여 임금의 질문에 응대하던 일. 각 사(司)의 낭관은 관청의 차례에 따라 임금을 알현하고

직무에 관해 상주하고 질문에 답했는데, 동반(東班:文官)은 6품 이상, 서반(西班:武官)은 4품 이상의 관원이 해당되었다. 윤대는 날마다 이루어졌으며, 하루 윤대 인원은 5명을 넘지 않았다.

윤섬[尹暹] : 〈인명〉조선 선조 때의 문신(1561~1592). 자는 여진(汝進). 호는 과재(果齋). 1587년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중국 명나라에 갔다가 이성계가 이인임의 후손이라는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고, 1590년 광국 공신 2등이 되어 용성 부원군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때 종사관으로 상주에 내려가 박호·이경류(李慶流)와 함께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윤탁(尹擢)이 그 호수(戶數)를 줄인 도리 : 윤탁(尹擢)은 춘추 전국 시대 조간자(趙簡子)의 신하로, 진양(晉陽)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줄이고 어진 정사를 베풀었음. 후에 난리가 나 조간자의 아들 조양자(趙襄子)가 진양으로 피난하였는데, 그곳 백성들이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음.

율문[律文] : 형률의 법조문. 조선시대의 형률은 중국 명(明) 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율문은 ≪대명률≫의 법조문을 지칭함.

융복[戎服] : 군복의 하나. 싸움할 때 입었으며, 철릭[天翼]과 주립(朱笠)으로 이루어진. 철릭은 길이가 길고 허리에 주름을 잡았으며, 주립은 호박(琥珀)·마노(瑪瑙)·수정(水晶) 등으로 장식함. 문신(文臣)도 전시에 임금을 호종할 때에는 융복을 입음. 융의(戎衣)라고도 함.

융원[戎垣] : =융단[戎壇] 대장(大將)의 자리.

융희[隆熙] : 〈역사〉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 때의 연호(1907~1910).

은전[恩典] : 나라에서 내리는 혜택(惠澤)에 관하나 특전(特典)

은택[恩澤] : 은혜(恩惠)와 덕배. 인택(仁澤)

을묘[乙卯] : 〈민속〉육십갑자의 쉰두째.

을묘년 : 1495 연산 원년.

을미[乙未] : 〈민속〉육십갑자의 서른두째

을사[乙巳]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두째.

을사사화[乙巳士禍] : 〈역사〉조선 명종 즉위년(1545)에 일어난 사화. 인종이 죽자 새로 즉위한 명종의 외숙인 소윤(小尹)의 거두 윤원형이 인종의 외숙인 대윤(大尹)의 거두 윤임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대윤파에 가담했던 사림(士林)이 크게 화를 입었다.

을유[乙酉]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두째.

을축[乙丑] : 〈민속〉육십갑자의 둘째.

을해[乙亥] : 〈민속〉육십갑자의 열두째.

음가[蔭加] : 선세(先世)에 공훈(功勳)이 있을 때, 그 자손에게 추은(推恩)하여 관품을 내리는 것. 조선에서는 과거제도가 강화되어 관료제적 성격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공신이나 3품 이상의 고관 자손 및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음서(蔭敍)의 특권이 부여되었음. 음직(蔭職)으로 가자(加資)하는 음가제 또한 이러한 음서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 [참고어] : 음서(蔭敍). 음직(蔭職).

음관[蔭官] : 고려 · 조선시대 공신 및 고위 관원의 자제(子弟)로서 음직(蔭職)이 제수된 자. 남행관(南行官)이라고도 한다. 음자제 중 20세 이상된 자를 매년 정월 간단한 특별시험으로 제수하였기 때문에, 과거(科擧)에 따라 출사(出仕)하는 문 · 무관과 구별되었다. 이들은 8 · 9품 품관(品官)과 녹사(錄事)로 초임(初任)되어 대부분 5품 이상으로 진급되었으나, 하위품관으로 있다가 과거를 통하여 문 · 무관으로 진출, 출세의 길을 밟는 음관도 있었다.

음동[陰洞] : 지금의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의 능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 수레가 고리관에 이르렀다고 함으로 '고리관'은 지금의 대곶면 송마리를 말한다. 고양리는 대곶면 송마리와 경계지역이다. 이곳은 당시 포구가 있었다.

음부[淫婦] : =음녀(淫女).

음의[音義] : 글자의 음과 뜻

음직[蔭職] : 과거에 의하지 않고, 다만 부조(父祖)의 공으로 하는 벼슬.

음청[陰晴] : 날씨가 흐린 날과 갠 날, 또는 흐림과 갬. ≒청음(晴陰).

읍거[邑居] : 읍민(邑民)들이 거주하던 마을, 또는 촌락(村落). 일반적으로 관사(官舍)가 있고 읍치(邑治)가 행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관거(官居)라고도 했음. 특히 행정상의 필요나 변방의 방어와 관련하여 새로 성(城)을 쌓고 읍(邑)을 설치하기도 했고, 인근의 읍거(邑居)를 옮겨 새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읍거 지역은 매장(埋葬)을 금지하여 읍치 지역으로서 보호했음.

읍기[邑基] : 음의 터.

읍치[邑治] : 〈역사〉=고을. 1.조선시대에, 주(州) · 부(府) · 군(郡) · 현(縣) 등을 두

루 이르던 말. 늑성읍(城邑). 2.군아(郡衙)가 있던 곳. 늑성읍 ·읍치(邑治).

읍호[邑號] : 〈역사〉조선시대에, 외명부 봉작(封爵) 앞에 붙이던 읍(邑)의 칭호.

응사[鷹師] : 매를 길들이거나 매[海東靑] 사냥을 하던 사람. 고려 말 조선 초기 응방(鷹坊)에 속한 특수한 신분층으로서, 금수(禽獸)를 잡아 궁중의 제사나 공상(供上)에 바쳤음. 조선 초 병조에서 관할하던 사복시(司僕寺)의 응사(鷹師)는 3패(牌)로 나뉘어 패마다 번갈아 번상(番上)하였으며, 내응사(內鷹師)와 외응사(外鷹師)를 두어 운영하였음. [유사어]: 응인(鷹人).

응판[應辦] : 수용(需用)에 응(應)하여 판출함

의구[疑懼] : 의심(疑心)하여 두려워함

의귀[依歸] : =귀의[歸依] :1.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함. 늑의귀(依歸). 2.〈불교〉부처와 불법(佛法)과 승가(僧伽)로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청함. 불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신조이다. 늑의귀(依歸). 3.〈종교〉몰아의 경지에서 종교적 절대자나 종교적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일. 늑의귀(依歸).

의금부[義禁府] :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의려[義旅] : =의병(義兵).

의례[儀禮] : =의식(儀式).

의망[擬望] : 〈역사〉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의세[倚勢] : 세력을 믿고 재거나 억지를 씀.

의자[椅子] : 뒤에 등받이가 있는 걸상. 교의(交椅).

의장[儀仗] : ①임금의 위의(威儀)를 장식하는 부(斧), 월(鉞), 개선(蓋扇), 모(茅) 등을 말함. ②임금의 거둥 때 의장용 무기를 가지고 호위하는 군사.

의정[議政] : ①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의 총칭(總稱). ②조선(朝鮮) 광무(光武) 6년에 설치(設置)한 의정부(議政府)의 으뜸 벼슬. 광무(光武) 9년에 의정 대신(大臣)이라 개칭(改稱)함. ③의회(議會) 주의(主義)에 의(依)한 정치(政治). 의회(議會) 정치(政治)

의정[議定] :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이나 관서(官署)에서 보고한 사목(事目)에 대하여 의정부(議政府)나 육조(六曹)에서 중신(重臣)들이 모여 의논하여 결정함.

의정부[議政府] : 〈역사〉조선시대에 둔, 행정부의 최고 기관.

의창[義倉] :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에 이것을 내어 빈민을 구제하던 제도. 중국 한(漢) 나라 때 창설되어 수·당(隋唐) 시대에 널리 행하여졌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 성종 5년(986)에 종래의 흑창(黑倉)을 의창(義倉)으로 개칭하여 실시하여, 조선 시대까지 계속하였음. 원래 의창은 환곡(還穀)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이식(利息)을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

의처[議處] : 의논하여 처리함.

이궁[離宮] : 임금이 국도(國都)의 왕궁 밖에서 머물던 별궁. 행궁(行宮)이라고도 한다. 피서(避暑)·피한(避寒)·요양을 위해 짓거나 경승지(景勝地)에 짓기도 하였지만, 통치력의 효과적인 과급을 위해 지방의 요지에 이궁을 지어 돌아가면서 머물기도 하였다.

이목[耳目] : 1.귀와 눈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주의나 관심. 3.귀와 눈을 중심으로 한 얼굴의 생김새.

이문[移文] : =이[移] :〈역사〉중국 한대(漢代)의 공문서 가운데 같은 등급의 관아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서. 때로는 격(檄)과 더불어 포고문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늑공이(公移)·이문(移文)·이서(移書)·회이(回移).

이배[移配] : 귀양살이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김

이생대전[泥生垈田] : 홍수 또는 물길의 변동으로 생긴 하천 연안의 개흙땅. 이생지(泥生地). 이생처(泥生處). 이생전(泥生田).

이설[移設] : 다른 곳으로 옮기어 설치함.

이속[移屬] : [북한어] 옮겨 소속시킴.

이숙[1625~1690] : 조선 후기의 문신. 11세 때 병자호란으로 포로로 선양에 붙잡혀 갔다가 회은군의 주선으로 귀국했다. 효종 때 삼사에 출입하였으며 우의정에 이르렀다. 경상감사 때 선정으로 여러 고을에서 사당을 세워 배향하였다. 본관 우봉(牛峯), 호 일휴정(逸休亭), 시호 충헌(忠獻), 별칭 자 중우(仲羽), 활동분야 정치, 본관 우봉(牛峯), 자 중우(仲羽). 호 일휴정(逸休亭). 시호 충헌(忠獻). 1636년(인조 14) 11세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포로로 선양(瀋陽)에 붙잡혀 갔다가 회은군(懷恩君)의 주선으로 귀국하였다. 1648년 진사에 합격하고 1655년(효종 6) 문과에 급제, 한림(翰林)을 거쳐 삼사(三司)에 출입하였으며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경상감사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여러 고을에서 사당을 그를 배향하였다.

이숙번[李叔蕃, 1373~1440] : 조선 전기의 문신. 안산군지사 때 방원을 도와 제1

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웠다. 박포, 조사의 반란을 진압했다. 병조판서,좌참찬·찬성 등을 지내고 안성부원군에 봉해졌다. 공이 큰 것에 자만, 탄핵 받아 유배되었다.《용비어천가》편찬에 참여했다.

이양선[異樣船] :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으로, 다른 나라의 배를 이르는 말. 주로 조선 시대에 외국의 철선을 이르는 데에 쓰였다.

이유[李瑜] : 금성대군.

이예[吏隷] : 지방 관아에 속한 아전과 하인. 이예에는, 관아의 관장(官長)에 딸린 심부름꾼인 육방의 지인(知印)과 통인(通引), 현령의 좌이관(佐貳官)인 전리(典吏), 무청(武廳)에 속한 군관(軍官)과 포교(捕校), 관부나 궁방에 예속되어 둔전(屯田)을 검분(檢分)하고 감독했던 둔감(屯監) 등이 있었음. 원래 정원은 없었고, 지방 행정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맡았으나 본래의 임무 대신에 대부분 관원의 사사로운 일을 하였고, 노예나 포로같이 천대받았음.

이원[李原, 1368~1429] :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조선 개국 후 3번 대각에 들어가 공명정대하게 처리했고, 정종 때 좌부승지에 올랐다. 제2차 왕자의 난 때 방원을 도와 좌명공신이 되고, 철성군에 봉해졌다. 세종 즉위 후 우의정, 좌의정에 올랐다.

이왕직[李王職] : 〈역사〉일제 강점기에, 궁내부에 속하여 조선 왕실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이조[吏曹] : 〈역사〉1.고려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문관의 선임(選任)과 훈봉(勳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이조판서[吏曹判書] : 〈역사〉이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의 문관 벼슬이다. ≒총재

이직[李稷, 1362~1431] :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에 공헌했고, 제2차 왕자의 난에 방원을 도왔다. 주자소를 설치, 동활자 제미자를 만들었다. 성산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세종 때 영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문집 《형재시집》이 있다.

익[翼] : 조선조 때 함길도(咸吉道)와 평안도(平安道)에 설치하였던 특수한 군사 조직.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의 편제를 중심으로 군익도(軍翼道)를 만들어 적(賊)의 침입에 대비하였음.

익명서[匿名書] : 글쓴이가 자기 이름을 감추고 쓴 글.

인견[引見] : ①인도하여 보임. ②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 만나봄. ③

임금이 신하를 불러 들여 만나봄.

인녕부[仁寧府] : 조선 태종이 정종 2년(1400) 11월에 양위를 받은 뒤에 두었던 관아. 선위(禪位)한 상왕(上王) 정종의 왕후(王后)에 대한 공봉(供奉)과 그 밖의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았음. 세종 2년(1420) 3월에 공안부(恭安府)가 폐지됨과 동시에 인녕부에 통합되었다가 동왕 3년(1421년) 10월에 인녕부를 경순부(慶順府)로 만들어 동궁(東宮)에 속하게 함.

인리[人吏] : 〈역사〉1.=서리(胥吏). 2.고려시대에, 임기를 마치고 동정(同正)의 직책으로 진급할 수 있는 구실아치. 기관(記官), 기사(記事)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인리[隣里] : ①이웃 동네. 인곡(隣曲). 인동(隣洞) ②이웃 이(里)

인마[人馬] : 1.사람과 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마부와 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인빈[仁嬪] : 인빈김씨는 1555년(명종 10) 2월 김한우(金漢佑)의 딸로 태어나 선조의 후궁이 되었으며, 원종(元宗:仁祖의 아버지)을 낳았다. 1613년(광해군 5) 10월 59세에 죽어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친궁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인신[印信] : 나무 · 돌 · 쇠붙이에 글자를 새기어 신빙 증거로 삼는 것. 도장 · 관인(官印) · 회인(會印) 등의 총칭. 임금이 쓰는 것을 새(璽), 관리는 인(印), 평민은 사인(私印)이라 함. 조선 시대 여러 관부(官府)의 인신(印信)의 제도는 태종 3년(1403) 2월에 정하였음.

인아 : 사돈과 종서.

인왕산[仁王山/仁旺山] : 〈지명〉서울 서쪽, 종로구와 서대문구 사이에 있는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반이 노출된 것이 특징이다.

인정전[仁政殿] : 창덕궁의 정전(正殿). 창덕궁은 태종 4년(1404)에 별궁으로 창건되었으며 인정전은 세종 즉위년에 준공, 임진왜란으로 불타 광해군 3년(1611)에 재건. 지금의 건물은 순조 30년(1830)에 실화하여 이듬해 중건한 것임.

인조반정[仁祖反正] : 〈역사〉조선 광해군 15년(1623)에 이귀 · 김류 등 서인(西人)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파인 대북파(大北派)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인 인조를 즉위시킨 정변. 늑계해반정.

인후[咽喉] : 〈의학〉식도와 기도를 통하는 입속 깊숙한 곳. '목구멍'으로 순화. /

①목구멍. ②급소, 혹은 요해처.

일강[日講] : 1.매일 선생 앞에서 외는 강. 2.매일 강의함.

일도[一道] : 한 도내(道內).

임내[任內] : ①고려·조선 초 때 일종의 특수 행정 구역으로 인체의 부역·과세·공납 등을 위임 집행하는 곳. 이 구역은 호장(戶長)이 다스리고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임. 조선 초에 혁파하였으나 세종 25년(1443) 경까지 간혹 존속하였음. ②관할 내(管轄內). 소관 내(所管內).

임술[壬戌] : 〈민속〉육십갑자의 쉰아홉째.

임시[臨時] : 1.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한 것. 2.미리 얼마 동안으로 정하지 아니한 잠시 동안.

임신[壬申] : 〈민속〉육십갑자의 아홉째.

임오[壬午] : 〈민속〉육십갑자의 열아홉째.

임인[壬寅]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서른아홉째.

임자[壬子] : 〈민속〉육십갑자의 마흔아홉째.

임진[壬辰]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아홉째.

입거[入居] : ①들어가 삶 ②조선(朝鮮) 시대(時代) 초기(初期)에 함경도(咸鏡道)·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 지방(地方)에 이주(移住)한 백성(百姓)

입계[入啓] : 〈역사〉임금에게 상주하는 글을 올리던 일.

입시[入侍]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알현하고 모시고 있는 것.

입식[笠飾] : 융복(戎服)의 갓[冠]에 갖추는 장식.

입안[立案] : 청원(請願)에 대하여 관청에서 인가 또는 인증(認證)하는 문서.

입표[立標] : 1.나무, 돌, 기 따위로 표를 세움. 또는 그 표. 2.〈해양〉암초, 여울 따위에 세우는 경계 표지.

입후[入後] : 양자를 들임. 또는 양자로 들어감.

잉첩[媵妾] : 예전에, 귀인에게 시집가는 여인이 데리고 가던 시첩(侍妾). 신부의 질녀와 여동생으로 충당하였다.

자긍[資窮] : 당하관(堂下官)으로서의 품계(品階)가 다 되어 다시 더 이상 올라갈 자급(資級)이 없이 되는 것.

자급[資級] : 벼슬아치의 직품(職品)과 관계(官階). 조선 시대는 정(正) 종(從)의 각

품(品)마다 상(上) 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자계(資階).

자목[字牧] :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아 다스림을 이르던 말.

자장[資裝] : 시집갈 밑천.

자좌오향[子坐午向] : 자방을 등지고 오방(午方)을 향함. 즉 정남향으로 앉음

자호[字號] : 1.토지의 번호나 족보의 장수 따위를 숫자 대신 천자문의 차례에 따라 매긴 번호. 2.활자의 호수(號數). 늑일자호.

작벌[斫伐] : 나무를 찍어서 베어 냄. 늑참벌(斬伐).

작폐[作弊] : 폐단(弊端)을 만듦. 폐를 끼침

작헌례[酌獻禮] : 〈역사〉임금이 몸소 왕릉, 영전(影殿), 종묘(宗廟), 문묘 따위에 참배하고 잔을 올리던 제례. 재계(齋戒), 진설(陳設), 거가 출궁(車駕出宮), 작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잔폐[殘廢] : =잔멸(殘滅).

잠저[潛邸] : 창업(創業)의 임금이나 종실(宗室)에서 들어온 임금으로서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이나 또는 그 동안에 살던 집.

잡물[雜物] : 1.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 2.순수하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해가 되는 물질이나 물체.

잡서[雜書] : 1.여러 가지 잡다한 사실을 적은 책. 2.되는대로 함부로 모아 엮은 책. 3.도서 분류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책. 4.한학에서, 경사자집이 아닌 책을 이르는 말.

장[狀] : 장계(狀啓). 감사(監司) 또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벼슬아치가 글로 써서 임금에게 올리는 계본(啓本).

장[杖] : ①오형(五刑) 중의 장형(杖刑)을 집행할 때 사용하던 매로서 가시나무의 가지로 제작하였음. 장의 길이는 3척 5촌으로서 대두(大頭) 쪽의 지름은 3푼 2리이고 소두(小頭) 쪽의 지름은 2푼 2리임. 장으로 수형자의 볼기를 치는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의 옹이나 나무눈을 제거하였음. 장형은 죄의 경중에 따라 60대 · 70대 · 80대 · 90대 · 1백 대의 다섯 종류로 나뉘었음. ②긴 막대기 또는 몽둥이 등의 휴대용 병기. 조선 시대 민간인이 직숙 등에 임시로 동원될 때 지참하던 약식병기의 일종이었음.

장계[狀啓] : 〈역사〉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

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늑계장(啓狀).

장달[狀達] : 〈역사〉지방 감사나 임금의 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섭정하는 왕세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보고.

장령[掌令] : 〈역사〉1.=감찰장령. 2.=사헌장령. 3.조선시대에, 사헌부(司憲府)에 속한 정사품 벼슬. 태종 원년(1401)에 시사(侍史)를 고친 것이다.

장릉[章陵] : 〈고적〉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 원종과 비 인헌 왕후의 능. 사적 제202호.

장릉[長陵] : ①고려 인종(仁宗)의 능. ②조선 인조(仁祖)와 그의 비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의 능. 처음에는 파주군의 북쪽에 있는 북운천리에 있었는데, 영조 7년(1731)에 뱀이 들끓어 현재의 위치로 옮겨서 합장함. 능(陵)의 수호를 위해 영(令) 1인, 참봉(參奉) 1인을 두었음.

장보[章甫] : ①중국 은(殷) 나라 시대에 머리에 쓰던 예관(禮冠). 치포(緇布)로 만들었으며, 공자(孔子) 이후로는 유관(儒冠)으로 쓰임. ②유생이나 선비를 지칭하는 말. 공자(孔子)가 장보라는 관을 쓰자, 후세 선비들이 이를 좇아 장보를 많이 쓰면서 '장보를 쓴 남자'가 명사화한 것.

장사진[長蛇陣] : 중국 손자(孫子)의 진법(陣法). 군사를 일렬로 길게 벌이고, 머리와 꼬리를 서로 상응하게 하여 전·후·좌·우에서 서로 구원하도록 하는 형세임. 따라서 적이 앞을 공격하면 뒤에서 나와 구원하고, 중간을 공격하면 앞과 뒤에서 나와 구원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사(蛇)이라고 이름한 것은 뱀이 인팔을 잘 막아내기 때문이라고 함. 한편 여기서 유래하여 많은 사람이 줄지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양을 장사진으로 비유하여 표현함.

장선[裝船] : 배에 짐을 실음.

장신[將臣] : 군영의 우두머리 장수를 지칭하는 말.

장의문[藏義門]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서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자하문고개 혹은 창의문 고개라 한다. 고개마루턱에 자하문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자하문 정식 이름은 창의문으로 도성의 북문인 숙청문에서 서쪽으로 능선을 따라오면 있다. 창의문을 장의문이라고도 불렀다. 이론인해 청운동, 적선동 일대를 장의동, 줄여서 장동 이라 칭했다. 또 성박 신영동에 있던 장의사의 이름에 연유하여 일명 장의문이라고도 했다.

장제군[長堤郡] : 인천광역시 계양구(桂陽區) 일대의 옛 이름. 본래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인데, 신라 경덕왕 때에 장제군(長堤郡)으로, 고려 초기에는 수주(樹州)로 개명하였다. 1215년(고종 2)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승격하였다가 1308년(충렬왕 34) 길주목(吉州牧)으로 개칭되었으며, 1310년(충선왕 2)에 부평부(富平府)로 강등되었다. 조선시대 1895년(고종 32) 군으로 승격하였다가 1913년 일제강점기에 남양군(南陽郡)과 인천부(仁川府)의 1부를 합하여 부천군(富川郡)을 형성하였으며, 1970년대에 부천군 소사읍(素砂邑)이 부천시(富川市)로 승격하면서 부천군이 폐지되었고, 부천군의 일부는 김포군의 계양면에 편입되었다.

장죄[贓罪] : 〈법률〉1.관리가 뇌물을 받은 죄. 2.=장물죄.

장지[葬地] :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

장창[長槍] : 〈군사〉예전에, 긴 자루에 날을 붙여 군사들이 무기로 쓰던 칼. 전체 길이는 4미터 안팎이며, 창날 길이는 약 40cm이다.

장청[狀請] : 〈역사〉임금에게 글을 올려 청원하던 일.

재결[災結] :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

재결[裁決] : 이의신청이나 소원(訴願) 또는 재결신청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는 재정(裁定)·판정·결정·명령 등 일정하지 않으나, 재결은 보통 문서로서 행하고 반드시 그 이유를 붙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재궁[齋宮] : 임금이 육묘(六廟)에 제사하기 위하여 재계(齋戒)하는 궁전.

재년[災年] : 1.재난이 심한 해. 2.=흉년.

재신[宰臣] : 〈역사〉1.=재상(宰相). 2.고려 시대에 둔, 중서문하성의 시중(侍中) 이하 종이품 이상의 5직(職) 8인(人), 중추원의 판사(判事) 이하 종삼품 이상의 7직 9인을 이르던 추상과 함께 '재추'라고 하였다. 3.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사람.

재실[齋室] : 1.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 ≒재각(齋閣)·재궁(齋宮). 2.〈역사〉능이나 종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 ≒재전(齋殿). 3.〈역사〉문묘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던 집.

재인[才人] : 고려·조선시대에 천인(賤人)의 하나. 노래와 춤과 줄타기를 업으로

하고, 농업 등의 정업(正業)에 종사하지 않는 광대(廣大)의 한 부류. 조선 세종 5년(1423) 10월에는 화척(禾尺)과 함께 백정(白丁)이라 개칭함. 또 세종 때에는 신백정(新白丁)·재백정(才白丁)이라 불리기도 하였음.

재화[才華] : 빛나는 재주. 또는 뛰어난 재능.

저상[沮喪] : (의기나 원기(元氣) 따위)기운(氣運)을 잃음, 꺾임, 풀림, 죽음

저택[沮澤] : 개펄.

적간[擿奸·摘姦]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적발함. [유사어]: 척간(鄭奸).

적곡[積穀] : 곡식을 쌓아 둠. 또는 그 곡식.

적몰[籍沒] : 중죄인의 소유 재산을 모두 관의 장부에 등록하여 몰수함.

적인[敵人] : =원수(怨讐).

적자[賊子] : 불충하거나 불효한 사람.

적지[赤地] : 초목이 나지 않는 땅.

전[奠] : 장례 전 영좌(靈座) 앞에 간단한 술과 과일을 차려 놓는 예식.

전[箋] : 전문(箋文)의 준말. 나라에 길사·흉사가 있을 때 신하가 임금께, 또는 임금이 그 어버이의 수하(壽賀)에 써 올리던 사륙체(四六體)의 글. 사륙체는 한문체의 하나로, 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구법(對句法)을 쓰는 문장체임.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도나 함경도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 조선 세종 때부터 특별 개척(北邊開拓)이 시작되어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키는데, 이에 응하는 자가 없자, 그 정책의 하나로 전가사변을 실시, 주로 함경도 오진(五鎭)으로 이주시켰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문서 위조자·좀도둑·우마 도살자(牛馬屠殺者)·관리로서 백성을 억압하는 자 등 비교적 경범자를 대상으로 이민 정책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음. [유사어]: 전가입거(全家入居). 전가입송(全家入送).

전결[田結] : ①논밭의 결복(結卜). ②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전경문신[專經文臣] : 조선 시대 경학(經學)을 전공하는 문신. 예조(禮曹)에서 37세 이상 41세 미만의 당하관(堂下官) 가운데서 가려 뽑아 매년 사맹삭(四孟朔)에 행하는 전강(殿講)에 응시하게 하였음. [참고어]: 전강(殿講).

전계[前戒] : 선인(先人)들의 훈계.

전관[傳關] : 관문(關文)을 전함.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을 말함.

전교[傳敎] : 〈역사〉 임금이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늑하교(下敎).

전교서[典校署] : 고려시대 경적(經籍)·축소(祝疏) 등을 관장하던 전교시(典校寺)를 충렬왕 4년(1308)에 충선왕이 일시적으로 낮춰 부르던 이름.

전례[奠禮] : 신위(神位) 앞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예.

전리[田里] : ①토지와 주택. 전(田)은 백묘(百畝)의 토지, 리(里)는 오묘(五畝)의 집터를 말함. ②전사(田舍)·읍리(邑里). ③전사·읍리라는 뜻이 전하여 고향인 마을을 지칭함.

전민[田民] : ①농민. ②논밭과 노비.

전문[轉聞] : 다른 사람을 거쳐 간접으로 들음.

전사[田舍] : ①관직을 그만두고 물러가 사는 고향집이나 지방의 전지(田地)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곳. [유사어]: 전가(田家). ②곡식 창고.

전사[典祀] : 조선 말 때 장례원(掌隷院)에 딸리어 제사(祭祀)의 일을 맡아보던 칙임관(勅任官), 또는 주임관

전사청[典祀廳] : ①조선시대 문묘 제향과 제물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임. 신라 시대 성덕왕 12년(713)에는 제사를 관장하는 전사서를 설치하였음. 전사서는 예부에 속했으며 감(監)·대사(大令)·사(史) 등의 관원이 집무하였음. 통일신라 때 제사의 의식이 다양해지고 제례가 발전됨에 따라 전사(典祀) 기구를 예부로부터 독립시켜 전사청으로 분리시켰음. 고려 시대에는 전의시(典儀寺)·태상부(太常府)·봉상시(奉常寺)·대상시(大常寺) 등으로 바뀌었다가 태종 9년(1409)에 봉상시로 개칭되었음. 국가의 전사는 주로 시조에게 지내는 체사·지신에게 지내는 교사(郊祀)·종묘에 지내는 종사(宗祀)·조상에게 지내는 조보(祖報)의 다섯 가지를 말함. ②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종묘나 문묘, 기타 전각이 있는 곳에 제례 때 전사관(典祀官)이 집무하면서 제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하는 건물임.

전서[典書] :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정3품 관직.

전속[專屬] : 1.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 2.〈법률〉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

전알[展謁] : ①종묘(宗廟) 능침(陵寢) 문묘(文廟) 궁궐(宮闕) 등에 참배함. 전배(展拜). ②존경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일부러 만나 뵘. 배알(拜謁).

전연[全然] : ①아주. ②도무지. ③전혀.

전의[典醫] : 〈역사〉조선 후기에, 궁내부의 태의원에 속하여 왕의 질병과 왕실의 의무(醫務)를 맡아보던 주임(奏任) 관직.

전지[田地] : =논밭.

전지[傳旨] : ①임금의 뜻을 담당 관청이나 관리에게 전한다는 의미. ②조선 시대 세종 25년(1443)에 내린 전지에 의해서 임금이 전교(傳敎)하는 것 중에서 세세한 일에 관련된 것을 전지라고 하였음.

전지[田地] : 경작하는 토지. 논밭이 되어 있는 땅.

전지[傳旨] : 임금의 뜻을 담아 관청(官廳)이나 관리(官吏)에게 전(傳)함

전지[銓地] : 조선시대 인사 전형(銓衡)을 담당하던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지칭함.

전최[殿最] : 전조(銓曹)에서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할 때 각 관사의 장(長)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하이면 전(殿)이라 한 데서 나온 말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전토[田土] : =논밭.

전포[錢布] : [북한어]1.역사〉화폐로 쓰던 천. 2. '돈'을 달리 이르는 말.

전한[典翰] : 〈역사〉조선시대에, 홍문관에 속한 종삼품 벼슬. 유학의 경전을 관리하고 글을 다루며 임금의 물음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절급[折給] : ①국가가 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의 일부를 떼어 개인이나 관청에 주는 것. ②몇 번에 걸쳐 나누어주는 것.

절목[節目] : 규칙의 조목, 조항. 또는 항목. [유사어]: 조목(條目).

절수[折受] : 국가로부터 일종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입안(立案)을 발급받거나 전조(田租)의 수조권(收租權)을 지급받는 행위.

절식[絕食] : ①먹을 것이 끊어져 없음. 절곡(絕穀) ②단식(斷食)

절의[節義] : 절개와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점열[點閱] : 일종의 정기점검. 국가의 입장에서 장부상의 수치와 실제의 수치는 항상 비교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 그 보관상태 또한 중요한 점검사항. 따라서 국가는 군정으로부터 물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취원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파악이 소홀한 경우에는 해당자를문책하였음.

접반사[接伴使] : 〈역사〉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임시직 벼슬아치. 정삼품 이상에서 임명하였다.

접응[接應] : =응접[應接], 1.손님을 맞아들여 접대함. ≒응대(應待) · 접우 · 접응. 2.어떤 사물에 접촉함.

정국[靖國] : 증종 반정.

정교[精巧] : 정밀(精密)하고 교묘(巧妙)함

정난[靖難] : 나라의 위난을 평정(平定)함

정덕[正德] : 〈역사〉중국 명나라 무종(武宗) 연호(1506~1521)

정도전의 난[鄭道傳亂]: 제1차 왕자의 난 [第一次王子亂] 1398년(태조 7)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왕자 사이의 싸움. 무인정사[戊寅定社] 태조 7년(1398) 8월에 이 방원(李芳遠:태종)이 일으킨 정변. 무인년에 종사(宗社)를 안정시켰다는 뜻. 방원은 태조가 강비(康妃) 소생의 어린 방석(芳碩)을 세자로 책봉한데 불만을 품고 한비 소생의 형제들과 연합하고, 태조의 서제 이화(李和), 처가인 민씨 일가, 하륜(河崙), 이숙번(李叔蕃), 조영무(趙英戊) 등의 도움을 받아 정변을 일으킴. 이날 강비 소생의 두 형제와 사위 이제(李濟), 실권자이던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심효생(沈孝生), 이근(李懃), 장지화(張至和) 등 급진개혁파를 살해했음. 이 정변으로 태조는 방석을 폐위하고 정종을 세자로 책봉했으며, 곧 양위하여 정종(定宗)이 즉위함. 이때 이방원은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구래의 명문대가 출신과 이색(李穡) 계열의 온건개혁파 사류가 정권을 잡게 됨. 당시에는 정도전이 먼저 한비 소생 왕자들을 살해하려고 해서 왕자들이 대응한 것으로 처리하여 정도전의 난이라고 불렀음. [유사어]: 무인정변(戊寅政變). [참고어]: 정사공신(定社功臣).

정려[旌閭] : 〈역사〉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정련[精練] : 1.잘 연습함. 2.〈공업〉섬유를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순물을 걸러 없애는 일.

정묘[丁卯]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넷째.

정문[呈文] : 〈역사〉하급 관아에서 동일한 계통의 상급 관아로 올리는 공문. 한 면(面)에 다섯 줄로 쓰는 것이 특징이다.

정문[旌門] : 국가에서 효자(孝子) · 순손(順孫) · 의부(義夫) · 절부(節婦)와 행실이

바른 사람을 표창하기 위해 그 동네나 집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세우던 붉은 문. 마을에는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복호(復戶)로써 그 집의 부역(賦役)을 면제했으며 나아가 벼슬을 주기도 함.

정미[丁未] : 〈민속〉육십갑자(六十甲子)의 마흔넷째.

정미환국[丁未換局] : 〈역사〉조선 영조 3년(1727) 정미년에, 당쟁을 조정하려고 정부의 인사를 개편한 일. 노론, 소론을 막론하고 논의가 강경한 자를 제거하고 골고루 등용하였으나, 노론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게 되어 당쟁을 조정하는 데 미흡하였다.

정배[定配] : 〈역사〉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늑찬배(竄配).

정사[精舍] : 1.학문을 가르치기 위하여 마련한 집. 2.정신을 수양하는 곳. 3 =절.

정사[丁巳] : 육십 갑자(六十甲子)의 쉰 넷째

정사공신[靖社功臣] : 〈역사〉조선 광해군 15년(1623)에 일어난 인조반정의 공신에게 내린 훈호(勳號). 인조 1년(1623)에 김유, 이괄 등 53명에게 내렸다.

정선[精選] : ①많은 것 가운데서 특(特)히 뛰어난 것을 골라 뽑음 ②적당(適當)한 인물(人物)이나 물건(物件)을 선출(選出)함 ③또는, 그 뽑힌 사람이나 물건(物件). 정간(精簡)

정소[定所] : ①정(定)해진 거소(居所) ②일정(一定)한 장소(場所)

정소[呈訴] : 소장(訴狀)·고장(告狀)·소지(所志) 따위를 관청에 제출함. 때때로 임금의 행차 앞에서 제출하기도 하였다는 기록도 보임. [유사어]: 정고(呈告).

정속[定屬] : ①물건이나 가축, 또는 사람을 일정한 관청이나 지방에 소속하게 함. ②적몰(籍沒)된 집 사람들을 관노비 따위로 삼거나, 죄인에 대한 형벌로써 일정한 천역(賤役)에 복무시킴. [유사어]: 정역(定役).

정시[庭試·廷試] : 조선시대 나라 안이나 중국에서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특별 시험의 하나로 임금이 친람(親臨)한 가운데 행해졌음. 왜란과 호란 이후에는 그 성격이 바뀌어 강도 정시(江都庭試)·호남 정시(湖南庭試) 따위와 같이 특정 지역의 유생들과 성균관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호종 관료(扈從官僚)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음.

정신[廷臣] : 조정의 신하. 곧 명(明) 나라 신하.

정심[正心] : 마음을 올바르게 가짐. 또는 그 마음.

정언[正言] : 〈역사〉1.고려시대에, 중서문하성에 속하여 간쟁(諫爭)과 봉박(封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낭사(郎舍) 벼슬. 예종 11년(1116)에 습유(拾遺)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34년(1308)에 사보(思補)로 고쳐서 정육품으로 올렸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2.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육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문하부의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할 때 습유를 고친 것이다.

정업원[淨業院] :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다.

정원[政院] : 승정원(承政院)

정유[丁酉] : 〈민속〉육십갑자의 서른넷째.

정읍향소[井邑鄕所] : 정읍에 있는 향소[鄕所] [명사]〈역사〉 =유향소 [留鄕所] [명사]〈역사〉 고려 · 조선 시대에,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감찰하며, 민의를 대변하였다. ≒향소(鄕所) · 향청(鄕廳).

정읍현[井邑縣] : 전라북도 정읍군의 옛 행정구역이며, 고호(古號)는 정촌(井村) · 초산(楚山)임.

정의[情意] : 1.따뜻한 마음과 참된 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북한어]애정의 마음.

정일[精一] : 매우 상세(詳細)하고 한결같음

정자[正字] : ①고려시대 전교시(典校寺)의 종9품직. ②조선 초기에는 서연관(書筵官)으로 정7품직이었으나, 세종 2년(1420)에 집현전(集賢殿)의 정9품직으로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게 되었고, 이후 정9품직으로 굳어져 홍문관(弘文館) · 승문원(承文院) · 교서관(校書館)에 배치되었음.

정장[亭障] : 담을 두르고 세운 정자를 말함인데, 국경이나 요해처의 경비를 위해 세운 정자 모양의 초소(哨所)를 뜻하게 되었음. 정후. 구자(口子).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청(官廳)에다 바침 정소(呈訴)

정족산본[鼎足山本] : 『조선왕조실록』은 사료가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실록을 보관하던 창고)에 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지만 20세기 초까지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의 사고에 남아서 전해내려 왔

다. 정족산본은 1,181책으로, 태조부터 태종까지의 실록은 세종 27년(1445)에 그 이전의 춘추관본·충주사고본을 등사하고, 그 이후 명종까지의 실록은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오다, 임진왜란 때 전주 유생 안의, 손홍록에 의해 정읍군 내장산으로 운반되어 병화를 면하게 되었다. 선조 26년(1593)에 해주로 옮겼다가 다시 선조 29년(1596)에 강화도, 선조 32년(1599)에는 묘향산으로 옮겼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 36년(1603) 7월부터 선조 39년(1606) 3월 사이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4부의 실록을 다시 제작하여 강화도 마니산에 봉안하고, 이후 실록이 편찬되는 대로 첨가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을 계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뒤 효종 4년(1653)에는 불이 나서 약간의 책을 잃었으며, 현종 6년(1665)에 이를 보수하였다. 숙종 4년(1678)에는 강화도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짓고 마니산사고본을 이곳으로 옮기었다. 이후 계속 편찬되는 대로 추가하였다. 그러다가 1910년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으며, 광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그대로 소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종[鄭宗, ?~1461] : 조선시대 문종 사위. 사육신 사건으로 죄가 가중되어 수원을 거쳐 통진·광주에 안치되었다. 1461년 승려 성달 등과 모반을 꾀하였다 하여 능지 처참되었다. 본관 해주(海州). 시호 헌민(獻愍). 1450년(세종 32) 문종의 딸 경혜공주(敬惠公主)와 결혼, 영양위(寧陽尉)가 되고, 단종 초 형조판서로서 왕의 신임을 받았다. 1455년(단종 3)수양대군 제거를 모의한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친교가 있었다 하여 영월에 유배되었다. 이 해 수양대군이 즉위, 문종의 유일한 사위라는 점을 참작, 양근(楊根)에 양이(量移)되었으나, 1456년(세조 2) 사육신(死六臣) 사건으로 죄가 가중되어 수원(水原)을 거쳐 통진(通津) ·광주(光州)에 안치되었다. 1461년 승려 성달(性坦) 등과 모반을 꾀하였다 하여 능지처참되었다. 영조 때 신원(伸寃)되었고 시호가 내려졌다. 단종묘와 공주 동학사(東鶴寺) 숙모전(肅慕殿)에 배향되었다.

정처[正妻] : =정실(正室). 정실[正室] 1.'아내'를 첩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늑군부(君婦)·본실(本室)·본처(本妻)·적실(嫡室)·정처(正妻). 2.집의 몸채.

정청[政廳] : 1.정무(政務)를 보는 관청. 2.〈역사〉조선시대에, 이조나 병조의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보던 곳.

정초[正草] : 사초(史草)를 뽑을 때 중초(中草)를 보충하여 실록에 옮겨 쓰는 일.

정초본 精鈔本 : =전사본[轉寫本] 〈출판〉자필본(自筆本)에 대하여, 다른 책을 베껴 쓴 것을 이르는 말. 늑이사본.

정초본[正草本] : 저자나 편자가 처음으로 쓴 책을 고본이라 하며, 초본(草本)·초고본(草稿本)·원고본(原稿本)이라고도 한다. 고본은 문헌 또는 사료로서 일차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저자 자신이 직접 쓴 것을 자필고본(自筆稿本) 또는 수고본(手稿本)이라 하여 더욱 중요시한다. 고본은 여러 차례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먼저 작성한 것을 초고본(初稿本)·초초본(初草本)이라 하고, 초고본을 수정한 경우 재고본(再稿本)·중초본(正草本)이라고 하며, 여러 번 고쳐서 차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개고본(改稿本)·개수본(改修本)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본을 마지막으로 손질하여 완성된 것을 정고본(定稿本)·정초본(正草本)이라고 하고, 바른 글씨체로 정서한 것을 정서고본(淨書稿本)이라 하며, 목판이나 석판에 새기기 위하여 쓴 것을 판하서(板下書)라고 한다.

정축[丁丑] : 〈민속〉육십갑자의 열넷째.

정통[正統] : 〈역사〉중국 명나라 영종 때의 연호(1436~1449).

정퇴[停退] :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 공세(貢稅) 등의 정공(正供)이나, 환곡(還穀) 등을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이(災異)로 인해 진휼(賑恤)하는 차원에서 정하였던 납부 기간을 미뤄주는 것.

정포[正布] : ①관리의 녹봉으로 주거나 혹은 잡세(雜稅)로 거두던 품목의 하나. 보통 5승(升)에서 5승 35척(尺) 정도가 기준이 되었음.②품질이 좋은 베.

정항[鄭沆, 1080~1136] : 고려시대 문신. 예종 말에서 인종 초에는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이자겸에게 아부하지 않아 여러 차례 좌천되었다가 이자겸이 제거된 후에는 새로 제도를 정비하는 데 공헌했다. 죽었을 때에는 30년간 근시직에 있으면서도 저축한 것이 없다 하여 왕의 칭송을 받았다.

정해[丁亥] : 〈민속〉육십갑자의 스물 넷째

제갈무후[諸葛武侯] : =제갈량[諸葛亮, 181~234] :무후는 시호.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 명성이 높아 와룡선생이라 일컬어졌다.

제감[除減] : 수효를 덜어서 줄임.

제도[諸道] : 1.행정 구획의 모든 도(道). 또는 여러 도. 2.모든 길. 또는 여러 길.

제명[題名] : 1.책, 시문 따위의 표제나 제목의 이름. 2.명승지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함.

제문[祭文] : 죽은 사람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나타낸 글. 흔히 제물을 올리고 축문처럼 읽는다.

제배 : 동료(同僚).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같다." 하였음.

제수[除授] : 〈역사〉1.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늑제배(除拜). 2.옛 관직을 없애고 새 관직을 내리던 일.

제술[製述] : 시나 글을 지음.

제신[諸臣] : 여러 신하.

제언[堤堰] : 〈건설〉=댐(dam).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하여 강이나 계곡을 가로 질러 쌓아올려 막은 둑. 언제(堰堤). 제방(堤防).

제용감[濟用監] : 〈역사〉조선시대에, 각종 직물 따위를 진상하고 하사하는 일이나 채색이나 염색, 직조하는 일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태종 9년(1409)에 제용고를 고친 것으로, 광무 8년(1904)에 제용사로 고쳤다.

제장[諸將] : 1.여러 장수. 2.〈민속〉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은 신령. 군복을 만들어 놓고 모신다.

제조[提調] : 조선시대에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중앙 관직의 하나.

제칙[制勅] : =제조[制詔] :황제의 칙령. 늑제칙(制勅).

제현[諸賢] : 점잖은 여러분, 제군자(諸君子)

조가[朝家] : =조정(朝廷).

조강[朝講] : 〈역사〉이른 아침에 강연관(講筵官)이 임금에게 학문을 강연하던 일.

조강[祖江] : 조강이란 한강이 임진강과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와 파주군 교하면 오두산 앞에서 만나서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점점까지를 말한다. 교하점에서 시작해서 월곶면 보구곶리 앞에 있는 유도에 있는 산정에서 경

도를 따라 그은 직선까지의 사이를 조강이라 보는 것이 통례이다.

조계[朝啓] : 〈역사〉중신(重臣)과 시종신이 편전(便殿)에서 벼슬아치의 죄를 논하고 단죄하기를 임금에게 아뢰던 일.

조관[照管] : 맡아서 보관함.

조관[朝官] :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여 정무(政務)를 담당하는 관원(官員).

조도[助島] : 현 북쪽 5리 지점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경기(5)김포현)

조령[條令] : =조례(條例) ①조목을 적은 규례(規例) ②지방(地方) 자치(自治) 단체(團體)의 자주법(自主法). 지방(地方) 자치(自治) 단체(團體)는 그 행(行)하는 고유 사무(固有事務)와 위임(委任) 사무(事務)에 관(關)하여 법령(法令)에 위반(違反)하지 않는 한 조례(條例)를 제정(制定)할 수 있음 ③회사(會社) 또는 조합(組合)의 정관(定款

조령[詔令] : 천자(天子)의 명령.

조례[皁隸]: 조선시대 경아전(京衙前).

조발[調發] : 1.=징발(徵發). 2.군사로 쓸 사람을 강제로 뽑아 모음.

조보[朝報] : 〈역사〉1.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직,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늑기별(奇別)·기별지·난보(爛報)·조지(朝紙). 2.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에서 발행한 일간 신문. 선조 11년(1578)에 관보인 조보를 본떠 당시 민간의 유지들이 창간한 것으로, 발행된 지 수개월이 못 되어 폐간되었다.

조사[朝士] : =조신(朝臣).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늑조관(朝官)·조사(朝士).

조수[潮水] : 해와 달, 특(特)히 달의 인력(引力)에 의하여 일정(一定)한 간격(間隔)을 두어 주기적(週期的)으로 바닷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는 현상(現象), 또는 그 바닷물. 보통(普通) 하루 두 번씩, 12시간(時間) 25분 간격(間隔)으로 일어남. 해조

조애[阻隘] : 험하고 좁음

조옥[詔獄] : 의금부(義禁府)의 별칭.

조용[調用] : 관리(官吏)를 골라서 등용(登用)함

조운[漕運] : 1.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늑운조(運漕)·조전(漕轉). 2.〈역사〉현물로

받아들인 각 지방의 조세를 서울까지 배로 운반하던 제도. 내륙의 수로를 이용하는 수운 또는 참운(站運)과 바다를 이용하는 해운이 있다. ≒운조(運漕)·전조(轉漕)·조전(漕轉).

조의제문[弔義帝文] : 〈역사〉조선 성종 때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빗대어 지은 글. 항우가 초나라 회왕인 의제를 죽인 고사를 비유한 것인데, 무오사화의 빌미가 되었다.

조진[凋殄] : 빼빼 말라 시들어 떨어짐

조적[糶糴] : 고려 조선시대 상평창(常平倉) 등의 국가 기관에서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는 행위. 주로 물가의 조절이나 빈한한 농민의 진휼을 위해 행해짐. 조적법(法).

조전[漕轉] : =조운[漕運] ①배로 물건(物件)을 실어 나름 전조(轉漕) 조전(漕轉) ②중국(中國)에서 남동 각 성(省)의 미곡을 북서(北西)로 나름

조참[朝參] : 매 아일(衙日)의 조회(朝會), 한달에 조참(朝參)을 받는 날은 대개 5일 만에 한 번씩으로 정해져서 육아일(六衙日) 또는 사아일(四衙日)이 있었음.

족당[族黨] : =족속.

족친[族親] : 유복친 안에 들지 않는, 같은 성을 가진 일가붙이.

존호[尊號] : 1.남을 높여 부르는 칭호. 2.〈역사〉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올리던 칭호.

종묘[宗廟] : 〈역사〉조선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세종 3년(1421)에 영녕전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 버리고 선조 41년(1608)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아 있다.

종묘서[宗廟署] : 종묘(宗廟)와 산릉(山陵) 앞에 세운 정자각(丁字閣) 등의 제각(祭閣)을 수호하던 조선 시대의 관청. 관원으로는 겸직(兼職)인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 각 1인과 종5품의 영(令), 종7품의 직장(直長), 종8품의 봉사(奉事), 정9품의 부봉사(副奉事)가 각각 1인씩 있었음. 태조(太祖) 때에 설치되어 순조 때에 폐지되었음.

종백[宗伯] : ①고려시대 진사(進士)에 급제한 사람이 그 좌주(座主)의 아들을 높이어 이르던 말.②조선시대 예조 판서(禮曹判書)의 다른 이름. ③조선 말기 종백부에 딸린 벼슬의 하나. [참고어]: 종백부(宗伯府).

종부시[宗簿寺] : 고려시대 왕실의 보첩(譜牒)을 맡아보던 관청. 설립연도 1310,

구분 관청, 주요업무 왕실 보첩 관리, 원래 전중성(殿中省)이라 하던 것을 목종 때 전중시(殿中寺)로, 1298년(충렬왕 24) 종정시(宗正寺)로 하였다가 1310년(충선왕 2) 종부시로 개칭한 것이다.

종사관[從事官] : ①조선시대 때 각 군영(軍營)·포도청(捕盜廳)에 딸린 종6품(從六品) 벼슬 ②조선시대 때 통신사(通信使)를 따라가던 임시(臨時) 벼슬 당하(堂下) 문관(文官)을 시켰으며, 직권은 서장관(書狀官)과 같았음

종생역[種生驛] : 위치는 현 김포시 대곶면 율생 3리로서 종생(鍾生)마을을 말한다.

종선[從船] : 큰 배에 딸린 작은 배.

종유[從遊] : (학식(學識)이나 덕행(德行)이 높은 사람을)좇아 같이 놂 따라 놂

종친부[宗親府] : 종실제군(宗室諸君)의 관부. 동반(東班) 정1품 이문(衙門)으로서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을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장하며, 왕실의 각 계파를 감독하는 오상사(五上司)의 하나임. 조선 세종 15년(1433)에 제군부(諸君府)를 개칭한 것이며, 고종 원년(1864)에 종부시(宗簿寺)를 이에 합속시키고 동왕 31년(1894)에 종정부(宗正府)로 개편되었음.

좌도[左道] :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의 명칭. 조선의 지방은 전국을 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함경·평안 등 8도로 나누고, 도 아래에는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었다. 도에는 방백(方伯)이라 부르는 관찰사(감사)가 파견되었다. 지방은 8도를 다시 둘씩 나누어 불렀다. 좌도는 우도와 대칭하는 명칭이다. 즉 경기도의 남쪽, 충청도의 북쪽, 전라·경상·황해도의 동쪽을 말한다. 경기좌우도는 조선시대 조운(漕運)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나눈 것이다. 경기좌도는 강화·광주·수원·여주·부평·남양·이천·인천·안성·김포·양근·안산·용인·진위·양천·지평·과천·시흥·음죽·양성이다.

좌랑[佐郎] : 고려·조선 시대의 정6품 관직.

좌부승지[左副承旨] : 고려·조선시대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宿衛) 및 군기(軍機)를 맡아본 관직.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 고려 목종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에 두었던 정3품의 간쟁(諫爭)담당관으로 후에 좌상시(左常侍)와 좌산기상시로 개칭을 거듭하였다. 조선시대는 개국 초에 문하부(門下府)의 정3품 벼슬로 두었다가 그 후 1401년(태종 1)에 폐지하였다.

좌영장[左營將] : 〈역사〉조선시대에 둔 친군영의 하나로서 수령을 말한다. 좌영은 고종 20년(1883)에 두었다가 25년(1888)에 전영(前營)과 합하여 장위영(壯衛營)으로 고쳤다.

좌윤[左尹] : 〈역사〉1.고려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종삼품 벼슬. 공민왕 11년(1362)에 두었다. 2.조선시대에, 한성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

좌찬성[左贊成] : 〈역사〉조선시대에, 의정부에 속하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政事)의 처리, 국토 계획, 외교 따위를 맡아 하던 종일품 벼슬.

좌참찬[左參贊] : 〈역사〉조선시대에, 의정부에 속한 정이품 문관 벼슬. 삼정승을 보좌하면서 국정에 참여하였다.

주강[晝講] : 낮에 경연(經筵)을 열어 임금이나 세자가 관료들과 함께 경서(經書)의 내용이나 정사(政事)의 득실에 관해 토론함. 조강(朝講).

주공[周公] : 주왕조를 세운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중국 주(周)나라의 정치가. 예악(禮樂)과 법도(法度)를 제정해 제도문물을 창시했다. 은족을 회유하기 위해 아들을 노(魯:曲阜)나라에 봉건(封建)하는 등 주왕실의 일족과 공신들을 요지에 배치해 다스리게 하는, 주초(周初)의 대봉건제(大封建制)를 실시해 수비를 공고히 했다.

주교사[舟橋司] : 〈역사〉조선시대에, 준천사에 속하여 임금이 거둥할 때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정조 13년(1789)에 설치하였다가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

주기[註記] : 주기(注記). ①사물(事物)을 기록(記錄)하는 일 ②전에서 논의(論議)할 때 논제(論題)를 읽는 중(中), 또는 그 논의를 필기(筆記)하는 직(職) ③불전(佛典)을 주석(註釋)한 책을 이르는 말

주달[奏達] : 〈역사〉임금에게 아뢰던 일. 늑주문(奏聞) · 주상(奏上) · 주어(奏御) · 주진(奏陳) · 주품(奏稟).

주묵[朱墨] : 붉은 빛깔의 먹

주산[主山] : ①도시(都市)나 마을 · 집터 · 무덤 따위가 산을 뒤로 하고 있을 때에, 그 산을 그 도시(都市)나 마을 · 집터 · 무덤에 대(對)하여 이르는 말 ②풍수설(風水說)에서, 도읍터(都邑-) · 집터 · 묏자리 등(等)의 운수(運數) 기운(氣運)이 매였다고 하는 산. 주룡(主龍)

주의[注擬] : 관원(官員)을 임명할 때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먼저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

주자대전[朱子大全] : 중국(中國) 남송(南宋) 때의 유학자(儒學者) 주희(朱熹)의 문집(文集)

주정[晝停] : 임금이 멀리 거둥할 때 잠깐 머물러서 낮 수라(水剌)를 드는 것을 말함. [유사어]: 주정소(晝停所).

주즙[舟楫] : 배와 삿대라는 뜻으로, 배 전체를 이르는 말.

주찬[酒饌] : =주효(酒肴) 술과 안주를 아울러 이르는 말.

주청[奏請] : 〈역사〉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 늑계청(啓請).

주청사[奏請使] : 〈역사〉조선시대에,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보내던 사절. 늑주문사(奏聞使) · 진주사(陳奏使).

주필[駐蹕] : 임금이 거둥하는 중간에 어가(御駕)를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던 일.

주현[州縣] : 고구려 때 지방 행정 구역 단위의 하나로서 고구려의 주현은 행정뿐만 아니라 군사 구역이기도 하였음.

준직[准職] : 그 자급(資級)에 준하는 실직(實職)의 벼슬을 주는 것.

중관[中官] : ①고려 ·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의 관원을 두루 이르는 말임. ②조선시대 일본 사람들이 통신사(通信使)의 일행을 다섯 등급으로 나눈 가운데의 넷째 등급. 곧 복선장(卜船將) · 배소동(陪小童) · 노자(奴子) · 소통사(小通事) · 도훈도 都訓導) · 예단직(禮單直) · 청직(廳直) · 반전직(盤纏直) · 사령(使令) · 취수(吹手) · 절월봉지(節鉞奉持) · 포수(砲手) · 도척(刀尺) · 사공(沙工) · 기수(旗手) · 악공(樂工) 등을 이름.

중군[中軍] : 1.예전에, 전군(全軍)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 중심 부대. 2.〈역사〉고려 시대에 둔 오군(五軍)의 하나. 3.〈역사〉고려 말 · 조선 초기에, 삼군(三軍) 가운데 나라 중앙의 방위를 맡은 군대. 4.〈역사〉조선시대에, 각 군영(軍營)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던 장수.

중랑장[中郎將] : 〈역사〉1.고려 시대에, 정오품의 무관 벼슬. 장군(將軍)의 아래, 낭장(郎將)의 위로, 각 영(領)에 두 명씩 두었다. 2.조선 전기에, 의흥친군위의 오품 무관 벼슬.

중수[重修] :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침.

중시[重試] : 〈역사〉고려 · 조선시대에,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년마다 한 번씩 보이던 과거 시험.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관직의 품계를 특진시켜 당상관까지 올려 주었다.

중신[重臣] : 1.중요한 관직에 있는 신하. 2.〈역사〉정이품 이상의 벼슬아치.

중연[中椽] : 〈건설〉중도리와 중도리에 걸쳐 대는 서까래.

중외[中外] : 1.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나라 안팎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조정(朝廷)과 민간을 아울러 이르는 말. 4.=경향(京鄕).

중의[衆議] : =중론(衆論). 여러 사람의 의견. 늑군의(群議).

중정[衆情] : 여러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

중창[重創] : 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지음.

중초[中草] : 〈역사〉사초(史草)를 뽑을 때 초초(初草)를 보충·수정하여 다시 쓴 원고.

중초본[重草本] : 초고본을 수정한 경우 재고본(再稿本)·중초본(重草本)이라고 한다.

중추[重推] : 범죄 사실을 엄중히 추고(推考)함. 곧 중중추고(從重推考).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 : 전왕이 사망하는 해가 곧 새 왕의 즉위원년이 되는 즉위 연대 표기법

증미[拯米] :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쌀. 조운선(漕運船)의 난파(難破)로 인한 증미는 지방관이 이것을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대신 새 쌀을 받도록 되어 있음.

증직[贈職] : 〈역사〉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추증하던 일. 종이품 벼슬아치의 부친, 조부, 증조부나 충신, 효자 및 학행(學行)이 높은 사람에게 내려 주었다.

지가[地家] : 〈민속〉=지술(地術).

지공[支供] : 1.음식 따위를 대접하여 받듦. 늑지참(支站). 2.필요한 물품 따위를 줌.

지관사[知館事] : 〈역사〉=지춘추관사.

지문[誌文] : 죽은 사람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날, 행적, 무덤의 위치와 좌향(坐向) 따위를 적은 글.

지방[紙榜] :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지 않는 집안에서 차례나 기제사에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神位).

지방관[地方官] : ①각 지방(地方)에 주재(駐在)하면서 일반(一般) 행정(行政) 사무(事務)를 맡아보는 국가(國家) 공무원(公務員) 가운데 고급 공무원(公務員) 곧 도지사 등(等) ②주(州)·부(府)·군(郡)·현(縣)의 행정(行政) 책임(責任)을 맡은 으뜸 벼슬 감사(監司)·유수(留守)·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 등(等)을 통틀어 이르는 말 태수(太守)

지사[知事] : 1.〈역사〉고려시대에, 각 도의 도통사(都統使) 밑에 딸린 오품에서 육

품까지의 벼슬. 2.〈역사〉고려시대에 둔, 중앙 관아의 우두머리 다음가는 벼슬. 이품에서 오품까지의 지문하성사, 지문하부사, 지첨의부사, 지도첨의사, 지중추원사, 지추밀원사, 지밀직사사, 지어사대사, 지사헌부사, 지개성부사, 지춘추관사, 지경연사, 지어서원사, 지합문사, 지대부시사, 지제용사사, 지첨사부사, 지춘방원사, 지내시부사와 육부의 지부사가 있다. 3.〈역사〉조선시대에, 중추원·사간원·의금부·성균관·춘추관 따위에 속한 벼슬. 종이품인 지중추원사, 종삼품인 지합문사·지사간원사, 정이품인 지문하부사·지돈령부사·지경연사·지의금부사·지성균관사·지춘추관사·지중추부사·지훈련원사 따위가 있다. 4.〈역사〉갑오개혁 이후 지사서의 주임 관직. 5 =도지사.

지응[支應] : 벼슬아치가 공무로 어느 곳에 갔을 경우, 필요한 물품을 그 지방 관아에서 대어주던 일.

지접[止接] : ①(어떤 곳에 몸을)붙이어 의지(依支)함 ②잠시(暫時) 몸을 의탁(依託)하여 거주(居住)함

지초[芝草] : 산지에 절로 나는 다년생 풀(모균류)에 속하는 버섯. 뿌리는 약재와 물감으로 쓰임.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김. [유사어]: 영지(靈芝).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 〈역사〉1.고려시대에 둔 춘추관의 겸임 벼슬.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맡았다. 2.조선 시대에 둔 춘추관의 정이품 벼슬. ≒지관사·지춘추.

지치[至治] : 탓할 나위 없이 잘 다스려진 정치

지평[持平] : 〈역사〉=사헌지평[司憲持平] 〈역사〉고려 말기·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전중시어사를 고친 것으로, 잠단으로 바꾸었다가 조선 태종 원년(1401)에 다시 같은 이름으로 고쳤다. ≒감찰지평

직부전시[直赴殿試] : 〈역사〉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과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험인 복시를 면제하였다.

직사[職事] : 1.직무에 관계되는 일. 2.생계나 직업에 관계되는 모든 일.

직서[直書] : [북한어]1.바르게 씀. 2.사실 있는 그대로 씀.

직질[職秩] : 1.일정한 규칙. 2.벼슬의 등급.

직첩[職牒] : 〈역사〉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고신(告身)·사첩(謝牒). 진성[陳省] 진정서.

진[鎭] : 〈역사〉=진영(鎭營).

진계[陳啓] : 〈역사〉임금에게 사리를 가려서 아뢰던 일.

진구[賑救] : 흉년(凶年)에 곤궁(困窮)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유사어]: 섬휼(贍恤). 주진. 진휼(賑恤).

진달[進達] : 1.말이나 편지를 받아서 올림. 2.관하(管下)의 공문 서류를 상급 관청으로 올려 보냄.

진대[賑貸] : 전근대(前近代)에 재난이나 흉년이 든 해에 나라의 곡식을 풀어서 어려운 백성에게 꾸어 주던 일.

진두[津頭] : =나루.

진무사[鎭撫使] : ①조선 초기에 있었던 무관 벼슬의 이름. ②조선 후기에 있었던 강화부(江華府)의 진무영(鎭撫營)에 설치된 최고의 무관 벼슬. 그 정원은 1인으로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가 겸직(兼職)하였는데, 통어사(統禦使)도 겸하였음. 품계는 종2품이었음.

진무영[鎭撫營] : 〈역사〉조선시대에, 바다의 방위를 맡은 군영(軍營). 강화도에 본영을 두고 숙종 26년(1700)에 설치하였는데, 고종 24년(1887)에 심영으로 고쳤다. ≒진무(鎭撫).

진법[陣法] : 〈군사〉안진(雁陣), 학익진(鶴翼陣) 따위와 같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陣)을 치는 방법.

진부[陳腐] : '진부하다' 의 어근. 케케묵음. 새롭지 못함

진사[進士] : 조선시대에, 과거의 예비 시험인 소과(小科)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런 사람. ≒상사(上舍).

진성[陳省] : 조선시대 관청에서 다른 관청으로 또는 개인에게 내어주거나 받아들이던 중명 문서의 일종으로 확인서 · 신청서 · 위임장 등을 뜻하는 말. 주로 지방 관청에서 자신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적어 중앙 관청에 보내 청원(請願) · 진정(陳情)의 구실을 한 문서를 이름. 진성이라 한 것도 자세히 기록 진술[陳]해서 보내면 살펴본다[省]라는 의미에서 나왔음. 가령 부모가 아픈 군사는 해당 지방 관청에서 진정 즉, 확인서를 받아 병조(兵曹)에 제출해야만 휴가를 받을 수 있었음. 진성은 주로 공납(貢納)과 관련해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지방 관청에서 중앙에 올리는 공물 명세서를 외공진성(外貢陳省) · 세공진성(稅貢陳省)이라 하여 세공의 수량과 납부하는 관청 이름,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호조(戶曹)에 올렸음.

진소[陳訴] : 사정을 말하여 하소연함.

진신[搢紳·搢紳] : 벼슬아치의 총칭. 진(搢·搢)은 백관(百官)들의 관복(官服)과 제복(祭服)에 갖추는 홀(笏)을 허리띠에 꽂는다는 뜻이고, 신(紳)은 관복을 입을 때 매는 큰 띠를 말함이니 곧 허리띠를 매면서 홀을 끼운다는 의미에서 모든 벼슬아치들을 아우르는 말로 쓰임.

진언[進言] : 윗사람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함. 또는 그런 말.

진옥[眞玉] : 참 옥(玉) 진짜의 옥 진짜의 구슬

진장[鎭將] : 진영장(鎭營將)

진전[眞殿] : ①임금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을 봉안, 향사하는 처소. ②조선 시대에는 국조인 태조(太祖)의 수용만을 받드는 진전이 따로 설치되었는데 태조 진전은 서울의 문소전(文昭殿)을 비롯하여 외방의 5곳에 두었고, 경복궁 내에는 선원전(璿源殿)을 두어 선왕 선후의 진영을 함께 봉안하였음. 그러나 양란을 겪으면서 진전 체제가 크게 와해되자 숙종 때 이후 진전의 증건과 새로운 진전의 설치가 이어졌는데 영희전(永禧殿)·장녕전(長寧殿)·만녕전(萬寧殿) 등이 그것이며, 영·정조 때에는 다른 용도였던 당(堂)이나 궁(宮)에도 어진을 봉안하였음.

진졸[鎭卒] : 각 진영(鎭營)에 딸린 군사.

진형[陣形] : 진(陣)을 친 형태.

진휼[賑恤] : (옛날에)흉년(凶年)에 곤궁(困窮)한 백성(百姓)을 구원(救援)하여 도와줌. 진구(賑救

진휼사[賑恤使] : 조선시대 진휼에 관한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였던 임시 관원.

집의[執義] : 고려·조선 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직(從三品職).

집현전[集賢殿] : 〈역사〉1.고려 시대에 둔, 제관전(諸館殿)의 하나. 2.조선 전기에 둔, 경적(經籍)·전고(典故)·진강(進講)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징험[徵驗] : ①어떤 징후나 또는 징조를 경험(經驗)함 ②경험(經驗)에 비추어 앎

ㅊ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 관원.

차왜[差倭] : 〈역사〉조선시대에, 일본에서 조선에 보내던 사신. 대차왜(大差倭), 별차왜(別差倭), 재판차왜(裁判差倭) 따위가 있었다.

차임[差任] : 3품(三品) 이하를 임명하던 일.

차자[箚子] : 〈역사〉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방자 · 주차(奏箚) · 차(箚) · 차문(箚文).

차지[次知] : 각 궁방(弓房)의 일을 맡는 사람.

차지중관[次知中官] : 각 궁방(宮房)의 사무를 맡은 환관(宦官). [참고어]:차지(次知).

찬구[饌具] : 반찬거리.

찬례[贊禮] : 제향 때 임금을 이끌어 예를 행하게 하는 일.

찬배[竄配] : 〈역사〉=정배[定配]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찬배(竄配).

찬성사[贊成事] : 〈역사〉고려시대에, 문하부 · 첨의부 · 도첨의사사 · 도첨의부에 둔 정이품 벼슬. 시중(侍中) 또는 정승의 다음 서열이다. 충렬왕 1년(1275)에 첨의부를 두면서 평장사를 고친 것으로, 24년(1298)에 없앴다가 곧 회복하여 34년(1308)에 중호(中護)로 고쳤다.

천신[薦紳] : 관직(官職)에 있는 사대부(士大夫)의 총칭.

찬수[纂修] : 글이나 자료 따위를 모아 정리함. 또는 그렇게 하여 책으로 만듦.

찬수범례[纂修凡例] : 글이나 자료 따위를 모아 정리함. 또는 그렇게 하여 책으로 만드는 형식이나 기준

찬정[撰定] : 책이나 시문(誇文)을 지어서 골라 정함

찰방[察訪] : 〈역사〉조선시대에, 각 도의 역참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외직(外職) 문관의 벼슬.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마관(馬官).

참[斬] : 1.=참수(斬首). 2.=참형(斬刑).

참대시[斬待時] : 사형(死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던 일. 곧 추분까지 기다려서 처형하던 일.

참봉[參奉] : 조선시대의 원(園) · 능전(陵殿) 및 사옹원(司饔院) · 내의원(內醫院) · 예빈시(禮賓寺) · 군기시(軍器寺) · 군자감(軍資監) · 소격서(昭格署) 등은 관서에 속해 있었던 관직이다. 최말단직의 품관이다.

참부대시[斬不待時] : 사형(死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死刑)을 집행하였음.

참상[參上] : 〈역사〉조선시대에 둔, 육품 이상 종삼품 이하의 벼슬. 조회(朝會)에 참석할 수 있으며, 목민관으로서 지방민을 다스릴 수 있었다. 늑참상관(參上官).

참의[參議] : 〈역사〉1.조선시대에, 육조(六曹)에 둔 정삼품 벼슬. 늑참지(參知). 2. 대한 제국 때에 의정부 각 아문에 둔 벼슬.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다. 3.일제 강점기에, 중추원에 속한 벼슬.

참직[參職] : 참상관(參上官) 6품 이상 정3품 이하의 관직.

참찬관[參贊官] : 고려와 조선시대 국왕에게 경서(經書) 강론 및 경연(經筵)에 참여하였던 정3품의 당상관직. 고려 공양왕 때 이성계일파가 서연을 경연으로 승격시킨 뒤 직제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정원은 4명으로 모두 승지였다. 조선 태조 때는 5명이었다가 6명으로 늘었다. 성종 때 홍문관(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이 참찬관을 겸하게 되면서 승정원(承政院)의 6승지(承旨)와 홍문관(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경국대전》 편찬시 이를 법제화하였다.

참판[參判] :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소속되었던 종2품의 관직. 정원은 각 1인씩이며 판서(判書) 다음가는 벼슬임.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한 데 대하여 차관으로서 아경(亞卿)이라 하였음.

창곡[倉穀] : 곳집에 쌓아 둔 곡식(穀食)

창덕궁 희정당[昌德宮熙政堂] : 서울 종로구 와룡동(臥龍洞) 창덕궁에 있는 편전(便殿). 보물 제815호. 정면 11칸, 측면 5칸. 단층 팔작기와지붕 익공(翼工)집. 조선 후기에 국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던 곳이다. 창덕궁의 침전인 대조전(大造殿)의 바로 앞 남쪽에 있으며, 대조전과 같은 높이의 기단(基壇) 위에 나란히 지었다.

창름 : 1.=곳집. 2.곳집에 저장하여 둔 곡식.

창릉[昌陵] : 서오릉(西五陵)의 하나. 조선(朝鮮) 시대(時代) 8대 예종(睿宗)과 예종비(睿宗妃) 안순 왕후(安順王后)의 능. 고양군(高陽郡) 신도읍(神道邑) 용두리(龍頭壞.)에 있음

창생[蒼生] : 세상의 모든 사람. 늑창맹(蒼氓) · 창민(蒼民).

창일[漲溢] : ①큰물이 져 넘침. 창만(漲滿) ②의욕(意慾)이 왕성(旺盛)하게 일어남

창황[蒼皇] : 어찌할 겨를이 없이 매우 급함

채붕[彩棚] : 채색으로 장식하는 큰 문.

채주[債主] : 빚을 받을 사람.

책봉[册封] : 〈역사〉왕세자, 왕세손, 왕후, 비(妃), 빈(嬪), 부마 등을 봉작(封爵)하던 일.

처치[處置] : 1.일을 감당하여 처리함. 2.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림. 3.상처나 헌데 따위를 치료함.

척간[擲奸] : 부정이 있나 없나를 캐어 살핌.

천계[天啓] : 중국 명(明) 나라 희종(熹宗) 대의 연호(年號)로 1621년~1627년까지 사용됨.

천등현[天登峴] : 지금의 김포시 고촌면 천등고개를 말한다.

천맥[泉脈] : 땅 속에 있는 샘줄기

천문[天文] : 천체(天體), 곧 일월(日月)·오성(五星)·이십팔수(二十八宿)에 관한 모든 현상(現象). 또는 이에 관한 학문을 가리킴.

천변지이[天變地異] :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변동과 이변. 늑 천변지변.

천순[天順] : 〈역사〉중국 명나라 영종 때의 연호(1457~1464).

천신[薦紳] : 관직(官職)에 있는 사대부(士大夫)의 총칭.

천인상응[天人相應] : 인체의 조직구조, 생리현상 및 질병이 하늘 즉 자연계의 변화와 대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하늘, 자연계의 현상을 인간에게로 옮겨 놓아 자연계를 대우주,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서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천인합일[天人合一] : 〈종교〉유교에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는 말.

천장[遷葬] : =천묘(遷墓).

천참[天塹] : 강하(江河) 따위로 인하여 저절로 이루어진 요충지.

천청[天聽] : 임금의 귀. 또는 그 귀에 어떤 말이 들어감.

천총[千摠] :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되었던 정3품 무관직. 임진왜란 후 오군영을 두면서 설치되었는데, 훈련도감에 2명, 금위영(禁衛營)에 4명, 어영청(御營廳)에 5명, 총융청(總戎廳)에 2명, 관리영(管理營)에 3명, 진무영(鎭撫營)에 4명의 정원이 있었다. 이들은 각 군영대장의 중군

(中軍) 밑에 있었던 지휘관으로 영 밑의 부(部)를 지휘하였다.

천험[天險] : 땅의 형세(形勢)가 천연적으로 험함.

철가[撤家] : 자리 잡고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살림살이를 모두 챙기어 떠남.

철관포[鐵串浦] : 조선조 한강의 3대 나루터에 속하였던 양화나루(양화대교 주변)를 건너 경인지역으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안양천을 건너지 않으면 안되었던 중요한 통로였다. 양천지역 주민들은 한강을 건너는 양화나루를 큰 나루라 하였고 안양천을 건너는 곳을 작은나루 (小津) 또는 철관포(鐵串浦)라 하였다. 그 무렵의 작은나루 위치는 현재의 인공폭포 남쪽이었으며 한때는 관선(官船)을 두고 건너다가 나무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철조[輟朝] : 조정(朝廷)을 임시(臨時) 폐함

첨사[僉使] : 〈역사〉1.=동첨절제사. 2.=첨절제사.

첨지사[僉知事]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 관직. 8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일정한 직책이 없는 무임소의 관직이었다. 이 중 3인은 오위(五衛)의 위장(衛將)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의관(醫官)·역관(譯官) 등은 30개월 동안, 중추부에 속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을 두었다.

첩정[牒呈] : =첩보.

청선[淸選] : 청환(淸宦)의 후보자로 뽑히는 일, 또는 그 후보자.

체대[替代/遞代] : 어떤 일을 서로 번갈아 가며 대신함. ≒절대(迭代).

체례[體例] : ①일의 대체(大體) 및 내용, 세칙(細則) 곧 지켜야 할 규례(規例) 등을 말함. 상례(常例). ②벼슬아치들 사이에 지키는 예절.

체신(體臣) : 체찰사(體察使)의 직임을 가진 신하. 체찰사[體察使],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어 재반 군무(軍務)를 총괄하던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체임[滯賃] :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품삯 따위를 지급하지 못하고 뒤로 미룸. 또는 그 품삯.

체임[遞任] : 벼슬을 갈아 냄. ≒체관(遞官)·체직(遞職).

체직[遞職] : =체임[遞任] 벼슬을 갈아 냄. ≒체관(遞官)

체차[遞差] : 관리(官吏)의 임기(任期)가 차거나, 또는 부적당(不適當)한 때 다른 사

람으로 갈아서 임명(任命)함

초목[樵牧] : 1.땔나무를 하는 일과 가축을 기르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2.=초동목수.

초복[初覆] : 〈역사〉조선시대에, 살옥(殺獄)에 관계된 죄인을 처음 심문하던 일.

초부[樵夫] : 나무하는 남자(男子). 나무꾼

초서[草嶼] : 강 가운데에 모래나 흙이 쌓여 풀이 수부룩하게 난 곳.

초서[草書] : 십체(十體)의 하나. 필획을 가장 흘려 쓴 서체로서 획의 생략과 연결이 심하다. 전서(篆書), 예서(隸書)를 간략히 한 것으로 행서(行書)를 더 풀어 점획을 줄여 흘려 쓴 것인데, 초고(草稿) 따위에 쓴다. 늑초(草) · 초서체 · 흘림.

초솔[草率] : '초솔하다' 의 어근. 절실하거나 정밀(精密)하지 못한 모양(模樣)

초수[椒水] : 천연 약수를 가리킴. 광주(廣州) · 청안(淸安) 등 여러 곳에서 나는데,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북일면(北一面) 초정리(椒井里) 약수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약 6백 년 전에 발견됨.

초시[初試] : 조선시대 과거의 1차 시험을 말한다 향시 鄕試 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문과 와 무과로 나뉘었으며 문과는 다시 소과 小科 와 대과 大科 로 구분되었다 초시는 이들 각과의 최초의 시험으로 복시 覆試 · 전시 殿試 의 전해 가을 각 지방에서 실시하였다.

초식[草食] : ①푸성귀로만 만든 음식(飮食) ②또는, 그런 음식(飮食)만 먹음

초초[初草] : 〈역사〉사초(史草)를 뽑을 때 처음의 것.

초출[抄出] :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뽑아냄.

촌장[村莊] : 시골에 있는 별장.

총관[總管] : 〈역사〉1.신라 때에, 각 주(州)의 군대를 통솔하던 벼슬. 군주(軍主)를 고친 것으로, 원성왕 때에 다시 도독으로 고쳤다. 2.조선 시대에, 오위도총부에 속한 도총관과 부총관을 통틀어 이르던 말. 3.대한 제국 때에 둔, 경위원 · 호위대 · 승녕부의 으뜸 관직.

총령[總領] : ①우두머리.②직무를 가지고 사무처리나 사람들을 총괄하여 관리 처리하는 것. [유사어]: 총치(總治).

총융사[總戎使] : 〈역사〉조선시대에 둔, 총융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 무관 벼슬이다.

총제사[總制使] : 〈역사〉고려시대에, 삼군도총제부에 속한 벼슬. 도총제사의 다음 서열로, 삼군에 각각 한 명씩 두었다.

추고[推考] : 벼슬아치의 죄과(罪過)를 추문(推問)하여 고찰함.
추국[推鞫] : 의금부(義禁府)에서 왕명에 의하여 중죄인(重罪人)을 국문(鞫問)하는 일.
추문[推問] : 의금부(義禁府)에서 왕명에 의하여 중죄인(重罪人)을 국문(鞫問)하는 일.
추봉[追封] : 죽은 뒤에 관위(官位) 따위를 내림.
추부[趨附] : 남을 붙쫓아서 따르고 달라붙음
추성[秋成] : 추수(秋收).
추수[秋收] : 〈농업〉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 늦가을걷이 · 추가(秋稼).
추심[推尋]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추안[推案] : 심문 조서.
추증[追贈] : 〈역사〉1.종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벼슬을 주던 일. 늑이증 · 추영(追榮). 2.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 주던 일.
추치[推治] : 죄인을 다스려 벌을 줌.
추핵[推覈] : 죄인을 추궁하고 신문하여 범죄의 실상을 자세히 조사하여 캐어내는 것.
추환[推還] : 강제로 빼앗은 토지나 노비 · 물건 등을 찾아 내어 본래 주인에게 돌려줌.
축문[祝文] : 1.제사 때에 읽어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 늑축(祝) · 축제문.
춘추[春秋] : 〈책명〉유학(儒學)에서, 오경(五經)의 하나. 공자가 노나라 은공(隱公)에서 애공(哀公)에 이르는 242년(B.C.722~B.C.481) 동안의 사적(事跡)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11권.
춘추관[春秋館] : 〈역사〉1.고려시대에 둔, 시정(時政)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때에 사관과 함림원을 합하여 만든 예문춘추관을 충숙왕 때 고친 것으로, 후에 공양왕 때 다시 전 이름으로 고쳤다. 2.조선시대에 둔, 시정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때에 예문춘추관을 두었다가 태종 때에 예문, 춘추의 두 관으로 독립하였는데, 고종 때 없앴다.
출궁[出宮] : 〈역사〉1.임금이 대궐 밖으로 나가던 일. 2.나라에 변고(變故)가 있을 때 궁(宮)에서 일하는 화자(火者)나 궁녀를 풀어 궁 밖으로 내보내던 일.
출방[出榜] : ①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발표하여 게시함. [유사어]: 방방(放榜). [참고어]: 방목(榜目). [반의어]: 파방(罷榜). ②국가의 명령문을 민간에 게시함.
충의위[忠義衛] :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충좌위(忠佐衛)에, 충찬위(忠贊衛) · 파적위(破敵衛)와 더불어 속해 있던 군대. 1418년(세종 즉위)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佐命)의 3공신의 자손들을 위한, 특

수층을 위한 일종으로 우대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부대에 속한 군병은 공신의 자손이나 그 첩의 중승자(重承者)로 편성하였다.

충재[蟲災] : 해충(害蟲)으로 인(因)해 생기는 농작물(農作物)의 해

충정[充定] : 군역(軍役) 따위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인원을 보충하여 채운다는 뜻. 충보(充補).

취련[吹鍊] : 쇠를 붙이는 일. 제련(製鍊). 철장(鐵場)에서 쇠를 제련하는 사람을 취련군(吹鍊軍)이라 함.

취토장[取土匠] : 군기감(軍器監)에 딸린 공장(工匠). 염초(焰硝)의 굽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정원은 40명이었음.

측출[側出] : =서출(庶出). 첩이 낳은 자식. ≒서생(庶生)·첩출(妾出)·측출(側出).

치계[馳啓] : 말을 달려 와서 아룀.

치도[治道] : 1.=길닦이. 2.다스리는 도리나 방법.

치돌[馳突] : 매우 세차게 달려들어 부딪침

치보[馳報] : 1.매우 빨리 달려가서 알림. 2.〈역사〉지방에서 역마를 달려 급히 중앙에 보고하던 일.

치사[致仕] : 관리가 70세가 되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던 제도. 조선 시대에는 당상관으로 치사하는 경우 예조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된 1품관에게는 궤장(杖)을 하사하였음.

치제[致祭] : 〈역사〉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 또는 그 제사.

치조[致弔] : 〈역사〉임금이 신하의 죽음에 조문하던 일.

치첩[雉堞] : 성(城) 위에 낮게 쌓은 성가퀴. [유사어]: 성첩(城堞).

치화[治化] : 어진 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인도함.

칙유[勅諭] : 임금이 몸소 이름. 또는 그런 말씀이나 그것을 적은 포고문. ≒칙교(勅敎)·칙어.

친전[親傳] : 몸소 전함.

친접[親接] : 몸소 나와서 접대함.

친제[親祭] : 국왕이 친림하여 행하는 제사.

침구[鍼灸] : 침과 뜸. 동양의학의 오랜 치료법으로 기원전 3, 2세기 경에 제작한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벌써 수록되어 있음. 중국을 기준으로 침은

해안으로 습하고 종기가 많은 동방지역, 뜸은 바람이 세고 기후가 한랭한 북방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침원[寢園] : 임금의 산소를 이르던 말.

침전[寢殿] : 1.임금의 침방(寢房)이 있는 전각. 2.〈역사〉=정자각.

탁란[濁亂] : 사회나 정치의 분위기가 흐리고 어지럽다.

탁지[度支] : 탁지부(度支部)의 준말. 호조(戶曹):고려(高麗)와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식화(食貨) 등(等)의 일을 맡았던 육조(六曹)의 하나

탐도[貪饕] : 재물이나 음식을 탐냄. 늑탐란(貪亂)·탐람(貪婪).

탐람(貪婪) : 재물이나 음식을 탐냄. 늑탐란(貪亂)·탐탐(貪婪).

탐학[貪虐] : 탐욕이 많고 포학함. 늑탐포.

탕척[蕩滌] : ①죄명을 씻어 줌 ②더러운 것을 없애고 정(定)하게 함

태[胎] : ①(아기를 밴 때에)태아(胎兒)를 싸고 있는 조직(組織). 곧 태반(胎盤)과 탯줄을 말함.

태[笞] : 오형(五刑)중의 하나인 태형(笞刑)에 쓰는 매. 태(笞)는 작은 형(荊)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반드시 깎아버려야 하며, 소두(小頭)쪽으로 볼기를 쳤음.

태상왕[太上王] : 임금이 생존시에 왕위를 선양하고 물러 났을 때 부르는 칭호.

태형[笞刑] : 오형(五刑) 중의 한 가지. 가는 형장(荊杖)으로 치는 형벌. 10·20·30·40·50까지 5등급으로 하여 열 번마다 한 등급씩 가감(加減)하였음. 편형(鞭刑)이라고도 함.

택조[宅兆] : ①무덤. 묘소(墓所) ②묘지(墓誌)

토공[土貢] :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지방(地方)의 토산물(土産物)을 바치는 것이라 하여 '공물(貢物)'을 일컫던 말

토성[土姓] : 〈역사〉조선 전기 양반의 성씨. 고려시대 이래로 과거 또는 서리직을 거친 벼슬아치 집단이다. 늑군현성.

토의[土宜] : 토산물(土産物).

토주[土主] : 백성이 자기 고을 수령을 이르는 말. 지방 수령. [유사어]: 토주관(土主官).

토포사[討捕使] : 무장한 도적이나 반란 세력을 토벌 진압할 것을 임무로 하는 군사 책임자. 조선 전기의 경우, 일이 있는 경우에 이 이름으로 임명했고, 조선 후기에는 토포영(討捕營)의 책임관이 이를 맡았는데, 영장(營將)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음.

통[通] : 과거(科擧)나 무거(武擧)에서 성적을 매길 때 가장 으뜸되는 성적. 첫째가 통(通), 보통이 약(略), 열등이 조(粗), 하등으로 낙제인 것을 불(不)이라 하였음.

통덕랑[通德郎] : 〈역사〉조선시대에 둔, 정오품 상(上) 문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 종친의 품계로도 썼다.

통례원[通禮院] : 조선시대의 관청. 태조 원년(1392) 7월의 관제 신정(官制新定) 때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각문(閣門)을 두어 조회(朝會)·의례(儀禮)를 관장케 하였는데, 각문은 통례문(通禮門)의 별칭이었음. 그러므로 이후 통례문으로 일컬어지더니, 세조 12년(1466) 1월 관제 경정(官制更定) 때에 이르러 통례문(通禮門)을 통례원(通禮院)으로 개칭하였음.

통속[統屬] : 1.일정한 통제 아래에 속함. 또는 소속하는 일. 2.소속의 관사(官司)를 통합하여 다스림.

통어영[統禦營] : 〈역사〉조선시대에, 삼도의 수군을 통제하던 군영. 인조 11년(1633)에 교동(喬桐)에 두었다가 고종 30년(1893)에 없앴다.

통정대부[通政大夫] : 〈역사〉조선시대에 둔, 정삼품 문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 종친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늑통정.

통진[天順] : 〈역사〉중국 명나라 영종 때의 연호(1457~1464).

통진[通津] : 여기서의 통진은 현재 김포시 '통진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김포시 월곶면 지역을 말한다.

투비 : 〈역사〉죄인을 지정한 곳으로 귀양을 보내던 일.

특진관[特進官] : 〈역사〉1.조선시대에, 경연(經筵)에 참여하던 벼슬. 성종 2년(1471)에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삼품 이상의 문관에게만 주었다. 2.대한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왕실에 관한 일을 보좌하던 칙임(勅任) 벼슬.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였다.

ㅍ

파계[派系] : 계통상으로 동종(同宗)에서 딴 갈래를 이루어 나온 계통(系統)을 이르는 말

파수[把守] : 1.경계하여 지킴. 2.=파수꾼.

판관[判官] : 신라 · 고려 및 조선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에는 759년(경덕왕 18) 사원(寺院) 관계의 행정기관인 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 · 감은사(感恩寺)성전 · 봉덕사(奉德寺)성전에 속한 적위(赤位)와 영묘사(靈廟寺)성전에 속한 상당(上堂)을 판관으로 고쳤다가 776년(혜공왕 12)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시대에는 5~9품 관직으로 중앙과 지방에 두었다. 중앙 관직으로는 개성부(開城府) · 중문(中門) · 자운방(紫雲坊) · 대청관(大淸觀) 등에 소속되었다.

판교[判校] : 〈역사〉조선시대에, 승문원과 교서관에 둔 정삼품 벼슬.

판부[判付] :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裁可) 사항. 판하(判下).

판서[判書] : 〈역사〉1.고려 말기에 둔, 전리사(典理司) · 군부사(軍簿司) 따위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2.고려 말기에 둔, 육조(六曹)의 으뜸 벼슬. 정삼품 벼슬로 공양왕 1년(1389)에 상서(尙書)를 고친 것이다. 3.조선 시대에 둔, 육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 벼슬로 태종 5년(1405)에 배풀어서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 조선 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맡아 보던 기관인 승문원의 으뜸 벼슬

판심[版心] : 〈출판〉옛 책에서, 책장의 가운데를 접어서 양면으로 나눌 때에 그 접힌 가운데 부분. 늑판구.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 조선 전기 중추원(中樞院)의 정2품 관직.

패[牌] : 〈역사〉입번(入番)할 때 번(番)을 갈아서던 한 무리. 대개 40~50명이 한 조를 이룬다. 군대의 가장 작은 부대를 이르던 말. 입번한 그대로 군대를 편성한 데서 유래한다. 늑패당.

패선[敗船] : 배가 부서짐. 또는 그 배.

편년체[編年體] : =기년체[紀年體] 역사 서술 체제의 하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기술 방법이다.

편벽 [偏辟]: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아첨함. 또는 그런 사람.

편비[偏裨/ 褊裨]: 〈역사〉각 군영에 둔 부장(副將).

편수관[編修官] : 〈역사〉춘추관의 정삼품에서 종시품까지의 당하관 벼슬아치.
폄직[貶職] : 벼슬이나 직위 따위가 낮은 자리로 떨어지거나 면직을 당함.
평유입현[平唯押縣] : 삼국시대 초에 몽진, 즉 월곶지역을 지칭한다.
포락[浦落] :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어 무너져 떨어짐.
포장[褒奬] : 칭찬(稱讚)하여 장려(奬勵)함
포증[褒贈] : 포창하여 관작을 추증(追贈)하는 것.
포청[捕廳] : 조선 시대 도둑 등 기타 범죄자를 잡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좌 우청의 둘이 있었음. 성종 때에 설치하였고, 고종 31년(1894)에 폐지하였음. 포청(捕廳).
포치[布置] : 배치(排置)
포치[布置/鋪置] : 넓게 늘어놓음.
포흠[逋欠] : 관가(官家)의 물건을 빌려서 없이 하기나 숨기고서 돌려주지 않는 것. 국가의 조세(租稅)를 납부하지 않는 것. 혹은 이러한 미납으로 인한 결손액. 조선 시대에는 관원(官員)들의 포흠을 관포(官逋), 이서(吏胥)의 포흠을 이포(吏逋)라고 하였음. 연이은 흉년 등으로 백성들이 조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면 때때로 이전에 포흠된 것을 탕감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
표신[標信] :〈역사〉조선 후기에, 궁중에 급변을 전하거나 궁궐 문을 드나들 때에 쓰던 문표(門標). 중종 3년(1508)에 시행하였다.
표피[豹皮] : 표범의 가죽.
풀갓[草場] : 풀을 베어서 쓰는 빈 땅.
품계[品階] : 〈역사〉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던 등급. 제일 높은 정일품에서 제일 낮은 종구품까지 18 단계로 나뉘어 있다. 늑계(階) · 품질(品秩).
품달[稟達] : =품고[稟告]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쭘. 늑고품(告稟) ·
품의[稟議] :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의논함.
품지[稟旨] : 임금께 아뢰어서 받는 교지(敎旨).
품처[稟處] :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함.
풍헌[風憲] : ①풍기(風氣)를 바로잡고, 관리의 정사청탁(正邪淸濁)을 감찰 규탄하는 직임(職任). ②조선시대 면(面)이나 이(里)의 한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
피곡[皮穀] :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곡식. 겉곡식. 조선 시대에 민간에서는 통상적으로 피곡 20두로 1섬을 삼았음.

피전[避殿] : 〈역사〉임금이 궁전을 떠나 행궁이나 별서(別墅)에 머물던 일. 나라에 재이가 있을 때 근신하는 뜻으로 행하였다.

ㅎ

하고[下考] : 〈역사〉벼슬아치의 근무 평가에서 제일 낮은 성적.

하도[下道] : 충청(忠淸), 경상(慶尙), 전라(全羅)의 세

하리[下吏] : 하급 관리인 이서(吏胥)의 통칭. [참고어]: 서리(胥吏). 이서(吏胥).

하문[下問] :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 또는 윗사람의 물음.

하삼도[下三道] : 〈지명〉=삼남(三南).

하유[下諭] : ①임금이 유지를 내리는 것. 또는 그 유지를 말함. ②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분부.

하첩[下帖] : 수령이 백성에게 내리는 체문을 말함. [유사어]: 하첩(下帖).

학궁[學宮] : 성균관(成均館)의 별칭.

한[限] : 1.(주로 '없다', '있다'와 함께 쓰여) 시간, 공간, 수량, 정도 따위의 끝을 나타내는 말. 2.('-기(가) 한이 없다' 구성으로 쓰여) 앞에 쓰인 형용사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

한미[寒微] :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함.

한산인[閑散人] : ①한가하게 노니는 사람. ②관계만 있고 직사가 없는 관인.

한성부[漢城府] : 〈역사〉조선시대에, 서울의 행정·사법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5년(1396)에 한양부를 고친 것으로 삼법사의 하나이다. 늑광릉(廣陵)·한성(漢城).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 〈역사〉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뒤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 전문 칠 조(七條)로 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통감부의 감독 아래에 두는 것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늑정미칠조약·칠조약.

한정[閑丁] : 나이 15세부터 60세 사이의 장정으로서 국역(國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말함.

할미성[大母城] : 강화군 길상면에 소재하며 대모성산(大母城山)을 말한다.

함풍[咸豊] : 중국(中國) 청(淸)나라 문종(文宗) 때의 연호(年號). 서기(西紀) 1851년부터 1861년까지

합계[合啓] : 〈역사〉조선시대에,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이 연명하여 계사를 올리던 일. 또는 그 계사.

합문[閤門] : 〈역사〉1.=각문(閣門). 2.=각문.

합사[合辭] : 여러 관사(官司)나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하여 임금에게 상소(上疏)할 때 사연을 합하여 하나의 상소로 하던 일.

해[該] : 형성문자 :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一括(일괄)하다, 함께 묻다의 뜻을 가지는 亥(해)로 이루어짐. 대체로 마무어서 말하다의 뜻. 뜻풀이 : ㉠갖추다 ㉡겸하다 ㉢포용하다 ㉣마땅히 ㉤모두 ㉥모조리 ㉦군호(軍號) ㉧그

해괴제[解怪祭] : 〈역사〉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내던 제사. 궁중 용마루 위에서 부엉이가 울거나, 전의 부처가 땀을 흘리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지냈다.

해군[該郡] : 그 고을. 그 군

해도[該道] : 그 도

해량[蟹梁] : 게를 잡는 어량(魚梁).

해문[海門] : 두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의 통로.

해부[該府] : 그 부(府)

해사[該司] : 그 관청(官廳)

해서[海西] : 〈지명〉=황해도.

해서체[楷書體] : 글자의 서체(書體)의 한 가지로 중국의 예서(隸書)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서체. 붓글씨 또는 펜글씨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 해서체의 활자에는 세 가지 종류, 즉 청조제(淸朝體)·정해서체(正楷書體)·교과서체가 있으며, 사식(寫植)에서는 두 가지 종류, 즉 정해서체와 교과서체가 있다.

해시[亥時] : 〈민속〉1.십이시의 열두째 시. 밤 아홉 시부터 열한 시까지이다. 늑해(亥). 2.이십사시의 스물셋째 시. 밤 아홉 시 반부터 열 시 반까지이다. 늑해(亥).

핵문[劾問] : 죄상을 따져 물음.

행궁[行宮] : 〈역사〉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별궁. 늑이궁(離宮).

행단[杏壇] : 옛날 공자(孔子)가 사수(泗洙)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유지(遺址).

행대감찰[行臺監察] : 조선 초에 민간의 이해(利害), 수령의 잘잘못, 향리의 횡포,

사신(使臣)의 사물(私物)을 직접 조사하기 위하여 각도로 보내던 사헌부의 감찰.

행록[行錄] : =언행록[言行錄]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적어 모은 책.

행장[行狀] : 옛날에 외국(外國) 사람이 길을 다닐 때에 정부(政府)에서 그 사람에게 내준 여행권(旅行券)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왕궁을 떠나 거둥할 때에 임시로 머무는 곳.

행행[行幸] : 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둥하는 일.

행회[行會] : 나라의 지시(指示)를 관아(官衙)의 우두머리가 부하(部下)들에게 알리고, 그 실행(實行) 방법(方法)을 의논(議論)하여 정(定)하기 위(爲)한 모임

향각궁[鄕角弓] : 우리 나라에서 나는 양이나 소의 뿔을 이용하여 만든 활.

향곡[餉穀] : 군량에 쓰는 곡식(穀食)

향리[鄕吏] : 〈역사〉고려 · 조선시대에, 한 고을에 대물림으로 내려오던 구실아치.

향실[香室] : 조선시대 국가의 대소 제향(祭享) 때에 쓸 향과 축문을 보관 · 관리하던 교서관(校書館) 소속의 직소(職所). 대궐 안 정전(正殿) 서쪽에 있었으며, 관원으로 내시별감(內侍別監) 1인과 교서관 소속 참외관(參外官) 1인이 향과 축문을 담당하였으며, 충의위(忠義衛) 3인이 서사(書寫) · 축문 등의 일을 맡았고, 이속(吏屬)으로 수복(守僕) 3인, 방직(房直) 2인이 있었음.

허묘[墟墓] : 풀에 묻혀 폐허(廢墟)가 된 무덤

허비[虛費] : 헛되이 씀. 또는 그렇게 쓰는 비용.

헌납[獻納] : 〈역사〉조선시대에, 사간원에 둔 정오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보궐(補闕)을 고친 것으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허후[許詡 , ?~1453] : 조선 전기의 문신. 예조참판 · 경기도관찰사 · 형조참판을 거쳐, 예조판서에 올랐으며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좌찬성(左贊成)이 되어 어린 단종을 도왔다. 계유정란을 일으킨 수양대군에 의해 거제도에 유배, 교살되었다.

헌릉[獻陵] : 태종과 비 원경(元敬) 왕후의 능.

헌부[憲府] : 사헌부(司憲府)의 약칭으로서,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조선시대에는 사간원(司諫院)과 합칭하여 대간(臺諫) 또는 양사(兩司)라 하여 언관(言官)의 기능을 하였고, 대간은 형조(刑

門)와 같이 삼성(三省)으로 합칭되어 송사(訟事)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음. [유사어]: 대성(臺省), 사헌부(司憲府), 상대(霜臺), 헌사(憲司).

헌사[憲司] : 사헌부(司憲府).

헌의[獻議] : 신하들이 정사(政事)에 관한 의견들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임금에게 올림.

험요[險要] : 지세가 험하여 방어하는 데에 중요함. 또는 그런 곳.

혁파[革罷] : ①낡아서 못 쓰게 된 것을 개혁(改革)하여 없앰 ②기구(機構)·제도(制度)·법령(法令) 따위를 낡거나 문제(問題)가 있어 폐지(廢止)함

현[縣] : 옛 지방행정의 단위. 신라 때부터 현을 설치하여 등급 없이 모두 현령(縣令)을 두었는데 정원이 201명이었다. 고려 때에는 초기에 현령을 둔 현과, 중앙에서 지방관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속현(屬縣)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다. 현령이 배치된 현은 상위의 목(牧) 또는 도호부(都護府)의 관할하에 있으면서도 실제 행정은 어느 정도 현령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속현은 지방관이 배치된 다른 행정관청에 완전히 예속되었다. 예종(睿宗) 때부터 속현에도 감무(監務)라는 지방관을 점차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나, 어떤 속현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감무를 둔 곳도 있다. 고려시대에는 모두 335현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참작하여 대현에는 현령, 소현에는 현감을 두었으며, 그 수는 164현이었다. 현 제도는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폐지되었다.

현감[縣監] : 〈역사〉조선시대에 둔, 작은 현(縣)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육품으로 고려 시대의 감무(監務)를 고친 것인데 감무보다는 권한이 강하였다.

현달[顯達] : 벼슬, 명성, 덕망이 높아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남.

혈도[穴道] : 묘(墓)의 자리나 집터의 주산(主山)에서 뻗어 내려온 줄기.

형격[形格] : =체격. 사람 몸의 골격(骨格)이나 생김새

형률[刑律] : 〈법률〉=형법.

형옥[刑獄] : 예전에, 형벌과 감옥을 아울러 이르던 말.

형장[刑杖] :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할 때 쓰는 몽둥이

형조[刑曹] : 〈역사〉1.고려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법률·소송·형옥(刑獄)·노예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늑의형(義刑)·이관(李百). 2. 조선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법률·소송·형옥(刑獄)·노예 따위에 관한 일

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년에 법무아문으로 고쳤다. 늑의형 · 이관 · 추조(秋曹).

형추[刑推] : 죄인을 때리며 신문함. 형문(刑問). 형신(刑訊).

혜제[惠帝] : =건문제[建文帝] :〈인명〉중국 명나라의 제2대 황제(1383~1402). 성은 주(朱). 이름은 윤문. 시호는 혜제(惠帝). 건문은 연호. 재위 기간은 1398~1402년이다.

호군[護軍] : 〈역사〉1.고려시대에 둔, 정사품 무관의 벼슬. 공민왕 때에 장군(將軍)을 고친 것이다. 2.조선시대에, 오위(五衛)에 속한 정사품 벼슬. 현직(現職)이 아닌 정사품의 무관이나 음관(蔭官)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호방승지[戶房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서 호방(戶房)의 일을 맡아 보는 승지. 곧 좌승지(左承旨)를 이름.

호성공신[扈聖功臣] :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를 모시고 의주까지 호종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칭호.

호수[戶數] : 1.집의 수효. 2.호적상의 가호(家戶) 수.

호역[戶役] : 국가에서 집집마다 부과하는 부역. [참고어]: 복호(復戶).

호장[戶長] : 향리의 으뜸. 섭호장(攝戶長) · 정조호장(正朝戶長) · 안일호장(安逸戶長) 등이 있음. 고려 초에는 당대등(堂大等)이라 이르다가 성종 2년(983)에 호장으로 고쳐 조선 시대까지 일컬었음.

호조[戶曹] : 〈역사〉1.고려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곡(錢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공양왕 원년(1389)에 판도사를 고친 것이다. 2.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 공부,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에 탁지아문으로 고쳤다. 늑탁지(度支).

호조판서[戶曹判書] : 〈역사〉조선 시대에, 호조에 속한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이다. 늑사도.

호조판서[戶曹判書] : 조선시대에, 호조(戶曹)의 정2품(正二品) 으뜸 벼슬

호종[扈從] : 〈역사〉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여 따르던 일. 또는 그런 사람.

호창[呼唱] : 본래는 앞에서 큰 소리로 불러 외치는 행위를 말함. 조선 시대에는 그 뜻이 확장되어 ①의식이나 예를 행할 때 중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외치는 것. ②조정 관원의 행차가 저자거리를 지나갈 때 행차앞에서 행차하는 관원의 관직을 크게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표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게 됨.

호패[號牌] : 〈역사〉조선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녔던 패. 직사각형으로 앞면에는 성명, 나이, 태어난 해의 간지를 새기고 뒷면에는 해당 관아의 낙인을 찍었다. 이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벼슬아치는 관아에서 제작한 것을 지급받았으며, 그외는 성명·출생 신분·직역·거주지 따위를 단자(單子)로 만들어 관아에 제출하면 관아 단자와 대조하여 낙인을 받은 뒤에 지급받았다.

호피[虎皮] : 호랑이의 털가죽.

호환[虎患] :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禍).

혼궁[魂宮]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종묘에 입향할 때까지 신위를 모셔 놓았던 곳이며, 혼전(魂殿)이라고도 함. 임금은 3년상이 끝난 후 종묘에 모셔질 때까지 그 신위가 혼전에 모셔지지만 왕비는 임금이 훙(薨)한 뒤 합께 종묘에 모셔질 때까지 그 신위가 혼전에 모셔졌음.

혼유석[魂遊石] : 상석(床石)의 뒤, 무덤 앞에 놓는 가름하게 생긴 돌을 말함. 조선 시대 왕릉의 경우 혼유석 밑에 지석(誌石)을 묻기도 하였음. 왕릉의 경우에도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자주 크기를 정하는 논의가 있었음.

혼전[魂殿] : 〈역사〉조선시대에,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國葬) 뒤 삼 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던 전각.

혼조[昏朝] : 임금이 혼미(昏迷)하여 국사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조정. 조선의 연산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 때의 조정을 이름.

홍무[洪武] : 명나라 태조(太祖) 때의 연호. 고려 공민왕 17년(1368)~조선 태조 7년(1398)에 해당됨.

홍문관[弘文館] : 〈역사〉1.고려시대에, 학사(學士)들이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성종 14년(995)에 승문관을 고친 것이다. 늑관(館). 2.조선시대에, 삼사(三司) 가운데 궁중의 경서, 문서 따위를 관리하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늑관·문원(文垣)·서서원·영각(瀛閣)·옥당(玉堂)·옥서(玉署).

홍옥[紅玉] : 〈광업〉=루비.루비[ruby] 붉은빛을 띤 단단한 보석. 강옥(鋼玉)의 하나로, 미얀마의 만달레이 지방에서 나는 것이 유명하나,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늑홍보석·홍보옥·홍옥(紅玉).

홍치[弘治] : 〈역사〉중국 명나라 효종 때의 연호(1488~1505).

화곡[禾穀] : 벼에 속(屬)하는 곡식(穀食)을 통틀어 일컬음

화소[火巢] : 산불을 막기 위(爲)하여, 능원(陵園), 묘(墓) 등(等)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곳

화술주시[和述酒時] : 도연명이 남조시대 송나라 무제가 동진의 안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비난하여 지은 述酒詩에 화답한 시로 세조를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 내용

화육[化育] : 만물을 만들어 내고 기르는 것.

환곡[還穀] : 〈역사〉조선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늑환상(還上) · 환자(還子).

환관[宦官] : 거세(去勢)된 남자로서 궁중에서 벼슬을 하거나 유력자 밑에서 사역되던 자.

환궁[還宮] : 임금이나 왕비, 왕자 등이 대궐로 돌아옴. 늑환어(還御) · 환행(還幸) · 회란.

환도[環刀] : 예전에, 군복에 갖추어 차던 군도(軍刀).

환모[還耗] : 환곡(還穀)을 환수(還收)할 때 원곡(元穀) 이외(以外)에 쥐 · 참새 따위에 의(依)한 손실(損失)을 채우라는 뜻으로 석(石)마다 십분의 일을 더해 받던 일

환배[還配] : 귀양살이에서 풀리어 돌아옴

환상[還上] : 〈역사〉=환곡(還穀).

환안[還安] : 다른 곳으로 옮겼던 신주(神主)를 다시 제자리로 모심. 늑환봉(還奉).

환임[還任] : 본래의 직임으로 다시 임명함.

환자미[還上米] :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봄에는 대부하고 가을에는 수납하던 곡식.

환향[還餉] : 조선후기 군사용으로 비축한 양곡을 환곡의 예에 따라 농민들에게 대여했다가 회수하는 미곡. 각 도의 군영에서 군향(軍餉)으로 이획받은 곡식을 군영 소재지나 각 읍에 분급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했음. [유사어]: 향환(餉還).

황[皇] : 임금

황어[黃魚] : 〈동물〉1.잉어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0~45cm이고 방추형이며, 등은 검푸른 빛깔, 옆구리 · 배는 흰 빛깔이다. 번식기에는 배에 폭넓은 붉은빛 띠가 나타나고 각 지느러미도 붉어지며 머리와 등에 작은 돌기가 다수 나타난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많이 사는데 한국, 사할린, 연해주, 만주,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늑설치 · 설치어.

(Tribolodon hakonensis) 2.=철갑상어.

황충[蝗蟲] :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인 누리의 한자 명칭. [유사어]: 비황(飛蝗).

황희[黃喜, 1363~1452] : 고려 말 · 조선 초의 문신.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했으나, 이성계의 간청으로 다시 벼슬길에 올라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면서 세종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으로 명성이 높았다.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시문에도 뛰어나 몇 수의 시조 작품도 전해진다.

회계[回啓] : 〈역사〉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일.

회방[回榜] : 〈역사〉과거에 급제한 지 예순 돌이 되는 해.

회상전[會祥殿] : 경희궁의 부속건물로서 지금은 조계사로 사용되고 있다.

획급[劃給] : 정해진 수량대로 다 주지 않고 갈라서 다른 사람이나 관아에 나누어 줌. [유사어]: 획부(劃付). 획하(劃下).

획하[劃下] : 주어야 할 것을 그어줌

횡렴[橫斂] : 무법(無法)하게 조세를 거두어들임.

효경[孝經] : 유교 경전의 하나. 공자(孔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논설의 내용을 훗날 제자들이 편저(編著)한 것으로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음. 천자(天子) · 대부(大夫) · 사(士) · 서인(庶人)의 효(孝)를 나누어 서술하고 효가 덕(德)의 근본임을 밝힘. 우리 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 시대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을 때 그 시험 과목의 하나로 쓰인 기록이 있음. 그 후 유교의 대표적 덕목인 효도의 기본서로서 널리 읽혀짐.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 : 조선 태종의 2남. 불교에 독실하여 수많은 유신(儒臣)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도(僧徒)를 모아 불경을 강론하도록 했으며, 원각사를 창건하게 되자 조성도감 제조가 되어 역사(役事)를 친히 감독했고, 《원각경》을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본명 보(補), 별칭 초명 호(祜), 자 선숙(善叔), 시호 정효(靖孝), 활동분야 문학, 이름 보(補). 초명 호(祜), 자 선숙(善叔). 시호 정효(靖孝).

효유[曉諭/曉喻] :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이름. 늑효시(曉示).

후[后] : ①중궁(中宮).②군왕(君王).

후관[候館] : 전방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설치한 건물. [유사어]: 망루(望樓). 후루(候樓).

후래[後來] : 1.뒤에 오거나 뒤져서 옴. 2.[북한어]장차 오게 되는 앞날.

후원[後援] : 뒤에서 도와줌.

훈련대장[訓鍊大將] : 〈역사〉조선시대에 둔, 훈련도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이품이었다. 늑훈장.

훈련도감[訓鍊都監] : 〈역사〉조선 후기에, 오군영(五軍營) 가운데 수도 경비와 포수(砲手), 살수(殺手), 사수(射手)의 삼수군(三手軍) 양성을 맡아보던 군영. 선조 때에 설치하여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 늑도감(都監) · 훈국(訓局).

훙[薨] : 홍서[薨逝]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늑훙거 · 훙어.

훙서[薨逝] :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늑훙거 · 훙어.

훼철[毁撤] : 헐어서 치워 버림.

휘릉[徽陵] : 〈고적〉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선 인조의 계비 조 대비의 능. 동구릉의 하나이다.

흉전[恤典] : ①나라에서 관리들이 죽었을 때에 철조(輟朝)를 하거나, 장례 비용의 일부를 대주는 일. 또는 그 밖의 사제(賜祭) · 배향(配享) · 추봉(追封) · 수비(樹碑) · 입방(立坊) · 건사(建祠) 따위를 해주는 일. [유사어]: 휼상(恤賞), 휼음(恤蔭). ②나라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계를 잃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로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의창(義倉)과 대비원(大悲院) 및 제위보(濟危寶)가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호조(戶曹)와 진휼청(賑恤廳) 및 각 도에서 휼전을 주관하였음. 집이 가난하여 결혼할 나이가 지나서도 혼인하지 못한 사람과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및 흉년에 구걸하는 어린아이들과 버려진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호도 포함됨. [유사어]: 구휼(救恤), 휼민(恤民), 휼환(恤患).

흉황[凶荒] : 곡식 농사가 잘 안되어 농사가 결딴남. 늑흉겸.

흑각궁[黑角弓] : 빛깔이 검은 무소의 뿔로 만든 활.

흥경원[興慶園] :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仁祖)의 생부인 정원대군(定遠大君)의 묘호(墓號). 광해군(光海君) 때 양주(楊州)에 있다가 인조가 즉위한 뒤에 김포로 이장하였고, 원종(元宗)으로 추증된 뒤에는 묘호를 장릉(章陵)이라 고쳤음.

희량[希亮] : 노공필의 자(子).

이제 '김포실록'이라는 새로운 보물을 확보했다. 단순히 옛 선조들의 이야기가 모아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김포실록을 통해서 선조들이 김포를 향해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자료와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김포사람으로서 김포를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가치가 김포시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사실로 내면에 잠기고 김포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편자는 충분히 김포실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편찬자의 말 중에서-